2026.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검토보고(부처별 Ⅰ)

국 회 운 영 위 원 회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정 무 위 원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http://budget.na.go.kr

2026.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검토보고(부처별 Ⅰ)

국 회 운 영 위 원 회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정 무 위 원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http://budget.na.go.kr

# CONTENTS

## 국 회 운 영 위 원 회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Ⅰ. 개 관 ····· 3**

1. 결산 개요 ····· 3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 7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7

**Ⅱ. 사업별 검토 ····· 8**

**【일반회계】**

**<총 괄> ····· 8**

1. 정책연구용역비: 효율적인 정책연구용역비 집행 노력 필요 ····· 8

**【기 타】**

2.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11

## ❖ 대통령경호처


**Ⅰ. 개 관 ····· 12**

1. 결산 개요 ····· 12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 15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15

**Ⅱ. 사업별 검토 ····· 16**

**【일반회계】**

**<세 입> ····· 16**

1. 위약금: 경호장비 납품지연 개선 필요 ····· 16

**<세 출> ····· 18**

2.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사업: 적극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인건비 예산 집행 필요 ····· 18

**【기 타】**

3.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21

## ❖ 국 회


**Ⅰ. 개 관 ····· 22**

1. 결산 개요 ····· 22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 25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25

**Ⅱ. 사업별 검토 ····· 26**

**【총 괄】**

1. 국회 유튜브 채널의 운영 성과 개선 필요 ····· 26

**【일반회계】**

**<세 출> ····· 30**

2. SNS 동영상 제작 지원 사업: 계약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국회방송 유튜브 콘텐츠 제작사업의 잔금 집행 부적정 ····· 30
3. 국회온라인미디어 운영 사업: 회계연도 독립 원칙 및 지출원인행위 준칙을 고려한 용역계약 예산 집행 필요 ····· 33
4. AI의정분석서비스 아르고스 구축·운영 사업: 국회도서관 아르고스 서비스의 만족도 미흡 문제 ····· 36
5. 의안비용추계 및 조세분석 사업: 의안비용추계 업무의 적시성 제고 필요 ····· 40
6. 입법 및 정책 조사분석 서비스 운영경비 사업: 입법조사분석 회답 서비스의 생성형 AI 도구와의 차별화 방안 마련 필요 ····· 43
7. 국회미래연구원 사업: 의정활동 지원 목적에 맞는 보고서 발간 일정 수립 필요 ····· 48

**【기 타】**

8.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51

## ❖ 국가인권위원회

**Ⅰ. 개 관 ····· 52**

1. 결산 개요 ····· 52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 55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55

**Ⅱ. 사업별 검토 ····· 56**

**【총 괄】**

1. 성과지표: 핵심 기능 성과지표 미달성 및 제외에 따른 성과관리 보완 필요 ····· 56

**【일반회계】**

**<세 출> ····· 61**

2. 인권의식 증진 사업: 연례적인 세목조정 등 반복적 예산변경 개선 필요 ···· 61
3. 인권단체 인권증진활동 지원 사업: 공모 주제 및 지원단체의 다양성 제고 필요 ····· 65

**【기 타】**

4.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68

# 법 제 사 법 위 원 회

## ❖ 법 무 부


**Ⅰ. 개 관 ····· 71**

1. 결산 개요 ····· 71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 76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77

**Ⅱ. 사업별 검토 ····· 79**

**【일반회계】**

**<세 입> ····· 79**

1. 과태료: 연례적인 수납률 저조 해소 필요 등 ····· 79

**<세 출> ····· 82**

2. 국가배상금 지급 사업: 이·전용 및 예비비 사용 최소화 노력 필요 ····· 82
3.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업: 대한법률구조공단 자체수입 산정의 정확성 제고 노력 필요 등 ····· 85
4.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사업: 교육대상자 선정 및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 92
5. 형사보상 사업: 연례적인 예비비 및 이·전용 등을 통한 사업 추진 지양 필요 ····· 95
6. 조은석 특별검사: 불필요한 예비비 추가 배정 지양 필요 ····· 99

7.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사업: 국제투자분쟁 사건별 소요비용에 대한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 103
8. 갱생보호활동 사업: 전남지부 기술교육원 공사일정 지연 방지 필요 ····· 107
9. 전자감독 사업: 부처 간 협업체계 강화 및 인력 운용 개선방안 마련 필요 ····· 111
10. 특별감찰활동 사업: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비용 최소화 및 사무실 활용방안 마련 필요 ····· 115
11. 교도소 운영 기본경비: 반복적인 이·전용 발생에 따른 예산운용 개선 필요 ····· 118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수 입> ····· 122
12. 일반회계 전입금: 법정 전입금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정산 절차 이행 필요 ····· 122

<지 출> ····· 125
13. 민간경호지원 사업: 민간경호지원 사업의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운영방안 마련 필요 ····· 125

【기 타】

14.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 128

## ❖ 법 제 처

**Ⅰ. 개 관 ····· 129**

1. 결산 개요 ····· 129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 132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132

**Ⅱ. 사업별 검토 ····· 133**

**【일반회계】**

**<세 출> ····· 133**

1. 인건비(총액인건비 대상) 사업: 인건비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정확성 제고 필요 ····· 133
2.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사업: 실효성 검토 및 개선 방안 모색 필요 ····· 137
3.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 사업: 실제 교육 수요를 고려한 적정임차료 편성 필요 ····· 140

**【기 타】**

4.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143

## ❖ 감 사 원


**Ⅰ. 개 관 ····· 144**

1. 결산 개요 ····· 144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 147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147

**Ⅱ. 사업별 검토 ····· 148**

**【총 괄】**

1. 성과지표: 성과지표 목표 미달성 및 감사활동의 경제적 성과 달성도 세부내역 공개 필요 ····· 148
2. 연구용역비: 수의계약 과다 문제 ····· 153
3. 물품구매 계약 및 예산관리: 일상감사 규정 미준수 문제 ····· 157
4. 감사원 소관 결산보고서: 소송충당부채 누락 문제 ····· 159

**【일반회계】**

**<세 입> ····· 162**

5. 기타경상이전수입: 평균 수납액을 고려한 세입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 162

**<세 출> ····· 165**

6. 기본경비 사업: 지출원인행위 준칙 위반 등 ····· 165
7. 감사활동경비 사업: 재심의 처리 기간 단축 필요 및 감사지 발간경비의 연례적 이월 문제 ····· 169
8. 전산운영경비(정보화) 사업: 집행 지연, 예산 이월 등이 최소화 되도록 면밀한 사업 관리 필요 ····· 173

**【기 타】**

9.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176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Ⅰ. 개 관 ····· 177**

1. 결산 개요 ····· 177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 180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180

**Ⅱ. 사업별 검토 ····· 181**

**【일반회계】**

**<세 출> ····· 181**

1.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사업: 연례적 집행 부진 문제 해결 필요 ····· 181

2.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 사업: 장애인고용의무 준수 노력 필요 ····· 184

**【기 타】**

3.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186

## ❖ 헌법재판소


**Ⅰ. 개 관 ····· 187**

1. 결산 개요 ····· 187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 190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190

**Ⅱ. 사업별 검토 ····· 191**

**【일반회계】**

**<세 출> ····· 191**

1. 국선대리인보수등: 참고인 제도 활용 미흡 개선 필요 등 ····· 191
2. 재판활동운영지원 사업: 헌법 재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개선 방안마련 필요 ····· 197
3. 차량 임차 사업: 정무직·업무용 차량 임차료 집행의 효율성 제고 필요 ····· 200

**【기 타】**

4.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204

## ❖ 대 법 원


**Ⅰ. 개 관 ····· 205**

1. 결산 개요 ····· 205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 210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211

**Ⅱ. 사업별 검토 ····· 212**

**【일반회계】**

**<세 입> ····· 212**

1. 토지대여료: 예산액과 수납액의 과도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편성 및 집행관리 철저 필요 ····· 212

**<세 출> ····· 215**

2. 일반형사재판 송달료 등 사업: 송달료 편성의 정확성 제고 필요 ····· 215
3. 재판일반경비지원: 연도 내 사업 수행을 통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필요 ····· 218
4. 법원정책연구비 사업: 정책연구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과제 추진 필요 ····· 222
5. 사법업무 전산화(정보화) 사업: 조기 발주를 통한 예산 이월 최소화 필요 ····· 226
6.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정보화): 이월예산의 불용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 관리 필요 ····· 229
7. 본부 기본경비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정확성 제고 필요 ····· 233

【등기특별회계】

<세 입> ····· 236

8. 전년도세계잉여금: 세계잉여금 추계의 정확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236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지 출> ····· 239

9. 조정제도 지원 사업: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필요 ····· 239

10.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신축 사업: 계약지연으로 인한 과다 이월액 발생 문제 ····· 243

【국유재산관리기금】

<지 출> ····· 247

11. 대법원 청주지법 충주지원 신축: 연례적인 기금운용계획변경 지양 필요 ····· 247

【기 타】

12.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 250

# 정 무 위 원 회

##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Ⅰ. 개 관 ····· 255**

1. 결산 개요 ····· 255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 259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260

**Ⅱ. 사업별 검토 ····· 261**

**【총 괄】**

1.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인력공백 등에 따른 심판사건 적체 및 처리기간 장기화 문제 개선 필요 ····· 261
2. 정부출연연구기관 공통: 능률성과급 제도 운영 개선 필요 ····· 266
3. 정부출연연구기관 공통: 반복적인 자체수입 과소계상 문제 개선 필요 등 ····· 270

**【일반회계】**

**<세 출> ····· 275**

4.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사업: 청년참여 거버넌스 운영 사업의 참여대상 확대 등 ····· 275
5.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사업: 규제개선 과제 이행실적 관리미흡 ····· 279
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업: PBS 폐지에 따른 소속 출연연에 대한 평가강화 필요 등 ····· 283

7. 육아정책연구소 사업: 연구소 본연의 목적 및 기능에 부합하는 역할 수행 필요 ····· 288
8.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사업: 기관 특성을 고려한 현행 관리·감독 체제 재검토 필요 등 ····· 293

**【기 타】**

9.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297

## ❖ 국가보훈부


**Ⅰ. 개 관 ····· 300**

1. 결산 개요 ····· 300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 305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306

**Ⅱ. 사업별 검토 ····· 307**

**【총 괄】**

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자체수입 확대 등 재무구조 개선 필요 ····· 307
2. 88관광개발: 88골프장 지속 운영 결정에 따른 시설관리 및 수입기반 강화 필요 ····· 313

**【일반회계】**

**<세 출> ····· 317**

3.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 사업: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 필요 ····· 317
4.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선 사업: 사업 지연을 고려한 예산 편성 및 실집행 관리 강화 필요 ····· 322
5. 위탁병원 진료 사업: 지역별 이용실적 및 의료대상자를 고려한 위탁병원 지정 필요 ····· 326
6. 교통시설 이용지원 사업: 교통수단별 정산체계 개선 및 연례적인 미지급금 해소 필요 ····· 330
7. 고엽제환자검진 사업: 외부 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한 검진 관리 강화 필요 ····· 333
8. 제대군인 의료지원 사업: 연례적 이·전용 및 과소편성 개선 필요 ····· 336
9. 지방보훈회관건립 사업: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필요 ····· 340

## 【보훈기금】

<수 입> ····· 343

10.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장기 미수납 채권 수납관리 강화 필요 ····· 343

<지 출> ····· 346

11. 국가유공자 등 대부관리 사업: 이차보전금리 설정 방식의 개선 필요 ··· 346

12. 보훈복지시설건립 사업: 요양수요를 고려한 요양원 확대 추진 필요 등 ····· 350

13. 국가유공자 등 노후복지지원 사업: 재가보훈실무관 감소에 따른 재가복지서비스 및 안부확인 체계 강화 필요 ····· 354

## 【기 타】

14.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358

## ❖ 공정거래위원회


**Ⅰ. 개 관 ····· 360**

1. 결산 개요 ····· 360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 363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363

**Ⅱ. 사업별 검토 ····· 364**

**【총 괄】**

1. 예산 관련 법령 및 지침의 내용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364

**【일반회계】**

**<세 입> ····· 370**

2. 과징금·과태료 및 가산금: 세입 수납실적 제고방안 마련 필요 등 ····· 370

**<세 출> ····· 379**

3.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사업: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필요 ····· 379
4.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정보화) 사업: 연내 미지급금 지속 발생 및 차년도 예산을 활용한 사후 정산 반복 지양 필요 ····· 383
5.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 사업: 분쟁조정 절차의 법정 처리기간 준수 필요 등 ····· 386
6. 한국소비자원 출연 사업: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절차의 법정 처리기간 준수 필요 ····· 391

**【기 타】**

7.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394

## ❖ 금융위원회


**Ⅰ. 개 관 ····· 395**

1. 결산 개요 ····· 395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 400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401

**Ⅱ. 사업별 검토 ····· 402**

**【총 괄】**

1. 금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지침을 위반한 복리후생·인사관리제도의 조속한 시정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 402

**【일반회계】**

**<세 출> ····· 412**

2. 서민금융진흥원 출연(햇살론15,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 정부재정 부담 완화 방안 모색 필요 등 ····· 412
3.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사업: 과다한 유보금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422
4.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수요의 추계정확성 제고 및 실적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426
5. 산업은행 출자(지역활성화투자펀드) 사업: 신속한 자펀드 결성 필요 등 ····· 432
6. 산업은행 출자(반도체설비투자지원특별프로그램) 사업: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대해 재정의 마중물 역할 수행 필요 ····· 439
7. 산업은행 출자(관세대응저리지원특별프로그램) 사업: 우량 기업 위주 지원, 연내 내용 대폭 변경 및 중복수혜 발생 등 부적정 ····· 443

8.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사업: 계획 대비 채권매입실적 부진 및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448

9.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기업구조혁신펀드) 사업: 신속한 자펀드 투자 필요 ····· 45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수 입> ····· 460

10. 기타특별회계전입금: 기금 건전성 제고 노력 필요 ····· 460

<지 출> ····· 464

11. 지출 총괄: 기금운용계획 수립 이후 신규사업 추진 및 사업비의 사후적 충당 부적정 ····· 464

【신용보증기금】

<수 입> ····· 468

12. 수입 총괄: 추계정확성 제고 필요 ····· 468

<지 출> ····· 473

13. 경영지도 사업: 신용카드 수수료 과다 편성 지양 필요 ····· 473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지 출> ····· 475

14. 대위변제 사업: 증가하는 대위변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 475

15. 사업수수료 사업: 계획액의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 479

【기 타】

16.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 관련 부처협의 노력 제고 필요 ····· 484

## ❖ 국민권익위원회


**Ⅰ. 개 관 ····· 488**

1. 결산 개요 ····· 488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 492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492

**Ⅱ. 사업별 검토 ····· 493**

**【일반회계】**

**<세 출> ····· 493**

1. 신고자보호보상및공익신고제도운영 사업: 신고자보호조치 실효성 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 필요 등 ····· 493
2. 행정심판통합추진 사업: 행정심판 조직 통합 추진사업 중단에 따른 유사 사례 재발 방지 필요 ····· 498
3. 청렴권익정책알리기 사업: 홍보 예산의 총괄관리 필요 등 ····· 501
4. 고충민원조사활동 사업: 지방옴부즈만 활성화 노력 필요 ····· 504

**【기 타】**

5.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506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Ⅰ. 개 관 ····· 507**

1. 결산 개요 ····· 507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 510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510

**Ⅱ. 사업별 검토 ····· 511**

**【일반회계】**

**<세 입> ····· 511**

1. 과징금 및 기타재산이자수입: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 5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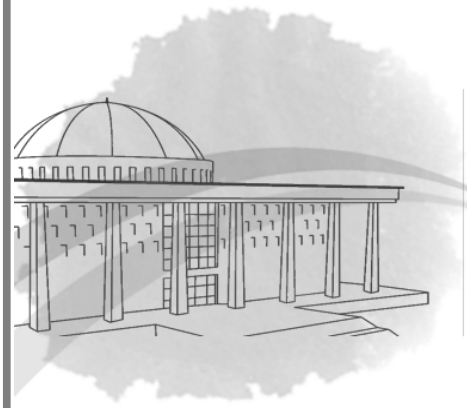
**<세 출> ····· 516**

2.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 사업: 관서운영경비 집행관리 강화 필요 등 ····· 516
3. 가명처리 기술지원 사업: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및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의 운영 활성화 필요 ····· 522
4. 개인정보 침해방지 사업: 추가경정예산 및 예비비 편성·배정의 취지를 고려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 필요 ····· 527

**【기 타】**

5.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533

# 국회운영위원회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 Ⅰ. 개 관

## 1. 결산 개요

### 가. 총수입·총지출

2025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1억 6,000만원(53.9%)이 많은 4억 5,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3,000만원(△48.5%)이 감소됨.[1)]

[2025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4회계연도 | | | | 2025회계연도 | | | | 전년대비 (D-B) |
|---|---|---|---|---|---|---|---|---|---|
| | 예산액 | | 결산 (B) | 예산대비 (B-A) | 예산액 | | 결산 (D) | 예산대비 (D-C) | |
| | 본예산 | 추경(A) | | | 본예산 | 추경(C) | | | |
| 예 산 | 297 | 297 | 887 | 590 | 297 | 297 | 457 | 160 | △430 |
| 총수입 | 297 | 297 | 887 | 590 | 297 | 297 | 457 | 160 | △430 |

문의: 02-6788-5697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5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52억 6,500만원(△5.3%)이 적은 944억 8,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400만원(1.8%)이 증가됨.

[2025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4회계연도 | | | | 2025회계연도 | | | | 전년대비 (D-B) |
|---|---|---|---|---|---|---|---|---|---|
| | 예산액 | | 결산 (B) | 예산대비 (B-A) | 예산액 | | 결산 (D) | 예산대비 (D-C) | |
| | 본예산 | 추경(A) | | | 본예산 | 추경(C) | | | |
| 예 산 | 103,102 | 103,102 | 92,784 | △10,318 | 95,628 | 99,753 | 94,488 | △5,265 | 1,704 |
| 총 지 출 | 103,102 | 103,102 | 92,784 | △10,318 | 95,628 | 99,753 | 94,488 | △5,265 | 1,704 |

## 나.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억 9,700만원으로, 4억 6,7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4억 5,700만원이 수납(수납률 97.8%)되고, 1,0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5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세입예산액 | | 이체등 증감액 (B) | 세입 예산현액 (A+B) | 징수 결정액 | 수납액 | 미수납액 | 불납 결손액 |
|---|---|---|---|---|---|---|---|---|
| | 본예산 | 추경 (A) | | | | | | |
| 일반회계 | 297 | 297 | - | 297 | 467 | 457 | 10 | - |
| 합 계 | 297 | 297 | - | 297 | 467 | 457 | 10 | - |

주) 총계 기준

2025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159억 1,100만원으로, 944억 8,800만원이 집행(집행률 81.5%)되고, 214억 2,3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세출예산액 | | 예산결정후증감액(B) | | | 세출 예산현액 (C=A+B)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 (A)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 | | |
| 일반회계 | 95,628 | 4,125 | - | 53<br>△53 | 16,158 | 115,911 | 94,488 | - | 21,423 |
| 합 계 | 95,628 | 4,125 | - | 53<br>△53 | 16,158 | 115,911 | 94,488 | - | 21,423 |

주) 총계 기준

## 다. 재무결산

2025회계연도 말 기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자산은 전년 대비 29억 3,100만원이 증가된 7,925억 7,900만원으로, 이는 금융자산이 1억 500만원, 유·무형자산이 27억 9,600만원, 기타자산이 3,100만원 증가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1억 1,900만원 증가된 11억 1,100만원으로 충당부채 9,400만원과 기타부채 2,600만원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28억 1,200만원이 증가된 7,914억 6,800만원임.

2025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1,050억 3,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3억 5,500만원 증가되었으며, 재정운영결과는 1,047억 5,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2억 8,600만원 증가됨.

[2025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 | 2025 (A) | 2024 (B) | 증 감 | |
|---|---|---|---|---|---|---|
| | | | | | 금액 (A-B) | 증가율 (A-B)/B |
| 재정 상태표 | 자 산 | | 792,579 | 789,648 | 2,931 | 0.4 |
| | | 금융자산 | 511 | 406 | 105 | 25.9 |
| | | 유·무형자산 | 792,026 | 789,230 | 2,796 | 0.4 |
| | | 기타자산 | 42 | 11 | 31 | 281.8 |
| | 부 채 | | 1,111 | 992 | 119 | 12.0 |
| | | 차입부채 | - | - | - | - |
| | | 충당부채 | 1,081 | 987 | 94 | 9.5 |
| | | 기타부채 | 30 | 4 | 26 | 650.0 |
| | 순자산 | | 791,468 | 788,656 | 2,812 | 0.4 |
| 재정 운영표 | 프로그램순원가 | | 105,030 | 101,675 | 3,355 | 3.3 |
| | 재정운영순원가 | | 104,752 | 101,466 | 3,286 | 3.2 |
| | 재정운영결과 | | 104,752 | 101,466 | 3,286 | 3.2 |

##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2025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재정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음.

##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대통령 국정수행의 효율적 지원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일반회계 2개 프로그램 8개 세부사업에서 국정운영관리, 시설관리 및 개선,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등을 수행하였음.

2025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국정운영관리 사업,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사업에 편성된 정책연구용역비(국정운영관리 4억 5,000만원,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7,000만원)가 전액 불용되었으므로, 추후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정책연구용역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 Ⅱ. 사업별 검토

## 【일반회계】

### <총 괄>

## 1. 정책연구용역비: 효율적인 정책연구용역비 집행 노력 필요

### 가. 개 요

**‘국정운영관리’** 사업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65억 8,000만원 중 41억 4,800만원이 집행(집행률 63.0%)되고 24억 3,200만원이 불용되었음.[2)]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사업은 효율적인 국가안보실 운영을 통해 국가재난 상황 등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6억 5,700만원 중 4억 5,000만원이 집행(집행률 68.5%)되고 2억 700만원이 불용되었음.[3)]

[2025년도 국정운영관리,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국정운영관리 | 6,580 | 6,580 | - | - | 6,580 | 4,148 | - | 2,432 | 7,754 |
|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 657 | 657 | - | - | 657 | 450 | - | 207 | 492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 일반회계-국정운영관리(1131-301)(총무비서관실)

3) 일반회계-국가안보 및 위기관리(1133-600)(총무비서관실)

## 나. 검토의견

**‘국정운영관리’ 및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사업에 편성된 정책연구용역비(국정운영관리 4억 5,000만원,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7,000만원)가 전액 불용되었으므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정책연구용역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정책연구비(260-02목)는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학술연구 포함),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 용역 수행을 목적으로 편성되는 것임.[4)]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2025년 국정운영관리 사업에 정책연구비 4억 5,000만원,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사업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불용되었음.

[2025년도 국정운영관리 및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사업 정책연구비(260-02) 결산]

(단위: 백만원)

| 세부 사업명 | 비목 | 2025년 | | | | | | | | | | 2026년 |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산 현액 | 집행액 [실집행액] | 전년도 이월액 제외 | | 다음 연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 본예산 | 추경 | | | | | 예산 현액 | 집행액 [실집행액] | | | |
| 국정운영 관리 | 정책 연구비 (260-02) | 450 | 450 | - | - | 450 | - | 450 | - | - | 450 | - |
|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 정책 연구비 (260-02) | 70 | 70 | - | - | 70 | - | 70 | - | - | 70 | 70 |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에 대해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각 부처의 주요 정책을 총괄·관리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실제 정책연구용역 수행은 소관 부처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여 전액 불용하였다는 입장임.

그런데 이러한 판단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에도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사업에 정책연구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해당 예산이 2026년 7월말까지 전액 집행되지 못하였고 기존 입장이 유지된다면 재차 불용이 예상되는 상황임.

4)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188.

따라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이러한 연례적 불용 발생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예산 편성 시 정책연구용역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필요한 만큼의 정책연구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기　타】

## 2.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 의결관련,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에 대한 시정요구는 없었음.

# 대통령경호처

# Ⅰ. 개 관

## 1. 결산 개요

### 가. 총수입·총지출

2025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1억 7,100만원(31.3%)이 많은 7억 1,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900만원(28.4%)이 증가함.[1)]

[2025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4회계연도 | | | | 2025회계연도 | | | | 전년대비 (D-B) |
|---|---|---|---|---|---|---|---|---|---|
| | 예산액 | | 결산 (B) | 예산대비 (B-A) | 예산액 | | 결산 (D) | 예산대비 (D-C) | |
| | 본예산 | 추경(A) | | | 본예산 | 추경(C) | | | |
| 예 산 | 532 | 532 | 559 | 27 | 547 | 547 | 718 | 171 | 159 |
| 총수입 | 532 | 532 | 559 | 27 | 547 | 547 | 718 | 171 | 159 |

2025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39억 7,100만원(△2.9%)이 적은 1,350억 7,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0억 6,500만원(6.3%)이 증가함.

문의: 02-6788-5697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5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4회계연도 | | | | 2025회계연도 | | | | 전년대비 (D-B) |
|---|---|---|---|---|---|---|---|---|---|
| | 예산액 | | 결산 (B) | 예산대비 (B-A) | 예산액 | | 결산 (D) | 예산대비 (D-C) | |
| | 본예산 | 추경(A) | | | 본예산 | 추경(C) | | | |
| 예 산 | 134,096 | 134,096 | 127,012 | △7,084 | 139,048 | 139,048 | 135,077 | △3,971 | 8,065 |
| 총지출 | 134,096 | 134,096 | 127,012 | △7,084 | 139,048 | 139,048 | 135,077 | △3,971 | 8,065 |

## 나.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5억 4,700만원으로, 7억 1,8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7억 1,800만원이 수납(수납률 100.0%)되었음.

[2025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세입예산액 | | 이체등 증감액 (B) | 세입 예산현액 (A+B) | 징수 결정액 | 수납액 | 미수납액 | 불납 결손액 |
|---|---|---|---|---|---|---|---|---|
| | 본예산 | 추경 (A) | | | | | | |
| 일반회계 | 547 | 547 | - | 547 | 718 | 718 | - | - |
| 합 계 | 547 | 547 | - | 547 | 718 | 718 | - | - |

주) 총계 기준

2025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490억 3,800만원으로, 이 중 1,350억 7,700만원이 집행(집행률 90.6%)되고 18억 4,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21억 2,0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세출예산액 | | 예산결정후증감액(B) | | | 세출 예산현액 (C=A+B)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 (A)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 | | |
| 일반회계 | 139,048 | 139,048 | 231 | - | 9,759 | 149,038 | 135,077 | 1,840 | 12,120 |
| 합 계 | 139,048 | 139,048 | 231 | - | 9,759 | 149,038 | 135,077 | 1,840 | 12,120 |

## 다. 재무결산

2025회계연도 말 기준 대통령경호처 자산은 전년 대비 176억 7,300만원이 증가한 7,996억 300만원으로, 이는 유무형자산과 기타자산이 각각 173억 8,000만원, 3억 3,600만원 증가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1,100만원 감소된 0원으로 차입부채 1,100만원의 감소에 기인하고 있음.

2025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1,430억 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8억 7,300만원 증가되었으며, 재정운영결과는 1,423억 6,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7억 3,400만원 증가됨.

[2025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 | 2025 (A) | 2024 (B) | 증 감 | |
|---|---|---|---|---|---|---|
| | | | | | 금액 (A-B) | 증가율 (A-B)/B |
| 재정 상태표 | 자 산 | | 799,603 | 781,930 | 17,673 | 2.3 |
| | | 금융자산 | 404 | 404 | - | - |
| | | 유무형자산 | 798,756 | 781,418 | 17,338 | 2.2 |
| | | 기타자산 | 443 | 107 | 336 | 314.0 |
| | 부 채 | | - | 11 | △11 | 순감 |
| | | 차입부채 | - | 11 | △11 | 순감 |
| | | 충당부채 | - | - | - | - |
| | | 기타부채 | - | - | - | - |
| | 순자산 | | 799,603 | 781,919 | 17,684 | 2.3 |
| 재정 운영표 | 프로그램순원가 | | 143,060 | 131,187 | 11,873 | 9.1 |
| | 재정운영순원가 | | 142,363 | 130,629 | 11,734 | 9.0 |
| | 재정운영결과 | | 142,363 | 130,629 | 11,734 | 9.0 |

##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2025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재정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음.

##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전직 대통령, 주요 국빈 등 경호대상자의 절대 안전보장을 목표로 예산을 집행함. 특히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한민국 국격에 걸맞은 완벽한 다자 정상회의 경호환경을 구현하고자 역량을 집중함.

2025년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경호장비 구입 시 연례적인 납품지연을 개선하도록 하는 국회의 과거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2025년에도 경호장비 납품 지연이 반복되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공무직 근로자 채용지연으로 편성된 상용임금 38억 2,900만원 중 9억 7,400만원이 불용(25.4%)되었으므로, 대통령경호처는 보다 적극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통해 효율적으로 인건비 예산을 집행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Ⅱ. 사업별 검토

## 【일반회계】

### <세 입>

## 1. 위약금: 경호장비 납품지연 개선 필요

### 가. 개 요

**‘위약금’** 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장비 납품이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지체상금이 수납되는 비목으로, 징수결정액 1,100만원이 전액 수납(수납률 100.0%)되었음.[2)]

[2025년도 위약금 결산]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5년도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징수 결정액 (B) | 수납액 (C) | 미수납액 | 불납 결손액 | 수납률 (C/B)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위약금 | - | - | 11 | 11 | - | - | 100.0 | -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경호장비 구입 시 연례적인 납품지연을 개선하도록 하는 국회의 과거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2025년에도 경호장비 납품 지연이 반복되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음.**

2023회계연도 결산 당시 국회는 납품기한 미준수 등에 기인한 경호장비 납품 지연은 차질 없는 경호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납품 지연문제를 개선하도록 대통령경호처에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음.[3)]

---

2) 일반회계-위약금(57-572)(운영관리본부)

3)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대통령경호처는 경호장비를 구매함에 있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납품 지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

그런데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경호장비 도입 지연으로 인해 전년에 이어 1,100만원이 위약금으로 수납되었음.[4)]

[2019~2025년도 대통령경호처 위약금 결산]

(단위: 백만원, %)

| 연도 | 예산액 | | 징수결정액 (B) | 수납액 (C) | 미수납액 | 불납결손액 | 수납률 (C/B)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2019 | - | - | 13 | 13 | - | - | 100.0 |
| 2020 | - | - | 10 | 10 | - | - | 100.0 |
| 2021 | - | - | 20 | 20 | - | - | 100.0 |
| 2022 | - | - | 6 | 6 | - | - | 100.0 |
| 2023 | - | - | 13 | 13 | - | - | 100.0 |
| 2024 | - | - | 1 | 1 | - | - | 100.0 |
| 2025 | - | - | 11 | 11 | - | - | 100.0 |

자료: 대통령경호처

대통령경호처는 국회에 보고한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에서 납품지연 가능성이 있는 특수장비 및 외산제품은 기관 자체 예산심의회를 통해 업체의 납품능력을 평가하고 납품능력이 입증된 업체에 한해 신속한 계약을 추진하는 등 제도개선을 완료하였다고 설명하였으나, 실질적인 제도개선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보임.[5)]

대통령경호처는 과거 국회의 시정요구 등을 고려하여 경호 장비 납품 지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음.[6)]

4) 대통령경호처는 세입예산으로 위약금을 편성하지 않고 있으나, 2019년 이후 매년 위약금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고 있음.

5) 대통령경호처의 ‘요인 및 국빈경호활동(1231-301)’ 세부사업의 자산취득비(430-01) 14억원이 이월되었는데, 이는 방탄차량 제작사의 납기 지연 때문임.

6) 대통령경호처는 국산 장비 우선 도입 등을 통해 납품지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임.

〈세　출〉

## 2.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사업: 적극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인건비 예산 집행 필요

### 가. 개　요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사업은 대통령경호처 기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를 집행하는 것으로, 2025년 예산현액 65억 8,200만원 중 51억 2,900만원이 집행(집행률 77.9%)되고 14억 5,300만원이 불용되었음.[7)]

[2025년도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 6,582 | 6,582 | - | - | 6,582 | 5,129 | - | 1,453 | 6,754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첫째, 공무직 근로자 채용지연으로 편성된 상용임금 38억 2,900만원 중 9억 7,400만원이 불용(25.4%)되었으므로, 대통령경호처는 보다 적극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통해 효율적으로 공무직 인건비 예산이 집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공무직 인건비・운영비・직무수행경비・민간이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불용액은 공무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상용임금(110-03)과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등인 고용부담금(320-09)에서 발생되었음.

7) 일반회계-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1011-201)(운영관리본부)

[2025년도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사업 기능·비목별 결산]

(단위: 백만원)

| 세사업 명 | 2025년 | | | | | | | | | | 2026년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산 현액 | 집행액 [실집행액] | 전년도 이월액 제외 | | 다음 연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예산 현액 | 집행액 [실집행액] | | | |
| 인건비(110) | 3,879 | 3,879 | - | - | 3,879 | 2,899 | 3,879 | 2,899 | - | 980 | 3,978 |
| 상용임금(110-03) | 3,829 | 3,829 | - | - | 3,829 | 2,855 | 3,829 | 2,855 | - | 974 | 3,951 |
| 일용임금(110-04) | 50 | 50 | - | - | 50 | 44 | 50 | 44 | - | 6 | 27 |
| 운영비(210) | 1,240 | 1,240 | - | - | 1,240 | 1,011 | 1,240 | 1,011 | - | 229 | 1,240 |
| 특근매식비(210-05) | 70 | 70 | - | 5 | 75 | 39 | 75 | 39 | - | 36 | 70 |
| 일·숙직비(210-06) | 26 | 26 | - | 5 | 31 | 25 | 31 | 25 | - | 6 | 26 |
| 복리후생비(210-12) | 680 | 680 | - | - | 680 | 624 | 680 | 624 | - | 57 | 690 |
| 기타운영비(210-16) | 464 | 464 | - | △10 | 454 | 324 | 454 | 324 | - | 130 | 454 |
| 직무수행경비(250) | 764 | 764 | - | - | 764 | 703 | 764 | 703 | - | 61 | 762 |
| 직책수행경비(250-02) | 750 | 750 | - | - | 750 | 689 | 750 | 689 | - | 61 | 750 |
| 특정업무경비(250-03) | 14 | 14 | - | - | 14 | 14 | 14 | 14 | - | 0 | 12 |
| 민간이전(320) | 699 | 699 | - | - | 699 | 516 | 699 | 516 | - | 183 | 774 |
| 고용부담금(320-09) | 699 | 699 | - | - | 699 | 516 | 699 | 516 | - | 183 | 774 |
| 합계 | 6,582 | 6,582 | - | - | 6,582 | 5,129 | 6,582 | 5,129 | - | 1,453 | 6,754 |

자료: 대통령경호처

이에 대해 대통령경호처는 청와대 이전 등 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인력 산출 및 운영소요 예측이 어려워 적극적인 채용을 진행하기 어려웠으며,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특성상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도 엄격한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하기 때문에 최종합격자로 선정되는 인원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입장임.

다만 채용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소수가 선발되는 것은 채용절차 진행 시 예상하고 고려할 수 있었던 사정으로 보이고, 과거 청와대 근무인원 등을 기반으로 필요인력과 운용소요를 예측하여 적극적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했다면 계획했던 수준의 업무지원이 가능하고, 인건비의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임.

향후 대통령경호처는 보다 적극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통해 효율적으로 공무직 인건비(상용임금・고용부담금)가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공무직 퇴직 규모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대통령경호처는 안정적인 업무지원을 위해 공무직 근로자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대통령경호처의 공무직 퇴직자는 2022년 13명에서 2025년 19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신규채용 인원에 비해 퇴직자 수가 많아 지속적으로 현원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8)]

[2021~2025년 대통령경호처 공무직 정원·채용·퇴직현황]

(단위: 명)

| 연도 | 정원 | 신규채용 | 퇴직 |
|---|---|---|---|
| 2021년 | 98 | 19 | 13 |
| 2022년 | 98 | 19 | 13 |
| 2023년 | 108 | 11 | 16 |
| 2024년 | 108 | 12 | 18 |
| 2025년 | 108 | 12 | 19 |

자료: 대통령경호처

이에 대해 대통령경호처는 업무 특성상 단순 반복적인 직무로 이직이 용이하고, 평균연령이 47세 이상으로 구성인력이 상대적으로 고령인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공무직 현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경우 근무 중인 공무직 근로자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안정적인 업무지원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대통령경호처는 공무직 근로자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안정적으로 공무직 인력이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8) 대통령경호처는 정확한 공무직 현원 규모는 보안상 제출이 어렵다고 설명하였음.

【기　타】

## 3.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대통령경호처에 대해 시정요구 1건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제도개선 1건이었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 구분 | 변상 | 징계 | 시정 | 주의 | 제도개선 | (중복) | 계 |
|---|---|---|---|---|---|---|---|
| 결산 | - | - | - | - | 1 | - | 1 |
| 예비비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1 | - | 1 |

대통령경호처는 시정요구사항 1건에 대해 1건을 조치완료(조치율 100%)한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 구분 | 시정요구사항(a) | 조치완료(b) | 조치율(b/a) | 조치중(a-b) |
|---|---|---|---|---|
| 결산 | 1 | 1 | 100.0 | - |
| 예비비 | - | - | - | - |
| 합계 | 1 | 1 | 100.0 | - |

# 국 회

# Ⅰ. 개 관

## 1. 결산 개요

### 가. 총수입·총지출

2025회계연도 국회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8,100만원(1.8%)이 많은 45억 9,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억 3,600만원(25.6%)이 증가됨.[1)]

[2025회계연도 국회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4회계연도 | | | | 2025회계연도 | | | | 전년대비 (D-B) |
|---|---|---|---|---|---|---|---|---|---|
| | 예산액 | | 결산 (B) | 예산대비 (B-A) | 예산액 | | 결산 (D) | 예산대비 (D-C) | |
| | 본예산 | 추경(A) | | | 본예산 | 추경(C) | | | |
| 예 산 | 4,345 | 4,345 | 3,663 | △682 | 4,518 | 4,518 | 4,599 | 81 | 936 |
| 총수입 | 4,345 | 4,345 | 3,663 | △682 | 4,518 | 4,518 | 4,599 | 81 | 936 |

2025회계연도 국회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210억 3,000만원(△2.7%)이 적은 7,551억 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22억 6,800만원(5.9%)이 증가됨.

문의 : 02-6788-5675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5회계연도 국회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4회계연도 | | | | 2025회계연도 | | | | 전년대비 (D-B) |
|---|---|---|---|---|---|---|---|---|---|
| | 예산액 | | 결산 (B) | 예산대비 (B-A) | 예산액 | | 결산 (D) | 예산대비 (D-C) | |
| | 본예산 | 추경(A) | | | 본예산 | 추경(C) | | | |
| 예 산 | 767,653 | 767,653 | 712,837 | △54,816 | 776,135 | 776,135 | 755,105 | △21,030 | 42,268 |
| 총지출 | 767,653 | 767,653 | 712,837 | △54,816 | 776,135 | 776,135 | 755,105 | △21,030 | 42,268 |

## 나.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국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45억 1,800만원으로, 47억 8,4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45억 9,900만원이 수납(수납률 96.1%)되고, 5,000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1억 3,5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국회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세입예산액 | | 이체등 증감액 (B) | 세입 예산현액 (A+B) | 징수 결정액 | 수납액 | 미수납액 | 불납 결손액 |
|---|---|---|---|---|---|---|---|---|
| | 본예산 | 추경 (A) | | | | | | |
| 일반회계 | 4,518 | 4,518 | - | 4,518 | 4,784 | 4,599 | 50 | 135 |
| 합 계 | 4,518 | 4,518 | - | 4,518 | 4,784 | 4,599 | 50 | 135 |

주) 총계 기준

2025회계연도 국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8,023억 7,200만원으로, 7,551억 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4.1%)되고 180억 1,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92억 5,7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국회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세출예산액 | | 예산결정후증감액(B) | | | 세출 예산현액 (C=A+B)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 (A)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 | | |
| 일반회계 | 776,135 | 776,135 | 26,237 | 4,214<br>△4,214 | - | 802,372 | 755,105 | 18,010 | 29,257 |
| 합 계 | 776,135 | 776,135 | 26,237 | 4,214<br>△4,214 | - | 802,372 | 755,105 | 18,010 | 29,257 |

주) 총계 기준

## 다. 재무결산

2025회계연도 말 기준 국회 자산은 전년 대비 13억 8,500만원이 감소한 5조 9,774억 7,400만원으로, 이는 유무형자산 153억 6,100만원 감소에 주로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10억 7,300만원 감소한 465억 9,100만원으로 차입부채 5억원과 기타부채 5억 7,300만원 감소에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3억 1,200만원이 감소한 5조 9,308억 8,300만원임.

2025회계연도 국회의 프로그램순원가는 3,076억 8,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6억 7,7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8,158억 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0억 4,000만원 증가하였음.

[2025회계연도 국회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 | 2025 (A) | 2024 (B) | 증 감 | |
|---|---|---|---|---|---|---|
| | | | | | 금액 (A-B) | 증가율 (A-B)/B |
| 재정 상태표 | 자 산 | | 5,977,474 | 5,978,859 | △1,385 | △0.02 |
| | | 금융자산 | 1,953 | 2,326 | △373 | △16.0 |
| | | 유무형자산 | 5,957,279 | 5,972,640 | △15,361 | △0.3 |
| | | 기타자산 | 18,243 | 3,892 | 14,351 | 368.7 |
| | 부 채 | | 46,591 | 47,664 | △1,073 | △2.3 |
| | | 차입부채 | 46,351 | 46,851 | △500 | △1.1 |
| | | 충당부채 | 14 | 14 | - | - |
| | | 기타부채 | 226 | 799 | △573 | △71.7 |
| | 순자산 | | 5,930,883 | 5,931,195 | △312 | △0.0 |
| 재정 운영표 | 프로그램순원가 | | 307,688 | 300,011 | 7,677 | 2.6 |
| | 재정운영순원가 | | 815,840 | 790,800 | 25,040 | 3.2 |
| | 재정운영결과 | | 815,840 | 790,800 | 25,040 | 3.2 |

##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2025회계연도 국회 소관 재정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음.

##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국회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국회 운영,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국회 구현, 국회의 입법정책 역량 강화 등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총 92개의 세부사업에서 의정활동 지원 및 입법역량 강화를 수행하였음.

2025년도 국회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국회사무처는 국회 홍보 효과 제고를 위하여 국회 소속기관 유튜브 채널의 운영 방식 및 성과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회방송의 SNS동영상 제작 지원 내역사업에서 유튜브 콘텐츠 제작이 완료되기 이전에 잔금이 전액 지급되었는데, 이는 계약관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으로, 향후 이와 같은 예산집행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셋째, 국회도서관은 아르고스 서비스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사업 효과성 제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넷째, 의안비용추계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회예산정책처 내규에서 정한 회답기한 준수율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국회예산정책처는 비용추계 회답 업무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국회의원 또는 위원회의 입법조사분석 회답 서비스 이용률이 생성형 AI 도구의 발달 등으로 감소하였으므로, 국회입법조사처는 생성형 AI 도구와의 차별화 등 입법조사분석 회답 업무의 품질 제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여섯째, 국회미래연구원은 연말에 보고서를 집중 발간하는 관행을 시정하고, 연구성과가 국회의 의정활동에 적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보고서 발간 일정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

# Ⅱ. 사업별 검토

## 【총 괄】

## 1. 국회 유튜브 채널의 운영 성과 개선 필요

### 가. 개 요

국회사무처 및 국회 소속기관은 국회의 입법·예결산 심사 및 기관 업무를 대외적으로 홍보할 목적으로 기관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음.

유튜브 콘텐츠는 ① 별도 세부사업 또는 내역사업을 통해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제작하거나(국회유튜브), ② 다른 예산으로 제작한 영상을 게시 또는 실시간 중계하거나(국회방송), ③ 별도 예산 또는 계약 없이 내부직원을 활용하여 제작하는 방식(소속기관) 등으로 생산되고 있음.

2025년에는 결산 기준 4개 세부사업에서 유튜브 채널 운영을 위한 콘텐츠 제작비 총 15억 2,400만원이 집행되었음.

[2025년 국회 유튜브 채널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소속기관) | 결산 | | | |
|---|---|---|---|---|
| | 세부사업명(코드) | 2023 | 2024 | 2025 |
| 국회 유튜브 | 언론, 공보활동 및 국회박물관 운영 (2031-302) | 710 | 322 | 964 |
| 국회예산정책처 | - | - | - | - |
| 국회입법조사처 | - | - | - | - |
| 국회도서관 | - | - | - | - |
| 국회기록보존소 (현, 국회기록원) | 도서관운영관리(3031-300) | 50 | 30 | 30 |
| 국회미래연구원 NAFI | 국회미래연구원(1034-308) | 10 | 6 | - |
| NATV 국회방송 | 국회방송운영(2036-300) | 221 | 221 | 238 |
| | 입법활동지원(1031-300) | 884 | 951 | 292 |
| 계 | | 1,875 | 1,530 | 1,524 |

자료: 국회사무처

## 나. 검토의견

**국회사무처는 국회 홍보 효과 제고를 위하여 국회 소속기관 유튜브 채널의 운영 방식 및 성과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유튜브 채널의 운영 성과는 “구독자수”와 “조회수”를 통해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해당 지표로 국회 소속기관별 유튜브 운영 실적을 판단하면, 일부 기관의 운영 성과 또는 채널 노출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구체적으로 유튜브 조회수를 연으로 환산하여 보면, 국회예산정책처 4,400회, 국회입법조사처 2,800회, 국회미래연구원 5,500회, 국회도서관 27,900회, 국회기록원(종전 국회기록보존소) 41,500회 등으로, 일부 소속기관의 조회수 실적을 일 평균으로 환산하면 10여 회에 그치는 수준임.

[국회 유튜브 운영 현황]

| 구분(소속기관) | 개설일 (운영기간) | 운영 기간 | 구독자수 (명) | 조회수(천회) | |
|---|---|---|---|---|---|
| | | | | 누적 | 연환산 |
| 국회 유튜브 | 2014.10.24. | 11년 8개월 | 4.29만명 | 40,820 | 3,508.9 |
| 국회예산정책처 | 2012.5.30. | 14년 0개월 | 1,310명 | 62 | 4.4 |
| 국회입법조사처 | 2013.11.22. | 12년 7개월 | 960명 | 35 | 2.8 |
| 국회미래연구원 NAFI | 2020.10.16. | 5년 8개월 | 811명 | 31 | 5.5 |
| 국회도서관 | 2011.12.26. | 14년 6개월 | 3,310명 | 404 | 27.9 |
| 국회기록보존소 (현, 국회기록원) | 2015.07.23. | 10년 11개월 | 1,080명 | 452 | 41.5 |
| NATV 국회방송 | 2014.11.7. | 11년 7개월 | 30.9만명 | 116,365 | 10,033.9 |

주 1) 구독자와 누적 조회수는 2026년 6월 12일 기준
2) 누적 조회수는 가입일 이후 현재(2026년 6월 12일)까지의 총 조회수를 의미함
3) 연환산 조회수는 누적 조회수를 운영기간으로 나누어 1년 평균 조회수를 의미함
자료: 유튜브

이에 대하여 국회 소속기관은 낮은 유튜브 성과의 원인으로 예산 및 전문인력의 부재를 지적하고, 유튜브 전담인력 및 운영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나, 개별 기관마다 유튜브 인력과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 것은 제한된 예산과 인력이 분산되므로 오히려 운영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특히 국회 및 소속기관의 유튜브 채널 간 연계 및 홍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는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국회사무처 소관의 ‘언론·공보활동 및 국회박물관 운영(2031-302)’ 사업의 경우 국회사무처에서 소속기관을 홍보하기 위해 영상콘텐츠를 제

작하고 국회 유튜브 채널에는 게시하고 있으나, 소속기관 유튜브 홍보 등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임.

[2024년, 2025년 국회 소속기관 영상콘텐츠 제작 및 운영 사업]

(단위: 백만원)

| 게시일 | 채널명 | 제목 | 관련 계약 | 편수(편) | 제작비 |
|---|---|---|---|---|---|
| 24.04.11~<br>24.11.29 | 국회 유튜브 | 국회상쾌통쾌 | 2024년 국회 소속기관 영상콘텐츠 제작 및 운영 사업 | 39 | 234 |
| 24.04.16~ | 국회 유튜브 | 찾아가는 국회드라이브 | | 3 | 30 |
| 24.07.09~<br>24.08.28 | 국회 유튜브 | 이슈가IT슈 | | 3 | 4 |
| 25.05.09~<br>26.02.13 | 국회 유튜브 | 국회상쾌통쾌 | 2025년 국회 소속기관 영상콘텐츠 제작 및 운영 사업 | 38 | 205 |
| 25.07.01~<br>25.07.11 | 국회 유튜브 | 기획 숏폼 시리즈 | | 2 | 3 |
| 25.07.08~<br>25.10.31 | 국회 유튜브 | 소속기관 행사스케치 | | 2 | 6 |
| 25.11.03~<br>26.10.20 | 국회 유튜브 | AI로 만들어가는 국회 미래로(路) 영상 공모전 | | 7 | 25 |

자료: 국회사무처

[2025년 국회 소속기관 소개/홍보 영상콘텐츠 목록]

| 연번 | 게시일자 | 영상제목 | 홍보/소개 기관 |
|---|---|---|---|
| 1 | '25.05.09 | 프랑스민수와 함께 프랑스 어린이 얘기하기(?) | 국회도서관 |
| 2 | '25.05.14 | 프랑스민수도 필요한 잊혀질 권리 | 국회도서관 |
| 3 | '25.05.15 | 아동보호의 선두주자, 프랑스 | 국회도서관 |
| 4 | '25.05.29 | 아동 주연 유튜브에서 부모가 리액션을 강요한다면? | 국회도서관 |
| 5 | '25.06.10 | 아동 콘텐츠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해결법은? | 국회도서관 |
| 6 | '25.06.11 |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돈도 줍고 | 국회도서관 |
| 7 | '25.06.13 | 대한러시안이 바라본 푸틴의 덫 | 국회도서관 |
| 8 | '25.06.16 | 푸틴 스스로도 걸려버린 덫? | 국회도서관 |
| 9 | '25.06.20 | 노르트스트림 음모론, 이거 진짜예요? | 국회도서관 |
| 10 | '25.06.24 |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사람? | 국회도서관 |
| 11 | '25.06.24 | 프랑스민수는 ○○다?! | 국회도서관 |
| 12 | '25.07.25 | 내 정보 SKT 덕에 세계여행중임 | 입법조사처 |
| 13 | '25.08.04 | 해결책을 낆여오거라 | 입법조사처 |
| 14 | '25.08.04 | 좋은시간이요? 제가요? | 입법조사처 |
| 15 | '25.08.22 | 근처 마트에서 구매한 드론이었던 것 | 미래연구원 |
| 16 | '25.09.18 | 광복 80주년, 국회 광복절 전야제와 광복 비하인드 스토리 | 국회사무처 |
| 17 | '25.09.18 | 갈테야테야 입법박람회에 갈테야 | 국회사무처 |
| 18 | '25.09.25 | G(광일)PT야 광복 비하인드 설명해줘 | 국회사무처 |

| 연번 | 게시일자 | 영상제목 | 홍보/소개 기관 |
|---|---|---|---|
| 19 | '25.09.25 | 진짜 광복 당일이 조용했던 이유? | 국회사무처 |
| 20 | '25.09.25 | 사실 '이것' 이었던 '대한이 살았다' | 국회사무처 |
| 21 | '25.10.24 | 좋은 법, 나쁜 법, 국민의 법 | 국회사무처 |
| 22 | '25.11.04 | 무관심 속에서 만들어진 결정적인 법 | 입법조사처 |
| 23 | '25.11.04 | 어디에도 없는 K-민주주의 | 입법조사처 |
| 24 | '25.11.05 | 공화정 올리고 왕정 내려 | 입법조사처 |
| 25 | '25.11.13 | 우리 헌법이 달라졌어요 | 입법조사처 |
| 26 | '25.11.25 | 과태료를 안 낸다고요? | 국회도서관 |
| 27 | '25.11.25 | 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입법조사처 |
| 28 | '25.11.25 | 겉촉속바 러시아 헌법 | 입법조사처 |
| 29 | '25.11.27 | 헌법, 안됀는것은안돼는것 | 국회도서관 |
| 30 | '25.12.03 | 믹타가 뭔데요 | 국회사무처 |
| 31 | '25.12.04 | 지방소멸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이유 | 국회사무처 |
| 32 | '25.12.04 | 서울사람이.. 흠흠.. | 국회사무처 |
| 33 | '25.12.15 | ♟♟해외취업♟♟고수익※알★바모집$$♜한달￥2천☜☜보장@@@ | 국회사무처 |
| 34 | '25.12.18 | 이독실의 복수를 하는 이독실 | 국회사무처 |
| 35 | '25.12.18 | 이걸 왜 속아? 하는데... | 국회사무처 |
| 36 | '25.12.19 | 여행금지국가는 제발 가지마세요 | 국회사무처 |
| 37 | '26.02.06 | 정년은 계속되는 거야 | 미래연구원 |
| 38 | '26.02.13 | 오늘 자기 전에 실업급여 생각 많이 날 거야 | 예산정책처 |

자료: 국회사무처

기관 정체성을 감안하여 독립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필요성도 인정되나, 유튜브 운영의 주된 목적이 대국민 홍보 효과 제고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기관별 유튜브 예산과 전담인력을 확대하는 방식보다는 소속기관까지 포함하여 국회사무처 차원에서 통합적인 콘텐츠 제작 계획 및 홍보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또한 조회수·구독자수·시청 지속시간 등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대국민 홍보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2)]

2) 이에 대하여 국회사무처는 소속기관의 전문성을 적극 존중하는 한편, 채널 간 연계를 지속 확대해 국회 차원의 홍보 효과를 제고해 나가겠다는 의견임.

【일반회계】

〈세　출〉

## 2. SNS 동영상 제작 지원 사업: 계약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국회방송 유튜브 콘텐츠 제작사업의 잔금 집행 부적정

### 가. 개　요

**‘SNS동영상 제작 지원’** 사업은 국회 홍보를 목적으로 국회방송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1억 8,800만원 중 10억 4,000만원이 집행(집행률 87.5%)되고, 1억 4,800만원이 불용되었음.[3)]

[2025년도 SNS동영상 제작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입법활동지원 | 49,279 | 49,279 | 402 | △1,784 | 47,897 | 44,439 | 599 | 2,858 | 54,960 |
| SNS동영상 제작 지원 | 1,500 | 1,500 | 188 | △500 | 1,188 | 1,040 | - | 148 | 1,000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국회방송의 SNS동영상 제작 지원 내역사업에서 유튜브 콘텐츠 제작이 완료되기 이전에 잔금이 전액 지급되었는데, 이는 계약관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으로 향후 이와 같은 예산집행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국회사무처는 SNS동영상 제작 지원 내역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국회방송(NATV)에 게시할 목적으로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였음.

3) 일반회계-입법활동지원(1031-300)(운영지원과)

이 중 “국회의원 집무실을 소개합니다 시즌2” 과제는 계약기간을 2025년 5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계약금액 2억 9,000만원 규모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사업을 통해 총 30편의 유튜브 콘텐츠가 촬영·제작·게시되었음.

[일반용역비(국회의원 집무실을 소개합니다 시즌2)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용역명 | 계약상대방 | 계약일 | 계약기간 | 계약 금액 | 집행금액 | |
|---|---|---|---|---|---|---|
| | | | | | 날짜 | 금액 |
| 국회방송 유튜브 특화 콘텐츠 외주제작 (국집소 시즌2) | ㈜소소전파사 | ’25.5.14. | ’25.5.14. ~ ’25.12.31 | 290 | **’25.12.16.** | 290 |

자료: 국회사무처

일반적으로 발주기관은 계약상 목적물(동영상)을 납품받은 후 계약조건에 따라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검수 절차를 거쳐 계약을 종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여야 함.[4)]

그런데 국회사무처는 계약기간 종료 이전인 2025년 12월 16일에 업체에게 잔금 2억 9,000만원 전액을 지급하여 대금 지급을 완료하였고, 대금 지급 이후인 12월 23일에도 전체 제작분 30편 중 3편(10%)에 대한 촬영이 이루어졌으며, 해당 영상물은 2026년 1월 또는 2월에 유튜브에 게시되었음.

아직 제작이 완료되지 않은 3편에 대한 대금까지 계약 완료 이전에 전액 지급한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계약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검사)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대가의 지급)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구매, 용역,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경우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代價)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잔금 집행 이후 제작·게시된 동영상 목록]

| 에피소드 | 유튜브 콘텐츠 제목 | 촬영일 | 게시일 |
|---|---|---|---|
| 24 | ‘호위무사’에서 ‘고릴라 화백’이 된 극내향인 유영하 의원 탈탈 털어보았습니다! | 2025.12.23. | 2026.1.8. |
| 25 | 국회 본회의장을 뒤집어 놓았던 ‘앗! 투표 실수’ 왜 그러셨어 염태영?! | 2025.12.23. | 2026.1.15. |
| 28 | 부드러운 카리스마 ‘보좌진 존중좌’ 한지아 의원의 ‘아프리카 가봉 라이프’ | 2025.12.23. | 2026.2.5. |

자료: 국회사무처 자료를 재작성

이에 대하여 국회사무처는 연말 국회 일정 및 출연 예정 국회의원의 일정 조정 등으로 촬영 일정이 반복적으로 연기되었고, 이에 따라 최종 촬영 및 검수 일정도 순연되었다는 입장임.

그러나 해당 사유와 같이 용역 일정이 지연되었다면 계약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국가재정법」에 따라 잔금 예산에 대한 이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후 목적물을 인계받은 이후에 집행하는 것이 계약기준과 예산집행에 부합하는 것임.

국회사무처는 향후 계약 및 대금 집행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절차를 보다 엄격히 준수할 필요가 있음.

## 3. 국회온라인미디어 운영 사업: 회계연도 독립 원칙 및 지출원인 행위 준칙을 고려한 용역계약 예산 집행 필요

### 가. 개 요

**‘국회온라인미디어 운영’** 사업은 국회 온라인 뉴스 및 공식 SNS 운영을 통해 국회의 활동을 국민에게 알리고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0억 8,400만원 중 9억 9,700만원이 집행(집행률 92.0%)되고, 8,800만원이 불용되었음.[5)]

[2025년도 국회온라인미디어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언론·공보활동 및 국회박물관 운영 | 3,635 | 3,635 | 462 | - | 4,097 | 3,791 | - | 306 | 3,946 |
| 국회온라인미디어 운영 | 762 | 762 | 322 | - | 1,084 | 997 | - | 88 | 764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국회사무처는 국회온라인미디어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및 지출원인행위의 준칙을 고려하여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음.**

국회사무처는 2024년 1월과 2월 국회온라인미디어 운영 내역사업에서 SNS 콘텐츠(유튜브) 제작을 위하여 2건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금 6억 4,200만원의 50%에 해당하는 3억 2,100만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음.

이후 콘텐츠 추가 제작 등을 사유로 계약기간을 당초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월 31일로 1개월 연장하면서 잔금 3억 2,100만원을 2025년 이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이월 처리하였음.

---

5) 일반회계-언론·공보활동 및 국회박물관 운영(2031-302)(문화소통기획관실)

그리고 2024년말 계약기간이 연장되면서 콘텐츠 물량이 추가됨에 따라 최종 사업비가 당초 이월금액을 초과하게 되었으며, 국회사무처는 연장계약에 따라 발생한 추가 비용 총 5,900만원(‘2024년 국회 뉴미디어 의정홍보 활성화 사업’ 3,200만원, ‘2024년 국회 소속기관 영상콘텐츠 제작 및 운영 사업’ 2,800만원)을 2025년 예산으로 집행하였음.

[국회온라인미디어 운영 내역사업의 일반용역비 집행 경과]

(단위: 백만원)

| 계약명 | 입찰금액 | 계약일 | 당초 계약 | | 수정 계약 | | 집행금액 | | 집행된 예산의 회계연도 | |
|---|---|---|---|---|---|---|---|---|---|---|
| | | | 기간 | 금액 | 기간 | 금액 | 날짜 | 금액 | 2024년 | 2025년 |
| 2024년 국회 뉴미디어 의정홍보 활성화 사업 | 356 | 24.02.15 | 24.02.15~ 24.12.31 | 338 | 24.02.15~ **25.01.31** | 370 | 24.06.07 | 169 | 169 | - |
| | | | | | | | 25.02.19 | 201 (169+32) | 169 (이월금) | **32** |
| 2024년 국회 소속기관 영상콘텐츠 제작 및 운영 사업 | 350 | 24.01.22 | 24.01.22~ 24.12.31 | 304 | 24.01.22~ **25.01.31** | 332 | 24.02.26 | 152 | 152 | - |
| | | | | | | | 25.02.18 | 180 (152+28) | 152 (이월금) | **28** |
| 계 | 706 | | | 642 | | 702 | 2024년 | 321 | 321 | - |
| | | | | | | | 2025년 | 381 | 321 | **59** |

자료: 국회사무처 자료를 재작성

「국가재정법」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6]에 따르면 2024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한 대금은 2024년 예산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으며, 「국고금 관리법」 제20조의 지출원인행위의 준칙[7]에 따라 2024년 당초에 배정된 예산액의 범위에서 용역 과제 대금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2025년 국회온라인미디어 운영 내역사업에서 일반용역비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2025년 예산현액 | 집행 | | | 불용 |
|---|---|---|---|---|
| | 계 | 2025년 용역계약 비용 집행 | 2024년 용역계약 비용 집행 | |
| 706 | 641 | 582 | **59** | 65 |

자료: 국회사무처 자료를 재작성

6)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7) 「국고금 관리법」
제20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이나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국회사무처는 2024년말 국회 관련 현안이 지속됨에 따라 2025년 1월까지 국회 SNS를 통한 신속하고 지속적인 대국민 안내 및 홍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계약 변경이 이루어졌으며, 연말에 입찰절차를 거쳐 차년도 2월 중순부터 신규 사업 운영이 시작되는 국회 뉴미디어 운영사업의 계약 구조상 2025년 1월 운영 공백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의견임.

국회 SNS의 지속적인 운영 필요성은 있으나, 필요한 예산은 재정법령에 따라 이월처리하여 집행하고, 배정된 예산 범위에서 수정 계약을 체결하는 등 회계연도 독립원칙과 지출원인행위 준칙을 고려하여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4. AI의정분석서비스 아르고스 구축·운영 사업: 국회도서관 아르고스 서비스의 만족도 미흡 문제

## 가. 개 요

**‘AI의정분석서비스 아르고스 구축·운영’** 사업은 시사분석을 통해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기관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국회도서관에서 AI의정분석서비스인 아르고스(Argos)[8]를 구축·운영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7억 4,500만원 중 7억 2,1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8%)되고, 2,400만원이 불용되었음.[9]

[2025년도 AI의정분석서비스 아르고스 구축·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전자도서관 운영 | 28,996 | 28,996 | 3,400 | - | 32,396 | 31,613 | 485 | 298 | 26,876 |
| AI의정분석서비스 아르고스 구축·운영 | 745 | 745 | - | - | 745 | 721 | - | 24 | 785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국회도서관에서 제공하는 “AI시사분석 아르고스” 서비스는 뉴스 및 소셜 데이터를 분석하고 국회도서관의 자료 등 국회 내·외부 자료와 융합하여 사회적 현안을 시의성 있게 제공하는 시스템임.

구체적으로 법률·정책 이슈키워드 분석, 시간대별 최신 뉴스 정보, 국회의원별 분석정보(언급량)와 이슈 리포트(ARGOS 이슈키워드/활용사례/카드뉴스) 등을 제공하고 있음.

8) 2025년 7월 AI**의정**분석서비스 아르고스 → AI**시사**분석 아르고스로 명칭 변경

9) 일반회계-전자도서관 운영(3035-500)(국회도서관)

[아르고스 시스템 내용]

| 대분류 | 중분류 | 내용 |
|---|---|---|
| 이슈 분석 | 이슈 키워드 | 핵심이슈 및 1일, 7일, 30일 동안 이슈의 변화 추이 파악 |
| | 법률과 이슈 | 법률을 중심으로 관련 이슈, 제·개정 정보, 회의록, 의안 등을 히스토리 형태로 제공 |
| | 정책과 이슈 | 국정과제와 관련한 이슈키워드, 연관어, 소장자료 등 제공 |
| | 이시각 브리핑 | 국회/정당, 경제 등 분야별 TOP 뉴스를 매 시간 브리핑 형태로 제공 |
| | 이슈 리포트 | 인포그래픽을 활용한 카드뉴스 및 심층적인 분석 보고서 |
| 국회 분석 | 국회의원별 분석 | 국회의원별 관련 뉴스 및 소셜 반응 등을 분석 |
| | 상임위·정당별 분석 | 국회 상임위원회와 정당별 언급량, 관련 뉴스 |
| 내가 하는 빅데이터 분석 | - | 관심있는 이슈에 대한 분석 데이터 탐색 |
| AI Lab 이슈 서치 | - | 최신 뉴스, 법률, 의정자료를 검색한 후 검색 결과와 요약 정보를 제공하는 국회 내부 직원 전용 시범서비스 |

자료: 아르고스 이용자 가이드(https://argos.nanet.go.kr/main/help/userGuide.do) 내용을 재작성

## 나. 검토의견

**국회도서관은 아르고스 서비스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사업 효과성 제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최근 5년간 아르고스 접속자 수는 2021년 2만 7,201건에서 2025년 80만 8,594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최근 5년간 아르고스 접속 건수]

(단위: 건)

| 연도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접속 건수 | 27,201 | 53,263 | 168,647 | 306,273 | 808,594 |

자료: 국회도서관

그러나 서비스 이용의 양적 성장과 달리 이용자 체감 만족도는 이용 증가에 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국회도서관이 매년 실시하는 “의회 및 법률정보서비스 이용 서비스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아르고스의 만족도 점수는 전체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타 서비스의 만족도 개선 폭이 확대됨에 따라 전년 대비 그 격차도 커진 상황임.

구체적으로 2025년 국회도서관 서비스 종합만족도는 81.7점인 반면, 아르고스 만족도는 71.6점으로 평균 대비 10.1점이 낮게 나타났음. 이는 2024년의 격차인 5.8점(종합만족도 77.3점 대비 아르고스 만족도 71.5점)보다 확대된 수치임.

[의회 및 법률정보서비스 이용 서비스만족도 결과]

(단위: 점)

| 항목 | 2023년 | 2024년(A) | 2025년(B) | (B-A) |
|---|---|---|---|---|
| **종합만족도(A)** | **70.1** | **77.3** | **81.7** | **4.4** |
| **의회 및 법률정보 회답서비스** | - | 78.1 | 82.5 | 4.4 |
| - 의회정보조사회답 | 73.0 | 76.6 | 82.4 | 5.8 |
| - 법률정보조사회답 | 77.1 | 77.4 | 82.5 | 5.1 |
| - 외국정책/법률번역회답 | - | 80.2 | 82.6 | 2.4 |
| **국회도서관 발간자료** | - | 80.6 | 83.6 | 3 |
| - 팩트북 | 76.2 | 79.2 | 83.9 | 4.7 |
| - Data+종합 | - | 81.0 | 84.9 | 3.9 |
| - 최신외국정책정보 | 77.4 | 82.2 | 84.0 | 1.8 |
| - 금주의 보고서 | - | - | 84.5 | - |
| - 최신외국입법정보 | 77.6 | 81.0 | 82.7 | 1.7 |
| - Data&Law | 77.5 | 81.2 | 84.2 | 3 |
| - World&Law | 76.9 | 79.0 | 80.8 | 1.8 |
| **국회도서관 정보서비스** | - | 73.2 | 79.1 | 5.9 |
| - 국가전략정보포털 | 73.6 | 71.5 | 81.6 | 10.1 |
| - 국회의원정책자료 | 72.1 | 73.8 | 80.4 | 6.6 |
| - 국회/국회의원보도자료DB | - | 74.2 | 78.9 | 4.7 |
| - 의회법률정보포털 | - | 74.8 | 82.9 | 8.1 |
| **- AI의정분석서비스아르고스 (B)** | **66.0** | **71.5** | **71.6** | **0.1** |
| **종합만족도 - AI의정분석서비스아르고스(A-B)** | **4.1** | **5.8** | **10.1** | **-** |

자료: 국회도서관, 「의회 및 법률정보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재작성

세부 만족도 지표에서도 이용률 증가와 달리 종합만족도는 사실상 정체(+0.1점)되어 있으며, 적시성(△0.1점)과 편의성(△0.6점)은 오히려 전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는 단순한 이용 확대라는 성과와 별개로 실제 이용자의 체감 효용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함.

[2024년, 2025년 의회 및 법률정보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정보서비스 세부)]

| 구분 | | 이용률 (%) | 종합만족도 (점) | 서비스 이용 만족도 | | |
|---|---|---|---|---|---|---|
| | | | | 적시성 (점) | 정보내용 (질)(점) | 편의성 (점) |
| 국회도서관 의회법률정보포털 | 2025년(A) | 62.0 | 82.9 | 83.1 | 83.1 | 82.5 |
| | 2024년(B) | 44.8 | 74.8 | 74.6 | 75.4 | 74.4 |
| | GAP(A-B) | +17.2 | +8.1 | +8.5 | +7.7 | +8.1 |
|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 2025년(A) | 37.6 | 81.6 | 81.6 | 82.1 | 81.3 |
| | 2024년(B) | 32.7 | 71.5 | 71.6 | 72.2 | 70.6 |
| | GAP(A-B) | +4.9 | +10.1 | +10.0 | +9.9 | +10.7 |
| **AI 시사분석 아르고스** | 2025년(A) | 43.0 | 71.6 | 72.6 | 71.2 | 71.0 |
| | 2024년(B) | 37.0 | 71.5 | 72.7 | 70.2 | 71.6 |
| | GAP(A-B) | +6.0 | **+0.1** | **-0.1** | +1.0 | **-0.6** |
| 국회의원 정책자료 | 2025년(A) | 70.0 | 80.4 | 79.9 | 80.6 | 80.7 |
| | 2024년(B) | 62.0 | 73.8 | 72.8 | 74.6 | 74.0 |
| | GAP(A-B) | +8.0 | +6.6 | +7.1 | +6.0 | +6.7 |
|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DB | 2025년(A) | 39.2 | 78.9 | 78.6 | 78.6 | 79.4 |
| | 2024년(B) | 33.0 | 74.2 | 74.7 | 73.7 | 74.2 |
| | GAP(A-B) | +6.2 | +4.7 | +3.9 | +4.9 | +5.2 |

자료: 국회도서관, 「의회 및 법률정보서비스 이용 서비스만족도 조사」를 재작성

이에 대하여 국회도서관은 아르고스 서비스 고도화 사업을 통해 2026년 이후 새 정부 국정과제 이슈 분석 서비스, 국회의원별 맞춤형 이슈 분석 서비스 등을 도입하여 적시성을 개선하거나, 모바일 접속 편의성 강화를 위한 “반응형 웹 전면 개편” 및 “AI Lab Argos CHAT 고도화” 등을 추진하여 편익성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임. 또한 아르고스 분석 데이터를 국회빅데이터플랫폼의 “정책·현안 핵심이슈 발굴 및 의제 설정 기능 개발”과 연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향후 국회도서관은 국회빅데이터플랫폼과의 기능 연계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단순 기능 확대 중심의 고도화보다는 국회빅데이터플랫폼과의 연계 기반 마련과 서비스 차별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스템의 운영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5. 의안비용추계 및 조세분석 사업: 의안비용추계 업무의 적시성 제고 필요

## 가. 개 요

**‘의안비용추계 및 조세분석’** 사업은 재정수반법률안 등에 대한 소요비용 추계, 재정지출 및 수입 · 재정수지 · 국가채무 추계 및 전망, 조세정책 · 제도 및 세무행정의 분석 · 연구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7억 7,000만원 중 6억 6,500만원이 집행(집행률 86.4%)되고 1,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9,100만원이 불용되었음.[10]

[2025년도 의안비용추계 및 조세분석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예산정책처 운영관리 | 3,287 | 3,287 | 263 | 38<br>△38 | 3,550 | 3,220 | 33 | 297 | 3,419 |
| 의안비용추계 및 조세분석 | 657 | 657 | 84 | 29<br>△1 | 770 | 665 | 14 | 91 | 777 |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의안비용추계” 업무는「국회법」제79조의2[11]에 따라 의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비용을 사전에 추계함으로써 재정소요를 사전에 점검하고 국가재정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예산상·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이나 조세특례를 신규 도입하는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10) 일반회계-예산정책처운영관리(4031-300)(기획관리관)

11)「국회법」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추계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한 경우 국회예산정책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5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 전에 해당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의장과 비용추계를 요구한 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이 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추계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나. 검토의견

**의안비용추계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회예산정책처 내규에서 정한 회답 기한 준수율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국회예산정책처는 비용추계 회답 업무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안 비용추계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을 채택한 바 있음.

그러나 2025년에 비용추계 회답 소요일수가 증가하고 회답기한 준수율이 하락하는 등 비용추계 회답의 적시성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제도개선 조치의 실효성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유형 | 조치결과 | 조치상황 |
|---|---|---|---|---|
| (22) 의안 비용추계의 적시성 확보 | ㅇ [지적사항] 2023년도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의 회답기간 준수율이 전년대비 감소하고 평균 회답소요일수도 전년대비 늘어나, 전반적으로 회답의 적시성이 떨어지고 있음.<br>의안 비용추계가 지연될 경우 의안 심사에 적절하게 활용되기 어려워 비용추계의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음.<br><br>ㅇ [시정요구사항]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안 비용추계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제도개선 | ㅇ 매년 의안비용추계 요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회답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음.<br>- 2024년 의안비용추계 접수 건수는 5,966건(12.19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준임에도, 회답기한 준수율은 65.4%로 전년(62.7%) 대비 2.7%p 개선되었음.<br>* 비용추계 접수: (2023) 5,033건 → (2024) 5,966건 (18.5% 증가)<br>* 회답기한주) 준수율: (2023) 62.7% → (2024) 65.4% (+2.7%p)<br>주) 회답기한: 추계서·미첨부사유서 30일, 미대상사유서 10일 (공휴일·토요일 포함)<br><br>ㅇ 의안비용추계 업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회답의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비용추계 사례를 분석하고, 비용추계 기초자료 및 단가정보 등 필요한 DB를 지속 구축·현행화하고 있음.<br><br>ㅇ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 조치완료 |

구체적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연도별 의안비용추계 회답 실적을 보면, 2025년은 7,354건으로, 2024년(6,301건) 대비 16.7% 증가하였으며 2021년 4,910건의 1.5배 수준

임. 평균 회답기간은 2025년 29.9일로 2024년(23.7일)보다 6.2일 지연됨.

이에 따라 「의안비용추계 요구사항의 업무처리에 관한 내규」(국회예산정책처 내규)에서 정한 회답기한(30일)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한 실적(회답기한 준수율[12])은 2021년 73%에서 2025년 54.2%로 하락하였음.

2025년 평균 회답기간 실적 29.9일은 「의안비용추계 요구사항의 업무처리에 관한 내규」 제6조에 따른 30일 기한에 근접하는 수치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비용추계 결과가 적시에 활용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5년간 의안비용추계 회답건수 및 회답기간]

(단위: 건, 일, %)

|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접수 수(건) | 4,910 | 4,009 | 5,033 | 6,301 | 7,354 |
| 회답 수(건) | 4,910 | 4,009 | 5,033 | 6,301 | 7,354 |
| (전년 대비) | 5.7 | △18.4 | 25.5 | 25.1 | 16.7 |
| 회답기간(일) | 11.4 | 13.9 | 17.8 | **23.7** | **29.9** |
| (전년 대비) | △1.7 | 21.9 | 28.1 | 33.1 | 26.2 |
| 기한 준수율(%) | 73 | 70.7 | 62.6 | **62.2** | **54.2** |

주) 「의안비용추계 요구사항의 업무처리에 관한 내규」 개정으로 2023.7.4.부터 공휴일 및 토요일이 회답기간에 포함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재작성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비용추계 지침서 발간(2024.9.), 분석관 비용추계 사례 발표 정례화, 비용추계 기초자료 및 단가정보 DB 구축·현행화 등 비용추계 업무의 효율성·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법안 비용추계 업무를 담당하는 추계세제분석실의 분석관(보) 정원이 2017년 이후 29명으로 증원 없이 유지되고 있어 업무 부담이 상당한 상황이므로 비용추계 전담 인력 확충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음.[13]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안비용추계 회답기한을 준수하여 비용추계 업무의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비용추계 업무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12) 「의안비용추계 요구사항의 업무처리에 관한 내규」(국회예산정책처 내규)
제6조(회답방법 등) ③ 담당 부서는 30일 이내에 회답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요구받은 의안이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회답기한은 10일로 한다. <개정 2023.7.6.>

13)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분석관 1인당 비용추계 회답건수가 2023년 173.6건, 2024년 217.3건, 2025년에 253.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비용추계 담당 분석관은 비용추계 업무 외에도 정기 · 수시보고서 및 조사분석 회답 등의 업무를 함께 수행 중이라고 설명함.

# 6. 입법 및 정책 조사분석 서비스 운영경비 사업: 입법조사분석 회답 서비스의 생성형 AI 도구와의 차별화 방안 마련 필요

## 가. 개 요

**‘입법 및 정책 조사분석 서비스 운영경비’** 사업은 국회의원 또는 위원회의 입법 및 정책 조사요구에 대한 회답을 제공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4억 6,300만원 중 4억 4,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5.9%)되고, 1,800만원이 불용되었음.[14]

[2025년도 입법 및 정책 조사분석 서비스 운영경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입법조사처 운영관리 | 2,441 | 2,441 | - | 109<br>△109 | 2,441 | 2,277 | - | 164 | 2,787 |
| 입법 및 정책 조사분석 서비스 운영경비 | 477 | 477 | - | 10<br>△25 | 463 | 444 | - | 18 | 858 |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국회의원 또는 위원회의 입법조사분석 회답 서비스 이용률이 생성형 AI 도구의 발달 등으로 감소하였으므로, 국회입법조사처는 생성형 AI 도구와의 차별화 등 입법조사분석 회답 업무의 품질 제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입법조사분석 회답 업무는 국회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구하는 입법 및 정책 관련 사항에 대해 조사·분석하여 회답함으로써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회입법조사처법」 제3조제1호[15]에서 규정하는 기관의 기본 업무임.

---

14) 일반회계-입법조사처 운영관리(5031-300)(기획관리관)

15) 「국회입법조사처법」
제3조(직무) 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국회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 · 분석 및 회답
2.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 · 연구 및 정보의 제공
3. 입법 및 정책 관련 자료의 수집 · 관리 및 보급

2025년 결산 기준 입법조사분석 요구 건수는 5,986건이고, 이 중 5,650건을 회답 처리하였음. 이는 전년도 회답 건수(4,336건) 대비 1,314건(30%) 증가한 수치이고, 회답 기간 또한 전년도(16.9일) 대비 0.8일 늘어난 17.7일로 조사됨.

[5년간 입법조사분석 회답 건수, 회답기간]

(단위: 건, 일)

|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요구 수(건) | 5,625 | 5,016 | 4,741 | 4,589 | 5,986 |
| 회답 수(건) | 5,763 | 5,071 | 4,822 | 4,336 | 5,650 |
| 회답기간(일) | 22.9 | 15.7 | 16.9 | 16.9 | 17.7 |

주 1) 요구수는 접수일 기준
2) 회답수와 회답기간은 처리일 기준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를 재작성

그런데 2025년 입법조사분석 서비스의 회답 실적(건수)는 전년도 대비 늘어난 반면, 이용률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국회입법조사처 의정활동지원 만족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서비스 이용빈도 설문에서 2025년에는 68.2%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답하였는데 이는 전년도(73.9%)보다 5.7%p 하락한 수치임. 이는 2024년 대비 서비스 이용률은 감소하였으나, 서비스 이용자의 이용빈도는 증가함에 따라 전체 회답 실적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됨.

[입법조사분석 회답 서비스 이용률 및 이용빈도]

(단위: %)

|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이용률(보좌진 대상) | 94.6 | 75.3 | 77.1 | 77.5 | **73.9** | **68.2** |

| 연도 | 없음 | 있음 | | | | |
|---|---|---|---|---|---|---|
| | | 계 | 1~5회 | 6~10회 | 11~20회 | 21회 이상 |
| 2024년 | 26.1 | 73.9 | 49.2 | 16.2 | 7.0 | 1.6 |
| 2025년 | 31.8 | 68.2 | 43.2 | 17.4 | 4.9 | 2.7 |

자료: 2024년, 2025년「국회입법조사처 의정활동지원 만족도 조사 보고서」내용을 재작성

4. 국회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정보의 제공
5. 외국의 입법동향의 분석 및 정보의 제공

특히 국회입법조사처는 2025년 만족도 조사 설문지 항목에서 입법조사분석 회답 서비스 이용률과 AI 도구(Chat GPT 등)와의 관련성을 추가하였는데, 설문 결과를 보면 AI 도구의 발달이 입법조사분석 회답 서비스 이용률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임.

[의정활동지원 만족도 조사 설문지(보좌진용)(일부)]

| 연도 | 설문내용 |
|---|---|
| 2024년 | **문3. 귀하께서는 제22대 국회 개원 후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회답 서비스"를 몇 회 정도 이용하셨습니까?**<br>① 없음 ▶ 문3-1로 이동 ② 1~5회 ③ 6~10회 ④ 11~20회 ▶ 문4로 이동 ⑤ 21회 이상<br>**문3-1. 회답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신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응답 후 'B.발간물'로 이동)**<br>① 회답서비스의 존재를 모름 ② 회답서비스의 신청 및 활용방법이 불편함<br>③ 회답서비스의 적시성이 낮음 ④ 회답서비스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거나 전문성이 낮음<br>⑤ 종래 회답받은 자료를 활용 ⑥ 외부 DB로 손쉽게 직접 조사·검색 가능<br>⑦ 기타 ( ) |
| 2025년 | **문3. 귀하께서는 최근 1년간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회답 서비스"를 몇 회 정도 요구하셨습니까?**<br>① 없음 ▶ 문3-1로 이동 ② 1~5회 ③ 6~10회 ④ 11~20회 ▶ 문4로 이동 ⑤ 21회 이상<br>**문3-1. 회답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신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응답 후 'B.발간물'로 이동)**<br>① 회답서비스의 존재를 모름 ② 회답서비스의 신청 및 활용방법이 불편함<br>③ 회답서비스의 적시성이 낮음 ④ 회답서비스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거나 전문성이 낮음<br>⑤ 종래 회답받은 자료를 활용 ⑥ 외부 DB로 손쉽게 직접 조사·검색 가능<br>⑦ ChatGPT 등 AI 도구 활용 ⑧ 기타 ( )<br>**문4. 귀 의원실에서 조사회답을 요청할 필요성(상황)은 과거에 비해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br>① 크게 줄었다 ② 다소 줄었다 ③ 비슷하다 ④ 다소 늘었다 ⑤ 매우 늘었다<br>**문5. 최근 귀 의원실에서 ChatGPT 등 AI 도구를 활용함에 따라 조사처에 조사회답을 요청할 필요성이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br>① 크게 줄었다 ② 다소 줄었다 ▶ 문5-1로 이동 ③ 비슷하다 ④ 다소 늘었다 ▶ 문6으로 이동 ⑤ 매우 늘었다<br>**문5-1. ChatGPT 등 AI 도구의 활용이 늘어나면서 조사회답요구를 하지 않거나 감소한 것이 있다면 어떤 유형입니까? (복수응답 가능)**<br>① 통계·현황 등 단순 사실 확인 ② 법령 요약 및 해석 ③ 법령 쟁점 분석 및 대안 입법 검토<br>④ 해외·유사 입법사례 ⑤ 정부 정책·제도 분석 ⑥ 보도자료나 언론정보 확인<br>⑦ 데이터 요구·분석 ⑧ 기타( ) |

자료: 2024년, 2025년「국회입법조사처 의정활동지원 만족도 조사 보고서」내용을 재작성

구체적으로 해당 설문조사 결과 2025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31.8%가 이용하지 않는 이유(문3-1)로 "ChatGPT 등 AI 도구 활용"을 18.3%로 제시하여 "회답서비스 존재를 모름"(44.0%) 다음으로 높게 나왔으며, AI 도구 활용에 따른 조사회답 요구 필요성(문4)도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다고 답한 비율이 높게 조사되었음.

AI 도구 활용으로 조사분석 회답 요구가 줄어든 유형(문5)으로는 "통계·현황 등 단순 사실 확인", "법령 요약 및 해석", "보도자료나 언론정보의 확인" 순으로 나타나, 사실관계 조사 또는 확인 유형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2024년 및 2025년 입법조사분석 회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 연도 | 미이용률 (전체 대비) | 이용하지 않는 이유 | | | | | | | |
|---|---|---|---|---|---|---|---|---|---|
| | | 회답서비스의 존재를 모름 | 외부 DB로 손쉽게 직접 조사·검색 가능 | 회답서비스의 적시성이 낮음 | 회답서비스의 신청 및 활용방법이 불편함 | 종래 회답받은 자료를 활용 | 회답서비스 내용이 충분하지 않거나 전문성이 낮음 | 기타 | ChatGPT 등 AI 도구 활용 |
| 2024년 | 26.1 | 55.4 | 13.4 | 8.0 | 7.1 | 7.1 | 2.7 | - | - |
| 2025년 | 31.8 | 44.0 | 14.7 | 11.0 | 11.0 | 7.3 | - | 2.8 | **18.3** |

주 1) 보좌진 대상 조사 결과
2) 조사대상자 수는 2024년 미이용률은 445명, 미이용 사유는 112명이고, 2025년 미이용률은 368명, 미이용 사유는 109명임

자료: 2024년, 2025년「국회입법조사처 의정활동지원 만족도 조사 보고서」내용을 재작성

[AI 도구 활용에 따른 입법조사분석 회답 요구 필요성]

(단위: %)

| 조사대상 | 크게 줄었다 | 다소 줄었다 | 비슷하다 | 다소 늘었다 | 매우 늘었다 | 줄었다 - 늘었다 |
|---|---|---|---|---|---|---|
| 국회의원 | 3.2 | 27.4 | 58.9 | 7.3 | 3.2 | 20.1 |
| 보좌진 | 4.4 | 22.1 | 63.9 | 8.8 | 0.8 | 16.9 |

주 1) 조사대상자 수는 국회의원 124명, 보좌진 249명임
2) “줄었다-늘었다” 항목은 (“크게 줄었다” + “다소 줄었다”) - (“다소 늘었다” - “매우늘었다”)

자료: 2025년「국회입법조사처 의정활동지원 만족도 조사 보고서」내용을 재작성

[AI 도구 활용으로 감소한 입법조사분석 회답 요구 유형]

(단위: %, 복수응답)

| 조사대상 | 통계·현황 등 단순 사실 확인 | 법령 요약 및 해석 | 보도자료, 언론정보 확인 | 해외·유사 입법사례 | 데이터 요구·분석 | 법령쟁점 분석 및 대안 입법검토 | 정부 정책·제도 분석 | 기타 |
|---|---|---|---|---|---|---|---|---|
| 국회의원 | 46.5 | 39.6 | 26.7 | 16.8 | 12.9 | 11.9 | 11.9 | 2.0 |
| 보좌진 | 45.1 | 36.3 | 35.8 | 21.2 | 14.5 | 16.1 | 10.4 | 2.1 |

주) 조사대상자 수는 국회의원 101명, 보좌진 193명임

자료: 2025년「국회입법조사처 의정활동지원 만족도 조사 보고서」내용을 재작성

이는 AI 도구 활용에 따라 입법조사·분석 자체의 필요성이 축소되었다기보다는 기초적인 정보 탐색이나 자료 정리 등 일부 기능이 AI 활용으로도 가능하며, 데이터 요구·분석, 정부 정책·제도 분석 등 정책적 판단이나 해석, 대안 제시가 요구되는 영역에서 여전히 입법조사 분석의 필요성이 존재함을 의미함.

따라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정책 해석이나 입법적 판단이 요구되는 영역에 대하여 국회의원 및 위원회에 적시성 있는 분석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생성형 AI 도구와 차별화된 전문적인 입법조사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16]

16) 이에 대하여 국회입법조사처는 조사회답 품질 제고를 위해 2025년부터 조사회답, 간행물, 국가데이터처의 통계자료, 법령 등을 DB화하고, '생성형 AI 시대의 효율적인 입법조사회답 활용 방법'을 주제로 국회의원 보좌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으며(2026.3.31.실시),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전체 조사분석인력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교육을 실시하는 등(2026년 5월 3회 실시), 향후에도 입법조사회답의 품질 제고와 조사 · 분석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임.

# 7. 국회미래연구원 사업: 의정활동 지원 목적에 맞는 보고서 발간 일정 수립 필요

## 가. 개 요

**‘국회미래연구원’** 사업은 미래 환경의 예측·분석 및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함으로써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회미래연구원[17]에 출연금을 교부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42억 6,100만원 중 40억 9,3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1%)되고, 1억 6,800만원이 불용되었음.[18]

[2025년도 국회미래연구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국회미래연구원 | 4,261 | 4,261 | - | - | 4,261 | 4,093 | - | 168 | 5,172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국회미래연구원은 연말에 보고서를 집중 발간하는 관행을 시정하고, 연구성과가 국회의 의정활동에 적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보고서 발간 일정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

국회미래연구원은 2025년 기준 기본연구보고서 46건, 브리프형 보고서 22건 등 총 68건의 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19] 이 중 12월에 발간한 보고서는 32건으로 전체의 47%에 달함.

---

17) 「국회미래연구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미래연구원을 설립하여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함으로써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8) 일반회계-국회미래연구원(1034-308)(국회미래연구원)

19) [국회미래연구원 연구보고서 종류]

[2025년 국회미래연구원 연구보고서 발간 현황]

(단위: 건)

| 구분 | 발간물 | 2025년 발간현황 | 12월 발간 현황 |
|---|---|---|---|
| 기본연구보고서 | 기본연구사업보고서 | 34 | 12 |
| | 공동연구보고서 | 8 | 7 |
| | 단행본 | 4 | 4 |
| | 소계 | 46 | 23 |
| 브리프형 보고서 | 국가미래전략 Insight | 13 | 7 |
| | Futures Brief | 3 | - |
| | 인구통계 Brief | 6 | 2 |
| | 소계 | 22 | 9 |
| 총계 | | **68** | **32(47%)** |

자료: 국회사무처

이와 같은 연말 집중 발간은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나타난 바 있으며, 2025년은 일부 개선된 측면이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임.

[국회미래연구원 연도별 발간시점(기본연구보고서 기준)]

(단위: 건)

| 연도 | 총 건수 | 12월 | |
|---|---|---|---|
| | | 건수 | 비중 |
| 2023 | 40 | 30 | **75%** |
| 2024 | 28 | 23 | **82%** |
| 2025 | 46 | 23 | **50%** |

자료: 국회사무처 자료를 재작성

보고서가 연말에 집중적으로 발간될 경우 연구성과를 국회의원 및 관련 위원회가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중장기 정책과제의 발굴이나 입법·정책 논의에 활용이 제한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회 소속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는

| 구분 | | 내용 |
|---|---|---|
| 기본연구보고서 | | · 연구 목적, 필요성, 분석 방법 및 결과 등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보고서(100쪽 내외) |
| 브리프형 보고서 | 국가미래전략 Insight | · 특정 정책이슈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를 담은 브리프형 보고서 |
| | Futures Brief<br>인구통계 Brief | · 연구보고서 내용 중 특정사안과 연계한 발간물(4쪽/8쪽/20~30쪽)<br>1) 정책 고객들이 쉽고 빠르게 핵심 결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br>2) 통계·데이터 기반의 정성적 분석 결과를 표와 그래프 등을 활용하여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브리프 |

자료: 국회사무처

예산안·결산 심사 및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기관 고유사업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하여 국회미래연구원은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와 달리 중장기 미래환경 분석을 위한 장기간의 연구 과정이 필요하므로, 일정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임.[20][21]

그러나 대부분의 국책연구기관은 연구 소요 기간과는 별개로 연 단위 정기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비교 대상인 국회 소속기관 또한 수개월에 걸친 사전 기획과 조사·분석 과정을 거쳐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음. 보고서 작성을 위한 연구 소요 기간만을 이유로 발간 시점을 연말로 설정하는 것은 충분한 근거로 보기 어려움.

국회미래연구원은 중장기 미래환경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라는 점에서, 연말 보고서 집중 발간 문제를 시정하고, 연구성과가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보고서 발간 일정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20)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는 예산안·결산 분석, 입법조사, 현안 대응 등 국회의 정기적 의사일정 및 단기 정책수요와 직접 연계된 업무 비중이 높은 반면, 미래연은 중장기 미래환경 분석, 국가미래전략 수립, 정책 아젠다 발굴, 포럼 연계 외부 전문가·기관 공동연구 등 상대적으로 장기간의 연구과정이 필요한 과제가 다수라는 의견임.

21) 동시에 미래연구원은 2025년 3월 연구사업 체계 및 수행방식을 개편하여, 박사 연구진 1인당 분기별 1권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연구성과가 연중 분산·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기　타】

## 8.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국회에 대해 시정요구 3건(중복 없음)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주의 2건·제도개선 1건이었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 구분 | 변상 | 징계 | 시정 | 주의 | 제도개선 | (중복) | 계 |
|---|---|---|---|---|---|---|---|
| 결산 | - | - | - | 2 | 1 | - | 3 |
| 예비비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2 | 1 | - | 3 |

국회는 시정요구사항 3건에 대해 3건을 조치완료(조치율 100.0%)하였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 구분 | 시정요구사항(a) | 조치완료(b) | 조치율(b/a) | 조치중(a-b) |
|---|---|---|---|---|
| 결산 | 3 | 3 | 100.0 | - |
| 예비비 | - | - | - | - |
| 합계 | 3 | 3 | 100.0 | - |

# 국가인권위원회

# Ⅰ. 개 관

## 1. 결산 개요

### 가. 총수입·총지출

2025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1,100만원(40.7%)이 많은 3,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00만원(△20.8%)이 감소함.[1)]

[2025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4회계연도 | | | | 2025회계연도 | | | | 전년대비 (D-B) |
|---|---|---|---|---|---|---|---|---|---|
| | 예산액 | | 결산 (B) | 예산대비 (B-A) | 예산액 | | 결산 (D) | 예산대비 (D-C) | |
| | 본예산 | 추경(A) | | | 본예산 | 추경(C) | | | |
| 예 산 | 27 | 27 | 48 | 21 | 27 | 27 | 38 | 11 | △10 |
| 총수입 | 27 | 27 | 48 | 21 | 27 | 27 | 38 | 11 | △10 |

2025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14억 4,200만원(△3.4%)이 적은 409억 7,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3,800만원(3.6%)이 증가함.

문의 : 02-6788-5692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5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4회계연도 | | | | 2025회계연도 | | | | 전년대비 (D-B) |
|---|---|---|---|---|---|---|---|---|---|
| | 예산액 | | 결산 (B) | 예산대비 (B-A) | 예산액 | | 결산 (D) | 예산대비 (D-C) | |
| | 본예산 | 추경(A) | | | 본예산 | 추경(C) | | | |
| 예 산 | 41,303 | 41,303 | 39,534 | △1,769 | 42,414 | 42,414 | 40,972 | △1,442 | 1,438 |
| 총지출 | 41,303 | 41,303 | 39,534 | △1,769 | 42,414 | 42,414 | 40,972 | △1,442 | 1,438 |

## 나.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700만원으로, 4,3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3,800만원이 수납(수납률 88.4%)되고 5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2025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세입예산액 | | 이체등 증감액 (B) | 세입 예산현액 (A+B) | 징수 결정액 | 수납액 | 미수납액 | 불납 결손액 |
|---|---|---|---|---|---|---|---|---|
| | 본예산 | 추경 (A) | | | | | | |
| 일반회계 | 27 | 27 | - | 27 | 43 | 38 | 5 | - |
| 합 계 | 27 | 27 | - | 27 | 43 | 38 | 5 | - |

주) 총계 기준

2025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424억 1,400만원으로, 이 중 409억 7,2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6%)되고 2억 7,4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11억 6,8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세출예산액 | | 예산결정후증감액(B) | | | 세출 예산현액 (C=A+B)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 (A)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 | | |
| 일반회계 | 42,414 | 42,414 | - | ±297 | - | 42,414 | 40,972 | 274 | 1,168 |
| 합 계 | 42,414 | 42,414 | - | ±297 | - | 42,414 | 40,972 | 274 | 1,168 |

주) 총계 기준

## 다. 재무결산

2025회계연도 말 기준 국가인권위원회 자산은 전년 대비 94억 7,100만원이 증가한 345억 3,000만원으로, 이는 금융자산 8,800만원, 유무형자산이 93억 8,200만원, 기타자산 100만원이 각각 증가한 데 기인함.

2025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프로그램 순원가는 450억 8,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4,3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450억 2,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2,800만원 증가하였음.

[2025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 | 2025 (A) | 2024 (B) | 증 감 | |
|---|---|---|---|---|---|---|
| | | | | | 금액 (A-B) | 증가율 (A-B)/B |
| 재정 상태표 | 자 산 | | 34,530 | 25,059 | 9,471 | 37.8 |
| | | 금융자산 | 3,105 | 3,017 | 88 | 2.9 |
| | | 유무형자산 | 31,424 | 22,042 | 9,382 | 42.6 |
| | | 기타자산 | 1 | - | 1 | 순증 |
| | 부 채 | | - | - | - | - |
| | | 차입부채 | - | - | - | - |
| | | 충당부채 | - | - | - | - |
| | | 기타부채 | - | - | - | - |
| | 순자산 | | 34,530 | 25,059 | 9,471 | 37.8 |
| 재정 운영표 | 프로그램순원가 | | 45,087 | 43,744 | 1,343 | 3.1 |
| | 재정운영순원가 | | 45,023 | 43,695 | 1,328 | 3.0 |
| | 재정운영결과 | | 45,023 | 43,695 | 1,328 | 3.0 |

##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2025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고, 회계·기금 간 거래는 없음.

##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국가인권위원회는 급변하는 인권환경과 지구적 재난·위기 상황에 선제적 대응, 국제인권규범 국내 이행 강화,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책임성과 역량 제고를 2025년도 업무계획의 목표로 제시하고, 총 17개 세부사업에서 인권의식 증진,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 취약분야 인권개선,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국제교류협력 등을 수행하였음.

2025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성과관리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위원회의 핵심 기능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진정·직권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기능에 해당하므로, 향후 성과계획서 작성 시 프로그램 전체 성과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를 재설정하는 등 성과관리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둘째, 인권의식 증진 사업은 연례적·계획 가능한 사업에 대해 사후적 예산변경을 통해 부족 재원을 보전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향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업의 실제 소요를 면밀히 산정하여 사후적 예산변경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셋째, 인권단체 인권증진활동 지원사업은 공모 선정 결과가 특정 주제와 일부 단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공모주제 설계 및 선정관리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Ⅱ. 사업별 검토

## 【총 괄】

## 1. 성과지표: 핵심 기능 성과지표 미달성 및 제외에 따른 성과관리 보완 필요

### 가. 개 요

**‘인권보호 및 향상’** 프로그램의 성과지표는 ① 인권관련 법령·정책 등에 대한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 건수, ② 진정·직권조사 관련 권리구제 건수 등 2개로 구성되어 있음.

성과지표별 실적을 보면, ‘인권관련 법령·정책 등에 대한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 건수’는 목표 104건 대비 실적 104건으로 달성률 100.0%이고 ‘진정·직권조사 관련 권리구제 건수’는 목표 639건 대비 실적 298건으로 달성률 46.6%임.

[인권보호 및 향상 프로그램 성과지표 현황]

| 성과지표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인권관련 법령·정책 등에 대한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 건수(건) | 목표 | 104 | 104 |
| | 실적 | 104 | - |
| | 달성률(%) | 100.0 | - |
| 진정·직권조사 관련 권리구제 건수(건) | 목표 | 639 | 제외 |
| | 실적 | 298 | - |
| | 달성률(%) | 46.6 | - |

주)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은 인권보호 및 향상 단일 프로그램으로 구성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2026년도 성과계획서에서 2025년도 프로그램 성과지표 중 인권관련 법령·정책 등에 대한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 건수지표 1개만 유지하고, 진정·직권조사 관련 권리구제 건수 지표는 제외하였음.

## 나. 검토의견

**첫째,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직권조사 관련 권리구제 건수 지표가 2025회계연도 성과보고서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목표를 하회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실적 부진의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성과관리 체계에 환류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25회계연도 성과보고서상 성과지표 현황을 보면, 인권관련 법령·정책 등에 대한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 건수 지표는 목표 104건 대비 실적 104건으로 달성률 100.0%를 기록한 반면, 진정·직권조사 관련 권리구제 건수 지표는 목표 639건 대비 실적 298건으로 달성률 46.6%에 그쳤음.

진정·직권조사 관련 권리구제 건수 지표는 2022년과 2023년에는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나, 2024년에는 달성률이 50.0%로 하락하였고 2025년에도 46.6%에 그쳐 2년 연속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음.

[2022~2025년 진정·직권조사 관련 권리구제 건수 지표 달성 현황]

(단위: 건, 점, %)

| 성과지표 |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진정·직권조사 관련 권리구제 건수(건) | 목표 | 607 | 633 | 638 | 639 |
| | 실적 | 658 | 637 | 319 | 298 |
| | 달성률(%) | 108.4 | 100.6 | 50.0 | 46.6 |

주)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은 인권보호 및 향상 단일 프로그램으로 구성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회는 2025년 진정·직권조사 관련 권리구제 건수 목표치를 최근 5년 실적치 평균보다 2.6% 상향하여 설정하였으나, 진정내용의 복잡화, 위원회의 신중한 권고 결정, 조사중해결 진정사건 증가 등으로 권리구제 및 제도개선 건수가 감소한 것이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한 원인이라고 설명하였음.

다만 진정·직권조사 관련 권리구제 건수 지표가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목표를 크게 하회한 만큼, 위원회는 실적 부진의 원인이 일시적 요인인지 구조적 요인인지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성과목표 설정, 성과지표 관리 및 조사·구제 업무 개선에 환류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직권조사 관련 권리구제 건수 지표가 2026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에서 제외된 만큼, 조사·구제 기능의 성과가 성과관리 체계에서 충분히 관리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인권보호 및 향상 프로그램 성과지표는 2023년 기준 ① 인권관련 법령·정책 등에 대한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 건수, ② 진정·직권조사 관련 권리구제 건수, ③ 인권교육 만족도 등 3개였으나, 2024년에 인권교육 만족도 지표가 제외되고, 2026년에는 진정·직권조사 관련 권리구제 건수 지표가 제외되었음.

그 결과 2026년도 성과계획서에는 인권관련 법령·정책 등에 대한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 건수 1개 지표만 남게 되었으며, 성과지표 조정 결과 2025년에 목표를 달성한 지표는 유지되고, 2024년과 2025년에 연속하여 목표를 미달성한 지표는 제외되었음.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직권조사 업무는 별도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 아니므로 성과지표 설정 대상이 아니며, 1프로그램 1성과지표 원칙에 따라 프로그램의 대표지표를 설정한 것일 뿐 달성도가 낮은 지표를 제외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음. 또한 진정사건 조사와 인권교육 기능은 업무점검·자체평가·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는 의견임.

그러나 '진정·직권조사 관련 권리구제 건수' 지표는 2025회계연도 성과보고서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스스로 프로그램 성과지표로 설정·관리해 온 지표이고, 따라서 해당 지표가 재정사업 성과관리 대상이 아니라고 보기 위해서는 기존에 이를 프로그램 성과지표로 설정·관리한 이유, 성과지표 제외 기준의 변경 경위, 제외 이후 대체 관리방안이 함께 설명될 필요가 있음.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보호 및 향상' 프로그램은 정책권고, 조사·구제, 인권교육, 인권문화 확산, 국내외 인권협력 등 다양한 기능을 포괄하고 있음.

[인권보호 및 향상 프로그램 목표·주요내용]

| 프로그램 목표 | 주요내용 |
|---|---|
|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의 적극성과 효과성을 제고한다. | ㅇ 인권제도 선진화<br>- 인권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br>- 북한인권 관련 정책 모니터링, 북한인권 개선활동 지속 추진 |
| | ㅇ 국내외 인권 협력 강화<br>-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 강화<br>- 시민사회의 인권옹호 활동지원 및 협력 |
| | ㅇ 사회적 소수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br>- 여성, 장애인, 아동, 노인, 이주민 등 인권개선 활동 강화<br>- 군인의 권리구제 및 교육 등 군인권 증진 기반 강화 |

| 프로그램 목표 | 주요내용 |
|---|---|
| | ㅇ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감시와 구제 활동 강화<br>-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성희롱 진정사건의 조사·구제<br>-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방문·직권조사 강화<br>- 인권현안에 대한 신속한 현장대응 |
| | ㅇ 인권교육 활성화<br>- 국가인권교육원 운영 활성화를 통한 인권교육의 확산<br>- 인권교육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 연구·조사 및 개선 추진<br>- 인권교육에 관한 국내외 협력 강화 |
| | ㅇ 인권감수성의 사회적 확산<br>- 웹드라마, 잡지 등 인권문화 콘텐츠 확대<br>- 인권현안과 관련한 온라인 캠페인 등 전개 |
| | ㅇ 인권가치의 사회적 확산<br>- 지역사회의 인권 제도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br>- 인권전시관 운영 및 지역 특화사업 실시<br>- 지역 주민에 대한 차별없는 인권서비스 제공 |
| | ㅇ 시민사회와의 인권증진 협력<br>- 시민사회의 인권옹호 활동지원 및 협력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따라서 인권관련 법령·정책 등에 대한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 건수 지표 1개만으로 진정·직권조사를 통한 권리구제, 인권교육 등 프로그램의 전체 성과를 충분히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기획예산처의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은 1프로그램 1성과지표 원칙 적용이 부적절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별도 성과지표 설정 또는 프로그램 분리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고, 성과계획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세부사업 성과지표 등 활용도가 높은 재정정보를 추가하고, 프로그램 및 세부사업 정보를 연계·분석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점검과 권고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중 성과목표관리 관련 주요 내용]

**1 「1프로그램 1성과지표」 운영 적정성 점검·개선**

ㅇ 재정성과평가단 점검을 통해 1프로그램 1성과지표 원칙 적용이 부적절한 프로그램의 세부사업에 대해 개선조치

- 세부사업 규모, 사업목적의 이질성 정도 등에 따라 별도 성과 지표 설정 또는 프로그램 분리

**2 재정정보 확대제공으로 성과계획서 활용도 제고**

ㅇ 국회 예산심사시 필수적인 핵심정보 중심으로 성과계획서 개편

- 세부사업 성과지표 등 활용도가 높은 재정정보 추가, 예산심사와 관련성이 낮은 정보 삭제

ㅇ 프로그램 및 세부사업 정보를 연계·분석하여 세부사업 우선순위 조정 등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점검 및 권고안 제시

자료: 기획예산처 보도자료(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2026.1.27.)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성과목표 미달성 지표의 제외가 성과관리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인권보호 및 향상 프로그램의 성과를 보다 균형 있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성과목표 미달성 원인이 향후 성과관리 체계에 환류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일반회계】

〈세 출〉

## 2. 인권의식 증진 사업: 연례적인 세목조정 등 반복적 예산변경 개선 필요

### 가. 개 요

**‘인권의식 증진’** 사업은 인권잡지 제작·보급, 웹진 발간,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한 국가인권위원회 활동 홍보, 인권작품 공모 및 인권의 날 행사 등을 통해 국민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6억 8,000만원 중 6억 6,7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1%)되고, 1,300만원이 불용되었음.[2)]

[2025년도 인권의식 증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인권의식 증진 | 680 | 680 | - | △40<br>40 | 680 | 667 | - | 13 | 619 |
| 인권의 날 행사 | 40 | 40 | - | 20 | 60 | 59 | - | 1 | 60 |
| 인권문화 확산 및 매체활용 홍보 | 488 | 488 | - | △40<br>20 | 468 | 459 | - | 9 | 407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내역사업인 **‘인권의 날 행사’**는 세계인권선언 채택을 기념하고 국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권상 수여 및 인권의 날 기념식 등을 개최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6,000만원 중 5,9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3%)되고, 100만원이 불용되었음.

또 다른 내역사업인 **‘인권문화 확산 및 매체활용 홍보’**는 인권문화 콘텐츠 제작·보급, 온라인 매체 활용 홍보, 인권영화 장애인 접근성 제고 등을 추진하기 위한

2) 일반회계-인권의식 증진(1031-300)(정책교육국)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4억 6,800만원 중 4억 5,9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1%)되고, 900만원이 불용되었음.

## 나. 검토의견

**인권의 날 행사와 인권문화 확산 및 매체활용 홍보 사업은 세목변경 등을 통해 당초 편성된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향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실제 소요를 예산 편성 단계에서 면밀히 반영하여 사후적 예산변경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인권의 날 행사 예산은 4,000만원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나 세목변경 등을 통해 당초 편성된 예산을 초과하여 행사 개최 비용으로 집행하고 있음.

[연도별 인권의 날 기념식 행사 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 구분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산현액 | 집행액 (B)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실집행률 (B/A) |
|---|---|---|---|---|---|---|---|---|---|
| | 본예산(A) | 추경 | | | | | | | |
| 2022년 | 40 | 40 | - | 20 | 60 | 56 | - | 4 | 140.0 |
| 2023년 | 40 | 40 | - | 20 | 60 | 60 | - | - | 150.0 |
| 2024년 | 40 | 40 | - | 21 | 61 | 58 | - | 3 | 145.0 |
| 2025년 | 40 | 40 | - | 20 | 60 | 59 | - | 1 | 147.5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구체적으로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에는 세계인권선언 77주년 관련 인권의 날 기념식 행사 진행 비용 마련을 위해 세목변경을 하였고, 2024년에는 기념식 행사에 필요한 콘텐츠 제작 비용 마련 등을 위해 2,100만원을 세목변경하였으며 2023년에는 세계인권선언 75주년 기념 영상 제작 등을 위해 2,000만원을 전용하였고, 2022년에는 기념행사 통번역 비용 지급을 위해 300만원을 전용하였음.

[2022~2025년 인권의 날 행사 관련 전용 및 세목변경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날짜) | ~에서 | | | ~으로 | | 이·전용 등 사유 |
|---|---|---|---|---|---|---|
| | 세부사업 | 비목 | 금액 | 세부사업 | 비목 | |
| 전용 (2022.12.30.) | 기관운영 기본경비 | 임차료 (210-07) | 3 | 인권의식 증진 | 일반수용비 (210-01) | 기념행사 통번역을 위한 일반수용비 부족 |
| 전용 (2023.8.30.) | 취약분야 인권개선 | 일반수용비 (210-01) | 20 | 인권의식 증진 | 일반용역비 (210-14) | 세계인권선언 75주년 기념 영상 제작 등 예산 부족 |

(단위: 백만원)

| 구분 (날짜) | ~에서 | | | ~으로 | | 이·전용 등 사유 |
|---|---|---|---|---|---|---|
| | 세부사업 | 비목 | 금액 | 세부사업 | 비목 | |
| 세목변경 (2024.8.8.) | 인권의식 증진 | 일반수용비 (210-01) | 20 | 인권의식 증진 | 일반용역비 (210-14) | 기념식 행사에 필요한 콘텐츠 제작 비용 마련 |
| 세목변경 (2024.12.18.) | 인권의식 증진 | 일반수용비 (210-01) | 1 | 인권의식 증진 | 임차료 (210-07) | 기념식 행사에 필요한 임차료 마련 |
| 세목변경 (2025.8.29.) | 인권의식 증진 | 일반수용비 (210-01) | 20 | 인권의식 증진 | 일반용역비 (210-14) | 세계인권선언 77주년 관련 인권의 날 기념식 행사 진행 비용 마련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날 행사 용역 계약금액이 행사운영 예산 2,000만원을 상회한 것은 기록영상 제작·온라인 중계·기념공연 등 콘텐츠 제작 예산 2,000만원을 포함하여 통합 발주하였기 때문이며, 이는 2022년 국회 운영위원회 결산 예비검토에서 제기된 통합발주 필요성을 반영하여 세목변경 후 관련 사업을 일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인권의 날 행사 관련 사업을 통합 발주하여 추진한 점은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기록영상 제작·온라인 중계·기념공연 등은 행사 구성상 사전에 예상 가능한 항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당초 예산 편성 단계에서 통합발주에 필요한 소요를 보다 정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인권문화 확산 및 매체활용 홍보’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액은 4억 8,800만원이며, 이 중 장애인 접근성 제고 사업 예산액은 2,500만원임.

[2025년 인권문화 확산 및 매체활용 홍보 예산 편성내역]

○ 인권문화 확산 및 매체활용 홍보: 4억 8,800만원
- 인권정책 등 홍보 1억 1,900만원, 인권보도 발굴 및 확산 2,000만원,
인권 콘텐츠 개발 보급 및 인권캠페인 2억 4,500만원,
**장애인 접근성 제고(배리어프리 제작 및 보급) 2,500만원,**
온라인 및 뉴미디어 홍보 7,900만원

인권문화 확산 및 매체활용 홍보 사업에 포함된 장애인 접근성 제고 사업과 관련하여 2024년에는 관련 용역비 재원 마련을 위해 1,500만원을 일반수용비에서 일반용역비로 세목변경하였고, 2025년에는 인권영화 장애인 배리어프리 보급 상영회 운영 재원 확보를 위해 2,000만원을 일반수용비에서 일반용역비로 세목조정하였음.

[2024~2025년 인권문화 확산 및 매체활용 홍보 사업 세목변경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날짜) | ~에서 | | 금액 | ~으로 | | 이·전용 등 사유 |
|---|---|---|---|---|---|---|
| | 세부사업 | 비목 | | 세부사업 | 비목 | |
| 세목변경 (2024.4.11.) | 인권의식 증진 | 일반수용비 (210-01) | 15 | 인권의식 증진 | 일반용역비 (210-14) | 인권영화 장애인 접근성 제고 사업 관련 용역비 재원 마련 |
| 세목변경 (2025.6.16.) | 인권의식 증진 | 일반수용비 (210-01) | 20 | 인권의식 증진 | 일반용역비 (210-14) | 인권영화 장애인 접근성 제고 사업 관련 용역비 재원 마련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연례적으로 개최되거나 사전에 계획 가능한 사업에 대해 매년 전용 및 세목조정 등을 통해 당초 편성된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향후 인권의 날 행사 및 인권영화 장애인 접근성 제고 사업 예산을 면밀히 산정하여 사후적 예산변경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3. 인권단체 인권증진활동 지원 사업: 공모 주제 및 지원단체의 다양성 제고 필요

## 가. 개 요

**‘인권단체 인권증진활동 지원’** 사업은 인권 현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상호 협력 증진과 인권 저변 확대를 위하여 인권단체가 추진하는 인권증진활동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억 7,000만원 중 1억 6,100만원이 집행(집행률 94.7%)되고, 900만원이 불용되었음.[3)]

[2025년도 인권단체 인권증진활동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국내교류 협력 | 210 | 210 | - | - | 210 | 196 | - | 14 | 191 |
| 인권단체 인권증진활동 지원 | 170 | 170 | - | - | 170 | 161 | - | 9 | 154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해당 사업은 2025년에 총 45개 단체의 신청을 받아 11개 단체를 선정하였고, 선정 단체별로 883만원에서 1,84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음.

## 나. 검토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단체 인권증진활동 지원사업 공모 결과 일부 자율주제에 선정이 집중되고 동일 단체 또는 유사 주제가 반복 선정되는 사례가 확인되므로, 공모 주제 설계·지정주제 운영 방식·심사기준 및 반복 선정 관리체계를 점검하여 다양한 단체와 신규 주제가 발굴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2025년 인권단체 인권증진활동 지원사업은 자율주제 4개 분야와 지정주제 8개 분야로 구분하여 공모 신청을 받았음. 신청 및 선정 현황을 보면 전체 신청 45건 중 자율주제가 33건으로 73.3%를 차지하였고, 공모에서 선정된 11건 중 9건이 자율주제에서

3) 일반회계-국내교류협력(1036-303)(정책협력국)

선정되었음. 특히 자율주제 중에서도 ‘인권 옹호 및 신장을 도모할 새로운 분야 개발 및 활성화가 필요한 사업’에 선정(9건)이 집중되어 전체 선정 과제의 81.8%가 해당 주제에서 선정되었음.

[2025년 인권단체 인권증진활동 지원사업 유형별·주제별 신청 및 선정 현황]

(단위: 건)

| 유형 | 주제 | 신청 | 선정 |
|---|---|---|---|
| 자율주제 (4) | ① 인권 옹호 및 신장을 도모할 새로운 분야(영역) 개발 및 활성화가 필요한 사업 | 19 | 9 |
| | ② 인권 관련 단체 또는 국제기구 등과 연대 강화를 위한 사업 | 6 | - |
| | ③ 국제인권조약 관련 사업 중 시의성 있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 | 4 | - |
| | ④ 인권 증진에 관한 지역단체간의 연대활동에 관한 사업 | 4 | - |
| | 소계 | 33 | 9 |
| 지정주제 (8) | ⑤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문제와 인권 | - | - |
| | ⑥ 치매노인의 인식 개선 | 1 | - |
| | ⑦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 | 4 | 1 |
| | ⑧ 인권경영 공감대 확산 | - | - |
| | ⑨ AI 기술 발전과 인권 | 1 | - |
| | ⑩ 지역 인구 소멸에 따른 지역 인권 문제 | 1 | - |
| | ⑪ 스포츠 인권인식 개선 및 홍보 | 1 | 1 |
| | ⑫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 4 | - |
| | 소계 | 12 | 2 |
| 합계 | | 45 | 11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자율주제 내 다른 3개 분야에 총 14건이 신청되었으나 선정된 사업이 없었고, 지정주제는 8개 분야에 대해 신청을 받았으나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과 ‘스포츠 인권인식 개선 및 홍보’ 2개 분야에서 각 1건이 선정되었음.

지정주제는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에 따라 인권증진행동계획, 인권 현안 등을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일부 자율주제에 선정이 집중되고 지정주제 선정 실적이 저조한 점은 공모주제 운영 측면에서 점검이 필요함.[4)]

4)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
제4조(보조사업의 범위와 유형)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8호에 의한 위원회의 업무 중 위원회가 직접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단체 및 개인이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자율주제분야
가. 인권 옹호 및 신장을 도모할 새로운 분야(영역) 개발 및 활성화가 필요한 사업
나. 인권 관련단체 또는 국제기구 등과 연대 강화를 위한 사업
다. 국제인권조약 관련 사업 중 시의성 있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
라. 인권 증진에 관한 지역단체간의 연대활동에 관한 사업
2. 지정주제분야: 인권증진행동계획, 인권 현안 등을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또한, 최근 3년간 동일 단체 또는 유사 주제가 반복 선정된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보다 다양한 단체·주제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정 사유와 성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동일 단체 또는 유사 주제가 2회 이상 선정된 사례는 다음과 같음.

[2023~2025년 동일 단체 또는 유사 주제 2회 이상 선정 현황]

| 보조사업자명 | 선정연도 | 사업명 |
|---|---|---|
| 원주기독교청년회(원주YMCA) | 2023 | 우리 모두 평화롭게 공존하기 제6회 원주인권박람회 |
| | 2024 | 인권 다 다름, 제7회 원주인권박람회 |
| 청년유니온 | 2023 | 청년 고용복지, 일하는 시민 |
| | 2024 | 전국의 일하는 시민 모두 Right? Right! |
| | 2025 | '혼자 일하지만, 함께 싸운다' : 나홀로 노동자 네트워크 구축 프로젝트 |
| 사단법인 성평등위아 | 2024 | 나의 젠더 해방일지 |
| | 2025 | 남자들의 수다 - 새로운 남성성을 위한 커뮤니티 |
| 사단법인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 2024 | K-콘텐츠 시대의 방송미디어 노동자 권리보호 사업 |
| | 2025 | K-POP 노동과 인권의 모든 것: 엔터테인먼트산업 인권 지킴이 |
| 인권교육공동체 숲 | 2024 | 인권교육의 변곡점 공식 - 대전 인권교육 지속성 및 인권적 교육환경 마련을 위한 사업 |
| | 2025 |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관계 공식 "우리의 몫소리" |
| 인권교육연구소 뚜벅이 | 2024 | 청소년인권캠프 '걸으면서 찾는 인권평화' |
| | 2025 | 청소년인권캠프 '걸으면서 찾는 인권평화' |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 2024 | 레인보우메이커 - 시민의 힘으로 혐오 확산에 맞서자 |
| | 2025 | 레인보우 툴킷 - 세상을 바꾸는 다양성 교구 제작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인권위가 자율주제(4유형)와 지정주제(8유형)으로 공모를 진행한 것은 다양한 인권 증진활동을 지원하여 인권단체와의 협력 증진 및 인권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것임. 그럼에도 특정 유형만 공모 선정하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의2(보조금)에서 규정한 다양성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5)]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정단체에 관행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다양한 단체와 주제에 대한 지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의2(보조금) 위원회는 인권 현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상호 협력 증진과 인권의 저변을 확대·강화할 목적으로 제19조제8호에 따른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사업에 대하여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기　타】

## 4.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시정요구 1건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주의 1건이었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 구분 | 변상 | 징계 | 시정 | 주의 | 제도개선 | (중복) | 계 |
|---|---|---|---|---|---|---|---|
| 결산 | - | - | - | 1 | - | - | 1 |
| 예비비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1 | - | - | 1 |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요구사항 1건에 대해 모두 조치완료(조치율 100%) 한 것으로 보고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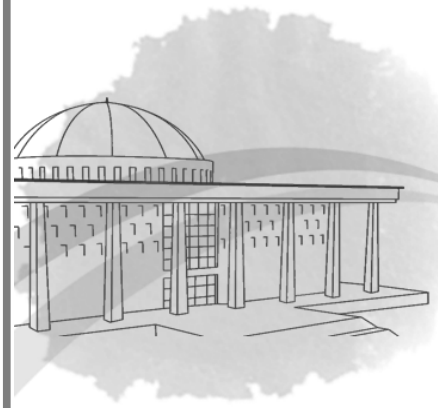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 구분 | 시정요구사항(a) | 조치완료(b) | 조치율(b/a) | 조치중(a-b) |
|---|---|---|---|---|
| 결산 | 1 | 1 | 100.0 | - |
| 예비비 | - | - | - | - |
| 합계 | 1 | 1 | 100.0 | - |

국회가 「2025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면서 채택한 부대의견 중 국가인권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관련 부대의견은 없음.

# 법제사법위원회



# 법무부

# Ⅰ. 개 관

## 1. 결산 개요

### 가. 총수입·총지출

2025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522억 1,100만원(△3.2%)이 적은 1조 5,616억 3,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99억 5,000만원(△1.9%)이 감소됨.[1)]

[2025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4회계연도 | | | | 2025회계연도 | | | | 전년대비 (D-B) |
|---|---|---|---|---|---|---|---|---|---|
| | 예산액 | | 결산 (B) | 예산대비 (B-A) | 예산액 | | 결산 (D) | 예산대비 (D-C) | |
| | 본예산 | 추경(A) | | | 본예산 | 추경(C) | | | |
| 예 산 | 1,389,745 | 1,389,745 | 1,585,982 | 196,237 | 1,608,229 | 1,608,229 | 1,554,685 | △53,544 | △31,297 |
| 기 금 | 4,931 | 4,931 | 5,599 | 668 | 5,613 | 5,613 | 6,946 | 1,333 | 1,347 |
| 총수입 | 1,394,676 | 1,394,676 | 1,591,581 | 196,905 | 1,613,842 | 1,613,842 | 1,561,631 | △52,211 | △29,950 |

문의: 02-6788-5702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5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3,462억 3,000만원(7.7%)이 많은 4조 8,182억 3,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939억 1,300만원(11.4%)이 증가됨.

[2025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4회계연도 | | | | 2025회계연도 | | | | 전년대비 (D-B) |
|---|---|---|---|---|---|---|---|---|---|
| | 예산액 | | 결산 (B) | 예산대비 (B-A) | 예산액 | | 결산 (D) | 예산대비 (D-C) | |
| | 본예산 | 추경(A) | | | 본예산 | 추경(C) | | | |
| 예 산 | 4,275,346 | 4,275,346 | 4,238,558 | △36,788 | 4,322,718 | 4,377,413 | 4,728,013 | 350,600 | 489,455 |
| 기 금 | 88,654 | 88,654 | 85,765 | △2,889 | 94,593 | 94,593 | 90,223 | △4,370 | 4,458 |
| 총지출 | 4,364,000 | 4,364,000 | 4,324,323 | △39,677 | 4,417,311 | 4,472,006 | 4,818,236 | 346,230 | 493,913 |

## 나.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조 6,673억 6,300만원으로, 1조 6,333억 9,3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조 6,165억 100만원이 수납(수납률 99.0%)되고, 168억 9,000만원은 미수납되어 1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세입예산액 | | 이체등 증감액 (B) | 세입 예산현액 (A+B) | 징수 결정액 | 수납액 | 미수납액 | 불납 결손액 |
|---|---|---|---|---|---|---|---|---|
| | 본예산 | 추경 (A) | | | | | | |
| 일반회계 | 1,543,683 | 1,543,683 | - | 1,543,683 | 1,498,539 | 1,481,834 | 16,704 | 1 |
| 교도작업특별회계 | 123,680 | 123,680 | - | 123,680 | 134,854 | 134,667 | 186 | - |
| 합 계 | 1,667,363 | 1,667,363 | - | 1,667,363 | 1,633,393 | 1,616,501 | 16,890 | 1 |

주) 총계 기준

2025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4조 9,101억 5,700만원으로, 4조 8,667억 7,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1%)되고 1억 7,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432억 8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세출예산액 | | 예산결정후증감액(B) | | | 세출 예산현액 (C=A+B)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 (A)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 | | |
| 일반회계 | 4,340,427 | 54,695 | 10,071 | ±77,906 | 381,262 | 4,786,455 | 4,746,407 | 173 | 39,874 |
| 교도작업특별회계 | 123,680 | - | 22 | ±346 | - | 123,702 | 120,368 | - | 3,334 |
| 합 계 | 4,464,107 | 54,695 | 10,093 | ±78,252 | 381,262 | 4,910,157 | 4,866,775 | 173 | 43,208 |

주) 총계 기준

## 다. 기금 결산

2025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수입계획액은 1,448억 7,700만원으로, 1,539억 2,3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498억 1,300만원이 수납(수납률 97.3%)되고, 40억 9,200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1,8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기금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수입 계획액 | |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미수납액 | 불납결손액 |
|---|---|---|---|---|---|---|
| | 당초 | 수정 | | | | |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144,877 | 144,877 | 153,923 | 149,813 | 4,092 | 18 |
| 합 계 | 144,877 | 144,877 | 153,923 | 149,813 | 4,092 | 18 |

주) 총계 기준

2025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지출계획현액은 1,448억 7,700만원으로, 1,498억 1,300만원이 지출(집행률 103.4%)되고 43억 7,0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기금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지출 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B) | 계획현액 (A+B)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당초 | 수정(A) | | | | | |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144,877 | 144,877 | - | 144,877 | 149,813 | - | 4,370 |
| 합 계 | 144,877 | 144,877 | - | 144,877 | 149,813 | - | 4,370 |

주) 총계 기준

## 라. 재무결산

2025회계연도 말 기준 법무부 자산은 전년 대비 77억 5,200만원이 증가된 13조 1,492억 2,600만원으로, 이는 유·무형자산이 47억 4,100만원 감소됐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자산이 106억 4,900만원 증가되고 기타자산이 18억 4,500만원 증가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560억 2,600만원 증가된 2,645억 1,600만원으로 차입부채 637억 4,900만원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482억 7,300만원이 감소된 12조 8,847억 1,100만원임.

2025회계연도 법무부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1조 9,876억 1,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639억 800만원 증가되었으며, 재정운영결과는 5조 2,663억 1,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352억 9,700만원 증가됨.

[2025회계연도 법무부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 | 2025 (A) | 2024 (B) | 증 감 | |
|---|---|---|---|---|---|---|
| | | | | | 금액 (A-B) | 증가율 (A-B)/B |
| 재정 상태표 | 자 산 | | 13,149,226 | 13,141,474 | 7,752 | 0.1 |
| | | 금융자산 | 226,797 | 216,148 | 10,649 | 4.9 |
| | | 유·무형자산 | 12,904,332 | 12,909,073 | △4,741 | △0.0 |
| | | 기타자산 | 18,097 | 16,252 | 1,845 | 11.4 |
| | 부 채 | | 264,516 | 208,490 | 56,026 | 26.9 |
| | | 차입부채 | 128,606 | 64,857 | 63,749 | 98.3 |
| | | 충당부채 | 135,439 | 143,166 | △7,727 | △5.4 |
| | | 기타부채 | 470 | 467 | 3 | 0.6 |
| | 순자산 | | 12,884,711 | 12,932,984 | △48,273 | △0.4 |
| 재정 운영표 | 프로그램순원가 | | 1,987,617 | 1,623,709 | 363,908 | 22.4 |
| | 재정운영순원가 | | 5,271,673 | 4,731,023 | 540,650 | 11.4 |
| | 재정운영결과 | | 5,266,319 | 4,731,022 | 535,297 | 11.3 |

##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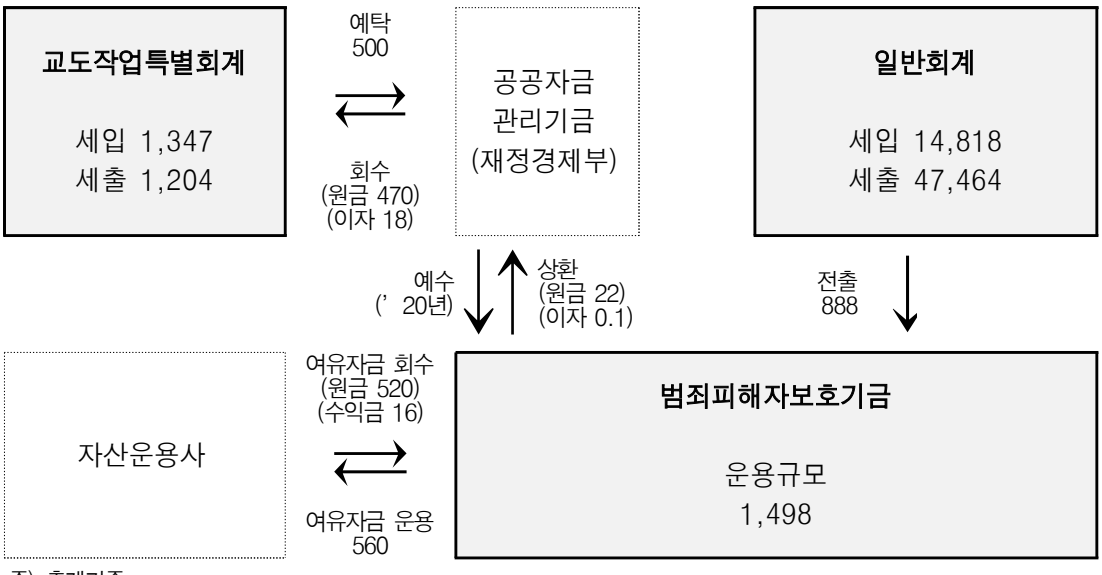
2025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재정은 일반회계, 교도작업특별회계 등 2개 회계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거래현황은 다음과 같음.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888억원이 전출되었음. 또한 교도작업특별회계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500억원이 예탁되었고, 교도작업특별회계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금 원금 470억원과 이자 18억원을 회수하였음.

다음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수금 원금 22억원, 이자 0.1억원이 상환되었음.

[2025회계연도 법무부 재정흐름도]

(단위 : 억원)




주) 총계기준

##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법무부는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비전으로 범죄에 대한 신속·공정한 대응과 처리를 통한 법질서 확립, 범죄자 관리 및 교정의 내실화를 통한 범죄예방과 안전한 사회 조성, 합리적 외국인 정책 추진을 통한 사회 안전과 사회통합 실현, 능동적·적극적 인권옹호를 통한 복지 인권 강화, 국민이 만족하는 선진 법무 서비스 제공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였음.

이를 위해 총 136개 세부사업에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법질서 확립, 효율적인 법집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선진 형사사법체계 구축, 범죄예방활동의 내실화를 통한 사회 안전 제고, 현대적 수용관리 및 내실있는 교정·교화를 통한 재범률 감소, 국민이 공감하는 출입국관리와 외국인 사회통합 실현,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강화, 법제 선진화와 법무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국민 편익 증진, 인권과 법치에 투철한 법무·검찰 인재 양성 및 역량 강화, 법무·검찰 행정 기반 강화,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에 걸맞은 국제법무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였음.

2025년도 법무부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국가배상금의 경우 최근 수년간 예산 부족이 발생하여 이·전용 및 예비비 배정을 통하여 지출하고 있으므로, 법무부는 과거 집행, 관련 소송 진행 상황 및 판결 추이 등을 반영하여 예산 편성의 정확도를 높이고 예비비 사용 및 이·전용 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둘째, 조은석 특별검사 사업은 1차 예비비 배정 이후 보수 및 기타직보수, 일반수용비 등의 집행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세목에 2차 및 3차 예비비를 추가로 배정받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므로, 추후 법무부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셋째, 전자감독 대상자와 스토킹 잠정조치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특정범죄 재범도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법무부는 부처 간 협업체계 강화와 전자감독 전담인력 확충 등을 통하여 전자감독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넷째, 교도소 운영 기본경비(총액)(7018-206) 사업에서는 연례적으로 감액 전용 등이 발생하는 반면, 교도소 운영 기본경비(7018-256) 사업은 증액 전용 등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법무부는 실제 집행실적이 반영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연례적인 전용 등의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임.

다섯째, 민간경호 지원사업의 경우 피해자 1인당 지원비용이 높아 한정된 예산으로는 지원 대상 확대에 한계가 있으므로, 법무부는 획일적인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위험도와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음.

# Ⅱ. 사업별 검토

## 【일반회계】

## 〈세　입〉

## 1. 과태료: 연례적인 수납률 저조 해소 필요 등

### 가. 개　요

**‘과태료’** 수입은「형사소송법」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세입으로서, 2025년도 징수결정액 232억 600만원 중 120억 5,900만원이 수납(수납률 52.0%)되고 111억 4,700만원이 미수납 되었음.[2)]

[2025년도 과태료 결산]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5년도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징수 결정액(B) | 수납액 (C) | 미수납액 | 불납결손액 | 수납률 (C/B)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과태료 | 11,514 | 11,514 | 23,206 | 12,059 | 11,147 | - | 52.0 | 12,167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과태료 수입은 최근 4년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51~55% 수준에 머무르고 미수납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징수 실적이 저조하므로, 법무부는 재산형 집행 시스템 개선과 체납자 관리 강화를 통해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일반회계-과태료(56-563)(검찰국・출입국본부・범정국・운영)

최근 4년간 과태료 수입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2022년 54.2%, 2023년 54.6%, 2024년 51.4%, 2025년 52.0% 수준으로 큰 개선 없이 정체되어 있으며, 미수납액은 2022년 98억 4,500만원에서 2025년 111억 4,700만원으로 증가하고 있음.

[최근 4년간 과태료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 연도 | 예산액 | | 예산 현액 | 징수 결정액 (B) | 수납액 (C) | 수납률 (C/A) | 수납률 (C/B) | 미수납액 | 불납 결손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2022 | 12,167 | 12,167 | 12,167 | 21,493 | 11,647 | 95.7 | **54.2** | 9,845 | - |
| 2023 | 12,167 | 12,167 | 12,167 | 21,904 | 11,915 | 97.9 | **54.6** | 9,989 | - |
| 2024 | 12,167 | 12,167 | 12,167 | 21,638 | 11,124 | 91.4 | **51.4** | 10,512 | 2 |
| 2025 | 11,514 | 11,514 | 11,514 | 23,206 | 12,059 | 104.7 | **52.0** | 11,147 | - |

자료: 법무부

특히 검찰 분야의 미수납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검찰 분야 수납액은 101억 100만원인 반면 미수납액은 110억 7,200만원으로 오히려 미수납 규모가 더 큰 수준으로 확인됨. 법무부는 검찰 과태료 미수납의 주요 원인으로 체납자의 재력 부족, 거소 불명 및 납기 미도래 등을 제시하고 있음.

[최근 4년간 과태료 부서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 검찰 | | 출입국 | | 범정 | | 운영 | | 미수납 사유 |
|---|---|---|---|---|---|---|---|---|---|
| | 수납액 | 미수납액 | 수납액 | 미수납액 | 수납액 | 미수납액 | 수납액 | 미수납액 | |
| 2022년 | 9,003 | 9,827 | 2,643 | 6 | 1 | 12 | 0 | 0 | 체납자 재력부족, 거소 불명, 납기 미도래 등 |
| 2023년 | 9,875 | 9,906 | 2,022 | 6 | 17 | 74 | 0 | 3 | |
| 2024년 | 9,385 | 10,434 | 1,735 | 5 | 3 | 67 | 0 | 7 | |
| 2025년 | 10,101 | 11,072 | 1,955 | 6 | 1.5 | 65.5 | 2 | 3 | |

자료: 법무부

법무부는 과태료의 경우 벌금과 달리 행정질서벌의 성격을 가지는 관계로 노역장 유치 등 직접적인 강제집행 수단이 제한되고, 납부명령·독촉·압류·공매 등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고, 전국 검찰청 재산형 집행 담당 부서에서는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과태료 결정문 및 확정 내역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한 후 납부명령서 및 독촉장을 발송하고, 각 집행 상황을 재산형 집행 시스템(KICS)[3]에 수기로 입력하는 절차를 거침에 따라 통계작성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검찰의 과태료 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체납액, 잔여 시효, 건별 징수 활동 현황 등'의 각종 조건별·기준별 자동 분류 기능을 KICS 시스템에 구현하여 과태료 징수 업무에 비효율적으로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을 감축하고, 각 미수납 건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 프로세스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한편 검찰 과태료 수납률을 건수 기준으로 보면 2024년과 2025년 모두 약 84%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금액 기준 수납률은 같은 기간 48%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고액 체납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징수 성과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납기 경과자에 대한 조기 납부 유도, 장기·고액 체납자 재산조사 강화 및 미수납 특성을 반영한 관리방안 마련 등을 통해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검찰 과태료 수납률]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 | 징수결정 | 수 납 | 불능결정 | 미 제 |
|---|---|---|---|---|---|
| 2024년 | 건수 | 49,383(100%) | 41,558 (84%) | 243 (1%) | 7,582 (15%) |
| | 금액 | 19,819(100%) | **9,385 (48%)** | 258 (1%) | 10,176 (51%) |
| 2025년 | 건수 | 50,487(100%) | 42,565 (84%) | 282 (1%) | 7,640 (15%) |
| | 금액 | 21,173(100%) | **10,101 (48%)** | 453 (2%) | 10,619 (50%) |

자료: 법무부

3) 형사사법포털(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세　출〉

## 2. 국가배상금 지급 사업: 이·전용 및 예비비 사용 최소화 노력 필요

### 가. 개　요

**‘국가배상금 지급’** 사업은 공무원의 불법행위나 공공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4,372억 8,000만원 중 4,372억 7,9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되고 100만원이 불용되었음.[4)]

[2025년도 국가배상금 지급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비비 (D) | 예산현액 (A+B+C+D)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 국가배상금 지급 | 131,765 | 131,765 | - | 215 | 305,300 | 437,280 | 437,279 | - | 1 | 144,835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국가배상금은 최근 수년간 예산 부족이 발생하여 이·전용 및 예비비 배정을 통하여 지출하고 있으므로, 법무부는 과거 집행실적, 관련 소송 진행 상황 및 판결 추이 등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의 정확도를 높이고 예비비 사용 및 이·전용 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국가배상금 지급 사업은 최근 수년간 이·전용 등을 통하여 본예산을 초과하여 지출되고 있는데, 2025년에는 본예산 1,317억 6,500만원의 2배 이상인 3,053억원의 예비비가 추가로 사용되어 전체 집행액의 상당 부분을 예비비에 의존하고 있음.

4) 일반회계-국가배상금 지급(1031-301)(법무실)

[최근 4년간 국가배상금 지급 사업 예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 구분 | 예산액 |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현액 (B) | 집행액 (C) | 집행률 (C/A) | 집행률 (C/B)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2022년 | 150,000 | 150,000 | 343 | - | 150,343 | 149,311 | 99.5 | 99.3 | 1,032 |
| 2023년 | 100,000 | 100,000 | 254 | - | 100,254 | 100,253 | 100.2 | 99.9 | 1 |
| 2024년 | 100,000 | 100,000 | 7,743 | - | 107,743 | 107,743 | 107.7 | 100.0 | - |
| 2025년 | 131,765 | 131,765 | 215 | 305,300 | 437,280 | 437,279 | 331.9 | 99.9 | 1 |
| 2026년 | 144,835 | 144,835 | - | - | - | - | - | - | - |

자료: 법무부

국가배상금은 판결 확정에 따라 지급시기가 도래하는 지출로서 미지급 시 지연이자 부담이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예산 집행의 시급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인한 반복적인 이·전용 및 예비비 사용은 본예산 편성의 적정성이 미흡한 데 기인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2025년도 예비비 배정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날짜) | ~에서 | | 금액 | ~으로 | | 예비비 배정 사유 |
|---|---|---|---|---|---|---|
| |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 목-세목 코드 | |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 목-세목 코드 | |
| 목적예비비 (2025.12.2.) | - | - | 243,100 | 국가배상금 지급 (1031-301) | 310-02 | 국가배상금 지급을 위한 배상금(판결금 등) 부족 |
| 목적예비비 (2025.12.23.) | - | - | 62,200 | 국가배상금 지급 (1031-301) | 310-02 | 국가배상금 지급을 위한 배상금(판결금 등) 부족 |

자료: 법무부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사건 등 국가소송에서 관행적 상소를 자제하고 진행 중 소송의 상소 취하·포기를 결정함에 따라 관련 사건에 대한 배상금 소요가 급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과거사 관련 배상금 지급 추이]

(단위: 건, 백만원)

| 구분 |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전체 | 건수 | 371 | 369 | 334 | 268 | 258 | 275 | 293 | 411 | 444 | 1,274 |
| | 금액 | 228,695 | 349,084 | 762,218 | 146,600 | 62,630 | 215,908 | 140,810 | 128,811 | 96,650 | 426,973 |
| 과거사 | 건수 | 169 | 120 | 141 | 74 | 79 | 110 | 84 | 266 | 272 | 1,107 |
| | 금액 | 210,641 | 320,597 | 660,874 | 124,625 | 47,967 | 170,016 | 28,198 | 78,220 | 81,103 | 419,254 |
| **과거사 비율(%)** | **건수** | **45.6** | **32.5** | **42.2** | **27.6** | **30.6** | **40.0** | **28.7** | **64.7** | **61.3** | **86.9** |
| | **금액** | **92.1** | **91.8** | **86.7** | **85.0** | **76.8** | **78.7** | **20.0** | **60.7** | **83.9** | **98.2** |

주) 판결금 기준
자료: 법무부

그러나 2024회계연도 국회 결산 심의에서도 국가배상금의 연례적 이·전용 등에 대하여 예산 편성의 부정확성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점, 예비비 및 이·전용 등에 의존하는 구조는 재정운용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법무부는 국가배상금 지급의 과거 집행실적, 진행 중인 소송 현황 및 판결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 편성의 정확도를 높이고 예비비 사용 및 이·전용 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할 필요가 있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유형 |
|---|---|---|---|
| 국가배상금 지급을 위한 연례적 과다 이·전용 개선 필요 | 관련 사업명 | 일반회계 - 국가배상금 지급(1031-301) | 제도 개선 |
| | 지적 사항 | ○ 법무부는 국가배상금 부족분 발생 시 자체적으로 소속기관 인건비 등으로부터 매년 예산을 이·전용하여 집행하고 있음. 지난 2023년에도 예산 전용 등 부정확한 예산편성을 지적한 바 있으나, 국가배상금 지급을 위한 2024년도 이·전용 등 규모는 오히려 2023년 대비 급증하였음<br>○ 다른 사업으로부터의 이·전용 규모가 과다할 경우 이·전용에 따라 감액된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고, 전반적인 예산집행의 성과와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정부 제출 예산 사업에 대한 국회의 심의·의결권 침해 소지도 있음 | |
| | 시정요구사항 | ○ 법무부는 국가배상금의 지급 예상 규모를 정확하게 추산하여 예산을 적정 규모로 편성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전용 등을 최소화하여 예산집행 규모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 | |

## 3.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업: 대한법률구조공단 자체수입 산정의 정확성 제고 노력 필요 등

### 가. 개 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업은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상담·소송대리 및 법 교육사업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653억 7,000만원 전액 집행(집행률 100%)되었음.[5)]

[2025년도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법률구조 | 67,337 | 67,337 | - | - | 67,337 | 67,336 | - | 1 | 66,602 |
| 대한법률구조공단 | 65,370 | 65,370 | - | - | 65,370 | 65,370 | - | - | 63,888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첫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자체수입 예산액과 결산액 간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어 보조금 지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법무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자체수입 산정에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 이라 함)은 수지차보조 방식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자체수입 규모에 따라 보조금 지원액이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자체수입 예산 대비 결산액이 지속적으로 부족하게 나타나고 있어 자체수입 산정의 정확성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됨.

특히 2025년의 경우 자체수입 예산 519억 6,800만원 대비 결산액은 455억 7,100만원으로 63억 9,700만원의 부족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반복되고 있어 구조적인 문제로 볼 수 있음.

5) 일반회계-법률구조(1131-300)(인권국)

이에 대하여 공단은 자체수입 감소 주 원인을 2021년 10월「임금채권보장법」개정(상한액 1,000만원까지 법원 판결문 없이 국가가 체불급여 대신 지급)에 따른 법률구조 사건 실적 저하로 보고 있으나,「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된지 상당한 기간이 지나 이를 수입 예산 편성에 반영할 시간이 충분하였음.

수지차보조기관의 자체수입은 국고보조금 규모와 기관의 사업계획 수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재원인바, 자체수입을 실제 수입 가능액보다 과다하게 계상할 경우 세입결손 발생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자체수입 추계의 오류는 국고보조금 산정의 적정성을 저해하고 예산 편성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단은 최근 수입 실적 및 사업환경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한 세입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대한법률구조공단 자체 수입 예·결산 현황(2021~2025년)]

(단위: 백만원)

| 구 분 | 예 산(A) | 결 산(B) | 과부족(B-A) |
|---|---|---|---|
| 2021년 | 53,860 | 48,170 | △5,690 |
| 2022년 | 47,324 | 38,491 | △8,833 |
| 2023년 | 48,276 | 39,940 | △8,336 |
| 2024년 | 48,959 | 42,092 | △6,867 |
| 2025년 | 51,968 | 45,571 | △6,397 |

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

**둘째, 법률구조적립금 특별회계 적립금 규모가 2021년 265억원에서 2025년 91억원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므로, 법률구조적립금의 수입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지출구조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법률구조적립금은「법률구조법」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지원 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집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회계로 운영하고 있는데 특별회계는 안정적인 법률구조사업 수행을 위하여 연간 수입과 지출이 균형되게 운영되어야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수입보다 지출이 과다함에 따라 적립금 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1년 264억 7,100만원에서 2025년 90억 7,500만원으로 축소되었으며, 특히 2025년에는 전년 대비 46억 100만원(약 33.6%)이 감소하는 등 재정여력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

이에 대하여 공단은 적립금 지원 대상 사건 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매년 출연받는 금액을 초과하여 소송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부족분을 적립금으로 충당함에 따라 적립금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이와 같은 적립금 감소 추세는 향후 법률구조 수요 증가 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어렵게 하고 사업 지속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법률구조적립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입 기반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지출 구조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등 중장기적인 재정관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법률구조적립금 특별회계 수입·지출 현황(2021~2025년)]

(단위: 백만원)

| 구 분 | 전년도 이월액(A) | 수입액(B) | | | 지출액(C) | | | 이월액 (A+B-C) |
|---|---|---|---|---|---|---|---|---|
| | | 사업 수익 | 사업외 수익 | 합계 | 사업비 | 사업외 비용 | 합계 | |
| 2021 | 30,503 | 382 | 37,661 | 38,043 | 42,075 | - | 42,075 | 26,471 |
| 2022 | 26,471 | 335 | 27,566 | 27,901 | 31,932 | - | 31,932 | 22,440 |
| 2023 | 22,440 | 602 | 27,336 | 27,938 | 32,995 | - | 32,995 | 17,383 |
| 2024 | 17,383 | 614 | 29,465 | 30,079 | 33,786 | - | 33,786 | 13,676 |
| 2025 | 13,676 | 409 | 35,272 | 35,681 | 40,282 | - | 40,282 | 9,075 |

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적립금 특별회계 적립금 연도별 감소 현황(2021~2025년)]

(단위: 백만원, %)

| 연도 | 2021년 | 2022년 | 전년 대비 | 2023년 | 전년 대비 | 2024년 | 전년 대비 | 2025년 | 전년 대비 |
|---|---|---|---|---|---|---|---|---|---|
| 적립금 잔액 | 26,471 | 22,440 | △4,031 (△15.2) | 17,383 | △5,057 (△22.5) | 13,676 | △3,707 (△21.3) | 9,075 | △4,601 (△33.6) |

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

**셋째, 공단은 신규 채용자에 한하여 직무급 연봉제를 도입함에 따라 동일 직군 내에서도 채용시기에 따라 호봉제와 연봉제가 병존하는 보수체계의 이원화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기존 직원에 대한 연봉제 또는 직무급 연봉제의 단계적 확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공단의 「보수규칙」 제37조는 연봉제의 적용대상을 이사장・사무총장・이사・감사, 일반직 1급 내지 4급 및 일반계약직 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6] 이후 공단은 2025년 9월 「보수규칙」을 개정하여 직무급 연봉제를 도입하였는데, 직무급 연봉제는 기본연봉과 직무난이도 및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등급을 부여한 후 등급별 직무급을 함께 지급하는 것임.[7]

[연봉제 구분 및 적용대상 임직원 구분표(별표 11)]

| 구 분 | 적용대상 임직원 |
|---|---|
| 고정급적 연봉제 | 이사장, 사무총장, 이사, 감사 |
| 성과급적 연봉제 | 일반직 1급 내지 4급<br>(4급 또는 5급의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4급 직원을 제외)<br>일반계약직 |

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

6) 「보수규칙」
제37조(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연봉제의 구분 및 그 적용대상 임직원은 **별표 11**에 의한다. 다만, 별표 11에 규정된 임직원이 아닌자가 연도 중에 별표 11에 규정된 임직원으로 승진하는 경우에는 (1월 1일에 승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승진한 다음 연도부터 적용한다.

7) 「보수규칙」
제7장의3 직무급 연봉제
제54조의2(적용 및 범위) ① 이 장은 2025. 10. 1. 이후 신규 채용되어 임용되는 직원에게 적용한다.
② 직무급 연봉제 대상 직원의 보수는 연봉과 기타 수당으로 하며, 기타 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과 이 장에서 정한 수당으로 구성하고 기타 수당의 기준액,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54조의3(직원의 기본연봉) ①이 장의 적용을 받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기본연봉은 별표 12의2와 같다.
② 기본연봉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 처우개선분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할 수 있다.
제54조의4(직무급) ① 이사장은 직무난이도 및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평가를 통해 직무등급을 부여한 후 직무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직무의 난이도와 중요도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직무등급을 부여하는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정해야 하며, 직무등급별 직무급은 별표 12의3 직무급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직원 연봉제 현황]

('26. 6. 30. 기준, 단위 : 명, %)

| 구 분 | | 총 원 | 임원 | 변호사 | 일반직 | 서무직 | 주택·상가 임조위 |
|---|---|---|---|---|---|---|---|
| 정 원 | | 785 | 2 | 149 | 442 | 150 | 42 |
| 현 원(A) | | 733 | 1 | 118 | 431 | 146 | 37 |
| 연봉제 | 연봉제 | 97 | 1 | 12* | 47 | 0 | 37 |
| | 직무급 연봉제 | 77 | 0 | 20 | 57 | 0 | 0 |
| | 합계(B) | 174 | 1 | 32 | 104 | 0 | 37 |
| 연봉제 비율(B/A) | | 23.7 | 100.0 | 27.1 | 24.1 | 0.0 | 100.0 |

주) 연봉제 대상 변호사는 2019~2024년까지 공단이 채용한 계약직(임기제) 변호사로 통상 5년 계약
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

2026년 6월 말 기준 공단의 현원은 총 733명이며, 이중 연봉제와 직무급 연봉제를 적용받고 있는 인원은 174명으로 이는 현원 기준 23.7% 수준임. 그런데 직무급 연봉제의 적용대상을 2025년 10월 1일 이후 신규 채용되어 임용되는 직원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기존에 연봉제 적용대상이 아니었던 직원은 호봉제를 적용받고 있음.[8)]

이처럼 이중적 구조의 보수체계로 운영됨에 따라 일반직 5급은 연봉제 적용대상이 전혀 없는 반면, 그 하위직인 일반직 6급 이하 직원 중 일부는 직무급 연봉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임기제 변호사를 제외한 변호사 중 2025년 10월 이전에 채용된 자는 호봉제를 이후 채용된 자는 직무급 연봉제를 적용받고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보수체계가 상이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8)「보수규칙」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호봉"이라 함은 재직기간 등에 따라 기본급을 지급하는 기분을 말한다.
10. "연봉"이라 함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직급별 연봉제 현황]

('26. 6. 30. 기준, 단위 : 명, %)

| 구 분 | | 정원 | 현원 (A) | 연봉제 | | | 연봉제 비율(B/A) |
|---|---|---|---|---|---|---|---|
| | | | | 연봉제 | 직무급 연봉제 | 합계 (B) | |
| 상임임원 | | 2 | 1 | 1 | - | 1 | 100.1 |
| 변호사 | | 149 | 118 | 12 | 20 | 32 | 27.1 |
| 일반직 | 일반직 1급 내지 3급 | 4 | - | - | - | - | - |
| | 일반직 2급 또는 3급 | 9 | - | - | - | - | - |
| | 일반직 3급 또는 4급 | 5 | - | - | - | - | - |
| | 일반직 3급 내지 5급 | 17 | 14 | 14 | 0 | 14 | 100.0 |
| | 일반직 4급 또는 5급 | 42 | 41 | 33 | 0 | 33 | 80.5 |
| | 일반직 5급 | 143 | 129 | 0 | 0 | 0 | 0.0 |
| | 일반직 5급 이하 | 222 | 247 | 0 | 57 | 57 | 23.1 |
| | 합계 | 442 | 431 | 47 | 57 | 104 | 24.1 |
| 서무직 | | 150 | 146 | 0 | 0 | 0 | 0.0 |
| 주택·상가 임조위 | | 42 | 37 | 37 | 0 | 37 | 100.0 |
| **합 계** | | **785** | **733** | **97** | **77** | **174** | **23.7** |

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에 대하여 공단은 2025년도 하반기 신규 채용자부터 직무급 연봉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변호사의 보수체계는 공단 설립 당시 공익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검사의 보수체계를 참고하여 설계된 것으로 공무원 보수표를 적용하는 관행이 장기간 유지되어 왔고, 기존 직원에 대한 연봉제 확대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동의 등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의견임.

그러나 신규 채용자에 한하여 직무급 연봉제를 적용하는 현행 방식이 지속될 경우 동일 직군 내 보수체계의 이원화 문제가 발생하고, 특히 변호사는 사건 수행실적, 법률구조 실적 등 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용이한 직군임에도 채용시기에 따라

서로 다른 보수체계를 적용받고 있으며, 일반직 역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채용시기에 따라 보수체계가 달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따라서 공단은 노사 협의를 바탕으로 기존 직원에 대한 연봉제 또는 직무급 연봉제의 단계적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 간 보수체계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직무와 성과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보수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4.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사업: 교육대상자 선정 및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 가. 개 요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사업은 국내에 장기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입국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외국인이 우리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9억 1,900만원 중 16억 3,200만원이 집행(집행률 85.0%)되고 2억 8,700만원이 불용되었음.[9)]

[2025년도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외국인사회통합지원 | 17,639 | 17,639 | - | △606 | 17,033 | 16,380 | - | 653 | 21,579 |
|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 1,919 | 1,919 | - | - | 1,919 | 1,632 | - | 287 | 3,561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계절근로자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의무제 시행 연기와 참여자 수요 예측 과다로 집행실적이 저조하므로, 법무부는 의무제 시행 일정 및 교육 수요를 면밀히 점검하여 참여자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고 예산 불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은 외국인의 국내 초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 언어별로 한국 사회의 기초 법질서, 생활법률, 산업안전, 범죄예방 및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회통합 교육으로 최근 이민자 증가와 함께 교육 수요 또한 확대되고 있는 사업임.[10)]

---

9) 일반회계-외국인사회통합지원(1233-301)(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10)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몽골어, 타갈로그어, 일본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불어, 인도네시아어, 네팔어, 우즈베크어, 미얀마어, 카자흐어, 벵골어, 라오어 등 18개 언어

특히 법무부는 최근 마약범죄 등 외국인의 법질서 위반 사례 증가와 산업현장 안전사고 예방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2025년에는 범죄예방교육 및 산업안전교육을 추가하고 교육시간을 기존 3시간에서 5시간으로 확대하는 등 사업 규모를 확대하였음.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 과정]

| 구분 | 과목 | 교육내용 |
|---|---|---|
| 공통과목 | 생활법률・질서<br>(1차시) |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준법의식,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br>- 쓰레기 분리수거, 임대차 등 생활법률, 경범죄·도로교통법 등 기초질서 교육<br>- 출입국・체류・사회통합프로그램・국적 등 기초정보 |
| | 신규범죄예방교육<br>(2차시) | - 인신매매, 마약범죄, 살인, 강도<br>- 강간, 성희롱·성폭력, 절도, 보이스피싱 등 |
| | 신규산업안전교육<br>(3차시) | - 산업현장에서의 안전 수칙과 대응 방법<br>- 사고사례 분석 및 대응 훈련 등 |
| | 한국사회적응정보<br>(4차시) | - 안전 등 긴급상황 대처방법,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기관 소개<br>- 교통, 의료, 주거, 전기・통신, 은행 등 이용<br>- 정부기관, 지자체, 복지・교육・문화시설 등 이용 |
| 특수과목 | 교육 유형별<br>특화교육<br>(5차시) | - 유학생 필수정보(유학생), 가족 간 상호이해(결혼이민자), 미래진로(중도입국청소년), 국내정착(외국국적동포), 인권보호(외국인 연예인), 계절근로자 필수정보(계절근로자), 안전 수칙 및 인권보호(외국인 근로자), 국내정착(재정착난민) |

자료: 법무부

이에 따라 2025년 예산을 전년도 대비 약 99% 증액 편성하였는데, 교육 인원을 기존 3만 9천명에서 6만 9천명 수준으로 확대 계획하면서 강사료, 교재비 등도 이와 연동하여 증액 편성하였음.

[2024~2025년도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예산 산출 근거]

(단위: 백만원)

| 연도 | 구분 | 물량(A) | 단가(B) | 계(A×B) |
|---|---|---|---|---|
| 2024 | 강사료 | 1,720회(39천명/23명)×3시간 | 117천원 | 602 |
| | 교재비 등 | **39천명** | 3.5천원 | 136 |
| | 인건비 | 4명×12월 | 2,516천원 | 121 |
| | 운영비 | 4개기관×12월 | 2,185천원 | 105 |
| | **계** | | | **964** |
| 2025 | 강사료 | 2,300회(69천명/30명)×5시간 | 126천원 | 1,449 |
| | 교재비 등 | **69천명** | 3.5천원 | 242 |
| | 인건비 | 4명×12월 | 2,559천원 | 123 |
| | 운영비 | 4개기관×12월 | 2,185천원 | 105 |
| | **계** | | | **1,919** |

자료: 법무부

그러나 최근 동 프로그램의 실제 참여자 현황을 보면 2022년 2만 9,552명, 2023년 4만 2,374명, 2024년 4만 1,048명 2025년 3만 7,514명으로 최근 3개년 평균 참여자 수는 약 4만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2025년 참여자 수는 오히려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2025년에는 2억 8,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실제 참여 규모 대비 과다한 예산이 편성된 측면이 있음.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사업 참여자 현황 : 2022~2026. 3.]

(단위: 명)

| 연 도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3. |
|---|---|---|---|---|---|
| 참여자 | 29,552 | 42,374 | 41,048 | 37,514 | 8,248 |

자료: 법무부

법무부는 계절근로자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의무제[11] 시행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운영지침 정비 등에 따라 해당 제도의 시행 시기가 2026년으로 조정되면서 불가피하게 불용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제도 시행 일정 및 실제 참여 규모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임.

따라서 계절근로자 이수 의무제 등 제도 변경 일정과 실제 참여 수요를 보다 면밀하게 반영하여 참여자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교육과정 운영 실적 및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높이고,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이 의무화되는 만큼 외국인의 국내 조기 정착과 법질서 준수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12]

1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5(결혼이민자 등의 조기 적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결혼이민자 등의 자격으로 입국하려고 하거나 최초로 입국한 외국인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류허가 · 영주자격 · 국적 신청 및 기초생활 법질서 등의 교육,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및 운영 방법, 그 밖에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12)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시행 계획(안)」에 따르면 계절근로자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의무제 시행은 2026년 7월 20일임.

## 5. 형사보상 사업: 연례적인 예비비 및 이·전용 등을 통한 사업 추진 지양 필요

### 가. 개 요

**‘형사보상’** 사업은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본예산 420억원과 이·전용 425억 5,400만원, 예비비 배정액 429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274억 5,400만원으로 전액 집행(집행률 100%)되었음.[13)]

[2025년도 형사보상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이·전용 등(B) | 예비비 (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형사보상 | 42,000 | 42,000 | 42,554 | 42,900 | 127,454 | 127,454 | - | 44,000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형사보상 사업의 본예산 편성 규모가 실제 소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예비비 및 이·전용에 의존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법무부는 형사보상금 지급 추세와 사건 유형별 발생 양상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본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025년도 형사보상 사업의 집행액은 1,274억 5,400만원으로 본예산 420억원 대비 약 303.5% 수준에 달하는 등 예산 편성 규모와 실제 집행 간 괴리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

13) 일반회계-형사보상(1337-302)(검찰국)

특히 최근 3년간 형사보상금 부족을 충당하기 위한 이·전용 규모를 보면, 2023년 168억 5,200만원(40건), 2024년 372억 2,500만원(76건), 2025년 425억 5,400만원(45건)으로 금액 기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건수 또한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전용 등에 의존하는 재정운용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

[최근 4년간 형사보상금 예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 구분 | 예산액 |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현액 (B) | 집행액 (C) | 집행률 (C/A) | 집행률 (C/B)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2022 | 40,000 | 40,000 | 2,323 | - | 42,323 | 42,323 | 105.8 | 100.0 | - |
| 2023 | 40,000 | 40,000 | 16,852 | - | 56,852 | 56,851 | 142.1 | 100.0 | - |
| 2024 | 40,000 | 40,000 | 37,225 | - | 77,225 | 77,219 | 193.0 | 100.0 | 6 |
| 2025 | 42,000 | 42,000 | 42,554 | 42,900 | 127,454 | 127,454 | 303.5 | 100.0 | - |
| 합계 | 162,000 | 162,000 | 98,954 | 42,900 | 303,854 | 303,847 | - | - | 9 |

자료: 법무부

이는 형사보상금 지급액이 최근 재심 무죄 사건 증가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400억원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었고 2025년에도 420억원으로 소폭 증가에 그치는 등 예산 편성이 실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 내역]

(단위: 백만원)

| 목 | 세목 | 세사업 | 금액 | 예비비 배정 사유 |
|---|---|---|---|---|
| 310 | 01 | 형사보상 | 39,400 | 형사보상금 부족(2025.12. 2.) |
| 310 | 01 | 형사보상 | 3,500 | 형사보상금 부족(2025.12.23.) |
| 합 계 | | | 42,900 | |

자료: 법무부

[최근 3년간 형사보상금으로 이·전용 등 재원(목별)]

(단위: 건, 백만원)

| 목번호 | 목 | 2023년 | | 2024년 | | 2025년 | |
|---|---|---|---|---|---|---|---|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110** | **인건비** | **7** | **14,842 (88.1%)** | **26** | **32,969 (88.6%)** | **10** | **37,358 (87.8%)** |
| 210 | 물건비 | 10 | 712 | 14 | 1,918 | 20 | 1,370 |
| 220 | 여비 | 2 | 10 | 1 | 40 | - | - |
| 250 | 직무수행경비 | - | - | - | - | 1 | 100 |
| 260 | 연구용역비 | - | - | - | - | 1 | 20 |
| 310 | 보전금 | 6 | 295 | 7 | 376 | 4 | 139 |
| 320 | 민간이전 | 8 | 322 | 9 | 620 | - | - |
| 340 | 해외이전 | 1 | 163 | - | - | - | - |
| 420 | 건설비 | 1 | 139 | 1 | 70 | 1 | 2,200 |
| 430 | 유형자산 | 5 | 368 | 17 | 919 | 8 | 1,367 |
| 440 | 무형자산 | - | - | 1 | 315 | - | - |
| **합계** | | **40** | **16,852** | **76** | **37,225** | **45** | **42,554** |

자료: 법무부

이·전용 재원을 예산 비목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인건비(110)가 2023년 148억 4,200만원, 2024년 329억 6,900만원, 2025년 373억 5,800만원으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그런데 인건비 또한 근무 인원에게 지급이 사실상 의무화되는 경직적 지출항목이라는 점에서 직제 증원 및 정·현원차 감소 등이 발생할 경우 여유재원이 축소되어 과거와 같은 재원 활용이 어려울 수 있음.

2025년도와 같이 예비비를 활용하는 것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원 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취지를 감안할 때, 향후 반복적 예비비 활용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법무부는 형사보상금 지급 추세 및 사건 유형별 발생 구조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 실제 소요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본예산을 현실화하고, 예비비 및 이·전용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무죄 사건 중 일정 비율에서 검사의 수사상 과오가 인정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과정의 적정성을 제고하여 형사보상금 발생 자체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무죄 등 사건 평정 현황]

(단위: 건수, %)

|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평정대상 사건수 | 7,319 | 7,827 | 7,419 | 7,805 | 8,503 |
| 검사과오 인정 사건 수 | 905 | 758 | 707 | 788 | 878 |
| **과오 인정 비율** | **12.4** | **9.7** | **9.5** | **10.1** | **10.3** |

자료: 법무부

[형사보상금 지급 현황(2021~2025년)]

(단위: 건, 백만원)

| 보상대상 | |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피고인 보상 | 구속사건무죄 | 건수 | 229 | 232 | 246 | 252 | 290 |
| | | 지급액 | 9,224 | 7,604 | 6,319 | 8,908 | 9,606 |
| | 재심사건무죄 | 건수 | 1,074 | 626 | 590 | 990 | 1,065 |
| | | 지급액 | 28,621 | 28,130 | 43,684 | 59,207 | 108,433 |
| 피의자보상 | | 건수 | 53 | 57 | 44 | 56 | 10 |
| | | 지급액 | 1,494 | 1,163 | 969 | 1,532 | 96 |
| 무죄비용보상 | | 건수 | 2,058 | 2,068 | 2,076 | 2,207 | 2,534 |
| | | 지급액 | 5,049 | 5,427 | 5,880 | 7,571 | 9,319 |
| **합계** | | **건수** | **3,414** | **2,983** | **2,956** | **3,505** | **3,899** |
| | | **지급액** | **44,387** | **42,323** | **56,851** | **77,218** | **127,454** |

자료: 법무부

# 6. 조은석 특별검사: 불필요한 예비비 추가 배정 지양 필요

## 가. 개 요

**‘조은석 특별검사’** 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수행된 사업으로, 2025년도 예비비로 총 104억 700만원이 배정되어 이 중 65억 7,300만원이 집행(집행률 63.2%)되고 38억 3,400만원이 불용되었음.[14)]

[2025년도 조은석 특별검사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 (C) | 예비비 (D) | 예산현액 (A+B+C+D)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 조은석 특별검사 | - | - | - | ±619 | 10,407 | 10,407 | 6,573 | - | 3,834 | -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조은석 특별검사 사업은 1차 예비비 배정 이후 보수 및 기타직보수, 일반수용비 등의 집행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세목에 2차 및 3차 예비비를 추가로 배정받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므로, 추후 법무부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조은석 특별검사 사업은 2025년 6월「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제정 및 특별검사 임명을 계기로 추진되어 초기 준비기간을 거쳐 수사 및 공소유지 단계까지 단기간 내 집중적으로 수행된 사업으로서 수사기간 연장에 따라 1차, 2차 및 3차에 걸쳐 예비비가 추가적으로 배정되었음.

14) 일반회계-조은석 특별검사(1339-309)(검찰국)

[2025년 조은석 특별검사 예비비 배정사유]

(단위: 백만원)

| 구 분 | 배정일시 | 배정금액 | 배정사유 |
|---|---|---|---|
| 제1차 | 2025.07.09. | 8,749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조은석 특별검사 1차 연장 수사기간(2025.6.12.~2025.10.15.)까지에 해당하는 운영경비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2025.7.8.) |
| 제2차 | 2025.11.19. | 1,585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조은석 특별검사 2차 연장 수사기간(2025.10.16.~2025.11.14.) 운영경비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2025.11.18.) |
| 제3차 | 2025.12.11. | 73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조은석 특별검사 공소유지기간(2025.12.15.~2025.12.31.) 운영경비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2025.12.9.) |
| **합 계** | | **10,407** | |

자료: 법무부

조은석 특별검사 사업은 연도 중 특별검사 활동이 개시됨에 따라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하였는데, 특별검사의 활동과 관련된 인원과 기간 등이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고, 과거 특별검사 조직 운영 사례도 다수 존재하므로, 법무부는 이를 감안하여 적정 규모의 예비비를 배정·집행할 필요가 있었음.[15)]

15)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8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10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에게 소속 특별수사관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사기간 등) ①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사 준비기간 중이라도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하여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②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검사는 제3항의 수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 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배정된 예비비 104억 700만원 중 집행액은 65억 7,300만원으로, 집행률이 63% 수준에 머물러 38억 3,400만원의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특히 1차 예비비 배정 이후에도 보수 및 기타직보수, 일반수용비 등 여러 세목에서 집행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세목에 대하여 2차 및 3차 예비비가 추가로 배정된 것은 예비비 사용의 필요성 및 규모 산정이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수(110-01) 항목의 예산현액 29억 3,300만원 중 17억 1,800만원이 불용되었음을 감안하면, 2차에 배정된 보수(110-01) 6억 1,000만원은 필요하지 않았음. 이는 기타직 보수(110-02), 일반수용비(210-01) 및 고용부담금(320-09) 등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음.

[2025년도 조은석 특별검사 결산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세사업 명 | 이·전용 등(A) | 예비비 | | | 예산현액 (A+B+C+D) | 집행액 | 불용액 |
|---|---|---|---|---|---|---|---|
| | | 제1차 배정(B) | 제2차 배정(C) | 제3차 배정(D) | | | |
| . 조은석 특별검사 | | | | | | | |
| **- 보수(110-01)** | **△559** | **2,882** | **610** | | **2,933** | **1,215** | **1,718** |
| **- 기타직보수(110-02)** | | **437** | **114** | | **551** | **315** | **236** |
| - 연가보상비(110-05) | | | 11 | 26 | 37 | 9 | 28 |
| **- 일반수용비(210-01)** | **△39** | **1,358** | **9** | **5** | **1,333** | **549** | **784** |
|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 134 | | | 134 | 112 | 22 |
| - 특근매식비(210-05) | | 202 | | | 202 | 75 | 127 |
| - 일숙직비(210-06) | 2 | | 2 | | 3 | 3 | 0 |
| - 임차료(210-07) | 166 | 925 | 287 | 3 | 1,381 | 1,378 | 4 |
| - 유류비(210-08) | | 11 | | | 11 | 7 | 4 |
| - 관리용역비(210-15) | △18 | 18 | | | 0 | 0 | 0 |
| - 기타운영비(210-16) | 6 | 21 | 7 | 1 | 35 | 35 | 0 |
| - 국내여비(220-01) | | 496 | | | 496 | 65 | 431 |
| - 특수활동비(230-00) | 399 | 1,345 | 399 | | 2,145 | 2,126 | 19 |
| - 사업추진비 (240-01) | 42 | 142 | 42 | 7 | 234 | 231 | 3 |
| - 직책수행경비(250-02) | | 148 | 20 | | 168 | 64 | 104 |
| - 특정업무경비(250-03) | | 31 | 7 | 31 | 69 | 39 | 30 |
| - 배상금(310-02) | △3 | 3 | | | 0 | 0 | 0 |
| - 기타보전금(310-04) | 3 | | 1 | | 3 | 3 | 0 |
| - 구호및교정비(320-06) | | 3 | | | 3 | 0 | 3 |
| **- 고용부담금(320-09)** | | **352** | **46** | | **398** | **122** | **275** |
| **- 공사비(420-03)** | | **241** | **30** | | **271** | **225** | **45** |
| **합 계** | **-** | **8,749** | **1,585** | **73** | **10,407** | **6,573** | **3,834** |

자료: 법무부

또한 일반수용비는 13억 3,300만원의 예산현액 중 5억 4,900만원이 집행되어 절반 이상이 불용되고, 국내여비 역시 4억 9,600만원 중 6,500만원만 집행되는 등 주요 운영비 항목에서 집행률이 현저히 낮았음.

더군다나 인건비에서 운영비 및 특수활동비 등으로 5억 6,000만원이 전용되어 집행되고 관리용역비(210-15)를 일반수용비(210-01)로, 배상금(310-02)을 기타보전금(310-04)으로 각각 조정하는 등 세목 간 조정이 다수 발생한 점은 예비비 신청 단계에서 세목 분류의 적정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따라서 법무부는 향후 특별검사와 같이 한시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초기 단계에서 인력 규모, 수사 범위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예비비 배정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예비비 추가 배정 시에도 기존 예산의 집행 가능성 및 잔액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 있음.

[2025년 조은석 특별검사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날짜) | ~에서 | | 금액 | ~으로 | | 이·전용 등 사유 |
|---|---|---|---|---|---|---|
| |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 목-세목 코드 | |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 목-세목 코드 | |
| 세목조정 (2025.7.22.) | 조은석 특별검사 (1339-309) | 210-15 | 18 | 조은석 특별검사 (1339-309) | 210-01 |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하기 위하여 관리용역비를 일반수용비로 세목조정 |
| 세목조정 (2025.11.19.) | 조은석 특별검사 (1339-309) | 310-02 | 3 | 조은석 특별검사 (1339-309) | 310-04 | 310-04를 310-02로 잘못 편성하여 적합한 비목 집행을 위한 세목조정 |
| 승인전용 (2025.11.24.) | 조은석 특별검사 (1339-309) | 110-01 | 559 | 조은석 특별검사 (1339-309) | 210-06 | 3차 연장 수사기간 (2025.11.15.~2025.12.14.)에 해당하는 예비비 편성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실질 집행을 위한 승인전용 |
| | | | | | 210-07 | |
| | | | | | 210-16 | |
| | | | | | 230-00 | |
| | | | | | 240-01 | |
| 세목조정 (2025.12.18.) | 조은석 특별검사 (1339-309) | 210-01 | 56 | 조은석 특별검사 (1339-309) | 210-07 | 임차료 집행 부족분을 일반수용비에서 세목조정 |

자료: 법무부

# 7.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사업: 국제투자분쟁 사건별 소요비용에 대한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 가. 개 요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사업은 외국인 투자자의 국가 분쟁 해결(ISDS: 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제기에 대응하여 국가 재정손실을 방지하고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77억 3,100만원 중 77억 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7%)되고 2,500만원이 불용되었음.[16)]

[2025년도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비비 (D) | 예산현액 (A+B+C+D)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 4,717 | 4,717 | - | 4 | 3,010 | 7,731 | 7,706 | - | 25 | 4,723 |
| 론스타 | 1,984 | 1,984 | - | 191 | 3,010 | 5,185 | 5,185 | - | - | 1,984 |
| 쉰들러 | 1,227 | 1,227 | - | △1,091 | - | 136 | 136 | - | - | 1,227 |
| 민봉진 | 845 | 845 | - | △840 | - | 5 | 5 | - | - | 845 |
| 다야니2차 | 441 | 441 | - | 1,731 | - | 2,172 | 2,172 | - | - | 441 |
|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 | 72 | 72 | - | 13 | - | 85 | 85 | - | - | 72 |
| 전문위원 인건비 | 148 | 148 | - | - | - | 148 | 123 | - | 25 | 154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국제투자분쟁 사건 대응 예산은 사건별 집행 규모의 편차가 크고 내역사업 간 대규모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예산 편성은 실소요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법무부는 사건별 소요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16) 일반회계-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1431-303)(국제법무국)

이 사업은 론스타, 쉰들러, 민봉진, 다야니2차 등 주요 국제투자분쟁 사건 대응 과정에서 일반수용비를 중심으로 대다수 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며, 특히 2025년에는 론스타 사건 대응을 위하여 예비비 30억 1,000만원이 추가 배정되는 등 국내·외 법률자문비용으로 집행되고 있음.

[기능별·비목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세사업 명 | 2025년 | | | | | | | | 2026년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불용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론스타** | **1,984** | **1,984** | **-** | **191** | **3,010** | **5,185** | **5,185** | **-** | **1,984** |
| - 일반수용비(210-01)[17] | 1,954 | 1,954 | - | 191 | 3,010 | 5,155 | 5,155 | - | 1,954 |
| - 국외여비(220-02) | 25 | 25 | - | - | - | 25 | 25 | - | 25 |
| - 사업추진비(240-01) | 5 | 5 | - | - | - | 5 | 5 | - | 5 |
| **· 쉰들러** | **1,227** | **1,227** | **-** | **△1,091** | **-** | **136** | **136** | **-** | **1,227** |
| - 일반수용비(210-01)[18] | 1,222 | 1,222 | - | △1,091 | - | 131 | 131 | - | 1,222 |
| - 사업추진비(240-01) | 5 | 5 | - | - | - | 5 | 5 | - | 5 |
| **· 민봉진** | **845** | **845** | **-** | **△840** | **-** | **5** | **5** | **-** | **845** |
| - 일반수용비(210-01)[19] | 840 | 840 | - | △840 | - | - | - | - | 840 |
| - 사업추진비(240-01) | 5 | 5 | - | - | - | 5 | 5 | - | 5 |
| **· 다야니2차** | **441** | **441** | **-** | **1,731** | **-** | **2,172** | **2,172** | **-** | **441** |
| - 일반수용비(210-01)[20] | 436 | 436 | - | 1,731 | - | 2,167 | 2,167 | - | 436 |
| - 사업추진비(240-01) | 5 | 5 | - | - | - | 5 | 5 | - | 5 |

자료: 법무부

17) 2025년도 론스타 예산 편성 세부내역: 국내로펌 법률자문 6억 4,870만원(453,000원*8명*179시간), 국외로펌 법률자문 11억 7,902만원($689*8명*155시간), 중재기관 납입 등 기타비용 1억 2,600만원(63,000천원*2회)

18) 2025년도 쉰들러 예산 편성 세부내역: 국내로펌 법률자문 4억 7,565만원(453,000원*7명*150시간), 국외로펌 법률자문 7억 4,651천원($689*8명*98.14시간)

19) 2025년도 민봉진 예산 편성 세부내역: 국내로펌 법률자문 2억 4,643만원(453,000원*8명*68시간), 국외로펌 법률자문 5억 9,331천원($689*8명*78시간)

[예비비 배정사유]

| 구 분 | 배정일시 | 배정금액 | 배정사유 |
|---|---|---|---|
| 일반<br>예비비 | 2025.12.04 | 3,010백만원<br>・국내정부대리로펌 555<br>・국외정부대리포펌 2,455 | 론스타 측이 추가 서면 및 증거 제출 등 공세를 강화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고자 예산 편성 시 예측할 수 없었던 추가 예산 소요 발생(2025.12.4.) |

자료: 법무부

2025년도 집행 세부내역을 보면, 쉰들러 사건은 12억 2,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1억 3,600만원만 집행되어 집행률이 11.1%로 저조하고, 민봉진 사건 역시 8억 4,500만원 중 500만원만 집행되고 8억 4,000만원은 감액 조정되었음. 또한 다야니2차 사건은 당초 4억 4,100만원에서 17억 3,100만원이 증액되어 21억 7,200만원이 집행되는 등 내역사업 간 대규모 조정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사건별 소요예산에 대한 사전 예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로 보임.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다야니2차 사건 관련 집행된 일반수용비 21억 6,700만원 중 대부분은 2024년 발생한 법률자문비용으로, 사건 상대방의 공세 수준 심화 등의 이유로 법률자문이 통상적인 수준에 비해 많이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2024년 대규모 미지급금이 발생하였음에도 2025예산은 오히려 2024년 6억 4,900만원 대비 감액된 4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는 등 실소요와 예산 편성이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

이와 같이 특정 사건에서 과다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다른 사건에서는 대규모 감액이 발생하는 구조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건 진행 상황 및 비용 소요에 대한 정밀한 추계에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이는 재정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 사업의 각 사건별 2026년도 예산도 2025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되어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시에도 법무부의 사건별 소요 비용 추계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법무부는 향후 예산안 편성 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건별 소요비용에 대한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0) 2025년도 다야니2차 예산 편성 세부내역: 국내로펌 법률자문 1억 1,712만원(507,000원*7명*33시간), 국외로펌 법률자문 1억 9,285만원($713*7명*28시간), 중재기관 납입 등 기타비용 1억 2,600만원(63,000천원*2회)

[론스타 및 다야니2차 사업 법률자문비용 집행현황]

| 론스타 | | | 다야니2차 | | |
|---|---|---|---|---|---|
| 시기 | 지급내용 | 지급액(원) | 시기 | 지급내용 | 지급액(원) |
| 2025.01.14. | 법률자문료(부가세) | 71,047,220 | 2025.02.21. | 법률자문료 | 220,140,120 |
| 2025.03.17. | 법률자문료 | 133,798,830 | 2025.03.21. | 법률자문료 | 532,938,490 |
| 2025.03.18. | 법률자문료 | 807,553,900 | 2025.04.25. | 법률자문료 | 19,967,240 |
| 2025.04.15. | 법률자문료(부가세) | 80,755,390 | 2025.05.29. | 법률자문료 | 290,894,450 |
| 2025.04.29. | 법률자문료 | 48,402,970 | 2025.06.24. | 법률자문료 | 234,431,550 |
| 2025.04.30. | 법률자문료 | 44,709,730 | 2025.07.03. | 법률자문료 | 45,416,910 |
| 2025.05.29. | 법률자문료 | 25,720,420 | 2025.07.16. | 법률자문료 | 380,848,380 |
| 2025.06.04. | 법률자문료 | 203,897,570 | 2025.12.19. | 법률자문료 | 442,258,260 |
| 2025.06.20. | 법률자문료 | 57,097,480 | - | - | - |
| 2025.07.16. | 법률자문료(부가세) | 24,860,730 | - | - | - |
| 2025.10.22. | 법률자문료 | 503,047,000 | - | - | - |
| 2025.12.17. | 법률자문료 | 2,490,607,400 | - | - | - |
| 2025.12.18. | 법률자문료 | 519,462,600 | - | - | - |
| 2025.12.18. | 법률자문료 | 39,922,820 | - | - | - |
| 2025.12.24. | 법률자문료 | 104,079,000 | - | - | - |
| 합 계 | | 5,154,963,060 | 합 계 | | 2,166,895,400 |

자료: 법무부

# 8. 갱생보호활동 사업: 전남지부 기술교육원 공사일정 지연 방지 필요

## 가. 개 요

**‘갱생보호활동’** 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갱생보호대상자[21]에 대한 생활지원, 취업지원, 가족지원, 상담지원, 교육지원을 통해 갱생보호대상자의 자립기반 마련과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468억 5,600만원이 전액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민간갱생보호법인에 교부되었음.[22]

[2025년도 갱생보호활동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갱생보호활동 | 46,856 | 46,856 | - | - | 46,856 | 46,856 | - | - | 48,468 |
| 한국법무보호 복지공단 | 45,101 | 45,101 | - | - | 45,101 | 45,101 | - | - | 46,641 |
| 민간갱생 보호법인 | 1,755 | 1,755 | - | - | 1,755 | 1,755 | - | - | 1,827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전남지부 기술교육원 신축’ 사업의 2025년도 예산 대부분이 이월되고 지역주민 반대 등에 따라 건축 일정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지역주민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21)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22) 일반회계-갱생보호활동(1633-300)(범죄예방정책국)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조선업계 구인난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2024년부터 목포시에 전남지부 기술교육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 기술교육원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사업비 63억 6,400만원을 투여하여 조선업 관련 용접·금속도장 등의 기술교육을 하려는 것으로 본관동(사무동·생활관) 및 교육원동을 신축하는 사업인데 2025년도 예산은 22억 5,000만원 중 4,500만원이 집행되고 22억 500만원은 이월되었음.

[전남지부 기술교육원 건립 공사 개요]

| | | | |
|---|---|---|---|
| **소재지** | 전남 목포시 연산동 775-1 외 6필지 | **대지면적** | 3,305㎡ 999.8평 |
| **공사규모** | 본관동(3층), 교육원동(1층) | **공사기간** | 2년(‘25년 착공, ‘26년 준공) |
| **지역지구** | 산업시설용지 · 공공시설용지 | **용도** | 갱생보호시설 |
| **건축면적** | 739.9㎡ 224평 | **건물연면적** | 1,558.4㎡ 472평 |
| **총예산** | 6,364백만원(2024년 1,479백만원, 2025년 2,250백만원, 2026년 2,635백만원) | | |

자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5년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지부 기술교육원 건립 결산]

(단위: 백만원, %)

| 사업시행 주체 (기관명) | 부처 | | |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 | | | | | |
|---|---|---|---|---|---|---|---|---|---|---|
| | 예산 | | 집행액 | 교부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 현액 | 집행액 (B) | 이월액 | 불용액 | 실집행률 (B/A) |
| | 본예산 | 추경 (A) | | | | | | | | |
| 한국법무보호 복지공단 | 45,101 | 45,101 | 45,101 | 45,101 | - | 45,101 | 42,896 | 2,205 | - | 95.1 |
| **전남지부 기술교육원 건립** | **2,250** | **2,250** | **2,250** | **2,250** | **-** | **2,250** | **45** | **2,205** | **-** | **2.0** |

자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공사비 이월 사유는 조달 낙찰된 건축 시공사의 법정관리(기업회생) 개시에 따라 계약 지연 및 계약보증증권 발급 불가로 인해 선급금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낙찰 1순위를 배제하고 2순위 업체 계약을 검토하였으나 조달청 확인 결과 낙찰된 시공사의 적격심사 통과로 계약 배제가 불가능한 상황임에 따라 이월 조치를 하였다고 공단은 설명하고 있음.

이후 공단은 낙찰된 시공사와 협의를 통해 시공사의 현금보증으로 계약 체결을 완료하여 기성금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었으나, 2026년 1월에 지역 주민의 건립 반대 민원 발생 및 목포시청의 공사중지 요청이 있었고, 동년 2월에는 지역 주민 대표 면담과 기술교육원 건립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민원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지역 주민 민원이 다시 발생하여 공사가 일시적으로 중지되는 등 기술교육원 건립에 어려움이 있었음.

특히 기술교육원은 산업시설용지 내에 건립되는 갱생보호시설로서 일반적인 건축공사에 비해 소음·분진 등 환경적 요인보다 시설 입지 자체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가 민원의 주요 원인으로 보이는 만큼, 공단은 지역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설명을 통해 시설의 공익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지역사회의 우려를 완화하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시설 운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전남지부 기술교육원 공사 추진 현황]

| 일자 | 내용 | 비고 |
|---|---|---|
| 2024. 8. 9. | 건축 대지 매입 계획(안) 수립 | 공단→법무부 보고 |
| 2024. 8. 20. | 건립 기본 계획(안) 수립 | - |
| 2024. 8. 26. | 기본설계 및 실시용역 입찰 | - |
| 2024. 9. 10. | 토지 매입 | - |
| 2024. 10. 31. | 공사 기본설계 계획(안) 수립 | - |
| 2025. 8. 22. | BF예비 인증서 교부 | 조치사항 발생으로 인증 지연 |
| 2025. 9. 1. | 신축공사 인허가 신청 | 공단→목포시청 |
| 2025. 9. 3. | 건축 입찰 공고 | - |
| 2025. 11. 4. | 신축공사 허가 결정 통보 | 목포시청→공단 |
| 2025. 11. 27. | 낙찰자 선정 | 시공사 법정관리로 낙찰자 선정 지연 |
| 2025. 12. 17. | 건축 시공사 계약 체결 | - |
| 2025. 12. 24. | 공사 착공신고 | 공단→목포시청 |
| 2026. 1. 10. | 공사 착공 | - |
| 2026. 1. 12. | 공종별 시공 진행 | - |
| **2026. 1. 22.** | **지역 주민 민원 발생(1~3차)** | **목포시청 공사중지 요청→공단** |
| 2026. 2. 12. | 지역 주민 대표 면담 | - |
| 2026. 2. 25. | 공단 건립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 장소: 연산동행복복지센터 |
| **2026. 3. 4.** | **지역 주민 민원 발생(4차)** | **목포시청 공사중지 재요청→공단** |
| 2026. 3. 9. | 건립 공사 정상추진 관련 협조공문 발송 | 공단→목포시청 |
| 2026. 3. 10. | 토목·건축공사 재개 | - |

자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지부 기술교육원 연도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 예산 내역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2024년 | 기본설계 및 실시용역비 | 173 | - | 173 | 173 | - | - |
| | 토지매입 | 1,306 | - | 1,306 | 971 | - | 335 |
| | **합계** | **1,479** | **-** | **1,479** | **1,144** | **-** | **335** |
| 2025년 | 공사비 | 1,368 | - | 1,368 | - | 1,368 | - |
| | 공사감리용역 | 221 | - | 221 | - | 221 | - |
| | 관급자재비 | 615 | - | 615 | 1 | 614 | - |
| | 기타(행정수수료 등) | 46 | - | 46 | 44 | 2 | - |
| | **합 계** | **2,250** | **-** | **2,250** | **45** | **2,205** | - |
| 2026.6월 | 공사비 | 1,756 | 1,368 | 3,124 | 161 | | - |
| | 공사감리용역 | 56 | 221 | 277 | - | | - |
| | 관급자재비 | 782 | 614 | 1,396 | 97 | | - |
| | 기타(행정수수료 등) | 41 | 2 | 43 | - | | - |
| | **합 계** | **2,635** | **2,205** | **4,840** | **258** | | **-** |

자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9. 전자감독 사업: 부처 간 협업체계 강화 및 인력 운용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가. 개 요

**‘전자감독’** 사업은 성폭력범죄자 등 고위험 강력사범에 대한 위치 정보를 24시간 확인·감독하고 실시간으로 추적·관리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365억 4,700만원 중 358억 7,8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2%)되고 6억 6,900만원이 불용되었음.[23)]

[2025년도 전자감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B )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전자감독 | 36,847 | 36,847 | - | △300 | 36,547 | 35,878 | - | 669 | 37,266 |
| 전자감독·신상정보 등록 전담인력 운영 | 10,082 | 10,082 | - | △304 | 9,778 | 9,248 | - | 530 | 11,212 |
| 전자감독·신산정보 등록 운영 | 6,456 | 6,456 | - | 620 | 7,076 | 7,076 | - | 1 | 6,940 |
| 장치 및 시스템 개선 | 19,201 | 19,201 | - | △617 | 18,584 | 18,456 | - | 128 | 17,865 |
| 사업지원경비 | 1,109 | 1,109 | - | - | 1,109 | 1,099 | - | 10 | 1,249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전자감독 대상자와 스토킹 잠정조치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특정범죄 재범도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법무부는 부처 간 협업체계 강화와 전자감독 전담인력 확충 등을 통하여 전자감독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3) 일반회계-전자감독(1635-301)(범죄예방정책국)

전자감독 제도는「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특정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24] 당초 성폭력범죄자를 중심으로 적용되었으나 이후 살인·강도·스토킹 범죄 등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특히「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가 도입되면서 전자감독의 정책적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음.

최근 5년간 전자감독 대상자 현황을 보면 전체 대상자는 2021년 4,316명에서 2025년 4,827명, 2026년 3월 기준 5,052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스토킹 잠정조치 대상자는 2024년 22명에서 2025년 103명, 2026년 3월 기준 191명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일반사범 가석방 및 전자보석 대상자도 증가하고 있어 전자감독 제도의 관리 범위와 업무 부담이 확대되는 추세임.

[2021년~2026년 3월 전자감독 대상자 현황]

(연도말 현재원 기준, 단위: 명)

| 구 분 |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 3. |
|---|---|---|---|---|---|---|---|
| 계 | | 4,316 | 4,421 | 4,188 | 4,474 | 4,827 | 5,052 |
| 특정범죄 | 성폭력 | 2,597 | 2,608 | 2,621 | 2,594 | 2,576 | 2,554 |
| | 유괴 | 15 | 9 | 8 | 8 | 5 | 5 |
| | 살인 | 508 | 540 | 567 | 498 | 541 | 526 |
| | 강도 | 115 | 138 | 125 | 124 | 119 | 116 |
| | 스토킹 | - | - | 0 | 3 | 9 | 12 |
| 일반사범(가석방) | | 861 | 875 | 551 | 821 | 985 | 1,138 |
| 전자보석 | | 220 | 251 | 316 | 404 | 489 | 510 |
| 스토킹 잠정조치 (전자장치 부착) | | - | - | - | 22 | 103 | 191 |

자료: 법무부

한편 전자장치 부착자의 특정범죄 재범 현황을 보면, 2021년 74명, 2022년 45명, 2023년 49명, 2024년 43명, 2025년 41명으로 재범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스토킹 범죄 재범은 2024년 6명에서 2025년 8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사 · 재판 · 집행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장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불구속재판을 확대하고,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정범죄"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이는 전자감독 제도가 일정 부분 재범 억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위험 징후 탐지 및 대응 체계에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임.

[전자장치 부착자 특정범죄(재범) 현황: 2021~2025년]

(단위: 건)

|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인원(계)** | **74** | **45** | **49** | **43** | **41** |
| 성폭력 | 65 | 41 | 44 | 28 | 30 |
| 유괴 | 1 | 0 | 0 | 4 | 0 |
| 살인 | 2 | 2 | 3 | 2 | 2 |
| 강도 | 6 | 2 | 2 | 3 | 1 |
| 스토킹 | - | - | - | 6 | 8 |

자료: 법무부

특히 최근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의 경우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던 피해자가 전자발찌를 착용한 스토킹 가해자에 의해 피살된 사건으로,[25] 전자감독 대상자가 피해자 주변을 반복적으로 이동하는 등 위험 징후가 존재하였음에도 법무부와 경찰 간 정보공유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대응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부처간 협업의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볼 수 있음.

이처럼 경찰과 법무부 간 전자감독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아 대상자의 범죄 위험성이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부처 간 협업체계 미흡이 전자감독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26]

아울러 전자감독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인당 관리인원은 2023년 18.2명에서 2025년 20.7명, 2026년 3월 기준 20.3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OECD 주

25)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2026.3)

26)「스토킹 행위자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이슈와 논점)」국회입법조사처, 2026.04.28.

> 실제 스토킹 행위자 감시 및 행정관리는 법무부 보호관찰소가, 가해자 현장 체포 및 피해자 신변보호는 경찰이 하고 있다. 경찰은 주거지 부근에 행위자가 나타나면 관제센터에서 경보 발령을 받아 바로 출동하여 긴급조치를 취하는데 행정적 부담이 커지면서 이러한 구조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스토킹 행위자 전자감독체계는 잠정조치 시행 여부 등을 총괄적으로 감시하고, 행위자의 잠정조치 위반, 재범과 위해성 등을 밀도있게 모니터링하는 기구나 체계가 일원화 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 통계관리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요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현장에서는 담당 인력 1인당 다수 사건을 동시에 관리함에 따라 개별 대상자에 대한 정밀한 모니터링과 위험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임.[27]

[최근 5년간 전자감독 전담인력 현황]

(단위: 명)

| 구 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
| 지도감독 전담인력* | 242 | 255 | 225 | 223 | 223 | 234 |
| 1인당 관리인원 | 17.7 | 17.1 | 18.2 | 19.5 | 20.7 | 20.3 |
| 1대1 전담 인력 | 30 | 73 | 98 | 100 | 100 | 161 |

주 1) *지도감독 전담인력 : 행안부 배정인원 521명에서 1:1 전담, 수사, 잠정조치 전담을 제외한 인원
2) 2026년 5월말 기준
자료: 법무부

따라서 전자감독 정보와 수사·피해자 보호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활용할 수 있는 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28]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위험성 평가 및 대응 체계를 보다 정교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전자감독 대상자 증가에 대응하여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1인당 관리인원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전자감독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7) 해외 주요국 전자감독 인력 현황

(단위: 건, 명)

| 구분 | 사건수 | 전담인력 | 직원 1인당 대상자 수 |
|---|---|---|---|
| 영국(2021) | 13,963 | 2,805 | 5 |
| 미국 텍사스주(2022) | 3,789 | 550 | 7 |
| 필란드(2022) | 263 | 31 | 8 |
| 뉴질랜드(2022) | 998 | 129 | 8 |
| 호주 NSW주(2022) | 1,100 | 120 | 9 |

자료: 법무부

28) 법무부는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발생 후 법무부·경찰청 업무협의 등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 및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① 법무부·경찰청 정보공유 및 피해자 보호 강화
② 법무부·경찰청 잠정조치 전자장치 부착 연계시스템 구축
법무부 위치추적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을 연계하여 경찰에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전달함으로써 출동 경찰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를 지도상 파악하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조치가 가능하도록 개선 예정임(2026. 7. 개발 착수, 2026. 12. 완료 예정)
※ (기존) 문자 형식으로 가해자, 피해자 위치 전달 → (개선) 시스템 연계를 통한 실시간 위치 제공
③ 스토킹 등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제도 시행
스토킹 등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접근 위치와 동선을 알려주는 제도 시행(2026. 6. 24. 시행)

# 10. 특별감찰활동 사업: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비용 최소화 및 사무실 활용방안 마련 필요

## 가. 개 요

**‘특별감찰관활동’** 사업은 「특별감찰관법」[29]에 따라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 등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① 인건비(1802-150), ② 기본경비(1818-250), ③ 특별감찰활동(1831-300) 등 총 3개의 세부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8억 7,400만원 중 7억 6,100만원이 집행(집행률 87.1%)되고 1억 1,300만원이 불용되었음.[30]

[2025년도 특별감찰관활동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특별감찰관활동 | 874 | 874 | - | △303<br>303 | 874 | 761 | - | 113 | 915 |
| · 특별감찰관인건비 (1802-150) | 232 | 232 | - | △189 | 43 | - | - | 43 | 259 |
| · 특별감찰관기본경비 (1818-250) | 238 | 238 | - | △114 | 124 | 55 | - | 69 | 252 |
| · 특별감찰활동 (1831-300) | 404 | 404 | - | 303 | 707 | 706 | - | 1 | 404 |

자료: 법무부

## 나. 검토의견

**특별감찰관의 공석 장기 상태가 지속되면서 실질적인 사업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지출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법무부는 사무실 관리비용 최소화 및 공간 활용방안 마련 등에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음.**

29) 「특별감찰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0) 일반회계-특별감찰관인건비(1802-150), 특별감찰관기본경비(1818-250), 특별감찰활동(1831-300)(특별감찰관)

특별감찰관은 2014년「특별감찰관법」제정·시행으로 제도가 도입된 이후 활동하고 있었으나, 2016년 9월 특별감찰관 사임 이후 현재까지 장기간 공석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실질적인 감찰활동은 수행되지 못하고 조직 유지·관리 기능만 수행되고 있음.

[최근 4년간 특별감찰관활동 결산(2022~2025년)]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2년 | | | 2023년 | | | 2024년 | | | 2025년 | | |
|---|---|---|---|---|---|---|---|---|---|---|---|---|
| | 예산액 (A) | 집행액 (B) | 차이 (B-A) | 예산액 (A) | 집행액 (B) | 차이 (B-A) | 예산액 (A) | 집행액 (B) | 차이 (B-A) | 예산액 (A) | 집행액 (B) | 차이 (B-A) |
| 인건비 | 266 | - | △266 | 265 | - | △265 | 272 | - | △272 | 232 | - | △232 |
| 기본경비 | 333 | 100 | △233 | 333 | 98 | △235 | 238 | 96 | △142 | 238 | 55 | △183 |
| 특별감찰활동 | 399 | **519** | 120 | 399 | **530** | 131 | 404 | **546** | 142 | 404 | **706** | 302 |

자료: 법무부

특별감찰관이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4년간 특별감찰활동비는 2022년 5억 1,900만원, 2023년 5억 3,000만원, 2024년 5억 4,600만원, 2025년 7억 600만원이 집행되었음. 이는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기 위한 예산만 집행되고 있음에도 임차료 상승 등에 따라 집행액이 증가한 것에 기인함.

[최근 4년간 특별감찰관활동 사업 결산(2022~2025년)]

(단위: 백만원, %)

| 연도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산 현액(B) | 집행액 (C) | 집행률 (C/A) | 집행률 (C/B)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 2022 | 399 | 399 | - | 127 | 526 | 519 | 130.1 | 98.7 | - | 7 |
| 2023 | 399 | 399 | - | 138 | 537 | 530 | 132.9 | 98.8 | - | 7 |
| 2024 | 404 | 404 | - | 143 | 547 | 546 | 135.1 | 99.8 | - | 1 |
| 2025 | 404 | 404 | - | 303 | 707 | 706 | 174.8 | 99.9 | - | 1 |

자료: 법무부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임대차 계약 시 월 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하여 연간 3%~3.5% 인상률을 설정함에 따라 증액 집행된 것이며, 특별감찰관 임명 즉시 조직재구성 및 운영이 가능한 최소한의 업무 필수공간이 갖춰진 현 사무실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임.[31]

그러나 특별감찰관 공석으로 실질적인 사업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임에도 사무실 유지비만 매년 증액 집행되면서 예산 낭비가 심화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특별감찰관 공석 상태를 조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공실인 사무실 관리비용 최소화 및 공간 활용방안 마련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음.

[특별감찰관실 사무실 임차[32] 관련 비용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 임차보증금 | 임차료 | 관리비 | 합계 |
|---|---|---|---|---|
| 2022년 | - | 349 | 169 | 518 |
| 2023년 | - | 356 | 173 | 529 |
| 2024년 | - | 367 | 178 | 545 |
| 2025년 | - | 517 | 189 | 706 |

자료: 법무부

31) 법무부도 단기간 내 특별감찰관 임명이 불가한 상황을 전제로 청사시설 내 필수조직(운영지원팀)의 입주 가능 여부를 정부청사관리본부에 지속 확인 중이나 현재는 서울정부청사(본관, 별관) 등에 공실 부재하여 청사 이전 곤란 의견임.

32) 임대차계약 현황
- 임대목적물 :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7(청진동) Tower8 3층
- 임대면적 : (공용)118.4평, (전용)146.51평
- 임대기간 : 2025.1.11. ~ 2030.1.10.
- 임대보증금 : 362,838,650원
- 월 임대료 및 관리비(부가세 별도) : 40,531,230원 / 14,305,140원 (월 임대료 및 관리비는 임대차개시일로부터 매 1년마다 3.5% 또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전년 동월 대비 서울소비자물가지수 인상률 중 더 높은 비율만큼 인상)

# 11. 교도소 운영 기본경비: 반복적인 이·전용 발생에 따른 예산운용 개선 필요

## 가. 개 요

**‘교도소 운영 기본경비’** 는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도소 운영 기본경비**(총액)(7018-206)**’와 ‘교도소 운영 기본경비**(7018-256)**’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음.[33)]

2025년도 교도소 운영 기본경비(총액)(7018-206)는 예산현액 176억 4,100만원 중 174억 4,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9%)되고 1억 9,500만원이 불용되었음.

교도소 운영 기본경비(7018-256)는 예산현액 385억 1,300만원 중 382억 9,1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4%)되고 2억 2,2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년도 교도소 운영 기본경비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교도소 운영 기본경비(총액) (7018-206) | 19,855 | 19,855 | - | △2,214 | 17,641 | 17,446 | - | 195 | **20,190** |
| 교도소 운영 기본경비 (7018-256) | 36,257 | 36,257 | 42 | 2,214 | 38,513 | 38,291 | - | 222 | **36,435**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교도소 운영 기본경비(총액)(7018-206) 사업에서는 연례적으로 감액 전용 등이 발생하는 반면, 교도소 운영 기본경비(7018-256) 사업은 증액 전용 등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법무부는 실제 집행실적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연례적인 전용 등의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임.**

33) 일반회계-교도소 운영 기본경비[(7018-206)(총액), 7018-256](교정본부)

교도소 운영 총액 기본경비(7018-206)의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2022년 93.0%, 2023년 96.9%, 2024년 89.9%, 2025년 87.9%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기본경비(7018-256)의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2022년 109.2%, 2023년 104.1%, 2024년 104.7%, 2025년 105.6% 수준으로 매년 100%를 상회하고 있음.

[최근 4년간 교도소 운영 기본경비(총액)(7018-206) 결산]

(단위: 백만원, %)

| 연도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산 현액(B) | 집행액 (C) | 집행률 (C/A) | 집행률 (C/B)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 2022 | 18,782 | 18,782 | - | △1,207 | 17,575 | 17,461 | **93.0** | 99.3 | - | 114 |
| 2023 | 19,160 | 19,160 | - | △499 | 18,661 | 18,574 | **96.9** | 99.5 | - | 87 |
| 2024 | 19,280 | 19,280 | - | △1,867 | 17,413 | 17,340 | **89.9** | 99.6 | - | 73 |
| 2025 | 19,855 | 19,855 | - | △2,214 | 17,641 | 17,446 | **87.9** | 98.9 | - | 195 |

자료: 법무부

[최근 4년간 교도소 운영 기본경비(7018-256) 결산]

(단위: 백만원, %)

| 연도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산 현액(B) | 집행액 (C) | 집행률 (C/A) | 집행률 (C/B)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 2022 | 32,863 | 32,522 | 81 | 3,199 | 35,802 | 35,516 | **109.2** | 99.4 | 25 | 261 |
| 2023 | 34,042 | 34,042 | 25 | 1,704 | 35,771 | 35,451 | **104.1** | 99.1 | 209 | 111 |
| 2024 | 35,353 | 35,353 | 209 | 1,610 | 37,172 | 37,025 | **104.7** | 99.6 | 42 | 105 |
| 2025 | 36,257 | 36,257 | 42 | 2,214 | 38,513 | 38,291 | **105.6** | 99.4 | - | 222 |

자료: 법무부

이와 관련하여 두 세부사업 간 전용 및 내역변경 규모를 보면, 2022년 12억 7,900만원, 2023년 18억 7,900만원, 2024년 17억 4,000만원, 2025년 22억 1,400만원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재원이 총액 기본경비에서 비총액 기본경비로 이전되고 있음.[34]

34) 총액인건비제도란 예산당국이 각 부처별 인건비 예산의 총액만을 관리하고, 각 부처는 동 인건비 한도 내

[최근 4년간 교도소 운영 기본경비 간 전용 등 내역]

(단위: 백만원)

| 연 도 | ~에서 | 금액 | ~으로 |
|---|---|---|---|
| |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 |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
| 2022 | 교도소 운영 기본경비(총액) (7018-206) | 1,279 | 교도소 운영 기본경비 (7018-256) |
| 2023 | 교도소 운영 기본경비(총액) (7018-206) | 1,879 | 교도소 운영 기본경비 (7018-256) |
| 2024 | 교도소 운영 기본경비(총액) (7018-206) | 1,740 | 교도소 운영 기본경비 (7018-256) |
| 2025 | 교도소 운영 기본경비(총액) (7018-206) | 2,214 | 교도소 운영 기본경비 (7018-256) |

자료: 법무부

특히 2025년에는 국내여비 부족(4억 원), 유류비 부족(9억 1,400만원), 급식비 부족(9억 원) 등 운영경비 부족을 사유로 총 22억 1,400만원이 이전되는 등 세부사업 간 재원이 보완적으로 이동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구조는 한편에서는 집행부진으로 예산이 감액 조정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동일한 성격의 사업에서 재원이 부족하여 반복적으로 증액되는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업별 실제 집행 소요가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았음을 의미함.

또한 동일·유사 사업 간 재원을 반복적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은 예산의 목적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당초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악화시키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따

---

에서 인력의 규모와 종류의 결정, 기구의 설치 및 인건비 배분의 자율성을 보유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제도임.

▌총액인건비 대상경비 ▐

| 구분 | | 주요 내용 |
|---|---|---|
| 인건비 | 공통 | 인건비 세부사업(사업코드: 100~149)으로 편성된<br>보수(110-01목), 기타직보수(110-02목), 연가보상비(110-05목) |
| 운영경비 | 중앙행정기관 | 기본경비 세부사업(사업코드: 200~249)으로 편성된<br>상용임금(110-03목), 일용임금(110-04목), 특근매식비(210-05목), 일·숙직비(210-06목), 복리후생비(210-12목), 기타운영비(210-16목), 교수보직경비(250-01목), 직책수행경비(250-02목), 특정업무경비(250-03목), 고용부담금(320-09목) |

주: 1. 중앙책임운영기관(특허청)의 운영경비 범위는 중앙행정기관의 예를 적용
2. 기본경비를 총액인건비대상 기본경비와 비대상 기본경비로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국방부 등)에는 총액인건비 대상비목에서 운영경비를 제외

자료: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인사혁신처(2024. 3.),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

라서 법무부는 기본경비 예산을 세부사업 간 기능에 맞게 구분하여 편성하고, 실제 집행실적 등을 반영하여 예산을 재조정함으로써 재원 이동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교도소 운영 기본경비 간 이·전용 등 세부내역(2022~2025년)]

(단위: 백만원)

| 연도 | 구분 | ~에서 | | 금액 | ~으로 | | 이·전용 등 사유 |
|---|---|---|---|---|---|---|---|
| | |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 목-세목 코드 | |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 목-세목 코드 | |
| 2022 | 전용 | 교도소운영 기본경비(총액) (7018-206) | 210-12 | 350 | 교도소운영 기본경비 (7018-256) | 220-01 | 출장 증가, 결원 충원을 위한 이전 여비 등 부족 |
| | 전용 | | 210-16 | 30 | | 220-01 | |
| | 전용 | | 250-02 | 20 | | 220-01 | |
| | 내역변경 | | 210-12 | 500 | | 210-01 | 집단감염 방지를 위한 방역비용 증가 |
| | 내역변경 | | 210-12 | 300 | | 210-08 | 유류비 소요 증가 |
| | 내역변경 | | 210-05 | 29 | | 210-01 | 방역비용 증가 |
| | 내역변경 | | 210-12 | 50 | | 210-01 | |
| 2023 | 전용 | 교도소운영 기본경비(총액) (7018-206) | 210-12 | 700 | 교도소운영 기본경비 (7018-256) | 220-01 | 출장 증가, 결원 충원을 위한 신규 임용으로 이전 여비 부족 |
| | 전용 | | 210-06 | 15 | | 220-01 | |
| | 전용 | | 210-12 | 247 | | 220-01 | |
| | 내역변경 | | 210-12 | 800 | | 210-08 | 호송횟수 급증, 호송차량 유류비 부족 |
| | 내역변경 | | 210-05 | 52 | | 210-04 | 급식비 부족 |
| | 내역변경 | | 210-16 | 65 | | 210-04 | |
| 2024 | 전용 | 교도소운영 기본경비(총액) (7018-206) | 210-12 | 900 | 교도소운영 기본경비 (7018-256) | 220-01 | 국내 여비 부족 |
| | 내역변경 | | 210-05 | 60 | | 210-08 | 유류비 부족 |
| | 내역변경 | | 210-12 | 580 | | 210-08 | |
| | 내역변경 | | 210-16 | 200 | | 210-08 | |
| 2025 | 전용 | 교도소운영 기본경비(총액) (7018-206) | 210-16 | 400 | 교도소운영 기본경비 (7018-256) | 220-01 | 이전여비 소요 증가 |
| | 내역변경 | | 210-12 | 914 | | 210-08 | 유류비 부족 |
| | 내역변경 | | 210-12 | 760 | | 210-04 | 외부병원 진료 및 입원 증가로 야근자 급식비 부족 |
| | 내역변경 | | 210-16 | 140 | | 210-04 | |

자료: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수　입〉

## 12. 일반회계 전입금: 법정 전입금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정산 절차 이행 필요

### 가. 개　요

**‘일반회계전입금’** 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따라 집행된 벌금의 8%를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전입하는 재원으로서, 2025회계연도 계획액 887억 6,200만원 전액이 수납(수납률 100%)이 되었음.[35]

[2025년도 일반회계전입금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목명·세목명 | 2025년 | | | | | | | 2026 계획액 |
|---|---|---|---|---|---|---|---|---|
| | 계획액 | | 계획 현액 | 징수 결정액 | 수납액 | 미수납액 | 불납 결손액 | |
| | 당초 | 수정 | | | | | | |
| 일반회계전입금 | 88,762 | 88,762 | - | 88,762 | 88,762 | - | - | 91,146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법정 전입금은 집행된 벌금의 8%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에도 계획액 기준으로 수납액을 확정하여 실제 법정 전입금액과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결산 시 실제 집행된 벌금액을 기준으로 정산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있음.**

35)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일반회계전입금(91-911)(인권국)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및 이 법 시행령[36]에 따르면, 정부는 ‘집행된’ 벌금의 8%를 기금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일반회계전입금은 벌금 수납 실적과 연동되는 법정 전입금 성격을 가지는 사업임.

그러나 법무부는 예산 편성 시 벌금 수납예상액을 기준으로 전입금 계획액을 산정한 이후, 결산 과정에서도 실제 집행된 벌금액이 아닌 당초 계획액을 기준으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을 확정하고 있어 법령상 기준과 결산 처리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 4년 간 연도별 일반회계전입금 수납 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분 |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벌금 | 계획액(A) | 1,139,679 | 1,091,646 | 1,090,500 | 1,251,254 |
| | 수납액(B) | 1,064,874 | 1,242,814 | 1,200,165 | 1,139,928 |
| | 수납률 | 93.4 | 113.8 | 110.1 | 91.1 |
| 일반회계전입금 | 계획액(C) | 94,200 | 94,200 | 86,121 | 88,762 |
| | 수납액(D) | 94,200 | 94,200 | 86,121 | 88,762 |
| | 법정전입금액 (E=B*법정전입비율)[37] | 85,190 (B*8%) | 99,425 (B*8%) | 96,013 (B*8%) | 91,194 (B*8%) |
| | 법정전입금액과 수납액의 차액 (D-E) | 9,010 | △5,225 | △9,892 | △2,432 |

자료: 법무부

36)「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벌금 수납액
2.「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위하여 취득한 구상금
3.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
② 정부는「형사소송법」 제477조제1항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6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2조(기금의 조성) ①「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란 100분의 8을 말한다.

37) 과거 이 법 시행령에서는 전입 비율을 6%로 정하고 있었으나, 일반회계의 벌금 수납액의 감소 추이와 “500만원 이하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2018년 1월 시행)” 의 영향을 고려하여 2020년 말 이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정전입비율을 종전의 6%에서 8%로 상향하였고, 2021회계연도 계획액부터 8%의 전입비율을 적용하고 있음.

실제로 최근 4년간 결산 현황을 보면, 법정 전입금액(집행된 벌금의 8%)과 실제 수납액 간 차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023년은 법정 전입금액 대비 52억 2,500만원이 부족하게 수납되었고, 2024년 및 2025년에도 98억 9,200만원과 24억 3,200만원이 각각 부족하게 수납되는 등 법령상 납입 기준이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재정 여건 및 기금 운용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단기간 내 정산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38]하고 있음. 그러나 법정 전입금은 법령에 의해 납입이 의무화된 재원이라는 점에서 정산 절차를 지속적으로 유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에는 결산 과정에서 실제 집행된 벌금액을 기준으로 법정 전입금액을 산정하여 수납액을 확정하는 정산 절차를 이행하여 법령 준수와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38) 일반회계전입금 계획액과 벌금수납액의 차이는 여유자금 고갈로 인하여 정산하지 않기 시작한 2017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약 601억원에 달하며, 이처럼 규모가 크기에 단기간에 반영하기에는 재정건전성과 기금운용 안정성 측면에서 부담이 있음(법무부 의견)

〈지　출〉

## 13. 민간경호지원 사업: 민간경호지원 사업의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운영방안 마련 필요

### 가. 개　요

**‘민간경호지원’** 사업은 가해자 체포・구속영장 기각, 흉기사용, 스토킹・가정폭력 접근금지 지속 위반 등 추가피해 위험이 현저한 피해자에게 가해자 검거 등 조치 시까지 민간경호업체의 밀착 경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24억 5,000만원 중 24억 4,9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되고 100만원이 불용되었음.[39)]

[2025년도 민간경호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2026년도 계획액 |
|---|---|---|---|---|---|---|---|---|
| | 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B) | 계획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당초 | 수정(A) | | | | | | |
|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 5,540 | 5,810 | - | 5,810 | 5,768 | - | 42 | 5,400 |
| 신변보호장치 | 2,362 | 1,943 | - | 1,943 | 1,908 | - | 35 | 1,808 |
| 이전비 | 200 | 313 | - | 313 | 313 | - | - | 200 |
| 임시안전숙소 | 528 | 1,104 | - | 1,104 | 1,098 | - | 6 | 942 |
| **민간경호지원** | **2,450** | **2,450** | **-** | **2,450** | **2,449** | **-** | **1** | **2,450**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이 사업은 2023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었으며, 2025년도에는 총 421명의 범죄피해자에게 민간경호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보임.

39) 범죄피해자보호기금-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1135-306)(인권국)

[민간경호지원 사업 예·결산 내역 등]

| 구 분 | 예산편성 | 집행내역 | 기타 |
|---|---|---|---|
| 일반용역비<br>(210-14) | 24억 5,000만원<br>-350명×500천원×14일 | 24억 4,900만원<br>421명 | ・용역업체: ㈜에스텍시스템<br>・용역기간: 25.3.~12.<br>・계약유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 **〈민간경호 지원 절차〉** | | | |
| - 신변보호 신청 → 위험도 판단(담당 수사관, 체크리스트 활용) → 지원 결정(경찰서 심사위원회) → 시도경찰청 승인 → 민간경호원 배치 | | | |

자료: 법무부

## 나. 검토의견

**민간경호 지원사업은 피해자 1인당 지원비용이 높아 한정된 재정여건 상 지원 대상 확대에 한계가 있으므로, 획일적인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위험도와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음.**

민간경호 지원사업은 피해자 1인당 상당한 비용[40]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한정된 예산 규모 하에서는 지원 대상 확대에 일정한 한계가 있음. 2025년에는 총 24억 4,900만원을 집행하여 421명의 범죄피해자에게 민간경호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나, 같은 해 스토킹범죄 신고 건수는 4만 4,684건,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10만 5,344건[41]에 이르고 있는바,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모든 피해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40)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 산출내역서

| 구 분 | 기 간 | 인 원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경호요원 | 1일 | 2인 1조 | ₩ 227,000 | ₩ 454,000 | 1일 10시간 근무 기준 |
| 부가가치세(10%) | | | | ₩ 45,400 | |
| 총 계 | | | | **₩ 500,000** | |

※ 근무시간이 일일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의 야간・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

41) 경찰청 홈페이지(https://www.police.go.kr/www/open/publice/publice0203.jsp)

[2025년 민간경호 피해자지원 현황]

(단위: 명)

| 지원금액 | 인원 | 지원금액 | 인원 | 지원금액 | 인원 | 지원금액 | 인원 | 지원금액 | 인원 |
|---|---|---|---|---|---|---|---|---|---|
| 500만원 미만 | 184 | 500~ 1,000만원 미만 | 181 | 1,000~ 1,500만원 미만 | 39 | 1,500~ 2,000만원 미만 | 16 | 2,000만원 이상 | 1 |

자료: 법무부

또한 경찰청에 따르면 도서·산간 등 외진 지역은 경호인력 배치가 지연되거나 어려울 수 있으며, 스토킹·교제폭력은 신고 후 상당 기간이 지난 후, 또는 경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원 기간을 단축[42]하거나 동일 예산 내에서 인원을 일부 확대하는 방식만으로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근본적 대책이 되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음.

민간경호 지원사업 서비스 수혜자 면접 조사 결과 직장인 대상자의 경우 근무시간 동안에는 동료 직원들이 많아 경호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데 반해 자영업자 대상자의 경우 출퇴근 시간과 영업시간(근무시간)을 고려하면 하루 10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고, 28일간 경호 기간을 나눠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해자의 접근 위험도가 가장 높을 때 오히려 경호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우려도 있었음.[43]

이처럼 피해자의 직업, 생활패턴, 위험노출 시간대 및 가해자의 접근 가능성 등에 따라 위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만큼, 획일적인 민간 경호 지원 방식보다는 위험도와 피해 특성 및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한 맞춤형 경호체계를 구축하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모니터링 및 통제 장치 활용 강화를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실질적 분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음.

42) 2026년도 7일 이내 + 2회 연장하여 총 21일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됨

43) 「민간경호 지원사업 운영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2025.12., p.109

## 【기　타】

# 14.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법무부에 대해 시정요구 59건(중복 1건 포함)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시정 7건·주의 8건·제도개선 45건이었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 구분 | 변상 | 징계 | 시정 | 주의 | 제도개선 | (중복) | 계 |
|---|---|---|---|---|---|---|---|
| 결산 | - | - | 7 | 8 | 45 | 1 | 59 |
| 예비비 | - | - | - | - | - | - | - |
| 합계 | - | - | 7 | 8 | 45 | 1 | 59 |

법무부는 시정요구사항 59건에 대해 46건을 조치완료(조치율 78.0%)하고 13건을 조치 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 구분 | 시정요구사항(a) | 조치완료(b) | 조치율(b/a) | 조치중(a-b) |
|---|---|---|---|---|
| 결산 | 59 | 46 | 78.0 | 13 |
| 예비비 | - | - | - | - |
| 합계 | 59 | 46 | 78.0 | 13 |

국회가 「2025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면서 채택한 부대의견 중 법무부 2025회계연도 결산 관련 부대의견은 아래와 같음.

[법무부 관련 2025년도 예산안 등 부대의견]

| 구분 | 부대의견 |
|---|---|
| 2025년도 제2회 추경 | (25) 법무부는 검찰청의 특수활동비를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 |

# 법제처

# Ⅰ. 개 관

## 1. 결산 개요

### 가. 총수입·총지출

2025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2,200만원이 많은 2,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00만원이 증가됨.[1)]

[2025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4회계연도 | | | | 2025회계연도 | | | | 전년대비 (D-B) |
|---|---|---|---|---|---|---|---|---|---|
| | 예산액 | | 결산 (B) | 예산대비 (B-A) | 예산액 | | 결산 (D) | 예산대비 (D-C) | |
| | 본예산 | 추경(A) | | | 본예산 | 추경(C) | | | |
| 예 산 | - | - | 3 | 3 | - | - | 22 | 22 | 19 |
| 총수입 | - | - | 3 | 3 | - | - | 22 | 22 | 19 |

2025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9억 700만원(△2.0%)이 적은 448억 2,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 3,600만원(1.2%)이 증가됨.

문의: 02-6788-5702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5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4회계연도 | | | | 2025회계연도 | | | | 전년대비 (D-B) |
|---|---|---|---|---|---|---|---|---|---|
| | 예산액 | | 결산 (B) | 예산대비 (B-A) | 예산액 | | 결산 (D) | 예산대비 (D-C) | |
| | 본예산 | 추경(A) | | | 본예산 | 추경(C) | | | |
| 예 산 | 45,418 | 45,418 | 44,290 | △1,128 | 45,733 | 45,733 | 44,826 | △907 | 536 |
| 총지출 | 45,418 | 45,418 | 44,290 | △1,128 | 45,733 | 45,733 | 44,826 | △907 | 536 |

## 나.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없으며, 징수결정된 2,200만원이 수납(수납률 100%)되었고,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은 없음.

[2025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세입예산액 | | 이체등 증감액 (B) | 세입 예산현액 (A+B) | 징수 결정액 | 수납액 | 미수납액 | 불납 결손액 |
|---|---|---|---|---|---|---|---|---|
| | 본예산 | 추경 (A) | | | | | | |
| 일반회계 | - | - | - | - | 22 | 22 | - | - |
| 합 계 | - | - | - | - | 22 | 22 | - | - |

주) 총계 기준

2025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457억 3,300만원으로, 이 중 448억 2,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0%)되고 9억 7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세출예산액 | | 예산결정후증감액(B) | | | 세출 예산현액 (C=A+B)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 (A)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 | | |
| 일반회계 | 45,733 | 45,733 | - | ±422 | - | 45,733 | 44,826 | - | 907 |
| 합 계 | 45,733 | 45,733 | - | ±422 | - | 45,733 | 44,826 | - | 907 |

주) 총계 기준

## 다. 재무결산

2025회계연도 말 기준 법제처 자산은 전년 대비 10억 9,000만원이 감소한 215억 6,000만원으로, 이는 유무형자산 11억원이 감소하고, 금융자산 1,100만원이 증가한 결과임.

부채는 전년 대비 유동부채 100만원이 감소함.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10억 8,900만원이 감소한 215억 6,000만원임.

2025회계연도 법제처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497억 8,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9,7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497억 4,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7,800만원 증가하였음.

[2025회계연도 법제처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 | 2025 (A) | 2024 (B) | 증 감 | |
|---|---|---|---|---|---|---|
| | | | | | 금액 (A-B) | 증가율 (A-B)/B |
| 재정 상태표 | 자 산 | | 21,560 | 22,650 | △1,090 | △4.8% |
| | | 금융자산 | 1,082 | 1,071 | 11 | 1.0% |
| | | 유무형자산 | 20,477 | 21,577 | △1,100 | △5.1% |
| | | 기타자산 | 2 | 1 | 1 | 100.0% |
| | 부 채 | | - | 1 | △1 | △100.0% |
| | | 차입부채 | - | 1 | △1 | △100.0% |
| | | 충당부채 | - | - | - | - |
| | | 기타부채 | - | - | - | - |
| | 순자산 | | 21,560 | 22,649 | △1,089 | △4.8% |
| 재정 운영표 | 프로그램순원가 | | 49,782 | 48,185 | 1,597 | 3.3% |
| | 재정운영순원가 | | 49,744 | 48,166 | 1,578 | 3.3% |
| | 재정운영결과 | | 49,744 | 48,166 | 1,578 | 3.3% |

##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2025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재정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며, 특별회계 및 기금은 없음.

##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법제처는 국정성과 창출을 이끄는 법제 구현, 국가 성장동력 확보 및 국민의 삶을 돌보는 법제 정립, 법령서비스 혁신과 세계로 나아가는 법제교류·협력 확대를 2025년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총 13개 세부사업에서 정부 주요 정책의 입법 총괄·지원, 법령정보제공, 법제정비, 행정법제 혁신 등을 수행하였음.

2025년도 법제처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사업비 등을 총액인건비로 전용(증)하여 집행하였는데, 이는 총액인건비제도 운영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제안의견 건수 대비 과제발굴 실적이 미흡하므로, 이 사업의 필요성 및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셋째, 나라키움 태안정책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법제 교육과정의 면밀한 수요 예측을 통하여 실제 집행 소요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여 과도한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 1. 인건비(총액인건비 대상) 사업: 인건비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정확성 제고 필요

### 가. 개　요

**‘인건비(총액인건비 대상)’** 사업은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법제처 소속 공무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41억 6,900만원 중 241억 500만원이 집행(99.7%)되고 6,400만원이 불용되었음.[2)]

[2025년도 인건비(총액인건비 대상)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인건비 (총액인건비 대상) | 23,780 | 23,780 | - | 389 | 24,169 | 24,105 | - | 64 | 24,948 |
| 보수 | 23,224 | 23,224 | - | 472 | 23,695 | 23,644 | - | 51 | 24,403 |
| 기타직 보수 | 375 | 375 | - | △51 | 324 | 321 | - | 3 | 354 |
| 연가보상비 | 181 | 181 | - | △32 | 150 | 140 | - | 10 | 192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 일반회계-인건비(총액인건비 대상)(1001-100)(운영지원과)

## 나. 검토의견

**법제처는 인건비 부족을 사유로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사업비를 총액인건비로 전용(증)하여 집행하였는데, 이는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지침」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도 운영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법제처는 인건비(총액경비) 항목에서 이·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2023년 6,500만원은 감액하였고 2024년 및 2025년은 1억 5,200만원, 3억 8,900만원을 각각 증액하는 등 연례적인 이·전용 증감이 발생하고 있음.

[인건비(총액인건비 대상) 결산(2023~2025년)]

(단위: 백만원, %)

| 구분 | 예산액 | | 이·전용 등 | 예산 현액(B) | 집행액 (C) | 집행률 (C/A) | 집행률 (C/B)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2023년 | 22,142 | 22,142 | △65 | 22,077 | 21,734 | 98.2 | 98.4 | - | 343 |
| 2024년 | 22,612 | 22,612 | 152 | 22,764 | 22,736 | 100.5 | 99.9 | - | 28 |
| 2025년 | 23,780 | 23,780 | 389 | 24,169 | 24,105 | 101.4 | 99.7 | - | 64 |

자료: 법제처

특히 2025년에는 보수 부족을 사유로 인건비 및 타 사업에서 총 3억 8,9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으며 이 중 2억 6,700만원은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사업에서 전용한 것으로 나타남.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지침」에 따르면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로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로의 이·전용을 통한 증액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인건비 부족분을 보전한 것은 제도 운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3)]

3)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로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로의 이·전용과 예비비 사용 등을 통한 총액인건비 규모의 증액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지침」, 2024.3. P.4)

또한 인건비는 호봉 상승 및 처우개선율 적용 등으로 일정 수준의 증가가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증가 요인을 예산 편성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매년 이·전용이 반복되고 있는 점에서 예산 편성의 정확성이 미흡한 것으로 보임.

[2025년 인건비 이·전용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 ~ 에서 | | 금액 | ~으로 | |
|---|---|---|---|---|---|
| |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 목-세목 코드 | |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 목-세목 코드 |
| 전용 (2025.12.5.) | 인건비(1001-100)(총액) | 110-02 | 51 | 인건비(1001-100)(총액) | 110-01 |
| | | 110-05 | 32 | | |
| 전용 (2025.12.15.) |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1011-200) | 110-03 | 5 | 인건비(1001-100)(총액) | 110-01 |
| | | 210-05 | 40 | | |
| | | 210-06 | 6 | | |
| | | 210-12 | 49 | | |
| | | 210-16 | 6 | | |
| | | 320-09 | 15 | | |
| | 기관운영 기본경비(1011-250) | 210-01 | **73** | 인건비(1001-100)(총액) | 110-01 |
| | | 440-00 | **50** | | |
| | 법령정보제공(1031-300) | 210-14 | **18** | | |
| | 세계법제정보서비스(1031-301) | 210-14 | **1** | | |
| | 법령심사지원(1032-300) | 110-03 | **16** | | |
| | 법제정비(1032-301) | 110-03 | **25** | | |
| | | 210-14 | **1** | | |
| | | 260-02 | **24** | | |
| | 행정법제혁신(1032-302) | 260-02 | **39** | | |
| |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 (1034-300) | 260-01 | **10** | | |
| | 외국법제 기관교류(1034-301) | 210-14 | **1** | | |
| | | 260-02 | **5** | | |
| | 법제정책연구개발(1035-300) | 260-02 | **4** | | |

자료: 법제처

아울러 2024회계연도 결산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지적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에도 유사한 방식의 전용이 반복된 점을 고려할 때 제도 개선 및 재발 방지 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4)]

따라서 법제처는 호봉 상승분 및 보수 인상률 등 인건비 증가 요인을 사전에 충분히 반영하여 예산 편성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 및 보수를 계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유형 |
|---|---|---|---|
| 총액인건비 비대상 경비에서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로의 전용 재발 방지 필요 | 관련 사업명 | 일반회계 - 인건비(총액인건비 대상)(1001-100) | 주의 |
| | 지적 사항 | ○ 법제처는 2024년 법령정보제공, 세계법제정보서비스, 법령심사지원 등 총액인건비 비대상사업들에서 상용임금, 일용임금 등 인건비성 경비를 인건비 사업의 보수(110-01)로 9,150만원 전용하였는데, 이는 「2024년도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의 취지에 맞지 않음<br>-「2024년도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은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로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로의 이·전용과 예비비의 사용 등을 통한 총액인건비 규모의 증액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 | |
| | 시정요구사항 | ○ 법제처는 향후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경비로부터 총액인건비로의 이·전용을 금지하는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의 취지에 맞지 않는 집행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4) 법제처는 인건비 부족이 발생한 상황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및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용하여 총액인건비 규모를 조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2.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사업: 실효성 검토 및 개선 방안 모색 필요

### 가. 개 요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사업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낀 불편하고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개선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령정비를 추진하고, 법령정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5,200만원 중 5,1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1%)되고, 100만원이 불용되었음.[5)]

[2025년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법제정비 | 467 | 467 | - | △21 | 446 | 444 | - | 2 | 394 |
|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53 | 53 | - | △1 | 52 | 51 | - | 1 | 53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법제처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제안의견 건수 대비 과제발굴 실적이 미흡하므로, 이 사업의 필요성 및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법제처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사업을 위하여 2025년에는 일반수용비 및 일반용역비로 총 5,2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편성내역은 용역업체 선정 심사료, 외부위원 검토수당 명목의 일반수용비 270만원과 용역비 5,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5) 일반회계-법제정비(1032-301)(법령정비과)

[2025년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사업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법령정비) | 52.7 | 52.7 | - | - | 51.7 | 50.6 | - | 1.1 | 52.7 |
| 일반수용비 (210-01) | 2.7 | 2.7 | - | - | 2.7 | 1.6 | - | 1.1 | 2.7 |
| 일반용역비 (210-14) | 50 | 50 | - | △1 | 49 | 49 | - | - | 50 |

자료: 법제처

이 사업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며, 용역비 5,000만원을 중심으로 예산이 집행되었음.

그러나 최근 5년간 운영실적을 보면 제안의견 건수는 2021년 500건에서 2025년 1,348건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령정비 과제로 연계되는 건수는 42건에서 16건으로 감소하여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

특히 과제발굴 비율은 2021년 8.4%에서 2025년 1.2%로 급격히 하락하여, 최근 3년간은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공모제 운영을 통해 다수의 제안이 접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령정비로 이어지는 비율이 매우 낮아 사업의 정책효과가 제한적임을 의미함.

[최근 5년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운영 현황]

| 구 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제안의견 건수(A) | 500건 | 770건 | 1,177건 | 997건 | 1,348건 |
| 과제발굴 건수(B) | 42건 | 44건 | 27건 | 19건 | 16건 |
| 과제발굴 비율(B/A*100) | 8.4% | 5.7% | 2.3% | 1.9% | 1.2% |

자료: 법제처

법제처는 단순 민원이나 정책 제안 성격의 의견이 다수 포함되어 실질적인 정비 과제로 연계되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사전 단계에서 제안의 질을 관리하거나 선별하는 체계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았음을 시사함.

한편 2025년의 경우 약 5,000만원 규모의 용역비 대부분이 홍보물 제작(포스터 1만부, 리플렛 12만부), 온라인 및 SNS 홍보, 지하철 광고 등 홍보 목적으로 사용된 반면, 정비과제 발굴 및 심사 역량 강화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 비중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구조임.

이는 공모제가 실제 국민들의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법제화하는 사업예산보다 홍보 및 행사 위주로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보여짐.

법제처는 예산의 효용성 등을 고려하여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사업의 실효성을 검토하는 것과 함께, 외부 용역을 통한 사업 추진이 아닌 법제처 내부 홍보 수단과 기존 정부의 의견수렴 플랫폼[6] 등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25년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용역 산출내역서]

| 항 목 | 세 항 | 금 액(원) |
|---|---|---|
| **홍보 포스터, 리플렛, 웹배너 등 홍보물 제작 및 발송** | | |
| 홍보 포스터 | 디자인 비용(삽화비 포함) 및 제작*<br>*포스터(500×720) 1만 부, 리플렛(210×305) 12만 부,<br>웹배너 32종(180아트, 무광코팅 기준) | 10,500,000 |
| 리플렛 | | |
| 웹배너 | | |
| DM발송 | 공공기관 게시용 홍보물 택배발송(3,560개소)<br>*박스비 포함 | 9,280,000 |
| **홍보** | | |
| 온라인 홍보 | 온라인 공모전 사이트(씽굿), 네이버블로그, 카페 등 | 7,500,000 |
| SNS 홍보 |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 4,300,000 |
| 지하철 홍보 | 서울 지하철 | 1,300,000 |
| **공모전 부상** | | |
| 공모전 부상 | 부상 제작 및 발송<br>*상장 및 온누리상품권(550만원) | 5,700,000 |
| 소 계 | | 38,580,000 |
| 일반관리비 / 소계의 8% | | 3,086,400 |
| 이윤 / 소계의 10% | | 3,858,000 |
| 합계 / 소계, 일반 관리비, 이윤의 합 | | 45,524,400 |
| 부가세 / 합계의 10% | | 4,552,440 |
| 총계 / 합계+부가세 | | 50,076,840 |
| **총 계(만단위 절사)** | | **50,000,000** |

자료: 법제처

6)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 : 국민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정책·행정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참여 플랫폼

# 3.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 사업: 실제 교육 수요를 고려한 적정임차료 편성 필요

## 가. 개 요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 사업은 공무원 법제전문교육훈련기관 설치(2010. 9.)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제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5억 2,800만원 중 13억 3,600만원이 집행(집행률 87.4%)되고 1억 9,200만원이 불용되었음.[7)]

[2025년도 법제교육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 | 1,538 | 1,538 | - | ±30<br>△10 | 1,528 | 1,336 | - | 192 | 2,474 |
| 임차료(210-07) | 354 | 354 | - | △30 | 324 | 158 | - | 166 | 217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나라키움 태안정책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법제 교육과정의 실적 저조에 따라 버스 및 교육 장비 등 임차료 예산의 집행이 연례적으로 부진하였으므로, 법제처는 면밀한 수요 예측을 통하여 실제 집행 소요에 맞게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과도한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법제교육 임차료는 나라키움 태안정책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법제 교육과정에 필요한 셔틀버스 및 장비 등을 임차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셔틀버스 임차료는 3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제 집행은 1억 3,400만원에 그쳐 약 2억 200만원의 불용이 발생하였으며, 전체 임차료 집행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7) 일반회계-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1034-300)(법제지원국)

이는 서울~태안, 오송~태안 등 2개 노선을 전제로 매일 운행하는 것을 가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서울~태안 구간 이용 수요가 거의 없어 대부분 오송~태안 구간만 운행된 데 따른 것임. 또한, 연간 200일 2대 운행을 전제로 한 산출방식 역시 실제 교육운영 일정과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2025년도 법제교육 사업 임차료(210-07) 결산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예산내역 | 편성 금액 (A) | 산출근거 | 집행 금액 (B) | 차이 (A-B) | 집행 세부내역 |
|---|---|---|---|---|---|
| 법제업무 담당자 과정 임차료 | 16 | 800만원×2회 | 16 | - | ·법제업무담당자 과정(중앙, 공공)(8)<br>·법제업무담당자 과정(지방, 교육청)(8) |
| 법제교육센터 장비 임차료 | 3 | 300만원×1회 | 8 | △5 | ·에어컨 임차료(3)<br>·빔프로젝터 임차료(5) |
| **셔틀버스 운행 임차료** | **336** | **84만원×2대×200일** | **134** | **202** | **·교육과정 76회 운영에 대한 셔틀버스 임차료 103건 지급(134)** |
| 계수조정 | △0.5 | - | - | - | - |
| **합계** | **354.5** | | **158** | **197** | *임차료 편성액 중 3,000만원은 법제교육 강사료 및 교재 인쇄비 부족으로 세목조정 |

자료: 법제처

[태안정책연수원 교육인원 계획과 실제참가인원(2024~2025년)]

| 구 분 | 2024년 | 2025년 |
|---|---|---|
| 계획인원 | 7,600명 | 16,500명 |
| 실제참가인원 | 10개 과정, 15회, 1,267명 수료 | 15개 과정, 76회, 5,662명 수료 |

자료: 법제처

교육 수요 측면에서도 2025년 계획인원 1만 6,500명 대비 실제 참가인원은 5,662명으로 약 34% 수준에 불과하여, 교육 참여 규모 자체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낮았던 것으로 나타남.[8)]

이와 같이 교육 수요를 과다하게 추정한 상태에서 이를 기반으로 임차료를 산정함

8) 법제처는 당초 계획과 달리 (구)기획재정부의 정책연수원 사용 정책 변경(강의실 및 일일 최대 교육생 수 조정)에 따라 실제 교육생 수가 축소됨에 따른 것이라는 의견임.

에 따라 예산과 집행 간 괴리가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음. 한편 장비 임차료는 당초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집행은 800만원으로 증가하는 등 일부 항목에서는 수요 예측이 과소하게 이루어지는 등 항목별 편성의 정확성에도 문제가 나타남.

이처럼 동일 사업 내에서 일부 항목은 과다 편성, 일부 항목은 과소 편성이 발생하는 것은 전체적인 수요예측 및 산출근거 설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함. 또한, 연도별 법제교육 임차료 집행실적을 보면 2023년 70.4%, 2024년 15.0%, 2025년 48.8%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임차료 집행부진이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2024년에는 강의실 무상사용 정책 변경으로 대규모 불용이 발생하였고, 2025년에는 셔틀버스 수요 부족으로 불용이 발생하는 등 외부 환경 변화 및 수요 변동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편성이 반복되고 있음.

법제처는 교육과정 운영계획, 실제 참가인원, 교통수요 및 집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임차료 산출근거를 보다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셔틀버스 운행 노선 및 운행일수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를 강화하고, 교육 수요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예산을 조정함으로써 예산과 집행 간 괴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최근 3년간 법제교육 임차료(210-07) 결산]

(단위: 백만원)

| 연도 | 예산액 | | 이·전용 등 | 예산 현액(B) | 집행액 (C) | 집행률 (C/A) | 불용액 | 불용사유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2023 | 27 | 27 | - | 27 | 19 | 70.4% | 8 | 법제업무담당자 과정을 2회로 축소 운영(편성금액 산출근거상 4회) |
| 2024 | 307 | 307 | △43 | 264 | 46 | 15.0% | 217 |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사용협약 체결로 강의실 임차료 전액 불용 |
| 2025 | 354 | 354 | △30 | 324 | 158 | 48.8% | 166 | 셔틀버스 발착지 축소 운영(서울~태안 구간 미운영)으로 셔틀버스 임차료 집행 부진 |

자료: 법제처

## 【기　타】

# 4.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법제처에 대해 시정요구 14건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시정 1건·주의 3건·제도개선 10건이었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 구분 | 변상 | 징계 | 시정 | 주의 | 제도개선 | (중복) | 계 |
|---|---|---|---|---|---|---|---|
| 결산 | - | - | 1 | 3 | 10 | - | 14 |
| 예비비 | - | - | - | - | - | - | - |
| 합계 | - | - | 1 | 3 | 10 | - | 14 |

법제처는 시정요구사항 14건에 대해 14건을 조치완료(조치율 100%)한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 구분 | 시정요구사항(a) | 조치완료(b) | 조치율(b/a) | 조치중(a-b) |
|---|---|---|---|---|
| 결산 | 14 | 14 | 100 | - |
| 예비비 | - | - | - | - |
| 합계 | 14 | 14 | 100 | - |

# 감사원

# Ⅰ. 개 관

## 1. 결산 개요

### 가. 총수입·총지출

2025회계연도 감사원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2억 2,500만원(29.2%)이 많은 9억 9,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300만원(28.9%)이 증가됨.[1)]

[2025회계연도 감사원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4회계연도 | | | | 2025회계연도 | | | | 전년대비 (D-B) |
|---|---|---|---|---|---|---|---|---|---|
| | 예산액 | | 결산 (B) | 예산대비 (B-A) | 예산액 | | 결산 (D) | 예산대비 (D-C) | |
| | 본예산 | 추경(A) | | | 본예산 | 추경(C) | | | |
| 예 산 | 745 | 745 | 772 | 27 | 770 | 770 | 995 | 225 | 223 |
| 총수입 | 745 | 745 | 772 | 27 | 770 | 770 | 995 | 225 | 223 |

2025회계연도 감사원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57억 3,800만원(△3.9%)이 적은 1,411억 9,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7,900만원(0.3%)이 증가됨.

[2025회계연도 감사원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4회계연도 | | | | 2025회계연도 | | | | 전년대비 (D-B) |
|---|---|---|---|---|---|---|---|---|---|
| | 예산액 | | 결산 (B) | 예산대비 (B-A) | 예산액 | | 결산 (D) | 예산대비 (D-C) | |
| | 본예산 | 추경(A) | | | 본예산 | 추경(C) | | | |
| 예 산 | 146,167 | 146,167 | 140,717 | △5,450 | 141,656 | 146,934 | 141,196 | △5,738 | 479 |
| 총지출 | 146,167 | 146,167 | 140,717 | △5,450 | 141,656 | 146,934 | 141,196 | △5,738 | 479 |

문의: 02-6788-5688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 나.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감사원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7억 7,000만원으로, 9억 9,54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9억 9,510만원이 수납(수납률 99.9%)되고 3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5회계연도 감사원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세입예산액 | | 이체등 증감액 (B) | 세입 예산현액 (A+B) | 징수 결정액 | 수납액 | 미수납액 | 불납 결손액 |
|---|---|---|---|---|---|---|---|---|
| | 본예산 | 추경 (A) | | | | | | |
| 일반회계 | 770 | 770 | - | 770 | 995 | 995 | 0.3 | - |
| 합 계 | 770 | 770 | - | 770 | 995 | 995 | 0.3 | - |

주) 총계 기준

2025회계연도 감사원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495억 9,300만원으로, 이 중 1,411억 9,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4.4%)되고 37억 5,0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46억 4,7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감사원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세출예산액 | | 예산결정후증감액(B) | | | 세출 예산현액 (C=A+B)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 (A) | 전년도 이월액 | 전용 등 | 예비비 | | | | |
| 일반회계 | 141,656 | 146,934 | 2,659 | 547<br>△547 | - | 149,593 | 141,196 | 3,750 | 4,647 |
| 합 계 | 141,656 | 146,934 | 2,659 | 547<br>△547 | - | 149,593 | 141,196 | 3,750 | 4,647 |

주) 총계 기준

## 다. 재무결산

2025회계연도 말 기준 감사원 자산은 전년 대비 37억 5,000만원이 증가한 2,448억 5,200만원으로, 이는 금융자산 1억 6,800만원, 기타자산이 12억 6,100만원 감소하였으나, 차세대 OASYS 시스템구축 등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구입 등으로 유·무형자산이 51억 7,800만원 증가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2억 400만원 증가한 18억 2,400만원으로 충당부채(퇴직급여충당부채) 2억 300만원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35억 4,700만원 증가한 2,430억 2,900만원임.

2025회계연도 감사원의 프로그램순원가는 1,529억 7,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7,9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1,524억 8,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3,200만원 증가하였음.

[2025회계연도 감사원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 | 2025 (A) | 2024 (B) | 증 감 | |
|---|---|---|---|---|---|---|
| | | | | | 금액 (A-B) | 증가율 (A-B)/B |
| 재정 상태표 | 자 산 | | 244,852 | 241,102 | 3,750 | 1.6 |
| | | 금융자산 | 974 | 1,142 | △168 | △14.7 |
| | | 유·무형자산 | 237,774 | 232,596 | 5,178 | 2.2 |
| | | 기타자산 | 6,104 | 7,365 | △1,261 | △17.1 |
| | 부 채 | | 1,824 | 1,620 | 204 | 12.6 |
| | | 충당부채 | 1,813 | 1,610 | 203 | 12.6 |
| | | 기타부채 | 11 | 11 | - | - |
| | 순자산 | | 243,029 | 239,482 | 3,547 | 1.5 |
| 재정 운영표 | 프로그램순원가 | | 152,978 | 150,999 | 1,979 | 1.3 |
| | 재정운영순원가 | | 152,488 | 150,856 | 1,632 | 1.1 |
| | 재정운영결과 | | 152,488 | 150,856 | 1,632 | 1.1 |

주) 백만원 단위 환산 시 발생한 단수차이로 인해 일부 항목의 합계가 불일치할 수 있음

##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2025회계연도 감사원 소관 재정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음.

##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감사원은「헌법」및「감사원법」에 따른 기본 임무인 국가결산검사를 통해 국가 회계 질서를 바로잡고, 국회의 감사 요구를 비롯한 연간 감사 사항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공직 기강을 엄정히 확립하고자 하였음.

동시에 공직사회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공직자가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사익 추구와 특혜 제공 등 중대한 비위가 없는 한 징계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수립함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 정책을 공직사회에 널리 알리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하였음.

2025년도 감사원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예산 집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감사원은 '2025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따른 성과지표 2개 모두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향후 성과지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둘째, 연구용역비 계약 방식을 보면 수의계약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일반경쟁이 계약의 원칙임을 고려하여 향후 일반경쟁계약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셋째, 정보화 사업의 지연으로 인해 예산 편성과 집행 간의 괴리가 크게 발생하였으므로, 감사원은 향후 정보화 사업 추진 시 집행 지연과 예산 이월 등이 최소화되도록 사업 관리를 면밀히 할 필요가 있음.

# Ⅱ. 사업별 검토

## 【총 괄】

## 1. 성과지표: 성과지표 목표 미달성 및 감사활동의 경제적 성과 달성도 세부내역 공개 필요

### 가. 개 요

감사원은「국가재정법」제85조의6 등에 따라 작성한 ‘2025회계연도 감사원 성과계획서’에서 “국가최고감사기구로서 헌법상 책무인「회계검사」와「직무감찰」을 엄정하게 수행하여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성과를 제고한다”를 임무로 설정하였음. 또한 이를 달성하기 위해「임무-비전-전략목표(1개)-프로그램 목표(1개)-성과지표(2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감사원 성과관리체계도]

| | |
|---|---|
| 임 무 | 국가최고감사기구로서 헌법상 책무인「회계검사」와「직무감찰」을 엄정하게 수행하여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성과를 제고한다 |
| 비 전 | 기본에 충실하면서, 국민의 시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감사원 |
| 전략목표 및 프로그램 목표 | ■ 전략목표 Ⅰ. 건전재정 운용,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및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한다<br>- 프로그램 목표Ⅰ-1. 체계적인 감사활동 및 지원체제를 기반으로 국가회계 질서와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적극행정을 지원하여, 공공부문의 효율성·책임성을 제고한다 |

자료: 감사원

## 나. 검토의견

**첫째, 감사원은 2025회계연도 성과지표 2개를 모두 미달성한 사유로 감사 운영 개선 등의 환경 변화를 제시했으나, 최고 감사기관으로서 성과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성과 관리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감사원이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제1항에 따라 작성한 성과계획서를 기준으로 2025년도 재정활동 성과를 측정한 결과, ‘2025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상의 전체 성과지표 2개 모두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2)]

[2025회계연도 재정운용 성과]

(단위 : 개)

| 전략목표 | 프로그램 목표 | 프로그램 목표의 성과지표수 | 성과 달성도 | | |
|---|---|---|---|---|---|
| | | | 초과달성 | 달성 | 미달성 |
| 1 | 1 | 2 | - | - | 2 |
| | | 100.0% | - | - | 100.0% |

자료: 감사원

감사원의 2025회계연도 성과 지표 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공직비리 적발 실적’ 지표의 경우 목표치인 1,000점 대비 843점을 달성(달성률 84.3%)하는 데 그쳤으며, ‘감사활동의 경제적 성과’ 지표의 경우에도 목표치인 3조원 대비 1조 2,082억원을 달성(달성률 40.3%)하여 전체 성과지표(2개)의 목표를 모두 달성하지 못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감사활동의 경제적 성과’ 지표의 경우 국가최고감사기구로서 재정 외에도 국민 안전·민생·경제 활력 및 미래 위험 등 다양한 가치를 지향함에 따라 경제적 성과로 산출하기 어려운 안전 및 국민 불편 요인 관련 감사를 다수 실시하여 목표에 미달하였고, ‘공직비리 적발 실적’ 지표의 경우에는 사익 추구 등의 사유가 없는 한 고발·수사요청에서 제외하도록 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감사운영 개선방안」(2025년 8월) 시행 등 감사 운영 개선에 따라 고발·수사요청 실적이 크게 감소한 데 기인한다고 설명함.

---

2)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감사원이 제시한 감사 환경의 변화와 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정부의 재정 운영 및 성과를 감시하는 최고 감사기관이 자체 성과 지표를 모두 미달성한 것은 성과 관리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따라서 감사원은 향후 성과 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022~2025년 성과지표 달성 현황]

| 성과지표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목표대비 달성률 | 2022 | 2023 | 2024 | 2025 |
|---|---|---|---|---|---|---|
| 감사활동의 경제적 성과 (억원) | 변상판정, 추징·회수·보전, 환급·추급 금액 및 기대효과 금액 | 목표 | 31,500 | 32,000 | 32,500 | 30,000 |
| | | 실적 | 33,904 | 23,401 | 19,556 | 12,082 |
| | | 달성률(%) | 107.6 | 73.1 | 60.2 | 40.3 |
| 공직비리 적발 실적 (점) | Σ(신분상조치 인원수×가중치) | 목표 | 650 | 750 | 850 | 1,000 |
| | | 실적 | 892 | 1,473 | 1,105 | 843 |
| | | 달성률(%) | 137.2 | 196.4 | 130.0 | 84.3 |

자료: 감사원

**둘째, 감사원은 감사업무 지장 우려를 이유로 감사활동 경제적 성과 중 '기대효과 금액'의 세부 내역을 비공개하고 있으나,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가재정법」상 예산 과정의 투명성 제고 취지에 부합하도록 세부 자료의 공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성과지표 중 감사활동의 경제적 성과는 감사결과 조치금액(변상판정 금액, 추징·회수·보전 금액, 환급·추급 금액)과 감사결과에 따른 기대효과의 합으로 측정되는데, 2025년 달성치 1조 2,082억원은 변상판정 1억원, 추징·회수·보전 1,176억원, 환급·추급 8억원과 기대효과금액 1조 896억원의 합계임.[3)]

[2025년 감사활동의 경제적 성과 달성 세부현황]

(단위: 원)

| 경제적 성과 | | | | |
|---|---|---|---|---|
| 계 | 변상판정 | 추징 · 회수 · 보전 | 환급 · 추급 | 기대효과 금액 |
| 1,208,181,012,192 | 144,746,280 | 117,595,151,031 | 830,000,000 | 1,089,611,114,881 |

자료: 감사원

3) 감사원은 기대효과 금액 1조 896억원의 세부 내역 공개 시 원활한 감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임.

또한 경제적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항목 중 '기대효과 금액'은 예산절감, 수입증대, 국민편익, 지출합리화, 재산증가의 5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재정관리제도 개선의 효과나 국민안전 관련 감사활동의 성과를 반영하고 있음.

[감사활동의 경제적 성과 정의와 분류기준]

| 구 분 | 정 의 |
|---|---|
| 조치금액 | 변상판정 · 시정요구 등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금액을 명시하여 직접 추징 · 회수 · 보전 또는 환급 · 추급하도록 조치한 금액 |
| 기대효과 금액 | 조치사항에 금액을 명시한 직접적 처분요구는 아니나 감사결과에 따른 관계기관의 조치로 인해 공공에 미치는 금전적 효과금액(감사결과 시행 후 5년 이내 발생할 효과) |
| 예산절감 금액 | 정책실패 · 예산낭비의 사전 예방, 비경제적 · 비효율적 예산집행의 개선, 생산성 증대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한 금액 |
| 수입증대 금액 | 세원의 발굴 · 확충, 매각금액의 증가, 공공사업의 수익성 개선 등을 통해 수입을 증대시킨 금액 |
| 국민편익 금액 | 공공서비스의 양적 · 질적 개선으로 국민의 편익이 증가하거나 서비스 요금의 감소 등으로 부담이 감소하게 된 금액 |
| 지출합리화 금액 | 우선순위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조정, 불요불급한 사업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지출을 억제하여 다른 재원으로 사용가능하게 된 금액 |
| 재산증가 금액 | 법률관계의 변경(권리 · 의무 조정)을 통한 자산 증가 또는 부채 감소 등 공적기관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킨 금액 |

자료: 감사원

「국가재정법」 제16조는 정부가 예산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4)]

이는 투명한 예산과정을 통해 재정 운영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함인데, 이러한 투명한 예산과정 공개에는 성과지표에 대한 결과도 공개함으로써 평가 및 환류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포함하고 있는 것임.

4) 「국가재정법」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정부는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재정을 운용할 때 재정지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 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의 성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감사원은 2025년 감사활동의 경제적 성과 달성치 중 기대효과 금액 1조 896억원의 세부 내역 공개 시 원활한 감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이고, 감사 활동의 경제적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신규 성과지표 도입을 위해 감사연구원에서 자체 연구 수행 중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기대효과 금액에는 공공서비스의 양적·질적 개선으로 국민의 편익이 증가하거나 서비스 요금이 감소한 부분, 공공사업의 수익성 개선을 통해 수입을 증대시킨 금액 및 생산성 증대를 통한 예산 절감액 등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공개 필요성이 높은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감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이를 비공개해야 한다는 설명은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보임.

따라서 감사원은「국가재정법」제16조의 취지에 따라 예산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대효과 금액으로 산정한 성과금액의 세부내역별 자료 공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 연구용역비: 수의계약 과다 문제

### 가. 개 요

**‘연구용역비’** 는 국가로부터 기술, 전산,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 업무의 용역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한 것으로, 4개 세부사업을 통해 수행된 연구용역비는 2025년도 예산현액 90억 7,900만원 중 71억 3,800만원이 집행되고, 18억 4,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억 1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연구용역비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연구용역비 | 8,921 | 8,921 | 258 | △100 | 9,079 | 7,138 | 1,840 | 101 | 1,719 |
| 기본경비 (1111-251) | 64 | 64 | - | - | 64 | 63 | - | 1 | 64 |
| 감사활동경비 (1131-303) | 1,600 | 1,600 | 76 | △100 | 1,576 | 1,418 | 63 | 95 | 1,200 |
| 전산운영경비 (1134-309) | 7,067 | 7,067 | 98 | - | 7,165 | 5,418 | 1,747 | - | 285 |
| 감사연구활동경비 (1151-351) | 190 | 190 | 84 | - | 274 | 239 | 30 | 5 | 170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연구용역비(260목)는 국가로부터 학술, 기술, 평가, 자문 및 시운전, 실태조사, 전산개발,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의 업무에 대한 용역비용인 일반연구비(260-01)와 각 부처에서 정책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 관련 비용인 정책연구비(260-02)로 구성되어 있음.

## 나. 검토의견

**감사원의 기본경비, 감사활동경비, 전산운영경비, 감사연구활동경비 세부사업별 연구용역비 집행 내역을 보면 수의계약 방식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일반경쟁이 계약의 원칙임을 명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일반경쟁계약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5]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기획재정부의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도 연구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수행하여야 할 성격의 과제를 제외하고는 일반경쟁계약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감사원의 2025년도 연구용역 과제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기본경비, 감사활동경비, 전산운영경비, 감사연구활동경비 등 총 4개 세부사업을 통해 수행된 24건의 연구용역 과제 중 21건(전체 연구용역 과제의 87.5%)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한바, 일반경쟁 원칙 및 예산집행지침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특히 감사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6]에 의거하여 해당 연구과제들이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용역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들어, 11건의 용역에 대하여 추정가격이 2,000만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진행 중인 감사사항의 노출 우려 등으로 공정한 감사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이 요구되는 용역으로 판단하여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였다고 설명함.

그런데 감사연구활동경비 세부사업으로 추진된 '주요국 감사원 성과감사 발전 과정과 성과 연구', '국가결산 및 결산검사 신뢰성 제고방안 연구' 등의 과제는 해

---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당 분야의 학문적 전문성은 필요할 수 있으나 특정 학회나 연구소만이 수행할 수 있는 과제라고 보기 어렵고, 국가계약법령에서 규정하는 특수한 기술이나 자격이 요구된다고 보기도 어려움.

[2025년 감사원 연구용역비(260목) 사업 추진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 과제명 | 예산액 | 집행액 | 계약방식 | 계약기간 |
|---|---|---|---|---|---|
| 기본경비 (1111-251) | 감사교육원 사이버 콘텐츠 제작용역 | 64 | 54 | 수의계약 (나라장터 견적경쟁) | 2025. 8.~ 2025. 11. |
| | 감사사례로 보는 국유재산법의 이해 사이버 콘텐츠 제작용역 | | 9 | 수의계약 (1인 견적) | 2025. 10.~ 2025. 11. |
| 감사활동 경비 (1131-303) | 2024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 업무보조 용역(제1분류) | 1,100 | 536 | 수의계약 (유찰) | 2025. 2.~ 2025. 5. |
| | 2024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 업무보조 용역(제2분류) | | 541 | 수의계약 (유찰) | 2025. 2.~ 2025. 5. |
| |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체감사결과 분석 방법 연구 (자체감사보고서 자동분류를 위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연구) | 454 | 30 | 수의계약 (특수한 지식) | 2025. 3.~ 2025. 8. |
| | 2025년도 감사원 감사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및 원내 특정사안 설문 조사 (감사원 25년도 실지감사활동 모니터링 등 조직 운영 관련 설문조사) | | 11 | 수의계약 (저가) | 2025. 3.~ 2026. 2. |
| | 생성형 AI를 활용한 감사사례 질의응답 방법 연구 (감사사례 질의응답을 위한 생성형 AI 모델 학습에 관한 연구) | | 30 | 수의계약 (특수한 지식) | 2025. 4.~ 2025. 8. |
| | 위험분석 고도화를 위한 특정 분야 감사 이슈 분석 | | 30 | 수의계약 (특수한 지식) | 2025. 5.~ 2025. 7. |
| | 나라장터(종합쇼핑몰) 조달물품 가격 비교조사 및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 | 19 | 수의계약 (저가) | 2025. 6.~ 2025. 8. |
| | 미래 위험요인 감사 개선방향 연구 (미래위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신규 위험발굴 및 위험요인별 우선순위 평가방안 연구) | | 30 | 수의계약 (특수한 지식) | 2025. 6.~ 2025. 11. |
| | 재정민주주의 강화에 따른 감사범위의 변화 | | 27 | 수의계약 | 2025. 7.~ |

| | | | | | |
|---|---|---|---|---|---|
| | 및 국제사례 등 조사·분석 | | | (특수한 지식) | 2025. 12. |
| |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 및 네덜란드 회계기준(Dutch GAAP) 비교 분석을 통한 HCCH 회계감사 실무 적용 방안 연구 | | 12 | 수의계약 (저가) | 2025. 12.~ 2025. 12. |
| | 2026년도 고감단 및 과장급 직위 후보자 역량평가 과제 개발 및 운영 용역 | | 32 | 제한경쟁 | 2025. 12.~ 2026. 5. |
| | 재난조사제도 분석 및 개선안 | | 20 | 수의계약 (저가) | 2025. 12.~ 2026. 2. |
| 전산운영 경비 (1134-309) | 차세대 OASYS 구축 사업 (선금, 외부위원 평가 수당 등) | 6,225 | 4,728 | 수의계약 (2회 유찰) | 2025. 8.~ 2026. 10. |
| | 차세대 OASYS 구축 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선금) | 569 | 319 | 일반경쟁 | 2025. 7.~ 2026. 11. |
| | 차세대 OASYS 구축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1차)_커스터마이징 | 273 | 273 | 제3자 단가계약 | 2025. 4.~ 2025. 12. |
| 감사연구 활동경비 (1151-351) | 주요국 감사원 성과감사 발전과정과 성과 연구 | 190 | 30 | 수의계약 (특수한 지식) | 2025. 4.~ 2025. 8. |
| | 정부의 민주적 리더십 강화를 위한 공공감사체계 개선방안 | | 30 | 수의계약 (특수한 지식) | 2025. 4.~ 2025. 11. |
| | 적극행정을 위한 인사분야 성과감사 전략 및 접근방법 개발 | | 30 | 수의계약 (특수한 지식) | 2025. 5.~ 2025. 12. |
| |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감사정책 방향 | | 30 | 수의계약 (특수한 지식) | 2025. 7.~ 2025. 11. |
| | 국가결산 및 결산검사 신뢰성 제고방안 | | 30 | 수의계약 (특수한 지식) | 2025. 8.~ 2025. 12. |
| | 공공부문 AI 전환 해외사례 및 시사점 | | 10 | 수의계약 (저가) | 2025. 10.~ 2025. 12. |
| |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와 감사시사점 | | 30 | 수의계약 (특수한 지식) | 2025. 11.~ 2026. 4. |

자료: 감사원

감사원은 회계검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경쟁입찰 원칙을 모범적으로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개선이 요청됨.

따라서 감사원은 향후 특정 학회나 연구소만이 수행할 수 있는 과제라 보기 어려운 연구 용역에 대해 수의 계약으로 집행하는 행태를 시정하여 일반경쟁을 통해 추진하는 연구 용역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3. 물품구매 계약 및 예산관리: 일상감사 규정 미준수 문제

## 가. 개 요

감사원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7] 및「감사원 일상감사 실시지침」제2조[8] 등의 규정에 따라 계약업무, 예산관리 업무 등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2025년도 감사원 일상감사 실시 현황을 보면, 예산의 전용 및 이월에 관한 사항 10건, 공사·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등 계약에 관한 사항 63건, 주요사업의 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2건, 업무 처리부서에서 의뢰한 사항 등 12건으로 총 107건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남.

[2025년도 감사원 일상감사 실시 현황]

(단위: 건)

| 일상감사 사유 | | | | |
|---|---|---|---|---|
| 예산의 전용 및 이월에 관한 사항 (사고이월 제외) | 공사·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등 계약 | 주요사업의 계획수립 및 변경 | 업무 처리부서 의뢰 등 기타 | 합 계 |
| 10 | 63 | 22 | 12 | 107 |

자료: 감사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7)「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일상감사) ①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하여야 한다.

8)「감사원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2조(대상 업무) 감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다만, 빈번하게 반복적으로 집행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및 제세, 감사활동관련 국내·외 여비 제외
가. 건당 추정가격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등 계약
나.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예산지출을 수반하는 주요사업의 계획수립 및 변경
다. 예산의 전용 및 이월에 관한 사항(단, 사고이월 제외)
2. 감사원장, 사무총장이 일상감사를 지시한 사항
3. 감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상 업무를 선정한 후 그 업무의 처리부서에 요구하는 사항
4. 업무 처리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감찰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한 사항
제3조(의뢰 시기 등) ① 일상감사 대상 업무를 집행하는 부서의 장(이하 "집행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그 업무 집행에 앞서 최종 결재권자(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전결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결재 전(단, 사무차장·본부장·기획조정실장 이상의 결재 사항일 경우에는 사무차장 등의 결재 전)에 감찰관에게 결재서류와 예산서·계약서안 등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하고, 계획수립 단계에서 감찰관실의 협조를 받은 경우에도 일상감사가 면제되지 않는다.

## 나. 검토의견

**감사원은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의 물품 구매 시 일상감사를 받아야 함에도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일상감사 대상 업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업무 수행이 필요함.**

「감사원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2조제1호가목 및 제3조제1항 등에 따르면, 건당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상인 물품의 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감사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해야 함.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의뢰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일상감사 의견서를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해야 함.

그런데 감사원은 2025년에 일상감사 대상 업무인 ‘전자복사기 구매’, ‘노트북 구매’ 등 2건의 물품 구매 업무를 추진하면서 일상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였음.

[2025년도 감사원 일상감사 미실시 사업]

(단위: 백만원)

| 사업내용 | 발주 금액 | 계약 금액 | 예산 과목 | 계약방법 | 계약기간 |
|---|---|---|---|---|---|
| 전자복사기 구매(61대) | 45 | 45 | 기본경비 (1111-251) | 다수공급자 계약 | 2025. 2. 13.~ 2025. 3. 6. |
| 노트북 구매(23대) | 38 | 38 | 전산운영경비 (1134-309) | 다수공급자 계약 | 2025. 3. 6.~ 2025. 3. 10. |

자료: 감사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에 감사원은 전자복사기 구매 및 전산장비 구매(노트북)의 경우 각각 총 산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관계로 복사기 및 전산장비 구매(집행)계획 수립 시 일상감사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함.

그러나 「감사원 일상감사 실시지침」(제2조제1호가목)에 건당 추정가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구매 계약은 일상감사를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감사원이 내세운 미실시 사유는 타당성이 없음.

따라서 감사원은 향후 일상감사 대상 사업임에도 감사를 시행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수행해야 할 것임.

# 4. 감사원 소관 결산보고서: 소송충당부채 누락 문제

## 가. 개 요

충당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인하여 보고기간 현재 시점에 명백한 의무가 존재할 때 인식함.

다만 미래에 지출될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하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하며, 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금액을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 즉, 현재의무의 존재, 자원 유출의 높은 가능성, 그리고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비로소 재무제표 상에 부채로 계상하게 됨.

충당부채는 연금충당부채, 퇴직수당충당부채, 보증충당부채, 보험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로 구분하여 공시하고 있고, 기타충당부채는 연금, 퇴직수당, 보증 및 보험충당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충당부채를 의미하며, 소송충당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나. 검토의견

**감사원은 2025회계연도 소관 결산보고서에서 소송충당부채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바, 국가 결산검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기 전, 계정과목의 적용 오류나 부채 누락 등 회계처리 오류를 철저히 점검하여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검사할 필요가 있음.**

감사원은 2025년에 2회에 걸쳐 소송 패소 확정에 따른 상대방에 대한 소송비용 지급을 목적으로 일반수용비(210-01목)에서 배상금(310-02목)으로 1,900만원을 전용하여 1,200만원을 집행하고, 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00만원은 불용처리함.

[2025년도 기본경비 배상금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기본경비 (배상금) | - | - | - | 19 | 19 | 12 | 6 | 1 | 10 |

자료: 감사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위 사례와 같이 소송이 불리하게 진행되어 향후 손실을 부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재정상태표의 부채(소송충당부채)로 인식해야 함. 그러나 감사원은 소송 패소 확정에 따른 이월 경비 600만원을 소송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은 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음.

[2025회계연도 감사원 결사보고서 상 기타충당부채 명세]

(단위: 원)

| 관리과목 | 세부관리과목 | 금액 | | 증감률(%) |
|---|---|---|---|---|
| | | 당기 | 전기 | |
| 함 계 | | 1,812,954,110 | 1,609,810,860 | 12.6 |
| 소송충당부채 | | - | - | - |
| 퇴직급여충당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 1,812,954,110 | 1,609,810,860 | 12.6 |
| | (퇴직보험예치금) | - | - | - |
| | (국민연금전환금) | - | - | - |
| | (퇴직연금운용자산) | - | - | - |
| 퇴직급여충당부채 소계 | | 1,812,954,110 | 1,609,810,860 | 12.6 |
| 기타의 기타충당부채 | | - | - | - |

자료: 2025회계연도 감사원 결산보고서

이에 대해 감사원은 소송비용의 경우 소송 종료 후 별도의 법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이나 강제집행 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최종 결정을 통해 부담 금액이 확정되는 구조이므로, 2025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의 구체적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하기 어려워 충당부채로 계상하지 않았다고 설명함.

한편 「2025 국가회계편람」에 따르면, 충당부채는 ①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법적 의무)가 존재하고, ②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③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재정상태표의 부채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9)]

감사원의 2025회계연도 소송비용 600만원의 이월 사유가 '2025년도 소송 패소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소송비용이 확정된 후, 원고의 청구 지연으로 인한 이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소송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 지급이라는 법적 의무가 발생하였고, 원고의 소송비용 청구 지연에 따른 이월이므로 해당 업무를 이행하기 위한 신뢰성 있는 금액을 추정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충당부채 누락에 대한 감사원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짐.

[2025년도 소송경비 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 비목 | 예산액 | 전용 | 예산 현액 | 집행액 | 이월액 | 불용액 | 이월 사유 |
|---|---|---|---|---|---|---|---|
| 배상금 (310-02) | - | 19 | 19 | 12 | 6 | 1 | 2025년도 소송 패소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소송비용 확정 후 원고의 청구 지연에 따른 이월 |

감사원의 결산검사는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를 검증하는 업무임. 특히 재무제표 검사는 계정과목 적용 오류, 자산·부채 누락 등 회계처리 오류를 점검하여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오류를 수정한 국가결산검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감사원 본연의 임무임.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감사원은 향후 이와 같은 회계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결산검사 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함.

9) 「2025 국가회계편람」(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P.315.~P.316.

【일반회계】

〈세 입〉

## 5. 기타경상이전수입: 평균 수납액을 고려한 세입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 가. 개 요

**‘기타경상이전수입’** 은 감사원 지방사무소 관사 보증금 환수,[10] 여비 사후정산에 따른 반납금 및 기타 과오납금 회수금이 수납되는 세입항목으로, 2025년에는 2억 7,8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전액 수납(수납률 100.0%)되었음.[11]

[2025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5년도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징수 결정액(B) | 수납액 (C) | 불납 결손액 | 미수 납액 | 수납률 (C/B)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기타경상 이전수입 | 30 | 30 | 278 | 278 | - | - | 100.0 | 50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10) 감사원은 지방행정감사2국 및 국민제안감사2국 산하에 4개 지방사무소(부산, 대구, 광주, 대전)를 설치하고 관할 구역 내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공공기관에 관한 감사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제보의 조사·처리를 담당하게 하고 있음. 이에 감사원은 지방사무소 근무 직원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사무소 소재지별로 지방관사를 전·월세 형태로 임차하여 직원에게 제공하고 있음. 감사원이 현재 임차중인 관사는 일부 무보증으로 임차계약을 체결한 관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500만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계약 갱신 또는 신규 계약 체결시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이러한 감사원의 지방사무소 관사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관사 보증금이 기타경상이전수입 세입목으로 수납됨.

11) 일반회계-기타경상이전수입(59-596)(운영지원과)

## 나. 검토의견

**감사원은 기타경상이전수입 세입 예산 편성 시 수납되는 세입 항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수납 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을 제외하고 예산현액에 비해 수납액이 과도하게 많으며, 6년(2020~2025년) 평균 수납액은 1억 5,830만원, 3년(2023~2025년) 평균 수납액은 1억 7,420만원임.

[2020~2025년 감사원 기타경상이전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

| 연도 | 예산액 | |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B) | 수납액 (C) | 수납률 (C/A) | 수납률 (C/B) | 미수납액 | 불납 결손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2020 | 20.0 | 20.0 | 20.0 | 389.4 | 118.9 | 594.5 | 30.5 | - | 270.5 |
| 2021 | 20.0 | 20.0 | 20.0 | 282.8 | 282.8 | 1,414.0 | 100.0 | - | - |
| 2022 | 73.0 | 73.0 | 73.0 | 25.6 | 25.6 | 35.1 | 100.0 | - | - |
| 2023 | 30.0 | 30.0 | 30.0 | 165.5 | 165.5 | 551.7 | 100.0 | - | - |
| 2024 | 30.0 | 30.0 | 30.0 | 78.9 | 78.9 | 263.0 | 100.0 | - | - |
| 2025 | 30.0 | 30.0 | 30.0 | 278.3 | 278.3 | 927.7 | 100.0 | - | - |
| 6년(2020~2025) 평균 수납액 | | | | | 158.3 | | | | |
| 3년(2023~2025) 평균 수납액 | | | | | 174.2 | | | | |

자료: 감사원

2020~2025년 기타경상이전수입 수납액 중 감사원 지방사무소 관사의 보증금 환수 금액 비중을 살펴보면, 최고 93.0%에서 최하 33.2%로 다양하게 나타남.

[2020~2025년 기타경상이전수입 수납액 중 관사 보증금 환수 금액]

(단위: 백만원, %)

| 연 도 | 기타경상이전수입 전체 수납액(A) | 관사 보증금 환수 금액 (B) | 비중 (B/A) |
|---|---|---|---|
| 2020 | 118.9 | 96 | 80.7 |
| 2021 | 282.8 | 263 | 93.0 |
| 2022 | 25.6 | 20 | 78.1 |
| 2023 | 165.5 | 55 | 33.2 |
| 2024 | 78.9 | 50 | 63.4 |
| 2025 | 278.3 | 150 | 53.9 |
| 합 계 | 950 | 634 | 66.7 |

자료: 감사원

이에 대해 감사원은 관사 보증금 환수 금액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관사 임차계약은 계약기간 종료일에 임박하여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므로, 이처럼 예측이 어려운 성격의 세입 요인은 예산안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그러나 2023년 이후를 살펴보면, 관사 보증금 환수 금액 비중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명예퇴직수당 및 국외파견자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반납금이 많이 수납됨에 따라 2023~2025년 예산현액 3,000만원을 상당히 초과하여 수납 처리되었음.

이는 기타경상이전수입 세입이 과거에는 관사 보증금 환수가 주요 요인이었으나, 최근에는 명예퇴직수당 및 국외파견자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반납금 등 관사 보증금 외에도 다양한 항목이 상당한 규모로 지속적으로 수납되면서 관사 보증금 외에도 상당한 규모로 세입이 확보되고 있음을 의미함.

따라서 세입예산에 편성된 기타경상이전수입은 최근 3~6년 평균 수납액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보여지고, 세입예산 대비 징수결정액이 크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 수납되는 세입항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세　출〉

# 6. 기본경비 사업: 지출원인행위 준칙 위반 등

## 가. 개　요

**‘기본경비’** 사업은 감사원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지출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37억 200만원 중 135억원이 집행되고, 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억 9,600만원이 불용되었음.[12)]

[2025년도 기본경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기본경비 | 13,464 | 13,464 | | 409<br>△171 | 13,702 | 13,500 | 6 | 196 | 14,248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감사원은 기본경비 사업을 수행하면서 본원 서버실 상시 가동에 따른 전기 수요 증가, 장기 위탁 교육과정 관련 국외 연수 수행을 위한 국외 교육 여비 부족 등을 이유로 전용 5회, 세목조정 5회 등 총 10회에 걸쳐 예산을 변경(전용 및 세목조정)하여 집행하였음.

[2025년도 기본경비 전용 및 세목조정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일자) | ~에서 | | 금액 | ~으로 | | 이·전용 등 사유 |
|---|---|---|---|---|---|---|
| | 세부사업 | 목-세목 | | 세부사업 | 목-세목 | |
| 전용 (2025.4.7.) | 감사활동경비 (1131-303) | 일반수용비 (210-01) | 2 | 기본경비 (1111-251) | 배상금 (310-02) | 소송 패소 확정에 따른 상대방(원고)에 대한 소송비용 지급 |
| 전용 (2025.9.18.) | 국제교류 협력강화 (1135-322) | 국외업무여비 (220-02) | 17 | 기본경비 (1111-251) | 국외교육여비 (220-03) | 장기위탁교육과정 관련 국외연수 수행을 위한 국외교육여비 부족 |

12) 일반회계-기본경비(1111-251)(운영지원과)

| 구분<br>(일자) | ~에서 | | 금액 | ~으로 | | 이·전용 등 사유 |
|---|---|---|---|---|---|---|
| | 세부사업 | 목-세목 | | 세부사업 | 목-세목 | |
| 전용<br>(2025.11.25.) | 인건비<br>(1101-151) | 보수<br>(110-01) | 34 | 기본경비<br>(1111-251) | 일용임금<br>(110-04) | 무기계약직(환경관리원) 업무범위 증가 및 퇴사 등에 따른 결원의 대체인력에 대한 일용임금 부족 |
| 전용<br>(2025.12.19.) | 기본경비<br>(1111-251) | 일반수용비<br>(210-01) | 17 | 기본경비<br>(1111-251) | 배상금<br>(310-02) | 소송 패소 확정에 따라 상대방(원고)에 대한 소송비용 지급 |
| 전용<br>(2025.12.19.) | 감사활동경비<br>(1131-303) | 일반수용비<br>(210-01) | 85 | 기본경비<br>(1111-251) | 공공요금 및 제세<br>(210-02) | 감사원 본원 서버실 상시 가동 등에 따른 전기 수요 증가 등 공공요금 예산 부족 |
| | | 일반연구비<br>(260-01) | 100 | | | |
| **전용<br>(5건)** | **소계** | | **255** | | | |
| 세목조정<br>(2025.1.23.) | 기본경비<br>(1111-251) | 일반수용비<br>(210-01) | 2 | 기본경비<br>(1111-251) | 일반용역비<br>(210-14) | 고감단·과장급 직위 후보자 역량평가 대상인원 증가로 규모 확대 |
| 세목조정<br>(2025.6.9.) | 기본경비<br>(1111-251) | 상용임금<br>(110-03) | 60 | 기본경비<br>(1111-251) | 일용임금<br>(110-04) | 제1별관 재건축 준공에 따른 관리인력 정규직 확보 전 일용직 보수 지급 |
| 세목조정<br>(2025.10.29.) | 기본경비<br>(1111-251) | 임차료<br>(210-07) | 37 | 기본경비<br>(1111-251) | 공공요금 및 제세<br>(210-02) | 감사원 본원 서버실 상시 가동 등에 따른 전기 수요 증가 등 공공요금 예산 부족 |
| | | 복리후생비<br>(210-12) | 13 | | | |
| 세목조정<br>(2025.11.27.) | 기본경비<br>(1111-251) | 임차료<br>(210-07) | 15 | 기본경비<br>(1111-251) | 공공요금 및 제세<br>(210-02) | 본원 수도료 등 공공요금 예산 부족 |
| 세목조정<br>(2025.12.31.) | 기본경비<br>(1111-251) | 피복비<br>(210-03) | 2 | 기본경비<br>(1111-251) | 일반수용비<br>(210-01) | 퇴직자 및 신규채용자 증가에 따른 행사 물품 수요 증가 등 |
| | | 급식비<br>(210-04) | 3 | | | |
| | | 일·숙직비<br>(210-06) | 1 | | | |
| | | 임차료<br>(210-07) | 11 | | | |
| | | 복리후생비<br>(210-12) | 10 | | | |
| **세목조정<br>(5건)** | **소계** | | **154** | | | |

자료: 감사원

## 나. 검토의견

**감사원은 예산 변경(전용 및 세목조정) 시 면밀한 집행 관리를 통해 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하고, 지출원인행위 준칙을 위배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감사원은 2025년 12월 19일 기본경비(1111-251)의 일반수용비(210-01)에서 소송비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700만원을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배상금(310-02)으로 전용하였음. 이후 2주도 지나지 않아 일반수용비(210-01)가 부족해지자 12월 31일 피복비(210-03), 급식비(210-04), 일・숙직비(210-06), 임차료(210-07), 복리후생비(210-12) 등 5개 세목에서 총 2,700만원을 일반수용비(210-01)로 세목조정하여 집행하였음.

[2025년도 기본경비 중 일반수용비 전용(세목조정 포함) 부적정 사례]

(단위: 백만원)

| 구분 (일자) | ~에서 | | 금액 | ~으로 | | 이·전용 등 사유 |
|---|---|---|---|---|---|---|
| | 세부사업 | 목-세목 | | 세부사업 | 목-세목 | |
| 전용 (2025.12.19.) | 기본경비 (1111-251) | 일반수용비 (210-01) | 17 | 기본경비 (1111-251) | 배상금 (310-02) | 소송 패소 확정에 따라 상대방(원고)에 대한 소송비용 지급 |
| 세목조정 (2025.12.31.) | 기본경비 (1111-251) | 피복비 (210-03) | 2 | 기본경비 (1111-251) | 일반수용비 (210-01) | 퇴직자 및 신규채용자 증가에 따른 행사 물품 수요 증가 등 |
| | | 급식비 (210-04) | 3 | | | |
| | | 일・숙직비 (210-06) | 1 | | | |
| | | 임차료 (210-07) | 11 | | | |
| | | 복리후생비 (210-12) | 10 | | | |

자료: 감사원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예산을 전용할 때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거나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연도 말에 다른 사업 예산의 집행 잔액을 전용하여 불요불급한 소요에 충당하거나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5조에 규정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집행해야 함.[13)]

13)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위 사례와 같이 일반수용비에서 배상금으로 1,700만원을 전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다른 5개 세목으로부터 2,70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세목조정하여 집행한 것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취지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음.

또한 감사원이 연도 말인 12월 31일에 일반수용비로 2,700만원을 세목조정하여 퇴직자 및 신규 채용자 행사 물품 비용을 지급한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확보(배정)되기 전에 행사 물품 계약을 체결(지출원인행위)한 것으로 보임.[14]

이는 「국고금 관리법」 제20조의 "지출원인행위는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이나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을 위배한 예산 집행임. 따라서 감사원은 향후 지출원인행위 준칙을 준수하여 이와 같은 위반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15]

14) 일반수용비를 포함한 관서운영경비 집행현황을 검토하기 위해 감사원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지급부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감사원은 감사활동과 관련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자료제출 시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공정한 감사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여 관서운영경비 지출현황은 파악이 불가함.

15) 「국고금 관리법」
제20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이나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 7. 감사활동경비 사업: 재심의 처리 기간 단축 필요 및 감사지 발간 경비의 연례적 이월 문제

## 가. 개 요

**‘감사활동경비’** 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대한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등 감사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44억 2,300만원 중 124억 8,500만원이 집행(집행률 86.6%)되고 8,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8억 4,900만원이 불용되었음.[16]

[2025년도 감사활동경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감사활동경비 | 9,234 | 14,512 | 98 | △187 | 14,423 | 12,485 | 89 | 1,849 | 15,101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첫째,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 처리의 법정기한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재심의 청구 사건이 법정기한(2개월)을 초과하여 지연 처리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감사원은 이 사업을 통해 「감사원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제기된 재심의 청구에 대한 처리 업무를 하고 있으며,[17] 같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의 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함.[18]

---

16) 일반회계-감사활동경비(1131-303)(기획조정실)

17) 「감사원법」
제36조(재심의 청구) ① 제31조에 따른 변상 판정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본인,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변상판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18) 「감사원법」
제38조(재심의 청구의 처리) ①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가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를 각하

2020~2025년까지 처리된 재심의 중「감사원법」제38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한 내에 처리된 건은 10% 내외이며, 2025년에는 32건이 처리되었으나 그 중 3건만이 법정기한 내에 처리되었고, 평균 처리기한은 231일로서 법정기한인 2개월을 과도하게 초과하였음.

[2020~2025년 재심의 청구 처리기간 현황]

(단위: 건, %, 일)

| 연 도 | 전체 처리 건수 | 기한 준수 처리 건수 (2개월 이내) | 기한 경과 처리 건수 | | 평균 처리기간 |
|---|---|---|---|---|---|
| | | | 2개월~1년 | 1년 초과 | |
| 2020 | 48 (100.0) | 5 (10.4) | 36 | 7 | 213 |
| | | | 43 (89.6) | | |
| 2021 | 46 (100.0) | 4 (8.7) | 18 | 24 | 333 |
| | | | 42 (91.3) | | |
| 2022 | 22 (100.0) | 2 (9.1) | 9 | 11 | 325 |
| | | | 20 (90.9) | | |
| 2023 | 56 (100.0) | 2 (3.6) | 15 | 39 | 475 |
| | | | 54 (96.4) | | |
| 2024 | 58 (100.0) | 3 (5.2) | 33 | 22 | 405 |
| | | | 55 (94.8) | | |
| 2025 | 32 (100.0) | 3 (9.4) | 25 | 4 | 231 |
| | | | 29 (90.6) | | |

자료: 감사원

참고로 감사원은 2023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으로 재심의 청구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실효성 있게 제도를 개선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을 받은 바 있음.

[2023 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시정요구 유형 |
|---|---|---|
| (19) 재심의 청구 처리기간 단축 필요 | ㅇ [지적사항] 2023년 재심의 청구 처리의 법정기한(2개월 이내) 준수 비율은 3.8%로, 최근 5년간 기한 준수 비율 중 최저치를 기록함<br><br>ㅇ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실효성 있게 제도를 개선할 것 | 시정 |

한다.

②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를 기각하고 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 요구나 권고·통보를 취소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다.

③ 감사원이 재심의 청구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2025년 5월 ‘재심의 관련 결재 단계 간소화 방안’을 추진하여 재심의 청구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재심의 청구에 대한 처리가 법정기한을 도과하여 지연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2020~2025년 재심의 처리가 완료된 건의 결과 현황]

(단위: 건)

| 구분 | 처리 완료된 건수(A) | | | |
|---|---|---|---|---|
| | | 인용건수 | 기각건수 | 각하 및 취하 건수 |
| 2020년 | 48 | 9 | 24 | 15 |
| 2021년 | 46 | 1 | 38 | 7 |
| 2022년 | 22 | 0 | 20 | 2 |
| 2023년 | 56 | 10 | 45 | 1 |
| 2024년 | 58 | 7 | 47 | 4 |
| 2025년 | 32 | 2 | 27 | 3 |

자료: 감사원

따라서 감사원은 재심의가 법정기한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2023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한편 재심의 청구인의 권리구제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노력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감사원은 ‘감사지’ 발간의 연례적 이월 방지를 위해 사업 추진 일정을 연초부터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감사원은 1945년 감사원의 전신인 심계원에서 “審友(심우)”지가 최초로 발간된 이래 60여년 간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의 활동을 알리고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발간되어 온 감사 전문지로, 분기별로 제작되는 계간지인 ‘감사지’를 발간하고 있음.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감사지’의 발간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이후 매년 이월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감사원은 매년 1월 중순에 발간계약을 발주하고 2월에 원고 섭외 등을 시작하다 보니 일정이 순연되면서 사고이월이 발생했다고 설명함.

[2021년~2025년 감사지 발간 현황]

(단위: 백만원)

| 연 도 | 계약기간 | | 계약 방법 | 계약 업체 | 예산집행내역 | | |
|---|---|---|---|---|---|---|---|
| | 시작일 | 종료일 | | | 예산액 | 집행액 (이월 포함) | 이월액 |
| 2021 | 2021-01-01 | 2021-12-31 | 제한경쟁 | 문□□□ | 113 | 100 | - |
| 2022 | 2022-01-01 | 2022-12-31 | 수의계약 | 반□□□ | 102 | 99 | 16 |
| 2023 | 2023-01-18 | 2023-12-21 | 수의계약 | 반□□□ | 97 | 97 | 25 |
| 2024 | 2024-01-29 | 2025-01-28 | 제한경쟁 | 문□□□ | 100 | 88 | 22 |
| 2025 | 2025-02-04 | 2026-02-04 | 제한경쟁 | 경□□□ | 96 | 85 | 22 |

자료: 감사원

그런데 예산의 이월은 세출예산 중 연도 내 미지출액을 다음 회계연도로 넘겨 지출하는 것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19]에 대한 예외인 만큼 최소한으로만 허용되어야 함. 따라서 감사원은 연례적인 예산 이월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지 발간 추진 일정을 연초부터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19)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8. 전산운영경비(정보화) 사업: 집행 지연, 예산 이월 등이 최소화 되도록 면밀한 사업 관리 필요

## 가. 개 요

**‘전산운영경비(정보화)’** 사업은 전산시스템을 구축·개선하여 감사자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체감사기구와의 감사관련 지식을 공유하며,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85억 3,500만원 중 135억 9,700만원이 집행(집행률 73.4%)되고 35억 9,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3억 4,500만원이 불용되었음.[20]

[2025년도 전산운영경비(정보화)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전산운영경비 (정보화) | 16,111 | 16,111 | 2,424 | △59<br>59 | 18,535 | 13,597 | 3,593 | 1,345 | 10,300 |
| OASYS 구축 · 운영 | 12,854 | 12,854 | 2,424 | 59 | 15,337 | 10,431 | 3,593 | 1,313 | 6,504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감사원은 차세대 업무포털시스템(OASYS) 사업의 지연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 간 괴리가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정보화 사업 추진 시 집행 지연과 예산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집행 관리를 면밀히 할 필요가 있음.**

전산운영경비 사업의 내역 사업인 ’차세대 업무포털시스템(OASYS) 구축·운영’은 전자감사관리시스템, 실적관리시스템, 성과관리시스템 및 홈페이지 등의 안정적인 구축·운영을 목적으로 함.

감사원은 2024년에 차세대 업무포털시스템(OASYS) 구축과 관련하여 당초에는 단년도 사업으로 계획하고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정부 예산안 편성 단계에

20) 일반회계-전산운영경비(정보화)(1134-309)(디지털감사국)

서 2024년(1차년도)에는 인프라 구축, 2025년(2차년도)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조정되었음.

그런데 차세대 업무포털시스템(OASYS) 사업의 지연으로 인해 2024년에는 24억 2,4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고, 2025년에는 35억 9,3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여 예산편성과 집행간 괴리가 발생함.

[2024년 및 2025년 차세대 업무포털시스템(OASYS) 사업 이월액 발생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 계 약 명 | 비목 | 계약금액 (A) | 당해연도 집행금액 (B) | 사고이월 금액 (A-B) |
|---|---|---|---|---|---|
| 2024 | 차세대 OASYS 구축을 위한 감사원 네트워크 고도화 및 정보보안 인프라 구축 사업 | 자산 취득비 | 7,024 | 4,905 | 2,119 |
| | 디지털포렌식 증거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HW 구매 사업 | | 207 | - | 207 |
| | 감사원 네트워크 고도화 및 정보보안 인프라 구축 사업 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 일반 연구비 | 326 | 228 | 98 |
| | 소 계 | | 7,557 | 5,133 | 2,424 |
| 2025 | 차세대 OASYS 구축 사업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2차) | 자산 취득비 | 2,001 | 1,206 | 795 |
| | 차세대 OASYS 구축 사업 | | 654 | - | 654 |
| | 디지털포렌식 증거관리 시스템 보안성 강화를 위한 물품 구매 | | 167 | - | 167 |
| | 디지털포렌식 증거관리를 위한 S/W 구매 | | 246 | 131 | 115 |
| | 차세대 OASYS 구축 사업 | 일반 연구비 | 6,225 | 4,716 | 1,497 |
| | 차세대 OASYS 구축 감리 및 개인정보 역량평가 용역 | | 569 | 319 | 250 |
| | 차세대 OASYS 구축 사업 | 임차료 | 115 | - | 115 |
| | 소 계 | | 9,977 | 6,372 | 3,593 |

자료: 감사원

이에 대해 감사원은 2024년의 경우 타 부처 사례가 없는 무선통신 적용과 업무망 VDI(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를 통한 논리적 망분리 등 감사원 정보화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상세한 논의가 필요했고, 2025년에는 해당 연도에 체결한 차세대 업무포털시스템(OASYS)의 계약기간이 미도래하여 예산을 이월했다고 설명함.

그러나 감사원은 2024회계연도 상임위원회 결산 심사 당시 “관계 기관과의 협의 지연 등으로 2024년도 사업 착수는 늦어졌으나, 2025년도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은 인프라 구축 사업과 병행할 수 있어 예산 집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음.

그럼에도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상당한 금액의 이월액이 발생한 점, 그간 감사원의 전산운영경비(정보화) 사업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상황이 반복되어 해당 상임위의 예산안 및 결산 심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아왔다는 점[21]을 고려할 때, 감사원의 면밀한 정보화사업 업무수행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됨.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 및 장비 구입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는 업무 간 연동 일정을 체체적으로 관리하여 연말이나 하반기 계약 체결로 인한 예산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해야 함에도 관련 노력이 부족했음.

더구나 2025년도 상반기에는 2024년에서 이월된 24억 2,400만원의 집행에 따른 변동 상황을 고려하여 2025년도 사업이 연쇄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고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했으나, 이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감사원은 상기 차세대 업무포털시스템(OASYS) 사업 사례를 참고하여 정보화 사업 추진 시 시스템 구축에 따른 주요 용역 및 장비구입 간 연동 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연말 계약 체결로 인한 예산의 이월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관리가 필요함.

---

21) ① 2023회계연도 법사위 예산검토보고서에서는 공공감사정보시스템의 재구축을 위해 편성한 2022년(1차 연도분) 과다한 이월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사업의 지연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과 함께 2023년도(2차 연도) 구축예산의 적정성 및 적기 집행 가능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② 2022회계연도 법제사법위원회 결산 예비심사보고서에서는 2022년에 차세대 업무포털시스템(OASYS)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수립 용역계약의 연도 말 체결 및 이월 발생에 대한 지적과 함께 계약 발주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③ 전산운영경비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으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된 감사자료분석시스템 사업에 대해 연례적인 이월액 발생으로 인한 집행률 저조 등을 사유로 국회는 결산 심사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회계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주의할 것을 시정요구한 바 있음.
④ 2015, 2016 및 2019회계연도 법제사법위원회 결산 예비심사보고서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해 시정요구 유형 중 ‘주의’ 조치가 주어졌고, 2017회계연도 법제사법위원회 검토의견에서도 해당 사업의 연례적인 이월이 지적되었음. 또한 2018회계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의견에서도 해당 사업의 연례적 이월 발생에 대한 지적과 함께 계약 발주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기　타】

## 9.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감사원에 대해 시정요구 16건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시정 3건·주의 2건·제도개선 11건이었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 구분 | 변상 | 징계 | 시정 | 주의 | 제도개선 | (중복) | 계 |
|---|---|---|---|---|---|---|---|
| 결산 | - | - | 3 | 2 | 11 | - | 16 |
| 예비비 | - | - | - | - | - | - | - |
| 합계 | - | - | 3 | 2 | 11 | - | 16 |

감사원은 시정요구사항 16건에 대해 2025년 12월말 기준 14건을 조치완료, 2건을 조치중(조치율 87.5%)인 것으로 보고 하였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 구분 | 시정요구사항(a) | 조치완료(b) | 조치율(b/a) | 조치중(a-b) |
|---|---|---|---|---|
| 결산 | 16 | 14 | 87.5 | 2 |
| 예비비 | - | - | - | - |
| 합계 | 16 | 14 | 87.5 | 2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Ⅰ. 개 관

## 1. 결산 개요

### 가. 총수입·총지출

2025회계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총수입은 1억 1,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900만원(△38.1%)이 감소됨.[1)]

[2025회계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4회계연도 | | | | 2025회계연도 | | | | 전년대비 (D-B) |
|---|---|---|---|---|---|---|---|---|---|
| | 예산액 | | 결산 (B) | 예산대비 (B-A) | 예산액 | | 결산 (D) | 예산대비 (D-C) | |
| | 본예산 | 추경(A) | | | 본예산 | 추경(C) | | | |
| 예 산 | - | - | 181 | 181 | - | - | 112 | 112 | △69 |
| 총수입 | - | - | 181 | 181 | - | - | 112 | 112 | △69 |

문의: 02-6788-5702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5회계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26억 4,300만원(△10.5%)이 적은 226억 2,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3억 5,100만원(23.8%)이 증가됨.

[2025회계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4회계연도 | | | | 2025회계연도 | | | | 전년대비 (D-B) |
|---|---|---|---|---|---|---|---|---|---|
| | 예산액 | | 결산 (B) | 예산대비 (B-A) | 예산액 | | 결산 (D) | 예산대비 (D-C) | |
| | 본예산 | 추경(A) | | | 본예산 | 추경(C) | | | |
| 예 산 | 20,680 | 20,680 | 18,274 | △2,406 | 25,268 | 25,268 | 22,625 | △2,643 | 4,351 |
| 총지출 | 20,680 | 20,680 | 18,274 | △2,406 | 25,268 | 25,268 | 22,625 | △2,643 | 4,351 |

## 나.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없으며, 1억 1,2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전액 수납(수납률 100.0%)되었음.

[2025회계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세입예산액 | | 이체등 증감액 (B) | 세입 예산현액 (A+B) | 징수 결정액 | 수납액 | 미수납액 | 불납 결손액 |
|---|---|---|---|---|---|---|---|---|
| | 본예산 | 추경 (A) | | | | | | |
| 일반회계 | - | - | - | - | 112 | 112 | - | - |
| 합 계 | - | - | - | - | 112 | 112 | - | - |

주) 총계 기준

2025회계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253억 9,100만원으로, 227억 4,800만원이 집행(집행률 89.6%)되고 3억 4,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2억 9,6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세출예산액 | | 예산결정후증감액(B) | | | 세출 예산현액 (C=A+B)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 (A)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 | | |
| 일반회계 | 25,268 | 25,268 | 123 | - | - | 25,391 | 22,748 | 347 | 2,296 |
| 합 계 | 25,268 | 25,268 | 123 | - | - | 25,391 | 22,748 | 347 | 2,296 |

주) 총계 기준

## 다. 재무결산

2025회계연도 말 기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자산은 전년 대비 47억 6,100만원이 증가된 192억 4,500만원으로, 이는 유·무형자산이 15억 7,500만원 감소됐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자산이 3,700만원 증가되고 기타자산이 62억 9,800만원 증가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1,200만원 증가된 3,800만원으로 차입부채 800만원 및 충당부채 400만원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47억 4,800만원이 증가된 192억 600만원임.

2025회계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77억 2,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3,800만원 증가되었으며, 재정운영결과는 200억 7,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6,300만원 증가됨.

[2025회계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 | 2025 (A) | 2024 (B) | 증 감 | |
|---|---|---|---|---|---|---|
| | | | | | 금액 (A-B) | 증가율 (A-B)/B |
| 재정 상태표 | 자 산 | | 19,245 | 14,484 | 4,761 | 32.9 |
| | | 금융자산 | 100 | 63 | 37 | 58.7 |
| | | 유·무형자산 | 12,734 | 14,309 | △1,575 | △11.0 |
| | | 기타자산 | 6,410 | 112 | 6,298 | 5,623.2 |
| | 부 채 | | 38 | 26 | 12 | 46.2 |
| | | 차입부채 | 34 | 26 | 8 | 30.8 |
| | | 충당부채 | 4 | - | 4 | - |
| | | 기타부채 | - | - | - | - |
| | 순자산 | | 19,206 | 14,458 | 4,748 | 32.8 |
| 재정 운영표 | 프로그램순원가 | | 7,722 | 6,184 | 1,538 | 24.9 |
| | 재정운영순원가 | | 20,074 | 18,211 | 1,863 | 10.2 |
| | 재정운영결과 | | 20,074 | 18,211 | 1,863 | 10.2 |

##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2025회계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재정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 및 기금은 없음.

##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엄정하면서도 품격 있고 절제된 수사로 고위공직자 부패를 근절하고, 선진 수사기구로서의 전범(典範)을 제시하며, 총 7개 세부사업에서 공수처 업무 정보화, 첨단범죄 및 디지털 수사, 수사 지원 등을 추진하였음.

2025년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사업의 국내여비·포상금 및 기타보전금 비목에서 집행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집행부진이 반복되는 항목에 대한 관리·점검을 강화하고 집행계획을 보다 구체화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매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 불필요한 국고를 낭비하고 있으므로, 관련법령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를 준수할 필요가 있음.

#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 1.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사업: 연례적 집행 부진 문제 해결 필요

### 가. 개　요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사업은 범죄 수사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 수사역량의 강화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함)의 직접수사 활동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4억 3,800만원 중 12억 6,900만원이 집행(집행률 88.2%)되고 1,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억 5,300만원이 불용되었음.[2)]

[2025년도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 1,430 | 1,430 | 8 | - | 1,438 | 1,269 | 16 | 153 | 1,407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공수처는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사업의 국내여비·포상금 및 기타보전금 비목에서 집행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집행부진이 반복되는 항목에 대한 관리·점검을 강화하고 집행계획을 보다 구체화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일반회계-수사지원 및 수사일반(1032-301)(수사기획관실)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사업의 최근 4년간 집행률이 2022년 50.0%, 2023년 70.5%, 2024년 65.8%, 2025년 88.7%로 나타나 점진적인 개선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예산 대비 집행이 충분하지 않은 수준으로 연례적인 집행부진이 지속되고 있음.

[최근 4년간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 연도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산 현액(B) | 집행액 (C) | 집행률 (C/A)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2022 | 2,528 | 2,363 | - | - | 2,363 | 1,181 | 50.0 | 45 | 1,137 |
| 2023 | 1,970 | 1,970 | 45 | - | 2,015 | 1,388 | 70.5 | - | 627 |
| 2024 | 1,719 | 1,719 | - | △152 | 1,567 | 1,131 | 65.8 | 8 | 428 |
| 2025 | 1,430 | 1,430 | 8 | - | 1,438 | 1,269 | 88.7 | 16 | 153 |
| 2026 | 1,407 | 1,407 | 16 | - | 1,423 | - | - | - | - |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히 2025년의 경우 세목별 집행실적을 보면 국내여비는 예산현액 1억 3,800만원 중 7,2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 52.2%, 포상금은 500만원 전액 미집행, 기타보전금은 800만원 중 3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 37.5%로 나타나는 등 일부 세목에서 집행부진이 확인됨.

[2025년도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기능·목별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 세사업명 | 2025년 | | | | | | | |
|---|---|---|---|---|---|---|---|---|
| | 예산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산현액 (A) | 집행액 (B)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집행률 (B/A) |
|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 **1,430** | **8** | **48<br>△48** | **1,438** | **1,269** | **16** | **153** | **88.2** |
| -국내여비 | 138 | - | - | 138 | 72 | - | 66 | 52.2 |
| -포상금 | 5 | - | - | 5 | - | - | 5 | - |
| -기타보전금 | 8 | - | - | 8 | 3 | - | 5 | 37.5 |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한 국내여비 및 포상금의 연도별 집행실적을 보면, 국내여비는 2022년 26.1%(3억 4,500만원 중 9,000만원 집행), 2023년 35.4%(3억 4,500만원 중 1억 2,200만원 집행), 2024년 44.5%(1억 5,500만원 중 6,900만원 집행), 2025년 52.2%(1억 3,800만원 중 7,200만원 집행)로 집행률이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포상금의 경우에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5,500만원, 2,200만원, 500만원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미집행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최근 4년간 국내여비 및 포상금 예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2년 | | | 2023년 | | | 2024년 | | | 2025년 | | |
|---|---|---|---|---|---|---|---|---|---|---|---|---|
| | 예산 현액 (A) | 집행액 (B) | 집행률 (B/A) | 예산 현액 (A) | 집행액 (B) | 집행률 (B/A) | 예산 현액 (A) | 집행액 (B) | 집행률 (B/A) | 예산 현액 (A) | 집행액 (B) | 집행률 (B/A) |
| -국내여비 | 345 | 90 | 26.1 | 345 | 122 | 35.4 | 155 | 69 | 44.5 | 138 | 72 | 52.2 |
| -포상금 | 55 | - | - | 55 | - | - | 22 | - | - | 5 | - | - |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와 같은 집행부진은 수사 인력 부족 및 사건 발생에 따라 집행 여부가 결정되는 사업 특성에 기인한 측면이 있으나, 반복적으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집행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바, 국내여비, 포상금 등 집행부진이 반복되는 항목에 대한 관리·점검을 강화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025년 국내여비 예결산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예산 | | 결산 | |
|---|---|---|---|
| 편성내역 | 예산액 | 집행액 | 세부내역 |
| 1. 일반수사 여비 | 50 | 72 | 수사 관련 관내·외 출장여비 지급 |
| 2. 고소고발사건 조사여비 | 26 | | |
| 3. 호송 관련 출장여비 | 5 | | |
| 4. 압수물 관련 출장여비 | 38 | | |
| 5. 회계분석 자금추적 관련 출장여비 | 19 | | |
| **합 계** | **138** | **72** | |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2.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 사업: 장애인고용의무 준수 노력 필요

### 가. 개 요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 사업은 공수처 기관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수용비, 공공요금, 임차료 등 기관운영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6억 6,800만원 중 23억 5,900만원이 집행(집행률 88.4%)되고 5,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억 5,400만원이 불용되었음.[3)]

[2025년도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 | 2,573 | 2,573 | 115 | △20 | 2,668 | 2,359 | 55 | 254 | 2,429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공수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매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 불필요한 국고를 낭비하고 있으므로, 관련법령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를 준수할 필요가 있음.**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4)]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소속 공무원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같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5)]

---

3) 일반회계-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7011-250)(운영지원담당관실)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공수처의 행정직원 정원은 총 20명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채용의무가 있으나 장애인 채용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매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최근 4년간 부담금 납부액은 2022년 1,945만원, 2023년 2,228만원, 2024년 2,340만원, 2025년 2,399만원임. 이는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매년 반복적인 재정지출이 발생하는 구조이며,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재정부담을 초래하고 있음.

[최근 4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내역]

(단위: 원)

| 구분 | 세부사업 | 세목 | 납부액 | 납부사유 |
|---|---|---|---|---|
| 2022년 |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 (7011-250) |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 19,445,860 | 의무고용(1명) 미달 |
| 2023년 | | | 22,284,080 | 의무고용(1명) 미달 |
| 2024년 | | | 23,403,150 | 의무고용(1명) 미달 |
| 2025년 | | | 23,987,010 | 의무고용(1명) 미달 |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는 행정직원 정원이 제한되어 있어 추가 채용이 곤란하고, 수사관 중 장애인을 채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의무고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등의 사정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상 장애인 고용의무를 면제하는 사유로 보기 어려움.

특히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을 반영한 것으로, 이를 지속적으로 미이행하고 부담금 납부로 대체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공수처는 장애인 고용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인력운용 방안을 마련하고, 반복적인 부담금 납부 구조를 개선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법령 준수성을 동시에 확보할 필요가 있음.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①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기관의 장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 【기　타】

## 3.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시정요구 6건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주의 1건·제도개선 5건이었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 구분 | 변상 | 징계 | 시정 | 주의 | 제도개선 | (중복) | 계 |
|---|---|---|---|---|---|---|---|
| 결산 | - | - | - | 1 | 5 | - | 6 |
| 예비비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1 | 5 | - | 6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시정요구사항 6건에 대해 6건을 조치완료(조치율 100.0%)하였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 구분 | 시정요구사항(a) | 조치완료(b) | 조치율(b/a) | 조치중(a-b) |
|---|---|---|---|---|
| 결산 | 6 | 6 | 100.0 | - |
| 예비비 | - | - | - | - |
| 합계 | 6 | 6 | 100.0 | - |

# 헌법재판소

# Ⅰ. 개 관

## 1. 결산 개요

### 가. 총수입·총지출

2025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6,200만원(25.4%)이 많은 3억 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7,400만원(△55.0%)이 감소됨.[1)]

[2025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4회계연도 | | | | 2025회계연도 | | | | 전년대비 (D-B) |
|---|---|---|---|---|---|---|---|---|---|
| | 예산액 | | 결산 (B) | 예산대비 (B-A) | 예산액 | | 결산 (D) | 예산대비 (D-C) | |
| | 본예산 | 추경(A) | | | 본예산 | 추경(C) | | | |
| 예 산 | 641 | 641 | 680 | 39 | 244 | 244 | 306 | 62 | △374 |
| 총수입 | 641 | 641 | 680 | 39 | 244 | 244 | 306 | 62 | △374 |

2025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17억 4,800만원(△3.0%)이 적은 566억 7,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5,800만원(4.1%)이 증가됨.

문의: 02-6788-5702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5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4회계연도 | | | | 2025회계연도 | | | | 전년대비 (D-B) |
|---|---|---|---|---|---|---|---|---|---|
| | 예산액 | | 결산 (B) | 예산대비 (B-A) | 예산액 | | 결산 (D) | 예산대비 (D-C) | |
| | 본예산 | 추경(A) | | | 본예산 | 추경(C) | | | |
| 예 산 | 56,766 | 56,766 | 54,418 | △2,348 | 58,424 | 58,424 | 56,676 | △1,748 | 2,258 |
| 총지출 | 56,766 | 56,766 | 54,418 | △2,348 | 58,424 | 58,424 | 56,676 | △1,748 | 2,258 |

## 나.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억 4,400만원으로, 3억 6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전액 수납되고,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은 없음.

[2025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세입예산액 | | 이체등 증감액 (B) | 세입 예산현액 (A+B) | 징수 결정액 | 수납액 | 미수납액 | 불납 결손액 |
|---|---|---|---|---|---|---|---|---|
| | 본예산 | 추경 (A) | | | | | | |
| 일반회계 | 244 | 244 | - | 244 | 306 | 306 | - | - |
| 합 계 | 244 | 244 | - | 244 | 306 | 306 | - | - |

주) 총계 기준

2025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584억 2,400만원으로, 566억 7,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0%)되고 17억 4,8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세출예산액 | | 예산결정후증감액(B) | | | 세출 예산현액 (C=A+B)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 (A)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 | | |
| 일반회계 | 58,424 | 58,424 | - | - | - | 58,424 | 56,676 | - | 1,748 |
| 합 계 | 58,424 | 58,424 | - | - | - | 58,424 | 56,676 | - | 1,748 |

주) 총계 기준

## 다. 재무결산

2025회계연도 말 기준 헌법재판소 자산은 전년 대비 3억 100만원이 증가된 2,142억 1,200만원으로, 이는 금융자산이 1억 9,600만원, 기타자산이 600만원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무형자산이 5억 300만원 증가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1억 3,100만원 증가된 38억 8,000만원으로 차입부채 1억 3,100만원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1억 7,000만원이 증가된 2,103억 3,200만원임.

2025회계연도 헌법재판소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619억 3,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7억 1,800만원 증가되었으며, 재정운영결과는 618억 2,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6억 9,300만원 증가됨.

[2025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 | 2025 (A) | 2024 (B) | 증 감 | |
|---|---|---|---|---|---|---|
| | | | | | 금액 (A-B) | 증가율 (A-B)/B |
| 재정 상태표 | 자 산 | | 214,212 | 213,911 | 301 | 0.1 |
| | | 금융자산 | 210 | 406 | △196 | △48.3 |
| | | 유·무형자산 | 213,936 | 213,433 | 503 | 0.2 |
| | | 기타자산 | 66 | 72 | △6 | △8.3 |
| | 부 채 | | 3,880 | 3,749 | 131 | 3.5 |
| | | 차입부채 | 3,880 | 3,749 | 131 | 3.5 |
| | | 충당부채 | - | - | - | - |
| | | 기타부채 | - | - | - | - |
| | 순자산 | | 210,332 | 210,162 | 170 | 0.1 |
| 재정 운영표 | 프로그램순원가 | | 61,934 | 59,216 | 2,718 | 4.6 |
| | 재정운영순원가 | | 61,829 | 59,136 | 2,693 | 4.6 |
| | 재정운영결과 | | 61,829 | 59,136 | 2,693 | 4.6 |

##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2025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재정은 일반회계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거래는 없음

##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헌법재판소는 인적·물적·제도적 기반 강화, 유기적 협력을 통한 심판지원 역량 강화, 국민을 위한 재판·행정 서비스 제공, 국제 교류·협력 강화를 주요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총 13개 세부사업을 통하여 헌법재판 및 심판사건 연구 업무의 효율적 지원, 대국민 재판서비스 제고, 해외 헌법재판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등을 추진하였음.

2025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헌법소원심판의 참고인 연구비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활용된 참고인도 법조인이 다수를 차지하므로, 헌법재판소는 전문분야별 참고인 활용도를 높이는 등 참고인 제도의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국선대리인 및 사선대리인 선임사건의 인용률을 볼 때 국선대리인의 인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둘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심판사건의 평균처리 기간이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처리기간(180일)을 크게 초과하고 있으므로, 사건 유형별 처리체계 개선, 반복사건에 대한 효율적 처리방안 마련, 심리 절차 간소화 등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셋째, 헌법재판소의 차량 임차료를 '본부기본경비(1011-250)'와 '본부운영지원(1032-302)'으로 분리하여 편성 및 집행하고 있으므로, 차량 임차료의 집행과목을 일원화하여 예산 운용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 1. 국선대리인보수등: 참고인 제도 활용 미흡 개선 필요 등

### 가. 개　요

**‘국선대리인보수등’** 사업은 헌법소원심판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기회를 제공하여 무자력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재판과 관련한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지정하여 변론에서 보다 심도 있는 진술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억 2,700만원 중 1억 2,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4%)되고 100만원이 불용되었음.[2)]

[2025년도 국선대리인보수등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국선대리인보수등 | 127 | 127 | - | - | 127 | 126 | - | 1 | 121 |
| 국선대리인 보수 | 109 | 109 | - | - | 109 | 126 | - | △17 | 109 |
| 참고인 연구비 등 | 18 | 18 | - | - | 18 | - | - | 18 | 12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첫째, 헌법소원심판의 참고인 연구비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활용된 참고인도 법조인이 다수를 차지하므로, 헌법재판소는 전문분야별 참고인 활용도를 높이는 등 참고인 제도의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일반회계-국선대리인보수등(1031-300)(심판지원실)

‘참고인 연구비 등’ 사업은 재판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지정하여 변론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직접 청취함으로써 법적 쟁점에 대한 심층적인 판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이 사업은 당사자의 참고인 추천에 따라 재판부가 참고인 지정 결정을 하면 참고인이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변론에서 진술 및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에 대한 참고인 연구비를 지급하는 절차로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참고인 연구비 등 사업은 매년 불용이 반복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총 30회의 변론이 진행되었음에도 참고인이 단 한 건도 지정되지 않아 예산 1,800만원[3] 전액이 불용되는 등 불용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최근 4년간 참고인 연구비 등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 연도 | 예산액 | 참고인 지정 | | 집행액 | 불용액 | 불용률 |
|---|---|---|---|---|---|---|
| | | 건 수 | 참고인(명) | | | |
| 2022 | 18 | 변론 8회 | 19* | 26 | △8 | - |
| 2023 | 18 | 변론 2회 | 4 | 6 | 12 | 66.6 |
| 2024 | 18 | 변론 3회 | 6 | 11 | 7 | 38.9 |
| 2025 | 18 | - | - | - | 18 | 100.0 |

주) *참고인 19명 중 2명은 연구비 미지급
자료: 헌법재판소

아울러 참고인 활용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22년에는 변론 8회에 총 19명의 참고인이 지정되어 비교적 활발히 활용되었으나, 2023년에는 변론 2회에 4명, 2024년에는 변론 3회에 6명만 활용되었으며, 특히 2025년에는 지정 실적이 전무한 상황으로 사업 운영의 지속성과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4]

또한 최근 4년간 헌법재판소가 개별 사건에서 참고인을 지정하여 의견을 청취한 내역을 살펴보면, 총 13건의 사건에서 총 29명의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하였는바, 전체 참고인 29명 중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조인이 15명(51.7%)에 달하여 특정 분야로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남.

3) 2025년도 참고인 연구비 등 사업 예산 편성 근거
18백만원 = 150만원(평균단가) × 2명(평균참고인수) × 6건(예상건수)

4) 헌법재판소는 2025년의 경우 참고인이 아닌 증인이 출석하는 탄핵 사건 변론(26회)이 많아 집행률이 부진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연도별 탄핵변론 횟수: 2023년(4회), 2024년(7회), 2025년(26회)]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사건 유형별로 참고인 활용이 필요한 분야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복수로 지정하는 등 참고인 제도의 실질적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참고인 전문분야별 참여 현황]

(단위: 명, %)

| 연도 | 전문분야별 | | | | | | 법조인 비율 |
|---|---|---|---|---|---|---|---|
| | 법조인 | 대학교수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기타 | 합계 | |
| 2022 | 10 | 2 | 3 | 2 | 2 | 19 | 52.6 |
| 2023 | 2 | 1 | - | 1 | - | 4 | 50.0 |
| 2024 | 3 | 1 | 1 | 1 | - | 6 | 50.0 |
| 2025 | - | - | - | - | - | - | - |
| 합계 | **15** | **4** | **4** | **4** | **2** | **29** | **51.7** |

주) 법조인: 법학과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포함
자료: 헌법재판소

[참고인 의견청취 내역(2022~2025년)]

| 연 도 | 변론 일자 | 사 건 | 참고인 | 직업 |
|---|---|---|---|---|
| 2022 | 5.19. | 2021헌마374 · 743 · 1043(병합)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 김OO | 치과의사회 회장 |
| | | | 임OO | 의사회 부회장 |
| | | | 박OO | 의과대학 교수 |
| | | | 서OO |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 실장 |
| | 6.16. | 2019헌마1399 기획재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일부 위헌확인 | 성OO |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 | | 신OO | 한국금융위원회 선임연구위원 |
| | 7.12. | 2022헌라2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 송OO | 국회의원 |
| | | | 박OO | 국회의원 |
| | 7.14. | 2019헌바59 형법 제41조 제1호 등 위헌소원 | 허OO |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 | | 장OO |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 | | 고OO |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 9.15. | 2017헌바42 · 294 · 366 · 431 · 432 · 443, 2017헌가27, 2018헌바116 · 225, 2019헌가6, 2020헌바230(병합)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김OO |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 | | 차OO |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 9.27. | 2022헌라4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 이OO |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 | | 이OO |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 10.13. | 2020헌가1 · 2021헌가10(병합)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 오OO | 국제이주협력학과 교수 |
| | | | 최OO |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 11.10. | 2019헌가30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 등 위헌제청 | 최OO | 서울의료원 감염내과 과장 |
| | | | 박OO |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2023 | 1.12. | 2020헌마10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 윤OO | 정책학과 교수 |
| | | | 백OO | 책과사회연구소 소장 |
| | 5.17. | 2020헌바295 · 2021헌바72(병합) 민법 제1114조 단서 위헌소원 | 현OO |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 | | 서OO |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2024 | 4.23. | 2020헌마369 · 2021헌마1264 · 2022헌마854 · 2023헌마846(병합) 자본시장법 제44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 조OO | 전 국립기상과학원장 |
| | | | 안OO |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교수 |
| | 5.21. | 2020헌마369 · 2021헌마1264 · 2022헌마854 · 2023헌마846(병합) 자본시장법 제44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 박OO | 법무대학원 교수 |
| | | | 유OO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
| | 12.10. | 2023헌라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 장OO | 법학과 교수 |
| | | | 장OO |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자료: 헌법재판소

**둘째, 연도별 국선대리인 및 사선대리인 선임사건의 인용률을 비교해볼 때, 국선대리인의 인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헌법재판소는 그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선대리인 제도는 변호사 강제주의 하에서 무자력자인 청구인의 재판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제도로서, 헌법소원 심판에서 실질적인 권리구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10년간 헌법소원 전체 인용률은 평균 13.3% 수준인 반면, 국선대리인 선임사건의 인용률은 평균 10.1%로 사선대리인 인용률 14.3%에 비해 약 4.2%p 낮음. 특히 2025년도 국선대리인 선임사건의 인용률이 4.7%로 최근 10년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사선대리인 인용률(7.3%)과의 격차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연도별 국선대리인 및 사선대리인 선임사건의 인용률(헌법소원)]

(단위: 건, %)

| 연도 | 합 계 | | 국선대리인 | | 사선대리인 | |
|---|---|---|---|---|---|---|
| | 선고 | 인용 | 선고 | 인용 | 선고 | 인용 |
| 2016 | 546 | 87(15.9) | 181 | 33(18.2) | 365 | 54(14.8) |
| 2017 | 355 | 41(11.5) | 102 | 14(13.7) | 253 | 27(10.7) |
| 2018 | 560 | 142(25.4) | 108 | 11(10.2) | 452 | 131(29.0) |
| 2019 | 432 | 41(9.5) | 116 | 6(5.2) | 316 | 35(11.1) |
| 2020 | 491 | 70(14.3) | 116 | 13(11.2) | 375 | 57(15.2) |
| 2021 | 488 | 57(11.7) | 115 | 11(9.6) | 373 | 46(12.3) |
| 2022 | 397 | 60(15.1) | 99 | 9(9.1) | 298 | 51(17.1) |
| 2023 | 625 | 68(10.9) | 144 | 11(7.6) | 481 | 57(11.9) |
| 2024 | 717 | 86(12.0) | 115 | 12(10.4) | 602 | 74(12.3) |
| 2025 | 566 | 37(6.5) | 169 | 8(4.7) | 397 | 29(7.3) |
| **합계** | **5,177** | **689(13.3)** | **1,265** | **128(10.1)** | **3,912** | **561(14.3)** |

자료: 헌법재판소

연도별 추이를 보더라도 2016년 및 2017년에는 국선대리인 선임사건의 인용률이 각각 18.2%, 13.7%로 사선대리인을 상회하거나 유사한 수준을 보인 바 있으나, 2021년 이후에는 국선대리인 선임사건의 인용률이 대부분 10% 미만인 반면, 사선대리인 인용률은 10%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양자 간 격차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차이에 대해 사선대리인의 경우 사건 수임 단계에서 인용 가능성이나 사회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반면, 국선대리인은 무작위적으로 사건을 배정받는 구조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국선대리인 선임사건의 인용률이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 국선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무자력자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평가체계를 강화하고,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수사례를 확산하는 한편, 사건 배정 방식 및 지원체계 개선 등을 통해 국선대리인 제도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2. 재판활동운영지원 사업: 헌법 재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개선 방안마련 필요

### 가. 개 요

**‘재판활동운영지원’** 사업은 헌법재판 처리사건의 양적 증가와 심판대상의 다양화 및 전문화 경향에 대응하여 재판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선제적이고 충실한 헌법재판제도의 운영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리구제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6억 7,100만원 중 6억 5,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5%)되고 1,700만원이 불용되었음.[5)]

[2025년도 재판활동운영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재판활동운영지원 | 671 | 671 | - | - | 671 | 654 | - | 17 | 597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심판사건의 평균처리 기간이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처리기간(180일)을 크게 초과하고 있으므로, 사건 유형별 처리체계 개선, 반복사건에 대한 효율적 처리방안 마련, 심리 절차 간소화 등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38조[6)]에서는 심판사건의 심판기간을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임.

---

5) 일반회계-재판활동운영지원(1031-301)(기획조정실 등)

6) 「헌법재판소법」
제38조(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전원재판부 헌법재판 평균처리 기간은 2021년 611일, 2022년 732일, 2023년 809일, 2024년 724일, 2025년 753일로 나타나 법정처리 기간인 180일을 지속적으로 초과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평균처리 기간도 726일에 달하는 등 구조적인 처리 지연이 발생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전원재판부 헌법재판 평균처리 기간]

(단위: 일)

| 구 분 | 평균처리 기간 | 위헌법률 | 탄핵 | 권한쟁의 | 헌법소원[7] | |
|---|---|---|---|---|---|---|
| | | |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 |
| 2021년 | **611.7** | 917.3 | 266.0 | 1,890.0 | 531.7 | 769.9 |
| 2022년 | **732.6** | 639.0 | - | 542.8 | 662.7 | 924.1 |
| 2023년 | **809.2** | 608.7 | 166.0 | 503.3 | 806.4 | 863.0 |
| 2024년 | **724.7** | 899.3 | 260.0 | 595.0 | 732.6 | 697.4 |
| 2025년 | **753.2** | 681.9 | 184.2 | 259.3 | 749.7 | 843.2 |
| **평 균** | **726.3** | **749.2** | **175.2** | **758.1** | **696.6** | **819.5** |

자료: 헌법재판소

또한 사건 처리 건수 기준으로 보더라도 2025년 전원재판부 처리 사건 628건 중 180일 이내 처리된 사건은 70건(11.1%)에 불과한 반면, 558건(88.9%)은 180일을 초과하여 처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5년 평균 역시 180일 이내 처리 비중이 11.5%에 그치고 88.5%가 법정처리 기간을 초과하고 있는 등 법정기간 준수율이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이와 같이 헌법재판 사건의 처리 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은 헌법재판을 통한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며, 특히 헌법소원 사건의 경우 기본권 침해 구제를 위한 최후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처리 지연은 국민의 권리보장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7)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최근 5년간 전원재판부 사건 처리 건수]

(단위: 건, 일, %)

| 구 분 | 전원재판부 심판 사건 처리 건수 | | | 평균 처리 기간 |
|---|---|---|---|---|
| | 계 | 180일 이내 처리(비중) | 180일 초과(비중) | |
| 2021년 | 561 | 84(15.0) | 477(85.0) | 611.7 |
| 2022년 | 474 | 59(12.4) | 415(87.6) | 732.6 |
| 2023년 | 721 | 75(10.4) | 646(89.6) | 809.2 |
| 2024년 | 790 | 78(9.9) | 712(90.1) | 724.7 |
| 2025년 | 628 | 70(11.1) | 558(88.9) | 753.2 |
| **합계(평균)** | **3,174** | **366(11.5)** | **2,808(88.5)** | **726.3** |

자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심판기간 규정이 훈시적 규정이라는 입장[8]을 취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이 가지는 공공성과 기본권 보장 기능을 고려할 때 법정처리 기간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고려한 사건 처리 노력이 필요하며, 단순히 법적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임.

한편 헌법재판소는 사건 처리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연구인력 부족을 제시하며 최근 5년간 헌법연구관을 지속적으로 증원[9]하고 있고, 사전심사부 신설 및 연구부 조직 개편[10] 등을 통해 사건 처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인력 확충 및 조직 개편에도 불구하고 처리 기간 단축 효과가 아직 충분히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한 인력 증원 외에도 사건 유형별 처리체계 개선, 반복사건에 대한 효율적 처리방안 마련, 심리 절차 간소화 등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8)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7헌마732 결정, 헌법재판소 2014. 6. 3. 선고 2014헌마433 결정 등

9) 최근 5년간 헌법연구관 증원 내역

| 연 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
| 인 원 | 4명 | 3명 | 3명 | 2명 | 5명 |

※ 수시직제를 통한 헌법연구관 20명 증원 별도( '26.5월)

10) 2024년 2월 사전심사부를 신설하고 전속부에 재판관 별로 부장연구관을 배치하는 등 연구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개편

# 3. 차량 임차 사업: 정무직·업무용 차량 임차료 집행의 효율성 제고 필요

## 가. 개 요

**‘차량 임차’** 사업은 정무직 및 업무용 차량 등을 임차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억 2,200만원 전액을 집행(집행률 100.0%)하였음.[11]

[2025년도 차량 임차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본부운영지원 | 4,292 | 4,292 | - | - | 4,292 | 4,063 | - | 229 | 4,033 |
| 차량 임차 (210-07) | 126 | 126 | - | △4 | 122 | 122 | - | - | 126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헌법재판소는 차량 임차료를 ‘본부기본경비(1011-250)’와 ‘본부운영지원(1032-302)’으로 분리하여 편성 및 집행하고 있으므로, 차량 임차료의 집행과목을 일원화하여 예산 운용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본부운영지원(1032-302)’ 사업의 차량 임차료(210-07)는 사무차장·경호용 및 기타 업무용 차량 운영을 위한 경비로서 2025년 예산현액 1억 2,20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으며, ‘본부기본경비(1011-250)’ 사업에서도 재판관 및 사무처장 차량 등에 대한 임차료가 편성·집행되고 있음.

이처럼 동일·유사한 성격의 차량 임차료가 서로 다른 단위사업으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어 전체 차량 운영 규모 및 집행 현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으로 보임.

11) 일반회계-본부운영지원(1032-302)(행정관리국 등)

[2025년 본부기본경비 및 본부운영지원 임차료 예·결산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예산내역 | | | 집행액 | 집행 세부내역 |
|---|---|---|---|---|
| 예산과목 | 내역 | 예산액 | | |
| 1011-250-210-07 (본부기본경비) | ·체육행사버스 임차료 | 7 | - | ·탄핵사건으로 인한 미집행 |
| | **·정무직 및 업무용 차량 임차료** | **248** | **222** | **·재판관 및 사무처장, 기타 업무용 차량임차(12대)** |
| | ·청사 환경조성 비품 임차료 | 25 | 23 | ·임차 미술품 계약 |
| | ·관사 임차료 | 44 | 44 | ·재판관 관사 임차료 지급 |
| | - | - | 3 | ·사무용 가구 임차 |
| | **소계** | **324** | **292** | |
| 1032-302-210-07 (본부운영지원) | **·정무직 및 업무용 차량 임차료** | **126** | **122** | **·사무차장, 경호용 및 기타 업무용(6대)** |
| | **·조직역량강화 워크숍 (버스 및 장소)** | 6 | 6 | ·버스 및 장소 임차 |
| | **소계** | **132** | **128** | |

자료: 헌법재판소

특히 차량 임차료는 연도별로 2022년 3억 2,000만원, 2023년 3억 2,600만원, 2024년 3억 3,100만원, 2025년 3억 4,400만원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원화되어 편성·집행됨에 따라 전체 차량 운영 수요 및 비용 구조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어렵고 사업 간 잔액 조정이나 탄력적인 예산 운용에도 한계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동일한 기능의 경비를 별도 사업으로 관리하는 경우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일관성이 저하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임.

[정무직·업무용 차량 임차료 예·결산현황(2022~2025년)]

(단위: 백만원)

| 구 분 | 예산과목 | 편성 내역 | 예산액 | 집행액 | 불용액 | 집행내역 |
|---|---|---|---|---|---|---|
| 2022년 | 1011-250-210-07 (본부기본경비) | 임차료 | 204 | 194 | 10 | · 정무직 전용차량 및 업무용 차량 임차료 집행 |
| | 1032-302-210-07 (본부운영지원) | 임차료 | 126 | 126 | - | · 사무차장, 경호용 및 기타 업무용 |
| | **합 계** | | **330** | **320** | **10** | |
| 2023년 | 1011-250-210-07 (본부기본경비) | 임차료 | 207 | 200 | 7 | · 정무직 전용차량 및 업무용 차량 임차료 집행 |
| | 1032-302-210-07 (본부운영지원) | 임차료 | 126 | 126 | - | · 사무차장, 경호용 및 기타 업무용 |
| | **합 계** | | **333** | **326** | **7** | |
| 2024년 | 1011-250-210-07 (본부기본경비) | 임차료 | 207 | 205 | 2 | · 정무직 전용차량 및 업무용 차량 임차료 집행 |
| | 1032-302-210-07 (본부운영지원) | 임차료 | 126 | 126 | - | · 사무차장, 경호용 및 기타 업무용 |
| | **합 계** | | **333** | **331** | **2** | |
| 2025년 | 1011-250-210-07 (본부기본경비) | 임차료 | 248 | 222 | 26 | · 정무직 전용차량 및 업무용 차량 임차료 집행 |
| | 1032-302-210-07 (본부운영지원) | 임차료 | 126* | 122 | - | · 사무차장, 경호용 및 기타 업무용 |
| | **합 계** | | **374** | **344** | **26** | |

* 예산현액: 122백만원

자료: 헌법재판소

이와 같이 차량 임차료를 이원적으로 편성·집행하는 구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차량 임차료를 본부기본경비(1011-250)로 일원화하여 편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재정당국의 기본경비 총액관리 방식 등 제도적 제약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동일한 성격의 경비를 별도 사업으로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은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예산과목을 일원화하여 편성·집행함으로써 예산 운용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025년도 정무직·업무용 차량 임차 현황]

| 연번 | 용도 | 리스기간 | 차종 | 월 리스료 (원) | 리스업체 | 구분 |
|---|---|---|---|---|---|---|
| 1 | 재판소장 | 22.12.21. ~ 27.12.20. | 제네시스 3.5T | 3,197,590 | 현대캐피탈 | 본부운영지원 |
| 2 | 재판관 | 25.11.01. ~ 30.10.31. | 제네시스 3.5T | 1,981,100 | NBH캐피탈 | 본부기본경비 |
| 3 | 재판관 | 25.11.01. ~ 30.10.31. | 제네시스 3.5T | 1,981,100 | NBH캐피탈 | 본부기본경비 |
| 4 | 재판관 | 25.11.01. ~ 30.10.31. | 제네시스 3.5T | 1,981,100 | NBH캐피탈 | 본부기본경비 |
| 5 | 재판관 | 25.11.01. ~ 30.10.31. | 제네시스 3.5T | 1,981,100 | NBH캐피탈 | 본부기본경비 |
| 6 | 재판관 | 25.11.01. ~ 30.10.31. | 제네시스 3.5T | 1,981,100 | NBH캐피탈 | 본부기본경비 |
| 7 | 재판관 | 25.11.01. ~ 30.10.31. | 제네시스 3.5T | 1,981,100 | NBH캐피탈 | 본부기본경비 |
| 8 | 재판관 | 25.11.01. ~ 30.10.31. | 제네시스 3.5T | 1,981,100 | NBH캐피탈 | 본부기본경비 |
| 9 | 재판관 | 25.11.01. ~ 30.10.31. | 제네시스 3.5T | 1,981,100 | NBH캐피탈 | 본부기본경비 |
| 10 | 사무처장 | 25.08.27. ~ 30.08.26. | 제네시스 3.5T | 2,136,000 | 오릭스캐피탈 | 본부기본경비 |
| 11 | 사무차장 | 25.07.01. ~ 30.06.30. | 제네시스 G80 EV | 1,541,700 | 오릭스캐피탈 | 본부운영지원 |
| 12 | 수석부장연구관 | 21.02.18. ~ 26.02.17. | 그랜저 2.4(HEV) | 666,890 | 현대캐피탈 | 본부기본경비 |
| 13 | 업무용 | 25.11.01. ~ 30.10.31. | 제네시스 3.5T | 1,981,100 | NBH캐피탈 | 본부운영지원 |
| 14 | 업무용 | 25.11.01. ~ 30.10.31. | 팰리세이드 | 941,270 | NBH캐피탈 | 본부운영지원 |
| 15 | 업무용 | 25.09.22. ~ 30.09.21. | 아이오닉6 | 924,000 | 하이월드카 | 본부운영지원 |
| 16 | 업무용 | 20.12.16. ~ 26.12.17. | 카니발 | 726,000 | 삼성카드 | 본부기본경비 |
| 17 | 업무용 | 23.10.31. ~ 28.10.31. | 뉴-카운티 | 1,915,330 | 현대캐피탈 | 본부운영지원 |
| 18 | 업무용 | 20.03.31. ~ 26.03.31. | 포터 II | 444,030 | 현대캐피탈 | 본부기본경비 |

자료: 헌법재판소

## 【기　타】

# 4.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헌법재판소에 대해 시정요구 16건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제도개선 16건이었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 구분 | 변상 | 징계 | 시정 | 주의 | 제도개선 | (중복) | 계 |
|---|---|---|---|---|---|---|---|
| 결산 | - | - | - | - | 16 | - | 16 |
| 예비비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16 | - | 16 |

헌법재판소는 시정요구사항 16건에 대해 모두 조치완료(조치율 100.0%)한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 구분 | 시정요구사항(a) | 조치완료(b) | 조치율(b/a) | 조치중(a-b) |
|---|---|---|---|---|
| 결산 | 16 | 16 | 100.0 | - |
| 예비비 | - | - | - | - |
| 합계 | 16 | 16 | 100.0 | - |

# 대 법 원

# Ⅰ. 개 관

## 1. 결산 개요

### 가. 총수입·총지출

2025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54억 5,100만원(0.56%)이 많은 9,661억 2,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69억 9,600만원(12.4%)이 증가됨.[1)]

[2025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4회계연도 | | | | 2025회계연도 | | | | 전년대비 (D-B) |
|---|---|---|---|---|---|---|---|---|---|
| | 예산액 | | 결산 (B) | 예산대비 (B-A) | 예산액 | | 결산 (D) | 예산대비 (D-C) | |
| | 본예산 | 추경(A) | | | 본예산 | 추경(C) | | | |
| 예 산 | 806,653 | 806,653 | 716,750 | △89,903 | 729,896 | 729,896 | 713,384 | △16,512 | △3,366 |
| 기 금 | 105,906 | 105,906 | 142,380 | 36,474 | 230,779 | 230,779 | 252,742 | 21,963 | 110,362 |
| 총수입 | 912,559 | 912,559 | 859,130 | △53,429 | 960,675 | 960,675 | 966,126 | 5,451 | 106,996 |

문의: 02-6788-5702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5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340억 2,700만원(△1.5%)이 적은 2조 2,782억 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51억 2,400만원(5.3%)이 증가됨.

[2025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4회계연도 | | | | 2025회계연도 | | | | 전년대비 (D-B) |
|---|---|---|---|---|---|---|---|---|---|
| | 예산액 | | 결산 (B) | 예산대비 (B-A) | 예산액 | | 결산 (D) | 예산대비 (D-C) | |
| | 본예산 | 추경(A) | | | 본예산 | 추경(C) | | | |
| 예 산 | 2,100,921 | 2,100,921 | 2,091,974 | △8,947 | 2,207,726 | 2,207,726 | 2,178,649 | △29,077 | 86,675 |
| 기 금 | 72,899 | 72,899 | 71,172 | △1,727 | 104,571 | 104,571 | 99,621 | △4,950 | 28,449 |
| 총지출 | 2,173,820 | 2,173,820 | 2,163,146 | △10,674 | 2,312,297 | 2,312,297 | 2,278,270 | △34,027 | 115,124 |

## 나.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7,813억 4,400만원으로, 7,818억 2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7,583억 9,700만원이 수납(수납률 97.1%)되고, 231억 500만원은 미수납되어 3억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세입예산액 | | 이체등 증감액 (B) | 세입 예산현액 (A+B) | 징수 결정액 | 수납액 | 미수납 액 | 불납 결손액 |
|---|---|---|---|---|---|---|---|---|
| | 본예산 | 추경 (A) | | | | | | |
| 일반회계 | 502,770 | 502,770 | - | 502,770 | 501,924 | 495,323 | 6,301 | 300 |
| 등기특별회계 | 278,574 | 278,574 | - | 278,574 | 279,878 | 263,074 | 16,804 | - |
| 합 계 | 781,344 | 781,344 | - | 781,344 | 781,802 | 758,397 | 23,105 | 300 |

주) 총계 기준

2025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2조 2,734억 7,700만원으로, 2조 1,965억 4,0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6%)되고 269억 1,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500억 2,5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세출예산액 | | 예산결정후증감액(B) | | | 세출 예산현액 (C=A+B)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 (A)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 | | |
| 일반회계 | 1,977,639 | 1,977,639 | 14,840 | - | - | 1,992,479 | 1,958,086 | 26,874 | 7,519 |
| 등기특별회계 | 278,574 | 278,574 | 2,424 | - | - | 280,998 | 238,454 | 38 | 42,506 |
| 합 계 | 2,256,213 | 2,256,213 | 17,264 | - | - | 2,273,477 | 2,196,540 | 26,913 | 50,025 |

주) 총계 기준

## 다. 기금 결산

2025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액은 3,902억 6,600만원으로, 2,881억 4,8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2,861억 5,300만원이 수납(수납률 99.3%)되고, 19억 8,700만원은 미수납되어 8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기금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수입 계획액 | |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미수납액 | 불납결손액 |
|---|---|---|---|---|---|---|
| | 당초 | 수정 | | | | |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 390,266 | 390,266 | 288,148 | 286,153 | 1,987 | 8 |
| 합 계 | 390,266 | 390,266 | 288,148 | 286,153 | 1,987 | 8 |

주) 총계 기준

2025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현액은 3,928억 3,400만원으로, 2,861억 5,300만원이 지출(집행률 72.8%)되고 5억 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70억 1,2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기금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지출 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B) | 계획현액 (A+B)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당초 | 수정(A) | | | | | |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 390,266 | 390,266 | 2,568 | 392,834 | 286,153 | 506 | 7,012 |
| 합 계 | 390,266 | 390,266 | 2,568 | 392,834 | 286,153 | 506 | 7,012 |

주) 총계 기준

## 라. 재무결산

2025회계연도 말 기준 대법원 자산은 전년 대비 2,277억 7,400만원이 증가된 9조 1,581억 6,700만원으로, 이는 기타자산이 987억 7,300만원 크게 감소됐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자산이 1,570억 4,900만원 증가되고 유·무형자산이 1,694억 9,700만원 증가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450억 6,700만원 증가된 1,186억 1,900만원으로 차입부채 457억 4,900만원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1,827억 700만원이 증가된 9조 395억 4,800만원임.

2025회계연도 대법원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5,579억 3,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1,000만원 감소되었으며, 재정운영결과는 1조 7,245억 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5억 4,300만원 증가됨.

[2025회계연도 대법원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 | 2025 (A) | 2024 (B) | 증 감 | |
|---|---|---|---|---|---|---|
| | | | | | 금액 (A-B) | 증가율 (A-B)/B |
| 재정 상태표 | 자 산 | | 9,158,167 | 8,930,393 | 227,774 | 2.6 % |
| | | 금융자산 | 419,199 | 262,150 | 157,049 | 59.9 % |
| | | 유·무형자산 | 8,618,326 | 8,448,829 | 169,497 | 2.0 % |
| | | 기타자산 | 120,641 | 219,414 | △98,773 | △45.0 % |
| | 부 채 | | 118,619 | 73,552 | 45,067 | 61.3 % |
| | | 차입부채 | 116,811 | 71,062 | 45,749 | 64.4 % |
| | | 충당부채 | - | 681 | △681 | △100.0 % |
| | | 기타부채 | 1,808 | 1,809 | △1 | △0.1 % |
| | 순자산 | | 9,039,548 | 8,856,841 | 182,707 | 2.1 % |
| 재정 운영표 | 프로그램순원가 | | 557,932 | 559,842 | △1,910 | △0.3 % |
| | 재정운영순원가 | | 1,976,831 | 1,842,096 | 134,735 | 7.3 % |
| | 재정운영결과 | | 1,724,506 | 1,699,963 | 24,543 | 1.4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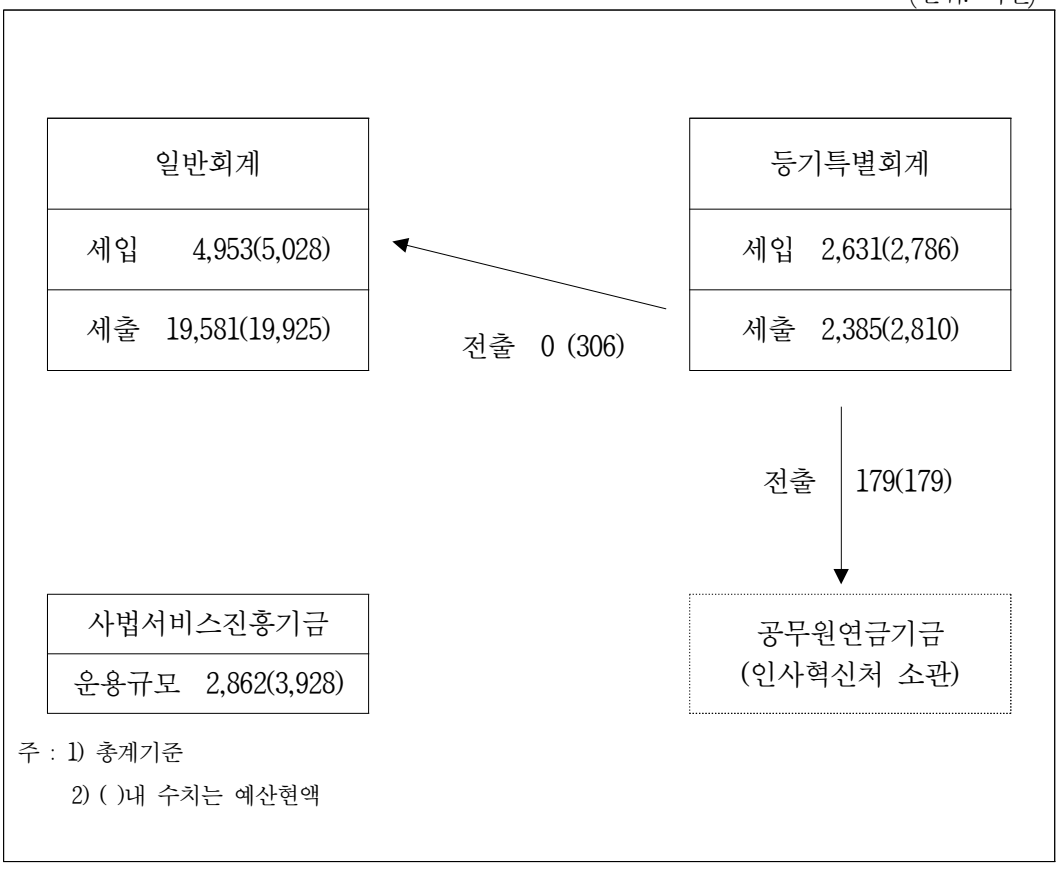
##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2025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재정은 일반회계, 등기특별회계 2개 회계와 사법서비스진흥기금 1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거래현황은 다음과 같음.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등기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 예산으로 306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전출은 없었으며, 등기특별회계에서 공무원연금기금으로 179억원 전출되었음.

[2025회계연도 대법원 재정흐름도]

(단위: 억원)




주 : 1) 총계기준
2) ( )내 수치는 예산현액

##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대법원은 국민을 중심에 둔 좋은 재판인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 「쉽고 편안한 재판」을 실천하기 위하여 정책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음.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는 법원’, ‘투명하고 공정한 법원’, ‘재판 중심의 독립적인 법원’, ‘국민에게 다가가는 법원’, ‘행복하고 안전한 일터가 되는 법원’, ‘미래를 준비하는 법원’을 2025년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총 48개의 세부사업을 통해 구술심리주의·공판중심주의 실질화,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국민의 인권 보장, 대국민 사법서비스 향상 등을 추진하였음.

2025년도 대법원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토지대여료의 연평균 수납액이 2억 5,000만원 수준임에도 2025년 및 2026년 예산액 9억 1,800만원으로 수납액 대비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므로, 예산액과 수납액과의 과도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둘째, 사법업무 전산화 사업의 계약이 연도 후반에 집중되면서 집행이 지연되고 대규모의 이월이 발생하는 등 사업 관리가 미흡하므로, 정보화 사업계획 수립과 발주를 조기에 추진하여 이월을 최소화하고 연도 내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셋째,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의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예산이 이월 후 전액 불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월예산의 불용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함.

넷째, 등기특별회계 전년도세계잉여금은 최근 그 규모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예산액 대비 수납률도 저조하여 추계의 정확성이 미흡하므로, 등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구조 변화를 반영한 현실적인 추계를 통해 예산액과 세입액과의 괴리를 축소하여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조정제도 지원 사업은 계획변경을 통한 증액예산이 일부 불용되고 조정회부 건수 및 처리실적이 감소하여 성과 달성이 미흡하므로, 조정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성과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여섯째, 청주지법 충주지원 신축 사업에서 3년 연속 예산 편성 후 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 전액 감액하였는데, 향후 사업 추진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집행 가능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반복적인 계획변경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입〉

## 1. 토지대여료: 예산액과 수납액의 과도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편성 및 집행관리 철저 필요

### 가. 개　요

**‘토지대여료’**는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수납하는 것으로, 2025년도 징수결정액 3억 6,600만원이 전액 수납(수납률 100.0%)되었음.[2)]

[2025년도 토지대여료 결산]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5년도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징수결정액(B) | 수납액(C) | 미수납액 | 불납결손액 | 수납률(C/B)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토지대여료 | 918 | 918 | 366 | 366 | - | - | 100 | 918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대법원은 토지대여료의 연평균 수납액이 2억 5,000만원 수준임에도 2025년 및 2026년 예산액은 9억 1,800만원으로 수납액 대비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므로, 예산액과 수납액의 과도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일반회계-토지대여료(51-511)(기획조정실)

대법원의 토지대여료 세입예산액과 실제 수납액 간의 과도한 차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2022년 예산액 9억 800만원 대비 수납액 2억 100만원(수납률 22.1%), 2023년 9억 1,800만원 대비 2억 1,900만원(23.9%), 2025년에도 9억 1,800만원 대비 3억 6,600만원(39.9%)에 그치는 등 연례적으로 예산 대비 수납 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수준임.

[최근 4년간 토지대여료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 연도 | 예산액 | | 이체등 증감액 | 예산 현액 | 징수 결정액(B) | 수납액 (C) | 수납률 (C/A) | 수납률 (C/B) | 미수납액 | 불납 결손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 2022 | 908 | 908 | - | 908 | 202 | 201 | **22.1** | 99.2 | 2 | - |
| 2023 | 918 | 918 | - | 918 | 221 | 219 | **23.9** | 99.1 | 2 | - |
| 2024 | 201 | 201 | - | 201 | 214 | 213 | **106.0** | 99.5 | 2 | - |
| 2025 | 918 | 918 | - | 918 | 366 | 366 | **39.9** | 100.0 | - | - |
| 2026 | 918 | 918 | - | - | - | - | - | - | - | - |

자료: 대법원

특히 최근 4년 평균 수납액이 약 2억 5,000만원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규모의 예산(9억 1,800만원)을 반복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것은 실제 수입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과다하게 세입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볼 수 있음.

한편 2024년의 경우 예산액을 전년도 대비 대폭 감액하여 편성함에 따라 실제 수납액과 예산액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이후 2025년에 다시 기존 수준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수납률이 다시 낮아진 점을 고려하면 예산 편성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고 있음.[3)]

이와 같이 실제 수납 가능 수준을 현저히 상회하는 세입예산을 반복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재정 규모를 과대 계상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세입예산의 신뢰성을 저하시켜 재정 운용의 정확성과 건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3) 대법원은 2025년 세입 예산 요구 시 결산액 추이 등을 고려하여 2억 1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재정당국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9억 1,800만원으로 조정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더욱이 토지대여료는 계약금액 및 기간에 따라 수입 규모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한 세입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성이 예산 편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토지대여료의 수납 실적 및 계약 현황 등을 기초로 보다 현실성 있게 재산정하여 예산액과 수납액과의 과도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최근 4년간 토지대여료 수납 내역]

(단위: 천원)

| 구 분 | 토지대여료 수납 내역 | 납부액 |
|---|---|---|
| 2022년 | 부천시청 토지대여 | 133,341 |
| | 구내은행 토지대여 | 66,147 |
| | 우체국 토지대여 | 1,153 |
| | **합 계** | **200,641** |
| 2023년 | 부천시청 토지대여 | 144,559 |
| | 구내은행 토지대여 | 72,739 |
| | 기타(전기차충전소 등) | 2,307 |
| | **합 계** | **219,605** |
| 2024년 | 부천시청 토지대여 | 136,960 |
| | 구내은행 토지대여 | 72,858 |
| | 기타(전기차충전소 등) | 3,773 |
| | **합 계** | **213,591** |
| 2025년 | 부천시청 토지대여 | 279,203 |
| | 구내은행 토지대여 | 74,497 |
| | 우체국 토지대여 | 3,613 |
| | 기타(전기차충전소 등) | 8,769 |
| | **합 계** | **366,082** |

자료: 대법원

〈세　출〉

## 2. 일반형사재판 송달료 등 사업: 송달료 편성의 정확성 제고 필요

### 가. 개　요

**‘일반형사재판 송달료 등’** 사업은 신속하고 원활한 재판진행 및 국민의 절차 참여권 보장을 위해 소송서류 등을 소송관계인과 다른 법원에 송달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347억 6,300만원 중 347억 1,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8%)되고 4,700만원이 불용되었음.[4)]

[2025년도 일반형사재판 송달료 등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재판절차비용지원 | 38,300 | 38,300 | 3 | 3,377 | 41,680 | 41,610 | - | 70 | 33,924 |
| 일반형사재판 송달료 등 | 31,362 | 31,362 | - | 3,401 | 34,763 | 34,715 | - | 47 | 27,189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일반형사재판 송달료 등은 최근 본예산을 초과하여 집행되어 약 30억원 규모의 이·전용이 반복되는 등 수요 추계가 부정확하고 사건 유형별 집행관리가 미흡하므로, 향후 유형별 실적을 기반으로 송달료 편성 및 집행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일반형사재판 송달료 등 사업은 2025년도 본예산 313억 6,200만원 대비 34억 100만원을 이·전용(증) 등을 통해 집행되었으며, 2024년에도 30억 2,600만원의 추가 재원 조정을 통해 집행이 이루어지는 등 송달료 부족에 따른 반복적인 이·전용이 발생하고 있음.

4) 일반회계-재판절차비용지원(1143-403)(사법지원실)

[일반형사재판 송달료 등 결산(2024~2025년)]

(단위: 백만원, %)

| 연도 | 예산액 | | 이·전용 등 | 예산 현액(B) | 집행액 (C) | 집행률 (C/A) | 집행률 (C/B)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2024 | 31,362 | 31,362 | 3,026 | 34,388 | 34,126 | 108.8 | 99.2 | 262 |
| 2025 | 31,362 | 31,362 | 3,401 | 34,763 | 34,715 | 108.9 | 99.8 | 47 |

자료: 대법원

아울러 2025년도 이·전용 등의 내역을 보면 '법원시설관리 등(1253-411)' 사업에서 23억 1,000만원, '본부 기본경비(7011-250) 및 본부운영지원(7031-303)' 등에서 약 11억원을 송달료 부족분 보전을 위해 이용하는 등 다수 사업의 재원을 활용하여 충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최근에 반복되고 있음.

[2025년도 일반형사재판 송달료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날짜) | ~에서 | | 금액 | ~으로 | | 이·전용 등 사유 |
|---|---|---|---|---|---|---|
| |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 목-세목 코드 | |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 목-세목 코드 | |
| 자체이용 (2025.9.17.) | 법원시설관리 등 (1253-411) | 430-01 | 1,897 | 재판절차비용 지원 (1143-403) | 210-02 | 일반형사재판 송달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 |
| 자체이용 (2025.11.14.) | 법원시설관리 등 (1253-411) | 430-01 | 213 | | | |
| 자체이용 (2025.11.28.) | 본부 기본경비 (7011-250) | 430-01 | 100 | | | |
| 자체이용 (2025.11.28.) | 본부 운영지원 (7031-303) | 210-08 | 275 | | | |
| 자체이용 (2025.11.28.) | 본부 운영지원 (7031-303) | 420-03 | 551 | | | |
| 자체이용 (2025.11.28.) | 본부 운영지원 (7031-303) | 430-01 | 164 | | | |
| 자체이용 (2025.12.19.) | 법원시설관리 등 (1253-411) | 420-03 | 200 | | | |
| 합 계 | | | 3,400 | | | |

자료: 대법원

「국가재정법」 따른 예산의 이·전용 제도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의 목적과 다르게 집행되는 측면이 있는 점에서 그 활용은 최소화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달료의 경우 반복적으로 대규모 이·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수요 추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임.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송달료가 공공요금 항목에 포함되어 각급 법원에서 통합적으로 집행됨에 따라 송달료와 공공요금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집행 추계의 정확성이 낮은 측면이 있으며, 사건 증가에 따른 수요 확대에도 불구하고 공공요금 증액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부족분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2025년도 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일반사건, 국민참여재판, 형사일반사건, 특례법 사건, 상소사건 등 유형별로 송달료가 구분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 시에는 유형별 집행액이 별도로 관리되지 않아 어떤 사건 유형에서 부족이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이에 따라 특정 사건 유형의 증가에 따른 송달료 수요 변동이 예산편성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전체 송달료 부족분을 일괄적으로 보전하는 방식의 이·전용이 반복되고 있는 것임.

[2025년 일반형사재판 송달료 등 예·결산 내역]

(단위: 천원)

| 예산과목 | 예산 편성내역 | 예산액 | 집행액 | 비고 |
|---|---|---|---|---|
| 일반형사재판 송달료 등 (1143-403-210-02) | ·일반사건 송달료 | 17,341,000 | 34,715,435 | 일반형사재판 송달료를 사건 별로 집계하지 않고 있음 |
| | ·국민참여재판 송달료 | 646,000 | | |
| | ·형사일반사건 송달료 | 5,777,000 | | |
| | ·특례법에 따른 송달료 | 358,000 | | |
| | ·재정신청사건 송달료 | 973,000 | | |
| | ·인신보호사건 송달료 | 78,000 | | |
| | ·상소사건 송달료 | 503,000 | | |
| | ·민사비송사건 송달료 | 2,482,000 | | |
| | ·국선변호사건 송달료 | 1,560,000 | | |
| | ·국고대납 송달료 등 | 1,644,000 | | |
| 합 계 | | 31,362,000 | 34,715,435 | |

자료: 대법원

따라서 대법원은 향후 송달 건수 및 사건 유형별 집행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추계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반복적인 이·전용을 최소화하는 등 송달료 예산편성 및 집행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3. 재판일반경비지원: 연도 내 사업 수행을 통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필요

## 가. 개 요

**‘재판일반경비지원’** 사업은 재판운영에 소요되는 간접경비의 지원을 통한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원활한 실현 도모와 법원 구성원의 일반적인 재판업무 수행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은 465억 1,500만원 중 457억 6,8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4%)되고 5억 2,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억 2,100만원이 불용되었음.[5)]

[2025년도 재판일반경비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재판일반경비지원 | 46,158 | 46,158 | 202 | 155 | 46,515 | 45,768 | 525 | 221 | 47,762 |
| 일반용역비 (210-14) | 947 | 947 | 203 | △126 | 1,024 | 686 | 331 | 8 | 807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일반용역비 사업에서 집행 지연, 예산 전용, 계획 외 사업 추진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바, 사업별 특성과 소요 재원을 정확히 반영하여 적정하게 편성하고, 계약 및 집행이 상반기 내에 착수될 수 있도록 일정 관리를 강화하며, 전용 및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 수요 예측과 집행계획을 보다 정교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음.**

2025년도 재판일반경비지원 사업을 위하여 일반용역비(210-14)로 9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전년도이월액 2억 300만원과 이·전용 등 감액 1억 2,600만원을 제외한 예산현액은 10억 2,400만원이며, 이 중 6억 8,600만원(67.0%)만 집행되었고 3억 3,100만원(32.3%)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

5) 일반회계-재판일반경비지원(1143-404)(사법지원실)

[2025년 일반용역비(210-14)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일반용역비(210-14) | 947 | 947 | 203 | △126 | 1,024 | 686 | 331 | 8 | 807 |
| ·통번역인 교육 여비 등 지원 | 17 | 17 | - | - | 17 | 17 | - | - | 17 |
| ·통번역 인증평가 실시 | 267 | 267 | 34 | 74 | 375 | 271 | 102 | 2 | 267 |
| ·알면 힘이 되는 판례 동영상 | 40 | 40 | 31 | - | 71 | 31 | 40 | 1 | 30 |
| ·문서감정인 후보자 숙련도 평가 | 269 | 269 | - | △200 | 69 | 69 | - | - | 139 |
| ·법정통역센터 운영 | 354 | 354 | 138 | - | 492 | 298 | 189 | 5 | 354 |

자료: 대법원

이렇듯 상당한 규모의 이월이 발생한 사유를 살펴보면, 2025년도 일반용역비 총 8건의 계약 중 상반기에 착수된 사업은 1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사업 대부분이 9월 이후 집중적으로 착수된 것으로 나타나 사업 추진 일정이 하반기에 편중됨에 따라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4건의 사업이 이월되는 등 집행 부진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

또한 ‘문서감정인 후보자 숙련도 평가’ 사업은 당초 사업계획 상 일반용역비와 자산취득비로 구분되어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액 일반용역비(210-14)로 편성된 후, 장비 구입을 위하여 2억원[6]을 자산취득비(430-01)로 전용하는 등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비목 설정이 부적정하였으며, 전용 승인 시점이 2025년 10월 말로 지체됨에 따라 계약이 연말에 체결되고 1억 9,5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등 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6) 2025년도 예산안 편성시 산출근거
· 현장 감정평가를 위한 문서감정장비 VSC900 구매
- 90,250,000원 × 2대 × 10%(부가세) = 198,550,000원
- VSC900: Foster&Freema사의 문서감정, 지문감식, 광원, 미세증거 장비로 전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장비임, VSC는 국내 인천출입국사무소에서 사용을 시작으로 문서 및 화폐, 여권 위변조를 확인하는 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검찰청 등)에서 사용 중인 장비

[2025년 일반용역비(210-14) 계약 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각목명세서) | | 계약 내역 | | | | |
|---|---|---|---|---|---|---|
| 기능별 | 예산액 | 계약명 | 발주금액 | 계약금액 | 수탁기관 | 계약기간 |
| ·통번역인 교육 여비 등 지원 | 17 | 법정 통·번역인 교육 콘텐츠 제작 및 운영에 관한 용역 | 17 | 17 | 주식회사 조은캠프 | 25.09.~25.12. |
| ·통번역 인증평가 실시 | 162 | 2025년 법정 통·번역인 평가 및 인증제에 관한 용역 | 162 | 159 |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 25.11.~26.05. |
| | 105 | 2025년도 법정수어통역 교육 및 인증평가 실시 | 105 | 105 | 한경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 25.11.~26.04. |
| ·알면 힘이 되는 판례 동영상 | 40 | 알면 힘이 되는 판례 웹툰 및 무빙툰 제작 | 40 | 39 | 주식회사 플라잉피그 | 25.09.~26.02. |
| **·문서감정인 후보자 숙련도 평가** | **269** | **2025년 문서등 감정인 후보자 숙련도 평가 용역** | **66** | **66** | **이영수 문서 감정연구원** | **25.05.~25.11.** |
| ·법정통역센터 운영 | 354 | 2025년 법정통역센터 상근 통역인 용역 | 353 | 346 | 주식회사 라이온코리아 | 25.07.~26.06. |
| - | | **법정수어통역 표준 교육자료 발간을 위한 수어영상 제작** | **19** | **19** | **주식회사 케이엘큐브** | **25.12.~25.12.** |
| - | | **법정수어통역인을 위한 표준 교육자료 발간** | **10** | **10** | **(사)한국농아인협회 수어연구소** | **25.08.~25.10.** |

자료: 대법원

아울러 ‘법정수어통역 표준 교육자료 발간을 위한 수어영상 제작’ 등 일부 사업은 당초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추가로 추진되는 등 사전 수요 예측과 사업설계가 미흡한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이 일반용역비 전반에서 나타나는 집행 지연, 예산 전용, 계획 외 사업 추진 등의 문제는 사업관리 체계 전반의 미흡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사업별 특성과 소요 재원을 정확히 반영하여 예산과목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계약 및 집행이 상반기 내에 착수되어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일정 관리를 강화하며, 전용 및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수요 예측과 집행계획을 보다 정교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음.

[2025년 일반용역비(210-14)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날짜) | ~에서 | | 금액 | ~으로 | | 이·전용 등 사유 |
|---|---|---|---|---|---|---|
| |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 목-세목 코드 | |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 목-세목 코드 | |
| 승인전용 (2025.10.22.) | 재판일반경비지원 (1143-404) | 210-14 | 200 | 재판일반경비 지원 (1143-404) | 430-01 | 문서감정인 후보자 숙련도 평가 자산취득비 부족 |
| 자체세목변경 (2025.11.27.) | 재판일반경비지원 (1143-404) | 210-12 | 22 | 재판일반경비 지원 (1143-404) | 210-14 | 통번역 인증평가실시 일반용역비 부족 |
| 자체세목변경 (2025.12.01.) | | 210-01 | 20 | | | |
| 자체세목변경 (2025.12.23.) | | 210-12 | 22 | | | |
| 세목조정 (2025.3.20.) | | 210-01 | 2 | | | |
| 세목조정 (2025.8.14.) | | 210-01 | 10 | | | |

자료: 대법원

# 4. 법원정책연구비 사업: 정책연구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과제 추진 필요

## 가. 개 요

**‘법원정책연구비’** 사업은 사법제도 전반에 걸쳐 주요정책을 수립하거나 개선점을 모색하는 데 활용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사법제도의 현황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살펴보고 선진 각국의 주요 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하여 현행 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은 10억 6,200만원 중 8억 2,400만원이 집행되고 2억 3,800만원이 이월되었음.[7)]

[2025년도 사법정책연구개선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사법정책연구개선 | 1,945 | 1,945 | 358 | 54 | 2,357 | 2,084 | 238 | 34 | 1,691 |
| 법원정책연구비 (260-02) | 650 | 650 | 358 | 54 | 1,062 | 824 | 238 | - | 650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법원정책연구비 사업은 사법제도 전반의 중장기 정책과제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2025년도 법원정책연구비 사업으로 총 19건의 정책연구가 수행되었으며, 1,000만원 이상 과제는 13건임. 이 중 ‘법원 보안관리대 조직진단’과 ‘법원청사 유리창 및 유리문 강화필름 부착에 관한 연구’는 기관운영 또는 시설관리 성격이 포함되어 있어 정책연구비 사업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7) 일반회계-사법정책연구개선(1143-405)(사법정책연구원)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위 연구과제들이 단순한 시설관리나 운영 차원이 아니라 사법재판의 안전성 확보,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 사법접근성 강화 등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정책적 과제로서 사법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연구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법원정책연구 사업은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사법제도 전반의 중장기 정책과제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기관운영 또는 시설 관련 연구 주제는 지양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정책연구비는 정책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 등을 위한 용역제공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일반적인 조사·연구 성격의 경비를 정책연구비로 집행하여 예산과목 구분의 적정성도 미흡하였음.[8)]

[2025년 법원정책연구비(천만원 이상) 계약 현황(Ⅰ)]

(단위: 백만원)

| 계약 내역 | | | | | 계약 유형 |
|---|---|---|---|---|---|
| 계약명 | 발주 금액 | 계약 금액 | 수탁기관 | 계약기간 | |
| 법정 통·번역인 교육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20 | 20 |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 25.01.~25.05. | 수의 |
| **법원 보안관리대 조직진단** | **55** | **50** | **㈜나도기브** | **25.01~25.06.** | **제한경쟁 (협상에의한계약)** |
|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법률용어(기초편) 연구 | 85 | 82 | 주식회사 소소한소통 | 25.02~25.10. | 제한경쟁 (협상에의한계약) |
| 차세대 전자소송체험관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 검토 연구 | 49 | 49 | 주식회사 디자인비채 | 25.03~25.08. | 수의(여성기업) |
| 디스커버리 제도의 사회적 효용과 비용에 관한 연구 | 48 | 48 |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 25.04.~25.10. | 제한경쟁 (협상에의한계약) |
| **법원청사 유리창 및 유리문 강화필름 부착에 관한 연구 용역** | **22** | **22** |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25.04~25.07.** | **수의** |

8)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187~188

| 일반연구비(260-01) | 정책연구비(260-02) |
|---|---|
| 가. 적용범위<br>○ 국가로부터 기술, 전산,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 업무의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br>- 기술용역<br>- 전산용역<br>- 임상연구용역<br>- 기타 연구용역 : 실태조사, 자료제작 등 일상적인 조사·연구 관련 제반 용역 | 가. 적용범위<br>○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학술연구 포함),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 용역제공에 대한 반대급부<br>- 정책협의회(세미나, 간담회 등) 개최 등을 위촉받은 자(출연연구기관, 국내외 대학·민간연구기관 등)의 조사·연구<br>- 시급한 현안에 대처하기 위한 수시정책과제도 포함 |

(단위: 백만원)

| 계약 내역 | | | | | 계약 유형 |
|---|---|---|---|---|---|
| 계약명 | 발주 금액 | 계약 금액 | 수탁기관 | 계약기간 | |
| 법원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수립 방안 연구 | 80 | 78 | 사단법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 25.04~25.11. | 제한경쟁 (협상에의한계약) |
| 미래지향적 사법 통계업무 혁신을 위한 개선 방안 연구 | 65 | 64 | 주식회사 씨앤엘컨설팅 | 25.06~25.10. | 제한경쟁 (협상에의한계약) →수의 |
| 법원경매 이용자 조사를 통한 신문공고의 효과성 분석 및 법원경매 공고제도 개선 방안 연구 | 38 | 36 | 주식회사 서베이피플 | 25.06~26.03. | 제한경쟁 (협상에의한계약) →수의 |
| 해외 주요 법원의 소송절차규정 분석 및 우리 지재소송절차에의 시사점 연구 | 40 | 40 | (사)한국지적재산권 변호사협회 | 25.08~26.02. | 제한경쟁 (협상에의한계약) |
| 법원보관금의 출연금 산정모형에 관한 연구 용역 | 45 | 43 | 주식회사 이앤에프어드바이저 | 25.09~26.01. | 제한경쟁 (협상에의한계약) →수의 |
| 전자소송기록의 보안성강화를 위한 암호화방안 연구 | 90 | 89 | 주식회사 신안디에스 | 25.09~26.02. | 일반경쟁 (협상에의한계약) →수의 |
| 사법연수원 발전을 위한 방향과 구체적 방법에 관한 연구 | 55 | 55 | 한국과학기술원 | 25.09~26.03. | 제한경쟁 (협상에의한계약) →수의 |
| **합 계** | **692** | **676** | | | |

자료: 대법원

또한 1,000만원 미만의 소액 정책연구 6건은 개별 사건 또는 특정 법리 검토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는데, 대법원은 판례가 가지는 규범적 기능과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이러한 연구 역시 정책적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하고 있음.

정책연구사업은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사법제도 전반의 중장기 정책과제 발굴과 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임을 고려할 때, 개별 사건 중심의 단기·소액 연구가 지속적으로 포함될 경우 정책연구로서의 체계성과 전략성이 약화되고 연구 범위와 성과의 깊이에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정책적 활용 가능성 측면에서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책연구와 사례연구 간의 구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책연구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2025년 법원정책연구비(천만원 미만) 계약 현황(Ⅱ)]

(단위: 백만원)

| 계약 내역 | | | | | 계약 유형 |
|---|---|---|---|---|---|
| 계약명 | 발주 금액 | 계약 금액 | 수탁기관 | 계약기간 | |
| 인지미보정을 이유로 한 항소장각하명령의 성립시기 판단에 관한 연구 용역 | 0.5 | 0.5 |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 25.03~25.04. | 수의 |
|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 손해배상책임 요건 해석론 연구용역 | 3 | 3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25.05~25.06. | 수의 |
| 상표 불사용취소에서 정당한 이유의 해석 연구용역 | 4 | 4 |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 25.06~25.10. | 수의 |
| 자동차소유자가 리콜 통지를 받았음에도 일정 기간 리콜에 응하지 않던 중 리콜 통지 대상 제작결함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책임귀속 내지 분배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 3 | 3 |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 25.07~25.08. | 수의 |
|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와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범위의 관계 정책연구용역 | 2 | 2 |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 25.07~25.09. | 수의 |
|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서 허용한 '규약을 통한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 완화'의 범위 정책연구용역 | 2 | 2 |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 25.07~25.09. | 수의 |
| **합 계** | **14.5** | **14.5** | | | |

자료: 대법원

## 5. 사법업무 전산화(정보화) 사업: 조기 발주를 통한 예산 이월 최소화 필요

### 가. 개 요

**‘사법업무 전산화(정보화)’** 사업은 재판사무와 사법행정 업무를 전자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재판사무시스템 및 사법행정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운영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714억 4,800만원 중 539억 5,700만원이 집행(집행률 75.5%)되고 147억 5,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7억 4,100만원이 불용되었음.[9)]

[2025년도 사법업무 전산화(정보화)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 (A) | | | | | | | |
| 사법업무 전산화(정보화) | 72,740 | 72,740 | 937 | △2,229 | 71,448 | 53,957 | 14,750 | 2,741 | 82,846 |
|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 15,842 | 15,842 | 556 | △198 | 16,200 | 2,688 | 13,242 | 270 | 24,875 |
| 사법정보화 기반 구축 | 17,768 | 17,768 | 3 | △1,094 | 16,677 | 15,130 | 221 | 1,326 | 21,374 |
| 각급법원 정보화 기반 구축 운영 | 13,981 | 13,981 | 201 | △318 | 13,864 | 13,241 | 272 | 351 | 12,957 |
| 영상재판/화상회의 등 관련 시스템 기반구축 운영 | 1,066 | 1,066 | 177 | - | 1,243 | 226 | 1,016 | 1 | 660 |
| 사법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24,083 | 24,083 | - | △619 | 23,464 | 22,672 | - | 792 | 22,980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대법원은 사법업무 전산화 사업의 계약이 연도 후반에 집중되면서 집행이 지연되고 대규모의 이월이 발생하는 등 사업 관리가 미흡하므로, 정보화 사업계획 수립과 발주를 조기에 추진하여 이월을 최소화하고 연도 내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9) 일반회계-사법업무 전산화(정보화)(1331-300)(사법정보화실)

사법업무 전산화 사업의 2025년도 예산현액 714억 4,800만원 중 147억 5,000만원이 이월되어 약 20.6%에 해당하는 대규모 이월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은 162억원 중 132억 4,200만원이 이월되어 약 81.7%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고, ‘영상재판/화상회의 등 관련 시스템 기반구축 운영’ 사업 역시 예산현액 12억 4,300만원 중 10억 1,600만원이 이월되어 집행률이 약 18.2%에 그치는 등 주요 사업에서 집행부진과 대규모 이월이 발생하였음.

또한 최근 4년간 결산현황을 보면 2022년 9억 3,100만원, 2023년 15억 9,600만원, 2024년 9억 3,700만원 수준이던 다음연도 이월액이 2025년에는 147억 5,000만원으로 급증하여 전년 대비 약 1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4년간 사법업무 전산화(정보화)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산 현액(B) | 집행액 (C) | 집행률 (C/A) | 집행률 (C/B)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 2022 | 44,866 | 44,866 | 1,248 | △360 | 45,754 | 42,056 | 93.7 | 91.9 | 931 | 2,767 |
| 2023 | 45,250 | 45,250 | 931 | △1,050 | 45,131 | 42,886 | 94.8 | 95.0 | 1,596 | 649 |
| 2024 | 48,980 | 48,980 | 1,596 | △472 | 50,104 | 48,598 | 99.2 | 97.0 | 937 | 569 |
| 2025 | 72,740 | 72,740 | 937 | △2,229 | 71,448 | 53,957 | 74.2 | 75.5 | 14,750 | 2,741 |
| 2026 | 82,846 | 82,846 | - | - | - | - | - | - | - | - |

자료: 대법원

2025년 분기별 계약 및 입찰 공고 현황을 보면 전체 계약 47건 중 33건(70.2%)이 4분기에 체결되었는데, 이렇듯 사업 발주 및 계약이 연도 후반에 집중됨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며, 유찰 등 외부 요인뿐만 아니라 사업 일정 관리와 사전 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데에도 기인한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유찰로 인한 사업자 선정 지연과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적정 사업기간 확보 필요성 등을 이월 발생 사유로 설명하고 있으나, 계약 체결 시기가 대부분 4분기에 집중된 점을 고려할 때 사전준비를 통해 발주 일정을 보다 앞당겨 이월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대법원은 정보화 사업에서 이와 같은 대규모 이월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별 집행 일정과 계약 시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월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회계연도 초부터 철저한 사전준비 및 집행관리를 통해 발주 및 계약 절차를 조기에 추진하여 연도 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2025년 사법업무 전산화(정보화) 계약일 및 입찰공고일(분기기준)]

(단위: 건)

| 구분 | 직접구매(나라장터) 및 수의계약 | | | | | 최초 입찰공고일 | | | | | 합 계 | | | | |
|---|---|---|---|---|---|---|---|---|---|---|---|---|---|---|---|
| | 1/4 분기 | 2/4 분기 | 3/4 분기 | 4/4 분기 | 계 | 1/4 분기 | 2/4 분기 | 3/4 분기 | 4/4 분기 | 계 | 1/4 분기 | 2/4 분기 | 3/4 분기 | 4/4 분기 | 계 |
| 전자소송 시스템구축 및 유지관리 | 1 | - | 6 | 25 | **32** | 2 | 1 | 2 | 4 | **9** | 3 | 1 | 8 | 29 | **41** |
| 영상재판/ 화상회의 등 관련 시스템 기반구축 운영 | - | - | 1 | 3 | **4** | - | - | 1 | 1 | **2** | - | - | 2 | 4 | **6** |
| 합 계 | 1 | 0 | 7 | 28 | **36** | 2 | 1 | 3 | 5 | **11** | 3 | 1 | 10 | 33 | **47** |

주) 직접구매 및 수의계약은 계약일 기준
자료: 대법원

# 6.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정보화): 이월예산의 불용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 관리 필요

## 가. 개 요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은 노후 재판사무·전자소송 시스템의 전면 재설계 및 빅데이터 등 최신기술 도입을 통한 국민의 사법접근성 제고하는 것으로, 이 중 일반연구비(260-01목)에서는 2025년도 예산현액 73억 2,600만원 중 41억 200만원이 집행(집행률 60%)되고 11억 1,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1억 600만원이 불용되었음.[10)]

[2025년도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정보화)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구축(정보화) | | 23,000 | 23,000 | 5,848 | - | 28,848 | 24,151 | 1,916 | 2,781 | 30,177 |
| | 일반연구비 (260-01) | 1,478 | 1,478 | 5,848 | - | 7,326 | 4,102 | 1,118 | 2,106[11)] | - |
| | 자산취득비 (430-01) | 1,785 | 1,785 | - | - | 1,785 | 951 | 798 | 36 | - |
| | 일반수용비 (210-01) | 139 | 139 | - | - | 139 | 130 | - | 9 | 188 |
| | 관리용역비 (210-15) | 19,598 | 19,598 | - | - | 19,598 | 18,968 | - | 630 | 29,989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의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예산이 이월 후 전액 불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대법원은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10) 일반회계-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정보화)(1331-303)(사법정보화실)

11) 전체 불용액 21억 600만원 중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예산 불용액 20억 2,600만원을 제외한 8,000만원에 대한 불용사유는 낙찰차액 감액 및 예산절감임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2] 및 「총사업비 관리지침」[13]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조달청장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함.

[2025년도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정보화) 일반연구비(260-01)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일반연구비 | 1,478 | 1,478 | - | - | 1,478 | 280 | 1,118 | 80 | - |
| | - | - | 5,848 | - | 5,848 | 3,822 | - | 2,026 | - |
| **합 계** | **1,478** | **1,478** | **5,848** | **-** | **7,326** | **4,102** | **1,118** | **2,106** | **-** |

자료: 대법원

2024년도 본예산에는 소송절차별 업무지원 전면개편 일반연구비 38억 2,200만원과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예산 20억 2,600만원 등 총 58억 4,8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 중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예산 20억 2,600만원은 집행되지 못하고 2025년도로 이월되었음.

[2024년도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정보화) 일반연구비(260-01)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303]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 **13,278** |
|---|---|
| [260]연구용역비 | 5,848 |
| [260-01]일반연구비 | 5,848 |
| 1.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 5,848 |
| 가. 소송절차별 업무지원 전면개편 | 3,822 |
| 1) 법관지원 등 | 480 |
| 2) 재판서작성관리 등 | 3,342 |
| **나.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 **2,026** |

자료: 대법원

1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90일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1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64조(시공 단계)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의 사전검토 결과**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를 조정한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조달청으로부터 사전검토가 적정한 것으로 회신 될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이 가능한 상황으로 이를 고려하여 이월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대법원은 2024년도 3차례에 걸쳐 총사업비 변경을 조달청에 요청하였으나, 조달청으로부터 총사업비 변경 대상이 아님을 회신받아 사실상 집행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예산 20억 2,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한 것으로 확인되며, 2025년도에 다시 총사업비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증빙서류 누락 등을 이유로 총사업비 변경이 불가함을 재차 통보받아 결국 이월된 예산을 불용하였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 및 조달청 회신 내역]

| | |
|---|---|
| 1차 신청<br>(2024. 8. 5.) | [조정요청금액]<br>- 1회 물가변동 분(24.1.1.): 720,638천원<br>- 2회 물가변동 분(24.5.13.): 373,526천원<br>- 계: 1,094,164천원 |
| 조달청 회신<br>(2024. 8. 24.) | [반려]<br>- 투입인력 중 데이터베이스관리-하위와 데이터 아키텍트는 직무분야의 통합에 의한 SW기술자의 평균임금 변화이므로 물가변동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 2차 신청<br>(2024. 10. 3.) | [조정요청금액]<br>- 1회 물가변동 분(24.1.1.): 525,826천원<br>- 2회 물가변동 분(24.5.13.): 364,553천원<br>- 계: 890,379천원 |
| 조달청 회신<br>(2024. 11. 25.) | [반려]<br>- 투입인력 중 데이터베이스관리-하위와 데이터 아키텍트를 제외한 나머지 SW기술자 직무분야에서 1차 조정신청 시와 상이한 등락률을 적용할 근거가 타당하지 않아 물가변동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 3차 신청<br>(2024. 12. 2.) | [조정요청금액]<br>- 1회 물가변동 분(24.5.13.): 383,879천원 |
| 조달청 회신<br>(2024. 12. 16.) | [반려]<b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침에 따라 인상된 기능점수 단가는 2025년 이후 추진 예정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부터 적용해야 하므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적용 불가 |
| 4차 신청<br>(2025. 3. 20.) | [조정요청금액]<br>- 1회 물가변동 분(24.5.13.): 383,879천원 |
| 조달청 회신<br>(2025. 4. 1.) | [반송]<br>-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 제6항에 따른 증빙서류 누락 등 |

자료: 대법원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2024년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예산 중 일반연구비 20억 2,600만원을 2025년도로 사고이월하였으나 계약금액 조정신청 과정에서 대법원의 사업관리 미흡으로 이월예산이 불용된 것으로 보임.[14]

특히 사고이월[15] 예산의 불용은 당초 집행이 예정되어 있었던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음을 의미하며, 한정된 재원이 장기간 활용되지 못한 채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향후 사업 추진 여건 및 이행 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강화하여 사고이월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이월예산의 불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규모]

(단위: 백만원)

- 총사업비 : 244,636백만원(구축비 104,257백만원, 운영 · 유지관리비 140,379백만원)
- 사업기간 : 2020년~2030년(구축 2020년~2025년, 운영 · 유지관리 2025년~2030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 연도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사업비 | 21,994 | 21,262 | 18,461 | 13,278 | 23,000 |

자료: 대법원

14)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4차)에 대하여 조달청의 반송 사유는 '용역공정예정표 미첨부' 임. 위 반송 이후 사업자(LG CNS)로부터 반송 사유를 보완하는 재신청서 또는 추가 증빙서류가 별도로 제출되지 않음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대법원은 설명하고 있음.

15)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 명시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7. 본부 기본경비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정확성 제고 필요

## 가. 개 요

**‘본부 기본경비’** 는 기관운영비 및 시설장비 임차, 직원 복리후생비 및 직책수행비, 기타운영비 등 사법 조직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851억 6,700만원 중 846억 3,9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4%)되고 2,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5억 500만원이 불용되었음.[16)]

[2025년도 본부 기본경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본부 기본경비 | 84,965 | 84,965 | 92 | 110 | 85,167 | 84,639 | 23 | 505 | 86,543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본부 기본경비는 이·전용 및 세목조정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예산이 사전 계획보다는 사후 조정에 의존하여 운영되는 문제가 있는바, 정밀한 예산편성을 통해 이·전용 등을 최소화하고 예산운용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본부 기본경비는 전반적인 집행률이 99.4%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세부적으로는 연도 중 이·전용 및 세목조정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예산이 당초 계획에 따라 집행되기보다는 사후적인 재원 조정에 의해 운영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최근 4년간 이·전용 등 증감 현황을 보면 2022년 233건, 2023년 281건, 2024년 341건, 2025년 136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2024년까지 증가하던 조정 건수가 2025년에는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100건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다수의 재원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아울러 2025년의 경우 감액 18억 8,300만원, 증액 19억 9,300만원의 조정이 발생하여 전년도 대비 건수는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감액 규모는

16) 일반회계-본부 기본경비(7011-250)(기획조정실)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바, 이는 단순한 집행 과정상의 미세 조정이 아니라 예산과목 간 자금 재배분이 구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함.

또한 이용·전용·세목조정·내역변경 등 다양한 방식의 조정이 병행되고 있어 예산 편성 내역과 실제 집행 내역 간의 괴리가 큰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다수의 조정 행위는 당초 예산편성 단계에서 세목별 소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사후적으로 재원을 재배분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함.

[최근 4년간 본부 기본경비 결산]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산 현액(B) | 집행액 (C) | 집행률 (C/A) | 집행률 (C/B)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 2022년 | 75,522 | 74,684 | 18 | △428 | 74,274 | 71,948 | 96.3 | 96.9 | 823 | 1,503 |
| 2023년 | 77,361 | 77,361 | 823 | △367 | 77,817 | 77,342 | 100.0 | 99.4 | 39 | 436 |
| 2024년 | 80,254 | 80,254 | 39 | 715 | 81,009 | 80,281 | 100.0 | 99.1 | 92 | 636 |
| 2025년 | 84,964 | 84,964 | 92 | 110 | 85,167 | 84,639 | 99.6 | 99.4 | 23 | 505 |

자료: 대법원

[최근 4년간 본부 기본경비 이·전용 등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건)

| 연도 | 이용 | | | 전용 | | | 세목조정 | | | 내역변경 | | | 합계 | | |
|---|---|---|---|---|---|---|---|---|---|---|---|---|---|---|---|
| | 감액 | 증액 | 건수 | 감액 | 증액 | 건수 | 감액 | 증액 | 건수 | 감액 | 증액 | 건수 | 감액 | 증액 | 건수 |
| 2022 | - | - | - | △702 | - | 3 | △264 | 264 | 223 | △72 | 346 | 7 | △1,038 | 610 | **233** |
| 2023 | △283 | - | 9 | △796 | 759 | 12 | △615 | 615 | 255 | △82 | 35 | 5 | △1,776 | 1,409 | **281** |
| 2024 | △2 | - | 1 | △189 | 1,018 | 11 | △828 | 828 | 319 | △155 | 43 | 10 | △1,174 | 1,889 | **341** |
| 2025 | △101 | 1 | 2 | △762 | 1,000 | 8 | △955 | 955 | 120 | △65 | 37 | 6 | △1,883 | 1,993 | **136** |

자료: 대법원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본부 기본경비는 각급 법원의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법원별 집행 여건에 따라 발생하는 부족분을 자체 권한에 따라 보완하는 과정에서 이·전용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재정법」 상 이·전용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예외적 조치라는 점에서 각급 법원의 예산을 총괄하는 대법원(법원행정처)에서 법원별 수요를 사전파악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등 과도한 이·전용, 세목조정 및 내역변경 등을 축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17]

따라서 대법원은 향후 각급 법원의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소요예산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도록 관리하고, 세목 간 전용 및 조정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제도개선 효과를 점검·보완하여 예산이 사후 조정이 아닌 사전 계획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산운용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17) 대법원은 2025년 8월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 실시방안’과 ‘세목조정 절차 개선 및 유의사항 안내’를 시행하여 사전 사업계획 수립을 강화하고 세목조정 권한을 폐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2025년에는 이전용 등 건수가 전년 대비 감소하는 등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등기특별회계】

〈세　입〉

## 8. 전년도세계잉여금: 세계잉여금 추계의 정확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가. 개　요

**‘전년도세계잉여금’**은 등기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빼고 남은 잉여금을 다음연도 세입에 계상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08억 5,200만원 중 150억 1,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음.[18)]

[2025년도 전년도세계잉여금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이체등 증감액 | 예산 현액(B) | 징수 결정액(C) | 수납액 (D) | 미수납액 | 불납 결손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전년도세계잉여금 | 20,852 | 20,852 | - | 20,852 | 15,013 | 15,013 | - | - | 15,013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등기특별회계 전년도세계잉여금은 최근 그 규모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예산액 대비 수납률도 58~72% 수준으로 저조하여 추계의 정확성이 미흡하므로, 등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구조 변화를 반영한 현실적인 추계를 통해 예산액과 세입액과의 괴리를 축소하여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최근 4년간 전년도세계잉여금 결산현황을 보면, 2022년 736억 8,500만원, 2023년 680억 5,000만원에서 2024년 368억 9,900만원, 2025년 150억 1,300만원으로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며, 특히 2024년 이후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본예산 대비 수납률도 2022년 209.5%, 2023년 103.3%에서 2024년 58.5%, 2025년 72.0%로 감소하고 있음.

18) 등기특별회계-전년도세계잉여금(89-893)(기획조정실)

[최근 4년간 전년도세계잉여금 결산 현황(2022~2025년)]

(단위: 백만원, %)

| 연도 | 예산액 | | 이체등 증감액 | 예산 현액 | 징수 결정액(B) | 수납액 (C) | 수납률 (C/A) | 수납률 (C/B) | 미수납액 | 불납 결손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 2022 | 35,175 | 35,175 | - | 35,175 | 73,685 | 73,685 | **209.5** | 100.0 | - | - |
| 2023 | 65,827 | 65,827 | - | 65,827 | 68,050 | 68,050 | **103.3** | 100.0 | - | - |
| 2024 | 63,022 | 63,022 | - | 63,022 | 36,899 | 36,899 | **58.5** | 100.0 | - | - |
| 2025 | 20,852 | 20,852 | - | 20,852 | 15,013 | 15,013 | **72.0** | 100.0 | - | - |

자료: 대법원

이러한 세계잉여금 감소는 등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구조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세입 측면에서는 등기업무수입금이 감소하고 있는데, 세출 측면에서는 등기업무경비가 증가하고 있어 잉여금이 축소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음. 특히 2025년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300억원의 예수금이 세입으로 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잉여금이 246억 2,000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음.

[등기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 현황: 2020~2025년]

(단위 : 백만원)

| 구분 | 세입(A) | | | | | | 세출(B) | | | | 결산 잉여금 (C=A-B) |
|---|---|---|---|---|---|---|---|---|---|---|---|
| | 등기소 매각대금 | 등기업무수입금 | 전년도 세계잉여금 | 기타수입금 | 기금예수금 | 합계 | 등기소 설치경비 | 등기업무경비 | 차입금 예수금 상환·이자 등 | 합계 | |
| 2020 | 14,547 | **262,761** | 40,666 | 891 | - | 318,865 | 26,855 | **195,342** | 18,774 | 240,971 | 77,894 |
| 2021 | 11,315 | **262,652** | 77,897 | 1,582 | - | 353,446 | 22,772 | **205,905** | 51,085 | 279,762 | 73,684 |
| 2022 | 12,416 | **230,725** | 73,685 | 481 | - | 317,307 | 16,446 | **207,170** | 25,640 | 249,256 | 68,051 |
| 2023 | 9,876 | **222,011** | 68,050 | 1,165 | - | 301,102 | 15,227 | **217,457** | 31,519 | 264,203 | 36,899 |
| 2024 | 518 | **223,913** | 36,899 | 3,717 | - | 265,047 | 9,609 | **219,557** | 20,868 | 250,034 | 15,013 |
| 2025 | - | **217,696** | 15,013 | 365 | **30,000** | 263,074 | 9,669 | **206,929** | 21,856 | 238,454 | 24,620 |
| 2026 | 5,910 | **264,077** | 15,013 | 3,517 | - | 288,517 | 4,818 | **227,749** | 55,950 | 288,517 | - |

주) 2026년은 예산 기준
자료: 대법원

또한 등기업무수입의 예·결산 현황을 보면 최근 4년간 모두 예산 대비 수납액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22년 273억 6,200만원, 2023년 1,299억 9,200만원, 2024년 840억 7,500만원, 2025년 262억 8,000만원 등 본예산과 실제 수납액 간의 괴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이는 세입 추계의 정확성이 미흡함을 보여주는 것임.

[최근 4년간 등기업무수입 예·결산 현황: 2022~2025]

(단위: 백만원, %)

| 연도 | 예산액 | | 이체등 증감액 | 예산 현액 | 징수 결정액(B) | 수납액 (C) | 수납률 (C/A) | 수납률 (C/B) | 미수 납액 | 차이 (C-A)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 2022 | 258,087 | 258,087 | - | 258,087 | 230,725 | 230,725 | 89.4 | 100.0 | - | △27,362 |
| 2023 | 352,003 | 352,003 | - | 352,003 | 222,011 | 222,011 | 63.1 | 100.0 | - | △129,992 |
| 2024 | 307,988 | 307,988 | - | 307,988 | 223,913 | 223,913 | 72.7 | 100.0 | - | △84,075 |
| 2025 | 243,976 | 243,976 | - | 243,976 | 217,696 | 217,696 | 89.8 | 100.0 | - | △26,280 |
| 2026 | 264,077 | 264,077 | - | - | - | - | - | - | - | - |

자료: 대법원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리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전제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할 때, 세입예산이 실제 수납액보다 과다하게 계상될 경우 계획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 경우 재정운용의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향후 등기업무 수입 감소 및 지출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현실적인 세계잉여금 추계를 실시하고 등기업무의 자동화·지능화 등을 통해 비용 절감 노력을 병행하는 한편, 세입예산과 실제 수납액 간의 차이를 최소화하여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지　출〉

## 9. 조정제도 지원 사업: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필요

### 가. 개　요

**‘조정제도 지원’** 사업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인 조정제도 활성화를 통해 분쟁당사자들의 원만한 사건해결을 모색하고, 나아가 법원의 사건부담을 감소시켜 충실한 심리를 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119억 9,700만원 중 118억 3,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7%)되고 1억 6,200만원이 불용되었음.[19)]

[2025년도 조정제도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기능별 | 2025년 | | | | | | | 2026년 계획액 |
|---|---|---|---|---|---|---|---|---|
| | 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 | 계획 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당초 | 수정 | | | | | | |
| 조정제도 지원 | 11,432 | 11,997 | - | 11,997 | 11,835 | - | 162 | 11,523 |
| 상용임금 (110-03) | 754 | 754 | - | 754 | 729 | - | 25 | 828 |
| 일반수용비(210-01)[20)] | 10,516 | 11,081 | - | 11,081 | 10,954 | - | 127 | 10,516 |
| 복리후생비(210-12) | 14 | 14 | - | 14 | 13 | - | 2 | 14 |
| 고용부담금(310-09) | 148 | 148 | - | 148 | 139 | - | 9 | 165 |
| 합　계 | 11,432 | 11,997 | - | 11,997 | 11,835 | - | 162 | 11,523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조정제도 지원 사업은 계획변경을 통한 증액예산이 일부 불용되고 조정회부 건수 및 처리실적이 감소하여 성과 달성이 미흡하므로, 조정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성과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9) 사법서비스진흥기금-조정제도 지원(1161-302)(사법지원실)

20) 일반수용비 집행액 10,954백만원(조정위원 수당 등: 3,935백만원, 상임조정위원수당 등: 3,236백만원, 조정센터 운영비 14백만원, 조정위원 교육 등 214백만원, 조정전담변호사비용: 3,555백만원)

조정제도 지원은 「민사조정법」[21]에 근거하여 소송으로 판결을 받기 전에 당사자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위원수당 및 조정전담변호사 비용과 조정센터 운영 등을 위한 것으로, 2025년 당초 계획액 114억 3,200만원에서 계획변경을 통해 5억 6,500만원을 증액하여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2025년 11월부터 12월 사이 총 5억 6,500만원 규모의 일반수용비 증액이 이루어졌으나, 최종적으로 1억 6,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2025년 12월 19일에 이루어진 추가 증액(1억 2,000만원)은 집행 필요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필요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2025년도 조정제도 지원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 목 | 세목 | 세사업 | 금액 | 계획수정 사유 |
|---|---|---|---|---|---|
| 자체변경 (2025.11.5.) | 210 | 01 | 조정제도 지원 | 150 | 조정제도 지원 사업 진행을 위한 일반수용비 부족 |
| 자체변경 (2025.12.4.) | 210 | 01 | 조정제도 지원 | 300 | |
| **자체변경 (2025.12.19.)** | **210** | **01** | **조정제도 지원** | **120** | |
| 자체변경 (2025.12.30.) | 210 | 01 | 조정제도 지원 | △5 | 사법서비스 향상 사업 진행을 위한 일반수용비 부족 |
| 합 계 | | | | 565 | |

자료: 대법원

21) 「민사조정법」
제10조(조정위원) ① 조정위원은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지원장이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미리 위촉한다. 다만, 상임 조정위원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② 조정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기를 2년 이내로 정하여 조정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조정에 관여하는 일
2.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장의 촉탁(囑託)을 받아 제7조제6항에서 정한 사무를 수행하는 일
④ 법원은 조정위원에게 정기적인 교육 및 연수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조정위원에 대한 수당 등) 조정위원에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최근 4년간 조정지원 제도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 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 | 계획 현액(B) | 집행액 (C) | 집행률 (C/A) | 집행률 (C/B)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당초 | 수정(A) | | | | | | | |
| 2022 | 12,239 | 12,239 | - | 12,239 | 11,090 | 90.6 | 90.6 | - | 1,149 |
| 2023 | 12,823 | 12,823 | - | 12,823 | 11,433 | 89.2 | 89.2 | - | 1,390 |
| 2024 | 12,708 | 12,708 | - | 12,708 | 11,876 | 93.5 | 93.5 | - | 832 |
| 2025 | 11,432 | 11,997 | - | 11,997 | 11,835 | 98.7 | 98.7 | - | 162 |

자료: 대법원

이 사업은 2023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아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변경을 통해 다시 증액하여 집행하고 있는바, 평가 미흡에 따른 예산 감액편성 취지와 집행 간의 정합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한편 성과지표 측면을 보면 '조정회부(민사·가사) 건수'는 2025년 목표 61,160건 대비 58,695건으로 달성률이 96.0%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이는 전년도 실적(65,855건)과 비교하면 약 10.9% 감소한 것이며 '본안사건 처리건수 대비 조정사건 처리건수 비율' 역시 목표 11.8%에 미치지 못하는 11.2%를 기록하여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등 조정제도의 활용도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이를 종합하면 대법원은 기금운용계획변경 시 집행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변경을 지양하고 예산이 사전 계획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조정회부 및 처리 건수 감소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건 유형별·법원별 특성을 반영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성과지표가 단순한 실적 관리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 운영과 연계된 실효성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2025년도 조정지원 제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성과달성도]

(단위: 건, %)

| 성과지표 | 구분 | 2023 | 2024 | 2025 | 2026 | 2026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
| 조정회부 (민사, 가사) 건수 | 목표 | 57,241 | 58,729 | 61,160 | 58,871 | 2021~2025년 연도별 조정회부 건수의 증감률을 산출하여 목표치 설정 | 각급 법원의 조정신청 건수, 수소법원 조정건수를 제외한 조정회부(민사, 가사) 건수 |
| | 실적 | 62,625 | 65,855 | 58,695 | - | | |
| | 달성도 | 109.4 | 112.1 | 96.0 | - | | |
| 본안사건 처리건수 대비 조정사건처리 건수 비율(%) | 목표 | - | 신규 | 11.8 | 11.7 | 2022년~2025년 비율 평균을 산출하여 목표치 설정 | 본안사건처리건수 대비 조정처리건수 비율 |
| | 실적 | - | - | 11.2 | - | | |
| | 달성도 | - | - | 94.9 | - | | |

자료: 대법원

# 10.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신축 사업: 계약지연으로 인한 과다 이월액 발생 문제

## 가. 개 요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신축’** 사업은 소년·아동보호사건 및 가사사건 등의 특성에 맞는 법원의 후견·복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35억 8,400만원 중 6억 1,700만원이 집행(집행률 17.2%)되고 4억 4,900만원이 다음연도 이월되었으며 25억 1,800만원이 불용되었음.[22)]

[2025년도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2026년도 계획액 |
|---|---|---|---|---|---|---|---|---|
| | 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B) | 계획현액 (A+B)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당초 | 수정(A) | | | | | | |
| 소년보호 등 지원 | 9,207 | 9,207 | 423 | 9,630 | 6,386 | 449 | 2,795 | 8,764 |
| 가정법원종합 지원센터 신축 | 3,161 | 3,161 | 423 | 3,584 | 617 | 449 | 2,518 | 2,851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신축사업 개요]

| | | | |
|---|---|---|---|
| **소재지** | 경기도 여주시 홍문동 146-3 일원(구 여주지원 부지) | | |
| **총사업비** | 378억 9,300만원 | **사업기간** | 2024~2029년 |
| **대지면적** | 6,036㎡ 1,829평 | **건물연면적** | 8,668㎡ 2,627평 |
| **공사규모** | 강의시설(1,480㎡), 숙박시설(3,077㎡), 업무시설(776.5㎡), 부대시설 등 | | |

자료: 대법원

## 나. 검토의견

**대법원은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신축 사업에서 실시설계비가 전액 이월되고 건설보상비 전액이 불용되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사업이 추가로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건립 이후 센터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함께 수립할 필요가 있음.**

22) 사법서비스진흥기금-소년보호 등 지원(1161-304)(사법지원실)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는 가정법원의 후견·복지기능을 강화하고자 5개년 간 총 378억 9,300만원을 투입하여 경기도 여주에 지상 5층 규모의 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임.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신축 사업 총사업비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 총사업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
| **총 계** | **37,893** | **430** | **3,161** | **2,851** | **10,945** | **12,077** | **8,429** |
| ㅇ토지매입비 | 8,393 | - | 2,518 | 2,518 | 2,518 | 839 | - |
| ㅇ공사비 | 26,065 | - | - | - | 7,819 | 10,426 | 7,820 |
| ㅇ시설부대경비 | 3,435 | 430 | 643 | 333 | 608 | 812 | 609 |
| - 기본설계비 | 734 | 425 | 309 | - | - | - | - |
| - 실시설계비 | 637 | - | 319 | 318 | - | - | - |
| - 감리비 | 2,004 | - | - | - | 601 | 802 | 601 |
| - 시설부대비 | 60 | 5 | 15 | 15 | 7 | 10 | 8 |

자료: 대법원

이 사업은 2024년도 기본조사설계비 4억 2,500만원 중 700만원만 집행되고 나머지는 이월되어 집행률이 1.6%에 그쳤으며, 2025년에도 건설보상비(410-00) 25억 1,800만원 및 실시설계비(420-02) 3억 1,9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건설보상비 전액이 불용되고 실시설계비도 전액 이월되는 등 사업의 집행 부진 및 지연이 발생하고 있음.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신축 집행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세사업 명 | 2024년 | | | | | 2025년 | | | | | | 2026년 |
|---|---|---|---|---|---|---|---|---|---|---|---|---|
| | 계획액 | 계획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계획액 | 전년도 이월액 | 계획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신축** | **430** | **430** | **7** | **423** | **-** | **3,161** | **423** | **3,584** | **617** | **449** | **2,518** | **2,851** |
| - 건설보상비 (410-00) | - | - | - | - | - | 2,518 | - | 2,518 | - | - | 2,518 | 2,518 |
| - 기본조사설계비 (420-01) | 425 | 425 | 7 | 418 | - | 309 | 418 | 727 | 610 | 118 | - | - |
| - 실시설계비 (420-02) | - | - | - | - | - | 319 | - | 319 | - | 319 | - | 318 |
| - 시설부대비 (420-05) | 5 | 5 | - | 5 | - | 15 | 5 | 20 | 7 | 13 | - | 15 |

자료: 대법원

구체적으로 이 사업은 사전타당성평가 결과 교육인원 수요의 근거가 모호하여 시설 규모의 적정성을 산출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기존 각급 법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중복될 우려 등 사업계획에 미흡한 부분이 존재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23]이 제기되어 사업계획 보완 등을 위해 사업이 지연되었고, 이후에도 조달청 계획설계 적정성 검토에 의한 설계 중지 및 여주시, 경기도 도시계획 심의에 따른 지연 등이 발생하여 집행이 저조하였던 것으로 보임.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신축사업 진행 경과]

| 일자 | 추진내용 |
|---|---|
| 2024년 예산에 신규사업 반영(2023년 사전타당성평가 완료 후 예산반영) | |
| 2024. 5. 8. | 신축 건축기획 수립(공공건축센터 사전검토) |
| 2024. 5. 17. | 법원청사건축심의 위원회 심의(건축기획) |
| 2024. 7. 2. |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신축 기본계획 수립 |
| 2024. 7. 30. |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설계용역 공고 |
| 2024. 11. 26. |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설계용역 계약 체결 |
| **2025. 5. 21.** |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계획설계 적정성 검토(조달청)** |
| 2025. 7. 3. |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기본설계 승인 |
| **2025. 7. 18.** | **여주시, 경기도 도시계획 심의에 따른 설계 중지** |
| **2025. 12. 18.** |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최종 통보 ⇒ 건설보상비 2,518백만원 불용** |
| 2026. 1. 9. |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설계재개 |
| 2026. 5. 29. |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요청(조달청) |

자료: 대법원

대법원은 이 사업이 가사·소년·아동보호 등을 담당하는 전국 가정법원의 후견·복지 업무역량 제고를 위해 5년간 379억원 가량이 투입되는 대규모 건립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이 추가로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건립 이후 센터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함께 수립할 필요가 있음.

23) 한국개발연구원, 「가정·소년·아동보호 종합센터 신축사업 사전타당성평가」, 2023.1.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신축 사업 향후 건립계획]

| 일자 | 추진내용 |
|---|---|
| 2024. 12. ~ 2025. 7. | 기본설계용역 실시 |
| 2025. 8. ~ 2026. 11. | 실시설계용역 실시 |
| 2026. 12. ~ 2027. 2. | 공사 발주 |
| 2027. 3. ~ 2027. 4. | 착공 준비 |
| 2027. 5. ~ 2029. 10. | 건립 공사 추진 |

자료: 대법원

【국유재산관리기금】

〈지　출〉

## 11. 대법원 청주지법 충주지원 신축: 연례적인 기금운용계획변경 지양 필요

### 가. 개　요

**‘대법원 청주지법 충주지원 신축’** 사업은 대법원 충주지원이 노후(건축연도 1979년)하고 협소하여 청사를 이전·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당초 계획액은 38억 1,500만원이었으나, 자체변경을 통하여 전액 감액하였음.[24)]

[2025년도 대법원 청주지법 충주지원 신축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2026년도 계획액 |
|---|---|---|---|---|---|---|---|---|
| | 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B) | 계획현액 (A+B)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당초 | 수정(A) | | | | | | |
| 대법원 청주지법 충주지원 신축 | 3,815 | - | - | - | - | - | - | 100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대법원은 청주지법 충주지원 신축 사업에서 3년 연속 계획안 수립 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전액 감액하였는데, 향후 사업 추진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집행 가능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반복적인 계획변경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청주지법 충주지원 신축 사업은 총사업비 477억 1,900만원 규모로 추진되는 대규모 청사 건립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건설보상비 34억 3,800만원, 실시설계비 3억 5,200만원 및 시설부대비 2,500만원 등 총 38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전액 자체 계획변경을 통해 감액되어 사업이 전혀 추진되지 못하였으며, 감액된 38억 1,500만원

24) 국유재산관리기금-대법원 청주지법 충주지원 신축(1331-413)(기획조정실)

은 2025년 12월 수원법원 위탁개발 임차료 재원으로 집행하였음.

[2025년 대법원 청주지법 충주지원 신축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세사업 명 | 2025년 | | | | | | | 2026년 |
|---|---|---|---|---|---|---|---|---|
| | 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 | 계획 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당초 | 수정 | | | | | | |
| ㆍ청주지법 충주지원 신축 | 3,815 | - | - | - | - | - | - | 100 |
| - 건설보상비 (410-00) | 3,438 | - | - | - | - | - | - | 100 |
| - 기본설계비(420-01) | - | - | - | - | - | - | - | - |
| - 실시설계비(420-02) | 352 | - | - | - | - | - | - | - |
| - 공사비(420-03) | - | - | - | - | - | - | - | - |
| - 감리비(420-04) | - | - | - | - | - | - | - | - |
| - 시설부대비 (420-05) | 25 | - | - | - | - | - | - | - |

자료: 대법원

[청주지법 충주지원 신축 사업 기금계획변경 내역(2023~2025년)]

(단위: 백만원)

| 년도 | 구분 | 목 | 세목 | 세사업 | 금액 | 계획수정 사유 |
|---|---|---|---|---|---|---|
| 2023 | 자체변경 (2023.12.28.) | 410 | 00 | 청주지법 충주지원 신축 | △1,278 | 불용이 예상되는 건설보상비를 수원법원 위탁개발 임차료로 기금운용계획 변경 |
| | 합 계 | | | | △1,278 | |
| 2024 | 자체변경 (2024.12.10.) | 410 | 00 | 청주지법 충주지원 신축 | △3,438 | 불용이 예상되는 건설보상비 및 기본설계비를 수원법원 위탁개발 임차료로 기금운용계획 변경 |
| | | 420 | 01 | 청주지법 충주지원 신축 | △799 | |
| | 합 계 | | | | △4,237 | |
| 2025 | 자체변경 (2025.12.17.) | 410 | 00 | 청주지법 충주지원 신축 | △3,438 | 불용이 예상되는 건설보상비 및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를 수원법원 위탁개발 임차료로 기금운용계획 변경 |
| | | 420 | 02 | 청주지법 충주지원 신축 | △352 | |
| | | 420 | 05 | 청주지법 충주지원 신축 | △25 | |
| | 합 계 | | | | △3,815 | |

자료: 대법원

이 사업은 2023년 12억 7,800만원, 2024년 42억 3,700만원, 2025년 38억 1,500만원 등 3년 연속 관련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실제 사업 집행 없이 모두 타 사업으로 변경되는 등 연례적인 기금운용계획변경이 반복되고 있음. 이는 신축사업 추진 여건이 충

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문화재발굴조사, 매장유산 보전 및 공공청사 면적 변경 협의 지연 등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가 늦어졌고 후속 절차도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외부 절차상 지연 가능성이 존재하였다면 사업 추진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 단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이 사업과 같이 3년 연속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타 사업 재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의 예측 가능성과 계획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대법원은 인허가 절차 진행 상황 등 향후 공사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집행 가능성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연례적인 기금운용계획변경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대법원 청주지법 충주지원 신축 사업 향후 건립계획]

| 일 자 | 추진내용 |
|---|---|
| 2027. 09. ~ 2028. 04. | 기본설계용역 실시 |
| 2028. 05. ~ 2029. 02. | 실시설계용역 실시 |
| 2029. 08. | 공사 착공 |
| 2032. 02. | 준공 |

자료: 대법원

[대법원 청주지법 충주지원 신축 연도별 사업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 총사업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2032년 |
|---|---|---|---|---|---|---|---|---|
| **총 계** | **47,719** | **100** | **351** | **3,717** | **9,645** | **9,223** | **12,342** | **12,341** |
| ㅇ토지매입비 | 15,029 | 100 | 1 | 2,986 | 2,986 | 2,986 | 2,985 | 2,985 |
| ㅇ공사비 | 28,956 | - | - | - | 5,791 | 5,791 | 8,687 | 8,687 |
| ㅇ시설부대경비 | 3,734 | - | 350 | 731 | 868 | 446 | 670 | 669 |
| - 기본설계비 | 799 | - | 350 | 449 | - | - | - | - |
| - 실시설계비 | 704 | - | - | 282 | 422 | - | - | - |
| - 감리비 | 2,132 | - | - | - | 426 | 426 | 640 | 640 |
| - 시설부대비 | 99 | - | - | - | 20 | 20 | 30 | 29 |

자료: 대법원

# 【기　타】

## 12.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대법원에 대해 시정요구 25건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시정 1건·주의 10건·제도개선 14건이었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 구분 | 변상 | 징계 | 시정 | 주의 | 제도개선 | (중복) | 계 |
|---|---|---|---|---|---|---|---|
| 결산 | - | - | 1 | 10 | 14 | - | 25 |
| 예비비 | - | - | - | - | - | - | - |
| 합계 | - | - | 1 | 10 | 14 | - | 25 |

대법원은 시정요구사항 25건에 대해 19건을 조치완료(조치율 76.0%)하고 6건을 조치 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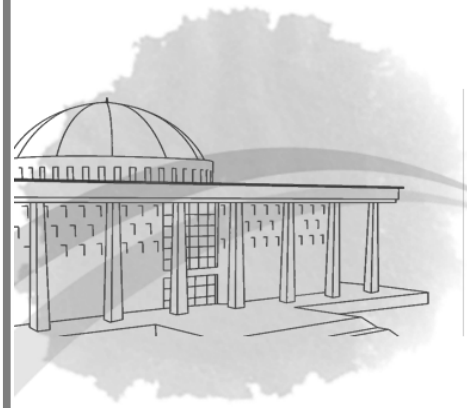
| 구분 | 시정요구사항(a) | 조치완료(b) | 조치율(b/a) | 조치중(a-b) |
|---|---|---|---|---|
| 결산 | 25 | 19 | 76.0 | 6 |
| 예비비 | - | - | - | - |
| 합계 | 25 | 19 | 76.0 | 6 |

국회가 「2025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면서 채택한 부대의견 중 대법원 2025회계연도 결산 관련 부대의견은 아래와 같음.

[대법원 관련 2025년도 예산안 등 부대의견]

| 구분 | 부대의견 |
|---|---|
| 2025년도<br>본예산 | (1) 대법원은 토지대여료의 추계 정확성을 제고하여 적정 세입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한다.<br>(2) 대법원은 변상금의 추계 정확성을 제고하여 적정 세입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한다.<br>(3) 대법원은 건물매각대의 추계 정확성을 제고하여 적정 세입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한다.<br>(4) 대법원은 법원보관금 운용수익금을 국가 세입예산으로 편입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운용수익금을 공적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한다.<br>(5) 대법원은 등기특별회계 잉여금 추계의 정확성을 높임으로써 적정규모의 등기특별회계전입금 세입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에서 확정한 세입예산 규모대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br>(6) 대법원은 민사 등 사건 및 형사사건의 기록 등 스캔 사업을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하여 스캔 단가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
| 2024회계연도<br>결산 | 해당사항 없음 |
| 2026년도<br>본예산 | (1) 대법원은 매 분기별 관서업무추진비 집행 세부내역(회의명, 일시, 장소, 참석자, 영수증 등 증빙자료 등을 포함)과 분개내역 등을 공개한다.<br>(2) 대법원은 매 분기별 특정업무경비 집행 세부내역과 분개내역 등을 공개한다.<br>(3) 대법원은 향후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보호위탁 · 치료위탁 · 상담위탁 비용지원 계획안의 적정 소요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실제 지급건수 등 관련 자료를 관리하도록 한다.<br>(4) 대법원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미지급 이월금 225억 6,600만원을 국선변호인에게 조속히 지급하여 일반 국선변호인 보수 연체를 해소하고 향후 이러한 보수 연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br>(5)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서면 제출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 기본 보수액의 50%~80% 범위에서 보수를 감액 지급하도록 하는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추후 경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 정무위원회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Ⅰ. 개 관

## 1. 결산 개요

### 가. 총수입·총지출

2025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1억 6,600만원(59.5%)이 많은 4억 4,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6,300만원(442.7%)이 증가됨.[1)]

[2025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4회계연도 | | | | 2025회계연도 | | | | 전년대비 (D-B) |
|---|---|---|---|---|---|---|---|---|---|
| | 예산액 | | 결산 (B) | 예산대비 (B-A) | 예산액 | | 결산 (D) | 예산대비 (D-C) | |
| | 본예산 | 추경(A) | | | 본예산 | 추경(C) | | | |
| 예 산 | 23 | 23 | 82 | 59 | 279 | 279 | 445 | 166 | 363 |
| 총수입 | 23 | 23 | 82 | 59 | 279 | 279 | 445 | 166 | 363 |

문의 : 02-6788-5692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5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157억 6,500만원(△2.3%)이 적은 6,557억 1,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7억 8,100만원(3.3%)이 증가됨.

[2025회계연도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4회계연도 | | | | 2025회계연도 | | | | 전년대비 (D-B) |
|---|---|---|---|---|---|---|---|---|---|
| | 예산액 | | 결산 (B) | 예산대비 (B-A) | 예산액 | | 결산 (D) | 예산대비 (D-C) | |
| | 본예산 | 추경(A) | | | 본예산 | 추경(C) | | | |
| 예 산 | 660,550 | 660,550 | 634,934 | △25,616 | 671,480 | 671,480 | 655,715 | △15,765 | 20,781 |
| 총지출 | 660,550 | 660,550 | 634,934 | △25,616 | 671,480 | 671,480 | 655,715 | △15,765 | 20,781 |

## 나.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억 7,900만원으로, 4억 4,9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4억 4,500만원이 수납(수납률 99.1%)되고, 4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5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세입예산액 | | 이체등 증감액 (B) | 세입 예산현액 (A+B) | 징수 결정액 | 수납액 | 미수납액 | 불납 결손액 |
|---|---|---|---|---|---|---|---|---|
| | 본예산 | 추경 (A) | | | | | | |
| 일반회계 | 279 | 279 | - | 279 | 449 | 445 | 4 | -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 | - | - | - | - | - | - | - |
| - 투자계정 | - | - | - | - | - | - | - | - |
| 합 계 | 279 | 279 | - | 279 | 449 | 445 | 4 | - |

주) 총계 기준

2025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6,727억 9,600만원으로, 6,557억 1,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5%)되고 7억 1,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63억 7,2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세출예산액 | | 예산결정후증감액(B) | | | 세출 예산현액 (C=A+B)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 (A)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 | | |
| 일반회계 | 659,106 | 659,106 | 654 | 359<br>△359 | 663 | 660,422 | 643,805 | 710 | 15,907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12,374 | 12,374 | - | - | - | 12,374 | 11,910 | - | 464 |
| - 투자계정 | 12,374 | 12,374 | - | - | - | 12,374 | 11,910 | - | 464 |
| 합 계 | 671,480 | 671,480 | 654 | 359<br>△359 | 663 | 672,796 | 655,715 | 710 | 16,372 |

주) 총계 기준

## 다. 재무결산

2025회계연도 말 기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자산은 전년 대비 3억 8,100만원이 증가된 4,187억 2,200만원으로, 이는 금융자산이 2,600만원, 기타자산이 4억 6,600만원 각각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무형자산이 8억 7,400만원 증가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3억 1,400만원 감소된 15억 8,800만원으로 장기충당부채 3억 500만원의 감소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6억 9,500만원이 증가된 4,171억 3,400만원임.

2025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5,339억 3,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6억 6,200만원 증가되었으며, 재정운영결과는 6,639억 9,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4억 4,700만원 증가됨.

[2025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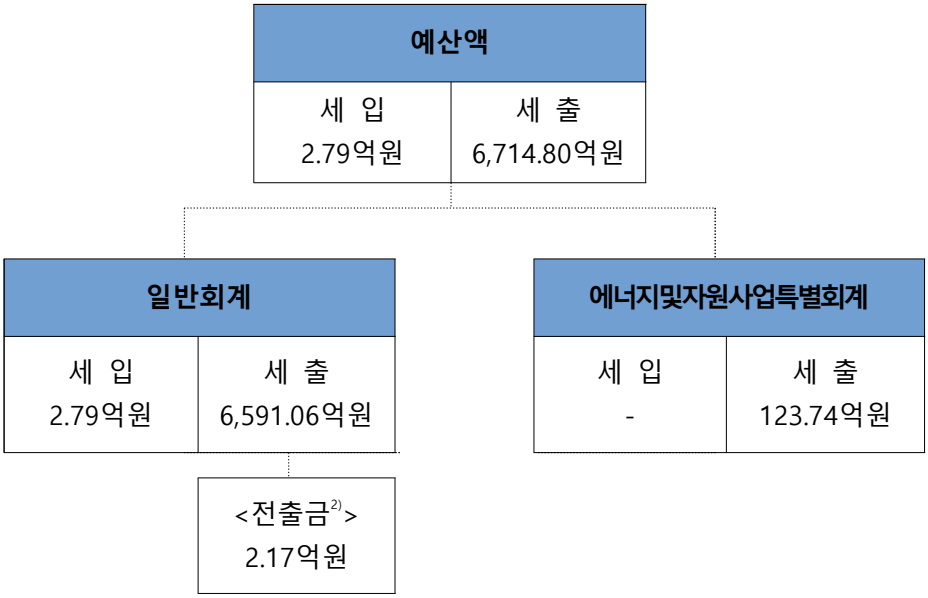
| 구 분 | | | 2025 (A) | 2024 (B) | 증 감 | |
|---|---|---|---|---|---|---|
| | | | | | 금액 (A-B) | 증가율 (A-B)/B |
| 재정 상태표 | 자 산 | | 418,722 | 418,341 | 381 | 0.1 |
| | | 금융자산 | 1,058 | 1,084 | △26 | △2.4 |
| | | 유·무형자산 | 416,949 | 416,075 | 874 | 0.2 |
| | | 기타자산 | 716 | 1,182 | △466 | △39.4 |
| | 부 채 | | 1,588 | 1,902 | △314 | △16.5 |
| | | 차입부채 | 52 | 62 | △10 | △16.1 |
| | | 충당부채 | 1,536 | 1,841 | △305 | △16.6 |
| | | 기타부채 | - | - | - | - |
| | 순자산 | | 417,134 | 416,438 | 696 | 0.2 |
| 재정 운영표 | 프로그램순원가 | | 533,938 | 516,276 | 17,662 | 3.4 |
| | 재정운영순원가 | | 663,994 | 639,547 | 24,447 | 3.8 |
| | 재정운영결과 | | 663,994 | 639,547 | 24,447 | 3.8 |

##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2025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재정은 일반회계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등 2개 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 · 기금 간 거래현황은 다음과 같음.

회계 ·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KDI 국제정책대학원 연금기금의 국가부담금 납부를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으로 2억 1,700만원이 전출되었음.

[2025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재정흐름도]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전출) KDI 국제정책대학원 연금기금 국가부담금 납부

##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지휘 · 감독, 정책 조정 등에 관해 국무총리를 보좌하고, 정부 정책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연구를 강화하는 것을 2025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총 76개 세부사업을 통해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및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청년정책을 총괄·조정하였으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 등을 수행하였음.

2025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조세심판원 운영에 있어 상임심판관 공석 장기화 등에 따라 조세심판 처리기간이 크게 증가하고 법정 처리기한(90일) 준수율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므로 국무조정실과 조세심판원은 인사공백 방지 및 사건 적체 해소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비상임심판관 운영관련 결정문 사전 공유 등 심판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사업 중 2025년 청년참여 거버넌스 운영 사업은 참여 규모가 제한적이고 재직청년 및 대학생 중심으로 운영된 측면이 있으므로, 청년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 대상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셋째,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중징계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제한 및 부당수령 성과급 환수 규정이 미비한 일부 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하여 퇴직자의 부정수급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등을 제·개정하는 한편, 능률성과급이 우수성과에 대한 유인과 저성과에 대한 차별화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성과에 기반한 차등보상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넷째, PBS 폐지로 출연연구기관의 연구 안정성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나, 정책연구 수요에 대한 대응 유인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정부 정책연구의 적시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26개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사후평가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Ⅱ. 사업별 검토

## 【총 괄】

## 1.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인력공백 등에 따른 심판사건 적체 및 처리기간 장기화 문제 개선 필요

### 가. 개 요

조세심판은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적 전치주의에 입각하여 운영되는 절차로, 「국세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조세심판원이 관련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음.[3)]

조세심판과 관련된 2025년도 예산사업은 ‘조세심판원 인건비(총액)’, ‘조세심판원 기본경비(총액)’, ‘조세심판 정보화(정보화)’ 등 5개로, 2025년도 예산현액 148억원 9,100만원 중 142억 8,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0%)되고 6억 500만원이 불용되었음.[4)]

[2025년도 조세심판 관련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조세심판원 인건비(총액) | 12,243 | 12,243 | - | - | 12,243 | 11,681 | - | 562 | 12,465 |
| 조세심판원 기본경비(총액) | 715 | 715 | - | 12<br>△14 | 713 | 687 | - | 26 | 777 |
| 조세심판원 기본경비 | 1,440 | 1,440 | 22 | 41<br>△38 | 1,465 | 1,454 | - | 11 | 1,560 |

3) 「국세기본법」
제67조(조세심판원) 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세심판원을 둔다.
② 조세심판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4) 일반회계-조세심판원 인건비(총액)(7001-102)(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기본경비(총액)(7011-202) 등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조세심판 정보화(정보화) | 303 | 303 | - | 5 | 308 | 305 | - | 3 | 303 |
|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강화 | 167 | 167 | - | 40<br>△45 | 162 | 159 | - | 3 | 117 |
| 계 | 14,868 | 14,868 | 22 | 98<br>△97 | 14,891 | 14,286 | | 605 | 15,222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조세심판은「국세기본법」제56조제2항에 따라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청구인이 행정소송 제기 이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임.

또한 동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조세심판의 결정은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이는 국민이 법원에서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을 다투기 이전에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하려는 심판제도의 취지를 반영한 것임.[5)]

## 나. 검토의견

**첫째, 국회의 반복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상임심판관 공석이 장기화되면서 조세심판 처리기간이 크게 증가하고 법정 처리기한(90일) 준수율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므로, 국무조정실과 조세심판원은 인사공백 방지 및 사건 적체 해소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조세심판은「국세기본법」제56조제2항에 따라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청구인이 행정소송 제기 이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서, 조세심판의 처리가 지연될 경우 행정소송 등 후속 권리구제 절차도 함께 지연될 수 있음.

---

5)「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행정소송법」제18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조(결정) 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그런데 조세심판의 결정은 심판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이 내려져야 함에도 처리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건수가 2024년 64.7%에서 2025년 87.2%로 증가하였고, 90일 미만은 2024년 35.4%에서 2025년 12.8%로 감소하여 신속한 처리를 통한 국민의 권익구제라는 목적달성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음.

[최근 5년간(2021-2025) 조세심판 처리 기간 현황]

(단위: 건, %, 일)

| 구분 | 90일 이내 | | 91~180일 | | 180일 초과 | | 총 건수 | 평균 처리일수 |
|---|---|---|---|---|---|---|---|---|
| | 건수 | 비율 | 건수 | 비율 | 건수 | 비율 | | |
| 2021 | 4,149 | 34.2 | 2,445 | 20.1 | 5,553 | 45.7 | 12,147 | 196 |
| 2022 | 656 | 5.6 | 5,156 | 44.6 | 5,753 | 49.7 | 11,565 | 234 |
| 2023 | 8,244 | 50.0 | 2,857 | 17.3 | 5,384 | 32.7 | 16,485 | 172 |
| **2024** | **3,596** | **35.4** | **2,818** | **27.7** | **3,764** | **37.0** | **10,178** | **185** |
| **2025** | **1,024** | **12.8** | **3,027** | **37.9** | **3,945** | **49.3** | **7,996** | **225** |

자료: 조세심판원

최근 조세심판 처리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원인으로 조세심판원은 동일쟁점 대량 사건 감소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주요 원인은 상임심판관 공석의 장기화에 따른 것으로 보임.

조세심판원은 8개 심판부를 각각 1명의 상임심판관[6]이 전담하는 구조인데, 상임심판관의 총 공백일수가 2023년 9일에서 2024년 327일, 2025년 600일로 급증함에 따라 사건 심리 및 결정이 지연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최근 5년간(2021-2025) 상임심판관 공백일수]

(단위: 일)

| 연도 | 연간 총근무일수 | 총공백일수 | 1인당 평균 공백일수 |
|---|---|---|---|
| 2021 | 2,920 (8명*365) | 66 | 8.3 |
| 2022 | 2,920 (8명*365) | 117 | 14.6 |
| **2023** | **2,920 (8명*365)** | **9** | **1.1** |
| **2024** | **2,920 (8명*365)** | **327** | **40.9** |
| **2025** | **2,920 (8명*365)** | **600** | **75** |

자료: 조세심판원

6) - 상임심판관: 총 8명 (각 심판부를 하나씩 전담)
- 비상임심판관: 36명(각 심판부별로 민간 전문가들이 배치되어 심의에 참여)
- 조사관실: 각 심판부의 사건 조사 및 검토를 지원하는 행정 조직

조사관실이 사건조사 및 심리를 지원하고는 있으나, 상임심판관은 심판부 운영과 사건 심리를 총괄하는 핵심 인력이라는 점에서 공석이 장기화될 경우 사건 심리 및 의결 일정 전반에 지연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최근 조세심판 처리기간 증가와 법정 처리기한 준수율 하락 역시 이러한 인력 공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국무조정실과 조세심판원은 상임심판관 임명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인사관리를 강화하고, 사건 적체 해소를 위한 업무처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세심판 제도의 신속한 권리구제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둘째, 조세심판원은 비상임심판관의 전문성 및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내·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상임심판관 운영제도를 재검토하고, 결정문 사전 공유 등 심판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조세심판원은 심판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비상임심판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8개 심판부마다 상임심판관 1명이 상시로 사건을 심리하고, 총 36명으로 구성된 비상임심판관(현재 교수 26명, 변호사 4명, 전직 공무원 6명으로 구성) 중 4명 가량을 각 심판부에 고정 배치하여 운영해 왔음.

[비상임심판관 제도 운영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 연도 | 2023 | 2024 | 2025 |
|---|---|---|---|
| 현원 | 35 | 36 | 36 |
| 자격기준 | (자격요건)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br>· 조세공무원으로서 4급 3년 이상 또는 5급 5년 이상<br>· 판사 · 검사 · 군법무관의 직에 10년 이상<br>·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또는 관세사의 직에 10년 이상<br>· 조세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 | |
| 임기 | 3년 | | |
| 평균보수 | 11.2 | 11.7 | 12.3 |
| 예산액 | 471 | 471 | 471 |

자료: 조세심판원

한편 조세심판원이 실시한 연구용역[7]에서는 비상임심판관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성 확보, 심판절차의 공정성 및 운영방식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

7)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5. 10.), 「조세심판원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연구」

특히 일부 내부 구성원들은 특정 비상임심판관이 동일 심판부에 장기간 고정 배치될 경우 심판부별 판단 경향이 고착화될 수 있고, 비상임심판관의 전문성 및 심판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고정 배치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책으로 전체 비상임심판관 인력(Pool)을 구성한 뒤, 회의가 열릴 때마다 무작위로 추출하여 배정하는 '비상임심판관 완전 풀(Pool)제'를 2026년 5월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비상임심판관 인력 확충방안 및 평가제 도입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의견임.

비상임심판관에 대한 평가제 도입은 심판의 질을 높이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나, 조세심판의 실질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상임심판관의 외부인 접촉 및 의결 내용 사전 유출 방지 등 청탁과 정보 유출을 차단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책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8)]

---

8)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공정거래위원회훈령 제389호)

제4조(접촉사실 보고)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외부인(이하 '보고대상 외부인'이라 한다)과 사무실내에서의 면담, 사무실외에서의 대면접촉, 또는 전화·이메일·문자메시지 등 통신수단을 통한 비대면 접촉(이하 '접촉'이라 한다)을 한 경우에는 접촉 후 5일내(공휴일 등 제외)에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의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에 근무하는 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는 자
2.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법무법인등에 근무하는 변호사, 회계사 등의 법률전문 조력자 중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을 수임하거나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정거래위원회 퇴직공무원으로서 제1호에 의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나 제2호에 의한 법무법인등에 재취업한 자

② 공무원 다수가 참여하는 동호회 등 친목을 위한 모임에 보고대상 외부인이 참여함에 따라 접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모임에 속한 공무원 1인이 대표하여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외부인과 다음 각 호의 접촉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경조사, 토론회, 세미나, 교육프로그램의 참석 등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의 대면접촉
2. 조사공문에 따라 해당 사업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면접촉
3. 공직메일이나 공무원의 사무실 전화를 통한 비대면접촉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외부인과 경조사 관련 접촉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2. 정부출연연구기관 공통: 능률성과급 제도 운영 개선 필요

### 가. 개 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26개 소속 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은 결산잉여금이 발생하면, 퇴직급여충당금에 선적립후 남은 결산잉여금의 50% 이상을 연구개발적립금으로 적립한 다음에 그 잔여재원을 능률성과급으로 사용할 수 있음.

능률성과급이란 연구 생산성 제고를 목적으로 인건비 예산 외에 초과수입 등에 따른 결산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 2025년 실적을 보면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20개 기관에서 153억 9,000만원을 지급하였음.

[2025년도 결산잉여금 처분 및 능률성과급 지급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결산잉여금 처분 | | | |
|---|---|---|---|---|
| | 퇴직급여충당금(A) | 연구개발적립금(B) | 능률성과급(C) | 계(A+B+C)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 | 433 | 169 | 602 |
| 국토연구원 | - | 1,517 | 1,373 | 2,890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 | 160 | 144 | 304 |
| 산업연구원 | - | 172 | - | 172 |
| 에너지경제연구원 | - | 982 | 606 | 1,588 |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 | 130 | - | 130 |
| 통일연구원 | - | 13 | - | 13 |
| 한국개발연구원 | - | 2,278 | 1,630 | 3,908 |
| KDI국제정책대학원 | - | 1,139 | 887 | 2,026 |
| 한국교육개발원 | - | 1,348 | 1,036 | 2,384 |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 | 4,189 | 2,433 | 6,622 |
| 한국교통연구원 | - | 3,668 | 1,467 | 5,135 |
| 한국노동연구원 | - | 15 | - | 15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 59 | - | 59 |
| 한국법제연구원 | - | 498 | 214 | 712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 405 | 348 | 753 |
| 육아정책연구소 | - | 451 | 298 | 749 |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 | 189 | 148 | 337 |

(단위: 백만원)

| 구 분 | 결산잉여금 처분 | | | |
|---|---|---|---|---|
| | 퇴직급여충당금(A) | 연구개발적립금(B) | 능률성과급(C) | 계(A+B+C)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 | - | - | - |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 | 875 | 790 | 1,665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 361 | 350 | 711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 | 3,060 | 1,476 | 4,536 |
| 한국행정연구원 | - | 325 | 192 | 517 |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 | 254 | 154 | 408 |
| 한국환경연구원 | - | 1,729 | 1,473 | 3,202 |
| 건축공간연구원 | - | 206 | 202 | 408 |
| 합계 | - | 24,458 | 15,390 | 39,848 |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나. 검토의견

**첫째,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중징계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제한 및 부당수령 성과급 환수 규정이 미비한 일부 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하여 퇴직자의 부정수급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제·개정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현재 26개 출연연 가운데 4개 기관(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9]은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황으로 일부 기관에서는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사례가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성과급의 환수 근거를 명시적으로 두고 있는 기관도 3개 기관(국토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통연구원)에 불과함.

이는 비위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제한 및 부당수령액 환수 조치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 사례와 비교할 때 개선이 필요한 사항임.[10]

---

9)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따르면, 2025년에 7개기관이 규정개정을 완료하여 총 22개 기관이 중징계 처분을 받는 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고 있음.

10)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환수 규정을 두고 있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 ⑪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출연연은 퇴직자의 부정수급액을 직접 환수할 수 있는 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속 출연연은 중징계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제한 및 부당수령액 환수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관리 및 제재조치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둘째, PBS 제도 폐지 이후 능률성과급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음에도 일부 출연연구기관에서는 특정 평가등급을 운영하지 않는 등 평가결과의 관대화 경향이 나타나거나, 평가결과가 중간등급에 과도하게 분포하는 집중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능률성과급이 우수성과에 대한 유인과 저성과에 대한 차별화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성과에 기반한 차등보상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능률성과급 제도는 객관적이고 엄정한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연구성과에 따라 차등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된 제도임.

특히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하여 PBS(Project-Based System) 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능률성과급은 연구성과와 보상을 연계하는 핵심적인 성과보상 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음.[11]

그러나 일부 출연연의 운영 실태를 보면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보상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교육개발원과 육아정책연구소는 전체 5개 등급(S·A·B·C·D) 중 최고등급인 S등급과 최하위등급인 D등급을 운영하지 않고 A·B·C 등급만 적용하고 있음.

이와 같이 평가등급 체계를 축소하여 운영할 경우 우수성과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저성과자에 대한 성과관리 기능이 제한될 우려가 있음.

11) 한편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026년부터 PBS가 폐지됨을 고려하여 연구기관 평가제도 개선·적용 후, 능률성과급을 폐지하고 가칭 '기관평가성과급' 제도를 도입(월봉의 100% 규모로 출연금 지원 필요)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는 의견임.

[3개 기관 능률성과급 지급 내역]

(단위: 명, 백만원)

| 기관 | 구분 | S등급 | | A등급 | | B등급 | | C등급 | | D등급 | | 합 계 | |
|---|---|---|---|---|---|---|---|---|---|---|---|---|---|
| | | '24 | '25 | '24 | '25 | '24 | '25 | '24 | '25 | '24 | '25 | '24 | '25 |
| 한국교육개발원 | 인원 | - | - | 41 | 41 | 371 | 384 | 38 | 33 | - | - | 450 | 458 |
| | 금액 | - | - | 109 | 102 | 853 | 861 | 88 | 73 | - | - | 1,050 | 1,036 |
| | 비중 | - | - | 9.2% | 9.0% | 82.4% | 83.8% | 8.4% | 7.2% | - | - | 100% | 100% |
| 육아정책연구소 | 인원 | - | - | 1 | 1 | 75 | 107 | 1 | 1 | - | - | 77 | 109 |
| | 금액 | - | - | 11 | 5 | 256 | 288 | 2 | 4 | - | - | 269 | 298 |
| | 비중 | - | - | 1.3% | 0.9% | 97.4% | 98.2% | 1.3% | 0.9% | - | - | 100% | 100%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인원 | 7 | 7 | 14 | 13 | 91 | 87 | 18 | 16 | - | - | 130 | 123 |
| | 금액 | 33 | 31 | 68 | 62 | 217 | 178 | 106 | 79 | - | - | 424 | 350 |
| | 비중 | 5.4% | 5.7% | 10.8% | 10.6% | 70% | 70.7% | 13.8% | 13.0% | - | - | 100% | 100% |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또한 한국교육개발원・육아정책연구소 및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평가결과가 특정 중간등급에 과도하게 편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육아정책연구소의 B등급 비중은 2024년 97.4%, 2025년 98.2%에 달하고 있으며, 한국교육개발원은 각각 82.4%, 83.8%,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70.0%, 70.7%로 나타났음. 이는 성과 수준에 따른 변별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능률성과급의 차등보상 기능이 사실상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더욱이 2024년과 2025년의 운영 현황을 비교한 결과 등급 분포의 개선이나 차등화 확대를 위한 뚜렷한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일부 기관에서는 특정 등급 편중 현상이 오히려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소속 출연연의 능률성과급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평가결과가 특정 등급에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등급 운영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성과 수준에 따른 차등보상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참고로「202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상 성과급 편성 세부 기준에서는 “등급별 인원(부서) 비율은 최고 등급은 10% 이상, 최저 등급 및 차하위 등급을 합하여 10% 이상으로 하고 특정 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3. 정부출연연구기관 공통: 반복적인 자체수입 과소계상 문제 개선 필요 등

## 가. 개 요

「2025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르면 자체수입 초과달성, 비용절감 등 기관의 경영개선으로 결산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에 선적립 후 남은 결산잉여금의 50% 이상을 연구개발적립금으로 적립한 다음에 그 잔여재원을 능률성과급으로 사용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각 출연연은 수탁용역 수입 등의 자체수입을 과소계상하여 결산잉여금의 재원으로 확보하려는 유인이 있으므로, 당초 수입계획이 적정하게 설정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26개 출연연 중 2025년도 결산결과 30억 이상의 초과수입(당초 수입계획 대비)을 달성한 기관은 한국개발연구원 등 6개 기관임.

[2025년도에 30억원이상 초과수입 발생한 기관 현황]

(단위: 백만원)

| 연구기관 | | 초과수입 | 초과수입 내역 | | | | |
|---|---|---|---|---|---|---|---|
| | | | 수탁용역 수입 | 정부대행 사업수입 | 이자수입 | 기타수입 | 정부출연금 |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2024년 | 25,883 | 22,928 | 2,928 | 422 | 269 | △735 |
| | 2025년 | 35,136 | 21,205 | 13,262 | 26 | 674 | △120 |
| 육아정책연구소 | 2024년 | 6,586 | 6,688 | - | 32 | - | △134 |
| | 2025년 | 16,377 | 16,449 | - | 21 | 2 | △95 |
| 한국교통연구원 | 2024년 | 7,198 | 7,553 | △433 | 137 | 101 | △303 |
| | 2025년 | 8,190 | 8,688 | △219 | △128 | △102 | △207 |
| 한국개발연구원 | 2024년 | 2,336 | 4,036 | - | 329 | 66 | △2,125 |
| | 2025년 | 6,631 | 7,435 | - | 270 | 144 | △1,251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24년 | 4,187 | 4,662 | △121 | 197 | 124 | △679 |
| | 2025년 | 4,938 | 5,487 | △54 | 149 | 14 | △662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24년 | 4,107 | 1,708 | - | 119 | 5,057 | △2,777 |
| | 2025년 | 3,575 | 2 | - | △106 | 4,822 | △1,144 |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위 6개 기관 중 2025년도에 초과수입금에서 수입대응지출금[12] 등을 제외한 결산잉여금이 30억원 이상 발생한 기관은 4개 기관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66억 2,200만원, 한국교통연구원 51억 3,400만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5억 3,600만원, 한국개발연구원 39억 800만원 등임.

[2025년도에 30억원이상 결산잉여금이 발생한 기관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 수 입 | | | 수입대응 지출 등(D) | 결산잉여금 (C-D) |
|---|---|---|---|---|---|---|
| | | 예산A) | 결산(B) | 초과수입 (C=B-A) | | |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2024년 | 167,606 | 193,490 | 25,883 | 20,075 | 5,808 |
| | 2025년 | 175,039 | 210,176 | 35,136 | 28,514 | 6,622 |
| 한국교통연구원 | 2024년 | 55,771 | 62,969 | 7,198 | 1,032 | 6,166 |
| | 2025년 | 58,565 | 66,755 | 8,190 | 3,056 | 5,134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24년 | 55,486 | 59,673 | 4,187 | 786 | 3,401 |
| | 2025년 | 55,314 | 60,252 | 4,938 | 402 | 4,536 |
| 한국개발연구원 | 2024년 | 84,652 | 86,988 | 2,336 | △532 | 2,868 |
| | 2025년 | 86,122 | 92,753 | 6,631 | 2,723 | 3,908 |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나. 검토의견

**첫째, 일부 출연연에서 2년 연속 대규모 초과수입과 결산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수탁수입예산이 실제 수입 규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반복적인 자체수입 과소계상 여부를 점검하고 최근 결산실적이 수탁수입예산에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편성기준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4년 및 2025년 결산 결과를 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육아정책연구소,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5개 기관은 2년 연속 30억원 이상의 초과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12) 사업수입이 예산을 초과할 때, 그 초과수입의 한도 내에서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대한 지출을 의미함.

[2024-2025 기관별 간접비 초과분 현황]

(단위: 백만원, %)

| 연구기관 | | 초과수입 | 수탁용역 수입 | | |
|---|---|---|---|---|---|
| | | | 합계 | 직접비(비율) | 간접비(비율) |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2024년 | 25,883 | 22,928 | 17,882(78.0%) | 5,046(22.0%) |
| | 2025년 | 35,136 | 21,205 | 15,392(72.6%) | 5,813(27.4%) |
| 육아정책연구소 | 2024년 | 6,586 | 9,409 | 7,776(82.6%) | 1,633(17.4%) |
| | 2025년 | 16,377 | 19,324 | 17,706(91.6%) | 1,618(8.4%) |
| 한국교통연구원 | 2024년 | 7,198 | 7,553 | 1,714(22.7%) | 5,839(77.3%) |
| | 2025년 | 8,190 | 8,688 | 3,453(39.7%) | 5,235(60.3%) |
| 한국개발연구원 | 2024년 | 2,336 | 4,036 | 1,510(37.4%) | 2,526(62.6%) |
| | 2025년 | 6,631 | 7,435 | 4,174(56.1%) | 3,261(43.9%)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24년 | 4,187 | 4,662 | 1,690(36.3%) | 2,972(63.7%) |
| | 2025년 | 4,938 | 5,487 | 1,126(20.5%) | 4,361(79.5%)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24년 | 4,107 | 1,708 | 1,128(66.0%) | 580(34.0%) |
| | 2025년 | 3,575 | 2 | 641(100%) | △639(0.0%) |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또한 2025년 결산 기준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66억 2,200만원), 한국교통연구원(51억 3,400만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45억 3,600만원), 한국개발연구원(39억 800만원) 등 4개 기관은 30억원 이상의 결산잉여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이들 기관은 교육평가, 유보통합[13], 교통·해양정책, 예비타당성조사 및 조세·재정 연구 등 정부 정책수요에 기반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수탁수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그럼에도 동일 기관에서 2년 연속 대규모 초과수입과 결산잉여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 예상 가능한 수입 규모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줌.

초과수입은 본래 기관이 예산 편성 당시 예상했던 수준을 초과하여 수탁사업을 추가로 수주하거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한 결과로 발생하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수입대응지출을 제외한 후 결산잉여금이 발생하면 성과급이나 연구개발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음.

13) 유보통합은 교육부 소관의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소관의 어린이집을 하나로 합치는 정책으로, 「정부조직법」 개정(2024년 6월 시행)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됨.

그런데 실제 수탁 가능 규모보다 낮은 수준으로 자체수입예산을 편성할 경우, 특별한 성과 개선이 없더라도 매년 초과수입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기관의 경영성과가 실제보다 높게 나타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특히 현행 「2025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은 수탁용역사업 수입을 전년도 결산액, 최근 3년간 결산액(가중평균액)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일부 기관에서는 동일한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반복적으로 대규모 초과수입이 발생하는 기관에 대하여 실제 수탁실적이 수탁수입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원인을 분석하고 편성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자체수입의 과소계상으로 인해 초과수입 실적과 간접비 규모, 성과급 재원 등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기관의 경영성과가 실제보다 높게 평가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둘째, 일부 출연연은 PBS 폐지에 따라 2026년부터 정부출연금이 크게 확대되는 가운데 향후에도 법령사업·중앙부처 교부금 사업 등 수탁총량 제한 예외사업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자체수입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기관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출연금 편성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2026년부터 PBS(Project-Based System)가 폐지되고 정부부처의 연구수요를 정부지원사업[14] 등 정부출연금을 통해 수행하는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출연연의 2026년 정부출연금이 2025년 대비 크게 증액되었음.[15]

한편 PBS 폐지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외의 과제(지방자치단체·민간 수탁과제)에 대해서는 수탁총량 제한(50%)이 도입되었으나, 기획예산처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법령사업·중앙부처 교부금 사업·연구회 및 연구기관 협동연구·KDI대학원 수탁학위과정 및 국제협력사업 등을 총량제한 예외사업으로 인정하고 있음.

---

14) 2026년 예산부터 PBS 폐지에 따라 개별 정부부처의 연구개발 위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출연연구기관에 일반사업으로서 ‘정부지원사업’이 신설됨. 주관부처가 필요한 연구개발의 수행을 해당 출연연구기관에 의뢰하며 해당 기관은 편성된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주관부처가 의뢰한 연구개발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구조임.

15) 2026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출연금 예산액은 2025년도 예산 5,453억 9,200만원에 비해 31.6% 증가한 7,175억 8,900만원임.

[2026년 PBS 폐지에 따른 수탁총량 제한 및 수탁총량 예외사업 인정사유]

| 수탁총량 제한(50%) | 수탁총량 예외사업 |
|---|---|
| (목적) 2026년 PBS 폐지 이후에는 정부가 인건비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함에 따라, 국가 중장기 연구 등 기관 본연의 목적사업에 집중하고 과도한 수탁과제 수행을 방지하기 위함. | (목적) 법령에 따른 의무사업, 정부 정책 수행에 필수적인 사업 및 연구기관 간 협력연구 등 공공성이 높은 사업이 수탁총량 제한으로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 (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수탁과제 외의 과제(예: 민간위탁과제, 지방자치단체 위탁과제)에 대해서는 각 출연연구기관의 2024회계연도 결산기준 수탁과제 수입금액의 50% 한도 내에서만 수행가능하도록 함. | (내용) 법령사업·중앙부처 교부금 사업·연구회 및 연구기관 협동연구·KDI대학원 수탁학위과정 및 국제협력사업 등을 총량제한 예외사업으로 인정 |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예를 들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행하는 국가 교육과정 연구, 교과서 검인정 사업, 대학수학능력시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및 교원임용시험 출제 사업 등은 법령 또는 교육부 교부금 사업으로서 수탁총량 제한 예외사업에 해당함.

이처럼 일부 기관은 PBS 폐지에 따라 정부지원사업 확대 등을 통해 출연금이 증액되는 한편, 수탁총량 제한에서도 예외를 적용받아 자체수입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반면, 다른 기관은 수탁총량 제한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을 수 있어 기관 간 재원 여건의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PBS 폐지에 따른 출연금 편성 과정에서 기관별 수탁사업 구조, 수탁총량 제한 예외사업 비중 및 자체수입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금 배분의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일반회계】

〈세 출〉

# 4.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사업: 청년참여 거버넌스 운영 사업의 참여대상 확대 등

## 가. 개 요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사업은 청년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청년정책의 분석 및 이행상황 점검·평가, 청년과의 소통 활성화 및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73억 8,700만원 중 69억 4,200만원이 집행(집행률 94.0%)되고 4억 4,500만원이 불용되었음.[16)]

[2025년도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 7,034 | 7,034 | 353 | - | 7,387 | 6,942 | - | 445 | 9,354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이 사업에서 2025년에 일반용역비(210-14)로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한 주요사업에는 ‘2025년 청년참여 거버넌스 운영 사업’ 등 5개 과제가 있음.

[2025년도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사업 일반용역비 주요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계약명 | 발주금액 | 낙찰액 | 계약업체 | 계약기간 | 비고 |
|---|---|---|---|---|---|
| 2025년 청년참여 거버넌스 운영 | 590 | 549 | 0000무브 | 25.03-25.12 | 제한경쟁 |
| 청년친화도시 운영 지원 | 150 | 125 | 청년재단 | 25.04-25.12 | 제한경쟁 |

자료: 국무조정실

16) 일반회계-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7035-316)(청년정책기획관실)

## 나. 검토의견

**첫째, 2025년 청년참여 거버넌스 운영 사업은 참여 규모가 제한적이고 재직청년 및 대학생 중심으로 운영된 측면이 있으므로, 청년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 대상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2025년 5억 4,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외부용역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총 6회 행사에 547명(중복 참여 포함)[17]이 참여하였고, 회당 평균 참여인원은 91명 수준으로,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에는 참여 규모가 제한적인 측면이 있음.

또한 참여자 구성 현황을 보면, 재직청년과 대학생의 비중이 높은 반면, 구직청년, 실직청년, 프리랜서, 자영업자, 농어촌 거주 청년, 청년창업인 등 다양한 청년 계층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참여자들이 단순한 행사 참석자가 아니라 청년정책을 직접 발굴·제안하는 정책 설계자로 활동하였고, 제안된 정책이 실제 정부 정책에 반영되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견임.

다만 청년층은 고용상태, 소득수준, 거주지역 및 가족환경 등에 따라 정책 수요가 크게 상이하며, 최근에는 취업준비, 주거, 창업, 지역정착, 돌봄 및 정신건강 등 다양한 정책 수요가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특정 계층 중심의 참여 구조만으로는 청년세대 전반의 정책 수요를 균형 있게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따라서 국무조정실은 청년참여 거버넌스 운영 과정에서 참여 대상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지역·계층·고용형태 등을 고려한 선발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청년정책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 수요가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둘째, 이 사업의 성과지표인 청년위원 위촉비율은 법정 의무비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목표치가 설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청년정책의 성과와 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국무조정실은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청년위원 위촉비율’을 설정하고, 2025년 목표치 5.0% 대비 실적 5.9%를 달성하여 목표 대비 118%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하면서, 동 지표가 청년정책의 수립·조정·집행 과

17) ① 수원총회 102명, ② 대전총회 126명, ③ 대구총회 95명, ④ 광주총회 60명, ⑤ 서울총회 82명, ⑥ 성과공유회 82명 = 총 547명

정에서 청년의 참여 수준을 객관적·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사업 목적에도 부합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사업 성과지표 현황]

| 성과지표 | 구분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
|---|---|---|---|---|---|---|---|---|
| 청년위원 위촉비율 (단위:%) | 목표 | 신규 | 신규 | 신규 | 5.0 | 5.5 | 청년위원 위촉 수/청년참여 관리대상 정부위 위촉위원 수 | 정부위원회 관련 통계 |
| | 실적 | 신규 | 신규 | 신규 | 5.9 | - | | |
| | 달성도 | - | - | - | 118.0 | - | | |

자료: 국무조정실

그러나 청년위원 위촉비율 준수는 「청년기본법」 제15조[18]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켜야 할 법정 의무사항임. 특히 2026년 4월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 위원회의 청년위원 위촉비율 기준은 당초 1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상향되었으며,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는 30% 이상의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국무조정실은 시행령 개정 전 의무 위촉비율이 10%인 상황에서 위원의 임기 보장 등을 이유로 성과지표 목표치를 5.0~5.5% 수준으로 설정한 것은 법정 의무 이행 수준보다 낮은 목표를 성과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그 적절성에 의문이 있음.

또한 청년위원 위촉비율은 청년의 정책 참여 기반을 보여주는 투입지표에 해당할 뿐, 청년참여 거버넌스 사업을 통해 어떠한 정책이 발굴·제안되었는지, 제안된 정책이 실제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또는 청년 참여가 정책 개선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청년참여 거버넌스 운영 사업은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정책 수요 발굴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임에도, 현재 성과지표는 개별 위원회의 청년 위촉 현황을 측정하고 있어 사업 목적과 성과지표 간 연계성이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18) 「청년기본법」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위원회(개별 사건을 다루거나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되는 등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되,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및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국무조정실은 청년 제안의 정책 반영률, 청년정책 발굴 실적, 참여 청년 만족도 등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와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중심으로 성과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셋째,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는 우수사례 발굴뿐만 아니라 정책 개선을 위한 환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평가 결과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기관별·분야별 성과를 객관적으로 비교·점검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국무조정실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매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있는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기관평가와 과제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중앙행정기관 평가 결과는 우수기관 및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공개되고 있으며, 성과가 미흡한 기관이나 분야에 대한 평가 결과와 개선 필요사항은 공개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가 기관의 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정책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임을 고려하여 우수사례뿐만 아니라 미흡한 분야와 개선 필요사항도 함께 공개하고, 기관별·분야별 성과 수준과 개선 필요사항을 보다 객관적으로 비교·점검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5.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사업: 규제개선 과제 이행실적 관리미흡

## 가. 개 요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사업은 덩어리규제 발굴 및 개선을 위한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37억 9,500만원 중 33억 1,700만원이 집행(집행률 87.4%)되고 4억 7,800만원이 불용되었음.[19)]

[2025년도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 3,795 | 3,795 | - | 60<br>△60 | 3,795 | 3,317 | - | 478 | -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이 사업은 「규제혁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819호, 2022. 6. 22. 제정)을 근거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음.

## 나. 검토의견

**첫째, 한시조직으로 운영되었던 규제혁신추진단이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의 이행현황은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하는 핵심 자료임에도, 추진단 폐지 이후 자료 관리와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하여 이행실적 관리에 공백이 발생한바, 자료관리 및 후속 점검체계를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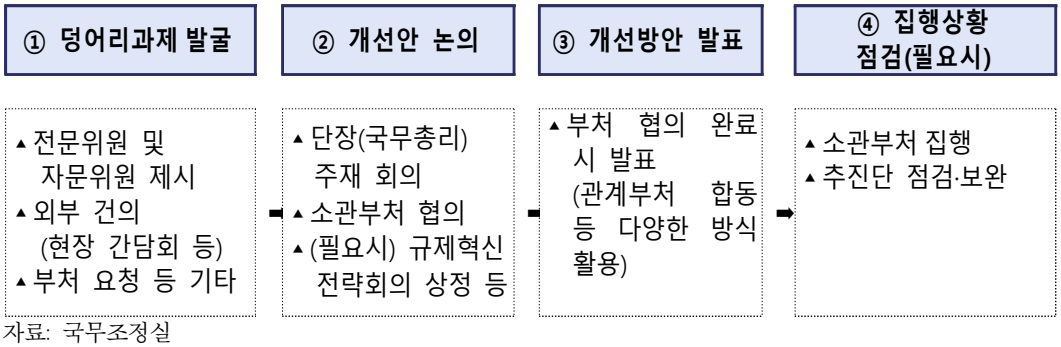
국무조정실은 2026년 5월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규제혁신추진단의 덩어리 규제 개선과제 이행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서, 그 사유로 2025년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추진단이 G드라이브에 보관하던 과제 목록 등 관련 자료가 소실되었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규제혁신추진단이 추진한 덩어리규제 개선과제는 관계부처 협의, 규제혁신 전략회의, 개선방안 발표 등을 거쳐 추진된 국가 정책과제로서, 관련 자료는 규제정

19) 일반회계(세출)-규제혁신추진단 운영(7033-305)(규제혁신추진단)

보화시스템, 온나라시스템, 전자결재 문서, 국가기록물 등 다양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었던 만큼 단순한 자료 소실을 이유로 장기간 이행현황을 관리하지 못한 것은 자료관리 및 인수인계가 미흡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규제혁신추진단 업무추진 프로세스]




자료: 국무조정실

이후 2026년 5월부터 국회가 규제혁신추진단의 덩어리규제 개선과제에 대한 사후관리 현황 제출을 요구하자, 국무조정실은 규제정보화시스템의 등록 과제와 추진단이 발표한 보도자료, 성과자료집 등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세부과제 목록을 재구성하고, 관계부처의 협조를 통해 이행현황을 확인한 후에야 관련 자료를 최근 국회에 제출하였음.

한편 규제혁신추진단이 발표한 덩어리규제 개선과제는 2022년 34건, 2023년 98건, 2024년 267건, 2025년 35건 등 총 434건이며, 이 중 2026년 5월 기준으로 133건(30.6%)이 아직 미이행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규제혁신추진단 덩어리규제 세부 개선과제 이행 현황]

(단위: 건)

| 과제개선 발표연도 | 개선과제 | 이행완료(비중) | 미이행(비중) |
|---|---|---|---|
| 2022년 | 34(100.0%) | 22(64.7%) | 12(35.3%) |
| 2023년 | 98(100.0%) | 74(75.5%) | 24(24.5%) |
| 2024년 | 267(100.0%) | 180(67.4%) | 87(32.6%) |
| 2025년 | 35(100.0%) | 25(71.4%) | 10(28.6%) |
| 계 | 434(100.0%) | 301(69.4%) | 133(30.6%) |

자료: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은 개선방안을 발표하는 것보다 실제 제도개선이 현장에서 이행되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행현황 관리자료의 인수인계 미흡과 사후관리 체계의 불명확성은 규제개혁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한계로 작용할 수 있음.

따라서 국무조정실은 규제정보화시스템, 온나라시스템, 전자결재 문서, 국가기록물 등 대체 자료를 활용하여 복원한 규제개선 과제의 이행현황을 추진단 폐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이행 과제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후속관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향후에는 규제정보화시스템을 중심으로 이행점검 체계를 일원화하여 한시조직으로 운영되었던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 등에서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 역시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둘째, 규제혁신추진단은 법률에 근거한 기존 규제개혁 추진체계와 별도로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설치·운영된 한시조직으로서, 4년간 약 161억원의 재정이 투입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사후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국무조정실은 2022년 「규제혁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에 따라 규제혁신추진단을 설치하여 2025년까지 운영하였음.

그러나 당시에도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한 규제개혁위원회가 상설기구로 운영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규제혁신추진단이 기존 규제개혁 체계와 비교하여 어떠한 추가적인 성과를 창출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함.

[2022년~2025년 규제혁신추진단 예산 및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 2022 | 2023 | 2024 | 2025 | 계 |
|---|---|---|---|---|---|
| 예산액 | 3,632(예비비) | 5,630 | 5,154 | 3,795 | 18,211 |
| 결산액 | 2,861 | 4,960 | 4,925 | 3,317 | 16,063 |
| 이월액 | 220 | 45 | - | - | - |

자료: 국무조정실

또한 추진단 운영을 위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예비비를 포함하여 약 161억원의 재정이 투입되었으나, 현재까지 규제개선 과제의 실제 이행 수준, 국민 및 기업의 규

제부담 완화 효과, 기존 규제개혁위원회와의 역할 차별성 및 기능 중복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사후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추진단이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 중 상당수가 미이행 상태로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한 과제 발굴 건수나 제도개선 실적뿐만 아니라 실제 이행 여부와 정책 효과까지 포함한 성과 분석이 필요함.

따라서 국무조정실은 규제혁신추진단의 운영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규제개선 과제의 이행실적, 국민 및 기업의 체감효과, 기존 규제개혁 체계와의 차별성, 예산 집행의 효율성 등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향후 규제개혁 추진체계 개선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 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업: PBS 폐지에 따른 소속 출연연에 대한 평가강화 필요 등

## 가. 개 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업은 경제・인문사회분야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2025년 예산현액 230억 8,100만원 중 223억 1,2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7%)되고, 2억 4,1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5억 2,800만원은 불용되었음.[20)]

내내역사업인 **‘평가사업’**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으로 소관 26개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0억 5,400만원 중 9억 9,300만원을 집행(집행률 94.2%)하고, 6,100만원을 이월하였음.

내내역사업인 **‘연구기관 인센티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관하는 평가사업 결과에 의해 선정된 우수기관을 대상으로 경상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8억 8,200만원 전액 집행하였음.

[2025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2,122 | 22,122 | 959 | - | 23,081 | 22,312 | 241 | 528 | 32,366 |
| 기관고유사업비 | 2,714 | 2,714 | 248 | - | 2,962 | 2,900 | 62 | - | 2,794 |
| 평가사업 | 1,000 | 1,000 | 54 | - | 1,054 | 993 | 61 | - | 1,080 |
| 연구기관 인센티브 | 882 | 882 | - | - | 882 | 882 | - | - | 882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0) 일반회계-경제・인문사회연구회(1531-301)(기획평가본부)

## 나. 검토의견

**첫째, PBS 폐지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 안정성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나, 정책연구 수요에 대한 대응 유인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정부 정책연구의 적시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26개 출연연에 대한 사후평가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PBS 제도는 연구과제 수주를 통해 연구인력의 인건비를 확보하는 구조로 운영되어 왔으나, 연구자들이 단기 수탁과제 확보에 과도하게 집중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따른 PBS 폐지는 연구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중장기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반면 연구과제 수주 실적을 통한 외부적 평가 기능이 약화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수요에 대한 대응성과 연구성과 활용도를 어떻게 유지·관리할 것인지가 새로운 과제로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점에서 PBS 폐지 이후에는 연구과제 수주 실적을 통한 시장기능 대신 연구회 차원의 기관평가와 성과관리가 출연연의 정책 대응성과 연구 품질을 점검하는 핵심 수단으로 기능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최근 4년간 기관평가 결과를 보면 대부분 기관이 B등급에 집중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B등급 비중은 약 70%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2024년에는 전체 기관의 73.1%가 B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최근 4년간(2022~2025) 평가등급별 기관 수 현황]

(단위: 개)

| 평가등급 | 2022년 | | 2023년 | | 2024년 | | 2025년 | |
|---|---|---|---|---|---|---|---|---|
| | 기관수 | 비중 | 기관수 | 비중 | 기관수 | 비중 | 기관수 | 비중 |
| S | - | - | - | - | - | - | - | - |
| A | 5 | 19.2% | 6 | 23.1% | 5 | 19.2% | 5 | 20.0% |
| B | 18 | 69.2% | 18 | 69.2% | 19 | 73.1% | 12 | 48.0% |
| C | 3 | 11.5% | 2 | 7.7% | 2 | 7.7% | 7 | 28.0% |
| D | - | - | - | - | - | - | 1 | 4.0% |
| 합계 | 26 | 100% | 26 | 100% | 26 | 100% | 25 | 100% |

주) 평가사업 수행연도 기준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처럼 평가결과가 특정 등급에 집중될 경우 기관 간 성과 차이를 평가결과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고,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와 미흡기관에 대한 개선 유인도 약화될 수 있음.

이에 대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연구기관 평가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연구과정 및 품질관리 성과지표 신설, 정부지원·수시사업 집행사항 점검 및 정책수요 대응 기능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견임.

다만 PBS 폐지 이후에는 기관평가가 출연연의 정책 대응성과 연구성과를 관리하는 핵심 수단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므로, 평가항목 확대에 그치지 않고 상대평가 도입, 등급구간 조정 등 기관 간 성과 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평가의 변별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정책현안 대응성, 연구성과 활용도, 수요부처 만족도 및 기관 간 협업 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평가결과가 연구기관의 성과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둘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출연연에 대한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수 중심으로 편중된 평가단 구성을 개선하고, 공직자 뿐만 아니라 산업계·민간 연구기관·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단을 보다 다양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음.**[21]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매년 소관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는 기관 운영과 성과관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러나 최근 4년간 평가단 구성 현황을 보면 교수 출신 비중이 2022년 91.7%, 2023년 및 2024년 각 82.9%, 2025년 86.0%에 달하는 등 특정 직군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산업계·시민사회·민간 전문가 등 기타 분야 전문가의 참여는 사실상 미미한 수준임.

이처럼 평가단 구성이 특정 분야에 편중될 경우 연구성과의 학술적 완성도에 대한 평가는 가능하더라도 정책 활용성, 현장 기여도, 수요자 만족도 등 다양한 관점에 대한 평가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21) 공무원은 정부부처 평가위원으로서 특정지표(사업효과 및 정책 기여도)에 참여 중임(연구분야 800점 중 45~55%, 기관별 2명).

[최근 4년간(2022~2025) 경인사 소속 출연연구기관 평가단 구성현황]

|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교수 | 91.7% (44명) | 82.9% (34명) | 82.9% (34명) | 86.0% (37명) |
| 연구자 | 8.3% (4명) | 14.6% (6명) | 14.6% (6명) | 11.6% (5명) |
| 기타 | 0% (0명) | 2.4% (1명) | 2.4% (1명) | 2.3% (1명) |
| 계 | 100% (48명) | 100% (41명) | 100% (41명) | 100% (43명) |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6개 출연연은 학술연구뿐 아니라 정부 정책수립 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정책현안 대응, 공공서비스 개선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기관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학계뿐 아니라 실제 정책 수요자와 연구성과 활용 주체의 시각도 균형 있게 반영될 필요가 있음.

특히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의 경우 정부 정책연구뿐 아니라 각 부처 산하 연구개발 전문기관[22]이 발주하는 연구개발사업도 출연연은 다수 수행하고 있음.

이에 따라 연구성과의 활용 가능성, 정책 현장 적용성, 연구개발사업 수행 역량 등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해당 정책수요자와 연구개발 현장에 대한 이해를 갖춘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국가 연구개발 분야 출연연을 관리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경우 평가단 구성에서 교수 비중이 44% 수준이며, 산업계 전문가 27.7%, 기타 전문가 28.3%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있음.

[최근 4년간(2022~2025)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평가단 구성현황]

|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교수(학계) | 40.0% (18명) | 33.0% (34명) | 45.7% (16명) | 44.0% (84명) |
| 산업계 | 37.8% (17명) | 34.0% (35명) | 22.9% (8명) | 27.7% (53명) |
| 기타(연구계,공공) | 22.2% (10명) | 33.0% (34명) | 31.4% (11명) | 28.3% (54명) |
| 계 | 100% (45명) | 100% (103명) | 100% (35명) | 100% (191명) |

자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22)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등의 R&D 전문기관이 발주한 사업

따라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평가의 객관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교수 중심의 평가단 구성에서 벗어나 민간 싱크탱크, 산업계, 공공기관, 시민사회 및 정책 수요기관 전문가 등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출연연의 연구 분야와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단 구성 단계에서부터 학문적 우수성 뿐만 아니라 정책 활용성, 현장 적합성 및 연구성과 확산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다원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7. 육아정책연구소 사업: 연구소 본연의 목적 및 기능에 부합하는 역할 수행 필요

## 가. 개 요

**‘육아정책연구소’** 사업은 육아정책개발 관련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유아교육과 보육 발전의 연구·시행 등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부설기관으로 설립된 육아정책연구소의 기관운영 경비를 출연하는 것으로, 2025년 예산현액 85억 300만원 중 84억 5,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4%)되고 4,800만원이 불용되었음.[23)]

[2025년도 육아정책연구소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32,289 | 32,289 | 360 | - | 32,649 | 32,422 | 132 | 95 | 39,149 |
| 육아정책연구소 | 8,503 | 8,503 | - | - | 8,503 | 8,455 | - | 48 | 9,571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첫째, 육아정책연구소의 자체수입이 유보통합[24)] 관련 수탁사업 확대에 따라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상당 부분이 수입대응지출 형태로 집행되고 있어, 출연연구기관 본연의 연구 기능보다 사업관리 및 예산집행 기능의 비중이 과도하게 확대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육아정책연구소의 2025년 자체수입은 193억 8,200만원으로 당초 예산 29억 1,000만원의 약 6.7배에 달하였으며, 정부출연금 84억 800만원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음.

23) 일반회계-육아정책연구소(1546-301)(경영지원실)

24) 유보통합은 교육부 소관의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소관의 어린이집을 하나로 합치는 정책으로,「정부조직법」개정(2024년 6월 시행)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됨.

이에 대해 연구소는 2023년 12월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보육 사무가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유보통합 관련 연구 및 사업이 본격화되었고, 이에 따라 수탁사업 규모가 2023년 20억 7,000만원에서 2025년 193억 8,200만원으로 증가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2025년도 육아정책연구소 수입·지출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수 입 | | | | 지 출 | | | |
|---|---|---|---|---|---|---|---|
| 구 분 | '25예산 (A) | '25결산 (B) | 초과수입 (B-A) | 구 분 | '25예산 (C) | '25결산 (D) | D-C |
| **정부출연금** | **8,503** | **8,408** | **△95** | 인 건 비 | 5,002 | 4,608 | △394 |
| **자 체 수 입** | **2,910** | **19,382** | **16,472** | 연구사업비 | 5,301 | 5,239 | △62 |
| 전기이월금 | 407 | 407 | 0 | 경상운영비 | 1,506 | 1,495 | △11 |
| 연구개발적립금 | 664 | 664 | 0 | 연구개발적립금 | 675 | 653 | △22 |
| | | | | **결산잉여금 처분** | **-** | **16,866** | **16,866** |
| | | | | - 능률성과급 | - | 298 | 298 |
| | | | | - 연구개발적립금 | - | 452 | 452 |
| | | | | **- 수입대응지출** | **-** | **15,723** | **15,723** |
| | | | | - 차기이월금 | - | 393 | 393 |
| **합 계** | **12,484** | **28,861** | **16,377** | **합 계** | **12,484** | **28,861** | **16,377** |

자료: 육아정책연구소

실제로 2025년 초과수입 가운데 157억 2,300만원은 수입대응지출로 집행되었으며, 이 중 전문가활용비로만 94억 7,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연구소는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수탁받은 유보통합 관련 사업을 수행하면서 외부기관에 용역을 발주하거나 어린이집 및 현장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물론 유보통합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연구소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되나, 현재의 사업 수행 방식은 연구소가 직접 조사·연구를 수행하기보다는 사업관리 및 단순 예산집행 기능을 수행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또한 연구소의 현원이 약 60명 수준[25]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전국 단위로 추진되는 다수의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25) 현원(연구직/비연구직) 비교: 육아정책연구소 60명(44/16), 한국법제연구원 128명(90/3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6명(156/5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19명(89/30) 등

특히 출연연구기관은 국가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대규모 수탁사업 확대가 연구역량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사업관리 기능 중심의 운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따라서 육아정책연구소는 수입대응지출 사업의 필요성과 수행방식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연구기관 본연의 연구·정책개발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사업관리 기능의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둘째, 육아정책연구소는 수탁사업 확대 과정에서 외부용역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사업관리 및 품질관리 체계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육아정책연구소는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수탁받은 사업 가운데 상당 부분을 외부용역을 통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예를 들어 충청남도교육청으로부터 수탁받은 「유보통합 보육교사 맞춤형 연수혁신 AI 서비스 구축」 사업은 총사업비가 4억 3,900만원에 달함에도 계약기간이 2025년 12월 1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약 50일[26]에 불과하였음.

[2025년도 유보통합 보육교사 맞춤형 연수혁신 AI 서비스 사업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계약액 | 지출 | 잔액 | 계약업체 | 계약기간 | 계약방법 (수의 등) |
|---|---|---|---|---|---|---|
| 유보통합 보육교사 맞춤형 연수혁신 **AI 서비스 개발** | 30 | 30 | - | ㈜00게이트 | 2025.11.04.~ 2025.11.30 | 수의 |
| 유보통합 보육교사 맞춤형 연수혁신 **AI 서비스 구축** | 439 | 439 | - | | 2025.12.11~ 2026.01.31 | 경쟁 |

자료: 육아정책연구소

26) 유보통합 보육교사 맞춤형 연수혁신 AI 서비스 구축 개발경과

| 구분 | 착수일 | 종료일 |
|---|---|---|
| 기획 및 요구사항 분석 | 25-12-11 | 25-12-24 |
| 시스템 설계 | 25-12-11 | 26-01-16 |
| 데이터 및 콘텐츠 준비 | 25-12-18 | 26-01-30 |
| AI 시스템 개발 | 25-12-29 | 26-01-24 |
| 챗봇 서비스 개발 | 25-12-29 | 26-01-24 |
| 테스트 및 검증 | 26-01-19 | 26-01-31 |

이에 대해 육아정책연구소는 당초 약 120일의 사업기간을 계획하였으나 국가기록원 화재에 따른 조달청 행정절차 지연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사업기간이 단축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리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구축사업에 앞서 2025년 11월 한달동안 AI 엔진 선정 및 시스템 인프라 분석 등을 위한 사전기획 성격의 개발용역(3,000만원)을 별도로 추진하였고, 구축사업에서는 기존 콘텐츠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핵심 기능 구현에 집중하였다는 의견임.

그러나 사전기획 성격의 개발 용역이 수의계약으로 추진되었고, 해당 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후속 구축사업의 경쟁입찰에서도 최종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음.

사전기획은 AI 엔진 선정・시스템 구조 설계・기술방식 결정 등 후속 구축사업의 핵심 기술요소를 구체화하는 과정인 만큼, 동일 업체가 이를 수행한 후 구축사업까지 수행하게 될 경우 경쟁입찰 과정에서 다른 참여업체와 비교하여 정보와 기술 이해 측면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특히 개발용역과 구축사업을 분리하여 발주한 것이 경쟁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특정 업체가 후속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기능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또한 행정안전부의 「공공정보화사업 단계별 사업관리 가이드」에서는 사업기간이 5개월 미만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의무감리 대상으로 적시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기간이 짧을수록 요구사항 분석・기능 구현・시험 및 품질검증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관리와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임.[27)]

더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부설기관인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2024년 공공부문 AI 도입현황 연구」(연구보고서 RE-188, 2025.4.)에서 공공기관 AI 구축사업은 1년 단위로 추진되더라도 조달절차 등 행정절차 기간을 제외하면 실제 구축기간이 약 6개월에 불과하여 AI 시스템을 충분히 개발・검증하기 어려우며, 많은 기관들이 구축기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

27) 행정안전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3.2), 「공공정보화사업 단계별 사업관리 가이드」, p.107.

- 감리 대상사업: 사업비가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전자정부사업 중 ①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여러 중앙행정기관등이 공동으로 구축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② 사업기간이 5개월 미만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4억 3,900만원 규모의 AI 구축사업을 약 50일의 계약기간 내에 수행한 것은 사전기획 용역이 선행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한 기능 구현과 시험·검증이 충분한 수준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의무감리 대상임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업 수행과 품질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음.

한편 육아정책연구소는 2025년 보건복지부의 ‘산후조리원 평가 및 컨설팅 사업’을 수행하면서도 만족도조사, 평가시스템 구축 및 컨설팅 등 주요 과업을 외부용역 방식으로 추진하였으며, 일부 사업은 계약 후 10여일 내외의 짧은 기간 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남.

[2025년도 산후조리원 평가 및 컨설팅 사업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외부용역명 | 계약액 | 지출 | 잔액 | 계약업체 | 계약기간 | 계약방법 (수의 등) |
|---|---|---|---|---|---|---|
| 산후조리원 만족도조사 및 산모인식 조사 | 15 | 15 | - | 0000연구원 | 2025.12.03.~ 2025.12.24 | 수의 |
| 산후조리원 평가시스템 디자인 및 웹 구축 | 20 | 20 | - | ㈜00 | 2025.12.10.~ 2025.12.21 | 수의 |
| 산후조리원 평가시스템 구축 컨설팅 | 29 | 29 | - | ㈜000프트 | 2025.12.10.~ 2025.12.21 | 수의 |

자료: 육아정책연구소

그 사유로 육아정책연구소는 보건복지부의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고시 확정(2025.12.2. 제정, 2026.1.1. 시행)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을 연도 내에 완료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단기간 내 추진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사업의 긴급성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연구용역이 충분한 개발·검증 과정을 거쳐 수행된 것인지, 사업 성과와 품질이 적절히 확보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따라서 육아정책연구소는 수탁사업의 외부용역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AI 시스템 구축 등과 같이 충분한 개발 및 검증이 필요한 사업은 적정한 사업기간을 확보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8.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사업: 기관 특성을 고려한 현행 관리·감독 체제 재검토 필요 등

## 가. 개 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사업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을 연구·개발하며 각종 교육평가를 연구·시행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기관운영 경비를 출연하는 것으로, 2025년 예산현액 260억 4,700만원 중 258억 5,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3%)되고, 7,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억 2,000만원이 불용되었음.[28)]

[2025년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26,021 | 26,021 | 26 | - | 26,047 | 25,854 | 73 | 120 | 38,483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첫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다른 출연연구기관과 달리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교원임용시험 출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교과용도서 검정 등 국가시험 및 평가·검정 업무를 주요 기능으로 수행하고 있음. 이들 업무는 일반적인 정책연구보다는 국가가 수행하는 시험·평가 관리 기능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현행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이 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부합하는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차원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5년 기준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수능 모의평가, 교원임용시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구축 등과 관련하여 약 1,050억원 규모의 사업을 수탁받았으며, 교육부로부터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교과용도서 및 AI 디지털교과서 검정 등 약 670억원 규모의 사업을 수탁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28) 일반회계-한국교육과정평가원(1541-301)(기획조정본부)

이들 사업은 일반적인 정책연구 과제와 달리 법령 또는 국가 교육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행되는 국가시험·평가·검정 업무의 성격이 강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관리,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및 교과용도서 검정 등은 국가 교육체계 운영에 필수적인 기능에 해당함.

실제로 평가원의 2025년 자체수입은 1,758억원으로 정부출연금(259억원)의 약 6.8배에 달하고 있으며, 자체수입 대부분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국가교육 정책집행 수요에 기반한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음.

[2025년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입·지출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수 입 | | | | 지 출 | | | |
|---|---|---|---|---|---|---|---|
| 구 분 | '25예산 (A) | '25결산 (B) | 초과 수입 (B-A) | 구 분 | '25예산 (C) | '25결산 (D) | D-C |
| **정부출연금** | **26,021** | **25,901** | **△120** | 인 건 비 | 32,395 | 30,874 | △1,521 |
| **자 체 수 입 (수탁연구)** | **140,640 (96,245)** | **175,807 (117,450)** | **35,167 (21,205)** | 연구사업비 | 133,597 | 133,498 | △99 |
| 전기이월금 | 4,801 | 4,801 | 0 | 경상운영비 | 3,120 | 3,099 | △21 |
| 연구개발적립금 | 3,577 | 3,667 | 90 | 연구개발적립금 | 5,927 | 3,913 | △2,014 |
| | | | | 결산잉여금 처분 | - | 38,792 | 38,792 |
| | | | | - 능률성과급 | - | 2,433 | 2,433 |
| | | | | - 연구개발적립 | - | 4,189 | 4,189 |
| | | | | - 수입대응지출 | - | 25,717 | 25,717 |
| | | | | - 차기이월금 | - | 6,453 | 6,453 |
| **합 계** | **175,039** | **210,176** | **35,137** | **합 계** | **175,039** | **210,176** | **35,137** |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물론 평가원은 교육과정 연구·개발, 국가교육위원회 지원 및 교육평가 연구 등 연구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기관의 예산 구조와 사업 내용을 보면 연구사업보다 국가시험 운영, 교육평가 및 교과용도서 검정 등 교육행정과 관련한 정책집행 기능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과 국가시험·평가·검정기관으로서의 기능 가운데 어느 역할이 기관 운영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지 점검하고, 평가원의 설립 목적·업무 특성·소관 연구기관 간 기능 조정 및 관리·감독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둘째,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정부대행사업의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ISP(정보화전략계획) 사업을 추진한 것은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 사업을 집행잔액으로 추진한 사례로서,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 측면에서 매우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2025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입지출명세서상 차기이월금 64억원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정부대행사업 집행잔액 29억 3,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음. 평가원은 이 중 2억 3,100만원을 임의로 활용하여 'AI 기반 수능 자동문항 생성기능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음.

[2025년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정부대행사업 수입·지출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비목 | 수입 | 지출 | 집행률(%) | 잔액 |
|---|---|---|---|---|
| 사업인건비 | 540 | 464 | 85.9 | 76 |
| 공공요금 | 138 | 73 | 52.9 | 65 |
| 수용비 | 4,092 | 3,430 | 83.8 | 662 |
|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8,069 | 7,943 | 98.4 | 126 |
| 여비 | 174 | 82 | 47.1 | 92 |
| 연구정보활동비 | 245 | 230 | 93.9 | 15 |
| 전문가활용비 | 11,001 | 10,673 | 97.0 | 328 |
| 회의비 | 518 | 473 | 91.3 | 45 |
|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29,859 | 28,334 | 94.9 | 1,525 |
| 인건비(수탁) | 2,628 | 2,626 | 99.9 | 2 |
| 간접비(수탁) | 303 | 303 | 100 | 0 |
| 계 (교부금+응시수수료) | 57,567 | 54,631 | - | 2,936 |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정보화전략계획(ISP)은 단순한 일반 운영비 집행이 아니라, 향후 대규모 예산 투입이 수반되는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필수 사전기획 단계임.

평가원 역시 본 ISP 수립 이후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하여 3개년 동안 후속 시스템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해당 사업은 향후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신규 대형 정보화 사업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사업 착수 단계부터 별도의 예산 편성 및 국회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타 사업의 집행잔액을 전용하여 추진한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평가원은 ISP 사업 추진에 앞서 교육부 사전검토 및 행정안전부 사전협의를 거쳤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기술적·행정적 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상의 적정성 문제와는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음.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상당한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국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할 필요가 있음.

【기　타】

# 9.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가. 개　요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해 시정요구 52건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시정 5건·주의 11건·제도개선 36건이었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 구분 | 변상 | 징계 | 시정 | 주의 | 제도개선 | (중복) | 계 |
|---|---|---|---|---|---|---|---|
| 결산 | - | - | 5 | 11 | 35 | - | 51 |
| 예비비 | - | - | - | - | 1 | - | 1 |
| 합계 | - | - | 5 | 11 | 36 | - | 52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시정요구사항 52건에 대해 44건을 조치완료(조치율 84.6%)하고 8건을 조치 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 구분 | 시정요구사항(a) | 조치완료(b) | 조치율(b/a) | 조치중(a-b) |
|---|---|---|---|---|
| 결산 | 51 | 43 | 84.3 | 8 |
| 예비비 | 1 | 1 | 100.0 | - |
| 합계 | 52 | 44 | 84.6 | 8 |

## 나. 검토의견

**조세심판 법정기한 내 처리율 제고가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법정기한인 90일을 초과하는 건수가 2024년 64.7%에서 2025년 87.2%로 오히려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무조정실과 조세심판원은 사건 적체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한 권리구제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조세심판의 결정은 심판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이 내려져야 함에도 처리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건수가 2024년의 경우 64.7%에 달하였음.

이에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과정에서 ‘국무조정실 및 조세심판원은 전담인력 확충, 전자심판제도 활성화, 절차 간소화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법정기한 내 처리율을 제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채택된 바 있음.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 조세심판원은 최근 동일쟁점 대량사건 감소에 따라 평균처리기간이 증가하였지만, 운영효율화 및 제도개선을 통해 3월 내 소액 장기미결사건 100% 처리, 1년 초과 미결사건 25% 감축 등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이를 ‘조치완료’로 표기하였음.

[조세심판 법정기한 내 처리율 제고 관련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시정요구유형 | 조치결과 | 조치상황 |
|---|---|---|---|---|
| (20) 조세심판 법정기한 내 처리율 제고 필요 | ㅇ [지적사항] 2024년도에 처리대상 건수 1만 3,356건 중 1만 178건을 처리하였는데, 이 중 64.7%에 해당하는 6,582건이 법정 처리기한(90일)을 도과하여 처리되었음<br><br>ㅇ [시정요구사항] 국무조정실 및 조세심판원은 전담인력 확충, 전자심판제도 활성화, 절차 간소화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법정기한 내 처리율을 제고할 것 | 제도개선 | ㅇ 조세심판은 헌법에 따라 사법절차가 준용되어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시 90일 이상 소요<br>- 최근 동일쟁점 대량사건 감소에 따라 평균처리기간 증가<br><br>ㅇ 위와 같은 상황에서 운영효율화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br>- 소액 및 장기미결사건 처리계획을 수립('26.2월)하여, 3월 내 소액 장기미결사건 100% 처리, 1년 초과 미결사건 25% 감축 | 조치완료 |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조치결과」, 2026.5.

그러나 2025년 결산결과 조세심판 처리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건수가 2024년 64.7%에서 2025년 87.2%로 오히려 22.5%p 증가하였고, 90일 미만은 2024년 35.4%에서 2025년 12.8%로 감소하여 신속한 처리를 통한 국민의 권익구제라는 목적달성에 차질을 초래하였음.

[최근 5년간(2021-2025) 조세심판 처리 기간 현황]

(단위: 건, %, 일)

| 구분 | 90일 이내 | | 91~180일 | | 180일 초과 | | 총 건수 | 평균 처리일수 |
|---|---|---|---|---|---|---|---|---|
| | 건수 | 비율 | 건수 | 비율 | 건수 | 비율 | | |
| 2021 | 4,149 | 34.2 | 2,445 | 20.1 | 5,553 | 45.7 | 12,147 | 196 |
| 2022 | 656 | 5.6 | 5,156 | 44.6 | 5,753 | 49.7 | 11,565 | 234 |
| 2023 | 8,244 | 50.0 | 2,857 | 17.3 | 5,384 | 32.7 | 16,485 | 172 |
| **2024** | **3,596** | **35.4** | **2,818** | **27.7** | **3,764** | **37.0** | **10,178** | **185** |
| **2025** | **1,024** | **12.8** | **3,027** | **37.9** | **3,945** | **49.3** | **7,996** | **225** |

자료: 조세심판원

최근 조세심판 처리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원인으로 조세심판원은 동일쟁점 대량 사건 감소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주요 원인은 상임심판관 공석의 장기화에 따른 것으로 보임.

조세심판원은 8개 심판부를 각각 1명의 상임심판관[29]이 전담하는 구조인데, 상임심판관의 총 공백일수가 2023년 9일에서 2024년 327일, 2025년 600일로 급증함에 따라 사건 심리 및 결정이 지연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국무조정실과 조세심판원은 상임심판관 임명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인사관리를 강화하고, 사건 적체 해소를 위한 업무처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세심판 제도의 신속한 권리구제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29) - 상임심판관: 총 8명 (각 심판부를 하나씩 전담)
- 비상임심판관: 36명(각 심판부별로 민간 전문가들이 배치되어 심의에 참여)
- 조사관실: 각 심판부의 사건 조사 및 검토를 지원하는 행정 조직

# 국가보훈부

# Ⅰ. 개 관

## 1. 결산 개요

### 가. 총수입·총지출

2025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1,361억 4,900만원(△63.1%)이 적은 796억 1,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8억 5,600만원(△4.6%)이 감소됨.[1)]

[2025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4회계연도 | | | | 2025회계연도 | | | | 전년대비 (D-B) |
|---|---|---|---|---|---|---|---|---|---|
| | 예산액 | | 결산 (B) | 예산대비 (B-A) | 예산액 | | 결산 (D) | 예산대비 (D-C) | |
| | 본예산 | 추경(A) | | | 본예산 | 추경(C) | | | |
| 예 산 | 10,027 | 10,027 | 6,156 | △3,871 | 10,082 | 10,082 | 4,517 | △5,565 | △1,639 |
| 기 금 | 201,828 | 201,828 | 77,314 | △124,514 | 205,681 | 205,681 | 75,097 | △130,584 | △2,217 |
| 총수입 | 211,855 | 211,855 | 83,470 | △128,385 | 215,763 | 215,763 | 79,614 | △136,149 | △3,856 |

문의: 02-6788-5696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5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소관 총지출은 예산(추경) 대비 47억 4,700만원(0.1%)이 많은 6조 5,351억 1,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50억 2,800만원(2.1%)이 증가됨.

[2025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4회계연도 | | | | 2025회계연도 | | | | 전년대비 (D-B) |
|---|---|---|---|---|---|---|---|---|---|
| | 예산액 | | 결산 (B) | 예산대비 (B-A) | 예산액 | | 결산 (D) | 예산대비 (D-C) | |
| | 본예산 | 추경(A) | | | 본예산 | 추경(C) | | | |
| 예 산 | 6,179,113 | 6,179,113 | 6,166,881 | △12,232 | 6,228,881 | 6,312,518 | 6,303,580 | △8,938 | 136,699 |
| 기 금 | 226,577 | 226,577 | 233,205 | 6,628 | 217,849 | 217,849 | 231,534 | 13,685 | △1,671 |
| 총지출 | 6,405,690 | 6,405,690 | 6,400,086 | △5,604 | 6,446,730 | 6,530,367 | 6,535,114 | 4,747 | 135,028 |

## 나.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00억 8,200만원으로, 87억 8,1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45억 1,700만원이 수납(수납률 51.4%)되고, 39억 5,100만원은 미수납되어 3억 1,3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세입예산액 | | 이체등 증감액 (B) | 세입 예산현액 (A+B) | 징수 결정액 | 수납액 | 미수 납액 | 불납 결손액 |
|---|---|---|---|---|---|---|---|---|
| | 본예산 | 추경 (A) | | | | | | |
| 일반회계 | 9,861 | 9,861 | - | 9,861 | 8,718 | 4,458 | 3,948 | 313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67 | 67 | - | 67 | 19 | 16 | 3 | - |
| - 투자계정 | 67 | 67 | - | 67 | 19 | 16 | 3 |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54 | 154 | - | 44 | 44 | 44 | - | - |
|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154 | 154 | - | 44 | 44 | 44 | - | - |
| 합 계 | 10,082 | 10,082 | - | 10,082 | 8,781 | 4,517 | 3,951 | 313 |

주) 총계 기준

2025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6조 3,231억 7,400만원으로, 6조 3,035억 8,0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7%)되고 113억 9,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82억 1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세출예산액 | | 예산결정후증감액(B) | | | 세출 예산현액 (C=A+B)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 (A)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 | | |
| 일반회계 | 6,216,643 | 6,300,280 | 10,656 | ±24,759 | - | 6,310,936 | 6,291,954 | 11,394 | 7,589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9,854 | 9,854 | - | - | - | 9,854 | 9,242 | - | 612 |
| - 투자계정 | 9,854 | 9,854 | - | - | - | 9,854 | 9,242 | - | 612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2,384 | 2,384 | - | - | - | 2,384 | 2,384 | - | - |
|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2,384 | 2,384 | - | - | - | 2,384 | 2,384 | - | - |
| 합 계 | 6,228,881 | 6,312,518 | 10,656 | ±24,759 | - | 6,323,174 | 6,303,580 | 11,394 | 8,201 |

주) 총계 기준

## 다. 기금 결산

2025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액은 8,452억 6,100만원으로, 5,062억 2,5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4,863억 4,600만원이 수납(수납률 96.1%)되고, 195억 4,300만원은 미수납, 3억 3,6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소관 기금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수입 계획액 | |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미수납액 | 불납결손액 |
|---|---|---|---|---|---|---|
| | 당초 | 수정 | | | | |
| 보훈기금 | 696,168 | 696,168 | 325,091 | 305,256 | 19,499 | 336 |
| 순국선열및애국지사사업기금 | 149,093 | 149,093 | 181,134 | 181,090 | 44 | 0 |
| 합 계 | 845,261 | 845,261 | 506,225 | 486,346 | 19,543 | 336 |

주 1) 총계 기준
2) 기금 내 여유자금운용은 불용액이 존재하지 않음

2025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현액은 8,452억 6,100만원으로, 4,863억 4,600만원이 지출(집행률 57.5%)되고 이월액은 없으며, 58억 2,8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소관 기금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지출 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B) | 계획현액 (A+B)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당초 | 수정(A) | | | | | |
| 보훈기금 | 696,168 | 696,168 | - | 696,168 | 305,256 | - | 5,114 |
|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 149,093 | 149,093 | - | 149,093 | 181,090 | - | 714 |
| 합 계 | 845,261 | 845,261 | - | 845,261 | 486,346 | - | 5,828 |

주) 총계 기준

## 라. 재무결산

2025회계연도 말 기준 국가보훈부 자산은 전년 대비 210억 4,500만원이 증가된 3조 1,219억 6,500만원으로, 이는 금융자산이 286억 4,300만원으로 크게 감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무형자산이 512억 5,100만원 증가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321억 5,000만원 증가된 897억 3,300만원으로 유동부채 308억 4,100만원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111억 300만원이 감소한 3조 322억 3,300만원임.

2025회계연도 국가보훈부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6조 3,307억 9,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12억 2,400만원 증가되었으며, 재정운영결과는 6조 4,359억 1,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81억 4,500만원 증가됨.

[2025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 | 2025 (A) | 2024 (B) | 증 감 | |
|---|---|---|---|---|---|---|
| | | | | | 금액 (A-B) | 증가율 (A-B)/B |
| 재정 상태표 | 자 산 | | 3,121,965 | 3,100,920 | 21,045 | 0.7 |
| | | 금융자산 | 349,062 | 377,705 | △28,643 | △7.6 |
| | | 유·무형자산 | 2,762,820 | 2,711,569 | 51,251 | 1.9 |
| | | 기타자산 | 10,083 | 11,645 | △1,562 | △13.4 |
| | 부 채 | | 89,733 | 57,583 | 32,150 | 55.8 |
| | | 유동부채 | 84,656 | 53,815 | 30,841 | 57.3 |
| | | 장기차입부채 | 3,496 | 3,019 | 477 | 15.8 |
| | | 장기충당부채 | 1,581 | 749 | 832 | 111.1 |
| | 순자산 | | 3,032,233 | 3,043,336 | △11,103 | △0.4 |
| 재정 운영표 | 프로그램순원가 | | 6,330,798 | 6,159,574 | 171,224 | 2.8 |
| | 재정운영순원가 | | 6,460,779 | 6,296,265 | 164,514 | 2.6 |
| | 재정운영결과 | | 6,435,916 | 6,267,771 | 168,145 | 2.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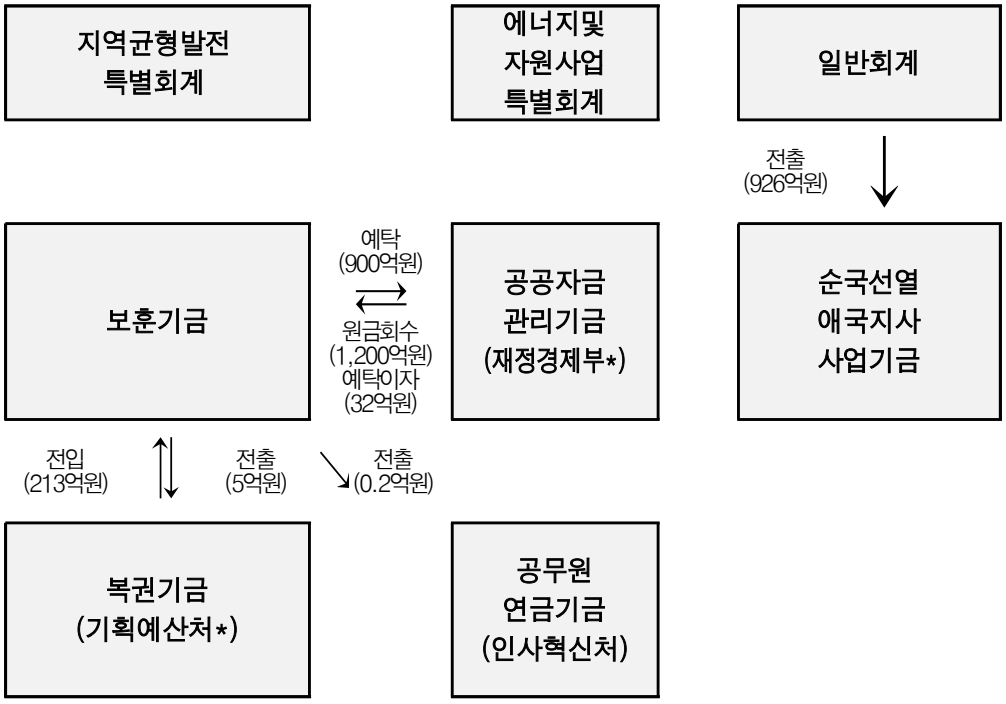
##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2025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소관 재정은 일반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3개 회계와 보훈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등 2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거래현황은 다음과 같음.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으로 926억원이 전출되었음.

다음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보훈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900억원이 예탁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보훈기금으로 1,200억원의 예탁금과 32억원의 예탁이자가 상환되었음.

[2025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재정흐름도]




주) 총계기준 / * '26.1.2일자로 변경(전 기획재정부)

##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국가보훈부는 특별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으로 국가유공자 등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일상 속에 보훈의 가치를 확산하는 보훈문화사업 추진을 2025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며, 총 137개 세부사업에서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훈급여금 인상, 보훈의료·요양서비스 개선으로 국가유공자 삶의 질 제고, 국립묘지 조성·확충, 제대군인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지원 강화, 숭고한 정신을 기억·계승하는 보훈문화 조성 등을 수행하였음.

2025년도 국가보훈부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자체수입 비중 감소, 부채비율 상승, 진료비 미지급금 및 금융기관 차입 발생 등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으므로, 보훈병원 기능분담과 비용구조 개선을 포함한 중장기 재무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가보훈부는 88골프장을 지속 운영하기로 결정한 만큼, 노후시설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시설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운영수입 확대 방안을 강구하여 보훈기금의 안정적인 자체수입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셋째,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선, 지방보훈회관 건립, 보훈요양원 건립 등 시설·보조사업에서 실집행 부진과 이월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사업 추진단계와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 및 보조금 교부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넷째, 제대군인의료지원, 교통시설 이용지원, 고엽제환자검진 등 수요 기반 사업은 실제 이용실적과 외부 환경 변화를 반영한 산정·정산·검진체계를 마련하여 예산 추계의 정확성과 사업관리의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다섯째, 국가유공자 등 대부관리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차보전금리가 과도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계약금리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융자사업 예산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고정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Ⅱ. 사업별 검토

## 【총 괄】

## 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자체수입 확대 등 재무구조 개선 필요

### 가. 개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 이라 함)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진료와 중상이자에 대한 재활 등을 수행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중앙·부산·광주·대구·대전·인천 등 6개 보훈병원과 복지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음. 공단은 보훈병원 운영을 통해 국비환자와 일반환자에 대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가보훈부는 공단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고 있음.

2025년도 국가보훈부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지원 일반회계 사업은 고엽제환자검진, 보훈병원진료, 위탁병원진료, 보철구 지급, 제대군인의료지원, 종합재활체육시설 관리운영,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선, 보훈병원 의료환경 개선 및 보훈문화조성 등 9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5년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지원 일반회계 사업은 예산현액 7,495억 1,5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

[국가보훈부의 2025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지원 일반회계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5년 | | | | | | | | | 2026년 예산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차년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고엽제환자검진 | 2,664 | 2,664 | - | △500 | - | 2,164 | 2,164 | - | - | 2,409 |
| 보훈병원진료 | 392,296 | 442,138 | - | - | - | 442,138 | 442,138 | - | - | 450,483 |
| 위탁병원진료 | 249,113 | 283,686 | - | - | - | 283,686 | 283,686 | - | - | 269,486 |
| 보철구 지급 | 5,845 | 5,845 | - | - | - | 5,845 | 5,845 | - | - | 5,845 |
| 제대군인의료지원 | 2,365 | 2,365 | - | 4,190 | - | 6,555 | 6,555 | - | - | 2,301 |
| 종합재활체육시설 관리운영 | 2,678 | 2,678 | - | - | - | 2,678 | 2,678 | - | - | 3,211 |
|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선 | 4,490 | 4,490 | | △4,190 | - | 300 | 300 | - | - | 6,221 |
| 보훈병원 의료환경 개선 | 1,068 | 1,068 | - | - | - | 1,068 | 1,068 | - | - | 9,332 |
| 보훈문화조성 | 5,096 | 5,096 | - | - | - | 5,096 | 5,096 | - | - | 4,374 |
| 계 | 665,600 | 750,015 | - | △500 | - | 749,515 | 749,515 | - | - | 753,662 |

2025년도 국가보훈부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지원 보훈기금 사업은 중상이자보조기기지급과 보훈요양 및 양로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5년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지원 보훈기금 사업은 계획현액 117억 7,400만원 중 117억 4,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8%)되고, 2,9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발생하지 않았음.

[국가보훈부의 2025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지원 보훈기금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2026년도 계획액 |
|---|---|---|---|---|---|---|---|---|
| | 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 | 계획현액 (B) | 집행액 (C) | 다음연도 이월액 (D) | 불용액 (E) | |
| | 당초 | 수정(A) | | | | | | |
| 중상이자보조기기지급 | 2,228 | 2,228 | - | 2,228 | 2,228 | - | - | 2,472 |
| 보훈요양 및 양로지원 | 8,372 | 9,546 | - | 9,546 | 9,517 | - | 29 | 8,623 |
| 계 | 10,600 | 11,774 | - | 11,774 | 11,745 | - | 29 | 11,095 |

자료: 국가보훈부

## 나. 검토의견

**첫째, 공단은 자체수입 비중이 감소하고 영업손실이 지속되는 가운데 진료비 등 미지급금이 누적되고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운영재원을 보완하고 있으므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미지급금·차입금의 단계적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공단은 국가유공자 진료와 보훈요양 등 공공성이 높은 정책서비스를 주로 수행하고 있어 수익사업형 공공기관에 비해 자체수입 기반이 제한적인 측면이 있음.

최근 5년간 공단의 재무구조 현황을 보면, 자체수입 비중은 2021년 7.3%에서 2025년 3.0%로 감소한 반면, 자기자본 대비 부채총액을 의미하는 부채비율은 같은 기간 33%에서 391%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주요 재무상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자체수입 | 88,717 | 98,620 | 51,907 | 63,202 | 47,057 |
| 자체수입비중 | 7.3 | 8.2 | 4.0 | 4.3 | 3.0 |
| 부채비율<br>(부채총액/<br>자기자본) | 32.9 | 32.2 | 66.7 | 183.1 | 390.7 |
| 차입금 | - | - | - | 87,405 | 65,000 |
| 진료비<br>미지급금 | 33,809 | 35,086 | 67,461 | 63,246 | 89,527 |

주) 진료비 미지급금은 외상매입금, 재료비, 위탁진료비 등 공단 발생 미지급금을 포함함
자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특히 진료비 미지급금은 2024년 632억 4,600만원에서 2025년 895억 2,700만원으로 262억 8,100만원 증가하였으며, 보훈병원 미지급금은 540억원, 위탁병원 미지급금은 354억원이 발생함.

공단은 부족한 운영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2024년 874억 500만원, 2025년 650억원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하였고, 차년도에 국가보훈부로부터 진료보상금을 수령하고 이를 상환하는 구조임. 이러한 민간은행 차입을 통한 재원 마련은 부채의 누적 및 이자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최근 5년간 공단의 운영현황을 보면, 의료 관련 수익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인건비와 재료비 및 위탁진료비 등 주요 비용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공단의 비용 부담이 누적되고 있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영업수익과 비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영업수익 계 | 997,855 | 977,714 | 1,080,895 | 1,150,366 | 1,293,379 |
| 국비환자진료수익 | 703,948 | 695,900 | 781,054 | 822,099 | 887,833 |
| 일반환자진료수익 | 291,755 | 279,662 | 297,458 | 325,884 | 403,163 |
| 위탁병원관리수익 | 2,152 | 2,152 | 2,383 | 2,383 | 2,383 |
| 영업비용 계 | 1,052,031 | 1,063,041 | 1,132,292 | 1,213,188 | 1,315,267 |
| 재료비 | 165,839 | 163,912 | 187,620 | 201,883 | 224,020 |
| 인건비 | 402,986 | 409,773 | 427,460 | 471,017 | 516,030 |
| 위탁진료비 | 339,425 | 339,041 | 365,185 | 381,114 | 411,473 |
| 기타경비 | 143,781 | 150,315 | 152,027 | 159,174 | 163,744 |
| 영업손익 | △54,176 | △85,327 | △51,397 | △62,822 | △21,888 |

자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최근 5년간 공단의 영업수익은 2021년 9,978억 5,500만원에서 2025년 1조 2,933억 7,90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영업비용도 같은 기간 1조 520억 3,100만원에서 1조 3,152억 6,700만원으로 증가하여 매년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영업손실의 누적은 전년대비 병상가동률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전인 2017년·2018년의 90% 수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임. 병상가동률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할 경우 병원 운영에 필요한 고정비용은 계속해서 지출되는 데에 반해 수익 확보에는 한계가 발생할 수 있음.

[코로나19 전후의 병상가동률]

(단위: %)

| 구분 | 코로나19 이전 | | | 코로나19 이후 | | |
|---|---|---|---|---|---|---|
| 병상가동률 | 2017 | 2018 | 2019 | 2023 | 2024 | 2025 |
| | 90 | 90 | 88 | 79 | 78 | 82 |

자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둘째, 전국의 보훈병원별 병상가동률과 진료 대기일수 등에 상당한 편차가 나타나고 있어, 병원 간 기능분담이 지역별 의료수요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2025년 보훈병원 전체 병상가동률은 82.4%이나, 부산·광주·대구보훈병원은 각각 88.7%, 88.1%, 87.4%인 반면 인천보훈병원은 73.8%, 중앙보훈병원[2]은 76.7%로 병원 간 병상가동률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6개 보훈병원 현황]

(단위: %, 병상, 명, 일)

| 구분 | 합계 | 중앙 | 부산 | 광주 | 대구 | 대전 | 인천 |
|---|---|---|---|---|---|---|---|
| 병상가동률 | 82.4 | 76.7 | 88.7 | 88.1 | 87.4 | 79.7 | 73.8 |
| 병상 규모 | 3,680 | 1,384 | 660 | 662 | 457 | 380 | 137 |
| 전문의 수 | 490 | 210 | 69 | 72 | 61 | 53 | 25 |
| 이용인원 | 4,065,479 | 1,531,736 | 684,009 | 663,217 | 555,583 | 429,368 | 201,566 |
| 초진 평균 대기일 수 | 3.9 | 9.8 | 0.5 | 1.3 | 3.8 | 0.2 | 1.3 |
| 입원 평균 대기일 수 | 15.7 | 15.7 | - | - | - | - | - |

인천보훈병원은 병상가동률이 가장 낮고 전문의 수도 25명으로 다른 보훈병원에 비해 적으며, 일부 필수 진료과목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는 중앙보훈병원과의 지리적 인접성으로 의료수요가 분산되는 측면과 함께, 전문인력 및 진료과목 부족으로 자체적인 의료수요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반면 중앙보훈병원은 정신과(66병상)와 재활센터(187병상) 등 특정 병상의 가동률이 낮아 전체 병상가동률은 76.7%로 나타나지만, 고난도·전문진료 수요가 집중되면서 초진까지 평균 9.8일, 입원까지 평균 15.7일이 소요되고 있음. 이는 동일 병원 내에서도 진료과목별 병상 활용도에 차이가 있고, 다른 지역 보훈병원이 분담할 수 있는 진료수요까지 중앙보훈병원에 집중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줌.

이처럼 일부 보훈병원은 병상과 전문인력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거나 필수 진료기능이 부족한 반면, 중앙보훈병원에는 특정 진료수요가 집중되고 있어 현재의 병원별 기능과 운영 규모가 실제 의료수요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국가보훈부와 공단은 병원별 진료권역, 의료수요, 진료과목별 병상가동률, 전문인력 및 진료 대기 현황을 분석하여 각 보훈병원의 핵심 기능과 적정 운영 규모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중앙보훈병원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위치해 있음.

**셋째, 공단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인건비 절감과 지출구조조정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일률적인 비용절감은 보훈병원의 필수 진료기능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재무개선 효과를 낼 수 있는 중장기 실행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병상가동률이 낮은 상황에서 일부 진료과목까지 운영하지 못한다면 병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시설 유지비 등 고정비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도 보훈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범위도 제한적이고 진료비 수입 감소로 재정적 손실이 누적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저조한 병상가동률과 재무구조에 대한 국회의 반복적인 지적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① 보훈 특화 서비스 고도화, ② 진료대상 확대, ③ 수익구조 개선, ④ 인건비 절감, ⑤ 지출구조조정 등을 포함한 장기적인 연착륙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그러나 공단의 인건비, 재료비, 위탁진료비 등 주요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의료인력 확보 및 필수 진료기능 유지에 필요한 비용도 확대되는 추세임. 이러한 상황에서 인건비 절감이나 지출구조조정이 보훈병원의 필수 의료기능 약화 또는 보훈대상자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비용절감 가능 영역과 공공의료 기능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비용을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종합하면, 공단의 재무구조 악화는 자체수입 감소와 비용 증가뿐 아니라 보훈병원 간 기능분담의 비효율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단순한 인건비 감축이나 지출 축소만으로는 근본적인 개선에 한계가 있음.

국가보훈부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보훈병원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병원별 진료권역과 의료수요, 수익·비용 구조 및 위탁병원과의 역할분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병원별 기능 조정, 자체수입 확대, 비용구조 개선, 진료보상금의 적기 지급 및 차입금 상환계획 등을 포함한 중장기 재무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 88관광개발: 88골프장 지속 운영 결정에 따른 시설관리 및 수입기반 강화 필요

## 가. 개요

88골프장은 국가유공자 복지사업 재원 마련을 위하여 보훈기금으로 조성된 국가보훈부 소유의 국유재산으로, 국가보훈부는 88관광개발㈜에 골프장 관리·운영을 위탁하고 있음. 88골프장의 입장료수입, 식음 판매 및 임대료 등 운영수입은 보훈기금 수입으로 계상되고, 골프장 시설투자 및 위탁운영비는 보훈기금 지출로 편성되고 있음.

2025년도 88관광개발 관련 보훈기금 수입을 보면, 기타재산이자외수입은 계획액 1,320억원 전액이 미수납되었고, 입장료수입은 계획액 246억 1,000만원 중 228억 2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기타잡수입은 계획액 104억 7,000만원 중 95억 6,600만원이 수납되었음.

한편 2025년도 88관광개발 관련 보훈기금 지출은 골프장 시설투자와 골프장 위탁운영으로 구성되어 있음. 골프장 시설투자는 계획현액 43억 7,70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고, 골프장 위탁운영도 계획현액 202억 3,30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음.

[2025년도 88관광개발 관련 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2026년도 계획액 |
|---|---|---|---|---|---|---|---|---|
| | 계획액 | | 징수결정액(B) | 수납액(C) | 미수납액 | 불납결손액 | 수납률(C/A) | |
| | 당초 | 수정(A) | | | | | | |
| 기타재산이자외수입 | 132,000 | 132,000 | - | - | - | - | - | 118,000 |
| 입장료수입 | 24,610 | 24,610 | 22,802 | 22,802 | - | - | 92.7 | 24,610 |
| 기타잡수입 | 10,470 | 10,470 | 9,566 | 9,566 | - | - | 91.4 | 10,470 |

주) 2026년도 계획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025년도 88관광개발 관련 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2026년도 계획액 |
|---|---|---|---|---|---|---|---|---|
| | 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 | 계획현액 (B) | 집행액 (C) | 다음연도 이월액 (D) | 불용액 (E) | |
| | 당초 | 수정(A) | | | | | | |
| 골프장 시설투자 | 4,077 | 4,377 | - | 4,377 | 4,377 | - | - | 4,427 |
| 골프장 위탁운영 | 17,643 | 20,233 | - | 20,233 | 20,233 | - | - | 18,358 |

주) 2026년도 계획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첫째, 장기간 88골프장의 매각 여부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시설 개선 투자가 지연되어 경쟁력이 저하되었으므로 계속 운영 결정에 맞추어 시설개선과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88골프장은 그동안 보훈기금의 주요 자체수입원으로 기능하여 왔으나 국가보훈부는 매각을 추진하여 왔으며, 골프장의 예상 매각 대금을 3개년으로 분할하여 매년 보훈기금의 기타재산이자외수입으로 계상하였음.

88골프장은 2008년 공공기관 선진화 방침에 따라 매각 대상으로 결정된 이후 장기간 매각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었음.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네 차례 매각공고가 모두 유찰되었고, 이후에도 매각이 실현되지 않았으며 국가보훈부는 2025년 매각 여부에 대한 편익비교분석 연구용역 등을 거쳐 88골프장을 매각하기보다는 계속 운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2008년 처음 매각 방침이 결정된 이후 장기간 실제 매각 여부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시설개선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운영 수익 증대를 통한 안정적인 세입 확보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특히 클럽하우스 등 부대시설 노후화와 이용자 민원, 서비스 품질 저하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입장료 조정이나 수익성 제고를 추진하는 데에도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매각 중단 이후 88골프장을 계속 운영하기로 한 정책방향에 맞추어 시설개선, 서비스 품질 제고, 입장료 현실화 및 부대수입 확대를 연계한 보훈기금 수입 증대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둘째, 연구용역상 88골프장 운영편익이 매각편익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운영편익의 상당 부분이 토지가치 상승분에 기초하고 있고 실제 내장객 수와 순이익은 감소하고 있으므로, 계속운영이 보훈기금의 안정적인 현금수입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 효율화와 함께 입장료 등 요금체계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88골프장 매각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골프장의 운영편익이 매각편익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운영편익의 상당 부분은 실제 영업이익보다는 장기간 보유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 예상분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이를 곧바로 매년 보훈기금으로 유입되는 현금수입 증가로 해석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88골프장의 계속 운영이 실질적으로 보훈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시설개선과 운영 효율화뿐 아니라, 이용객 수요와 유사 골프장 요금수준 등을 고려한 입장료 체계 조정 및 부대수입 확대 등 현금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익구조 개선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특히 최근 내장객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인건비, 시설유지비, 공공요금 등 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상승하고 있어, 현행 운영방식만으로는 보훈기금 증식이라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수준의 수익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울 우려가 있음. 실제로 내장객 수는 2022년 18만 7,005명에서 2025년 16만 5,391명으로 감소하였고, 같은 기간 순이익도 141억 1,300만원에서 111억 2,100만원으로 감소하였음.

[2022-2025년 88골프장 운영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 연 도 | 내장객 수 | 매출액 | 순이익 |
|---|---|---|---|
| 2022 | 187,005 | 33,853 | 14,113 |
| 2023 | 179,976 | 33,739 | 14,003 |
| 2024 | 167,923 | 33,269 | 12,582 |
| 2025 | 165,391 | 33,092 | 11,121 |

자료: 국가보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현재 88골프장의 입장료는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 현황을 보면, 88골프장은 회원 주중 6만 8,000원, 회원 주말 7만 3,000원, 비회원 주중 21만원, 비회원 주말 26만원으로, 조사대상 골프장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평균 | 뉴서울CC | 88골프장 |
|---|---|---|---|
| 회원 주중 | 74.8 | 70 | 68 |
| 회원 주말 | 83.2 | 75 | 73 |
| 비회원 주중 | 237.4 | 220 | 210 |
| 비회원 주말 | 299.7 | 300 | 260 |

주) 수도권 회원제 71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며, 뉴서울CC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임.

자료: 국가보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88골프장은 민간 영리 목적의 골프장이 아니지만 국가유공자 복지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장이라는 점에서,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안정적인 순수입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국가보훈부는 내장객 감소 원인과 비용 증가 요인을 분석하고, 노후 부대시설 개선을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와 함께 입장료 현실화를 수익성 개선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만 입장료 조정은 이용객 감소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분석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회원 입장료의 일률적인 인상보다는 비회원 입장료 조정 및 부대수입 확대 등을 함께 검토함으로써 이용객 부담과 보훈기금 수입 확대를 균형 있게 고려한 적정 요금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88골프장 계속 운영 결정에 맞추어 매각대금에 의존한 보훈기금 수입계획을 정비하고, 시설개선 투자와 수익구조 개선을 연계한 중장기 운영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동 계획에는 노후시설 개선의 우선순위와 투자규모, 내장객 감소 및 비용 증가 원인, 비회원 입장료의 단계적 조정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실제 운영실적을 매년 점검하여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함으로써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계속 운영이 보훈기금의 안정적인 현금수입 확보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일반회계】

〈세　출〉

## 3.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 사업: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 필요

### 가. 개　요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 사업은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직업 교육 및 수업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67억 9,100만원 중 166억 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9%)되고 1억 8,600만원이 불용되었음.[3)]

[2025년도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제대군인 사회복귀지원 | 17,310 | 17,310 | 88 | △607 | 16,791 | 16,605 | - | 186 | 15,233 |
| 제복근무자 감사문화 조성 | 3,400 | 3,400 | - | △2 | 3,398 | 3,395 | - | 3 | 1,700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 사업은 군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이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전직지원, 취업역량 강화, 직업교육, 수업료 지원 등을 실시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보훈부가 직접 수행하거나 각급 교육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음.

내역사업인 **‘제복근무자 감사문화 조성’**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제대군인의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제복근무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여 공익광고 집행 및 감사문화행사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3) 일반회계-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4160-390)(제대군인국)

## 나. 검토의견

**첫째, 제복근무자 감사문화 조성 사업은 제대군인이 아닌 제복근무자 전반을 대상으로 광고·홍보와 행사를 추진하고 있어, 제대군인의 취업과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제대군인 사회복귀지원 사업의 목적과 대상에 부합하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 사업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역량 강화와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내역사업인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 직업교육훈련 지원, 수업료 지원 및 정책개발·기반조성은 제대군인 본인과 그 자녀를 대상으로 진로상담, 취·창업 지원, 직업교육 및 학비 지원 등을 실시하는 반면, 제복근무자 감사문화 조성 사업은 군인·경찰·소방관·해양경찰관·교도관 등 제복근무자 전반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공익광고, 캠페인 및 초청행사 등을 추진하는 사업임.

또한 국가보훈부가 정의하는 제복근무자[4]는 현재 제복을 입고 국가수호와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해 복무하는 사람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군 복무를 마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중심으로 하는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 사업과 사업대상 및 내용이 상이한 측면이 있음.

[2025년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 내역사업명 | 주요 사업내용 | 예산현액 | 집행액 | 집행률 |
|---|---|---|---|---|
|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진로상담 및 취·창업 컨설팅 | 7,935 | 7,822 | 98.6 |
| 직업교육훈련 지원 |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전문기관 위탁교육 및 사이버교육 | 4,771 | 4,712 | 98.8 |
| 제대군인 수업료지원 |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자녀 대학·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 131 | 131 | 100.0 |
| 제대군인 지원정책 개발 및 기반조성 | 제대군인 정책개발 및 무료 법률구조 | 556 | 545 | 98.0 |
| 제복근무자 감사문화 조성 | 제복근무자 공익광고·캠페인 | 3,398 | 3,395 | 99.9 |
| 합계 | | 16,791 | 16,605 | 98.9 |

자료: 국가보훈부

제복근무자 감사문화 조성 사업은 2025년 33억 9,500만원이 집행되어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 사업 전체 집행액의 20.4%를 차지하였으나, 사업비의 대부분은 제복근무자 전반을 대상으로 한 공익광고, 캠페인, 초청행사 및 포상 등에 사용되었음.

4)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제복근무자는 제복을 입고 국가수호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복무하는 군인·경찰·소방관·해양경찰·교도관을 모두 포괄함.

특히 동 사업 중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과 관련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한 홍보 대행 용역비로 32억 8,900만원이 집행되어 동 사업 집행액의 96.9%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주로 방송 콘텐츠 제작과 각종 매체 광고 등에 사용되었음.

이외에도 ‘마이 히어로북’은 현직 제복근무자 50명을 대상으로 제작되었고, LCK 결승전에는 제복근무자 200명을 초청하였으며, 모범 제복근무자 포상식에서는 제복근무자 282명에게 포상을 실시하였음. 토크콘서트와 감사마라톤 역시 현직 제복근무자와 국민의 참여를 목적으로 함.

[제복근무자 감사문화조성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 행사명 | 집행액 |
|---|---|---|
| **감사행사** | 제복근무자 초청 토크콘서트 ‘리스펙트 유’ | 272 |
| **체육행사** | 제복근무자 감사마라톤 ‘리스펙트 런’ | 360 |
| **초청행사** | LCK 결승전 제복근무자 초청행사 | 150 |
| **출판·콘텐츠** | 제복근무자 50인을 대상으로 한 ‘마이 히어로북’ 제작·배포 | 633 |
| **포상** | 모범 제복근무자 포상식 | 525 |
| **홍보** |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송출, 방송 프로그램 기획·제작,<br>방송·옥외·온라인 광고 | 1,090 |
| **기타** | 제복근무자 감사문화 행사 추진 | 365 |
| **합계** | | 3,395 |

자료: 국가보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제복근무자에 대한 사회적 존중 문화 확산은 제대군인 정책의 기반 조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음. 그러나 사업의 직접적인 대상과 집행내용이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 사업의 수혜대상 및 목적과 일치하지 않고, 경찰관·소방관·해양경찰관·교도관 등에 대해서는 각각 별도의 소관기관이 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제복근무자 감사문화 조성 사업의 정책목적과 수혜대상, 국가보훈부의 수행 필요성을 재정립하고 이를 향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제복근무자 전반을 대상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목적과 대상에 부합하는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하고 관계기관과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 사업 내에서 계속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사업대상과 내용을 제대군인의 취업·사회정착에 직접 기여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하고, 연계성이 낮은 일반 광고·홍보 및 현직 제복근무자 대상 행사 예산은 조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동사업 관련하여 국가보훈부가 제시한 사업 성과지표도 광고 노출 및 제복근무자 인식 변화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예산 투입이 제대군인의 사회복귀에 미친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가보훈부가 제시한 동 사업의 주요 성과는 제복근무자에 대한 존경도와 신뢰도 증가, 유튜브 조회 수, 온라인 게시물 및 댓글 수, 광고제 수상 실적 등 홍보 효과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러한 성과는 제복근무자 예우 문화 확산의 정도를 평가하는 데에는 활용할 수 있으나, 제대군인의 취업률 제고, 전직 성공률 또는 사회복귀 지원이라는 세부사업의 본래 성과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보기 어려움.

[2024~2025년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 관련 인식조사 결과]

(단위 : %, %p)

| 조사대상 | 조사항목 | 2024 | 2025 | 전년대비 |
|---|---|---|---|---|
| 일반국민 | 제복근무자의 국가·사회 기여도 | 81.2 | 82.3 | 1.1 |
| 일반국민 | 제복근무자 존경도 | 79.1 | 80.4 | 1.3 |
| 일반국민 | 제복근무자 신뢰도 | 76.7 | 77.7 | 1.0 |
| 일반국민 | 제복근무자 감사·존중 문화 조성 필요성 | 74.3 | 68.6 | △5.7 |
| 제복근무자 | 제복근무자 감사·존중 문화 조성 필요성 | 90.5 | 85.4 | △5.1 |

자료: 국가보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가보훈부는 일반국민의 제복근무자에 대한 기여도·존경도 및 신뢰도 상승을 동 사업의 주요 성과로 제시하고 있으나 제복근무자에 대한 감사·존중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일반국민의 경우 2024년 74.3%에서 2025년 68.6%로 5.7%p 감소하였고, 제복근무자의 경우에도 5.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국가보훈부가 동 사업을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 사업 내에서 계속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단순한 광고 조회 수와 행사 참여인원을 넘어 제대군인 채용기업 증가, 제대군인에 대한 기업의 고용의향 및 제대군인의 취업·사회정착에 미친 효과 등 세부사업의 본래 목적과 연계된 성과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종합하면 국가보훈부는 제복근무자 감사문화 조성 사업의 정책목적과 수혜대상, 국가보훈부의 수행 필요성을 우선 재정립하고, 그 결과를 향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을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 사업 내에서 계속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사업대상과 내용을 제대군인의 취업·사회정착에 직접 기여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하고, 연계성이 낮은 일반 광고·홍보 및 현직 제복근무자 대상 행사 예산을 조정하는 한편, 제대군인 채용 확대와 취업·사회복귀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여 사업목적과 성과 간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4.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선 사업: 사업 지연을 고려한 예산 편성 및 실집행 관리 강화 필요

## 가. 개 요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선’** 사업은 개원 후 30년이 경과되어 건물 노후화, 진료공간 협소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 현재 대구보훈병원 서관동을 철거 후 증축하는 것으로, 2025년 예산현액 3억원 중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되었음.[5)]

[2025년도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선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선 | 4,490 | 4,490 | - | △4,190 | 300 | 300 | - | - | 6,221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선 사업은 노후화된 진료공간과 병동의 증·개축을 위하여 추진되는 계속사업으로, 대구보훈병원 서관동을 철거 후 지하 2층~지상 5층, 연면적 11,003㎡ 규모로 증축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시행하는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국가보훈부는 공단에 국고보조금을 교부하고 공단은 이를 재원으로 시설 증축을 추진하고 있음.

## 나. 검토의견

**첫째,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선 사업은 설계 지연으로 연내 착공이 어려워짐에 따라 공사비의 대부분을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고 2026년도에 관련 예산을 다시 편성하였으므로, 향후에는 설계 진행상황과 실제 착공 가능성 등 연도별 집행소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5) 일반회계-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선(2156-393)(보훈의료복지국)

동 사업 계획설계는 당초 2024년 3월 완료 예정이었으나 공사비 절감 검토와 층별 부서 배치 및 규모 결정 지연 등으로 2024년 5월 완료되었고, 중간설계는 2024년 7월 완료 예정이었으나 공사비가 당초 예산을 초과함에 따라 중간설계 수정과 예산 증액 협의가 필요해지면서 2025년 5월까지 지연되었음. 실시설계 역시 2024년 12월 완료 예정이었으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추가 실시와 설계기간 조정 등으로 2025년 10월에야 완료되었음.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선 사업 추진 현황]

| 구분 | 당초 계획 일정 | 실제 추진 현황 | 비고 |
|---|---|---|---|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 2023.6. | 2023.6. | |
| 설계공모 | 2023.11. | 2023.11. | |
| 계획설계 | 2024.3. | 2024.5. | 공사비 절감 검토 및 층별 부서 배치 확정과 규모 결정 지연되어 설계용역 일시 정지(2.28~5.20, 82일)로 약 3개월 지연 발생 |
| 중간설계 | 2024.7. | 2025.5. | 중간설계 결과 당초 예산 대비 약 70억원을 초과하여 공사비 절감을 위하여 중간설계 수정 및 예산 증액 요구(11.15). 사업비 증액 완료 전까지 중지 |
| 실시설계 | 2024.12. | 2025.10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추가실시, 설계기간 조정 등에 따라 약 10개월 지연 발생 |
| 공사 입찰 및 계약 | 2025.3. | 2026.4 | 조달청 검토 등 약 1개월 지연 발생 |
| 착공 | 2025.4. | 2026.5 | 공정표 징구 등 준비기일(20일) 경과 후 착공 |
| 준공 | 2027.3. | - | |
| 사용허가 및 시운전 등 | 2027.7. | - | |

자료: 국가보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가보훈부는 2025년도에 3년차 사업비 중 공사비 44억 9,000만원을 편성한 뒤, 착공이 어려워지자 전체 예산의 93.3%에 해당하는 41억 9,000만원을 제대군인의료지원 사업으로 전용(감)하는 등 대부분의 예산을 타 사업을 위한 전용 재원으로 활용하였음.[6)]

6) 2026년도 예산안에 지연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동사업 예산으로 62억 2,100만원이 다시 편성되었음.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선 사업 연도별 예산 및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 예산액 |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실집행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 | | | | | |
| 2023 | 350 | 350 | - | - | 350 | 87 [87] | 263 |
| 2024 | 1,130 | 1,130 | - | - | 1,130 | 1,127 [1,127] | 3 |
| 2025 | 4,490 | 4,490 | △4,190 | - | 300 | - | - |

자료: 국가보훈부

예산의 실제 집행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뒤, 연도 중 다른 사업의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규모 전용을 실시하고 차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이 반복될 경우, 국회가 심의·확정한 내용과 실제 집행 내역 간 괴리가 커지고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저해될 수 있음.

**둘째, 공사계약 체결과 착공이 다음 연도에 이루어질 예정이었음에도 2025년 12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공사비 3억원을 교부하여 전액 이월되었으므로, 향후에는 보조사업자의 계약 체결 및 연내 실집행 가능성을 확인한 후 보조금의 교부 시기와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국가보훈부는 실시설계 완료 후 입찰공고가 진행됨에 따라 공사비 3억원을 교부하였으나, 공사계약이 다음 연도에 체결됨에 따라 해당 금액이 실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동 사업은 실시설계가 2025년 10월에야 완료되었고, 공사 입찰 및 계약과 실제 착공은 다음 연도에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므로, 2025년 12월 교부 당시 연내 실집행 가능성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연내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해 검토할 것을 규정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집행으로 보임.[7)]

7)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보훈부는 향후 시설 증축 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보조사업의 예산을 편성할 때 설계, 인허가, 입찰, 계약, 착공 등 사업 단계별 추진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집행 가능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보조금 교부 시에는 단순히 실시설계 완료나 입찰공고 진행 여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공사계약 체결 가능성, 연내 착공 가능성 및 보조사업자 단계의 실집행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교부 시기와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5. 위탁병원 진료 사업: 지역별 이용실적 및 의료대상자를 고려한 위탁병원 지정 필요

## 가. 개 요

**‘위탁병원 진료’** 사업은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 또는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상이자 등의 근접 진료를 위해 위탁병원을 지정하여 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836억 8,600만원 중 2,836억 8,600만원이 집행(집행률 100%)되었음.[8)]

[2025년도 위탁병원 진료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위탁병원 진료 | 249,113 | 283,686 | - | - | 283,686 | 283,686 | - | - | 269,486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2025년 기준 위탁병원 개소당 이용인원과 위탁병원 급별 진료건수에 지역별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 지역별 실제 의료수요, 보훈병원과의 거리, 의료기관 종별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병원 지정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국가보훈부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강화를 위하여 위탁병원을 최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음. 연도별 위탁병원 지정 수를 보면 2021년 518개소에서 2022년 582개소, 2023년 702개소, 2024년 893개소로 증가하였고, 2025년에는 1,011개소까지 확대되었음. 같은 기간 위탁병원 진료인원도 2021년 362만 9천명에서 2024년 415만 5천명으로 증가하여, 위탁병원이 보훈의료 전달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

보훈병원은 중앙보훈병원과 부산·광주·대구·대전·인천보훈병원 등 일부 대도시권에 설치되어 있어, 보훈병원이 소재하지 않은 지역이나 보훈병원까지 이동거리가 긴 지역의 보훈대상자는 위탁병원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음.

8) 일반회계-위탁병원 진료(2150-366)(보훈의료복지국)

특히 국가유공상이자 등 보훈의료 대상자는 고령자가 많고 정기적인 외래진료, 검사 및 만성질환 관리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탁병원은 보훈병원의 지역적 한계를 보완하는 근접 의료망으로 기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는 매년 보훈의료복지의 확충을 위해 위탁병원 지정 수를 확대하고 있음.

[2025년 위탁병원 및 진료 인원 수 현황]

(단위: 개, 천명)

| 연도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위탁병원 지정 수 | 518 | 582 | 702 | 893 | 1,011 |
| 진료 인원 수 | 3,629 | 3,567 | 4,014 | 4,155 | 4,791 |

자료: 국가보훈부

2025년 기준 전국 위탁병원은 1,011개소로, 2021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인원 역시 479만 1,350명으로 2021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다만 위탁병원 수와 실제 이용수요 간 불균형이 지역별로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보훈병원 미소재 지역의 의료접근성과 수도권 등 수요 집중지역의 이용부담을 함께 고려하여 지역별 편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제주・울산・강원・경남 등은 보훈병원이 소재하지 않은 지역으로, 위탁병원이 보훈병원의 지역적 한계를 보완하는 주요 의료접근 수단으로 기능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제주와 울산은 위탁병원이 각각 20개소, 21개소에 불과한데도 2025년 이용인원이 각각 23만 7,983명, 15만 8,368명에 달하여 위탁병원 1개소당 이용인원이 각각 1만 1,899명, 7,541명으로 높게 나타났음.

강원, 경남, 전북, 경북 역시 보훈병원이 소재하지 않고 위탁병원 1개소당 이용인원이 전국 평균인 4,739명을 상회하고 있어, 단순 병원 수보다 실제 이동거리와 생활권, 산간・도서지역 등 지리적 여건을 반영한 접근성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볼 수 있음.

[2025년 지역별 위탁병원 이용 인원 및 병원 수]

(단위: 개, 명)

| 구분 | 보훈병원 소재여부 | 위탁병원 수 | 2025년 이용 인원 | 기관당 이용 인원 |
|---|---|---|---|---|
| 제주 | X | 20 | 237,983 | 11,899 |
| 울산 | X | 21 | 158,368 | 7,541 |
| 강원 | X | 69 | 477,939 | 6,927 |
| 경남 | X | 83 | 524,131 | 6,315 |
| 경기 | X | 156 | 950,435 | 6,093 |
| 광주 | O | 18 | 9,184 | 510 |
| 세종 | X | 8 | 6,833 | 854 |
| 전국 | - | 1,011 | 4,791,350 | 4,739 |

자료: 국가보훈부

반면 서울·인천 등 수도권은 대규모 보훈병원이 소재하고 있어 제주나 강원과 같은 의미의 보훈병원 접근성 취약지역은 아니지만, 이들 지역은 위탁의료대상자 규모 자체가 크거나, 위탁의료대상자 비율이 위탁병원 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음.

서울은 위탁의료대상자 수가 6만 7,857명으로 전국의 17.5%를 차지하나, 위탁병원 수는 146개소로 전국의 14.4% 수준이고, 인천도 위탁의료대상자 수는 2만 508명으로 전국의 5.3%를 차지하는 반면, 위탁병원 수는 38개소로 전국의 3.7%에 그치고 있음.

이는 보훈병원이 소재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위탁의료대상자 규모가 큰 경우에는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간 수요 분담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특히 경기는 위탁의료대상자수가 8만 8,955명으로 전체의 22.9%를 차지하나, 위탁병원 수는 156개소로 전체의 15.4% 수준에 그치고 있음. 경기는 관내 보훈병원이 소재하지 않지만 중앙보훈병원 등 수도권 보훈의료망과의 연계가 가능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보훈병원 소재 여부만으로 접근성 수준을 판단하기는 어려움.

다만 경기의 위탁의료대상자 비중이 가장 크고 실제 위탁병원 이용인원도 95만 435명으로 가장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도권 내 생활권별 위탁병원 분포와 이용 집중 여부를 별도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수도권 의료대상자 및 위탁병원 수 현황]

(단위: 명, 개, %)

| 지역 | 위탁의료 대상자 수 | 전국 대비 비율 | 위탁병원 수 | 전국 대비 비율 |
|---|---|---|---|---|
| 서울 | 67,857 | 17.5 | 146 | 14.4 |
| 경기 | 88,955 | 22.9 | 156 | 15.4 |
| 인천 | 20,508 | 5.3 | 38 | 3.7 |
| 전국 | 387,782 | 100.0 | 1,011 | 100.0 |

자료: 국가보훈부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위탁병원 지정 및 확대를 추진할 때 두 가지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보훈병원이 없고 위탁병원 1개소당 이용인원이 높은 제주, 울산, 강원, 경남 등은 고령 보훈대상자의 이동 부담과 지역 내 의료기관 접근성을 고려하여 위탁병원 추가 지정, 진료과목 보완 및 인접 지역 의료기관과의 연계 강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보훈병원이 소재한 대도시권이라 하더라도 위탁의료대상자 비율에 비해 위탁병원 수 비율이 낮은 지역은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간 기능 분담, 진료 대기, 생활권별 병원 분포 등을 점검하여 실제 의료수요에 맞는 위탁병원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위탁병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훈병원 미소재 여부만을 기준으로 접근성을 판단하거나, 위탁의료대상자 수만을 기준으로 병원 수를 배분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음. 국가보훈부는 시·군·구별 위탁의료대상자 수, 위탁병원 수, 병원 1개소당 이용인원 및 진료과목 등을 토대로 지역별 수요·공급 불균형을 파악하고, 생활권별 의료기관 분포와 교통 여건을 함께 고려하여 접근성 취약지역과 수요 집중지역에 위탁병원을 우선 지정할 필요가 있음.

# 6. 교통시설 이용지원 사업: 교통수단별 정산체계 개선 및 연례적인 미지급금 해소 필요

## 가. 개 요

**‘교통시설 이용지원’** 사업은 초고령 애국지사 및 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시설(민영버스, 고속철도, 내항여객선)의 무임 또는 할인 이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12억 6,200만원 중 112억 5,800만원이 집행(집행률 100.0%)되고 400만원이 불용되었음.[9)]

[2025년도 교통시설 이용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교통시설 이용지원 | 10,729 | 10,729 | 533 | - | 11,262 | 11,258 | - | 4 | 21,776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첫째, 시외·고속버스 이용지원은 실제 이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분기별 정액계약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용실적을 반영한 정산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가보훈부는 분기별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사전에 분기별 정액 계약을 체결하여 애국지사와 국가유공상이자 등의 시외·고속버스 교통시설 이용을 지원하고 있음. 2025년에는 분기별 3억 2,100만원씩 총 12억 8,400만원의 계약대금을 사전에 지급하였음.

9) 일반회계- 교통시설이용지원(2139-318)(보훈의료복지국)

[시외고속버스 이용지원 계약방식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 계약방식 | 계약금액 | 전년대비 증감률 | 계약금액 산출 방식 |
|---|---|---|---|---|
| 2021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정액 계약 (시내・농어촌・시외・고속) | 8,419 (1년 계약) | △12.3% | 예산액 기준 정액 계약 |
| 2022 | | 8,984 (1년 계약) | 6.7% | |
| 2023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정액 계약 (시외・고속) | 1,222 (1년 계약) | - | 전산망 집계 할인이용 평균액에 제3자 전산망 이용 터미널 미집계분, 간이정류장 현금승차 예상액 및 요금인상률 7.5% 반영 |
| 2024 | | 1,284 (반기별 642 계약) | 5.1% | 23년 추계액 1,222백만원 + 요금인상 5% 반영 |
| 2025 | | 1,284 (분기별 321 계약) | - | |

자료: 국가보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가보훈부는 매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터미널이 38개 있고 일부 구간에서는 현금 승차가 이뤄지고 있어 전체 이용인원과 횟수를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용실적 확인이 가능한 터미널의 이용횟수와 비율 등을 활용하여 계약금액을 정액으로 산정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교통시설 이용인원과 횟수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액계약 제도를 지속해서 운영할 경우, 실제 지원소요와 예산 지원 규모 간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음. 정액 지원 예산 대비 이용실적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의 부담이 증가하며, 이용실적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실제 소요보다 많은 예산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용실적의 정교한 추계 및 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 내 다른 교통시설인 시내버스, 고속철도 및 내항여객선 등은 실제 이용 실적을 집계하여 이를 근거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음을 고려했을 때, 중장기적으로 시외・고속버스의 경우에도 실제 이용실적에 기반한 정산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둘째, 시내버스 이용지원 사업은 민간 정산 주체에 대한 이용대금 미지급금이 연례적으로 발생 및 누적되고 있어, 실제 이용수요를 반영한 예산 편성과 미지급금 해소 방안 마련이 필요함.**

민영버스 이용지원은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신한카드사를 통해서 이용대금 전액을 사후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2023년 이후 실제 이용대금에 비하여 예산이 과소편성되어 연말 미지급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025년 말까지 누적된 미지급금은 156억 300만원에 이르고 있음.

[시내버스 요금 발생액 및 미지급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 요금 발생액 | 연도별 교부액 | 누적 미지급금 |
|---|---|---|---|
| 2023 | 11,154 | 7,137 | 4,017 |
| 2024 | 13,088 | 7,179 | 9,926 |
| 2025 | 12,867 | 7,190 | 15,603 |

자료: 국가보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현재 2026년 시내버스 요금 지원 관련 예산은 182억 4,700만원 편성되었고 이 중 149억 2,700만원을 활용하여 2023~2025년에 발생한 미지급금 상당 부분을 정산함에 따라 2026년 3월 말 기준 미지급금은 17억 400만원으로 감소하였음.

그러나 연간 시내버스 이용대금이 2023년 이후 매년 100억원을 초과하고 있으며 2026년도 사업 예산을 미지급금 정산에 상당 부분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남은 교부가능액인 16억 1,600만원으로는 2026회계연도 결산 시에도 상당한 규모의 미지급금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민간사업자가 국가를 대신하여 이용대금을 우선 부담하는 구조 하에서 예산 부족에 따라 미지급금이 누적될 경우 민간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재정운용의 경직성도 심화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예산 편성 단계에서 누적된 미지급금을 포함한 적정 소요가 반영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최근 시내버스 이용실적과 대상자 수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이미 발생한 미지급금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상환계획을 수립하는 등 연례적인 미지급금 발생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7. 고엽제환자검진 사업: 외부 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한 검진 관리 강화 필요

## 가. 개 요

**‘고엽제환자검진’** 사업은 고엽제피해 질병 등록신청자에 대해 보훈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하여 고엽제 후유(의)증 또는 2세 환자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1억 6,7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되었음.[10)]

[2025년도 고엽제환자검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고엽제환자검진 | 2,667 | 2,667 | - | △500 | 2,167 | 2,167 | - | - | 2,412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고엽제환자검진 사업은 2025년도 예산이 전액 집행되었으나, 신청부터 최종 판정까지 평균 160일 이상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국가보훈부는 검진·판정 단계별 지연 원인을 분석하고 외부검사 활용 및 전문의 확보 등 안정적인 검진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고엽제환자검진은 단순한 건강검진이 아니라 고엽제 관련 질병의 등록 여부와 이후 의료지원·수당 지급 등 보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절차임.

국가보훈부는 고엽제 관련 질병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보훈병원장에게 관련 자료를 보내 신청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인지를 검진하게 하여야 하며, 보훈병원장은 검진 결과를 국가보훈부에 통보해야 함.

고엽제환자검진은 단순한 건강검진이 아니라 등록 및 보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검진 건수뿐 아니라 필요한 정밀검사의 적정한 시행, 판정의 정확성 및 신속성을 함께 확보할 필요가 있음.

---

10) 일반회계-고엽제환자검진(1143-368)(보상정책국)

최근 고엽제 검진 실적을 보면, 검진 연인원은 2021년 2만 4,101명에서 2025년 2만 8,987명으로 증가하였음. 반면 같은 기간 평균단가는 9만 9,000원에서 7만 4,654원으로 하락하였고, 전체 검진비용도 23억 8,600만원에서 21억 6,400만원으로 감소하였음.

[최근 5년(2021-2025) 고엽제 검진비 집행현황]

(단위: 명, 원, 백만원)

|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연인원 | 24,101 | 22,630 | 28,004 | 29,437 | 28,987 |
| 평균단가 | 99,000 | 101,370 | 102,271 | 67,092 | 74,654 |
| 검진비용 | 2,386 | 2,294 | 2,864 | 1,975 | 2,164 |

자료: 국가보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가보훈부는 2024년과 2025년에는 전공의 집단이탈 등 외부 의료환경 변화로 일부 진료과목의 입원검진 및 고가 정밀검사 시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에 대응하여 서면검진 확대와 외부 의료기관 검사 결과 활용 등을 추진했다고 설명하고 있음.

① 국가보훈부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외부 의료기관 검사 역시 2025년 비용지원 인원 304명에 검사비 지급액 7,646만원 수준으로 보훈병원에서의 고엽제환자 검진을 보완하기에는 활용도가 여전히 저조해 보임.

외부 의료기관 검사 결과의 활용은 전공의 집단이탈이나 코로나19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병원 내 정밀검사가 지연되는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2023-2025 고엽제 검진 외부병원 이용 현황]

(단위: 명, 원)

| 구분 | 외부 검사 결과 제출자 수 | 비용지원 인원 | 지급액 | 1인당 평균 지원액 | 주요 인정 검사 항목 |
|---|---|---|---|---|---|
| 2023 | - | - | - | - | X-ray, MRI |
| 2024 | 2 | 2 | 1,508,600 | 754,300 | X-ray, MRI, CT, 근전도검사 |
| 2025 | 304 | 304 | 76,456,682 | 251,502 | X-ray, MRI, CT, 근전도검사 |

자료: 국가보훈부

② 검진 및 판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여전히 길다는 점에서 고엽제검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국가보훈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신청에서 검진까지의 평균 대기시간은 2023년 43.1일에서 2024년 48일, 2025년 57일로 증가하였음. 검진에서 판정까지의 평균 대기시간은 2023년 120.6일에서 2025년 105.0일로 다소 단축되었으나, 2025년에도 신청부터 판정까지 전체 평균 소요기간은 162일에 달함.

[고엽제검진 평균 소요기간]

(단위: 일)

| 구분 | 2023 | 2024 | 2025 |
|---|---|---|---|
| 신청에서 검진까지 평균 소요 기간 | 43.1 | 48 | 57 |
| 검진에서 판정까지 평균 소요 기간 | 120.6 | 106.1 | 105.0 |
| 전체 소요 기간 | 163.7 | 154.1 | 162 |

자료: 국가보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고엽제환자검진의 절차 상 검진 단계에서는 고엽제 관련 법령에서 인정하는 고엽제후유증 및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훈병원에서 확인하고 있음. 이후 판정 단계에서는 보훈병원 전문의 대면 신체검사, MRI・CT・근전도 검사・혈액 및 소변검사 등 정밀검사, 보훈병원 전문의의 등급판정이 이루어지며, 후유증 환자의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최종 등급판정까지 거치고 있음.

따라서 검진과 판정의 지연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검진 건수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신청, 검진, 정밀검사, 등급판정,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등 단계별 지연 요인을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고엽제 검진 신청자는 고령이거나 건강상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검진 결과에 따라 의료지원 및 보상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 따라서 현재와 같이 신청 이후 평균 162일 동안 대기하게 될 경우 적기에 필요한 의료지원과 보상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보훈부는 병원별 검진 신청 건수와 처리 역량을 분석하고, 외부요인으로 인해 고엽제 검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8. 제대군인 의료지원 사업: 연례적 이·전용 및 과소편성 개선 필요

## 가. 개 요

**‘제대군인 의료지원’** 사업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진료가 필요한 제대군인 중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사람이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진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65억 5,500만원 중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11]

[2025년도 제대군인 의료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제대군인 의료지원 | 2,365 | 2,365 | - | 4,190 | 6,555 | 6,555 | - | - | 2,301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 의료지원 사업 예산이 연례적으로 과소편성되어 다른 사업에서 이·전용과 내역변경 등을 통해 충당하거나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 진료비를 미지급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정 소요 편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최근 4년간 매년 23억 내외의 유사한 규모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2022년 14억 800만원, 2023년 22억 8,400만원, 2025년 41억 9,000만원을 다른 사업에서 이·전용 또는 내역변경하여 진료비를 충당하였음.

2024년의 경우에는 편성된 예산만으로 실제 진료비 소요를 충당하지 못하였음에도 이·전용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 지급하여야 할 진료비 27억 8,700만원이 미지급금으로 발생하였고, 이를 2025년도 예산으로 지급하였음.

11) 일반회계-제대군인의료지원(2150-450)(보훈의료복지국)

[2022-2025 제대군인 의료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 예산액 | 이·전용 등 | 예산현액 | 집행액 | 미지급금 |
|---|---|---|---|---|---|
| 2022 | 2,365 | 1,408 | 3,773 | 3,773 | - |
| 2023 | 2,365 | 2,284 | 4,649 | 4,649 | - |
| 2024 | 2,365 | - | 2,365 | 2,365 | 2,787 |
| 2025 | 2,365 | 4,190 | 6,555 | 6,555 | - |

자료: 국가보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년의 경우 예산현액 65억 5,500만원 중 41억 9,000만원이 이·전용 등으로 확보된 금액으로, 전체 예산현액의 63.9%가 회계연도 중 추가 확보된 재원에 해당함. 이는 사업 소요 추계가 실제 집행 규모와 괴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2025년 이·전용 등의 재원은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선 사업 감액분 등 타 사업 예산에서 확보된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이 시설사업 등의 집행 지연으로 발생한 감액 재원을 진료비 부족분 보전에 활용하는 방식이 반복될 경우, 당초 국회가 심의·확정한 사업별 재원배분 취지가 약화되고, 의료지원 사업의 실제 소요가 예산안에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있음.

국회는 이 사업 진료인원과 진료단가의 과소 추계, 연례적인 이·전용 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음.

2023회계연도 결산에서는 의료비 증가율 및 실제 진료비 소요를 예산 추계에 반영하여 연례적인 이·전용을 통한 부족분 충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고, 2024회계연도 결산에서도 예산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하여 적정 예산을 확보하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추계의 정확성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관련 결산 시정요구사항]

| 구분 |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 |
|---|---|---|
| 2023 | 시정 요구명 | ○ 의료지원 진료비 부족에 따른 연례적 이·전용 문제 개선 (주의) |
| | 지적사항 | ○ 국가보훈대상자 병원 진료비 보전금 규모 산정이 부정확하여 매년 과다한 이·전용이 반복되고 있으며, 2023년의 경우 진료비를 지원하는 모든 세부사업에서 부족한 진료비를 충당하기 위한 연도말 증액 소요가 발생하였음. |
| | 시정 요구사항 | ○ 국가보훈부는 의료비 증가율 및 실제 진료비 소요를 예산 추계에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연례적인 이·전용을 통한 부족분 충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
| | 조치결과 | ○ 적정 진료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 지속 |
| 2024 | 시정 요구명 | ○ 연례적 예산 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 및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 필요 (주의)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은 매년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비 지원 부족분을 이·전용으로 충당해 왔으나, 2024년에는 이·전용 충당 없이 예산액만 집행되었음. |
| | 시정 요구사항 | ○ 국가보훈부는 예산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하여 적정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할 것. |
| | 조치결과 | ○ 예산 전용을 통해 제대군인의료지원 2024년도 진료비 미지급액 27억 8,700만원 및 2025년도 부족액 14억 300만원을 집행 완료 |

자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는 2025년도 예산 편성 시 2021~2023년도 결산 이용인원과 진료단가의 평균값을 기초로 산출하면서도, 입원 및 외래 이용인원의 40%만을 반영하였음. 그러나 위탁병원 이용인원이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실제 이용 규모의 일부만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할 경우, 예산 부족과 이·전용, 미지급금 발생이 반복될 가능성이 큼.

[2022-2025 제대군인 의료지원 사업 집행현황]

(단위: 명)

| 연도 | 구분 | 편성 인원(A) | 실제 이용인원(B) | 차이(B-A) |
|---|---|---|---|---|
| 2022 | 보훈병원 | 7,522 | 6,619 | △903 |
| | 위탁병원 | 25,169 | 27,813 | 2,644 |
| 2023 | 보훈병원 | 7,369 | 7,307 | △62 |
| | 위탁병원 | 25,545 | 32,965 | 7,420 |
| 2024 | 보훈병원 | 6,704 | 7,001 | 297 |
| | 위탁병원 | 17,520 | 38,297 | 20,777 |
| 2025 | 보훈병원 | 6,909 | 7,232 | 323 |
| | 위탁병원 | 12,953 | 41,611 | 28,658 |

자료: 국가보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제대군인의료지원 사업은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진료가 실제로 이루어진 이후에는 국가보훈부가 재정 여건에 따라 진료비의 지급 여부나 규모를 재량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워 일반적인 재량사업보다 경직적 지출의 성격이 강함. 이에 따라 예산 편성 단계에서 최근 진료인원 증가 추이와 진료단가 변동,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별 이용실적, 전년도 미지급금 발생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을 경우 연도 중 진료비 부족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의료지원 사업의 실제 소요에 부합하도록 관련 지표와 전년도 집행실적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진료비 부족분을 다른 사업의 이·전용 또는 내역변경을 통해 사후적으로 충당하는 방식이 반복되지 않도록 과소추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9. 지방보훈회관건립 사업: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필요

## 가. 개 요

**‘지방보훈회관 건립’** 사업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지역사회에서 친목도모와 여가 활동, 보훈단체 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보훈회관 건립을 국가에서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0억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12)]

[2025년도 지방보훈회관건립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지방보훈회관건립 | 2,000 | 2,000 | - | - | 2,000 | 2,000 | - | - | 3,750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지방보훈회관건립 사업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교부액 집행이 부진하거나 공사 착공이 지연된 상황에서도 추가 보조금이 교부되어 상당한 규모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실제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친목 도모 및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인 지방보훈회관 건립을 지원하는 것으로, 광역자치단체에는 총사업비의 50% 이내, 시·군·구에는 총사업비의 30% 이내에서 국고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음.

2025년도 예산현액은 20억원으로 국가보훈부는 이를 전액 집행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집행액을 기준으로 한 실집행률은 65.8%에 그쳤으며, 총 8억 2,4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음.

12) 일반회계-지방보훈회관건립(1238-321)(보훈단체협력관)

[지역별 국고보조금 교부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 사업시행 주체 (기관명) | 부처 | | |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 | | | | | | | |
|---|---|---|---|---|---|---|---|---|---|---|---|---|
| | 예산 | | 집행액 | 교부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 현액 | 집행액 (B) | 전년도 이월액 제외 | | 이월액 | 불용액 | 실집행률 (C/A) |
| | 본예산 | 추경 (A) | | | | | | 예산 현액 | 집행액 (C) | | | |
| 순창군 | 500 | 500 | 500 | 500 | - | 500 | 18 | 500 | 18 | 482 | - | 3.6 |
| 이천시 | 250 | 250 | 250 | 250 | - | 250 | 108 | 250 | 108 | 142 | - | 43.2 |
| 진안군 | 250 | 250 | 250 | 250 | 158 | 408 | 208 | 250 | 50 | 200 | - | 51 |

자료: 국가보훈부

구체적으로 순창군의 경우 2025년 5월 27일 1억원이 1차로 교부되었으나, 이후 실제 집행액은 1,800만원에 불과하였음. 그럼에도 10월 4억원이 추가로 교부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전체 교부액 5억원 중 4억 8,200만원이 공사 지연 등으로 인해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최종 실집행률이 3.6%에 불과하였음.

이천시의 경우 2025년 4월 30일 1억 3,000만원을 교부한 후 7월 1억 2,000만원을 추가로 교부하였음. 그러나 연말까지 실제 집행된 금액은 1억 800만원으로 전체 교부액의 43.2%에 그쳤으며, 1억 4,2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음.

진안군의 경우 전년도에 교부된 보조금 중 1억 5,800만원이 이미 이월된 상태였음. 그럼에도 국가보훈부는 회계연도 종료 직전 2025년 12월 17일에 2억 5,000만원을 추가로 교부하였음. 이후 실제 집행액은 5,000만원에 그쳤으며, 2억원이 다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음. 전년도 이월액이 존재하고 연내 집행기간도 제한적인 상황에서 추가 보조금을 교부한 것은 실제 공사 진행상황과 연내 집행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는 보조금 교부시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보조금의 사용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교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13] 순창군에 보조금을 2차 교부할 당시 실집행률이 3.6%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서 1차 교부액의 집행현황 및 공사 진행상황 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향후 지방보훈회관 건립 보조금을 교부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확보 여부, 설계・계약・착공 등 공사 추진단계, 기존 교부액의 집행률 및 전년도 이월액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특히 2차 교부 또는 회계연도 말 교부 시에는 선교부액의 실제 집행상황과 연내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확인하고, 집행이 부진한 경우에는 교부시기 조정, 분할교부, 교부조건 부가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함으로써 유사한 이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13)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보훈기금】

〈수　입〉

## 10.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장기 미수납 채권 수납관리 강화 필요

### 가. 개　요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는 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를 대상으로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대부를 실시하고 상환기간 동안의 대부금 융자원금 회수를 보훈기금 세입으로 계상한 것으로, 2025년도 징수결정액 397억 5,100만원 중 234억 3,500만원이 수납되고, 161억 5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2억 1,100만원이 불납결손 처리되었음.[14)]

[2025년도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5년도 | | | | | | | 2026년도 계획액 |
|---|---|---|---|---|---|---|---|---|
| | 계획액 | | 징수 결정액(B) | 수납액 (C) | 미수 납액 | 불납 결손액 | 수납률 (C/B) | |
| | 당초 | 수정(A) | | | | | | |
|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 24,715 | 24,715 | 39,751 | 23,435 | 16,105 | 211 | 59 | 24,901 |

주) 2026년도 계획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금 회수와 관련하여 5년 이상 경과한 장기 미수납 채권이 90억원을 초과하고 있으며, 회수 실적이 저조하므로 장기 미수납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점검하고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국가보훈부가 관리하는 대부채권은 2007년 이전 국가보훈부가 직접 실시한 기존 대부, 위탁은행의 부실채권 중 국가보훈부가 양수한 채권 및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신용대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14) 보훈기금-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75-754)(보훈의료복지국)

2025회계연도 결산 기준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의 징수결정액은 397억 5,100만원이나, 이 중 161억 500만원이 미수납되어 징수결정액의 40.5%가 수납되지 못했음.

[2025년 미수납 채권 관련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합 계 | 국가유공자 | 제대군인 |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
| 징수결정액 | 39,751 | 34,152 | 4,372 | 771 | 456 |
| 수납액 | 23,435 | 21,673 | 1,484 | 188 | 90 |
| 미수납액 | 16,105 | 12,345 | 2,811 | 583 | 366 |
| 장기 미수납 채권액 | 9,093 | 6,263 | 2,143 | 446 | 241 |
| 불납결손액 | 211 | 134 | 77 | - | - |

자료: 국가보훈부

특히 미수납액 중 5년 이상 경과한 장기 미수납 채권은 90억 9,300만원으로, 전체 미수납액 161억 500만원의 56.5%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단순한 일시적 납부 지연이라기보다는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이 장기간 누적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줌.

장기 미수납 채권의 경과연수를 보면, 5년 이상 10년 미만 채권은 44억 5,000만원, 10년 이상 채권은 46억 4,300만원으로 나타남. 또한 5년 이상 장기 미수납 채권에 따른 미수납 이자는 23억 2,500만원에 달하는 반면, 최근 회수액은 8,800만원에 그치고 있음.

장기 미수납 채권은 시간이 지날수록 채무자의 상환능력 확인과 채권 회수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위탁관리만 지속하기보다는 채권별 상태를 세분화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장기(5년이상) 채권 관리 현황]

(단위: 백만원)

| 경과연수 | 미수납액 | 미수납 이자 | 최근 징수액 |
|---|---|---|---|
| 5~10년 | 4,450 | 1,144 | 47 |
| 10년 이상 | 4,643 | 1,181 | 41 |
| 합계 | 9,093 | 2,325 | 88 |

주) 최근 징수액은 2026년 3월 기준 5년 이상 경과한 채권(원금)의 수납액임
자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장기 미수납 채권의 회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고 회수 금액에 대해 분기별로 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채권보전에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 회수율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5% 미만으로 낮으며, 장기 미수납 채권 규모와 미수납 이자 누적액에 비해 최근 회수실적이 제한적인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현행 관리방식만으로는 장기 채권의 회수성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한국자산관리공사 회수 실적 및 회수율]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위탁금액(A) | 888 | 896 | 987 | 826 | 617 |
| 회수금액(B) | 106 | 108 | 116 | 100 | 90 |
| 회수율(B/A) | 11.9 | 12.1 | 11.8 | 12.1 | 14.6 |

자료: 국가보훈부

동 대부채권은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기존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관리와 함께 체납자의 경제상황 확인, 납부 안내 및 체납액 회수 등을 위한 통합적인 체납관리체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음.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장기 미수납 채권의 특성과 회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채권별 조사·회수 결과가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회수실적과 재산조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등 관리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지 출〉

# 11. 국가유공자 등 대부관리 사업: 이차보전금리 설정 방식의 개선 필요

## 가. 개 요

**‘국가유공자 등 대부관리’** 사업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제대군인 등 보훈대상자의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리 대부를 실시하고,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위탁대부의 경우 보훈대상자가 부담하는 보훈금리와 위탁은행 계약금리 간 차액을 국가보훈부가 보전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174억 1,000만원 중 173억 7,2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8%)되었고 3,800만원이 불용되었음.[15)]

[2025년도 국가유공자등 대부(융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2026년도 계획액 |
|---|---|---|---|---|---|---|---|---|
| | 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B) | 계획현액 (A+B)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당초 | 수정(A) | | | | | | |
| 국가유공자 등 대부관리 | 10,657 | 17,410 | - | 17,410 | 17,372 | - | 38 | 11,100 |

주) 2026년도 계획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첫째, 국가유공자 등 대부관리 사업의 이차보전금리는 계약금리와 보훈금리의 격차를 시중은행에 보전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부실채권 발생 시 국가보훈부가 일정 부분 위험을 부담하는 구조임을 고려하여 계약금리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가보훈부는「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근거하여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저리 대부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이 중 일부 대부는 시중은행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보훈대상자는 연 3.0~4.0%인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하는 낮은 보훈금리로 대출을 이용함.

15) 보훈기금- 국가유공자 등 대부 관리(2259-390)(보훈의료복지국)

시중은행은 보훈금리가 아니라 별도로 정한 위탁은행 계약금리를 기준으로 대부를 취급하고, 국가보훈부는 보훈대상자가 부담하는 보훈금리와 위탁은행 계약금리의 차액을 이차보전금으로 은행에 지급하고 있음. 2025년 평균 이차보전율은 2.59%p이었으며 총 21,117명에게 1,298억 9,700만원이 대부되었음.

보훈금리는 매년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하는 고정금리이나, 위탁은행 계약금리는 부동산 담보대부의 경우 3개월 변동금리, 신용대부의 경우 6개월 변동금리를 기준으로 산정됨. 여기에 은행제비용 1.18%p가 공통적으로 반영되고, 신용대부의 경우 0.5%p의 가산금리가 추가됨.

[2025년 국가보훈부 계약금리 선정 방식]

(단위: %, %p)

| 구분 | 기준금리 적용 방식 | 기준금리(A) | 은행제비용(B) | 가산금리(C) | 계약금리 (A+B+C) |
|---|---|---|---|---|---|
| 부동산 담보대출 | 3개월 변동금리 | 단기 시장금리 | 1.18 | - | 3.69~4.32 |
| 신용대출 | 6개월 변동금리 | 금융채 AAA등급 채권시장수익률 | 1.18 | 0.5 | 4.19~4.82 |

주) 부동산 담보대출의 기준금리는 금융기관 간 단기 자금거래에 활용되는 대표적 단기 시장금리인 CD91 일물 금리를 기준으로 하며, 2025년 평균금리는 2.7%에 해당함. 또한 신용대출의 기준금리는 신용등급이 높은 (AAA)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의 시장금리를 기준으로 함.

자료: 국가보훈부

일반적으로 이차보전 사업은 민간 금융기관이 대출재원을 공급하고 일정한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대신, 국가가 이자 차액 또는 수수료를 지급하여 정책대출 공급을 유도하는 방식이며, 「국가보훈부 대부업무 처리지침」 제77조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위탁은행 대출 중 대부원리금이 6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 등을 양수하여 부실채무자로 결정하여 관리하고 있음.[16)]

이에 따라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부실채권은 국가보훈부가 양수하여 관리하게 되므로, 위탁은행의 최종 손실위험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음.

16) 「국가보훈부 대부업무 처리지침」
제77조(부실채무자 결정) ① 생활안정과장은 채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부실채무자로 결정한다.
4. 위탁은행 나라사랑대출 지원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가보훈부에서 양수하여 관리 중인 자
가. 대부원리금이 6개월 이상 연체된 자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 및 파산을 신청하여 법원통지를 받은 자
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서울보증보험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자
라. 국가보훈부가 직권으로 양도청구한 자

그럼에도 신용대부 계약금리에는 기준금리와 은행제비용 외에 0.5%p의 가산금리가 추가로 반영되고 있으며, 은행 제비용 1.18%p의 경우도 대출금 미상환 위험이 없다는 점에서 과도하게 설정된 측면이 있음.[17)]

국가보훈부는 부실채권 양수 범위, 위탁은행의 실제 손실위험, 대부 취급 및 사후관리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은행제비용과 신용대부 가산금리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보훈금리는 매년 고정되어 있는 반면 위탁은행 계약금리는 변동금리를 기반으로 산정하고 있어, 이차보전금리가 연중에 변동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융자사업 예산 집행의 예측가능성 제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보훈대상자의 부담금리는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 위탁은행 계약금리만 상승하게 되고, 그 차액은 국가보훈부가 이차보전금으로 부담하게 됨. 따라서 현행 방식은 시장금리 변동이 국가보훈부의 재정부담으로 직접 전가될 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음.

국가보훈부는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이차보전금 부족분을 지급하기 위하여 2025년도 보훈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67억 5,300만원을 증액했음. 그러나 2025년 말에도 위탁은행에 지급하지 못한 이차보전금이 75억 1,800만원 남아 있음.

[연도별 이차보전금 집행 및 미지급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예산액 | 기금 변경액 | 계획현액 | 은행 청구액 | 집행액 | 미지급액 |
|---|---|---|---|---|---|---|
| 2021년 | 3,576 | - | 3,576 | 1,561 | 1,487 | 74 |
| 2022년 | 3,031 | 4,748 | 7,779 | 7,831 | 7,779 | 126 |
| 2023년 | 4,727 | 6,108 | 10,835 | 20,389 | 10,835 | 9,680 |
| 2024년 | 10,527 | 6,753 | 17,280 | 19,569 | 17,280 | 11,969 |
| 2025년 | 10,547 | 6,753 | 17,300 | 12,849 | 17,300 | 7,518 |

주) 미지급액은 해당 연도 말 누적된 미지급액을 의미함
자료: 국가보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타 부처는 이차보전금리를 고정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시중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을 회피하고 있음.

17) 국가보훈부는 은행 제비용은 은행 내부 원가로 유동성 관리 원가・업무원가・교육세・신보료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한 바 있음.

일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기업에 이차보전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대출금리의 2.5%p를 이차보전금리로 설정하고, 기획재정부는 2%p로 설정하는 등 사전에 시장금리의 변동 등에도 예측하지 못한 재정소요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이차보전율을 고정해두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음.

[2025년 타부처 이차보전사업 금리 설정방식]

(단위: %p)

| 부처 | 사업 | 이차보전율 |
|---|---|---|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 2.5 |
| 기획재정부 |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 2 |
|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 이차보전 |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3 |
| 환경부 | 미래환경산업육성 융자 | 1.8 |

이외의 변동금리 방식의 이차보전금리를 설정하는 다른 부처는 이차보전율을 변동하되, 최대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 등을 통해 융자지원 사업 집행의 불확실성을 축소하고 있으므로, 국가보훈부 역시 보훈대상자의 저리 대부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이차보전 예산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12. 보훈복지시설건립 사업: 요양수요를 고려한 요양원 확대 추진 필요 등

## 가. 개 요

**‘보훈복지시설건립’** 사업은 보훈요양원 추가 건립을 통해 보훈대상자의 고령화와 노인성 질환 증가로 인한 요양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권역별 균등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37억 8,300만원 중 35억 3,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3.5%)되고, 2억 4,700만원이 불용되었음.[18)]

[2025년도 보훈복지시설건립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계획액 |
|---|---|---|---|---|---|---|---|---|---|
| | 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계획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당초 | 수정(A) | | | | | | | |
| 보훈복지시설건립 | 3,783 | 3,783 | - | - | 3,783 | 3,536 | - | 247 | 6,031 |

## 나. 검토의견

**첫째, 보훈요양원 건립 시 지역 내 보훈대상자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여 추가적인 건립 및 증축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보훈요양원은 고령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건립을 위탁하여 전액 보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현재 지역별로 수원・남양주・대구・전주・광주 등에서 운영되고 있고 보훈요양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인 충북권 보훈요양원 100병상 건립이 2023년부터 2028년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수원 보훈요양원 100병상 증축 사업이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진행중임.

지역별 보훈요양원 대기자 수를 보면, 수원보훈요양원은 정원 222명 대비 대기자 수가 710명으로 정원의 3배 이상이고, 남양주보훈요양원도 정원 206명 대비 대기자 수가 815명으로 정원의 4배에 달하고 있음. 반면, 대구・전주・광주 보훈요양원 등은 수도권 지역에 비해 대기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임.

18) 보훈기금- 보훈복지시설건립(2161-443)(보훈의료복지국)

[보훈요양원 지역별 대기자 수 현황]

(단위: 명, %)

| 구분 | 수원 | 남양주 | 대구 | 전주 | 광주 |
|---|---|---|---|---|---|
| 정원 | 222 | 206 | 200 | 200 | 200 |
| 입소자 수 | 216 | 204 | 188 | 151 | 197 |
| 대기자 수 | 710 | 815 | 13 | 40 | 27 |
| 정원 대비 대기자 비율 | 319.8 | 395.6 | 6.5 | 20 | 13.5 |

자료: 국가보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는 수도권 보훈요양원에 집중된 입소수요를 보여주는 것으로, 현재 추진 중인 수원보훈요양원 100병상 증축만으로 수도권의 장기요양 수요를 충분히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수도권 지역의 추가 건립 또는 기존 시설 증축 필요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광역별 보훈대상자 현황(65세 이상)]

(단위: 명)

| 구 분 | | 65세 이상 보훈대상자 현황 | | | |
|---|---|---|---|---|---|
| 권역 | 비율 | 65~69세 | 70~79세 | 80세 이상 | 합계 |
| 수도권 | 45% | 36,445 | 134,301 | 112,544 | 283,290 |
| 강원권 | 4% | 4,280 | 13,056 | 10,228 | 27,564 |
| 충남권 | 7% | 6,318 | 23,211 | 16,388 | 45,917 |
| 충북권 | 3% | 2,852 | 9,894 | 6,693 | 19,439 |
| 경북권 | 12% | 8,786 | 37,486 | 26,867 | 73,139 |
| 경남권 | 16% | 12,132 | 54,389 | 36,332 | 102,853 |
| 전북권 | 4% | 2,354 | 12,074 | 9,342 | 23,770 |
| 전남권 | 7% | 5,256 | 23,231 | 16,128 | 44,615 |
| 제주권 | 2% | 1,205 | 4,244 | 3,803 | 9,252 |
| 합 계 | 100% | 79,628 | 311,886 | 238,325 | 629,839 |

자료: 국가보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실제 보훈요양원의 입소자 및 대기자 외에도 잠재적 보훈요양원 수요자인 65세 이상 보훈대상자의 지역별 분포도 역시 수도권이 전체의 45%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충북권은 전체의 3% 수준임.

물론 충북권이 현재 보훈요양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으로 신규 건립 필요성이 인정되나, 향후 추가적인 보훈요양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단순히 시설 설치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실제 수요와 고령 보훈대상자 분포를 균형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수행하는 충북권 보훈요양원 건립 사업과 수원 보훈요양원 증축 사업 모두 연례적 집행부진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고 기존 교부액의 실집행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 및 보조금 교부 규모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충북권 보훈요양원 건립 사업의 실집행 현황을 보면, 보조금이 교부된 이후 실제 사업비로 적시에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재이월되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어, 3년 동안 매년 당해연도 예산 실집행률이 0%였음. 2023년에는 45억원이 교부되었으나 연내 실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전액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고, 2024년에도 신규 교부액 3억 4,700만원은 집행되지 못하고 전액 이월되었음.

2024년의 경우 전년도 이월액 45억원 중 19억 8,600만원이 집행되었으나, 나머지 25억 1,4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재이월되었음. 이에 따라 2025년에는 전년도 이월액 28억 6,100만원을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이 중 실제 집행된 금액은 3억 1,000만원에 그쳤고, 15억 6,400만원은 재이월되었으며, 9억 8,7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음.

[충북권 보훈요양원 실집행 기준 현황]

(단위: 백만원, %)

| 구분 | 국가보훈부 | |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 | | | | | | |
|---|---|---|---|---|---|---|---|---|---|---|---|---|
| | 계획 | | 집행액 | 교부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 현액 | 집행액 (B) | 전년도 이월액 재이월 | | 이월액 | 불용액 | 실집행률 (C/A) |
| | 당초 | 수정 (A) | | | | | | 예산 현액 | 집행액 (C) | | | |
| 2023 | 4,500 | 4,500 | 4,500 | 4,500 | - | 4,500 | - | - | - | 4,500 | - | - |
| 2024 | 347 | 347 | 347 | 347 | 4,500 | 4,847 | 1,986 | 347 | - | 2,861 | - | - |
| 2025 | - | - | - | - | 2,861 | 2,861 | 310 | 2,861 | - | 1,567 | 987 | - |

주) 2024년 이월액 28억 6,100만원에는 재이월액 25억 1,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2025년 이월액 15억 6,400만원은 전액 재이월된 금액임.

자료: 국가보훈부

수원 보훈요양원의 경우 2022년도부터 실집행 단계에서 보조금의 이월이 반복되고 있으며, 당해연도 교부액 기준 실집행률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2025년도에는 국가보훈부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35억 3,600만원을 교부하였고, 공단은 전년도 이월액 51억 4,4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6억 8,000만원 중 46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음.

그러나 전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당해연도 교부액 기준 집행액은 8억 4,200만원으로 실집행률이 22.3%에 그쳤으며, 15억 8,2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24억 3,100만원은 공사계약 체결에 따른 낙찰차액 등으로 불용처리되었음.

[수원 보훈요양원 실집행 기준 현황]

(단위: 백만원, %)

| 구분 | 국가보훈부 | |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 | | | | | | |
|---|---|---|---|---|---|---|---|---|---|---|---|---|
| | 계획 | | 집행액 | 교부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 현액 | 집행액 (B) | 전년도 이월액 재이월 | | 이월액 | 불용액 | 실집행률 (C/A) |
| | 당초 | 수정 (A) | | | | | | 예산 현액 | 집행액 (C) | | | |
| 2022 | 495 | 495 | 495 | 495 | - | 495 | 5 | 495 | 5 | 490 | - | 1.0 |
| 2023 | 2,339 | 2,339 | 2,339 | 2,339 | 490 | 2,829 | 583 | 2,829 | 93 | 2,246 | - | 4.0 |
| 2024 | 3,018 | 3,018 | 3,018 | 3,018 | 2,246 | 5,264 | 120 | 3,018 | 115 | 2,903 | - | 3.8 |
| 2025 | 3,783 | 3,783 | 3,536 | 3,536 | 5,144 | 8,680 | 4,667 | 8,680 | 842 | 1,582 | 2,431 | 22.3 |

자료: 국가보훈부

충북권 보훈요양원 건립 사업과 수원 보훈요양원 증축 사업은 공단 단계에서 이월과 재이월이 반복되고 있어, 실제 공정 진행상황에 비해 보조금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 및 교부되었거나 연내 집행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예산을 배분하였음.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향후 보조금 예산 편성 및 교부에 앞서 기존 교부액의 집행실적, 설계 및 계약 진행상황, 공정별 자금 소요와 연내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13. 국가유공자 등 노후복지지원 사업: 재가보훈실무관 감소에 따른 재가복지서비스 및 안부확인 체계 강화 필요

## 가. 개요

**‘국가유공자 등 노후복지지원’** 사업은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397억 7,100만원 중 361억 3,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0.8%)되었음.

이 중 보훈재가복지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 등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재가보훈실무관이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가사활동, 건강관리 보조, 정서지원 및 생활상태 확인 등 맞춤형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임.

[2025년도 국가유공자 등 노후복지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계획액 |
|---|---|---|---|---|---|---|---|---|---|
| | 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계획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당초 | 수정(A) | | | | | | | |
| 국가유공자 등 노후복지지원 | 39,771 | 39,771 | - | - | 39,771 | 36,135 | - | 3,636 | 40,245 |

재가보훈실무관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직 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가족 돌봄이 취약한 보훈재가복지대상자에게 방문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 인력임. 따라서 재가보훈실무관은 단순히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령·독거 보훈대상자의 생활상태를 확인하고 위험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음.

## 나. 검토의견

**최근 재가보훈실무관의 현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취약 보훈대상자에 대한 돌봄 공백 우려도 커지고 있으므로, 국가보훈부는 실제 서비스 수요와 대상자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재가보훈실무관의 적정 인력 규모를 점검하고 재가복지서비스와 안부확인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보훈재가복지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중 고령·질병·장애·저소득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재가보훈실무관은 이들 대상자에 대한 방문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함께 생활위험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최근 재가보훈실무관 현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재가보훈실무관 정원은 2021년부터 2026년 3월까지 1,349명으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으나, 현원은 2021년 1,108명에서 2025년 724명, 2026년 3월 676명으로 감소하였음. 이에 따라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인 충원율은 2021년 82.1%에서 2025년 53.7%, 2026년 3월 50.1%로 하락하여, 정원의 절반 수준만 충원된 상태임.

[2021~2026년 3월 재가보훈실무관 인원·충원율 추이]

(단위: 명. %)

|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3 |
|---|---|---|---|---|---|---|
| 정원(A) | 1,349 | 1,349 | 1,349 | 1,349 | 1,349 | 1,349 |
| 현원(B) | 1,108 | 1,060 | 962 | 860 | 724 | 676 |
| 정원 대비 현원(B/A) | 82.1 | 78.6 | 71.3 | 63.8 | 53.7 | 50.1 |

자료: 국가보훈부

재가보훈실무관 현원 감소는 공무직등인건비 불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2025년도 공무직등인건비 예산은 354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재가보훈실무관 충원율이 낮아지면서 32억 6,800만원이 불용되었음. 이는 단순한 인건비 불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가보훈실무관 현원 부족으로 인해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재가보훈실무관은 고령·독거·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보훈대상자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인력이라는 점에서, 현원 감소는 단순한 인력 부족에 그치지 않고 보훈재가복지대상자에 대한 방문 횟수, 서비스 제공 범위 및 생활위험 징후 파악 기능의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특히 보훈대상자의 초고령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2025년 보훈재가복지 대상자 평균연령은 87.4세로 80대 이상의 보훈대상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재가복지서비스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독거 또는 가족 돌봄이 취약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상시적 관리와 위기상황 대응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음.

실제로 보훈대상자의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22년 34명에서 2024년 68명, 2025년 73명으로 증가하였고, 2026년 6월 기준으로도 31명이 발생하여, 3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하였음. 재가보훈실무관의 현원 감소가 보훈대상자의 무연고 사망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이러한 지표는 고령·질병·독거 보훈대상자에 대한 상시적 안부확인 및 위기징후 발굴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인원 및 무연고 사망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 2022 | 2023 | 2024 | 2025 |
|---|---|---|---|---|
|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인원 | 13,052 | 11,813 | 10,926 | 9,689 |
| 무연고 사망자 | 34 | 31 | 68 | 73 |

자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인원이 감소하였음에도 재가보훈실무관 정원의 현실화가 어려웠으며, 이용인원 감소에 따라 복지인력 또한 자연적으로 감소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음.

다만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인원의 감소를 재가복지서비스 필요성이 낮아진 것으로만 보기는 어려움. 보훈재가복지대상자의 평균연령은 87.4세에 달하고, 2025년 재가복지서비스 종결 사유도 장기요양서비스 전환, 사망, 병원 입원 등 건강상태 악화와 관련된 사유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보훈대상자의 무연고 사망자가 2022년 34명에서 2025년 73명으로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고령·독거·질병 등 돌봄 공백 위험이 큰 보훈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재가복지서비스, 전화 안부확인, 지방자치단체 돌봄서비스 등과 연계하는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는 재가보훈실무관을 통해 고령·취약 보훈대상자에 대한 상시적 안부확인과 위험 징후 파악 기능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함.

결론적으로 국가보훈부는 재가보훈실무관의 결원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현재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 규모, 대상자의 평균연령과 건강상태, 독거 여부, 장기요양 전환 가능성, 지역별 돌봄 공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인력 규모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재가보훈실무관 1인당 담당 대상자 수, 대상자별 방문 횟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고위험군 안부확인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기　타】

# 14.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가. 개　요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국가보훈부에 대해 시정요구 53건(중복 7건 제외)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시정 6건·주의 22건·제도개선 32건이었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 구분 | 변상 | 징계 | 시정 | 주의 | 제도개선 | (중복) | 계 |
|---|---|---|---|---|---|---|---|
| 결산 | - | - | 6 | 22 | 31 | (7) | 59 |
| 예비비 | - | - | - | - | 1 | - | 1 |
| 합계 | - | - | 6 | 22 | 32 | (7) | 60 |

국가보훈부는 시정요구사항 53건에 대해 48건을 조치완료(조치율 90.6%)하고 5건을 조치 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 구분 | 시정요구사항(a) | 조치완료(b) | 조치율(b/a) | 조치중(a-b) |
|---|---|---|---|---|
| 결산 | 52 | 47 | 90.4 | 5 |
| 예비비 | 1 | 1 | 100.0 | - |
| 합계 | 53 | 48 | 90.6 | 5 |

## 나. 검토의견

**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의료지원 사업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진료비 소요에 비해 예산이 과소편성되어 미지급금 및 이·전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의료지원 사업의 '연례적 예산 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 및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 필요'라는 시정요구에 대해 '조치완료'로 보고하였으나, 2025년에도 동 사업에서 대규모 이·전용이 발생하였으므로 사실상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제대군인의료지원 사업은 제대군인 등에 대한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제 진료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지급 여부를 재량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경직적 지출의 성격을 가짐. 따라서 진료인원, 진료단가 및 전년도 미지급금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14억 800만원, 22억 8,400만원을 이·전용 등을 통해 추가 확보하였고, 2024년에는 이·전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하여 27억 8,700만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하였음. 이에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예산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하여 적정 예산을 확보하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음.

국가보훈부는 이에 대해 2024년도 진료비 미지급액 27억 8,700만원 및 2025년도 부족액 14억 300만원을 예산 전용을 통해 집행 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음.

그러나 2025년에도 당초 예산 23억 6,500만원만으로는 실제 진료비 소요를 충당하지 못하여 41억 9,000만원을 이·전용 등으로 추가 확보하였음. 이는 당초 예산액의 177.1%에 해당하는 규모로, 국회의 시정요구 이후에도 예산 추계의 정확성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임.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최근 진료인원 증가 추이, 위탁병원 이용 증가율, 진료단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제대군인의료지원 사업의 예산을 적정 규모로 편성하고, 다른 사업으로부터의 연례적 이·전용을 통해 부족분을 사후적으로 충당하는 방식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

# Ⅰ. 개 관

## 1. 결산 개요

### 가. 총수입·총지출

2025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1,614억 7,900만원(△29.9%)이 적은 3,779억 4,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50억 2,500만원(118.6%)이 증가함.[1)]

[2025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4회계연도 | | | | 2025회계연도 | | | | 전년대비 (D-B) |
|---|---|---|---|---|---|---|---|---|---|
| | 예산액 | | 결산 (B) | 예산대비 (B-A) | 예산액 | | 결산 (D) | 예산대비 (D-C) | |
| | 본예산 | 추경(A) | | | 본예산 | 추경(C) | | | |
| 예 산 | 450,162 | 450,162 | 172,922 | △277,240 | 539,426 | 539,426 | 377,947 | △161,479 | 205,025 |
| 총수입 | 450,162 | 450,162 | 172,922 | △277,240 | 539,426 | 539,426 | 377,947 | △161,479 | 205,025 |

2025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29억 4,400만원(△1.8%)이 적은 1,604억 2,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8억 1,200만원(3.1%)이 증가함.

문의: 02-6788-5689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5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4회계연도 | | | | 2025회계연도 | | | | 전년대비 (D-B) |
|---|---|---|---|---|---|---|---|---|---|
| | 예산액 | | 결산 (B) | 예산대비 (B-A) | 예산액 | | 결산 (D) | 예산대비 (D-C) | |
| | 본예산 | 추경(A) | | | 본예산 | 추경(C) | | | |
| 예 산 | 158,429 | 158,429 | 155,614 | △2,815 | 163,370 | 163,370 | 160,426 | △2,944 | 4,812 |
| 총지출 | 158,429 | 158,429 | 155,614 | △2,815 | 163,370 | 163,370 | 160,426 | △2,944 | 4,812 |

## 나.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5,394억 2,600만원으로, 8,262억 8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3,779억 4,700만원이 수납(수납률 45.7%)되고 4,482억 6,100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처리된 금액은 없음.

[2025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세입예산액 | | 이체등 증감액 (B) | 세입 예산현액 (A+B) | 징수 결정액 | 수납액 | 미수납액 | 불납 결손액 |
|---|---|---|---|---|---|---|---|---|
| | 본예산 | 추경 (A) | | | | | | |
| 일반회계 | 539,426 | 539,426 | - | 539,426 | 826,208 | 377,947 | 448,261 | - |
| 합 계 | 539,426 | 539,426 | - | 539,426 | 826,208 | 377,947 | 448,261 | - |

주) 총계 기준

2025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642억 9,900만원으로, 이 중 1,604억 2,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6%)되고 2억 9,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5억 7,4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세출예산액 | | 예산결정후증감액(B) | | | 세출 예산현액 (C=A+B)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 (A)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 | | |
| 일반회계 | 163,370 | 163,370 | 199 | ±723 | 730 | 164,299 | 160,426 | 299 | 3,574 |
| 합 계 | 163,370 | 163,370 | 199 | ±723 | 730 | 164,299 | 160,426 | 299 | 3,574 |

주) 총계 기준

## 다. 재무결산

2025회계연도 말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자산은 전년 대비 993억 3,100만원이 감소한 1,900억 8,200만원으로, 이는 미수채권 등 금융자산과 유무형자산이 각각 955억 1,300만원, 40억 9,200만원 감소한 것 등에 주로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4억 6,700만원 증가한 156억 8,500만원으로, 이는 금융리스부채 상환으로 인해 차입부채가 4억 5,500만원 감소하였으나, 충당부채가 9억 2,100만원 증가한 것에 기인함.

2025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846억 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1,8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1,419억 4,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43억 1,100만원 감소하였음.

[2025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 | 2025 (A) | 2024 (B) | 증 감 | |
|---|---|---|---|---|---|---|
| | | | | | 금액 (A-B) | 증가율 (A-B)/B |
| 재정 상태표 | 자 산 | | 190,082 | 289,413 | △99,331 | △34.3 |
| | | 금융자산 | 172,264 | 267,777 | △95,513 | △35.7 |
| | | 유무형자산 | 17,323 | 21,415 | △4,092 | △19.1 |
| | | 기타자산 | 496 | 221 | 275 | 124.4 |
| | 부 채 | | 15,685 | 15,218 | 467 | 3.1 |
| | | 차입부채 | 1,876 | 2,331 | △455 | △19.5 |
| | | 충당부채 | 13,809 | 12,888 | 921 | 7.1 |
| | | 기타부채 | - | - | - | - |
| | 순자산 | | 174,398 | 274,195 | △99,797 | △36.4 |
| 재정 운영표 | 프로그램순원가 | | 84,601 | 82,183 | 2,418 | 2.9 |
| | 재정운영순원가 | | 141,947 | 346,258 | △204,311 | △59.0 |
| | 재정운영결과 | | 141,947 | 346,258 | △204,311 | △59.0 |

##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2025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은 일반회계 1개로만 구성되어 있고, 회계·기금간 거래는 없음.

##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역동경제를 뒷받침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을 강화하는 등 총 55개 세부사업에서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였음.

2025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국고금 관리법」의 내용 및 취지에도 불구하고 출납공무원이 건당 500만원을 초과하여 관서운영경비를 집행하고, 동일·유사한 원인행위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건으로 분할하여 집행하였으며, 배정된 예산규모를 초과하여 출장을 수행하고 부족분을 전용 등에 의해 사후적으로 충당하는 등 예산 관련 지침에 위반되는 부적절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주요세목인 과징금·과태료 및 가산금의 수납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한 상황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미수납된 체납 세입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수납실적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제도 도입 취지 및 해외 주요국의 운영 사례를 고려하여 과징금 감면율이 기업의 조사 기여도에 비례하게 설정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셋째,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법 위반행위 적발 과정에서 내부고발 등 신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집행실적은 연례적으로 부진하였는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능화된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의 유인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넷째,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사건 중 법령상의 처리기간을 도과하여 처리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평균 처리기간이 긴 유형의 사건을 중심으로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Ⅱ. 사업별 검토

## 【총 괄】

## 1. 예산 관련 법령 및 지침의 내용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가. 개 요

「국고금 관리법」 제24조에 따르면, 출납공무원은 관서운영경비(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기존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를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만 가능함.[2)]

이에 동법 시행령 제31조제1호 및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등에서는 출납공무원이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 중 운영비(210목)의 최고금액을 건당 500만원으로 설정하였음.[3)]

---

2) 「국고금 관리법」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제22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이하 "관서운영경비"라 한다)는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⑥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지급절차 및 정부구매카드의 사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비(복리후생비·학교운영비·일반용역비 및 관리용역비는 제외한다)·특수활동비·안보비·정보보안비 및 업무추진비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경비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① 영 제31조제1호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최고금액은 건당 500만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고금 관리법」 등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 예산과목 | 범위 |
|---|---|
| 운영비(210) |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br>(단, 공과금 및 위원회 참석비, 선거관련 용품 제작·인쇄비용·우편요금, 청사임차료, 기업특별회계의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는 금액 제한 없음).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한편 동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5조에서는 지출원인행위를 법령이나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 내에서 실시할 것과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 또한 재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시할 것을 규정하였음.[4)]

## 나. 검토의견

**첫째, 「국고금 관리법」의 내용 및 취지에도 불구하고 출납공무원이 건당 500만원을 초과하여 관서운영경비를 집행하거나, 동일·유사한 원인행위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건으로 분할하여 집행하는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였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025. 12. 9.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정보화)' 사업의 일반수용비(210-01목)에 속하는 관서운영경비 1건은 출납공무원에 의해 건당 50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되었음.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건당 500만원을 초과하여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한 현황]

(단위: 원)

| 세부사업 | 목-세목 | 지급목적 | 결의일 | 지급액 |
|---|---|---|---|---|
| 소비자종합지원 시스템 운영(정보화) | 210-01 | 소비자24 오프라인 홍보물품 | 2025.12.9. | 5,039,980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4) 「국고금 관리법」
제20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이나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25조(지출원인행위의 제한) ① 법 제21조에 따라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국가재정법」 제43조의2에 따라 재배정된 예산의 범위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심사보고서 인쇄와 같이 동일·유사한 원인행위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건으로 분할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음.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유사한 원인행위에 대한 분할 집행 현황]

(단위: 원)

| 세부사업명 | 목-세목 | 지급목적 | 결의일 | 지급액 |
|---|---|---|---|---|
|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 | 210-01 | 심사보고서 인쇄 | 2025.9.1. | 3,540,900 |
| | | | | 4,996,200 |
| 기업거래결합심사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 210-01 | 심사보고서 인쇄 | 2025.4.10. | 4,420,900 |
| | | | | 4,327,400 |
| | | 심사보고서 인쇄 | 2025.6.4. | 3,934,700 |
| | | | 2025.6.11. | 3,287,900 |
| | | 심사보고서 인쇄 | 2025.12.30. | 2,506,900 |
| | | | | 2,700,500 |
| 기획조정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 210-01 | 국무위원후보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요구자료 인쇄비 | 2025.7.22. | 3,593,700 |
| | | | | 3,171,300 |
| | | 2026년판 공정거래관련법규집 구매 | 2025.12.29. | 4,400,000 |
| | | | 2025.12.30. | 1,100,000 |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서면질의 답변서 외 인쇄비 | 2025.12.30. | 4,950,000 |
| | | | 2025.12.31. | 4,950,000 |
|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시책추진 | 210-01 | 심사보고서 인쇄 | 2025.4.10. | 4,180,000 |
| | | | | 2,695,000 |
| | | 심사보고서 인쇄 | 2025.10.13. | 3,379,200 |
| | | | 2025.10.15. | 3,480,400 |
| 사익편취행태개선 | 210-01 | 심사보고서 인쇄 | 2025.4.30. | 4,906,000 |
| | | | | 2,530,000 |
| | | 심사보고서 인쇄 | 2025.5.14. | 2,354,000 |
| | | | | 4,763,000 |
| | | | | 4,587,000 |
| | | | | 1,837,000 |
| | | 대기업집단 설명회 인쇄비 | 2025.5.29. | 4,576,000 |
| | | | | 3,811,500 |
| | | 심사보고서 인쇄 | 2025.10.13. | 4,950,000 |
| | | | | 3,520,000 |
| 선진소비자정책 추진 | 210-01 |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 안건 책자 인쇄비 및 회의물품 대금 | 2025.10.1. | 4,158,000 |
| | | | | 877,800 |

(단위: 원)

| 세부사업명 | 목-세목 | 지급목적 | 결의일 | 지급액 |
|---|---|---|---|---|
| 시장감시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 210-01 | 심사보고서 인쇄 | 2025.4.30. | 1,160,500 |
| | | | | 3,355,000 |
| | | | | 2,675,200 |
| 카르텔 환경개선 | 210-01 | 심사보고서 인쇄 | 2025.2.24. | 4,406,600 |
| | | | | 1,190,200 |
| | | | | 4,875,200 |
| | | 심사보고서 인쇄 | 2025.3.6. | 1,195,700 |
| | | | | 3,533,200 |
| | | | | 3,315,400 |
| | | 심사보고서 인쇄 | 2025.4.1. | 772,200 |
| | | | | 4,922,500 |
| | | | | 4,504,500 |
| | | | | 4,862,000 |
| | | | | 4,904,900 |
| | | 심사보고서 인쇄 | 2025.4.11. | 4,660,700 |
| | | | | 2,299,000 |
| | | 심사보고서 인쇄 | 2025.5.27. | 3,865,400 |
| | | | | 3,033,800 |
| | | | | 3,619,000 |
| | | 심사보고서 인쇄 | 2025.9.19. | 3,738,900 |
| | | | | 3,040,400 |
| | | | | 4,302,100 |
| | | | | 3,716,900 |
| | | | | 3,877,500 |
| | | 심사보고서 인쇄 | 2025.10.14. | 1,149,500 |
| | | | | 3,865,400 |
| | | | | 3,339,600 |
| | | | | 1,962,400 |
| | | | | 1,841,400 |
| | | 심사보고서 인쇄 | 2025.11.11. | 2,511,300 |
| | | | | 2,625,700 |
| | | | | 2,511,300 |
| | | | | 3,441,900 |
| | | 심사보고서 인쇄 | 2025.11.21. | 1,449,800 |
| | | | | 1,980,000 |
| | | | | 3,986,400 |
| | | | | 976,800 |
| | | 심사보고서 인쇄 | 2025.12.22. | 4,854,300 |
| | | | | 2,022,900 |

주) 같은 날에 집행된 건 중 동일성이 낮은 집행 건(ex: 서로 다른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쇄 등)의 경우 작성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는 업무수행에 지장을 유발하지 않도록 일정 금액 이하 경비에 한하여 기존 지급 절차의 예외를 설정한 관서운영경비 제도를 사실상 우회한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① 건당 50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한 건의 경우 홍보물품의 순 제작비는 494만 1,200원이었으나 결제 과정에서 배송비가 추가 발생하여 의도치 않게 법령상 기준액을 초과하게 되었으며, ② 심사보고서 인쇄 등과 같이 동일·유사성이 있음에도 2회 이상 분할되어 집행된 건의 경우 추가 인쇄 필요분 발생 등에 따라 신속한 업무 집행을 위하여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기획조정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사업의 12월 30일 집행내역, '카르텔 환경개선' 사업의 4월 1일 집행내역과 같이 같은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쇄를 49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같은 날 여러 차례 반복 집행한 점, '카르텔 환경개선' 사업의 4월 1일, 9월 19일, 10월 14일, 11월 11일, 11월 21일 집행내역과 같이 법령상 관서운영경비 지출액 상한의 2배를 상회하는 1,000만원 이상의 건을 4회 이상에 걸쳐 분할 집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상기한 모든 집행내역을 단순한 착오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사정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분할 집행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이 「국고금 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담당 직원에 대해 관련 규정 및 사례 교육 등을 철저히 실시하는 등 주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배정된 예산규모를 초과하여 출장을 수행한 후 부족분을 전용 등에 의해 사후적으로 충당하는 부적절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공정거래위원회의 2025년 출장 수행 내역을 살펴보면, 경비 부족을 이유로 419건의 출장에 대해 배정된 예산규모 대비 1억 3,968억원을 초과 집행한 후 타 사업의 예산액을 활용하여 사후적으로 정정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음.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 여비의 초과 집행 및 사후적 전용 현황]

(단위: 건, 원)

| 세부사업명 | 출장 기간 | 출장 건수 | 초과 집행액 |
|---|---|---|---|
|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 | 9.1.~9.3. | 5 | 2,642,520 |
| 광주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 11.12.~11.28. | 20 | 2,510,900 |
| 기관운영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 11.1. | 2 | 43,387,040 |

(단위: 건, 원)

| 세부사업명 | 출장 기간 | 출장 건수 | 초과 집행액 |
|---|---|---|---|
| 기업거래결합심사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 10.13.~10.16. | 1 | 10,067,890 |
| 기업집단감시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 12.8.~12.19. | 25 | 9,678,180 |
| 기획조정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 10.31.~11.19. | 74 | 11,120,700 |
| | 11.20.~12.3. | 39 | 6,306,180 |
|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시책추진 | 9.2.~10.1. | 24 | 2,402,120 |
| | 9.29.~10.17. | 19 | 3,345,840 |
|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 | 11.3.~12.5. | 64 | 14,674,360 |
| 서울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 9.25.~11.4. | 59 | 3,938,000 |
| | 12.3.~12.16. | 31 | 1,938,540 |
| 소비자정책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 11.1~11.8. | 1 | 19,804,040 |
| 시장감시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 12.8.~12.19. | 10 | 1,001,540 |
| 카르텔조사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 11.14.~12.24. | 29 | 5,226,230 |
| 행정소송수행 | 11.13.~11.25. | 16 | 1,643,120 |
| 계 | | 419 | 139,687,200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여비를 월별 일괄 정산·집행함에 따라 출장이 모두 완료된 이후에 예산 부족을 사후적으로 인지하게 되어 예산 범위 초과 집행 후 전용 등이 발생하였다는 입장이나, 이러한 예산 운용은 지출원인행위를 법령이나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 내에서 실시할 것을 규정한 「국고금 관리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5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사전에 출장수요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여 출장 경비의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예산 전용 등에 의해 부족분을 충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국고금 관리법」의 관련 내용을 고려하여 사후적 전용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일반회계】

〈세 입〉

## 2. 과징금·과태료 및 가산금: 세입 수납실적 제고방안 마련 필요 등

### 가. 개 요

**‘과징금’** 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법 위반 관련 매출액 및 위반기간 등을 고려하여 부과되는 제재금 등으로, 2025년 징수결정액 7,926억 3,300만원 중 3,636억 4,800만원이 수납(수납률 45.9%)되고 4,289억 8,5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5)]

[2025년도 과징금 결산]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5년도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징수 결정액(B) | 수납액 (C) | 미수납액 | 불납 결손액 | 수납률 (C/B)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과징금 | 534,811 | 534,811 | 792,633 | 363,648 | 428,985 | - | 45.9 | 605,069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과태료’** 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을 위반하거나 조사방해·허위자료 등을 제출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질서벌로, 2025년 징수결정액 221억 300만원 중 134억 7,200만원이 수납(수납률 61.0%)되고 86억 3,1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6)]

5) 일반회계-과징금(56-565)(운영지원과)

6) 일반회계-과태료(56-563)(운영지원과)

[2025년도 과태료 결산]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5년도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징수 결정액(B) | 수납액 (C) | 미수납액 | 불납 결손액 | 수납률 (C/B)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과태료 | 2,705 | 2,705 | 22,103 | 13,472 | 8,631 | - | 61.0 | 2,705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가산금'** 은 과징금 및 과태료의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제재적 성격으로 금전적 부담을 주는 행정벌로, 2025년 징수결정액 100억 1,500만원 중 7,400만원이 수납(수납률 0.7%)되고 99억 4,1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7)]

[2025년도 가산금 결산]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5년도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징수 결정액(B) | 수납액 (C) | 미수납액 | 불납 결손액 | 수납률 (C/B)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가산금 | 496 | 496 | 10,015 | 74 | 9,941 | - | 0.7 | 496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첫째, 주요세목인 과징금·과태료 및 가산금의 수납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한 상황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미수납된 체납 세입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수납실적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세입과목인 과징금·과태료 및 가산금의 수납률은 각각 45.9%, 61.0%, 0.7%로 저조하였음.[8)]

과목별로 살펴보면, 과징금의 2025년 수납액은 3,636억 4,800만원, 수납률은 45.9%로 2024년(수납액 1,696억 2,700만원, 수납률 23.1%) 대비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미수납액의 규모가 수납액을 상회하였음.

7) 일반회계-가산금(58-581)(운영지원과)

8)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과태료의 경우 징수결정액에서 해당 연도에 납부 대상이 아닌 납기미도래액 등을 제외한 실질 수납률은 각각 82.0%, 86.4%라고 답변하였음.

[최근 5년간 과징금 징수·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

| 연도 | 예산액 | | 예산 현액 | 징수 결정액(B) | 수납액 (C) | 수납률 (C/B) | 미수납액 | 불납 결손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2022 | 387,907 | 387,907 | 387,907 | 1,203,120 | 669,885 | 55.7 | 533,030 | 204 |
| 2023 | 417,067 | 417,067 | 417,067 | 837,557 | 552,104 | 65.9 | 285,151 | 302 |
| 2024 | 445,557 | 445,557 | 445,557 | 735,182 | 169,627 | 23.1 | 565,158 | 396 |
| 2025 | 534,811 | 534,811 | 534,811 | 792,633 | 363,648 | 45.9 | 428,985 | - |
| 2026 | 605,069 | 605,069 | 605,069 | - | - | - | - | -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과태료의 2025년 수납액은 134억 7,200만원, 수납률은 61.0%로 과징금과 마찬가지로 2024년(수납액 17억 2,900만원, 수납률 45.3%) 대비 증가하였으나, 미수납액 규모 또한 86억 3,100만원으로 2024년(20억 8,300만원) 대비 300% 이상 대폭 증가하였음.

[최근 5년간 과태료 징수·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

| 연도 | 예산액 | | 예산현액 | 징수 결정액(B) | 수납액 (C) | 수납률 (C/B) | 미수납액 | 불납 결손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2022 | 1,887 | 1,887 | 1,887 | 3,733 | 1,976 | 52.9 | 1,757 | - |
| 2023 | 2,665 | 2,665 | 2,665 | 4,031 | 2,165 | 53.7 | 1,866 | - |
| 2024 | 2,705 | 2,705 | 2,705 | 3,812 | 1,729 | 45.3 | 2,083 | - |
| 2025 | 2,705 | 2,705 | 2,705 | 22,103 | 13,472 | 61.0 | 8,631 | - |
| 2026 | 2,705 | 2,705 | 2,705 | - | - | - | - | -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마지막으로 가산금의 2025년 수납액은 7,400만원, 수납률은 0.7%로, 2024년(수납액 2억 7,400만원, 수납률 2.7%) 대비 크게 감소하여 최근 4년 중 가장 저조하였음.

[최근 5년간 가산금 징수·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

| 연도 | 예산액 | | 예산 현액 | 징수 결정액(B) | 수납액 (C) | 수납률 (C/B) | 미수납액 | 불납결손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2022 | 391 | 391 | 391 | 10,645 | 653 | 6.1 | 9,992 | - |
| 2023 | 415 | 415 | 415 | 10,245 | 326 | 3.2 | 9,919 | - |
| 2024 | 473 | 473 | 473 | 10,184 | 274 | 2.7 | 9,910 | - |
| 2025 | 496 | 496 | 496 | 10,015 | 74 | 0.7 | 9,941 | - |
| 2026 | 496 | 496 | 496 | - | - | - | - | -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체납 발생 경과 기간에 따른 미수납 현황을 살펴보면, 5년 이상의 장기 미수납 건의 비중이 상당하여 수납률 저조 추세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음. 특히 가산금은 과징금·과태료의 체납에 대해 사후적으로 부과하는 행정벌이므로, 과징금·과태료의 미수납이 장기화될수록 가산금의 미수납 또한 장기화될 수 있음.

[2025년 과징금·과태료 및 가산금의 체납 발생 경과 기간에 따른 미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

| 체납발생경과기간 | 과징금 | | | 과태료 | | | 가산금 | | |
|---|---|---|---|---|---|---|---|---|---|
| | 건수 | 금액 | 비율 | 건수 | 금액 | 비율 | 건수 | 금액 | 비율 |
| 1년 미만 | 28 | 2,371 | 3.0 | 70 | 150 | 7.1 | 4 | 32 | 0.3 |
| 1년 이상 2년 미만 | 18 | 4,794 | 6.0 | 128 | 233 | 11.0 | 6 | 210 | 2.1 |
| 2년 이상 3년 미만 | 26 | 13,563 | 17.0 | 57 | 143 | 6.8 | 3 | 2 | 0.1 |
| 3년 이상 4년 미만 | 32 | 17,238 | 21.6 | 51 | 111 | 5.3 | 4 | 36 | 0.4 |
| 4년 이상 5년 미만 | 23 | 10,571 | 13.2 | 45 | 173 | 8.2 | 136 | 9,597 | 96.5 |
| 5년 이상 10년 미만 | 80 | 21,786 | **27.3** | 375 | 1,152 | **54.6** | 8 | 3 | 0.1 |
| 10년 이상 15년 미만 | 20 | 6,289 | **7.9** | 47 | 136 | **6.4** | 19 | 10 | 0.1 |
| 15년 이상 | 33 | 3,233 | **4.0** | 3 | 15 | **0.7** | 10 | 51 | 0.5 |
| 합 계 | 260 | 79,845 | 100.0 | 776 | 2,113 | 100.0 | 190 | 9,941 | 100.0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그러나 과징금·과태료 징수활동을 살펴보면, 적극적인 징수활동인 납부독촉·징수조사·압류보다는 소극적인 징수활동인 재산조회가 징수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최근 5년간 유형별 과징금 징수활동 및 실적 현황]

(단위: 건)

| 연도 | 과징금 징수활동(건) | | | | |
|---|---|---|---|---|---|
| | 납부독촉 등 | 재산조회 | 징수조사 | 압류 | 계 |
| 2021 | 284 | 308 | 65 | 70 | 727 |
| 2022 | 387 | 352 | 30 | 55 | 824 |
| 2023 | 43 | 939 | 20 | 41 | 1,043 |
| 2024 | 47 | 738 | 20 | 18 | 823 |
| 2025 | 45 | 535 | 20 | 15 | 615 |

주) '납부독촉 등'의 경우 2022년까지는 사업자별 반복 독촉 실적을 포함하여 관리하였는데, 실적의 과다 산정 문제가 제기된 바 있어 2023년부터는 사업자별 반복 독촉 실적이 포함되지 않음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최근 5년간 유형별 과태료 징수활동 및 실적 현황]

(단위: 건)

| 연도 | 과태료 징수활동(건) | | | | |
|---|---|---|---|---|---|
| | 납부독촉 등 | 재산조회 | 징수조사 | 압류 | 계 |
| 2021 | 122 | 21 | - | 20 | 163 |
| 2022 | 134 | 320 | - | 27 | 481 |
| 2023 | 80 | 2,010 | 73 | 75 | 2,238 |
| 2024 | 146 | 1,974 | 59 | 24 | 2,203 |
| 2025 | 73 | 1,798 | 80 | 20 | 1,971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등의 분할납부 및 납기연장, 연도 말 부과에 따른 연내 미수납, 불복기업의 쟁송 및 법원의 집행정지 등에 따른 징수유예 등이 발생하여 징수 불가능한 미수납액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입장이나,[9] 이를 고려하여도 5년 이상의 장기 미수납 건의 비중이 상당한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특히 2026년 불공정행위·담합의 억지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2026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원이 전년 대비 크게 증원(647명 → 1,052명)되고, 2026년 6월 말 기준 3개 사건의 과징금 부과액의 합이 8,119억원으로 2025년 징수결정액을 상회하였는바 2026년 이후에도 과징금 징수결정액 및 미수납액 규모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9)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과태료 결산의 경우 12월에 부과하여 2026년 1월 징수 완료한 이행강제금(64억 7,400만원) 건으로 인해 2025년 말 기준 미수납액 규모가 급증한 측면이 있으며, 이를 제외한 미수납액 규모는 21억 5,700만원으로 2024년 이전과 유사하다는 입장임.

[2026년 부과한 과징금 중 주요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번 | | 피심인명 | 부과일자 | 납부기한 | 부과액 |
|---|---|---|---|---|---|
| 1 | 3개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 A | 2026. 3. 5. | 2026. 5. 15. | 138,362 |
| | | B | | | 130,251 |
| | | C | | | 127,378 |
| | 소 계 | | | | 395,991 |
| 2 |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 | D | 2026. 2. 12. | 2026. 4. 28. | 69,747 |
| | | E | | | 63,801 |
| | | F | | | 51,535 |
| | | G | | | 86,931 |
| | 소 계 | | | | 272,014 |
| 3 | 인쇄용지 관련 6개 제지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 H | 2026. 6. 9. | 2026. 8. 19. | 217 |
| | | I | | | 28,653 |
| | | J | | | 57,473 |
| | | K | | | 49,057 |
| | | L | | | 8,538 |
| | 소 계 | | | | 143,938 |
| **계** | | | | | **811,943** |

주) 3개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최초 고지서 발급에 의한 납부기한은 2026. 5. 15. 이었으나, 이후 분할납부 신청이 인용되어 마지막 회차의 납부기한은 2028. 5. 15. 로 연장되었음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연례적 수납률 저조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미수납된 체납 세입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수납실적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둘째,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와해·억제 목적으로 도입한 자진신고 과징금 감면제도는 기업의 조사 기여도와 무관히 1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과징금 전액을, 2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과징금 반액을 감경하고 있는바, 제도 도입 취지 및 해외 주요국의 운영 사례를 고려하여 과징금 감면율이 기업의 조사 기여도에 비례하게 설정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공정거래위원회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4조제1항[10]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한 자 등에 대해 과징금을 감면하는 제도(이하 "리니언시(Leniency) 제도"라 함)를 1997년 도입한 바 있음.

리니언시 제도는 은밀하게 진행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증거를 원활하게 확보하는 한편 사업자 간 불신 조장을 유도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와해·억제하려는 취지로 운영되는 것으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증거제공 등의 방식으로 조사에 적극 협조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환급되며, 환급액은 과오납금으로 취급되어「국고금 관리법」등에 따라 징수결정액 및 결산상 수납액에서 차감 처리됨.[11]

리니언시 제도 운영 등에 따른 2025년 과징금 환급액은 113억 8,800만원으로 전년(75억 3,100만원) 대비 51.2% 증가하였으며, 전체 환급액(760억 8,800만원)의 15.0%를 차지하고 있음.

[연도별 과징금 수납액 및 환급액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 수납액(A) | 환급액(B) | | | | 재부과 금액(C) | 최종 환급액 (D=B-C) |
|---|---|---|---|---|---|---|---|
| | | | 행정소송 | 직권취소 | 자진신고 감면 등 기타 | | |
| 2021 | 796,353 | 10,422 | 9,850 | - | 572 | 3,178 | 7,244 |
| 2022 | 816,962 | 147,078 | 81,440 | 61,031 | 4,606 | 49,851 | 97,227 |
| 2023 | 628,369 | 76,266 | 65,625 | - | 10,641 | 19,788 | 56,478 |
| 2024 | 301,567 | 131,940 | 124,409 | - | 7,531 | 32,974 | 98,966 |
| 2025 | 439,736 | 76,088 | 58,209 | 6,491 | 11,388 | 236 | 75,852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10)「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수입금의 환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소속 전·현직 임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42조에 따른 시정조치나 제43조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제129조에 따른 고발을 면제할 수 있다.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
2.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의결에 협조한 자

11)「국고금 관리법」
제16조(수입금의 환급) 수입으로서 납입된 금액 중 법률에 따라 환급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과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과오납금의 반환 등) ① 수입징수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과오납금(과오납금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수입과목·수입연도 및 과오납금액 등을 확인하여 과오납금의 반환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한편 현행 리니언시 제도는 가장 먼저 부당한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한 자(이하 “1순위 자진신고자”라 함)에 대해 과징금 전액(100%)을 면제하고, 1순위 자진신고자를 제외한 자 중 가장 먼저 부당한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한 자(이하 “2순위 자진신고자”라 함)에 대해 과징금 50%를 감경하고 있음.

[자진신고자 순위별 감면 요건 및 내용]

| 구분 | 1순위 자진신고자 | 2순위 자진신고자 |
|---|---|---|
| 감면 요건 |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제공한 **최초의 자**로서, 조사 과정에 성실하게 협조하며 자진신고한 부당행위를 중단한 자<br>(단, 부당행위를 강요하였거나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을 것) | 부당한 공동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제공한 **두 번째의 자**로서, 조사 과정에 성실하게 협조하며 자진신고한 부당행위를 중단한 자(단, 부당행위를 강요하였거나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을 것) |
| 감면 내용 | 과징금·시정명령·고발 면제 | 과징금(50%) 및 시정명령 감경, 고발 면제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이와 같이 현행 제도 하에서 1순위 자진신고자와 2순위 자진신고자 간 감면 내용이 상이하게 설계된 것은, 은밀하게 진행되어 경쟁당국이 선제적으로 포착하지 못한 부당행위에 대해 가담 기업의 자발적인 와해·이탈을 유도하여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조사 기여도에 따라 감면 내용을 차등화한 것으로 보임.

즉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행위를 선제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사건은 자진신고 등 자발적인 와해·이탈이 없었다면 조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으므로,[12] 해당 사건의 1순위 자진신고자는 은닉된 부당행위의 존재를 경쟁당국에 최초로 인지시킨 자라는 측면에서 2순위 자진신고자에 비해 조사 기여도가 높다고 할 것이며, 이를 고려하면 1순위 자진신고자가 2순위 자진신고자 대비 높은 수준의 과징금 감면율을 적용받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자체적으로 부당행위를 인지하여 조사를 개시한 이후 1순위로 자진신고를 한 자는 신고 시점이 앞섰다는 점만으로 2순위 자진신고자에 비해 조사 기여도가 높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신고 시기가 비슷하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2순위 자진신고자가 1순위 자진신고자보다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하여 높

12) 실제로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에 대한 과징금 부과 건수 중 리니언시 제도가 적용된 건수의 비중은 2024년 기준 88.5%(52건 중 46건)로, 자진신고자의 협조 없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단독으로 조사에 착수하여 혐의를 입증하고 시정명령·과징금 등의 부과까지 이른 사건의 비중은 극히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보임.

은 기여도를 보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 하에서는 조사 개시 이후 1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과징금 전액을 면제하고 있는바, 과징금 감면율이 기업의 조사 기여도에 비례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한편 현행 제도가 1순위 자진신고자뿐만 아니라 2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도 과징금의 50%를 감경하도록 설계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실무상 1순위 자진신고자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원활한 사건처리를 위해 추가적인 자진신고자 및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상기한 자진신고 감면 요건을 살펴보면 2순위 자진신고자는 1순위 자진신고자와 달리 신고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이미 충분히 확보한 상황이어도 자진신고자로 인정될 수 있는데, 해당 상황에서 2순위 자진신고자의 조사 기여도가 과징금 50% 감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높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 하에서는 이들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과징금을 50% 감면하고 있는바, 이 역시 과징금 감면율이 기업의 조사 기여도에 비례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처럼 기업의 조사 기여도와 무관히 1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과징금 전액을, 2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과징금 반액을 감경하는 현행 리니언시 제도는, 조사 기여도가 미미한 기업에 대해서는 부당행위의 와해·억제가 아닌 부당행위에 대한 면책의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감면율이 정률로 설정되는 현행 방식 대신, 기업의 조사 기여도에 비례하여 감면율이 설정되는 방식을 채택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13)]

13)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과징금 감면률 관련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① EU는 2순위 자진신고자 중 주요한 추가 증거(significant added value)를 제공하는 자에 한하여 30%~50% 수준의 감면율을 적용하며, ② 영국은 2순위 자진신고자의 조사 협조 수준을 고려하여 50% 이내 수준에서 감면율을 유동적으로 적용하고, ③ 일본은 조사개시 이후 2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해 10%~30% 수준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등 해외 주요국 또한 자진신고자의 조사 협조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감면율을 유동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세 출〉

# 3.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사업: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필요

## 가. 개 요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사업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행위 중 신고로 인한 적발이 효과적인 14가지 유형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불공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32억원 중 13억 9,700만원이 집행(집행률 43.7%)되고 18억 300만원이 불용되었음.[14)]

[2025년도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내역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 | 3,470 | 3,470 | - | 46 | 3,516 | 1,711 | - | 1,805 | 2,074 |
|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 3,200 | 3,200 | - | - | 3,200 | 1,397 | - | 1,803 | 1,751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법위반행위 적발 과정에서 내부고발 등 신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집행실적은 연례적으로 부진하였는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능화된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의 유인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공정거래위원회는 소관 법률 위반행위 중 신고로 인한 적발이 효과적인 14가지 유형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이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

14) 일반회계-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1251-330)(시장감시국)

다수의 담합·불공정행위의 경우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루어지거나 증거확보가 쉽지 않아, 신고포상금을 통해 일반 시민이나 내부고발자의 불공정행위 신고를 유도하고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도모하려는 것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행위 유형]

| 관련 법률 | 행위 유형 | 시행시기 |
|---|---|---|
| 공정거래법 | ① 부당한 공동행위 | 2005. 4. |
| | ②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 |
| | ③ 부당한 지원행위 | |
| | ④ 신문고시 위반행위 | |
| | ⑤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 2010. 5. |
| | ⑥ 사원판매행위 | |
| | ⑦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 2017. 10. |
| | ⑧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시 국내계열사 누락행위 | 2021. 5. |
| 방문판매법 | ⑨ 미등록 다단계·후원방문 판매 | 2012. 11. |
| | ⑩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 |
| 대규모 유통업법 | ⑪ 시정명령 대상 규정 위반행위 | 2015. 8. |
| 하도급법 | ⑫ 대상 규정 위반행위 | 2016. 12. |
| 대리점법 | ⑬ 시정조치 대상 규정 위반행위 | 2018. 7. |
| 가맹사업법 | ⑭ 시정조치 대상 규정 위반행위 | 2018. 7.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그러나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신고포상금의 지급 실적은 2023년 이후 매년 감소 추세에 있음. 2023년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33억 6,200만원으로 당초예산을 초과하였으나, 2024년 지급액은 14억 1,500만원, 2025년 지급액은 13억 4,700만원으로 전년대비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도별 예산액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였음.

[연도별 신고포상금 및 신고 기반 과징금 관련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신고포상금 당초 예산(A) | 3,350 | 3,000 | 3,150 |
| 신고포상금 지급액(B) | 3,362 | 1,415 | 1,347 |
| 신고를 바탕으로 부과한 과징금액(C) | 321,120 | 46,047 | 59,492 |
| 총 과징금 부과액(D) | 391,567 | 422,600 | 340,178 |
| 신고포상금 집행률(=B/A) | 100.4% | 47.2% | 42.8% |
| 총 과징금 중 신고 기반 과징금 비중(=C/D) | 81.9% | 10.9% | 17.5%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전체 지급 건수도 2023년 67건, 2024년 37건, 2025년 34건으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행위유형별로도 '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2건), '미등록다단계'(2

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2건), ‘부당한 지원행위’(1건), ‘사행적판매원 확장금지’(1건), ‘하도급법 위반행위’(1건),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지급 실적 없음),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의무 위반행위’(지급 실적 없음) 등은 신고를 통한 적발의 중요성이 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포상금 지급 실적이 저조하였음.

[행위유형별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

(단위: 건, 백만원)

| 구분 |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부당한 공동행위 | 지급 건수 | 17 | 14 | 8 |
| | 지급액 | 3,214 | 898 | 1,289 |
|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 지급 건수 | 17 | 5 | 3 |
| | 지급액 | 75 | 3 | 5 |
| **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 | **지급 건수** | **2** | **-** | **-** |
| | **지급액** | **0.3** | **-** | **-** |
| **부당한 지원행위** | **지급 건수** | **-** | **1** | **-** |
| | **지급액** | **-** | **470** | **-** |
|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 지급 건수 | 2 | - | 4 |
| | 지급액 | 20 | - | 7 |
| 사원판매행위 | 지급 건수 | 2 | - | 1 |
| | 지급액 | 2 | - | 0.4 |
| **미등록다단계** | **지급 건수** | **1** | **-** | **1** |
| | **지급액** | **0.3** | **-** | **0.3** |
| **사행적판매원 확장금지** | **지급 건수** | **-** | **-** | **1** |
| | **지급액** | **-** | **-** | **2** |
|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 **지급 건수** | **1** | **1** | **-** |
| | **지급액** | **32** | **17** | **-** |
| **하도급법 위반행위** | **지급 건수** | **-** | **-** | **1** |
| | **지급액** | **-** | **-** | **4** |
|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 **지급 건수** | **-** | **-** | **-** |
| | **지급액** | **-** | **-** | **-** |
| 가맹거래법 위반행위 | 지급 건수 | 22 | 13 | 14 |
| | 지급액 | 8 | 24 | 40 |
| 대리점법 위반행위 | 지급 건수 | 3 | 2 | 1 |
| | 지급액 | 10 | 0.7 | 0.8 |
|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의무 위반행위** | **지급 건수** | **-** | **1** | **-** |
| | **지급액** | **-** | **2** | **-** |
| **지급 실적(합계)** | **지급 건수** | **67** | **37** | **34** |
| | **지급액** | **3,362** | **1,415** | **1,347** |
| | **예산액** | **3,350** | **3,000** | **3,150**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신고포상금의 신고 접수 건수를 사전에 예측할 수 없고 신고 후에도 사건의 조사·검토에 시일이 소요되는 등 집행액에 대한 정확한 예측 및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불가피하게 불용이 발생하였다면서, 2026년 신고포상금 예산액을 전년(32억원) 대비 대폭 감액 편성(17억 5,100만원)하였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디지털 기술 발전을 기반으로 한 지능형 담합[15] 사례를 비롯하여 공정거래 분야의 법위반행위 적발 과정에서 내부자의 신고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16], 최근 정부 정책 기조 또한 신고의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음[17]을 고려하면, 동 사업은 포상금 지급액의 축소가 아니라 내부자의 신고 유인 강화를 통한 집행 실적의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내부자의 신고 유인 강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였으므로(2026. 6. 18. 시행),[18] 향후 해당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15) 지능형 담합이란 기업들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명시적인 합의 없이도 가격, 물량, 입찰 정보 등을 동조화하는 새로운 형태의 반경쟁적 행위로, 인간의 명시적 의사소통 없이 알고리즘이 스스로 담합과 유사한 행위를 하므로 합의 증거가 거의 남지 않아 외부에서 담합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

16) 2026년 3월 적발된 돼지고기 납품가격 담합 과정에서 업체들은 수사기관 등 외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 대화방과 같은 기록이 남지 않는 메신저를 활용한 바 있고, 제분 7사 간 밀가루 담합은 2020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으나 일부 참여기업의 자진신고 등에 힘입어 2026년에 들어서야 비로소 과징금 부과 및 가격재결정 명령 등이 이루어졌음

17) 최근 금융위원회는 2026. 2. 25. 보도자료를 통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의 상한을 폐지하고 적발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규모가 작아도 일정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18)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포상금 주요 지급 기준(2026. 6. 18. 시행)]

<table>
<tr><th>행위유형</th><th>조치수준별 기본지급액 및 지급 기준</th><th>증거수준별 지급기준율</th><th>과징금 사전 한도액</th></tr>
<tr><td>부당한 공동행위</td><td rowspan="2">과징금의 최대 10%</td><td rowspan="3">최상: 100%<br>상: 80%<br>중: 50%<br>하: 30%</td><td rowspan="3">없음</td></tr>
<tr><td>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td></tr>
<tr><td>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의무 위반행위</td><td>고발 → 5억원<br>미고발 → 누락 계열사 당 100만원</td></tr>
</table>

# 4.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정보화) 사업: 연내 미지급금 지속 발생 및 차년도 예산을 활용한 사후 정산 반복 지양 필요

## 가. 개 요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정보화)’** 사업은 전국에 소재한 상담기관을 네트워크화하여 신속한 소비자상담을 제공하고 상담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43억 700만원 중 42억 7,9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3%)되고 2,800만원이 불용되었음.[19)]

[2025년도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정보화)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이·전용 등(B) | 예비비 (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정보화) | 3,527 | 3,527 | 50 | 730 | 4,307 | 4,279 | - | 28 | 3,877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에서는 신속한 소비자상담의 제공을 위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센터의 업무 중 운영에 관한 행정업무, 정보제공 및 위탁기관 관리 업무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고, 상담과 그에 대한 품질관리, 상담원 교육 등의 업무는 한국소비자원(전문분야 위주), 지방자치단체 및 소비자단체(일반분야 위주) 등에 위탁하였으며, 정보시스템 유지 및 관리는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하였음.

## 나. 검토의견

**상담위탁수당에 대한 추계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지급액 부족분을 차년도 예산으로 집행하는 등 「국가재정법」 상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집행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내 미지급 및 차년도 예산을 활용한 사후 정산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19) 일반회계-소비자상담센터 운영(정보화)(1451-620)(소비자정책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담업무 수행을 위탁한 소비자단체에 일반상담 건마다 4,500원, 피해처리 건마다 8,000원씩 상담위탁수당을 지급하였음. 그런데 2024년 이후 일반상담 및 피해처리 실적이 계획을 초과함에 따라 수당 예산이 부족하게 되어, 2024년 부족분은 2025년 예산으로, 2025년 부족분은 2026년 예산으로 지급하였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4년 일반상담 실적은 283,560건으로 계획(252,000건) 대비 31,560건을 초과하였고, 피해처리 실적은 126,447건으로 계획(120,750건) 대비 5,697건을 초과하였음. 2025년 일반상담 실적은 308,943건으로 계획(246,240건) 대비 62,703건을 초과하였고, 피해처리 실적은 165,509건으로 계획(111,490건) 대비 54,019건을 초과하였음.

[2021~2025년 소비자단체 일반상담 및 피해처리 건수 계획 대비 실적]

(단위: 건)

| 구분 |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일반상담 | 계획(A) | 450,000 | 350,000 | 320,000 | 252,000 | 246,240 |
| | 실적(B) | 290,440 | 235,301 | 252,091 | 283,560 | 308,943 |
| | 차이(=B-A) | △159,560 | △114,699 | △67,909 | 31,560 | 62,703 |
| 피해처리 | 계획(C) | 120,000 | 120,000 | 115,000 | 120,750 | 111,490 |
| | 실적(D) | 102,085 | 100,466 | 113,661 | 126,447 | 165,509 |
| | 차이(=D-C) | △17,915 | △19,534 | △1,339 | 5,697 | 54,019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소비자단체가 진행한 일부 상담 및 피해처리 건에 대한 수당 미지급분 1억 7,200만원을 2025년 예산으로 지급하였으며, 2025년에는 예비비(7억 3,000만원)와 전용(5,000만원)까지 활용하여 상담위탁수당 부족분을 충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여 일부 상담 및 피해처리 건에 대한 미지급분 6,500만원을 2026년 예산으로 지급하였음.

[2024~2025년 소비자단체 상담위탁수당 부족분 발생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해연도 지급소요(A) | 예산액(B) | 당해연도 부족분(=C=A-B) | 전년도 부족분(D) | 부족분 계(=C+D) | 부족분 충당 내역 |
|---|---|---|---|---|---|---|
| 2024 | 2,272 | 2,100 | 172 | - | 172 | 2025년 예산(172) |
| 2025 | 2,813 | 2,000 | 813 | 172 | 985 | 2026년 예산(65)<br>예비비(730)<br>전용(50)<br>교육 취소 등(40)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연도별 일반상담 및 피해처리 실적은 2022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예산 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이러한 증가 추세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결과, 상담위탁수당에 대한 추계의 정확성이 결여되어 매년 부족분이 발생하고 이를 차년도 예산으로 집행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임.

이와 같이 당해연도 사업비 부족분을 차년도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규정한「국가재정법」제3조[20]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차년도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담위탁수당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연내 미지급 및 차년도 예산을 활용한 사후 정산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0)「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5.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 사업: 분쟁조정 절차의 법정 처리기간 준수 필요 등

## 가. 개 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 사업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출연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27억 5,7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21)]

[2025년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한국공정거래 조정원 출연 | 12,757 | 12,757 | - | - | 12,757 | 12,757 | - | - | 14,509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중소사업자·소상공인의 피해구제 및 예방 등을 목적으로 분쟁조정, 정책연구·조사, 가맹·대리점 간 소송 및 상생 협력 지원,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 중 분쟁조정의 경우 공정, 가맹, 하도급, 유통, 약관, 대리점 등 6개 분야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월 1회 이상 분쟁조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조정을 유도함.

## 나. 검토의견

**첫째, 분쟁조정 사건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의 처리기간을 도과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평균 처리기간이 긴 유형의 사건을 중심으로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1) 일반회계-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1271-350)(경쟁정책국)

분쟁조정 사건의 처리기간과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7조[22]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분쟁당사자 양쪽이 기간 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90일)이 지나도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조정절차를 종료할 것을 규정하였음.

그런데 2023~2025년 연도별 분쟁조정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과 처리 건수를 살펴보면 평균 처리기간은 47 → 49 → 57일로 매년 증가하였고, 처리기간이 90일을 초과한 사건의 비율도 6.6% → 6.7% → 11.8%로 매년 증가하였음.

[2023~2025년 연도별 분쟁조정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 및 처리 건수]

(단위: 일, 건)

| 구분 | 평균 처리기간 | 처리기간별 건수(비중) | | | |
|---|---|---|---|---|---|
| | | 30일 이내 | 30일 초과 90일 이내 | 90일 초과 | 계 |
| 2023 | 47 | 940(29.8%) | 2,002(63.6%) | 209(6.6%) | 3,151(100.0%) |
| 2024 | 49 | 966(25.2%) | 2,615(68.1%) | 259(6.7%) | 3,840(100.0%) |
| 2025 | 57 | 766(17.3%) | 3,123(70.9%) | 518(11.8%) | 4,407(100.0%)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유형별 분쟁조정 사건 중 처리기간이 90일을 초과한 사건 현황을 살펴보면, 하도급, 유통, 대리점 등의 분야에서 처리기간이 90일을 초과한 사건의 비율이 높았음. 특히 2025년 유통 분야의 경우 사건 수는 29개로 6개 분야 중 가장 적었으나, 처리기간이 90일을 초과한 사건의 비율은 34.5%로 6개 분야 중 가장 높았음.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7조(조정 등)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2. 제76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60일(분쟁당사자 양쪽이 기간 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90일로 한다)이 지나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2023~2025년 유형별 분쟁조정 사건 중 처리기간이 90일을 초과한 사건 현황]

(단위: 건, %)

| 구분 | 2023년 | | | 2024년 | | | 2025년 | | |
|---|---|---|---|---|---|---|---|---|---|
| | 전체 건수(A) | 90일 초과 건수(B) | 비율 (=B/A) | 전체 건수(C) | 90일 초과 건수(D) | 비율 (=D/C) | 전체 건수(E) | 90일 초과 건수(F) | 비율 (=F/E) |
| 공정 | 1,267 | 64 | 5.1 | 1,603 | 69 | 4.3 | 2,174 | 212 | 9.8 |
| 가맹 | 575 | 32 | 5.6 | 587 | 25 | 4.3 | 595 | 58 | 9.7 |
| **하도급** | **929** | **76** | **8.2** | **1,107** | **118** | **10.7** | **1,074** | **188** | **17.5** |
| **유통** | 26 | 0 | 0.0 | 29 | 3 | 10.3 | **29** | **10** | **34.5** |
| 약관 | 278 | 18 | 6.5 | 429 | 21 | 4.9 | 442 | 26 | 5.9 |
| **대리점** | **76** | **19** | **25.0** | **85** | **23** | **27.1** | **93** | **24** | **25.8**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분쟁 해소의 지연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조정시한을 명시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이 민사재판과 같은 고비용의 분쟁해결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소를 도모하는 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평균 처리기간이 긴 유형의 사건을 중심으로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둘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수지차 보전기관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수입의 비중이 극히 미미할 뿐만 아니라 수입 항목도 새로운 수입원이나 효율적인 자산 운영 등과 무관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는바, 자체수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수지차 보전기관 지정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기관 운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정부예산의 절감을 위해 기관의 지출예산 총액에서 기관 운영으로 발생하는 자체수입예산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을 출연금으로 지원받는 '수지차 보전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수지차 보전 방식으로 지원받는 공공기관의 지정 기준은 ① 자체수입이 안정적으로 발생하는 출연·보조기관으로서 ② 수지차 보전 방식으로 예·결산을 관리하는 것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효과적인 기관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상의 수지차 보전기관 지정 기준]

| 구분 | 관련 기준 |
|---|---|
| 신규 지정 기준 | 자체수입이 안정적으로 발생하는 출연·보조기관 중 수지차 보전 방식으로 예·결산을 관리하는 것이 예산 절감에 효과적인 기관 |

자료: 기획예산처,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p.24~25

그런데 수지차 보전기관 지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2021~2025년 결산 기준 자체수입이 수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2024년을 제외한 나머지 연도는 자체수입의 비중이 5% 미만에 그쳤으며, 2025년에는 1.2%로 최근 5년 중 가장 저조하였음.

[2021~2025년 결산 기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수입항목별 규모]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1 | | 2022 | | 2023 | | 2024 | | 2025 | |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정부 순지원액 | 9,822 | 95.6 | 11,452 | 95.2 | 12,442 | 98.5 | 12,841 | 92.2 | 13,931 | 98.8 |
| 출연금 | 9,433 | 91.8 | 10,976 | 91.2 | 11,657 | 92.3 | 11,742 | 84.3 | 12,757 | 90.5 |
| 위탁수입 | 389 | 3.8 | 476 | 4.0 | 785 | 6.2 | 1,099 | 7.9 | 1,174 | 8.3 |
| **자체수입** | **457** | **4.4** | **573** | **4.8** | **189** | **1.5** | **1,086** | **7.8** | **175** | **1.2** |
| 수입 계 | 10,279 | 100.0 | 12,025 | 100.0 | 12,631 | 100.0 | 13,927 | 100.0 | 14,106 | 100.0 |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는 경영혁신을 통한 새로운 수입원 발굴, 효율적인 자산 운영 등 특별한 노력으로 전년에 비해 자체수입을 확대하여 출연금 예산 절감에 기여한 경우 인센티브를 지원할 것을 규정하였으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자체수입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전기이월금·이자수입 등과 같이 새로운 수입원이나 효율적인 자산 운영 등과 무관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음.

[2021~2025년 결산 기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자체수입 관련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계획액 | 274 | 338 | 316 | 1,269 | 609 |
| 수납액 | 457 | 573 | 189 | 1,086 | 175 |
| 이월금 | 400 | 483 | 15 | 882 | 93 |
| 이자수입 | 13 | 58 | 107 | 115 | 65 |
| 잡이익 등 | 44 | 32 | 67 | 89 | 17 |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이와 같이 수지차 보전기관 지정에도 불구하고 자체수입 확보가 미흡한 사유에 대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수입재원 중 자체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재원은 연구용역뿐이며, 이마저도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연구센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정책 수립 및 법 집행 지원을 위한 연구를 최우선으로 수행하고 있어 연구센터 및 인력 여건 상 외부 연구용역 과제 발굴 및 연구용역 수주 대상 확대가 어렵다는 입장임.

그러나 새로운 수입원의 탐색 노력 없이 확보 가능한 자체수입원을 연구용역과 같은 기존 수입원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자체수입원을 적극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한 수지차 보전기관 지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수지차 보전기관의 지정 취지를 고려하여 자체수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수지차 보전기관 지정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기관 운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6. 한국소비자원 출연 사업: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절차의 법정 처리 기간 준수 필요

## 가. 개 요

**‘한국소비자원 출연’** 사업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소비자원에 출연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536억 4,6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23)]

[2025년도 한국소비자원 출연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한국소비자원 출연 | 53,696 | 53,696 | - | △50 | 53,646 | 53,646 | - | - | 57,146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권익 및 합리적인 소비생활 유도 등을 목적으로 소비자 피해구제·분쟁조정, 정책연구·조사, 소비자 정보제공 및 역량 강화, 소비자안전 및 시험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 중 소비자 피해구제·분쟁조정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민원 중 단순문의·불만 해소 목적과 같이 센터에서 자체 종결이 가능한 건을 제외한 민원을 처리하는 것으로, 먼저 피해구제 절차를 개시하고 필요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함.

## 나. 검토의견

**소비자 피해구제·분쟁조정 사건 중 「소비자기본법」 상의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평균 처리기간이 긴 유형의 사건을 중심으로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3) 일반회계-한국소비자원 출연(1461-630)(소비자정책국)

피해구제 사건의 처리기간과 관련하여, 「소비자기본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24]는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되 피해의 원인규명 등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피해구제 신청 사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또한 분쟁조정 사건의 처리기간과 관련하여, 「소비자기본법」 제66조[25]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때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그런데 2023~2025년 연도별 피해구제·분쟁조정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과 처리 건수를 살펴보면 평균 처리기간은 증가 추세, 30일 이내 처리율은 감소 추세에 있음.

구체적으로 피해구제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17.2일 → 19.9일 → 21.9일로 매년 증가하였고, 30일 이내 처리율은 91.3% → 83.0% → 78.8%로 매년 감소하였음. 분쟁조정 사건 또한 평균 처리기간은 85일 → 91일 → 132일로 매년 증가하였고, 30일 이내 처리율은 21.3% → 22.8% → 15.7%로 2024년 소폭 반등하였으나 2025년 크게 감소하였음.

---

24) 「소비자기본법」
제58조(처리기간) 원장은 제5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의 원인규명 등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피해구제신청사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44조(처리기간의 연장) 법 제5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말한다.
1. 의료 관련 사건
2. 보험 관련 사건
3. 농업 및 어업 관련 사건
4. 그 밖에 피해의 원인규명에 시험·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사건

25) 「소비자기본법」
제66조(처리기간) ① 조정위원회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 및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23~2025년 연도별 피해구제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 및 처리 건수]

(단위: 일, 건)

| 구분 | 평균 처리기간 | 처리기간별 건수(비중) | | | |
|---|---|---|---|---|---|
| | | 30일 이내 | 30일 초과 90일 이내 | 90일 초과 | 계 |
| 2023 | 17.2 | 43,835(91.3%) | 4,161(8.7%) | 1(0.0%) | 47,997(100.0%) |
| 2024 | 19.9 | 47,433(83.0%) | 9,744(17.0%) | - | 57,177(100.0%) |
| 2025 | 21.9 | 49,611(78.8%) | 13,385(21.2%) | - | 62,996(100.0%)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23~2025년 연도별 분쟁조정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 및 처리 건수]

(단위: 일, 건)

| 구분 | 평균 처리기간 | 처리기간별 건수(비중) | | | |
|---|---|---|---|---|---|
| | | 30일 이내 | 30일 초과 90일 이내 | 90일 초과 | 계 |
| 2023 | 85 | 1,104(21.3%) | 1,823(35.2%) | 2,253(43.5%) | 5,180(100.0%) |
| 2024 | 91 | 1,592(22.8%) | 2,177(31.2%) | 3,200(46.0%) | 6,969(100.0%) |
| 2025 | 132 | 1,362(15.7%) | 1,984(22.9%) | 5,336(61.4%) | 8,682(100.0%)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023년 대비 2025년 피해구제 건수와 분쟁조정 접수 건수가 각각 31.2%, 113.9%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처리 인력 규모는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119명 → 123명)됨에 따라 처리기간 장기화가 불가피하였던 측면이 있으며, 피해구제의 경우 총 60일의 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분쟁조정의 경우 연장 횟수 제한이 없으므로 2023년 처리기간이 90일을 초과한 1건을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

그러나 기간이 연장된 모든 사건이 법률상 '피해의 원인규명 등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사건'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사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으며, 법령 위반 여부와 별개로 권리구제 및 분쟁 해소의 지연은 민사재판과 같은 고비용의 분쟁해결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소를 도모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불법·부당한 행위를 한 사업자 등이 사태 해결을 회피할 시간적 여유를 제공함으로써 오히려 권리구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평균 처리기간이 긴 유형의 사건을 중심으로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기　타】

## 7.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시정요구 29건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시정 3건, 주의 6건, 제도개선 21건 등이었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 구분 | 변상 | 징계 | 시정 | 주의 | 제도개선 | (중복) | 계 |
|---|---|---|---|---|---|---|---|
| 결산 | - | - | 3 | 6 | 21 | 1 | 29 |
| 예비비 | - | - | - | - | - | - | - |
| 합계 | - | - | 3 | 6 | 21 | 1 | 29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2월 기준으로 시정요구사항 29건에 대해 27건을 조치완료(조치율 93.1%)하고 2건을 조치 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 구분 | 시정요구사항(a) | 조치완료(b) | 조치율(b/a) | 조치중(a-b) |
|---|---|---|---|---|
| 결산 | 29 | 27 | 93.1 | 2 |
| 예비비 | - | - | - | - |
| 합계 | 29 | 27 | 93.1 | 2 |

# 금융위원회

# Ⅰ. 개 관

## 1. 결산 개요

### 가. 총수입·총지출

2025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5,951억 6,400만원(△15.2%)이 적은 3조 3,257억 3,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조 914억 1,100만원(△37.1%)이 감소됨.[1)]

[2025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4회계연도 | | | | 2025회계연도 | | | | 전년대비 (D-B) |
|---|---|---|---|---|---|---|---|---|---|
| | 예산액 | | 결산 (B) | 예산대비 (B-A) | 예산액 | | 결산 (D) | 예산대비 (D-C) | |
| | 본예산 | 추경(A) | | | 본예산 | 추경(C) | | | |
| 예 산 | 89,629 | 89,629 | 144,616 | 54,987 | 101,107 | 101,107 | 125,070 | 23,963 | △19,546 |
| 기 금 | 4,332,488 | 4,332,488 | 5,272,531 | 940,043 | 3,819,793 | 3,819,793 | 3,200,666 | △619,127 | △2,071,865 |
| 총수입 | 4,422,117 | 4,422,117 | 5,417,147 | 995,030 | 3,920,900 | 3,920,900 | 3,325,736 | △595,164 | △2,091,411 |

문의: 02-6788-5689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5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19억원(△0.1%)이 적은 3조 1,688억 1,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조 6,692억 4,700만원(111.3%)이 증가됨.

[2025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4회계연도 | | | | 2025회계연도 | | | | 전년대비 (D-B) |
|---|---|---|---|---|---|---|---|---|---|
| | 예산액 | | 결산 (B) | 예산대비 (B-A) | 예산액 | | 결산 (D) | 예산대비 (D-C) | |
| | 본예산 | 추경(A) | | | 본예산 | 추경(C) | | | |
| 예 산 | 1,503,566 | 1,503,566 | 1,499,429 | △4,137 | 1,683,766 | 3,170,660 | 3,168,816 | △1,844 | 1,669,387 |
| 기 금 | 145 | 145 | 141 | △4 | 57 | 57 | 1 | △56 | △140 |
| 총지출 | 1,503,711 | 1,503,711 | 1,499,570 | △4,141 | 1,683,823 | 3,170,717 | 3,168,817 | △1,900 | 1,669,247 |

## 나.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011억 700만원으로, 2,255억 4,6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250억 7,000만원이 수납(수납률 55.5%)되고, 1,004억 7,6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5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세입예산액 | | 이체등 증감액 (B) | 세입 예산현액 (A+B) | 징수 결정액 | 수납액 | 미수납액 | 불납 결손액 |
|---|---|---|---|---|---|---|---|---|
| | 본예산 | 추경 (A) | | | | | | |
| 일반회계 | 101,107 | 101,107 | - | 101,107 | 225,546 | 125,070 | 100,476 | - |
| 합 계 | 101,107 | 101,107 | - | 101,107 | 225,546 | 125,070 | 100,476 | - |

주) 총계 기준

2025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5조 6,706억 6,000만원으로, 5조 6,688억 1,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되고 6,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7억 7,5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세출예산액 | | 예산결정후증감액(B) | | | 세출 예산현액 (C=A+B)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 (A)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 | | |
| 일반회계 | 4,183,766 | 5,670,620 | 40 | ±786 | 0 | 5,670,660 | 5,668,816 | 69 | 1,775 |
| 합 계 | 4,183,766 | 5,670,620 | 40 | ±786 | 0 | 5,670,660 | 5,668,816 | 69 | 1,775 |

주) 총계 기준

## 다. 기금 결산

2025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액은 29조 9,259억 3,800만원으로, 46조 3,888억 1,7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26조 2,257억 7,400만원이 수납(수납률 56.5%)되고, 18조 1,372억 1,500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1조 8,336억 2,8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기금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수입 계획액 | |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미수납액 | 불납결손액 |
|---|---|---|---|---|---|---|
| | 당초 | 수정 | | | | |
| 공적자금상환기금 | 6,438,424 | 6,438,424 | 5,950,405 | 5,950,405 | - | - |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2,265,114 | 2,265,114 | 4,765,320 | 2,237,578 | 2,459,179 | 68,563 |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 51,095 | 51,095 | 49,130 | 49,130 | - | - |
| 신용보증기금 | 11,512,538 | 11,612,538 | 22,866,874 | 9,381,044 | 12,068,568 | 1,417,261 |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 4,749,605 | 4,749,605 | 3,434,340 | 3,434,340 | - | - |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4,809,162 | 4,809,162 | 9,130,548 | 5,173,277 | 3,609,468 | 347,804 |
| 합 계 | 29,825,938 | 29,925,938 | 46,388,817 | 26,225,774 | 18,137,215 | 1,833,628 |

주) 총계 기준

2025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현액은 29조 9,365억 2,500만원으로, 26조 2,257억 7,400만원이 집행(집행률 87.6%)되고 2억 7,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조 2,153억 9,1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기금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지출 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B) | 계획현액 (A+B)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당초 | 수정(A) | | | | | |
| 공적자금상환기금 | 6,438,424 | 6,438,424 | - | 6,438,424 | 5,950,405 | - | 485,712 |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2,265,114 | 2,265,114 | - | 2,265,114 | 2,237,578 | - | 3,355 |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 51,095 | 51,095 | - | 51,095 | 49,130 | - | 961 |
| 신용보증기금 | 11,512,538 | 11,612,538 | 9,757 | 11,622,295 | 9,381,044 | - | 921,323 |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 4,749,605 | 4,749,605 | - | 4,749,605 | 3,434,340 | - | 602,198 |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4,809,162 | 4,809,162 | 829 | 4,809,991 | 5,173,277 | 271 | 201,841 |
| 합 계 | 29,825,938 | 29,925,938 | 10,587 | 29,936,525 | 26,225,774 | 271 | 2,215,391 |

주) 총계 기준

## 라. 재무결산

2025회계연도 말 기준 금융위원회 자산은 전년 대비 5조 2,423억 300만원이 증가된 38조 2,487억 700만원으로, 이는 선급법인세 등 기타자산이 343억 3,400만원 감소되었으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확대 등으로 금융자산이 5조 2,585억 6,500만원 증가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6조 78억 4,200만원 감소된 20조 7,318억 2,100만원으로, 차입부채 5조 5,657억 200만원 감소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11조 2,501억 4,400만원이 증가된 17조 5,168억 8,500만원임.

2025회계연도 금융위원회의 프로그램순원가는 2조 4,372억 9,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431억 3,300만원 감소되었으며, 재정운영결과는 4조 251억 3,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048억 9,900만원 감소됨.

[2025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 | 2025 (A) | 2024 (B) | 증 감 | |
|---|---|---|---|---|---|---|
| | | | | | 금액 (A-B) | 증가율 (A-B)/B |
| 재정 상태표 | 자 산 | | 38,248,707 | 33,006,404 | 5,242,303 | 15.9 |
| | | 금융자산 | 37,646,296 | 32,387,731 | 5,258,565 | 16.2 |
| | | 유무형자산 | 570,002 | 551,930 | 18,072 | 3.3 |
| | | 기타자산 | 32,409 | 66,743 | △34,334 | △51.4 |
| | 부 채 | | 20,731,821 | 26,739,663 | △6,007,842 | △22.5 |
| | | 차입부채 | 15,316,302 | 20,882,004 | △5,565,702 | △26.7 |
| | | 충당부채 | 4,730,489 | 5,175,776 | △445,287 | △8.6 |
| | | 기타부채 | 685,030 | 681,884 | 3,146 | 0.5 |
| | 순자산 | | 17,516,885 | 6,266,741 | 11,250,144 | 179.5 |
| 재정 운영표 | 프로그램순원가 | | 2,437,294 | 3,080,427 | △643,133 | △20.9 |
| | 재정운영순원가 | | 1,550,150 | 2,243,114 | △692,964 | △30.9 |
| | 재정운영결과 | | △4,025,137 | △3,320,238 | △704,899 | △21.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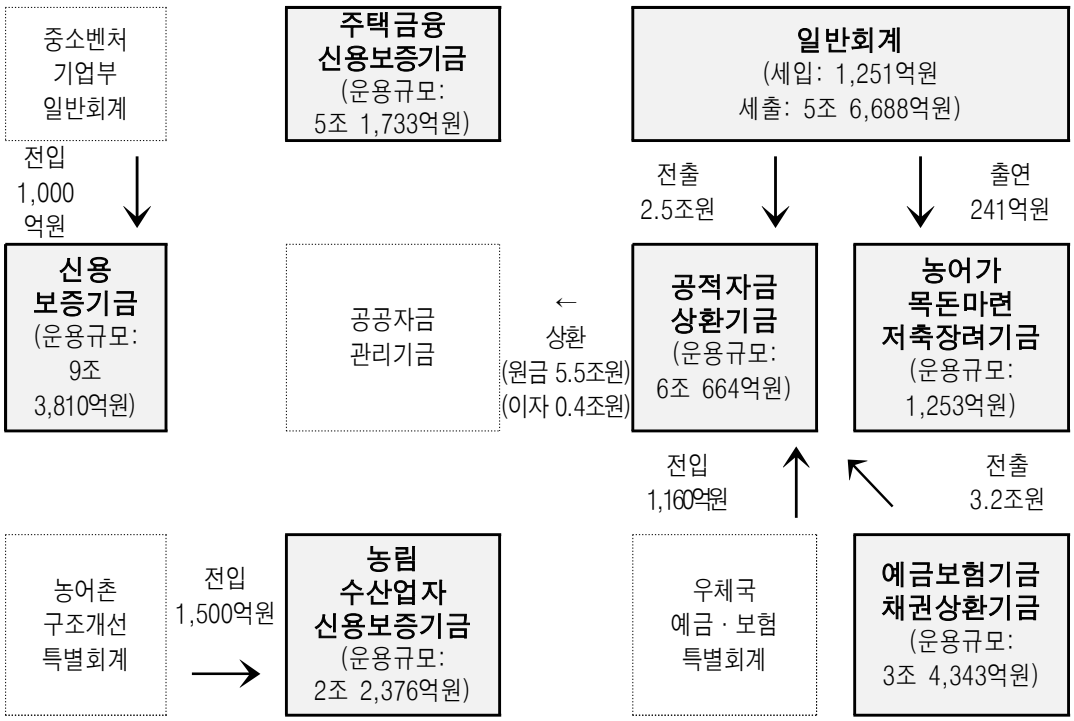
##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2025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재정은 일반회계 1개 회계와 공적자금상환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6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거래현황은 다음과 같음.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2조 5,000억원이 전출되었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으로 241억원이 출연되었음.

다음,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3조 2,000억원이 전출되었음.

[2025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재정흐름도]



##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금융위원회는 시장안전을 최우선으로, 민생금융 강화와 금융혁신 가속화를 2025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총 113개 세부사업에서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청년층 자산형성·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수행하였음.

2025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금융위원회는 소관 공공기관의 성과급·주택융자금·생활안정자금·인사관리제도 등이 관련 지침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시정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둘째, 햇살론15 및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은 2026년부터 한시적 재정투입 사업에서 영구적 재정투입 사업으로 전환되었는데, 이 사업들은 타 사업 대비 높은 수준의 순대위변제율을 보이고 있어 향후 정부재정에 미치는 잠재적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위원회는 사업체계 개편에 따른 실질적 정부재정 부담 완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지원 대상의 금융취약 상태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셋째,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사업은 프로젝트 선정 및 자펀드 결성 과정이 지연됨에 따라 대규모의 예산이 한국산업은행 재정모펀드계정에 유보되는 등 예산 운용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금융위원회는 프로젝트 선정 및 자펀드 결성 과정이 속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소멸위기 지역에 대한 투자 활성화라는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음.

넷째, 새출발기금은 2026년에 채무조정 신청 접수를 마감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계획 대비 채권매입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므로, 금융위원회는 원인을 분석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반복적인 계획변경 및 추가경정예산 증액 등의 과정에서 추가 채무조정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형성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금융위원회는 소관 기금 수입과목의 수납률 및 지출사업의 집행률을 제고하는 한편, 원활한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기금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Ⅱ. 사업별 검토

## 【총 괄】

## 1. 금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지침을 위반한 복리후생·인사관리제도의 조속한 시정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 가. 개 요

금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은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7개(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4개, 기타공공기관 3개)임.

[금융위원회 소관 7개 공공기관 현황]

| 기관명 | 유형 | 주요업무 |
|---|---|---|
| 신용보증기금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중소기업 신용보증 및 종합 지원 |
| 예금보험공사 | | 예금자 보호 및 금융제도 안정성 유지 |
| 한국자산관리공사 | | 부실채권 정리 및 국유재산 관리·개발 |
| 한국주택금융공사 | | 보금자리론 공급 및 주택금융 보증 |
| 서민금융진흥원 | 기타공공기관 | 저소득·저신용층 대상 금융 지원 |
| 중소기업은행 | | 중소기업 자금 조달 및 금융서비스 제공 |
| 한국산업은행 | | 국가 기간산업 육성 및 기업금융 지원 |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 등에서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경영혁신을 추진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제고할 것을 주문하고 있음.

규정별로 살펴보면, ①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는 공공기관이 복리후생제도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방만경영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주문하면서, 경영평가 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에 관한 차등화된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차

등수준을 강화하여 운영할 것을 규정하였음. 또한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정직 처분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고, 보수 전액을 감할 것을 규정하였음.

[「202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상 복리후생·인사관리 관련 주요 내용]

| 구분 | 주요 내용 |
|---|---|
| 기관 운영 기본 방향 | - 복리후생제도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불요불급한 경비지출을 억제하는 등 방만경영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br>-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과도한 복리후생제도가 운영되지 않도록 한다.<br>-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이행에 따른 방만경영 개선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개선 필요사항이 누락되거나 개선이 미흡한 경우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점검·관리하도록 한다. |
| 성과급 편성 기본 방향 | -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개인별 또는 부서별 성과관리를 위해 성과급 총액 범위 내에서 성과급 지급에 관한 차등화된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차등수준을 강화하여 운영한다. |
| 성과급 편성 세부 기준 | -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등급 이상**으로 한다.<br>- 등급별 인원(부서) 비율은 **최고 등급은 10% 이상, 최저 등급 및 차하위 등급을 합하여 10% 이상**으로 하고 **특정 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br>- 성과급 차등 수준은 **최고 등급 성과급 지급액이 차하위 등급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한다.<br>- 내부평가급의 지급 횟수, 차등 등급 수, 등급별 인원(부서) 비율, 차등 수준은 경영평가 성과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정직 처분자 보수 관련 지침 | -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는 정직 기간 중 보수 전액을 감액하도록 보수 규정을 정비한다. |
| 주택융자금 등의 운영 방향 | - 주택자금 등의 대출 이자율, 한도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6조제5항 내지 제7항에 따라 결정한다. |

자료: 관련 지침 내용을 바탕으로 재작성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할 것을 주문하면서, i) 재산·성·음주운전 등 비위행위를 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는 성과평가 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도록 내부규정을 마련할 것과, ii) 「국가공무원법」 등을 참고하여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 등에 요구할 것을 규정하였음.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상 인사관리 관련 주요 내용]

| 구분 | 주요 내용 |
|---|---|
| 제26조<br>(징계 등 복무관리) |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하여야 한다.<br>⑦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성과평가 대상기간 중 **중징계 처분**을 받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 **성과평가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도록 내부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br>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등을 참고하여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며**, 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을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 등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 등에 요구하여야 한다. |

자료: 관련 지침(2025. 12. 30. 개정 기준) 내용을 바탕으로 재작성

③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법령 또는 직무상 의무의 위반 및 태만, 체면·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과 임직원에 대한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할 것을 주문하면서, 주택융자금·생활안정자금 대출 금리 하한과 대출 한도 상한을 명시하였음.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 상 복리후생·인사관리 관련 주요 내용]

| 구분 | 주요 내용 |
|---|---|
| 제3조<br>(인사 운영의 원칙) | 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법령위반, 직무상 의무의 위반 및 태만,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징계의 사유 및 정도, 절차 등에 관한 자체 규정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 제46조<br>(기타 복리후생 제도) | ⑤ 공공기관이 제4항의 주택자금(구입 또는 임차용)이나 생활안정자금의 융자를 지원할 경우,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로 연동)를 하한**으로 하고, **대출 한도**는 **주택자금은 7천만원, 생활안정자금은 2천만원을 상한**으로 하여야 한다. |

자료: 관련 지침(2026. 4. 9. 개정 기준) 내용을 바탕으로 재작성

④ 한편 금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중 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의 복리후생·인사관리제도 등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등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i)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는 기타공공기관이 지급하는 내부평가급 또한 경영평가 성과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한 점, ii)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에서는 기타공공기관을 비롯한 전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하면, 기타공공기관의 복리후생·인사관리제도 등에 대해서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유사한 평가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음.

## 나. 검토의견

**첫째, 금융위원회 소관 일부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상 기준 대비 내부평가급의 등급 간 차등화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금융위원회는 해당 공공기관이 공공부문 종사자의 동기 부여라는 성과급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내부평가급 제도를 개선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025년 금융위원회 소관 7개 공공기관의 내부평가급 제도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상 성과급 편성 세부 기준과 달리 5개 기관은 최상위·차하위 등급 간 지급률 차이가 2배 미만이었고, 신용보증기금은 최상위 등급의 인원 비율이 10.0% 미만이었음. 그 외에도 지급 인원이 가장 많은 등급의 인원 비율이 50.0% 이상으로 설정되거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등급이 존재하지 않거나, 등급 수가 5개 이하로 구성된 경우가 존재하였음.

[2025년 금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내부평가급 운영 현황: 관련 지침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구 분 | 최상위·차하위 등급 간 지급률 차등화 정도 | 최상위 등급의 인원 비율 | 지급 인원이 가장 많은 등급의 인원 비율 |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등급의 존재 유무 | 등급 수 |
|---|---|---|---|---|---|
| 신용보증기금 | **(3급 이하 직원) 2배 미만** | **6.3%** | **61.0%** | × | **5** |
| 예금보험공사 | **2배 미만** | 10.0% | 50.0% | ○ | 6 |
| 한국자산관리공사 | **(3급 이하 직원) 2배 미만** | 10.0% | 50.0% | × | **5** |
| 한국주택금융공사 | 2배 이상 | 10.0% | 50.0% | × | **5** |
| 서민금융진흥원 | **(3급 이하 직원) 2배 미만** | 10.0% | 40.0% | ○ | 6 |
| 중소기업은행 | **(팀장급 이하 직원) 2배 미만** | 10.0% | 50.0% | × | **5** |
| 한국산업은행 | 2배 이상 | 10.0% | 50.0% | × | **5** |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상 기준 | 2배 이상 | 10.0% 이상 | 50.0% 이하 | ○ | 6개 이상 |

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상의 성과급 편성 세부 기준을 미준수한 경우 볼드 처리하였음
자료: 금융위원회 및 소관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최상위·최하위 등급 간 지급률 차이를 충분한 수준으로 설정하지 않거나, 인원 비율을 특정 등급에 집중 할당하거나 또는 최저 성과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내부평가급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공공부문 종사자의 동기 유발이라는 성과급 제도의 도입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운영 방식으로 보임.

특히 소관 공공기관의 성과급 운영에 대해 기획예산처 등에서 여러 차례 차등화 기준을 제시한 바 있고, 감사원에서도 소관 공공기관의 기관운영감사 등을 통해 직원 업적성과급 지급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2] 금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중 2025년 말까지도 상기한 5개의 지침상 차등화 기준을 모두 준수한 기관이 한 곳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의 내용 및 취지를 고려하여, 소관 공공기관이 공공부문 종사자의 동기 부여라는 성과급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내부평가급 제도를 개선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둘째, 금융위원회 소관 일부 공공기관은 관련 지침의 내용 및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직자에게 보수를 지급하거나 재산·성·음주운전 등 비위자에 대해서도 성과급을 지급하였으므로, 금융위원회는 소관 공공기관이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을 고려하여 인사관리제도를 시정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징계의 사유 및 정도, 절차 등에 관한 자체 규정을 수립·운영할 것을 촉구한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 등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 소관 일부 공공기관은 ① 정직 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하거나, ② 재산·성·음주운전 등의 비위를 행하여 징계대상이 된 직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③ 재산 관련 비위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부가금 부과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

2) 감사원은 2019. 10. 15. 중소기업은행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중소기업은행장은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과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의 내용을 고려하여 직원 업적성과급을 월 기본급 등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업적성과급 차등 등급별 인원 비율을 정하여 운영하며, 업적성과급 차등 지급 기준을 최고 등급 지급액이 최저 등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으나, 중소기업은행은 성과급 차등 폭 확대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여 노동조합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현재까지도 관련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

[금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의 지침 대비 부적정한 보수·성과급 지급 등 현황]

| 구 분 |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한 보수 지급 규모 | 재산·성·음주운전 등 징계대상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규모 | 징계부가금 부과 규정 마련 여부 |
|---|---|---|---|
| 신용보증기금 | 6명(37,159,000원) | (재산 비위) 2명, 6,105,000원 지급<br>(성 비위) 5명, 20,321,000원 지급<br>(음주운전 등 비위) 7명, 35,781,000원 지급 | × |
| 한국자산관리공사 | - | (재산 비위) 2명, 15,871,000원 지급<br>(성 비위) 1명, 21,288,000원 지급 | × |
| 한국주택금융공사 | - | (성 비위) 2명, 12,165,000원 지급 | × |
| 중소기업은행 | 18명(355,224,000원) | (재산 비위) 5명, 34,475,000원 지급<br>(성 비위) 4명, 35,960,000원 지급<br>(음주운전 등 비위) 2명, 11,022,000원 지급 | × |
| 한국산업은행 | 3명(18,414,000원) | (재산 비위) 3명, 13,471,000원 지급<br>(성 비위) 1명, 20,519,000원 지급<br>(음주운전 등 비위) 1명, 3,374,000원 지급 | × |

주 1) 정직 처분의 경우 2023. 1. 1. ~ 2025. 12. 31. 기준, 징계대상자 성과급 지급의 경우 2021. 1. 1. ~ 2025. 12. 31. 기준이며, 2025. 12. 31. 기준 관련 내부규정을 지침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작성
2)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재산·성·음주운전 등 징계대상자에 대해 성과평가 시 최하위 등급을 부여받도록 내부규정을 개정하였으나, 최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률이 0%가 아니므로 작성 대상에 포함
3) 한국산업은행은 2025년부터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내부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신용보증기금은 2026년 7월 정직 사유와 무관하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내부규정 개정을 완료하였음

자료: 금융위원회

특히 중소기업은행은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을 대상으로 연체관리, 한국은행 차입 업무 등의 직무에 종사하게 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는 등 관련 지침의 내용과 상이한 방향으로 인사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음.

[2021~2025년 중소기업은행의 정직처분 직원 대상 직무 배정 현황]

| 연번 | 직무 배정 시기 | 직무 내용 |
|---|---|---|
| 1 | 2021. 2. | 시도자금 차입업무 등 |
| 2 | 2021. 4. | 저당권 서류관리 등 |
| 3 | 2021. 4. | 연체관리 |
| 4 | 2021. 5. | 없음(징계 1개월 후 퇴사) |
| 5 | 2022. 3. | 연체관리 |
| 6 | 2022. 3. | 연체관리 |
| 7 | 2022. 9. | 연체관리 |
| 8 | 2022. 11. | 문서열람 등 |

| 연번 | 직무 배정 시기 | 직무 내용 |
|---|---|---|
| 9 | 2023. 7. | 연체관리 |
| 10 | 2023. 7. | 수신서류 분류 등 |
| 11 | 2023. 9. | 시도자금 차입업무 등 |
| 12 | 2023. 9. | 연체관리 |
| 13 | 2023. 11. | 연체관리 |
| 14 | 2024. 5. | 연체관리 |
| 15 | 2024. 7. | 연체관리 |
| 16 | 2024. 7. | 금리수수료 승인 |
| 17 | 2024. 8. | 연체관리 |
| 18 | 2024. 12. | 연체관리 |
| 19 | 2024. 12. | 연체관리 |
| 20 | 2024. 12. | 연체관리 |
| 21 | 2025. 3. | 연체관리 |
| 22 | 2025. 5. | 연체관리 |
| 23 | 2025. 6. | 연체관리 |
| 24 | 2025. 9. | 한국은행 차입 |
| 25 | 2025. 11. | 연체관리 |
| 26 | 2025. 12. | 연체관리 |

자료: 금융위원회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기획예산처의 협조 요청에 따라 소관 공공기관의 임직원 징계제도 운영현황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공공기관의 내부 규정이 관련 지침의 내용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해당 규정의 정비를 요청하였다는 입장이나, 위와 같이 조직적으로 부적정한 보수 및 성과급을 지급하는 관행이 수년에 걸쳐 반복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소관 공공기관이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이 반영된 인사관리제도를 조속히 운용하도록 실질적 차원에서의 관리감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셋째, 금융위원회 소관 일부 공공기관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상 대출 금리 하한보다 낮은 수준 또는 대출액 상한보다 높은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생활안정자금 등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금융위원회는 해당 공공기관이 지침의 내용을 고려하여 대출 제도를 개선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금융위원회 소관 7개 공공기관이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한 주택융자금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산업은행은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상 금리 하한보다 낮은 수준의 금리와 1인당 대출 한도 상한을 초과하는 수준의 한도로 주택융자금을 제공하였음.

[금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주택융자금 운영 현황]

(단위: 명, 천원)

| 구 분 | 지침상 금리 하한(분기별 한은 가계자금금리) 보다 낮은 수준으로 대출 제공 | | | | 지침상 대출액 상한(1인당 7천만원) 보다 높은 수준으로 대출 제공 | | |
|---|---|---|---|---|---|---|---|
| | 지침상 금리 하한 | 적용 금리 | 인원 | 금액 | 적용 한도 | 인원 | 금액 |
| 신용보증기금 | (2023.2Q) 5.47% | 4.02% | 7 | 830,000 | 130,000 | 6 | 760,000 |
| | (2023.3Q) 4.82% | | | | | | |
| | (2023.4Q) 4.80% | | | | | | |
| | (2025.1Q) 4.55% | 4.16% | | | | | |
| | (2025.2Q) 4.65% | | | | | | |
| | (2025.3Q) 4.36% | | | | | | |
| 한국자산관리공사 | 4.06~5.34% | 3.30% | 60 | 7,177,450 | 160,000 | 53 | 6,771,450 |
| 한국산업은행 | (2023.1Q) 5.34% | 4.24~4.51% | 93 | 5,755,300 | 100,000 | 32 | 3,181,000 |
| | (2023.2Q) 5.47% | 4.52~4.66% | | | | | |
| | (2023.3Q) 4.82% | 4.66~4.76% | | | | | |
| | (2023.4Q) 4.80% | 4.36~4.48% | | | | | |
| | (2024.1Q) 5.04% | 4.29~4.49% | | | | | |
| | (2024.2Q) 4.68% | 4.03~4.27% | | | | | |
| | (2024.3Q) 4.48% | 3.90~3.96% | | | | | |
| | (2024.4Q) 4.06% | 3.53~3.70% | | | | | |
| | (2025.1Q) 4.55% | 3.24~3.70% | | | | | |
| | (2025.2Q) 4.65% | 3.21~3.39% | | | | | |
| | (2025.3Q) 4.36% | 3.22~3.46% | | | | | |

주 1) 2023. 1. 1. ~ 2025. 12. 31. 기준이며, 2024. 12. 31. 기준 관련 내부규정을 지침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작성

2) 각 공공기관이 분기별 한은 가계자금금리를 적용하는 기간은 1Q: 3~5월, 2Q: 6~8월, 3Q: 9~11월, 4Q: 12~차년도 2월임. 예컨대 각 공공기관의 2023년 12월~2024년 2월 대출 금리는 2023년 4분기의 한은 가계자금금리(=4.80%)를 하한으로 설정하여야 함

3) 한국산업은행 대출액 상한의 경우 주택임차자금에 대한 한도이며, 주택구입자금은 지침상 상한 준수

자료: 금융위원회

또한 금융위원회 소관 7개 공공기관이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한 생활안정자금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신용보증기금·한국주택금융공사 및 한국산업은행은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상 금리 하한보다 낮은 수준의 금리와 1인당 대출 한도 상한을 초과하는 수준의 한도로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였음.

[금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생활안정자금 운영 현황]

(단위: 명, 천원)

| 구 분 | 지침상 금리 하한(분기별 한은 가계자금금리) 보다 낮은 수준으로 대출 제공 | | | | 지침상 대출액 상한(1인당 2천만원) 보다 높은 수준으로 대출 제공 | | |
|---|---|---|---|---|---|---|---|
| | 지침상 금리 하한 | 적용 금리 | 인원 | 금액 | 적용 한도 | 인원 | 금액 |
| 신용보증기금 | (2023.1Q) 5.34% | (Ⅰ유형)4.02%<br>(Ⅱ유형)5.02% | 382 | 10,397,940 | 50,000 | 307 | 8,983,700 |
| | (2023.2Q) 5.47% | | | | | | |
| | (2023.3Q) 4.82% | 4.34% | | | | | |
| | (2023.4Q) 4.80% | | | | | | |
| | (2024.1Q) 5.04% | 4.48% | | | | | |
| | (2024.2Q) 4.68% | | | | | | |
| | (2024.3Q) 4.48% | 4.34% | | | | | |
| | (2025.1Q) 4.55% | 4.16% | | | | | |
| | (2025.2Q) 4.65% | | | | | | |
| | (2025.3Q) 4.36% | 3.50% | | | | | |
| | (2025.4Q) 4.20% | | | | | | |
| 한국주택금융공사 | 4.06~5.34% | 2.00~3.00% | 203 | 5,257,030 | 30,000 | 81 | 2,430,000 |
| 한국산업은행 | (2023.1Q) 5.34% | 4.43~4.81% | 878 | 23,732,170 | 40,000 | 712 | 24,865,640 |
| | (2023.2Q) 5.47% | 4.57~4.72% | | | | | |
| | (2023.3Q) 4.82% | 4.68~4.76% | | | | | |
| | (2023.4Q) 4.80% | 4.39~4.85% | | | | | |
| | (2024.1Q) 5.04% | 4.39~4.50% | | | | | |
| | (2024.2Q) 4.68% | 4.12~4.45% | | | | | |
| | (2024.3Q) 4.48% | 4.05% | | | | | |
| | (2024.4Q) 4.06% | 3.69~4.05% | | | | | |
| | (2025.1Q) 4.55% | 3.39~3.71% | | | | | |
| | (2025.2Q) 4.65% | 3.37~3.42% | | | | | |
| | (2025.3Q) 4.36% | 3.38~3.39% | | | | | |

주 1) 2023. 1. 1. ~ 2025. 12. 31. 기준이며, 2024. 12. 31. 기준 관련 내부규정을 지침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작성
2) 각 공공기관이 분기별 한은 가계자금금리를 적용하는 기간은 1Q: 3~5월, 2Q: 6~8월, 3Q: 9~11월, 4Q: 12~차년도 2월임. 예컨대 각 공공기관의 2023년 12월~2024년 2월 대출 금리는 2023년 4분기의 한은 가계자금금리(=4.80%)를 하한으로 설정하여야 함

자료: 금융위원회

이와 관련하여 각 공공기관은 사내대출 제도 변경은 노사 합의 사항으로서 내부 직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들을 설득하는 데에 난항을 겪고 있어 현재까지도 지침의 내용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내대출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못하였다는 입장임.

이와 같은 합의의 어려움을 고려하더라도,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 상의 사내대출 제도 관련 규정이 2021년 7월에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 6월 현재까지도 지침상 한도를 위반하여 소속 임직원에게 주택융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을 신규로 제공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소관 공공기관이 임직원에 대한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 운영을 지양하도록 규정한 지침의 취지를 고려하여 대출 제도를 개선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일반회계】

〈세　출〉

## 2. 서민금융진흥원 출연(햇살론15,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 정부재정 부담 완화 방안 모색 필요 등

### 가. 개　요

서민금융진흥원은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층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함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4호[3]에 따라 신용보증 및 자금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을 제공하고 있음.

2025년 말 기준 서민금융진흥원이 공급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은 총 8개로, 재원은 ① 복권기금 등 사행성 사업에서의 기금 수입, ② 제도권 금융사의 여신 행위로부터 창출된 수익 중 일부를 사회적 환원 차원에서 출연하는 금액, ③ 정부출연금 등을 통해 마련하고 있음.

[2025년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상품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 | 재원 | 출시 시기 | 공급 목표 | 공급 실적 |
|---|---|---|---|---|---|
| 대출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 민간 | 2023. 3. | 2,000 | 1,326 |
| | 미소금융 | 민간 | 2009. 12. | 4,000 | 3,392 |
| 보증 | 햇살론뱅크 | 민간 | 2021. 7. | 12,000 | 13,010 |
| | 햇살론카드 | 민간 | 2021. 10. | 500 | 324 |
| | 근로자햇살론 | 민간, 복권기금 | 2010. 7. | 33,000 | 34,577 |
| | 햇살론유스 | 복권기금 | 2020. 1. | 3,000 | 2,410 |
| | 햇살론15 | 민간, 정부출연금 | 2019. 9. | 10,500 | 13,571 |
| |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 정부출연금 | 2022. 9. | 2,800 | 2,962 |

주) 공급 목표 및 실적은 2025년 말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진흥원의 업무)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 및 자금대출

이들 상품 중 금융위원회 소관 사업으로 편성된 정부재정 투입 상품은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햇살론15)’** 사업[4]은 2025년도 예산현액 900억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으며,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5] 또한 2025년도 예산현액 925억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

[2025년도 햇살론15 및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햇살론15) | 90,000 | 90,000 | - | - | 90,000 | 90,000 | - | - | - |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 56,000 | 92,500 | - | - | 92,500 | 92,500 | - | - | -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햇살론15 사업은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층을 정책서민금융을 통해 제도권 금융으로 포섭하기 위하여 대출을 공급하는 것으로, ① 지원 대상은 연 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인 자(단,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는 개인신용평점 제한 없이 이용 가능)이며, ② 대출 한도는 최대 2,000만원, ③ 대출 금리는 최초 15.9%에서 시작하여 성실 상환 차주에 대하여는 단계적으로 금리를 9.9% 수준까지 인하하였음.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은 연체경험 등으로 기존 정책서민금융마저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에 유입되는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이 특례보증을 공급하는 것으로, ① 지원 대상은 신용점수가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 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 중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된 자이며, ② 대출 한도는 최초 이용 시 최대 500만원, 6개월 이상 정상 이용 시 추가 대출 1회(최대 500만원) 이용 자격을 부여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이고, ③ 대출 금리는 최초 15.9%에서 시작하여 성실 상환 차주에 대하여는 단계적으로 금리를 9.9% 수준까지 인하하였음.

4) 일반회계-서민금융진흥원 출연(햇살론15)(1831-884)(금융소비자국)

5) 일반회계-서민금융진흥원 출연(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1831-881)(금융소비자국)

상기한 2개 사업은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이 햇살론15를 비롯한 기존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대출한도가 낮다는 점을 제외하면 상환방식·보증비율 및 대출금리 등에서 유사성이 높음.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 한시특례보증 제도 비교]

| 구 분 | 햇살론15 |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
|---|---|---|
| 목적 |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고 있는 저신용·저소득자를 정책서민금융을 통해 제도권 금융으로 포용 | 기존 정책서민금융마저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자금애로 완화 및 이용 기회 제공 |
| 지원대상 |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인 자 |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 이하로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된 자 |
| 한도 | 최대 2,000만원(2025년 기준) | 최대 1,000만원 |
| 상환방식 | 3년 또는 5년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3년 또는 5년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최대 1년) |
| 보증비율 | 서민금융진흥원 100% 보증 | |
| 금리 | 15.9% *성실상환 시 1년마다 금리 인하, 중도상환수수료 미부과 (3년 약정 시 매년 3.0%p, 5년 약정 시 매년 1.5%p 인하) | |

자료: 금융위원회

한편 명칭 및 특성이 유사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이 다수 출시되었음에도 금융회사의 취급 가능한 상품 범위가 상이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6]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26년부터 성격이 유사한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① 민간재원만을 투입하는 '햇살론 일반보증', ② 정부재원을 투입하는 '햇살론 특례보증', ③ 햇살론 유스(현행 유지), ④ 햇살론 카드(현행 유지) 등 4개 상품으로 통합 개편하였음.

6) 예컨대 근로자햇살론 신청이 가능한 사람도 은행이 근로자햇살론을 취급하지 않아 금리수준이 더 높은 햇살론15를 신청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음.

[2026년 이후 정책서민금융 상품체계 개편 내용]

| 현행 | 햇살론뱅크 | 근로자햇살론 | 햇살론15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 햇살론유스 | 햇살론 카드 |
|---|---|---|---|---|---|---|
| 이용 대상 (소득·신용) | ①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②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하위 20% 이하 | | |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하위 10% 이하 | 청년 중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청년사업자 | 연소득 600만원 이상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
| 한도 (2025) | 2,500만원 | 2,000만원 | 2,000만원 | 1,000만원 | 1,200만원 | 300만원 |
| 금리 | 은행별 상이 (평균 7.5%) | 11.5% 이하 | 15.9% (성실상환시 금리 인하) | | 최대 4.0% (유형별 상이) | - |
| 보증 료율 | 1.4~2.5% | 1.4~2.5% | 9.9% (대출금리에 포함) | 7.9%~8.9% (대출금리에 포함) | 0.1~1.0% (유형별 상이) | - |
| 기간 | 3년 또는 5년 (1년 거치 가능) | 3년 또는 5년 | 3년 또는 5년 | 3년 또는 5년 (1년거치가능) | 최대 15년 | - |
| 재원 | 민간 | 민간 + 정부 | 민간 + 정부 | 정부 | 정부 | 민간 |
| 취급처 (업권) | 은행 | 저축·상호·보험 | 은행 | 은행·저축 | 은행 | 여신전문금융 |

⇩ ⇩ ⇩

| 개편 | 햇살론 일반보증 | 햇살론 특례보증 | 햇살론유스 | 햇살론 카드 |
|---|---|---|---|---|
| 이용 대상 | ①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②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하위 20% 이하 |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하위 20% 이하 | (현행 유지) | |
| 재원 | 민간 | 민간 + 정부 | | |
| 취급처 (업권) | 全 업권 | | | |

자료: 금융위원회

## 나. 검토의견

**첫째, ‘햇살론15’ 및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은 2026년부터 한시적 재정투입 사업에서 영구적 재정투입 사업으로 전환되었는데, 이 사업들은 타 사업 대비 높은 수준의 순대위변제율을 보이고 있어 향후 정부재정에 미치는 잠재적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사업체계 개편에 따른 실질적 정부재정 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민간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음.**

당초 햇살론 15 사업의 재원은 2008년 민간 재원(한국자산관리공사 부실채권정리기금 초과회수에 의한 금융회사 배분금)을 기초로 조성한 신용회복기금과 2013년 이를 이어받은 국민행복기금이었으며, 기금 재원 소진을 이유로 2024년부터 정부재정 투입이 시작되었으나 한시적인 성격에 그쳤음.

그런데 2026년부터 햇살론15 사업과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이 ‘햇살론 특례보증’ 사업으로 통합되면서, 한시적으로 투입되던 정부재정이 영구적으로 투입되기 시작하였음.

사업체계 개편 내용에 따르면, 정부재정이 투입되는 햇살론 특례보증 사업은 민간재원만 투입되는 햇살론 일반보증보다 소득·신용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을 이용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햇살론 특례보증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들의 순대위변제율 또한 타 사업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므로, 개편으로 인해 정부재정에 미치는 잠재적 부담은 더욱 증가할 우려가 있음.

[최근 3년간 서민금융진흥원 취급 보증상품별 순대위변제율 현황]

(단위: %)

| 보증상품명 | | 연도별 순대위변제율 | | |
|---|---|---|---|---|
| 개편 전(~2025) | 개편 후(2026~) | 2023 | 2024 | 2025 |
| 근로자햇살론 | 햇살론 일반보증 | 12.1 | 12.7 | 12.4 |
| 햇살론뱅크 | | 8.4 | 16.8 | 17.1 |
| 햇살론유스 | 햇살론유스 | 9.4 | 12.7 | 13.6 |
| 햇살론카드 | 햇살론카드 | 12.3 | 17.8 | 22.2 |
| **햇살론15** | **햇살론 특례보증** | **21.3** | **25.5** | **26.8** |
|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 | **14.5** | **26.8** | **28.8** |

주) 순대위변제율 = (기간 말 누적 대위변제발생액 - 누적 대위변제회수액) ÷ 기간 말 누적 보증공급액
자료: 금융위원회

부실률 증가로 인해 정부재정에 미치는 부담이 가중되면 향후 정책서민금융 공급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민간 금융기관의 출연요율 확대 및 동 사업의 민간 금융기관 부담 비중 확대 등 정부재정의 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한편 은행별 햇살론15 및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상품의 취급실적을 살펴보면, 햇살론15의 2025년 취급 실적(1조 3,571억원)은 상당 부분이 전북은행(5,604억원)·카카오뱅크(2,754억원) 및 광주은행(2,506억원) 등 소수 은행에 집중되었으며,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취급실적이 존재하는 은행은 광주은행·전북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등에 불과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동 사업이 햇살론 특례보증으로 개편되기 전 취급 가능 금융업권이 제한됨에 따라 실적이 소수 기관에 집중되었다고 설명한 바 있으나, 동일 업권 내에서도 시중은행의 취급 실적과 지방은행·인터넷은행의 취급 실적이 상당한 차이를 보인 점을 고려하면 취급 가능 금융업권의 제한 문제가 아니라 다수 은행이 동 사업을 취급할 유인의 부족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음.

[2024년 이후 분기별·은행별 햇살론15 취급 실적]

(단위: 억원, 건)

| 구분 | | 2024 | | | 2025 | | | | |
|---|---|---|---|---|---|---|---|---|---|
| | | 3분기 | 4분기 | 전체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전체 |
| 경남은행 | 금액 | 33 | 13 | 46 | 8 | 6 | 2 | 1 | 17 |
| | 건수 | 439 | 144 | 583 | 85 | 64 | 29 | 13 | 191 |
| 광주은행 | 금액 | - | 102 | 102 | 256 | 1,638 | 366 | 245 | 2,506 |
| | 건수 | - | 1,088 | 1,088 | 2,853 | 22,325 | 4,640 | 3,279 | 33,097 |
| 국민은행 | 금액 | 53 | 136 | 189 | 107 | 72 | 36 | 15 | 230 |
| | 건수 | 721 | 1,413 | 2,134 | 1,039 | 788 | 440 | 176 | 2,443 |
| 기업은행 | 금액 | 53 | 136 | 189 | 109 | 75 | 34 | 13 | 231 |
| | 건수 | 716 | 1,443 | 2,159 | 1,117 | 828 | 406 | 160 | 2,511 |
| 농협은행 | 금액 | 34 | 86 | 120 | 71 | 51 | 29 | 14 | 164 |
| | 건수 | 446 | 819 | 1,265 | 649 | 535 | 341 | 169 | 1,694 |
| 대구은행 | 금액 | 29 | 24 | 53 | 24 | 17 | 8 | 4 | 53 |
| | 건수 | 385 | 241 | 626 | 224 | 163 | 92 | 50 | 529 |
| 부산은행 | 금액 | 9 | 15 | 24 | 16 | 15 | 7 | 5 | 44 |
| | 건수 | 119 | 153 | 272 | 161 | 162 | 94 | 63 | 480 |

(단위: 억원, 건)

| 구분 | | 2024 | | | 2025 | | | | |
|---|---|---|---|---|---|---|---|---|---|
| | | 3분기 | 4분기 | 전체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전체 |
| 수협은행 | 금액 | 9 | 5 | 14 | 3 | 3 | 1 | 0.24 | 7 |
| | 건수 | 124 | 49 | 173 | 29 | 28 | 12 | 3 | 72 |
| 신한은행 | 금액 | 50 | 111 | 161 | 104 | 74 | 31 | 13 | 221 |
| | 건수 | 702 | 1,210 | 1,912 | 1,069 | 830 | 379 | 156 | 2,434 |
| 우리은행 | 금액 | 53 | 145 | 198 | 124 | 81 | 43 | 18 | 267 |
| | 건수 | 719 | 1,503 | 2,222 | 1,224 | 865 | 502 | 205 | 2,796 |
| 전북은행 | 금액 | 1,750 | 2,941 | 4,692 | 2,494 | 1,785 | 625 | 701 | 5,604 |
| | 건수 | 25,181 | 32,784 | 57,965 | 25,459 | 21,329 | 7,913 | 9,589 | 64,290 |
| 카카오뱅크 | 금액 | 276 | 329 | 604 | 483 | 1,217 | 755 | 300 | 2,754 |
| | 건수 | 5,111 | 6,260 | 11,371 | 8,719 | 19,096 | 10,925 | 4,504 | 43,244 |
| 하나은행 | 금액 | 40 | 296 | 336 | 439 | 251 | 111 | 46 | 846 |
| | 건수 | 548 | 3,065 | 3,613 | 4,226 | 2,747 | 1,341 | 545 | 8,859 |
| 케이뱅크 | 금액 | - | - | - | - | - | 369 | 245 | 614 |
| | 건수 | - | - | - | - | - | 4,498 | 3,097 | 7,595 |
| 제주은행 | 금액 | - | - | - | - | 0.45 | 3 | 9 | 12 |
| | 건수 | - | - | - | - | 6 | 36 | 106 | 148 |
| 합계 | 금액 | 2,390 | 4,339 | 6,729 | 4,237 | 5,284 | 2,421 | 1,629 | 13,571 |
| | 건수 | 35,211 | 50,172 | 85,383 | 46,854 | 69,766 | 31,648 | 22,115 | 170,383 |

자료: 금융위원회

[2024년 이후 분기별·은행별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취급 실적]

(단위: 억원, 건)

| 구분 | | 2024 | | | | | 2025 | | | | |
|---|---|---|---|---|---|---|---|---|---|---|---|
|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전체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전체 |
| 광주은행 | 금액 | 205 | 138 | 125 | 244 | 712 | 267 | 305 | 253 | 158 | 982 |
| | 건수 | 7,997 | 5,915 | 5,544 | 6,855 | 26,311 | 7,323 | 8,067 | 6,755 | 4,111 | 26,256 |
| 전북은행 | 금액 | 118 | 70 | 48 | 129 | 365 | 392 | 358 | 313 | 180 | 1,242 |
| | 건수 | 4,372 | 2,824 | 1,961 | 3,864 | 13,021 | 11,582 | 10,030 | 8,745 | 4,853 | 35,210 |
| 상호저축은행 | 금액 | 192 | 124 | 199 | 343 | 859 | 136 | 178 | 254 | 169 | 738 |
| | 건수 | 7,385 | 5,201 | 8,347 | 10,371 | 31,304 | 4,084 | 4,943 | 7,107 | 4,570 | 20,704 |
| 합계 | 금액 | 515 | 332 | 372 | 716 | 1,935 | 795 | 841 | 820 | 506 | 2,962 |
| | 건수 | 19,754 | 13,940 | 15,852 | 21,090 | 70,636 | 22,989 | 23,040 | 22,607 | 13,534 | 82,170 |

주) 상기 은행을 제외한 타 은행의 취급 실적은 없음
자료: 금융위원회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취급하거나 회수율 제고에 기여하는 금융기관과 그렇지 않은 금융기관 간의 출연율을 충분히 차등화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민간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정책서민금융의 장기적 목표는 금융취약계층이 정책서민금융에서 벗어나 제도권 금융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므로,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지원 대상의 금융취약 상태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정책서민금융상품은 신용 평점이 낮거나 소득 수준이 낮아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금융취약계층이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단기적으로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임.

그런데 정부가 민간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상환여력이 취약한 자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기간이 장기화되면, 정부재정의 부담 가중 및 도덕적 해이 유발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제도권 금융 복귀 지원이라는 목표 달성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음.

즉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공급량 확대와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는 단기적으로는 부합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상충 가능성도 있으므로, 정책서민금융을 제공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책서민금융상품

제공의 정량적 확대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여건 자체가 개선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이들이 정책서민금융에서 벗어나 제도권 금융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취약계층의 제도권 금융 복귀 지원을 위하여, 정부출연금을 활용한 보증사업 이외에도 컨설팅・금융교육・복합지원 및 종합상담 등을 실시중이라고 설명하였음.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 외 사업 개관]

| 구분 | 주요 내용 |
|---|---|
| 컨설팅 | (자영업컨설팅) 취약계층 중 자영업자에게 전문 컨설턴트의 경영진단 및 사업 노하우 전수를 통해 실질적 자활・재기를 지원<br>(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용개선 및 금융부담 완화 솔루션 제공 |
| 금융교육 | 서민・취약계층을 포함한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합리적인 금융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포털 내 생애주기별 맞춤형 온라인교육 및 강사 방문 강의식 교육 등을 실시 |
| 복합지원 | 서민・취약계층은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고용・복지 등 복합적인 불안도 상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부처 간 협업으로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금융・고용・복지 제도를 서민금융센터에서 통합 제공 |
| 종합상담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휴면예금 조회・지급, 취업・교육, 컨설팅 등 비금융서비스 안내 및 제공을 위해 서민금융콜센터(1397) 및 APP 상담 지원 |

자료: 금융위원회

이 중 컨설팅 사업의 성과와 관련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은 컨설팅 사업의 제공 실적이 목표치를 매년 상회하고 있으며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의 경우 이용자와 미이용자 간 신용평점 개선 정도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등 금융취약계층의 제도권 금융 복귀 지원에 기여하였다는 입장임.

[연도별 서민금융진흥원 컨설팅 제공 실적]

(단위: 건)

| 구 분 | | 2023 | 2024 | 2025 |
|---|---|---|---|---|
|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 제공 목표 | 44,000 | 46,200 | 48,510 |
| | 제공 실적 | 44,333 | 46,973 | 49,807 |
| 자영업 컨설팅 | 제공 목표 | 6,000 | 6,240 | 4,200 |
| | 제공 실적 | 6,740 | 6,600 | 4,381 |

자료: 금융위원회

[연도별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에 따른 신용평점 개선 정도]

(단위: 점)

| 구 분 | | 2023 | 2024 | 2025 |
|---|---|---|---|---|
| 신용평점 증감분 | 컨설팅 이용자(A) | 2.4 | 7.1 | 1.8 |
| | 컨설팅 미이용자(B) | △4.7 | 0.9 | △6.7 |
| 컨설팅 이용 여부에 따른 증감분 차이(=A-B) | | 7.1 | 6.2 | 8.5 |

주) 컨설팅 이용자는 컨설팅 3회 이상 상담자를, 미이용자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중 컨설팅 미이용자를 의미
자료: 금융위원회

그런데 연도별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이용자 수는 2023년 1.1만명, 2024년 0.9만명, 2025년 1.3만명으로 전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수(2023년 148만명, 2024년 171만명, 2025년 125만명)의 1% 내외에 불과하고, 2023년과 2025년의 경우 취약차주의 절대 다수에 해당하는 컨설팅 미이용자는 오히려 신용평점이 대폭 감소하여, 제도권 금융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지원 대상의 금융취약 상태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3.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사업: 과다한 유보금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가. 개 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사업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정부기여금 및 시스템 구축·유지에 관한 출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3,467억 6,500만원 중 3,467억 5,8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되고, 700만원이 불용되었음.[7)]

[2025년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청년도약계좌) | 347,015 | 347,015 | 40 | △290 | 346,765 | 346,758 | - | 7 | 124,185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청년도약계좌는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이고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25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한 금액에 대해 정부기여금 및 이자소득 비과세를 지원하는 금융 상품으로, 2025년 말 기준 누적 가입자는 약 255만명, 누적 적금액은 약 18조 8,264억원임.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자 수 및 누적 적금액]

(단위: 천명, 억원)

| 구분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23 | 가입자 | - | - | - | - | - | - | 253 | 378 | 422 | 454 | 478 | 511 |
| | 금액 | - | - | - | - | - | - | 1,335 | 3,244 | 5,306 | 7,512 | 9,708 | 11,977 |
| 2024 | 가입자 | 550 | 704 | 1,059 | 1,226 | 1,305 | 1,325 | 1,400 | 1,438 | 1,459 | 1,526 | 1,544 | 1,572 |
| | 금액 | 14,420 | 27,553 | 45,448 | 53,321 | 58,387 | 62,855 | 67,706 | 72,610 | 77,731 | 82,990 | 87,990 | 92,989 |
| 2025 | 가입자 | 1,657 | 1,734 | 1,870 | 1,966 | 2,021 | 2,142 | 2,250 | 2,299 | 2,392 | 2,425 | 2,473 | 2,554 |
| | 금액 | 98,643 | 104,678 | 111,478 | 118,711 | 126,146 | 134,263 | 142,753 | 151,502 | 160,865 | 169,804 | 178,763 | 188,264 |

자료: 금융위원회

7) 일반회계-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1831-882)(금융소비자국)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2023년 6월 출시된 5년 만기 상품으로, 가입자가 만기 도래 전 중도해지하는 경우 사망·퇴직 및 혼인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정부기여금 및 이자소득 비과세를 지원하지 않았으나, 2025년부터는 3년 이상 계좌 유지 후 중도해지한 가입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고 정부기여금을 일부(60%) 지급하고 있음.

2026년에는 유사한 취지의 신규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될 예정이므로, 동 사업 또한 2026년 이후에는 청년도약계좌의 신규 가입을 지원하지 않고, 기존 계좌의 청년미래적금으로의 전환 또는 유지관리[8]만을 지원할 예정임.

청년미래적금은 청년도약계좌보다 만기가 짧고 월 최대 납입가능 금액이 낮으며, 납입금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정부기여금의 매칭 비율이 높음.

[청년도약계좌(2025년 이전) 및 청년미래적금(2026년 이후) 간 주요 차이점]

| 구분 | 청년도약계좌 | 청년미래적금 |
|---|---|---|
| 가입 요건 | 소득 7,500만원 이하 및<br>가구 중위소득 250% 이하인 청년 | (일반형) 소득 6,000만원 이하 또는<br>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br>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br>* 소득 6,000~7,500만원은 세제혜택만 부여<br>(우대형) 소득 3,600만원 이하 또는<br>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br>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br>* 중소기업 신규취업자는 우대형으로 분류 |
| 만기 | 5년 | 3년 |
| 월 최대 납입가능 금액 | 70만원 | 50만원 |
| 정부지원 내용 | 납입금에 비례하여 기여금 지급<br>및 이자소득 비과세<br>(소득수준에 따라 3%~6%) | 납입금에 비례하여 기여금 지급<br>및 이자소득 비과세<br>(일반형: 6%, 우대형: 12%) |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8) 청년미래적금으로의 전환은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 후 청년미래적금에 신규 가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청년미래적금에 신규 가입하려는 사람이 2026년 기준 만 35세 이상(다만, 최초 가입기간(2026년 6월)에 한해 2026년 1월~8월 사이에 만 35세가 된 청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가입을 허용)이거나, 소득 7,500만원을 초과하는 등 신규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청년미래적금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므로, 이들 계좌에 대해서는 전환이 아닌 유지관리만을 지원하는 것임.

## 나. 검토의견

**계획 대비 저조한 가입자 수, 중도해지에 따른 기여금 환수액 증가 등으로 인해 대규모의 정부기여금 집행잔액이 국고로 반납되지 않고 실집행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에 유보되고 있으므로, 금융위원회는 향후 청년미래적금 등 유사 사업에서 비슷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금융위원회는 2023년 청년도약계좌 출시 당시의 청년 인구수 추정치(약 500만명), 기존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자 수(287만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상 가입자 수를 306만명으로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 사업의 2023년 이후 예산액을 추계 후 매년 예산액 전액을 실집행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에 교부하였음.

그러나 연도 말 기준 청년도약계좌의 누적 가입자 수는 2023년 51만명, 2024년 157만명, 2025년 255만명으로 금융위원회의 예측치를 하회하였고, 이에 따라 매년 대규모의 정부기여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특히 2024년의 경우 당해연도 교부액(3,030억원)을 상회하는 수준의 집행잔액(3,195억원)이 2025년으로 이월되었음.

[연도별 청년도약계좌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 정부예산 | 교부액(A) | 서민금융진흥원 | | | |
|---|---|---|---|---|---|---|---|
| | | | | 전년도 이월액(B) | 예산현액 (C=A+B) | 실집행액 (D) | 집행잔액 (E=C-D) |
| 2023 | 정부기여금 | 344,037 | 344,037 | - | 344,037 | 43,222 | 300,815 |
| | 인프라 구축 | 23,610 | 23,610 | - | 23,610 | 21,059 | 2,551 |
| | 합 계 | 367,647 | 367,647 | - | 367,647 | 64,281 | 303,366 |
| 2024 | 정부기여금 | 359,043 | 302,993 | 300,815 | 603,808 | 284,329 | 319,479 |
| | 인프라 구축 | 8,664 | 8,664 | 1,260 | 9,924 | 9,181 | 743 |
| | 합 계 | 367,707 | 311,657 | 302,075 | 613,732 | 293,510 | 320,222 |
| 2025 | 정부기여금 | 336,804 | 336,804 | 319,479 | 656,283 | 401,911 | 254,372 |
| | 인프라 구축 | 9,707 | 9,707 | - | 9,707 | 9,205 | 502 |
| | 합 계 | 346,511 | 346,511 | 319,479 | 665,990 | 411,116 | 254,874 |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또한 상기 집행잔액과 별개로 가입자 편의 강화를 명목으로 2025년부터 3년 이상 계좌 유지 후 중도해지한 가입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고 정부기여금을 일부(60%) 지급하면서 중도해지 건수 및 정부기여금 환수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연도별 청년도약계좌 해지 및 정부기여금 환수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분 | | 해지 건수 | | 정부기여금 환수액 |
|---|---|---|---|---|
| | | 일반 | 특별중도 | |
| 2023 | 3분기 | 14,650 | 3 | 240 |
| | 4분기 | 27,309 | 48 | 1,317 |
| | 계 | 41,959 | 51 | 1,557 |
| 2024 | 1분기 | 35,099 | 129 | 2,529 |
| | 2분기 | 48,687 | 299 | 5,105 |
| | 3분기 | 48,086 | 664 | 6,812 |
| | 4분기 | 57,752 | 1,061 | 9,707 |
| | 계 | 189,624 | 2,156 | 24,153 |
| 2025 | 1분기 | 47,786 | 1,342 | 8,811 |
| | 2분기 | 52,736 | 1,525 | 9,603 |
| | 3분기 | 69,575 | 2,184 | 13,805 |
| | 4분기 | 94,199 | 3,215 | 21,931 |
| | 계 | 264,296 | 8,266 | 54,150 |

주) 청년도약계좌 사업은 2023년 3분기부터 시행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그런데 서민금융진흥원은 이와 같이 대규모로 발생하는 정부기여금 집행잔액, 환수액 및 이자수익을 연 단위로 정산하여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내부규정인 「자산형성 지원사업 출연금 관리규정」에 따라 사업종료연도의 다음 연도까지 보유하고 있는바, 이는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조속히 시정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예산 편성 당시 자산시장 상황 등 경제적 환경의 영향을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편성 당시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예산액을 최대한 정확히 추계하였다는 입장이나, 상기한 바와 같이 매년 2,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추계정확성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임.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예산 편성 시 추계정확성을 제고하여 실제 집행 가능한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하는 한편, 당해연도 출연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입실적을 고려하여 실제 필요한 수준의 출연금을 교부하고, 실제 사용되지 못할 예산이 출연기관에 과도하게 유보되지 않고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4.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수요의 추계정확성 제고 및 실적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가. 개 요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은 대부업 및 미등록 대부업자의 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의 피해자 또는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채무자대리인인 변호사 선임비용 및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8억 4,9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9)]

[2025년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 1,205 | 1,559 | - | 290 | 1,849 | 1,849 | - | - | 1,906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무료로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맞춤형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채무자대리인[10)] 및 소송대리인[11)]으로서 피해자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임.

2024년 7월부터 지인 추심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채무자의 관계인(「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까지 대리인 선임 범위가 확장되었고, 관련 비용은 동 사업의 2025년도 본예산부터 명시적으로 반영되었음.

9) 일반회계-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1833-301)(금융소비자국)

10) 변호사가 불법추심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 채무자 본인 또는 관계인을 대신하여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하거나 불법성 검토 등 법률서비스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대리인이 선임되면 등록·미등록대부업 채권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통해서만 추심이 가능함.

11)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 손해배상 및 채무부존재확인 등의 소송을 대리하여 수행하는 것임. 단, 수익자 부담원칙·재정여력 등을 감안하여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를 지원 대상으로 함.

그 외에도 금융위원회는 최근 신청의 편의성 제고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① 피해 입증부담 최소화(2024. 2.),[12] ② SNS 불법추심 피해 지원(2024. 11.),[13] ③ 신청양식 개선 및 신청서류 점검 간소화(2025. 4.),[14] ④ 서민금융진흥원 오프라인 신청창구 확대(2025. 4.),[15] ⑤ 채무자대리인 신청·상담 등을 위한 금융감독원 내 전담 직원 충원(2025. 5.) 및 전용 직통번호 신설(2025. 6.), ⑥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 금융감독원의 불법 추심자 대상 초동대응 강화(2025. 9.)를 비롯한 제도개선을 실시하였음.

2026년부터는 추가로 ①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② 채무자대리인 선임 통지 시 불법추심 대응요령 안내, 재추심 발생 시 중단 조치를 비롯한 관리 강화, ③ 채무자대리인 지원횟수 제한 폐지, 채무당사자 신청 없이도 관계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 등의 제도개선을 실시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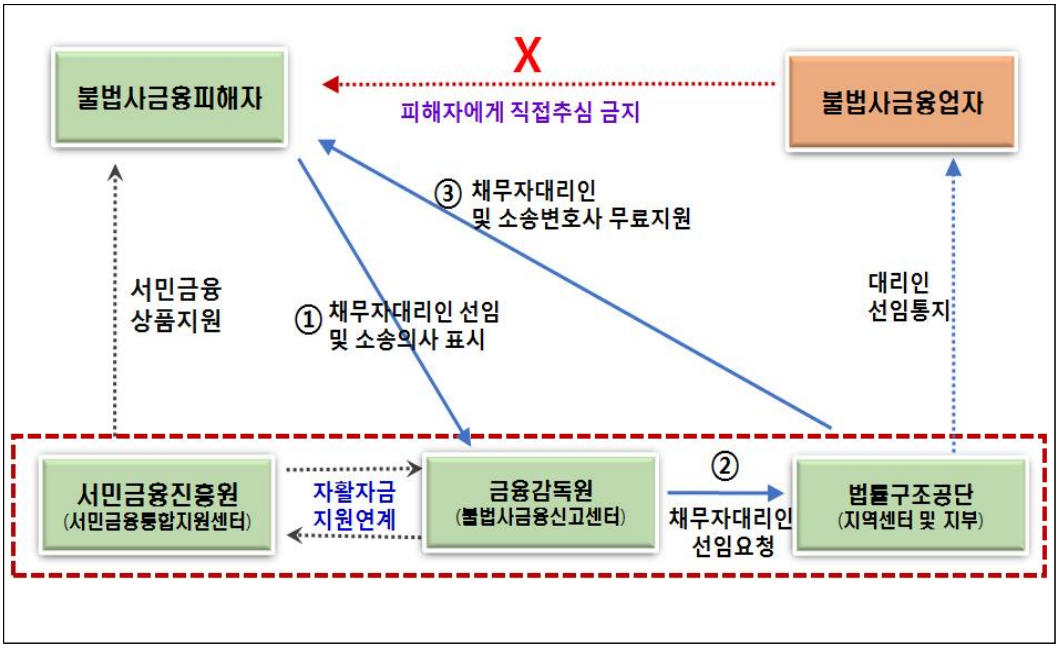
12) 기존에는 채무자대리인 신청 시 신청인에게 불법추심 등에 따른 피해 입증자료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입증부담 완화를 위해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과정에서 불법추심 피해 사실이나 우려가 확인된 경우에는 별도 입증자료 없이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

13) 기존에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필수 입력하도록 하여 SNS 등을 통한 불법추심 피해자는 신청이 불가하였으나, SNS, 오픈채팅방 등의 불법추심업자 ID만 알아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완화함.

14) 기존에는 신청서가 서술형으로 구성되어 오류·누락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모든 신청 건을 점검한 후 법률구조공단으로 이관하여, 점검 과정에서 신청인들과의 연락지연·두절 등의 이유로 신속히 이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이에, 신청서 양식을 선택형으로 변경하고 신청서 용어 등을 신청인이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신청 내용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금융감독원에서 다시 점검하는 절차 없이 법률구조공단으로 신속히 이관할 수 있도록 함.

15) 기존에는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신청 편의성과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신청창구를 서민금융진흥원(오프라인)으로 확대함. 법무부 법률구조플랫폼(온라인)은 2026년 1월부터 운영을 개시하였음.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운영 체계]




자료: 금융위원회

## 나. 검토의견

**금융위원회는 채무자 대리인 및 채무자 관계인 지원 사업수요를 부정확하게 예측하여 예산액과 실제 집행액 간 큰 차이가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지원 실적이 저조한 채무자 관계인 지원에 대해서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홍보를 강화하는 등 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2025년도 본예산부터 대리인 선임 범위를 채무자 본인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관계인까지 확장하면서, ① 채무자(본인) 대리인 선임, ② 부수사건 소송대리, ③ 채무자관계인 대리인 선임 등 3개의 내역사업을 편성하였음.

그런데 동 사업의 연도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의 집행액은 6억 2,800만원으로 예산액(12억 5,500만원)에 크게 미달하였고, 2025년의 집행액은 18억 4,900만원으로 본예산액(12억 500만원) 및 추경예산액(15억 5,900만원)을 상회하였음.

[2021~2025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 연도 | 예산액 | | 집행액 (B) | 실집행액 (C) | 집행률 (B/A) | 실집행률 (C/B)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2021 | 604 | 604 | 604 | 604 | 100.0 | 100.0 | - | - |
| 2022 | 1,144 | 1,144 | 1,144 | 1,144 | 100.0 | 100.0 | - | - |
| 2023 | 886 | 886 | 886 | 886 | 100.0 | 100.0 | - | - |
| 2024 | 1,255 | 1,255 | 628 | 571 | 50.0 | 45.5 | - | 627 |
| 2025 | 1,205 | 1,559 | 1,849 | 1,849 | 118.6 | 100.0 | - | - |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은 예산액과 집행액 간 괴리는 사업수요에 대한 추계의 부정확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2024년 이후 동 사업의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의 경우 2024년에는 실제 수요가 계획치에 미달하였으나 2025년에는 계획치를 상회하였고, 채무자관계인 선임 지원의 경우 2년 모두 실제 수요가 계획치에 크게 미달하였음.

[2024년 이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구분 | | 당초 계획 | 실제 집행 내역 | 집행률 |
|---|---|---|---|---|
| 2024 |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 ○(당초) 12억 4,100만원<br>= 5,965건 × 20.8만원<br>○(변경) 9억 2,200만원<br>= 4,430건 × 20.8만원 | ○ 5억 5,812만원<br>= 3,096건 × 18.0만원 | 45.0% |
| | 부수사건 소송대리 | ○ 1,400만원<br>= 28건 × 49.7만원 | ○1,155만원<br>= 162건 × 7.1만원 | 78.6% |
| | **채무자관계인 선임 지원** | ○(변경) 3억 1,900만원<br>= 4,560건 × 7만원 | ○160만원<br>= 10건 × 16.0만원 | 0.5% |
| 2025 |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 ○(당초) 7억 7,200만원<br>= 3,711건 × 20.8만원<br>○(추경) 11억 2,600만원<br>= 5,411건 × 20.8만원 | ○17억 3,046만원<br>= 8,683건 × 19.9만원 | 154.2% |
| | 부수사건 소송대리 | ○ 1,400만원<br>= 28건 × 49.7만원 | ○1,861만원<br>= 134건 × 13.9만원 | 132.9% |
| | **채무자관계인 선임 지원** | ○ 3억 1,900만원<br>= 4,560건 × 7만원 | ○81만원<br>= 11건 × 7.4만원 | 0.3% |

주) 홍보비 제외

자료: 금융위원회

이는 상기한 바와 같이 동 사업에서 최근 신청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선임 지원의 범위를 관계인까지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요에 대한 추계는 제도개선 이전의 과거 연평균 지원 실적을 기초로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부수사건 소송대리에 대하여는 2020~2022년 평균 지원 건수, 채무자대리인 및 관계인 선임 지원에 대하여는 2021~2022년 평균 지원 실적[16]을 참고하여 2024년 및 2025년 본예산액을 산출하였으나, 해당 연도 지원 실적은 과거와 큰 차이를 보였음.

[2024년 이후 월별 채무자대리인 지원 사업 실적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분 | | 2024년 | | | | | | | | | | | | |
|---|---|---|---|---|---|---|---|---|---|---|---|---|---|---|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소계 |
| 채무자 대리인 선임 | 신청건수 | 198 | 133 | 210 | 425 | 244 | 261 | 344 | 204 | 171 | 270 | 298 | 556 | 3,314 |
| | 지원건수 | 120 | 127 | 150 | 455 | 162 | 261 | 348 | 154 | 150 | 278 | 271 | 448 | 2,924 |
| | 지원액 | 0 | 0 | 87 | 28 | 90 | 37 | 47 | 70 | 28 | 26 | 50 | 97 | 560 |
| 채무자 관계인 지원 | 신청건수 | 미운영 | | | | | | 0 | 0 | 3 | 2 | 5 | 1 | 11 |
| | 지원건수 | | | | | | | 0 | 0 | 3 | 2 | 5 | 0 | 10 |
| | 지원액 | | | | | | | 0 | 0 | 0 | 0 | 0.8 | 0.8 | 1.6 |
| 부수 사건 소송 대리 | 신청건수 | 0 | 2 | 3 | 0 | 2 | 0 | 0 | 2 | 8 | 61 | 81 | 5 | 164 |
| | 구조건수 | 0 | 2 | 3 | 0 | 2 | 0 | 0 | 2 | 8 | 61 | 81 | 3 | 162 |
| | 구조금액 | 0 | 0 | 2.5 | 0.4 | 0.3 | 0 | 0 | 0.5 | 0 | 0.8 | 0 | 62.2 | 66.7 |
| 구분 | | 2025년 | | | | | | | | | | | | |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소계 |
| 채무자 대리인 선임 | 신청건수 | 630 | 423 | 513 | 969 | 870 | 1,109 | 1,385 | 1,364 | 1,362 | 1,132 | 1,244 | 1,028 | 12,029 |
| | 지원건수 | 463 | 442 | 412 | 736 | 902 | 896 | 1,344 | 1,264 | 1,284 | 948 | 1,218 | 1,041 | 10,950 |
| | 지원액 | 0 | 124 | 85 | 88 | 130 | 195 | 179 | 252 | 214 | 5 | 458 | 0 | 1,730 |
| 채무자 관계인 지원 | 신청건수 | 3 | 0 | 0 | 0 | 0 | 0 | 0 | 1 | 2 | 0 | 0 | 5 | 11 |
| | 지원건수 | 3 | 0 | 0 | 0 | 0 | 0 | 0 | 1 | 2 | 0 | 0 | 5 | 11 |
| | 지원액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부수 사건 소송 대리 | 신청건수 | 0 | 42 | 0 | 0 | 2 | 0 | 0 | 76 | 2 | 0 | 0 | 0 | 122 |
| | 구조건수 | 0 | 42 | 0 | 0 | 1 | 0 | 0 | 76 | 1 | 2 | 0 | 0 | 122 |
| | 구조금액 | 0 | 0 | 1 | 0 | 1 | 6 | 0 | 2 | 0 | 0 | 9 | 0 | 19 |

자료: 금융위원회

16) 해당 기간에 지원 실적이 없는 채무자관계인 선임 지원의 경우 2021~2022년 채무자대리인 지원 실적에 채무자 1인 기준 관계인 추정치인 4.8명을 곱하여 수요를 추계하였음.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단순히 과거 실적 평균치를 바탕으로 채무자 대리인 및 채무자 관계인에 대한 사업 수요를 추계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추계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지원 실적이 크게 저조한 채무자 관계인 선임 지원에 대해서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홍보를 강화하는 등 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5. 산업은행 출자(지역활성화투자펀드) 사업: 신속한 자펀드 결성 필요 등

## 가. 개 요

**‘산업은행 출자(지역활성화투자펀드)’** 사업은 정부·민간이 협력하여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조성 후 지역개발사업 및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해 투자함으로써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사회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000억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17]

[2025년도 산업은행 출자(지역활성화투자펀드)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산업은행 출자 (지역활성화투자펀드) | 100,000 | 100,000 | - | - | 100,000 | 100,000 | - | - | 50,000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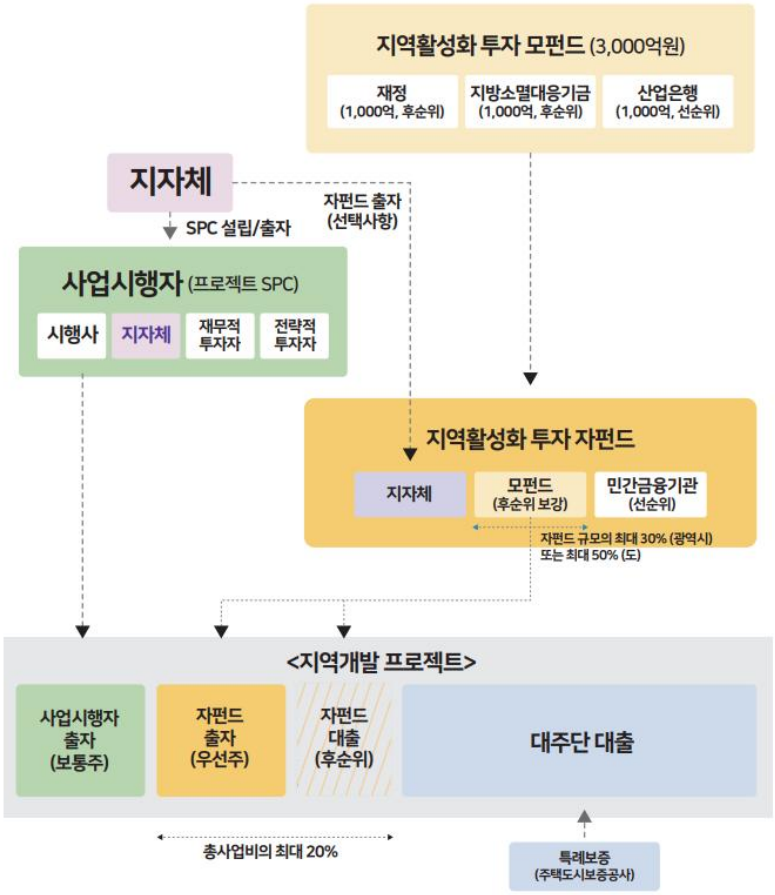
동 사업은 재정·산업은행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각각 1,000억원씩 출자하여 5년간(2024~2028년) 연마다 3,000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 후, 이를 바탕으로 총사업비 기준 최소 3조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조성할 예정임. 자펀드는 모펀드와 민간투자자가 출자하되 지방자치단체 또한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출자가 가능하고, 결성된 자펀드는 지역개발 프로젝트에 총사업비의 20% 이내에서 투자가 가능함.

프로젝트 대상은 펀드 취지 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유롭게 선정 가능하고, 수도권 소재 사업 및 단순 분양형 사업 등의 제외 사업을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정하고 있음.[18]

17) 일반회계-산업은행 출자(지역활성화투자펀드)(2414-320)(금융정책국)

18)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사업, 향락시설 사업, 법률분쟁 중인 사업, 상업시설·공동주택 등에 대한 분양·매각 매출 합계가 총 사업비의 50% 이상인 사업(단, 분양수익이 문화, 체육, 예술, 복지 등 공공시설 개발재원으로 활용 시 예외 적용), 이미 준공된 사업 중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제외 사업에 해당함.

[지역활성화투자펀드 구조도]




자료: 한국성장금융,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종합 안내」

2025년 말 기준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총 8개의 프로젝트를 선정(2024년 5개, 2025년 3개) 후 투자를 추진 중에 있음.

2024년에는 ①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680억원 규모), ② 경북 구미 1국가산단 구조고도화(876억원 규모), ③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1조 4,362억원 규모), ④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8,191억원 규모), ⑤ 충남 서산 글로벌 홀티콤플렉스 1단계(900억원 규모) 등 5개 프로젝트를 선정하였음.

2025년에는 ① 경남 거제 체류형 숙박시설(7,200억원 규모), ② 전남 장성 첨단데이터센터(3,959억원 규모), ③ 충남 태안 Seed Farm(177억원 규모) 등 3개 프로젝트를 선정하였음.

## 나. 검토의견

**첫째, 프로젝트 선정 및 자펀드 결성 과정이 지연됨에 따라 대규모의 예산이 한국산업은행 모펀드계정에 유보되는 등 예산 운용의 비효율이 발생하였으므로, 프로젝트 선정 및 자펀드 결성 과정이 속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 1년 성과 및 향후 추진방안」(2025. 2. 5.)을 통해, 2024년 5개의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1년 만에 모펀드의 81.5%가 소진됨으로써 펀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였다고 평가한 바 있음.

그런데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프로젝트별 진행 현황을 살펴보면, 동 사업의 자펀드 결성 기한은 심사 완료 후 선정통보일로부터 최초 4개월 이내이고 이후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협의를 통해 3개월씩 2회, 최대 6개월 연장이 가능한데, 상당수의 프로젝트에서 자펀드 결성 기한을 연장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음.

[지역활성화투자펀드 프로젝트별 진행 현황]

| 선정연도 | 지역명 | 프로젝트명 | 프로젝트 선정일 | 자펀드 최종 결성 기한 | 자펀드 실제 결성일 | 착공일 |
|---|---|---|---|---|---|---|
| 2024 | 충북 단양 |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 (1차) 2024.2.16.<br>(2차) 2024.11.26. | (1차) 2024.12.19.<br>(2차) 2025.9.29. | 2025.9.26. | - |
| | 경북 구미 | 1국가산단 구조고도화 | (1차) 2024.2.22.<br>(2차) 2024.11.26.<br>(3차) 2025.1.23. | (1차) 2024.12.24.<br>(2차) 2025.9.29.<br>(3차) 2025.8.24. | 2025.8.21. | 2025.12.30. |
| | 전남 여수 | 묘도 LNG 터미널 | 2024.8.29. | 2025.4.2. | 2025.2.28. | 2024.10.4. |
| | 경북 경주 | 강동 수소연료 전지발전소 | (1차) 2024.11.26.<br>(2차) 재심사 중 | (1차) 2025.9.29.<br>(2차) 재심사 중 | 재심사 중 | - |
| | 충남 서산 | 글로벌 홀티콤플렉스 | (1차) 2024.12.24.<br>(2차) 2025.9.26. | (1차) 2025.4.24.<br>(2차) 2026.5.3. | 2026.4.9. | - |
| 2025 | 경남 거제 | 체류형 숙박시설 | 2025.11.4. | 2026.8.28. | 결성 중 | - |
| | 전남 장성 | 첨단 데이터센터 | 2025.11.4. | 2026.9.7. | 2025.12.10. | 2026.2.11. |
| | 충남 태안 | Seed Farm | 2025.11.28. | 2026.10.1. | 결성 중 | - |

주 1) 2026년 4월 말 기준
2) 자펀드 결성 기한은 원칙적으로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이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 3개월씩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함

자료: 금융위원회

이를 프로젝트별로 살펴보면, 충북 단양의 자펀드는 2024년 2월 최초 선정되었으므로 결성 기한은 원칙적으로 2024년 6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 2024년 12월까지였으나,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가 공사비 급등 등을 이유로 사업 규모를 축소함에 따라 모펀드 운용사가 2024년 11월 자펀드를 재선정하였고, 이로 인해 자펀드 결성은 최초 자펀드 선정 이후 19개월 이상 경과한 2025년 9월에 완료되었으며, 2026년 4월 말 현재까지 착공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경북 구미의 자펀드 또한 2024년 12월이 결성 최종 기한이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가 주거시설 규모 축소 및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사업 계획을 두 차례나 변경함에 따라 모펀드 운용사가 2024년 11월과 2025년 1월에 자펀드를 두 차례 재선정하였고, 이로 인해 자펀드 결성은 최초 자펀드 선정 이후 약 18개월 가량 경과한 2025년 8월에 완료되었으며, 2025년 12월 30일에 비로소 착공에 이르게 되었음.

또한 프로젝트 자체를 뒤늦게 선정하여 자펀드 결성 및 착공 등이 지연되는 경우도 빈번하였음. 경북 경주의 경우 2024년 11월 26일이 되어서야 프로젝트가 선정되었고, 2026년 4월 말 현재까지도 자펀드 재선정을 위한 재심사 과정이 진행 중으로 착공 이전에 자펀드 결성조차 요원한 상황임.

충남 서산 또한 회계연도 말일에 거의 근접한 2024년 12월 24일에 프로젝트가 선정되었고, 자펀드 운용사가 사업 제안을 철회하여 자펀드를 한 차례 재선정한 이후 2026년 4월 9일에 자펀드가 결성되었음.

2025년에도 모든 프로젝트(경남 거제, 전남 장성, 충남 태안)가 11월 이후에 선정되었고, 이 중 경남 거제와 충남 태안의 경우 2026년 4월 말 현재까지도 자펀드가 결성되지 않고 있음.

이와 같이 자펀드 결성이 만성적으로 지연됨에 따라 대규모의 예산이 한국산업은행 재정모펀드계정에 유보되었고, 모펀드 약정액 또한 2026년 3월말 기준 6,000억원 중 3,228억원에 불과하는 등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었음.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사업 관련 재원 흐름]

(단위: 백만원)

| 구 분 | 정부재정 | 산업은행<br>재정모펀드계정 | 지역활성화<br>투자모펀드 | 각 자펀드 |
|---|---|---|---|---|
| 투입액 | 200,000 | 200,000 | 21,200 | 20,847 |
| 잔액(연도말) | 0 | 178,800 | 353 | 0 |

주) 2025년 말 기준이며, 펀드 운영비용 및 이자수익은 고려되지 않았음
자료: 금융위원회

[지역활성화투자펀드 프로젝트별 약정액 및 투자액 현황]

(단위: 억원)

| 지역명 | 프로젝트명 | 총사업비 | 모펀드 약정액 | 자펀드 | | |
|---|---|---|---|---|---|---|
| | | | | 결성여부 | 약정액 | 투자액 |
| **충북 단양** |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 680 | 68 | 결성완료 (PF대출 모집 중) | 136 | - |
| 경북 구미 | 1국가산단 구조고도화 | 876 | 39 | 투자완료 (공사 진행 중) | 78 | 78 |
| 전남 여수 | 묘도 LNG 터미널 | 14,362 | 1,435 | 결성완료 (공사 진행 중) | 2,872 | 835 |
| *경북 경주* | 강동 수소연료 전지발전소 | 8,191 | 786 | 재심사 중 | 1,572 | - |
| 충남 서산 | 글로벌 홀티콤플렉스 | 900 | 90 | 결성완료 (PF대출 모집 중) | 180 | - |
| 경남 거제 | 체류형 숙박시설 | 7,200 | 420 | 결성 중 | 840 | - |
| **전남 장성** | 첨단 데이터센터 | 3,959 | 372 | 투자완료 (공사 진행 중) | 745 | 745 |
| **충남 태안** | Seed Farm | 177 | 18 | 결성 중 | 35 | - |
| 합 계 | | 36,345 | 3,228 | - | 6,458 | 1,658 |

주) 2026년 6월 말 기준이며, 볼드 처리된 지역은 2026년 6월 기준 인구감소지역을, 이탤릭 처리된 지역은 2026년 6월 기준 인구관심지역을 의미

자료: 금융위원회

프로젝트 선정과 자펀드 결성 등 복잡다단한 추진 절차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다수의 이해관계자 등을 고려하더라도, 대부분의 자펀드가 부득이한 사유 발생을 이유로 1차 결성 기한(4개월)을 준수하지 않고 있고 프로젝트 자체를 뒤늦게 선정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동 사업에서는 정부예산이 매년 대규모로 투입되고 있음에도 그 운용의 효율성은 높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은 유보금 및 모펀드 미약정액의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펀드 결성 기한 연장 조건인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를 필요최소한도로 명확히 설정하는 등 사업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둘째,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목적은 지역 경제·사회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은 투자 프로젝트가 소멸위기 지역에 대한 투자 활성화라는 목적이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음.**

상기하였듯 동 사업의 주 목적에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동 사업의 모펀드에 5년간 출자할 예정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기초지원계정 7,500억원, 광역지원계정 2,500억원으로 구성되고, 기초지원계정 중 95%가 인구감소지역에, 나머지 5%가 인구관심지역에 배분되며,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수·재정·인구여건 등에 따라 각 광역자치단체에 배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중 1,000억원이 별도 배분되어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모펀드 재원으로 유입되는 것임.

그런데 2024년 이후 동 사업에서 선정된 8개 프로젝트 중 인구감소지역(충북 단양, 전남 장성, 충남 태안) 관련 프로젝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총사업비 기준 13.3%(3.6조원 중 4,816억원), 모펀드 약정액 기준 14.2%(3,228억원 중 458억원)에 불과하였는바, 인구감소지역에의 집중 지원을 통한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이라는 기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 사업, 전남 장성 첨단 데이터센터 사업 등은 2026년부터 한국산업은행에서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의 집중 투자 분야(10대 첨단전략산업 중 '수소', '인공지능(AI)'와 중첩되는바,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사업에서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약화되는 것은 기존 펀드 사업과의 차별성 미흡으로도 귀결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일부 사업시행사가 소멸위기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개발이익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방안 등을 자체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개발이익 일부를 기부하는 방안은 개발이익 발생 여부 및 규모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그 효과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한시적인 것에 그칠 우려가 있으며, 민간 시행사가 사업 선정 관련 혜택을 이미 향유하고 있는 시점에서 추가 비용이 수반되는 방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불투명한 것으로 보임.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긴밀히 대응하려는 목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간소화, 공적 자금의 후순위 보증 등 기존 지원사업과 차별화되는 다양한 특례를 적용받고 있는데, 사업의

기대 효과가 지역 소멸 대응과 관련성이 낮거나, 기존의 단순 현금성 지원사업과의 차별성이 미흡한 것은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은 동 사업의 투자 프로젝트가 소멸위기 지역의 활성화라는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음.

# 6. 산업은행 출자(반도체설비투자지원특별프로그램) 사업: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대해 재정의 마중물 역할 수행 필요

## 가. 개 요

**‘산업은행 출자(반도체설비투자지원특별프로그램)’** 사업은 반도체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외 기업에 대해 설비투자 및 R&D 자금 등 시설자금을 저리로 대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4,500억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19)]

[2025년도 산업은행 출자(반도체설비투자지원특별프로그램)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산업은행 출자 (반도체설비투자 지원특별프로그램) | 250,000 | 450,000 | - | - | 450,000 | 450,000 | - | - | -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앞서 정부는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2024. 5. 23.) 및 추진방안(2024. 6. 26.) 등을 통해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대한 26조원 규모의 종합지원을 발표하고, 그 중 금융지원 방안으로 저리대출프로그램의 신설을 추진한 바 있음.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2024. 6. 26.) 주요 내용]

◦ (추진 전략)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대한 26조원 규모의 종합지원 방안 추진
◦ (**금융지원**)
- 대출: 17조원 **저리대출 프로그램 신설**(2024년 7월부터 즉시 가동, 현금 1조원 및 현물 1조원 출자)
- 펀드: 반도체 생태계 펀드 확대(8,000억원 펀드 신설 등)
◦ (세제지원)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3년 연장 및 첨단반도체 소부장 기술 추가 검토 등
◦ (재정지원) 대규모 R&D 예타 신속 완료, 국산 AI반도체 실증·상용화 지원, 반도체 특성화대학 확대 등
◦ (인프라지원) 용인 국가산단 관련 국도 이설·확장 예타 면제 추진, 용수관로 구축 및 전력 적기공급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9) 일반회계-산업은행 출자(반도체설비투자지원특별프로그램)(2414-322)(금융정책국)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2024. 6. 26.) 발표 당시 금융지원 중 저리대출 관련 내용]

| 구분 | 주요 내용 |
|---|---|
| 지원 규모 | 2027년까지 최대 2조원(현금 1조원, 현물 1조원) 정부출자를 통해 한국산업은행 대출공급 여력을 확충하여 17조원 저리대출 지원 (2024년 7월부터 프로그램 가동 및 2025년부터 출자 실시) |
| 지원 대상 | 국내에 신규 투자하려는 **반도체 全분야**(소부장・팹리스・제조시설 등)의 국내외 기업(중소・중견・대기업 포함)에 지원하되, 설비・R&D 투자자금 등 시설자금(장기대출 위주)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 대환이 아닌 신규투자에 대해 자금지원 |
| 대출 한도 | 현행 「한국산업은행법」상 동일계열 여신한도까지 지원 (BIS 개별자기자본의 25%) |
| 금리 조건 | 일반 한국산업은행 대출 대비 대기업(신용등급 AA, 5년 고정금리)은 △0.8%~△1.0%p, 중소・중견기업(신용등급 BBB, 3년 고정금리)은 △1.2%~△1.5%p 우대 |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후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방안(2025. 4. 15.)」을 통해 반도체 분야에 대한 투자 규모를 26조원에서 33조원으로 확대하고,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동 사업의 2025년 현금출자 규모를 2,500억원에서 4,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운용 규모 또한 17조원에서 20.4조원으로 확대한 바 있음.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방안」(2025. 4. 15.) 주요 내용]

| 구분 | 주요 내용 |
|---|---|
| 기본 방향 |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재정의 마중물 투자**를 통해 해소 |

| | | | |
|---|---|---|---|
| 인프라 | 기업 구축 비용 과도 → 전력 등 인프라 적기 구축 지원 | ① 송전선로 지중화 지원 신설<br>② 대규모 첨특단지 인프라 지원한도 상향<br>③ 첨특단지 인프라 지원비율 상향 | 3.1조원 →5.1조원 |
| 투자 | 기업 투자 여력 부족 → 보조금, 대출, 보증 등 투자 재원 보강 | ④ 소부장 중소・중견 투자보조금 신설<br>**⑤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반도체 저리대출 추가 공급)**<br>⑥ 반도체 중소기업 기술보증 확대<br>⑦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 18.1조원 →21.6조원 |
| 차세대 기술 | 신시장 창출 지연 → 차세대 반도체 개발 신속 지원 | ⑧ 팹리스 기업 고성능 장비 확충<br>⑨ 양산 연계형 미니팹 구축<br>⑩ 차세대 반도체 핵심 기술개발 조기 달성 지원<br>⑪ 스타 팹리스 육성 확대<br>⑫ AI반도체 트랙레코드 확보 지원 | 3.8조원 →5.0조원 |
| 인재 | 핵심인재 유출 우려 → 우수인재 확보 지원 | ⑬ 국내 신진 석박사 연수・연구 신설<br>⑭ 해외 고급인재 유치 프로그램 신설<br>⑮ 반도체 아카데미 전국 확대 | 1.4조원 (유지) |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나. 검토의견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걸쳐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려는 당초 지원 프로그램의 취지와 달리 민간에서도 저리 차입이 가능한 소수 우량 기업에 저리대출이 집중되었으므로,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은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정의 마중물 효과가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미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의 대출 승인 내역을 살펴보면, 5개 기업에 대해 전체 대출액(6조 9,107억원) 중 73.7%(5조 900억원)가 승인되는 등 프로그램의 지원 효과가 소수 기업에 집중된 측면이 있음.

[반도체설비투자특별지원프로그램 지원 기업 중 대출액 기준 상위 5개 기업]

(단위: 억원)

| 순위 | 대출 시기 | 신용등급 | 대출액(비중) |
|---|---|---|---|
| 1 | 2025. 4., 2025. 12. | AAA | 36,000(52.1%) |
| 2 | 2025. 4., 2025. 12. | AA+ | 10,000(14.4%) |
| 3 | 2025. 5. | A0 | 2,250(3.3%) |
| 4 | 2025. 8. | AA- | 1,500(2.2%) |
| 5 | 2025. 5., 2025. 12. | A- | 1,150(1.7%) |
| 전체(73개 기업) | 2025. 2. ~ 2026. 3. | | 69,107(100.0%) |

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규 시설투자에 대해서만 대출 지원이 이루어졌음
자료: 금융위원회

또한 동 사업의 대출 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신용등급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대출 승인액의 과반이 신용등급이 최우량(AAA)인 1개 기업에 집중되었으며, 신용등급이 BBB+ 이하인 대출 승인 기업 수는 16개(22.0%), 대출 승인액의 비중은 4.2%(2,935억원)에 불과하였음.

[반도체설비투자특별지원프로그램 대출 승인 기업의 신용등급 및 대출 승인액 현황]

(단위: 개, 억원)

| 구분 | 최우량 | 우량 | | | 양호 | | |
|---|---|---|---|---|---|---|---|
| | AAA | AA+ | AA0 | AA- | A+ | A0 | A- |
| 기업 수<br>(비중) | 1<br>(1.4%) | 3<br>(4.1%) | 5<br>(6.8%) | 15<br>(20.5%) | 4<br>(5.5%) | 6<br>(8.2%) | 23<br>(31.5%) |
| 대출 승인액<br>(비중) | 36,000<br>(52.1%) | 11,520<br>(16.7%) | 1,385<br>(2.0%) | 7,002<br>(10.1%) | 1,237<br>(1.8%) | 3,210<br>(4.6%) | 5,818<br>(8.4%) |
| 구분 | 보통 | | | 투기적 | | | 계 |
| | BBB+ | BBB0 | BBB- | BB+ | BB0 | BB- | |
| 기업 수<br>(비중) | 4<br>(5.5%) | 2<br>(2.7%) | 6<br>(8.2%) | 1<br>(1.4%) | 2<br>(2.7%) | 1<br>(1.4%) | 73<br>(100.0%) |
| 대출 승인액<br>(비중) | 884<br>(1.3%) | 380<br>(0.5%) | 1,357<br>(2.0%) | 35<br>(0.1%) | 231<br>(0.3%) | 48<br>(0.1%) | 69,107<br>(100.0%) |

자료: 금융위원회

물론 현재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 국가 간 치열한 경쟁 구도에 있고, 소수 대기업에 관련 산업 역량이 집중되어 있는 현실적 측면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우량 기업 위주로 대규모 설비투자의 신속 집행을 지원하여 국가 간 경쟁 구도에서 주력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는 일견 타당한 측면도 있음.

그러나 동 사업의 당초 목적은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대해 폭넓게 투자함으로써 공적 자금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 자금이 아니더라도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차입이나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저리의 자금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최우량·우량·양호 등급의 기업에 95% 이상의 대출을 집중 승인한 측면이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은 향후 동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재정의 마중물 효과가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미칠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홍보를 강화하고 집행 방식을 개선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7. 산업은행 출자(관세대응저리지원특별프로그램) 사업: 우량 기업 위주 지원, 연내 내용 대폭 변경 및 중복수혜 발생 등 부적정

## 가. 개 요

**‘산업은행 출자(관세대응저리지원특별프로그램)’** 사업은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첨단전략산업(반도체 제외)을 영위하는 기업과 관세피해기업에 대해 시설자금·운영자금을 저리로 대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000억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20]

[2025년도 산업은행 출자(관세대응저리지원특별프로그램)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산업은행 출자 (관세대응저리지원 특별프로그램) | - | 100,000 | - | - | 100,000 | 100,000 | - | - | -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은 美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25%) 이후 불확실성 극대화 및 경기둔화 우려에 대한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하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반도체 외 첨단전략산업 및 관세피해기업 대상 저리대출프로그램을 신설하였음.

동 사업은 총 4조원 규모의 자금을 기업에 공급하는 것으로, ① 반도체 외 첨단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설비투자자금으로 1조원을 지원(이하 ‘핵심산업 플러스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하였고, ② 관세피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운영자금으로 3조원을 지원(이하 ‘위기대응지원 특별프로그램’)하였음.

20) 일반회계-산업은행 출자(관세대응저리지원특별프로그램)(2414-324)(금융정책국)

[관세대응저리지원특별프로그램 세부 내용]

| 구분 | 핵심산업 플러스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 | 위기대응지원 특별프로그램 |
|---|---|---|
| 대상 산업 | 이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AI 등 첨단전략산업 | 관세피해 제조업 전반 |
| 용도 | 설비투자자금 (신규설비 및 R&D 투자) | 운영자금 |
| 지원규모 | 1조원 | 3조원 |
| 대출 만기 | 15년 이내(거치기간 포함) | 1년 이내 |

자료: 금융위원회

## 나. 검토의견

**첫째, 민간에서도 저리 차입이 가능한 우량 기업 위주로 대출 실적이 집중되었는데, 이는 통상환경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원이라는 당초 프로그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동 사업은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2025. 4. 9.) 결과를 고려하여 관세피해지원, 산업경쟁력 강화, 공급망 재편 대응 등을 위해 예산이 추가로 편성된 것으로,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부과가 산업 전반에 광범위하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반도체 외 주요 업종에 대해서도 재정투입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집중 지원하고자 한 것임.

그런데 동 사업의 대출 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신용등급별 현황을 살펴보면, 핵심산업 플러스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의 경우 전체 대출 승인액 중 85.3%(8,531억원) 가량이 신용등급 A- 이상인 기업에 지원되었으며, 위기대응지원 특별프로그램의 경우 전체 대출 승인액 중 74.0%(2조 1,263억원) 가량이 신용등급 A- 이상인 기업에 지원되는 등 민간에서도 저리 차입이 가능한 우량 기업 위주로 대출 실적이 집중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은 신용등급에 따른 별도의 제한 없이 대출 용도에 따른 회수가능성 등만을 감안하여 대출을 지원하였고, 대기업 계열사(6,000억원), 중소·중견기업(1조 5,263억원) 등 관세 영향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 대해 충분한 수준의 대출을 지원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일수록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자금 조달에 더욱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동 사업의 대출 실적은 통상환경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원이라는 당초 프로그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핵심산업 플러스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 대출 승인 기업의 신용등급 및 대출 승인액 현황]

(단위: 개, 억원)

| 구분 | 최우량 | 우량 | | |
|---|---|---|---|---|
| | AAA | AA+ | AA0 | AA- |
| 기업 수<br>(비중) | 1<br>(3.4%) | - | 4<br>(13.8%) | 6<br>(20.7%) |
| 대출 승인액<br>(비중) | 450<br>(4.5%) | - | 1,400<br>(14.0%) | 2,685<br>(26.9%) |

| 구분 | 양호 | | | 보통 | | | 계 |
|---|---|---|---|---|---|---|---|
| | A+ | A0 | A- | BBB+ | BBB0 | BBB- | |
| 기업 수<br>(비중) | 2<br>(6.9%) | 3<br>(10.3%) | 7<br>(24.1%) | 2<br>(6.9%) | 2<br>(6.9%) | 2<br>(6.9%) | 29<br>(100.0%) |
| 대출 승인액<br>(비중) | 1,650<br>(16.5%) | 1,100<br>(11.0%) | 1,246<br>(12.5%) | 309<br>(3.1%) | 300<br>(3.0%) | 860<br>(8.6%) | 10,000<br>(100.0%) |

자료: 금융위원회

[위기대응지원 특별프로그램 대출 승인 기업의 신용등급 및 대출 승인액 현황]

(단위: 개, 억원)

| 구분 | 최우량 | 우량 | | | 양호 | | |
|---|---|---|---|---|---|---|---|
| | AAA | AA+ | AA0 | AA- | A+ | A0 | A- |
| 기업 수<br>(비중) | - | 3<br>(1.4%) | 3<br>(1.4%) | 28<br>(13.2%) | 11<br>(5.2%) | 17<br>(8.0%) | 59<br>(27.8%) |
| 대출 승인액<br>(비중) | - | 1,050<br>(3.7%) | 900<br>(3.1%) | 8,460.6<br>(29.5%) | 1,730<br>(6.0%) | 2,385<br>(8.3%) | 6,737.65<br>(23.5%) |

| 구분 | 보통 | | | 투기적 | | | 매우 투기적 | 계 |
|---|---|---|---|---|---|---|---|---|
| | BBB+ | BBB0 | BBB- | BB+ | BB0 | BB- | B- | |
| 기업 수<br>(비중) | 21<br>(9.9%) | 18<br>(8.5%) | 25<br>(11.8%) | 5<br>(2.4%) | 12<br>(5.7%) | 8<br>(3.8%) | 2<br>(0.9%) | 212<br>(100.0%) |
| 대출 승인액<br>(비중) | 2,335<br>(8.1%) | 2,223.5<br>(7.7%) | 1,199.3<br>(4.2%) | 262.2<br>(0.9%) | 998.95<br>(3.5%) | 406.5<br>(1.4%) | 20.7<br>(0.1%) | 28,709.4<br>(100.0%) |

자료: 금융위원회

**둘째, 위기대응지원 특별프로그램 사업은 2025년 9월에 사업 내용이 대폭 변경되었고, 일부 기업에서 타 사업의 정책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는 사례가 확인되었는바,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정확한 수요 예측을 기반으로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변경을 최소화하는 한편 중복수혜 검증 등 효율적 예산 운용을 위한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직후, 동 사업은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0~50억원까지, 기준금리 대비 △0.20%p까지 낮은 수준으로 저리대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8월까지의 집행 실적은 150억원으로 계획치(3조원)의 0.5%에 불과하였음.

이후 한국산업은행은 미국의 8월 상호관세 발효 및 일부 품목관세 본격화를 고려하여 9월 4일에 ① 지원 대상에 수출시장 다변화 기업을 추가하고, ② 중소·중견기업의 지원 한도를 기존 대비 900% 상향하는 한편 대기업 계열사의 지원 한도를 기존 중소기업 지원 한도 대비 약 3,333%, 중견기업 지원 한도 대비 2,000% 수준으로 신규 설정하며, ③ 금리 수준을 △0.30%p 추가 인하하는 등 지원 내용의 대대적인 변경을 단행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내 대출 한도를 소진하지 못하여 2026년 3월까지 지원을 계속하였음.

[위기대응지원 특별프로그램 변경(2025. 9. 4.) 전후 주요 내용 비교]

|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원 대상 | 美 관세 부과로 인해<br>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 | 美 관세 부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br>중소·중견기업 및<br>**수출시장 다변화 기업** |
| 지원 한도 | (중소) 30억원<br>(중견) 50억원 | (중소) 300억원<br>(중견) 500억원<br>**(계열대) 1,000억원** |
| 금리 수준 | 기준금리 대비 최대 △0.20%p | 기준금리 대비 최대 △**0.50**%p |

자료: 금융위원회

또한 동 사업을 통하여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일부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유사 사업인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을 함께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21] 이와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은 피해기업 지원의 시급성 등으로 인하여 당시 타 사업 신청 여부 확인 절차를 마련하지 못하였다는 입장임.

21) 동 사업을 통하여 정책자금 13억원을 지원받은 1개 기업은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사업을 통하여서도 정책자금 10억원을 지원받았음.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신속 집행을 감안하여도 8월 이전까지는 동 사업의 집행 실적이 저조하였고, 9월 4일 사업 내용을 대폭 변경하는 과정에서 중복 지원 불가 등의 요건을 추가할 기회가 존재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기업을 시급히 지원하느라 중복수혜 확인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오히려 중복수혜 가능성에 대한 고려 자체가 미흡한 결과 부적절한 중복 지원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은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정확한 수요 예측을 기반으로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변경을 최소화하는 한편 중복수혜 검증 등 효율적 예산 운용을 위한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등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8.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사업: 계획 대비 채권매입실적 부진 및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가. 개 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사업은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장기・분할상환 전환, 금리 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조 2,000억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22]

[2025년도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 500,000 | 1,200,000 | - | - | 1,200,000 | 1,200,000 | - | - | -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이하 “새출발기금”이라 함)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신규 편성된 것으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부실차주[23] 또는 부실우려차주[24]를 대상으로 원금 조정, 장기・분할 상환 전환, 금리 감면, 거치기간 연장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SPC) 형태의 새출발기금을 신설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채무조정 방식은 ‘매입형’과 금융사 동의 기반 ‘중개형’이 있음. 매입형은 새출발기금이 금융사로부터

22) 일반회계-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2432-303)(구조개선정책관)

23) 부실차주는 1개 이상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한 차주를 의미함.

24) 부실우려차주는 3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 폐업자 또는 6개월 이상 휴업자 등 장기연체 가능성이 높은 차주를 의미함.

대출채권을 매입하여 직접 채무조정을 하는 방식이고, 중개형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조정안을 바탕으로 금융사의 동의 하에 채무조정이 이루어지는 방식임. 다만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새출발기금이 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조정에 참여할 수 있음.

[새출발기금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코로나 이후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장기·분할상환 전환, 금리 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

◦ (지원내용) ① 원금 조정(순부채 60~80%), ② 금리 감면, ③ 상환 기간 연장(최대 10년, 부동산담보·취약차주 최대 20년), ④ 거치 기간 부여(최대 1년, 부동산담보·취약차주 최대 3년), ⑤ 추심중단 등

◦ (지원대상) 2020.4. ~ 2025.6.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부실(우려) 차주

◦ (지원방식) 채무자 및 대출 유형에 따라, 매입형 및 중개형으로 구분
- 부실차주의 신용·보증 채권은 매입형(캠코)으로 지원
- 부실 담보 및 부실우려차주는 중개형(신복위)으로 지원

| | 매입형 채무조정(한국자산관리공사) | 중개형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
|---|---|---|
| 대상채권 | 부실차주 신용·보증*채무<br>* 대위변제된 보증부 채무 | 부실우려차주 신용·담보·보증채무<br>부실차주 담보채무 |
| 지원내용 | 원금 조정: 순부채의 60~80% 감면<br>(취약계층·저소득층 90%)<br>금리 조정: 이자·연체이자 전액감면 | 원금 조정: 없음<br>금리 조정: 연체 기간 및 상환 기간에 따라 차등(연체이자 감면)<br>* (연체 30일 이하) 9% 초과 고금리는 9%로 조정<br>* (연체 30일 초과) 조정금리 적용 |
| 만기연장 | 최대 1년 거치(부동산담보·취약차주는 3년),<br>최대 10년 분할상환(부동산담보·취약차주는 20년) | |

(매입형) 새출발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신청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조정지원
(중개형) 신복위가 채권금융회사의 동의를 거쳐 채무조정 지원(비동의 시 기금 매입하여 지원)

◦ (사업기간 / 수행주체) 2022. 10. 4. ~ 2026. 12. 까지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주) 2025년 말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 나. 검토의견

**첫째, 새출발기금은 2026년에 채무조정 신청 접수를 마감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계획 대비 채권매입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므로,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매입실적 및 신청 추이 등을 바탕으로 그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25년 말 기준 새출발기금 채권 매입 및 재원 조성 계획을 살펴보면, 채무조정규모는 2022년 10월 계획된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예상매입가율은 60%에서 40.7%로, 예상부도율은 20%에서 33%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예상 정부 출자금 규모는 3.6조원에서 4.48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나머지 9.12조원은 캠코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예정임.

[새출발기금 채권 매입 및 재원 조성 계획 변경 내역]

| 구 분 | 최초 계획<br>(2022.10.) | 제1차 변경계획<br>2025년 예산안(2024.9.) | 제2차 변경계획<br>2025년 제2회 추경(2025.6.) |
|---|---|---|---|
| 채무조정<br>전체 규모 | 30조원 | 40조원 이상 | 40조원 이상 |
| 채권<br>매입 규모 | 30조원 | 33.4조원 = 40조원 × 83.5%<br>(채권 매입 비율: 83.5%) | 33.4조원 = 40조원 × 83.5%<br>(채권 매입 비율: 83.5%) |
| 채권매입<br>소요재원 | 18조원 = 30조원 × 60%<br>(예상매입가율: 60%) | 13.6조원 = 33.4조원 × 40.7%<br>(예상매입가율: 40.7%) | 13.6조원 = 33.4조원 × 40.7%<br>(예상매입가율: 40.7%) |
| 국가재정<br>부담분<br>(출자) | 3.6조원 = 18조원 × 20.0%<br>(예상부도율: 20.0%) | 4.01조원 = 13.6조원 × 29.5%<br>(예상부도율: 29.5%) | 4.48조원 = 13.6조원 × 33.0%<br>(예상부도율: 33.0%) |
| 공사<br>부담분<br>(캠코채) | 14.4조원 = 18조원 -<br>정부출자금 | 9.59조원 = 13.6조원 -<br>정부출자금 | 9.12조원 = 13.6조원 -<br>정부출자금 |

자료: 금융위원회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6년까지 채무조정 목표를 40조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2026년까지 33.4조원의 채권 매입을 계획하였으나, 2025년 말 기준 매입 실적은 약 13.4조원으로 계획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연도별 새출발기금 채권 매입 계획 대비 실적]

(단위: 억원)

| 구 분 |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예상) | 합 계 |
|---|---|---|---|---|---|---|---|
| 채무조정 계획 | 당초 | 60,000 | 90,000 | 90,000 | 60,000 | - | 300,000 |
| | 변경 | 217 | 20,696 | 94,200 | 144,300 | 141,300 | 400,713 |
| | 매입규모 | 2,952 | 26,145 | 75,603 | 115,850 | 113,450 | 334,000 |
| 채무조정 신청 | | 20,935 | 53,182 | 93,188 | 110,022 | - | 277,327 |
| 채권 매입 실적 | | 2,952 | 26,145 | 42,302 | 62,540 | - | 133,939 |
| 채무조정 약정 | | 217 | 20,696 | 28,340 | 48,836 | - | 98,089 |

자료: 금융위원회

채권 매입 실적이 계획 대비 저조함에 따라 새출발기금 재원 조달 또한 2025년 말 기준 계획 대비 43.2% 수준에 그쳤음. 특히 2025년의 경우 제2회 추가경정예산 등을 바탕으로 역대 최대인 2.75조원의 재원을 조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경계획에 따르면 2026년 이후 7조원 이상의 재원을 추가 조달하여야 함.

[새출발기금 재원 조달 계획 대비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 계 획 | | 현 황 | | | | | |
|---|---|---|---|---|---|---|---|---|
| | 최 초 (2022.10.) | 제1차변경(A) (2024.9.) | 2022 | 2023 | 2024 | 2025 | 누적(B) | 계획 대비 투입비율 (=B/A) |
| 정부출자금(예산) | 36,000 | 44,800 | 6,000 | 2,800 | 3,300 | 12,000 | 24,100 | 53.8% |
| 캠코채 발행액 | 144,000 | 91,200 | - | 3,600 | 15,600 | 15,500 | 34,700 | 38.0% |
| 합 계 | 180,000 | 136,000 | 6,000 | 6,400 | 18,900 | 27,500 | 58,800 | 43.2% |

주) 2022년 현물출자 5,000억원 미포함, 2025년 추경안 증액분 7,000억원 포함
자료: 금융위원회

상기한 연도별 채무조정 실적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누적 신청액은 27.7조원인데, 채무조정 신청이 2026년에 마감된다면 2026년 내 채무조정 신청액이 12.3조원 이상이어야 누적 신청액이 채무조정 목표(40조원)와 비슷한 수준에 이를 수 있으며, 모든 신청이 곧바로 채권 매입 및 채무조정 약정으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보다 더 큰 수준의 채무조정 신청이 접수되어야 채무조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

즉 채무조정 신청 마감이 임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25] 채무조정 목표 달성 가능성이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이므로,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매입실적 및 신청 추이 등을 바탕으로 그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새출발기금은 반복적인 계획변경 및 추가경정예산 증액 등의 과정에서 채무조정 대상 기간을 꾸준히 연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획변경 발표 시점 이후의 채무도 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추가 채무조정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형성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요건을 살펴보면 매입형 채무조정 대상이 되는 사업영위기간이 꾸준히 연장(2023. 11. → 2024. 6. → 2024. 11. → 2025. 6.)되어 왔으며, 계획변경 발표 시점 이후의 채무도 신청일 기준 대출 발생일 6개월 이후라면 조정 대상에 포함시키고, 대환대출이나 총 채무액의 30% 이내인 경우도 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요건]

| 구 분 | 종전 | 2024. 9. 계획변경 | 2025. 3. 계획변경 | 2025 제2회 추경 |
|---|---|---|---|---|
| 지원 대상 | 2020. 4. ~ 2023. 11. | 2020. 4. ~ 2024. 6. | 2020. 4. ~ 2024. 11. | 2020. 4. ~ 2025. 6. |
| | 위 기간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 | |
| 신청 기간 | ~ 2025. 10. | ~ 2026. 12. | | |
| 제외 채무 | 영업과 무관한 개인 자산형성 목적 가계대출 등 | | | |
| | 신청일 6개월 이내의 신규·대환대출 (단, 부실차주의 총채무 30% 이하 신규대출은 가능) | 신청일 6개월 이내의 신규대출 (단, 모든 차주의 총채무 30% 이하 신규대출 및 대환대출은 채무조정 가능) | | |

자료: 금융위원회

예컨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기간 중 사업을 영위한 자로서 2026년 12월까지 채무조정을 신청한 자인데, 2025년 6월 사업을 시작한 자가 2026년 6월에 신규 대출을 받아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총 채무액 30% 이내인 경우에는 2026년 12월 내에 발생한 채무도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25) 다만,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15일 업무보고를 통해 새출발기금의 신청기간을 2027년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므로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런데 위와 같은 계획변경이 반복되는 경우 정책 대상자들이 추가 채무조정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바탕으로 재정적 능력 대비 과도한 수준의 투자를 형성하고 그에 따른 위험은 국가 재정으로 전가하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참고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6년 채무조정 약정자 중 매입형 625명(587억원), 중개형 591명(83억원)이 2025년 7월 이후의 채무를 조정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2026년 채무조정 약정자 중 2025년 7월 이후 발생한 채무의 조정 현황]

(단위: 명, 억원)

| 구 분 | 채무조정 약정자 | 채무액 |
|---|---|---|
| 매입형 | 3,309 | 3,395 |
| 2025. 7. 이후 발생 채무 | 625 | 587 |
| 중개형 | 1,805 | 2,211 |
| 2025. 7. 이후 발생 채무 | 591 | 83 |

자료: 금융위원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절차 등과 별개로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을 실시한 것은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정부 시책 준수 과정에서 손실을 감수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특별한 지원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인데, 현재와 같이 코로나19와 관련성이 낮은 2025년 7월 이후의 채무까지 조정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새출발기금의 당초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26)]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사업영위기간의 반복적인 연장 및 조정 대상 채무 범위의 확대에 따라 추가 채무조정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형성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6)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관련 손실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의 금리 인상, 내수회복 지연에 따른 비용 누적 등으로 상환부담이 증가한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확대 시행되어 왔으며, 제도 출범 시부터 제한적으로 일부 신규대출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되 총 대출의 30% 이내로 한도를 제한함으로써 가급적 일괄적인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자의 재부실화 가능성을 낮추고 신속한 신용회복을 통한 재기지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나, 채무조정 인정 대상이 되는 신규대출의 규모를 총 대출의 30% 이내로 제한하여도 여전히 차주가 채무조정 신청 이전에 상환 의사 없는 신규대출을 총 대출의 30% 이내로 발생시킬 유인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신규대출 한도 제한을 상기한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9.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기업구조혁신펀드) 사업: 신속한 자펀드 투자 필요

## 가. 개 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기업구조혁신펀드)’** 사업은 시장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 활성화 및 기업 부실 대응을 위해 구조조정 투자 목적의 정책펀드인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조성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500억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27]

[2025년도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기업구조혁신펀드)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기업구조혁신펀드) | - | 50,000 | - | - | 50,000 | 50,000 | - | - | -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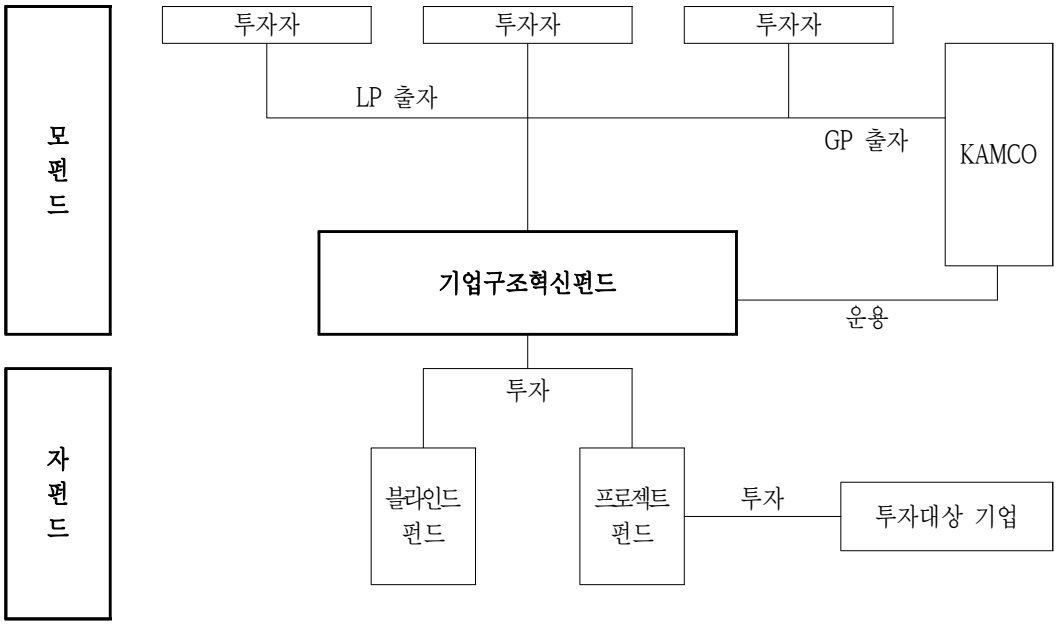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정부재정 및 정책금융기관 등이 출자하여 모펀드를 구성하고, 자펀드 운용사가 민간자금 매칭을 통해 자펀드를 조성하면 자펀드가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집행하는 구조임.

자펀드는 투자대상 기업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민간자금을 모집하는 ‘프로젝트 펀드’와 투자대상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채 민간자금을 모집하는 ‘블라인드 펀드’로 구성되고, 투자집행은 투자 건이 발생할 때마다 건별로 투자자에게 자금을 받아 집행하는 캐피탈 콜(Capital Call) 방식으로 이루어짐.

기업구조혁신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은 사후적 구조조정 절차에 있지는 않으나 부실징후가 나타나는 기업인 ‘사전적 구조조정 대상기업’과 워크아웃·회생절차 개시 및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절차가 개시된 기업인 ‘사후적 구조조정 대상기업’임.

27) 일반회계-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기업구조혁신펀드)(2432-304)(구조개선정책관)

[기업구조혁신펀드 구조도]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게시 내용을 재가공

기업구조혁신펀드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조성된 이후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제6호 펀드가 추가 조성되었는데, 이 중 제5호 펀드는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제6호 펀드는 美 관세 장벽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어려움을 겪는 6대 주력산업 영위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기업구조혁신펀드 중 제5호·제6호 펀드 개요]

[제5호 펀드(2024~)]
◦ (조성 목적)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한계기업에 대해 민간 자본 중심의 구조조정 실시
 - 모펀드 5,000억원, 총 1조원 규모의 펀드 조성 목표
 - 블라인드펀드의 경우 약정총액의 60% 이상을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투자
 - 프로젝트펀드의 경우 약정총액 전액을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투자
◦ (투자 대상) 워크아웃・회생절차 개시기업 및 부실징후기업 등 구조조정 대상 기업

[제6호 펀드(2025~)]
◦ (조성 목적) 美 관세 장벽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 지원
 - 모펀드 5,000억원, 총 1조원 규모의 펀드 조성 목표
 - 블라인드펀드의 경우 주력산업 집중투자 펀드는 주력산업에 약정총액 전액, 그 중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는 약정총액의 60% 이상을 투자
 - 프로젝트펀드의 경우 약정총액 전액을 주력산업 업종 내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투자
◦ (투자 대상) 6대 주력산업 영위 기업(석유화학・철강・자동차・이차전지・반도체・디스플레이) 및 구조조정 대상 기업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나. 검토의견

**제6호 펀드는 미국 관세 리스크 등 경제 하방 압력에 대한 신속 대응 차원에서 조성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펀드 투자 실적이 부진하므로,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펀드 조성 취지를 고려하여 신속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제6호 펀드는 제3호 펀드와 유사하게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조정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을 주 투자 목적으로 하였으며, 전액 후순위로 출자되는 국가재정 500억원을 비롯한 정책자금 5,000억원으로 모펀드를 조성하고, 민간자금의 매칭출자를 통해 1조원 이상의 자펀드를 결성 후 구조조정 대상 기업 중 석유화학, 자동차, 2차전지, 철강, 반도체 등 주력산업 분야에 투자할 계획임.

[역대 기업구조혁신펀드 주요 현황]

| 구 분 | 제1호(2018) | 제2호(2020) | 제3호(2021) | 제4호(2023) | 제5호(2024) | 제6호(2025) |
|---|---|---|---|---|---|---|
| 재정출자액 | - | 750억원 | 675억원 | - | 500억원 | 500억원 |
| 투자대상 기업 | 중소·중견 기업 | 중소·중견기업 위주(대기업 포함) | | | | |
| 주 목적 | 조선·건설중장비·철강 등 전통제조업 분야 기업 지원 | 경기회복 둔화로 인한 기업의 차입수요에 대응하여 투자 방식 다양화 |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구조조정 수요 대비 | 한계·취약 기업 증가 대응을 위한 구조조정 시장 자금 공급 | 금리·물가 상승 등 경제 하방 압력에 따른 **구조조정 수요 대비** | 美 관세 등으로 경영악화가 우려되는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수요 대비** |

자료: 금융위원회

상기한 제6호 펀드의 투자 분야는 기존 펀드의 투자 분야와 중첩됨에도 불구하고[28]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별도 펀드를 조성하는 이유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기 조성 펀드 구조 하에서는 자펀드 운용사가 투자대상기업을 자율적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美 관세 정책 피해 주력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유인하기 어렵고, 신규 펀드 조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2026년도 예산안을 통해 펀드를 조성하는 경우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조성 취지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 수요에 적기 대응하려는 목적으로 조성된 제6호 펀드는 2025년 말 기준 상대적으로 투자기간 및 운용기간이 짧은 프로젝트 펀드의 투자 실적이 전무하며, 2026년 4월 말 기준으로 결성 완료된 제6호의 4개 펀드 중 당초 조성 취지와 같이 주력산업에 집중투자하는 펀드는 1개에 불과하는 등 투자 실적이 부진한 상황임.

28) 2025년 말 기준 제1호~제5호의 피투자기업 174개 중 제6호 펀드의 주 투자분야인 주력산업(석유화학·철강·자동차·이차전지·반도체·디스플레이)을 영위하는 기업 수는 42개(24.1%), 관련 투자금액은 5.8조원 중 1.5조원(25.9%)으로, 제6호 펀드의 투자 분야와 기존 펀드의 투자 분야가 중첩되는 측면이 있음.

[기업구조혁신펀드 결성 및 집행 현황]

(단위: 억원, 개)

| 구 분 | | | 결성 현황 | | | 집행 현황 | | |
|---|---|---|---|---|---|---|---|---|
| 구분 | 펀드 구분 | 자펀드 수 | 모펀드 총액 | 민간 자금 | 자펀드 결성(A) | 투자업체 수 | 투자실적 (B) | 집행률 (=B/A) |
| 1호 (2018~) | 소 계 | 12 | 5,415 | 11,026 | 16,441 | 48 | 15,995 | 97.3% |
| | 프로젝트 | 6 | 1,415 | 4,798 | 6,213 | 5 | 6,213 | 100.0% |
| | 블라인드 | 6 | 4,000 | 6,228 | 10,228 | 43 | 9,782 | 95.6% |
| 2호 (2020~) | 소 계 | 17 | 5,015 | 10,836 | 15,851 | 45 | 15,238 | 96.1% |
| | 프로젝트 | 12 | 2,006 | 6,875 | 8,881 | 12 | 8,881 | 100.0% |
| | 블라인드 | 5 | 3,009 | 3,961 | 6,970 | 33 | 6,356 | 91.2% |
| 3호 (2021~) | 소 계 | 13 | 4,510 | 13,283 | 17,793 | 45 | 17,181 | 96.6% |
| | 프로젝트 | 7 | 1,510 | 8,770 | 10,280 | 7 | 10,280 | 100.0% |
| | 블라인드 | 6 | 3,000 | 4,513 | 7,513 | 38 | 6,901 | 91.9% |
| 4호 (2023~) | 소 계 | 10 | 5,000 | 6,190 | 11,190 | 20 | 6,047 | 54.0% |
| | 프로젝트 | 5 | 2,200 | 2,800 | 5,000 | 5 | 3,059 | 61.2% |
| | 블라인드 | 5 | 2,800 | 3,390 | 6,190 | 15 | 2,988 | 48.3% |
| 5호 (2024~) | 소 계 | 6 | 5,000 | 8,647 | 13,647 | 16 | 4,031 | 29.5% |
| | 프로젝트 | 0 | 1,650 | 1,850 | 3,500 | - | - | - |
| | 블라인드 | 6 | 3,350 | 6,797 | 10,147 | 16 | 4,031 | 39.7% |
| 6호 (2025~) | 소 계 | 1 | 5,000 | 4,088 | 9,088 | - | - | - |
| | 프로젝트 | 0 | 2,000 | 1,750 | 3,750 | - | - | - |
| | 블라인드 | 1 | 3,000 | 2,338 | 5,338 | - | - | - |
| 합계 | | 59 | 29,940 | 54,070 | 84,010 | 174 | 58,492 | 69.6% |

주) 2025년 말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2026년 4월 말 기준 결성 완료된 펀드의 주요 투자 업종 및 주력산업 투자 비중]

| 운용사 | 제안서 상 주요 투자 업종 | 제안서 상 주력산업 투자 비중 |
|---|---|---|
| A(주력산업 집중투자) | 석화, 철강,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자동차 | 출자약정금총액의 100% |
| B(소형) | 석화, 철강,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자동차 | 출자약정금총액의 40% 이상 |
| C(소형) | 제안서상 주요 투자 업종 지정 없음 (소형 펀드는 주력산업 의무투자 대상 아님) | |
| D(소형) | | |

자료: 금융위원회

2025년 말 기준 제6호 프로젝트 펀드의 투자 실적 부재와 관련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과거 제1호 내지 제3호 운용 사례 대비 적정 진도율을 유지 중이라고 설명하였으나, 기존 펀드와 제6호 펀드는 조성 배경과 취지가 상이하며, 제6호 펀드는 기존 펀드의 투자 여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관세 리스크 등의 위기 상황 대응이라는 특별한 목적을 고려하여 조성된 것이므로 투자의 적정 진도율을 과거 운용 사례에 준하여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당초 제6호 펀드의 조성 취지를 고려하여,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 신속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수 입〉

## 10. 기타특별회계전입금: 기금 건전성 제고 노력 필요

### 가. 개 요

**‘기타특별회계전입금’** 은 농어업인의 보증 지원에 필요한 기본재산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부터 기금 재원을 출연받는 수입으로, 2025년도 계획액 1,500억원이 전액 수납(수납률 100.0%)되었음.[29)]

[2025년도 기타특별회계전입금 결산]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5년도 | | | | | | | 2026년도 계획액 |
|---|---|---|---|---|---|---|---|---|
| | 계획액 | | 징수 결정액(B) | 수납액 (C) | 미수 납액 | 불납 결손액 | 수납률 (C/B) | |
| | 당초 | 수정(A) | | | | | | |
| 기타특별 회계전입금 | 150,000 | 150,000 | 150,000 | 150,000 | - | - | 100.0 | - |

주) 2026년도 계획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기본재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증잔액·대위변제액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한편 구상채권 회수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므로, 금융위원회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기금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적정 운용배수를 초과한 예외보증 운용시한의 연례적 연장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2025년 말 기본재산은 정부출연금 확대·지출 감소 등에 따라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며, 운용배수 또한 2018년 이후 최초로 신용보증규정상 적정 수준[30)]인 12.5배를 하회하여 표면적으로는 기금 건전성이 제고된 것으로 보임.

29)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기타특별회계전입금(91-912)(신용보증기획부)

30)「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10조(보증의 한도) ① 관리기관의 신용보증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2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

[연도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결산 현황]

(단위: 억원, 배)

| 구 분 |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수입 | 정부출연금 | 1,300 | 1,300 | 0 | 300 | 1,500 |
| | 금융기관출연금 | 1,833 | 1,971 | 2,118 | 2,247 | 2,207 |
| | 보증료, 이자수입 등 | 810 | 756 | 1,610 | 1,372 | 1,794 |
| | 계 | 3,943 | 4,027 | 3,728 | 3,919 | 5,502 |
| 지출 | 보증보조비용 | 468 | 571 | 1,263 | 106 | △3,759 |
| | 구상채권상각비 | 1,896 | 1,849 | 3,104 | 3,271 | 4,176 |
| | 관리업무비 등 | 633 | 660 | 626 | 635 | 655 |
| | 계 | 2,998 | 3,078 | 4,993 | 4,012 | 1,072 |
| 기본재산(A) | | 10,792 | 11,741 | 10,476 | 10,384 | 14,813 |
| 보증잔액(B) | | 163,585 | 171,852 | 176,420 | 179,913 | 180,097 |
| 운용배수(=B/A) | | 15.2 | 14.6 | 16.8 | 17.3 | 12.16 |

주) 보증보조비용은 당해연도 보증충당부채 산출액에서 직전년도 보증충당부채 적립액을 차감한 값인데, 2025년 보증충당부채 산출 기준 변경에 따라 보증충당부채 환입이 발생하여 전년 대비 보증보조비용이 크게 감소하였음

자료: 금융위원회

그러나 위와 같은 일시적 개선 요인에도 불구하고 대위변제율(2023년 2.31% → 2024년 2.33% → 2025년 2.43%), 구상채권 회수율(2023년 2.8% → 2024년 2.6% → 2025년 2.5%), 불건전보증비율(2023년 0.60% → 2024년 0.77% → 2025년 0.94%) 등은 여전히 악화 추세에 있는바, 향후 정부출연금 감소 또는 지출 증가가 발생하면 운용배수가 다시 신용보증규정상 적정 수준을 초과하는 등 기금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음.

---

령령으로 정한다.

「신용보증규정」
제12조(보증총한도) ③ 제2항의 보증총액한도의 적정한 수준은 12.5배로 한다.

[연도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대위변제 및 구상채권회수 등 현황]

(단위: 억원, %)

| 구 분 |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일반 보증 | 보증잔액(A) | 99,464 | 99,367 | 97,827 | 96,739 | 94,205 |
| | 대위변제 | 2,409 | 2,272 | 3,201 | 3,183 | 3,087 |
| | 대위변제율 | 2.42 | 2.29 | 3.27 | 3.29 | 3.28 |
| 우대 보증 | 보증잔액(B) | 45,773 | 48,253 | 50,590 | 51,969 | 53,232 |
| | 대위변제 | 432 | 468 | 620 | 729 | 914 |
| | 대위변제율 | 0.94 | 0.97 | 1.23 | 1.40 | 1.72 |
| 특례 보증 | 보증잔액(C) | 18,348 | 24,232 | 28,003 | 31,205 | 32,660 |
| | 대위변제 | 181 | 162 | 253 | 284 | 377 |
| | 대위변제율 | 0.99 | 0.67 | 0.90 | 0.91 | 1.15 |
| 합 계 | 보증잔액(D=A+B+C) | 163,585 | 171,852 | 176,420 | 179,913 | 180,097 |
| | 대위변제 | 3,021 | 2,904 | 4,074 | 4,196 | 4,378 |
| | 대위변제율 | 1.85 | 1.69 | 2.31 | 2.33 | 2.43 |
| 구상채권 회수율 | | 4.5 | 3.7 | 2.8 | 2.6 | 2.5 |
| 불건전보증잔액(E) | | 526 | 789 | 1,053 | 1,390 | 1,694 |
| 불건전보증비율(=E/D) | | 0.32 | 0.46 | 0.60 | 0.77 | 0.94 |

주) 구상채권회수율 = (연중 구상채권 회수 수입액) ÷ (구상채권 잔액)
자료: 금융위원회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이라는 기금 본연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출연금을 비롯한 외부의 일시적인 지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기금 자체적으로 건전성 제고를 위해 대위변제 증가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구상채권 회수율 제고 등의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적정 운용배수 내에서만 허용된 예외보증에 대해 별도 협의를 거쳐 적정 운용배수를 초과하여 운용하면서 그 시한을 연례적으로 연장하였는데[31], 2025년 말 기준 운용배수는 12.16으로 정부출연금의 대폭 증액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증규정상 적정수준인 12.5에 근접하였으므로 향후 운용배수가 다시 신용보증규정상 적정 수준을 상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정 운용배수를 초과한 예외보증의 운용시한을 추가 연장하는 부적절한 조치가 반복될 우려가 있음.

31)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에 따르면 농림수산업자 보증 한도는 원칙적으로 개인 15억원, 법인 20억원이며, 적정 운용배수 내에서 개인 30억원, 법인 70억원까지 예외보증을 허용하고 있으나, 금융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협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적정 운용배수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음.

[역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예외보증 운용시한 적용 현황]

| 일정 | 적용 현황 |
|---|---|
| 2020. 2. | 2019년 적정 운용배수 초과(15.4배)에 따른 예외보증지원 운용시한 부여(2020. 5. 31.까지) |
| 2020. 5. | 2020. 5. 31. → 2020. 8. 31.까지 예외보증지원 운용시한 연장 |
| 2020. 8. | 농신보「신용보증규정」개정에 따른 예외보증지원 운용시한 연장<br>(2020. 8. 31. → 2021. 8. 31.까지) |
| 2021. 8. | 2021. 8. 31. → 2022. 8. 31.까지 예외보증지원 운용시한 연장 |
| 2022. 8. | 2022. 8. 31. → 2023. 8. 31.까지 예외보증지원 운용시한 연장 |
| 2023. 8. | 2023. 8. 31. → 2024. 8. 31.까지 예외보증지원 운용시한 연장 |
| 2024. 8. | 2023. 8. 31. → 2024. 12. 31.까지 예외보증지원 운용시한 연장(3,133억원 한도내) |
| 2024. 12. | 2024. 12. 31. → 2025. 12. 31.까지 예외보증지원 운용시한 연장(3,133억원 한도내) |
| 2025. 12. | 2025. 12. 31. → 2026. 12. 31.까지 예외보증지원 운용시한 연장(3,100억원 한도내) |

자료: 금융위원회

예외보증은 기존 보증 대비 한도를 2배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것으로, 신용보증규정에서 예외보증을 적정 운용배수 내 범위에서 운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기금 건전성을 고려한 보증 공급을 유도하는 것인바, 금융위원회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건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현재 기금의 재무상황을 고려하여 적정 운용배수를 초과한 예외보증 운용시한의 연례적 연장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지 출〉

# 11. 지출 총괄: 기금운용계획 수립 이후 신규사업 추진 및 사업비의 사후적 충당 부적정

## 가. 개 요

**‘농신보IT유지비(정보화)’** 사업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전산시스템 운영에 따른 주전산기기운영비·전산기계 도입비·업무용 전산 관련 개발비 등을 집행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38억 5,300만원 중 38억 3,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5%)되고, 1,800만원이 불용되었음.[32)]

**‘보증료환급’** 사업은 신용보증 만기일 이전에 보증이 해지되어 기금의 보증채무가 소멸하는 경우 선취한 보증료 중 보증해지일 이후 분을 해당 피보증인에게 환급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63억 1,900만원 중 60억 9,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5%)되고, 2억 2,300만원이 불용되었음.[33)]

**‘위탁사업비’** 사업은 금융기관과 기금 간 신용보증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순수입보증료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46억 5,400만원 중 44억 2,800만원이 집행(집행률 95.1%)되고, 2억 2,600만원이 불용되었음.[34)]

[2025년도 농신보IT유지비(정보화), 보증료환급, 위탁사업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2026년도 계획액 |
|---|---|---|---|---|---|---|---|---|
| | 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B) | 계획현액 (A+B)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당초 | 수정(A) | | | | | | |
| 농신보IT유지비(정보화) | 2,622 | 3,853 | - | 3,853 | 3,835 | - | 18 | 2,622 |
| 보증료환급 | 5,689 | 6,319 | - | 6,319 | 6,096 | - | 223 | 7,056 |
| 위탁사업비 | 3,754 | 4,654 | - | 4,654 | 4,428 | - | 226 | 4,555 |

주) 2026년도 계획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32)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IT유지비(정보화)(2432-303)(신용보증기획부)

33)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보증료환급(2432-660)(신용보증기획부)

3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위탁사업비(2432-690)(신용보증기획부)

## 나. 검토의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기금운용계획 수립 이후 당초 계획에 없던 시스템 개편 사업을 수행하는 등 신규 사업 예산을 집행하고, 배정된 예산규모를 초과하여 보증료 환급분 등을 지급한 후 부족분을 회계연도 말일에 사후적으로 충당하였으므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3개 세부사업은 연중 기획재정부(現 기획예산처) 협의를 통해 통화금융기관 예치금으로부터 계획액이 증액되었음. 사업별로 살펴보면 농신보IT유지비(정보화) 사업의 당초 기금운용계획 내에는 일반연구비(260-01) 목의 계획액이 편성되지 않았으나, 2025년 8월 6일 사업의 당초 계획액(26억 2,200만원) 대비 46.9% 수준의 계획액(12억 3,100만원)이 일반연구비(260-01) 목으로 신규 편성되었음.

또한 보증료환급 및 위탁사업비 사업은 2024년 12월 기준 보증료율 인상에 따라 보증료 반환금 및 위탁보증 수수료 지출 소요가 증가하였다는 이유로 회계연도 말일인 2025년 12월 31일 계획액이 각각 6억 3,000만원, 9억원 증액되었음.

[2025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주요 계획변경 내역]

(단위: 백만원)

| 일자 | 구분 | 변경 증액 | | | 변경 감액 | | |
|---|---|---|---|---|---|---|---|
| | | 세부사업명 | 세목 | 금액 | 세부사업명 | 세목 | 금액 |
| 8. 6. | 기획재정부 협의 | 농신보IT유지비 (정보화)(2432-303) | 일반연구비 (260-01) | 1,231 |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9701-971) |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470-02) | △1,231 |
| 12. 31. | 기획재정부 협의 | 보증료환급 (2432-660) | 반환금 및 손실금 (710-03) | 630 |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9701-971) |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470-02) | △1,530 |
| | 기획재정부 협의 | 위탁사업비 (2432-690) |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 900 |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9701-971) |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470-02) | |

자료: 금융위원회

그런데 상기 3개 사업들의 기금운용계획 변경 세부 내용을 살펴본 결과, 기금운용계획 수립 이후 당초 계획에 없던 시스템 개편 사업을 수행하는 등 신규 사업 예산을 집행하거나, 배정된 예산규모를 초과하여 보증료 환급분을 지급한 후 부족분을 회계연도 말일에 사후적으로 충당하는 등 기금의 부적절한 운용이 있었음.

먼저 농신보IT유지비(정보화) 사업은 일반연구비 증액을 통해 국가결산체계 개편사업 연계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될 개정 국가회계 기준을 반영하여 기금회계 재무제표를 개편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과의 연계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임.

국가결산체계 개편 사업은 당초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예상할 수 있었던 지출소요임에도 불구하고 연중 변경을 통해 일반연구비를 신규 편성한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2026년에 업체 선정 및 전산 개발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2025년 초 국가결산보고서 작성 테스트 결과 전산시스템의 개편이 결산 진행에 필수적인 점을 사후적으로 인지하여 2025년 내 전산 개발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기획재정부(現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거쳐 계획을 변경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2024년에도 당초 계획에 없던 국가결산체계 시스템 구축 사업 수행을 위해 연도 중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한 바 있는데, 이후 관련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규 사업 편성 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연초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함으로써 국회의 심의를 명시적으로 거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같은 내용의 시스템 구축을 이유로 재차 기금운용계획 수립 이후에 신규 사업을 추진한 것이므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다음으로 보증료환급 및 위탁사업비 사업은 지출 소요 증가의 원인인 보증료율 인상이 2024년 12월에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경과한 2025년 12월 31일에 계획액이 증액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이후 시점에 보증료율이 인상되어 관련 사정을 반영할 수 없었으며, 이후 2025년 내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추진하였으나 기획재정부(現 기획예산처) 등과의 협의 절차 등을 이행하는 과정이 지연되었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보증료환급 및 위탁사업비 사업의 계획액 변경을 위한 심의회는 12월 15일에 실시되었는데, 앞서 살펴본 농신보IT유지비(정보화) 사업의 계획액 변경을 위한 심의회가 7월 23일 실시되었음을 고려하면 동 사업의 계획액 변경은 7월에도 가능하였는바,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필요 이상으로 지연된 것으로 보임.

기금운용계획 변경 지연에 따라 동 사업의 관련 계획액은 12월 13일 소진되었고, 12월 15일부터 12월 30일까지 발생한 지출 소요는 기금운용계획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기금 내 타 사업 재원을 활용하여 충당하였는바, 이는 지출원인행위를 법령이나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 내에서 실시할 것을 규정한 「국고금 관리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5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인바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즉, 기금운용계획 수립 이후 당초 계획에 없던 신규 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재발되었고, 배정된 예산규모를 초과하여 타 사업 예산으로 보증료 환급분 등을 지급한 후 부족분을 회계연도 말일에 사후적으로 충당하는 부적절한 기금 운용 사례가 발생하였는바, 금융위원회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신용보증기금】

〈수　입〉

## 12. 수입 총괄: 추계정확성 제고 필요

### 가. 개　요

**‘정부출자수입’**은 신용보증기금이 지분을 보유한 출자회사 및 보증연계투자 대상 기업, 유동화회사보증 SPC 등으로부터 수취한 배당금 수입 등을 신용보증기금의 수입으로 계상한 것으로, 2025년도 계획액은 4억 7,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94억 5,600만원임(수납률 100.0%).[35]

**‘기타경상이전수입’**은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권 및 공탁금 회수액, 선급법인세 환입, 대물채권·대물주식의 회수액, 임차보증금 및 대여금 회수액 등을 신용보증기금의 수입으로 계상한 것으로, 2025년도 계획액은 8,739억 8,3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4조 6,106억 4,000만원이며, 수납액은 1조 1,248억 1,100만원임(수납률 7.7%).[36]

**‘고정자산매각익’**은 업무용 건물·토지, 보증연계투자 기업 주식, 출자전환주식 처분익 등을 신용보증기금의 수입으로 계상한 것으로, 2025년도 계획액은 21억 6,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360억 3,800만원임(수납률 100.0%).[37]

35) 신용보증기금-정부출자수입(52-521)(금융정책국)

36) 신용보증기금-기타경상이전수입(59-596)(금융정책국)

37) 신용보증기금-고정자산매각익(69-695)(금융정책국)

[2025년도 정부출자수입, 기타경상이전수입, 고정자산매각익 결산]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5년도 | | | | | | | 2026년도 계획액 |
|---|---|---|---|---|---|---|---|---|
| | 계획액 | | 징수 결정액(B) | 수납액 (C) | 미수 납액 | 불납 결손액 | 수납률 (C/B) | |
| | 당초 | 수정(A) | | | | | | |
| 정부출자 수입 | 478 | 478 | 9,456 | 9,456 | - | - | 100.0 | 1,529 |
| 기타경상 이전수입 | 873,983 | 873,983 | 14,610,640 | 1,124,811 | 12,068,568 | 1,417,261 | 7.7 | 894,858 |
| 고정자산 매각익 | 2,160 | 2,160 | 36,038 | 36,038 | - | - | 100.0 | 19,336 |

주) 2026년도 계획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정부출자수입, 기타경상이전수입, 고정자산매각익 등의 수입과목이 연례적으로 과소계상되고 있으므로,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수입 계획액의 추계정확성을 제고함으로써 기금 수입을 보다 면밀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음.**

신용보증기금의 수입과목 중 정부출자수입, 기타경상이전수입, 고정자산매각익 등은 매년 꾸준히 수입실적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상 어려움을 이유로 수입계획에 포함되지 않거나 과소 계상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첫째, 정부출자수입의 항목별 계획 대비 실적을 살펴보면 유동화회사보증 SPC 출자배당금 등은 유동화회사보증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등으로 계획 대비 실제 부실발생이 감소하여 매년 꾸준히 수입실적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계획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음.

[2021~2025년 정부출자수입의 계획 대비 징수 실적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1 | | 2022 | | 2023 | | 2024 | | 2025 | |
|---|---|---|---|---|---|---|---|---|---|---|
| | 계획 | 실적 | 계획 | 실적 | 계획 | 실적 | 계획 | 실적 | 계획 | 실적 |
| 정부출자수입 | 431 | 1,530 | 375 | 15,815 | 510 | 44,974 | 542 | 30,262 | 478 | 9,456 |
| 출자회사 주식 배당금 | 315 | 467 | 274 | 510 | 452 | 532 | 502 | 422 | 411 | 347 |
| 보증연계투자 주식 배당금 | 116 | 22 | 101 | 27 | 58 | 71 | 40 | 21 | 67 | 16 |
| **유동화회사보증 SPC출자 배당금 등** | - | **456** | - | - | - | **14,850** | - | **15,578** | - | **7,400** |
| **유동화회사보증 대물주식배당금** | - | **585** | - | **15,278** | - | **29,521** | - | **14,241** | - | **1,693** |

자료: 금융위원회

둘째, 기타경상이전수입의 항목별 계획 대비 실적을 살펴보면 구상채권 회수 실적과 유동화회사보증 대물채권·주식 회수 실적이 매년 계획 대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구상권 회수 실적은 수입과목의 수납률뿐만 아니라 신용보증기금의 건전성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회수율이 2021년 3.6%에서 2025년 2.7%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어 적극적인 회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2021~2025년 기타경상이전수입의 계획 대비 징수 실적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1 | | 2022 | | 2023 | | 2024 | | 2025 | |
|---|---|---|---|---|---|---|---|---|---|---|
| | 계획 | 실적 | 계획 | 실적 | 계획 | 실적 | 계획 | 실적 | 계획 | 실적 |
| 기타경상이전수입 | 572,366 | 486,553 | 628,643 | 581,442 | 637,151 | 669,170 | 761,325 | 899,259 | 873,983 | 1,124,811 |
| 구상채권 회수 | **420,395** | **357,894** | **366,617** | **324,186** | **366,159** | **254,133** | **344,372** | **267,528** | **354,662** | **274,822** |
| 선급법인세 환수 | 10,268 | 5,032 | 8,735 | 6,046 | 7,703 | 9,575 | 20,975 | 19,984 | 39,730 | 38,928 |
| 매출채권 상환 | 39,750 | 13,592 | 79,500 | 57,890 | 99,375 | 73,225 | 149,456 | 147,395 | 188,470 | 207,506 |
| 유동화회사보증 대물채권·주식 회수 | **20,399** | **54,657** | **70,843** | **140,698** | **64,168** | **179,406** | **68,871** | **256,475** | **71,521** | **405,667** |
| 그 외 수입(반환금 등) | 81,554 | 55,378 | 102,948 | 52,622 | 99,746 | 152,831 | 177,651 | 207,877 | 219,600 | 197,888 |

자료: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보증 및 부실 관련 현황]

(단위: 억원, %)

|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보증잔액(A) | 591,461 | 613,961 | 618,214 | 624,973 | 624,030 |
| 부실금액(B) | 11,604 | 12,556 | 20,468 | 22,750 | 22,966 |
| 부실률(=B/A) | 2.0 | 2.0 | 3.3 | 3.6 | 3.7 |
| 대위변제발생액(C) | 12,111 | 11,509 | 17,205 | 22,283 | 24,362 |
| 대위변제회수액(D) | 3,280 | 2,697 | 2,293 | 2,446 | 2,212 |
| 대위변제액(E=C-D) | 8,831 | 8,812 | 14,912 | 19,837 | 22,150 |
| 대위변제율(=E/A) | 1.5 | 1.4 | 2.4 | 3.2 | 3.5 |
| 구상권 잔액(F) | 94,237 | 82,962 | 76,344 | 80,447 | 84,902 |
| **구상권 회수율** | **3.6** | **3.4** | **3.2** | **3.1** | **2.7** |
| 기본재산(G) | 63,004 | 71,351 | 75,533 | 75,451 | 76,008 |
| 운용배수(=A/G) | 9.4 | 8.6 | 8.2 | 8.3 | 8.2 |

주) 2025년 신설된 위기대응 특례보증은 제외
자료: 금융위원회

또한 유동화회사보증 대물채권·주식 회수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은 2025년 HMM(주) 주식 전량 매각(2,175억원) 등이 시장에 미칠 영향 및 매각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수입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나, 해당 건을 고려하여도 여전히 계획과 실적 간 상당한 차이가 매년 발생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한편 고정자산매각익은 투자주식처분익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투자주식처분익의 징수실적은 2023년 271억 7,600만원, 2024년 158억 8,800만원, 2025년 352억 2,000만원으로 각각 계획액 대비 15.8배, 7.7배, 16.3배에 달하는 등 연례적으로 과소 계상되고 있음.

[2021~2025년 기타경상이전수입의 계획 대비 징수 실적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1 | | 2022 | | 2023 | | 2024 | | 2025 | |
|---|---|---|---|---|---|---|---|---|---|---|
| | 계획 | 실적 | 계획 | 실적 | 계획 | 실적 | 계획 | 실적 | 계획 | 실적 |
| 고정자산매각익 | 4,327 | 11,592 | 2,055 | 6,742 | 1,718 | 27,758 | 2,062 | 20,123 | 2,160 | 36,038 |
| 투자주식 처분익 | 1,061 | 9,484 | 1,046 | 6,449 | 1,718 | 27,176 | 2,062 | 15,888 | 2,160 | 35,220 |
| 기타매도가능증권 처분익 | - | 173 | - | - | - | 225 | - | 2,618 | - | - |
| 업무용건물 및 토지 처분익 | 3,266 | - | 1,009 | 293 | - | - | - | 729 | - | - |
| 프로젝트투자이익 | - | - | - | - | - | 52 | - | 466 | - | 133 |
| 출자전환주식 처분익 | - | 1,935 | - | - | - | 305 | - | 422 | - | 676 |
| 기타자산 처분익 | - | - | - | - | - | - | - | - | - | 9 |

자료: 금융위원회

이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은 투자주식의 증권시장 상장(IPO) 또는 제3자 매각과 같이 예상치 못한 일시적 수입이 급증한 결과 계획과 실적 간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IPO 등으로 인한 수입의 증가가 구조적 추세로 보기 어려워 이를 수입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입장임.

그러나 일시적 수입의 발생 시기에 대한 정밀 예측의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매년 최소 6배에서 최대 16배에 달하는 계획과 실적 간 격차가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상기한 수입과목의 계획액에 대해 추계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기금 수입을 보다 현실화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지　출〉

# 13. 경영지도 사업: 신용카드 수수료 과다 편성 지양 필요

## 가. 개　요

**‘경영지도’** 사업은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창업종합지원 등을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비용·보증료를 수납받는 과정에서 카드사에 지불하는 신용카드 수수료, 보증심사 업무를 금융회사에 위탁함에 따라 수탁기관에 지급하는 위탁보증 수수료 등을 계상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202억 5,200만원 중 160억 8,300만원이 집행(집행률 79.4%)되고 41억 6,900만원이 불용되었음.[38)]

[2025년도 경영지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2026년도 계획액 |
|---|---|---|---|---|---|---|---|---|
| | 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B) | 계획현액 (A+B)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당초 | 수정(A) | | | | | | |
| 경영지도 | 20,252 | 20,252 | - | 20,252 | 16,083 | - | 4,169 | 20,052 |

주) 2026년도 계획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펌뱅킹 방식의 보증료 수납이 증가하는 반면 신용카드를 비롯한 타 방식의 수납은 감소하고 있으므로,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신용카드 수수료 비용을 과다 편성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상기한 바와 같이 경영지도 사업의 계획액에는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보증료를 수납하면서 카드사에 지불하는 신용카드 수수료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 신용카드 수수료 집행액은 매년 계획액 대비 크게 미달하였음. 특히 2025년 신용카드 수수료 집행액(16억 3,100만원)은 계획액(49억 700만원) 대비 33.2% 수준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집행률을 보였음.

38) 신용보증기금-경영지도(2431-307)(금융정책국)

[2021~2025년 경영지도 사업 중 신용카드 수수료의 계획 대비 집행 실적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1 | | 2022 | | 2023 | | 2024 | | 2025 | |
|---|---|---|---|---|---|---|---|---|---|---|
| | 계획 | 집행 | 계획 | 집행 | 계획 | 집행 | 계획 | 집행 | 계획 | 집행 |
| 경영지도 | 12,020 | 9,392 | 15,920 | 13,960 | 16,082 | 15,952 | 18,710 | 16,304 | 20,252 | 16,083 |
| 신용카드 수수료 | 3,090 | 2,345 | 3,002 | 1,907 | 3,164 | 1,705 | 3,976 | 1,515 | 4,907 | 1,631 |

자료: 금융위원회

이와 같이 신용카드 수수료 집행액이 계획액을 크게 하회한 이유는, 전체 보증료 수입 규모 자체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저렴한 펌뱅킹[39] 방식의 보증료 수납이 타 방식의 수납을 대체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40] 연도별 보증료 수납 현황을 살펴보면, 펌뱅킹 방식의 수납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67.7%에서 2025년 80.9%로 매년 증가하였으나, 신용카드 방식의 수납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14.7%에서 2025년 8.7%로 매년 감소하였음.

[2021~2025년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펌뱅킹 | 475,626(67.7%) | 532,149(73.7%) | 561,512(77.5%) | 583,453(79.2%) | 619,330(80.9%) |
| 신용카드 | 103,407(14.7%) | 84,520(11.7%) | 75,796(10.5%) | 67,733(9.2%) | 66,764(8.7%) |
| 기타 | 123,043(17.5%) | 105,076(14.6%) | 86,886(12.0%) | 85,162(11.6%) | 79,296(10.4%) |
| 합계 | 702,076(100.0%) | 721,745(100.0%) | 724,194(100.0%) | 736,348(100.0%) | 765,390(100.0%) |

자료: 금융위원회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상기한 연도별 보증료 수납 현황 및 신용카드 수수료 집행액 추이를 고려하여, 신용카드 수수료 비용을 필요 이상으로 과다 편성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39) 펌뱅킹(Firm Banking)은 기업이나 기관이 고객의 동의 하에 특정 시점마다 고객의 계좌에서 자동으로 요금을 출금하는 자동이체 방식을 의미함.

40) 펌뱅킹을 통해 보증료를 납부하는 경우, 수수료는 건당 최대 200원에 불과함.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지　출〉

## 14. 대위변제 사업: 증가하는 대위변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 가. 개　요

**‘대위변제’** 사업은 신용보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개인 또는 사업자가 주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보증계약에 의한 보증채무를 대신 직접 이행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1조 3,364억원 중 1조 1,850억 7,600만원이 집행(집행률 88.7%)되고 1,513억 2,400만원이 불용되었음.[41)]

[2025년도 대위변제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2026년도 계획액 |
|---|---|---|---|---|---|---|---|---|
| | 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B) | 계획현액 (A+B)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당초 | 수정(A) | | | | | | |
| 대위변제 | 1,336,400 | 1,336,400 | - | 1,336,400 | 1,185,076 | - | 151,324 | 1,313,000 |

주) 2026년도 계획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매년 감소 추세에 있는 운용배수에도 불구하고 대위변제액 및 사업자보증 등의 대위변제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계정별 보증 공급 및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운용배수는 매년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대위변제액 및 보증사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임.

먼저 주택금융신용보증계정의 보증 공급 및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운용배수는 2022년 13.7, 2023년 12.6, 2024년 11.1, 2025년 9.7로 꾸준히 감소하였으나, 계정 전체

4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택금융신용보증계정)-대위변제(2631-303)(금융정책국)

의 대위변제율은 2022년 0.26%, 2023년 0.45%, 2024년 0.65%, 2025년 0.94%로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보증사고율 또한 2022년 0.44%, 2023년 0.81%, 2024년 1.07%, 2025년 1.20%로 매년 꾸준히 상승 추세에 있음.

[주택금융신용보증계정의 보증유형별 보증 공급 및 사고 현황]

(단위: 억원, %, 배)

| 구분 |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전세자금보증 | 보증공급액 | 506,948 | 493,353 | 546,800 | 529,299 | 525,881 | 492,055 |
| | 보증잔액 | 784,650 | 857,191 | 888,598 | 879,913 | 836,030 | 793,877 |
| | 대위변제액 | 2,386 | 2,166 | 3,053 | 4,983 | 6,119 | 7,283 |
| | 대위변제율 | 0.30 | 0.25 | 0.34 | 0.57 | 0.73 | 0.92 |
| | 보증사고액 | 3,061 | 3,244 | 4,909 | 7,100 | 8,250 | 8,544 |
| | 보증사고율 | 0.39 | 0.38 | 0.55 | 0.81 | 0.99 | 1.08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보증공급액 | 2,941 | 10,700 | 30,650 | 68,298 | 92,666 | 104,977 |
| | 보증잔액 | 2,928 | 13,384 | 41,849 | 96,557 | 154,110 | 190,899 |
| | 대위변제액 | - | - | 61 | 840 | 2,275 | 1,676 |
| | 대위변제율 | 0.00 | 0.00 | 0.15 | 0.87 | 1.48 | 0.88 |
| | 보증사고액 | - | - | 109 | 1,013 | 2,524 | 1,608 |
| | 보증사고율 | - | - | 0.26 | 1.05 | 1.64 | 0.84 |
| 사업자보증 | 보증공급액 | 42,291 | 51,370 | 57,488 | 68,196 | 53,951 | 36,520 |
| | 보증잔액 | 58,904 | 78,599 | 92,192 | 124,586 | 125,819 | 107,682 |
| | 대위변제액 | 27 | 45 | 7 | 16 | 136 | 2,390 |
| | 대위변제율 | 0.05 | 0.06 | 0.01 | 0.01 | 0.11 | 2.22 |
| | 보증사고액 | 237 | 35 | 55 | 1,791 | 2,026 | 3,196 |
| | 보증사고율 | 0.40 | 0.04 | 0.06 | 1.44 | 1.61 | 2.97 |
| 총계 | 보증공급액 | 646,593 | 650,943 | 729,907 | 755,260 | 762,576 | 686,779 |
| | 보증잔액 | 1,057,518 | 1,169,990 | 1,236,335 | 1,308,230 | 1,309,777 | 1,267,374 |
| | 대위변제액 | 2,488 | 2,286 | 3,168 | 5,891 | 8,579 | 11,851 |
| | **대위변제율** | **0.24** | **0.20** | **0.26** | **0.45** | **0.65** | **0.94** |
| | 보증사고액 | 3,829 | 3,631 | 5,452 | 10,594 | 13,995 | 15,169 |
| | **보증사고율** | **0.36** | **0.31** | **0.44** | **0.81** | **1.07** | **1.20** |
| | **운용배수** | **13.3** | **13.4** | **13.7** | **12.6** | **11.1** | **9.7** |
| | 기말기본재산 | 79,175 | 86,654 | 88,993 | 100,176 | 110,595 | 121,180 |
| | 기본재산증감 | △2,519 | 7,478 | 2,339 | 11,183 | 10,419 | 10,585 |

주 1) 총계는 주택금융신용보증계정 전체를 의미함
2) 운용배수 및 기말 기본재산은 2025년 말 기준임
3) 대위변제 및 사고발생은 연간 누적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자료: 금융위원회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25년 수도권 전세가격 상승 추세 전환 등을 근거로 사고율 및 대위변제율의 하향세를 예상한 바 있으나, 2025년 말 기준 사고율은 1.20%, 대위변제율은 0.94%로, 전년(사고율 1.07%, 대위변제율 0.65%) 대비 오히려 증가하였음.

이는 예측한 바와 같이 수도권 전세가격 상승 추세로 인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사고율은 전년 대비 감소(1.64% → 0.84%)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부터 신규 공급된 사업자보증 중 시공사 부실사업자 정상화 특례보증(2024. 4. 공급 시작)[42]에서 건설 원가 상승 및 지역 부동산시장 상황 등으로 인한 대규모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사업자보증의 사고율이 전년 대비 급증(1.61% → 2.97%)한 것이 원인으로 보임.[43]

[시공사 부실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 주요 내용]

| 보증요건 | 기존 PF보증 요건 | 시공사 부실사업장 특례보증 | 비고 |
|---|---|---|---|
| 대출순위 | 1순위 | ABL(잔금담보부 대출 등) 선순위 인정 | 채권은행 외 타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가능 |
| 대출한도 | 총사업비 × 대출비율(70%~90%) | 총사업비의 최대 100% | 자금조달 불확실성 완화를 통한 안정적 준공 지원 |
| 분할실행 |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분할보증서 발급 불가 | 준공 시까지 발급 가능 | |
| 보증비율 | 90% ~ 100% | 최초 보증취급 시 보증비율 이내 | 보증요건 일관성 확보를 통한 금융기관의 적극적 자금지원 유도 |

자료: 금융위원회

다음으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보증 공급 및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주택금융신용보증계정과 마찬가지로 운용배수는 2022년 10.1, 2023년 9.6, 2024년 9.4, 2025년 9.0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대위변제액 및 대위변제율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는 2007년 주택연금 출시 이후 제도가 성숙기에 진입함에 따라 가입자 고령화, 주택가격 상승 등의 구조적 요인 강화에 따른 것으로 보임.

42) 정부 부동산 PF 안정화 대책 등의 일환으로 부동산 PF시장 연착륙을 위한 시공사 부실사업장 정상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업자보증을 이용 중인 사업장 중 시공사가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사업장의 정상화 지원을 목적으로 출시되었음.

43) 2025년 신규 PF보증과 관련하여 발생한 대위변제는 1건(시공사 부실사업장 특례보증, 1,214억원)으로, 2023년 12월 시공사 워크아웃 이후 PF로 조건이 변경되었다가 시행사 자기자본 여력이 부실하여 토지만 매입된 채로 공사 미착공 및 분양 미개시 상황에서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가 발생하였음.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보증유형별 보증 공급 및 사고 현황]

(단위: 억원, %, 배)

|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보증공급액 | 111,028 | 150,255 | 249,692 | 225,016 | 194,499 | 172,370 |
| 보증잔액 | 734,914 | 829,866 | 1,046,243 | 1,235,333 | 1,386,790 | 1,506,376 |
| **대위변제액** | **137** | **148** | **207** | **466** | **538** | **752** |
| 대위변제율 | 0.02 | 0.02 | 0.02 | 0.04 | 0.04 | 0.05 |
| 보증사고액 | - | - | - | - | - | - |
| **보증사고율** | **-** | **-** | **-** | **-** | **-** | **-** |
| **운용배수** | **11.6** | **9.7** | **10.1** | **9.6** | **9.4** | **9.0** |
| 기말기본재산 | 4,524 | 6,495 | 7,844 | 10,205 | 12,764 | 15,670 |
| 기본재산증감 | 1,635 | 1,971 | 1,349 | 2,361 | 2,559 | 2,906 |

주 1) 운용배수 및 기말 기본재산은 2025년 말 기준임
2) 대위변제 및 사고발생은 연간 누적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자료: 금융위원회

이를 종합하면, 주택금융신용보증계정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율 및 대위변제율이 크게 하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이후 신규 사업자보증의 대위변제 및 사고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도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전체 대위변제율의 증가 추세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15. 사업수수료 사업: 계획액의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 가. 개 요

**‘사업수수료’** 사업은 개인보증 취급업무를 금융회사에 위탁하여 운용하는데 소요되는 취급수수료와 반환보증 등 기타 보증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사업 수수료 비용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122억 1,100만원 중 101억 1,400만원이 집행(집행률 82.8%)되고 20억 9,700만원이 불용되었음.[44]

[2025년도 사업수수료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2026년도 계획액 |
|---|---|---|---|---|---|---|---|---|
| | 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B) | 계획현액 (A+B)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당초 | 수정(A) | | | | | | |
| 사업수수료 | 15,278 | 12,211 | - | 12,211 | 10,114 | - | 2,097 | 11,479 |

주) 2026년도 계획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보증 및 연금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 수수료가 과다추계되어 당초 계획액 대비 집행액이 저조하므로,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신규 상품에 대한 면밀한 추계를 통해 사업수수료 예산이 보다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023년 이후 연도별 사업수수료의 계획 대비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주택금융신용보증계정 중 반환보증취급수수료 등에서 매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였음.

44)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사업수수료(2631-304)(금융정책국)

[2023~2025년 주택금융신용보증계정 사업수수료의 계획 대비 집행 실적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3 | | | 2024 | | | 2025 | | |
|---|---|---|---|---|---|---|---|---|---|
| | 계획(A) | 실적(B) | B-A | 계획(C) | 실적(D) | D-C | 계획(E) | 실적(F) | F-E |
| 개인보증위탁수수료 | 8,415 | 7,158 | △1,257 | 8,083 | 5,284 | △2,799 | 7,104 | 5,016 | △2,088 |
| 반환보증취급수수료 | 1,054 | 2,843 | 1,789 | 8,333 | 3,890 | △4,443 | 7,676 | 4,595 | △3,081 |
| 취급수수료 | 676 | 2,000 | 1,324 | 5,164 | 2,838 | △2,326 | 4,974 | 3,293 | △1,681 |
| 권리조사수수료 | 143 | 534 | 391 | 1,929 | 685 | △1,244 | 1,873 | 983 | △890 |
| 감정평가수수료 | 235 | 309 | 74 | 1,240 | 367 | △873 | 829 | 319 | △510 |
| 신용정보이용수수료 | 365 | 269 | △96 | 551 | 480 | △71 | 498 | 503 | 5 |
| 합 계 | 9,834 | 10,270 | 436 | 16,967 | 9,654 | △7,313 | 15,278 | 10,114 | △5,164 |

자료: 금융위원회

[2023~2025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사업수수료의 계획 대비 집행 실적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3 | | | 2024 | | | 2025 | | |
|---|---|---|---|---|---|---|---|---|---|
| | 계획(A) | 실적(B) | B-A | 계획(C) | 실적(D) | D-C | 계획(E) | 실적(F) | F-E |
| 판매장려수당 | 655 | 548 | △107 | 691 | 511 | △180 | 633 | 360 | △273 |
| 신탁 담보주택 관리수수료 | 76 | 5 | △71 | 37 | 4 | △33 | 46 | 4 | △42 |
| 담보물 사후관리 | - | - | - | - | - | - | 115 | 20 | △95 |
| 저가주택 감정평가 수수료 | 456 | 194 | △262 | 308 | 320 | 12 | 396 | 448 | 52 |
| 법률세무상담지원 수수료 | - | - | - | - | - | - | 423 | 90 | △333 |
| 합 계 | 1,187 | 747 | △440 | 1,036 | 835 | △201 | 1,613 | 922 | △691 |

자료: 금융위원회

이처럼 계획과 집행 실적 간 괴리가 발생하는 원인은 보증 공급규모의 과다 산정으로 보임. 2025년 사업수수료 유형별 집행 계획 대비 실적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주택금융신용보증계정의 반환보증 위탁수수료,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판매장려수당, 신탁 담보주택 관리수수료 등에서 보증 공급규모가 당초 예상치를 크게 하회한 결과 집행액이 계획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음.

[2025년 주택금융신용보증계정 사업수수료 집행 계획 및 실제 값을 대입한 결과]

| 구분 | 당초 계획(추정식) | 추정식에 실제 값을 대입한 결과 |
|---|---|---|
| 개인보증 위탁수수료 | ○ 71억 400만원<br>= [108조원(2024년 예상 보증평잔)<br>× 0.079%(보증료수익 예상실현요율) | ○ 59억 9,400만원<br>= [106조원(2024년 실제 보증평잔)<br>× 0.068%(결산 후 보증료수익 실현요율) |

| 구분 | 당초 계획(추정식) | 추정식에 실제 값을 대입한 결과 |
|---|---|---|
| | - 144억원(예상 보증료환급금)]<br>× 10%(취급수수료율) | - 120억원(실제 보증료환급금)]<br>× 10%(취급수수료율) |
| **반환보증 위탁수수료** | ○ 7,676백만원 | ○ 4,635백만원 |
| 취급 | ○ 49억 7,400만원<br>**= [59,015건(2024년 공급 예상 건수)**<br>**+ 83,107건(2025년 공급 예상 건수)]**<br>× 0.5 × 7만원(건당 수수료) | ○ 33억 4,600만원<br>**= [45,359건(2024년 실제 공급 건수)**<br>**+ 50,243건(2025년 실제 공급 건수)]**<br>× 0.5 × 7만원(건당 수수료) |
| 권리 조사 | ○ 18억 7,300만원<br>**= [64,812건(24.4Q~25.3Q 신규 공급 건수)**<br>× 2.7만원(건당 수수료)]<br>**+ [12,272건(24.4Q~25.3Q 연장 공급 건수)**<br>× 1만원(건당 수수료)] | ○ 11억 2,800만원<br>**= [37,738건(24.4Q~25.3Q 신규 공급 건수)**<br>× 2.7만원(건당 수수료)]<br>**+ [10,893건(24.4Q~25.3Q 연장 공급 건수)**<br>× 1만원(건당 수수료)] |
| 감정 평가 | ○ 8억 2,900만원<br>**= [600건(24.4Q~25.3Q 아파트 평가 건수)**<br>× 0.11만원(건당 수수료)]<br>**+ [1,364건(24.4Q~25.3Q 비아파트 평가 건수)**<br>× 60만원(건당 수수료)]<br>+ 1,000만원(보증서 미발급 건 실비정산) | ○ 1억 6,100만원<br>**= [178건(24.4Q~25.3Q 아파트 평가 건수)**<br>× 0.11만원(건당 수수료)]<br>**+ [259건(24.4Q~25.3Q 비아파트 평가 건수)**<br>× 60만원(건당 수수료)]<br>+ 500만원(보증서 미발급 건 실비정산) |
| 신용정보 이용수수료 | ○ 4억 9,800만원 | ○ 5억 300만원 |

주) 상기 추정식은 간소화된 것으로, 실제 수수료 지급 방식은 추정식과 다소 차이가 있음
자료: 금융위원회

[2025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사업수수료 집행 계획 및 실제 값을 대입한 결과]

| 구분 | 당초 계획(추정식) | 추정식에 실제 값을 대입한 결과 |
|---|---|---|
| 판매장려 수당 | ○ 6억 3,300만원<br>(일반형) 3억 3,300만원<br>**= 11,985건(공급 건수)**<br>× 8.4%(일반형 중 전환 비중)<br>× 9,100만원(평균 전환금액)<br>× 0.4% (수수료율)<br>(상환형) 3억원<br>**= 961건(공급 건수)**<br>× 36.8%(상환형 중 전환 비중)<br>× 2억 3,700만원(평균 전환금액)<br>× 0.4% (수수료율) | ○ 3억 9,100만원<br>(일반형) 2억 3,100만원<br>**= 9,728건(공급 건수)**<br>× 6.6%(일반형 중 전환 비중)<br>× 9,000만원(평균 전환금액)<br>× 0.4% (수수료율)<br>(상환형) 1억 6,000만원<br>**= 786건(공급 건수)**<br>× 25.8%(상환형 중 전환 비중)<br>× 1억 9,700만원(평균 전환금액)<br>× 0.4% (수수료율) |
| 신탁 담보주택 | ○ 4,600만원<br>(담보물유지보수) 3,800만원 | ○ 3,300만원<br>(담보물유지보수) 2,500만원 |

| 구분 | 당초 계획(추정식) | 추정식에 실제 값을 대입한 결과 |
|---|---|---|
| 관리수수료 | = 29,164건(신탁 유지 건수)<br>× 0.047%(손해 발생 확률)<br>× 280만원(건당 예상 손해액)<br>(임대차조사수수료) 800만원<br>= [6,958건(신규 가입 건수)<br>+ 207건(전환 대상 건수)]<br>× 10.5%(아파트 외 가입 비중)<br>× 1만원(건별 수수료) | = 18,296건(신탁 유지 건수)<br>× 0.045%(손해 발생 확률)<br>× 300만원(건당 실제 손해액)<br>(임대차조사수수료) 800만원<br>= [6,069건(신규 가입 건수)<br>+ 102건(전환 대상 건수)]<br>× 12.5%(아파트 외 가입 비중)<br>× 1만원(건별 수수료) |
| 담보물 사후관리 | ○ 1억 1,500만원<br>= 15,853건(연간 가입 예상 건수)<br>× 20%(사후관리 대상 건수 비중)<br>× 3.7만원(예상 단가) | ○ 1억 300만원<br>= 13,925건(연간 실제 가입 건수)<br>× 20%(사후관리 대상 건수 비중)<br>× 3.7만원(실제 단가) |
| 저가주택 감정평가 수수료 | ○ 3억 9,600만원<br>= [1,030건(정식) × 38.2만원(단가)]<br>+ [174건(약식) × 1.1만원(단가)] | ○ 4억 4,000만원<br>= [1,146건(정식) × 38.2만원(단가)]<br>+ [186건(약식) × 1.1만원(단가)] |
| 법률세무 상담지원 수수료 | ○ 4억 2,300만원<br>= 5,021건(해지 건수)<br>× 28.1%(사망 및 잔존가치 존재 비중)<br>× 30만원(상담 단가) | ○ 3억 8,000만원<br>= 4,395건(해지 건수)<br>× 28.8%(사망 및 잔존가치 존재 비중)<br>× 30만원(상담 단가) |

주) 상기 추정식은 간소화된 것으로, 실제 수수료 지급 방식은 추정식과 다소 차이가 있음
자료: 금융위원회

특히 사업수수료 계획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계정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주택연금상품 예상 공급 건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전체의 사업 규모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2024년 이후 실제 공급이 예상치를 하회하고 있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및 주택연금상품 공급 현황]

(단위: 억원, 건)

| 구분 | | 2023 | | 2024 | | 2025 | |
|---|---|---|---|---|---|---|---|
| | | 계획 | 실제 | 계획 | 실제 | 계획 | 실제 |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공급 금액 | 18,000 | 68,298 | 144,900 | 92,666 | 85,268 | 104,977 |
| | 공급 건수 | 9,932 | 35,567 | 73,366 | 45,359 | 83,107 | 50,243 |
| 주택연금상품 | 공급 금액 | 199,811 | 225,016 | 285,153 | 194,499 | 248,728 | 172,370 |
| | 공급 건수 | 13,723 | 14,885 | 15,966 | 14,670 | 15,853 | 13,925 |

자료: 금융위원회

사업 수요에 대한 부정확한 추계는 기금운용계획의 신뢰성뿐만 아니라 수요 예측치를 기반으로 한 사업모델 전반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바,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다 면밀한 추계를 통해 사업수수료 예산이 보다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기　타】

## 16.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 관련 부처협의 노력 제고 필요

### 가. 개　요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금융위원회에 대해 시정요구 40건(중복 7건 포함)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시정 2건・주의 17건・제도개선 28건이었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 구분 | 변상 | 징계 | 시정 | 주의 | 제도개선 | (중복) | 계 |
|---|---|---|---|---|---|---|---|
| 결산 | - | - | 2 | 17 | 28 | 7 | 40 |
| 예비비 | - | - | - | - | - | - | - |
| 합계 | - | - | 2 | 17 | 28 | 7 | 40 |

금융위원회는 시정요구사항 40건에 대해 32건을 조치완료(조치율 80.0%)하고 8건을 조치 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 구분 | 시정요구사항(a) | 조치완료(b) | 조치율(b/a) | 조치중(a-b) |
|---|---|---|---|---|
| 결산 | 40 | 32 | 80.0 | 8 |
| 예비비 | - | - | - | - |
| 합계 | 40 | 32 | 80.0 | 8 |

국회가「2025년도 예산안」등을 심의·의결하면서 채택한 부대의견 중 금융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관련 부대의견은 아래와 같음.

[금융위원회 관련 2025년도 예산안 등 부대의견]

| 구분 | 부대의견 |
|---|---|
| 2025년도<br>본예산 | (24) 금융위원회와 관계부처는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직업 전환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 2025년도<br>제2회 추경 | (9) 금융위원회는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사업 추진 시 4,000억원 규모 금융권 출연 등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 협약기관의 범위, 채권 매입 후 소각 및 채무조정 세부요건, 도박·유흥 채무 등 지원 제외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 전에 국회 정무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한다. |

## 나. 검토의견

**금융위원회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의 일반회계 이관 및 기금 폐지 등과 관련하여 관계 부처 간 제도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면서도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2025년 기금존치평가에서도 동 기금에 대한 기금폐지 의견이 제기된 상황이므로, 부처 간 이견을 조속히 조율하여 실질적인 협의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음.**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은 기금 수입의 99% 이상이 당해연도 정부와 한국은행 출연금에 의존하고, 지출 총액의 99% 이상이 저축장려금으로 집행되어 단년도로 운영되는 일반회계 예산사업과 유사한 집행 행태를 보이므로, 동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하라는 국회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이 제기된 바 있음.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의 일반회계 전환 관련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 구분 | 내용 |
|---|---|
| 시정요구명 | (24)제도개선 방안 조속히 마련 필요 |
| 시정요구사항<br>(시정요구수준) | ○ 국회가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관계부처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도개선을 미루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므로,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일반회계로의 전환 등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상황 | 조치중 |
| 조치결과 | ㅇ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의 일반회계 편입, 운용주체 변경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함<br>ㅇ 농어가기금의 일반회계 전환, 소관부처 이관 등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기관(기획예산처, 한국은행, 농림부 등)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br>※ 2025년 8월 금융산업국장 주재 관계기관(기재부, 농림부, 한국은행 등) 회의 개최하였으나 이견 지속 중<br>ㅇ 조치예정일 : 미정(관계기관 협의 필요) |

금융위원회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의 제도개편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관계 부처·기관과 회의를 개최하는 등 기획예산처·한국은행 등과 이견 조율을 지속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여전히 협의에 다다르지 못하였음.

[연도별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의 일반회계 전환에 대한 관계기관별 입장]

| 기관명 | |
|---|---|
| 금융위원회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사업의 유지는 필요하며, 사업의 내용·구조 및 그간의 지적사항 등을 고려할 때 기금 폐지 및 일반회계 전환의 필요성에 공감 |
| 한국은행 | 한은이 정부 사업에 출연하는 유례가 없는 점, 재정의 화폐화 문제, 농어민 외의 집단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일반회계 전환 시 출연금 유지에 부정적 |
| 기획예산처 | 한국은행 출연금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 |
| 농림축산식품부 | 소관부처 이관에 반대하였으나, 지속적 협의 결과 재원 조달 방안 이견 해소시 일반회계 전환·소관부처 이관에 동의 |
| 해양수산부 | 금융위 제도개편안(일반회계 전환·소관부처 이관)에 동의 |

주) 2025. 8. 18. 기준

동 사업은 3년마다 실시되는 기금존치평가에서 2019년·2022년·2025년 모두 폐지 권고를 받는 등 일반회계 사업으로의 전환 및 기금 폐지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45] 금융위원회는 부처 간 이견을 조속히 조율하여 실질적인 협의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음.

45) 19개 기금에 대한 존치평가 결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단년도 수요에 따라 출연금이 편성·운영됨에 따라 기금을 통한 별도 운용 필요성이 낮아 폐지를 권고하였음(기획재정부, “기금평가 결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폐지 등 권고”, 2025. 5. 28.).

# 국민권익위원회

# Ⅰ. 개 관

## 1. 결산 개요

### 가. 총수입·총지출

2025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2억 300만원(22.3%)이 많은 11억 1,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3,100만원(63.0%)이 증가됨.[1)]

[2025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4회계연도 | | | | 2025회계연도 | | | | 전년대비 (D-B) |
|---|---|---|---|---|---|---|---|---|---|
| | 예산액 | | 결산 (B) | 예산대비 (B-A) | 예산액 | | 결산 (D) | 예산대비 (D-C) | |
| | 본예산 | 추경(A) | | | 본예산 | 추경(C) | | | |
| 예 산 | 892 | 892 | 684 | △208 | 912 | 912 | 1,115 | 203 | 431 |
| 총수입 | 892 | 892 | 684 | △208 | 912 | 912 | 1,115 | 203 | 431 |

문의 : 02-6788-5676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5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7억 5,700만원(△0.7%)이 적은 1,043억 3,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6억 6,300만원(△3.4%)이 감소됨.

[2025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4회계연도 | | | | 2025회계연도 | | | | 전년대비 (D-B) |
|---|---|---|---|---|---|---|---|---|---|
| | 예산액 | | 결산 (B) | 예산대비 (B-A) | 예산액 | | 결산 (D) | 예산대비 (D-C) | |
| | 본예산 | 추경(A) | | | 본예산 | 추경(C) | | | |
| 예 산 | 111,592 | 111,592 | 107,996 | △3,596 | 105,090 | 105,090 | 104,333 | △757 | △3,663 |
| 총지출 | 111,592 | 111,592 | 107,996 | △3,596 | 105,090 | 105,090 | 104,333 | △757 | △3,663 |

## 나.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9억 1,200만원으로, 14억 1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1억 1,500만원이 수납(수납률 79.6%)되고, 2억 8,6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5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세입예산액 | | 이체등 증감액 (B) | 세입 예산현액 (A+B) | 징수 결정액 | 수납액 | 미수납액 | 불납 결손액 |
|---|---|---|---|---|---|---|---|---|
| | 본예산 | 추경 (A) | | | | | | |
| 일반회계 | 912 | 912 | - | 912 | 1,401 | 1,115 | 286 | - |
| 합 계 | 912 | 912 | - | 912 | 1,401 | 1,115 | 286 | - |

주) 총계 기준

2025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083억 2,600만원으로, 1,043억 3,3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3%)되고, 39억 9,4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세출예산액 | | 예산결정후증감액(B) | | | 세출 예산현액 (C=A+B)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 (A)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 | | |
| 일반회계 | 105,090 | 105,090 | 3,236 | ±191 | - | 108,326 | 104,333 | - | 3,994 |
| 합 계 | 105,090 | 105,090 | 3,236 | ±191 | - | 108,326 | 104,333 | - | 3,994 |

주) 총계 기준

## 다. 재무결산

2025회계연도 말 기준 국민권익위원회 자산은 전년 대비 20억 100만원이 증가된 445억 3,500만원으로, 이는 기타자산이 122억 7,100만원 감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무형자산이 146억 1,200만원 증가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2,100만원 증가된 9,200만원으로 충당부채 2,500만원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19억 8,000만원이 증가된 444억 4,300만원임.

2025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1,105억 1,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4억 3,600만원 증가되었으며, 재정운영결과는 1,103억 8,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3억 3,800만원 증가됨.

[2025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 | 2025 (A) | 2024 (B) | 증 감 | |
|---|---|---|---|---|---|---|
| | | | | | 금액 (A-B) | 증가율 (A-B)/B |
| 재정 상태표 | 자 산 | | 44,535 | 42,534 | 2,001 | 4.7 |
| | | 금융자산 | 1,567 | 1,906 | △339 | △17.8 |
| | | 유·무형자산 | 42,880 | 28,268 | 14,612 | 51.7 |
| | | 기타자산 | 88 | 12,359 | △12,271 | △99.3 |
| | 부 채 | | 92 | 71 | 21 | 29.6 |
| | | 차입부채 | - | 4 | △4 | △100 |
| | | 충당부채 | 92 | 67 | 25 | 37.3 |
| | | 기타부채 | - | - | - | - |
| | 순자산 | | 44,443 | 42,463 | 1,980 | 4.7 |
| 재정 운영표 | 프로그램순원가 | | 110,514 | 104,078 | 6,436 | 6.2 |
| | 재정운영순원가 | | 110,389 | 104,051 | 6,338 | 6.1 |
| | 재정운영결과 | | 110,389 | 104,051 | 6,338 | 6.1 |

##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2025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재정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간 거래는 없음.

##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생·약자 보호 등 국민생활 안정, 국민이 체감하는 청렴·공정사회 구현, 디지털 플랫폼 확대로 국민 소통·권익구제 강화를 2025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총 22개 세부사업에서 청렴한 국가 실현, 국민 고충해결을 통한 국민권익 증진 업무를 수행하였음.

2025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보호조치 인용률은 낮고 종결·취하 비중은 높은 수준이고, 보호조치 결정 이후에도 일부 미이행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호조치 신청요건과 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종결·취하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이행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둘째, 행정심판통합추진 사업은 법제·조직 통합을 전제로 추진되었으나 추진단 해산 이후 당초 사업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중장기 제도개선 사업 추진 시 관계기관 협의 가능성, 법령 개정 필요성 및 정책환경 변화 가능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청렴권익정책알리기 사업과 행정심판운영 사업 등에서 유사한 홍보성 경비가 분산 집행되고 있으므로 홍보예산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홍보물 제작성 용역 등은 과업 성격에 맞는 비목으로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음.

넷째, 지방옴부즈만 설치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25년 기준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41.2%에만 설치되어 있고 지방옴부즈만에 접수된 고충민원의 전체 고충민원 대비 비율도 하락하는 등 지역 단위 고충민원 처리창구로서의 활용이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지방옴부즈만 설치 확대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 1. 신고자보호보상및공익신고제도운영 사업: 신고자보호조치 실효성 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 필요 등

### 가. 개　요

**‘신고자보호보상및공익신고제도운영’** 사업은 부패신고자·공익신고자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등을 활성화하고 신고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또는 비용 절감에 기여한 경우 보상금·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신고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54억 2,600만원 중 50억 6,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3.4%)되고 3억 6,000만원이 불용되었음.[2)]

[2025년도 신고자보호보상및공익신고제도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신고자보호보상및 공익신고제도운영 | 5,500 | 5,500 | - | △74 | 5,426 | 5,066 | - | 360 | 4,994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첫째,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건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데 비해 인용 건수는 제한적이고, 종결·취하 사건의 비중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보호조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일반회계-신고자보호보상및공익신고제도운영(1136-364)(심사보호국)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는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3] 또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에서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음.[4]

최근 3년간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신청 접수 건수는 2023년 296건에서 2025년 1,025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2025년 보호조치 인용 건수는 63건에 그쳤으며, 처리 건수 837건 대비 인용률은 7% 가량으로 여전히 저조한 상황임.

[최근 3년간 보호조치 결정 현황]

(단위 : 건)

| 연도 | 유형 | 보호조치 결정 결과 | | | | 총 보호신청 접수 건수 |
|---|---|---|---|---|---|---|
| | | 총 처리건수 | 인용건수 | 기각·각하 건수 | 종결·취하 건수 | |
| 2023 | 부패 | 129 | 8 | 21 | 100 | 296 |
| | 공익 | 229 | 19 | 57 | 153 | |
| | 소계 | 358 | 27(7.5%) | 78(21.8%) | 253(70.7%) | |
| 2024 | 부패 | 188 | 17 | 45 | 126 | 468 |
| | 공익 | 277 | 17 | 54 | 206 | |
| | 소계 | 465 | 34(7.3%) | 99(21.3%) | 332(71.4%) | |
| 2025 | 부패 | 313 | 17 | 33 | 263 | 1,025 |
| | 공익 | 524 | 46 | 54 | 424 | |
| | 소계 | 837 | 63(7.5%) | 87(10.4%) | 687(82.1%) | |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실질적인 판단 전 단계에서 처리되는 종결·취하 건수가 2025년 687건으로 전체 처리 건수의 80% 이상이며, 그 비중도 2023년 70.7%, 2024년 71.4%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바, 이는 보호조치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상당수 사건이 보호조치 필요성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에 이르기 전에 절차상 종료되고 있음을 의미함.

3)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보호조치 신청) ①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공익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신분보장 등의 조치 신청 등) ① 신고자는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분보장등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종결·취하건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주로 법상 부패·공익 신고 요건을 갖추지 않거나, 법상 불이익조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을 신청하는 경우 등에 따라 종결되는 보호신청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음.

다만 종결·취하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신고자들이 보호조치 신청요건, 불이익조치의 범위, 입증에 필요한 자료 및 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보호신청 사건 중 일부는 신청인이 조사·심의 과정에서 절차가 장기화되거나 구제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해 중도에 취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종결·취하 사건을 단순히 법정 요건 미충족 사건으로 처리하는 데 그치기보다는, 종결·취하 사유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신청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요건 불충족 신청 및 절차상 이탈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둘째, 보호조치 결정 이후 실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이행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후속조치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보호조치 제도는 부패·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해임, 전보, 성과평가상 불이익, 징계 등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통해 신고자의 권익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임.

보호조치 신청이 인용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상대방에게 원상회복, 해임 취소, 성과평가 등급 재산정 또는 징계 요구 등 구체적인 조치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정해진 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5)]

2025년 보호조치 인용 건수는 총 63건이며, 이 중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이행의무가 부과된 신분보장등조치 등은 28건임. 이 중 22건은 이행이 완료되었으나, 미이행된 6건 중 2건은 조치결과 검토 중이며 1건은 이행 중으로, 3건이 미이행 상태임. 미이행 사건 중 2건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가 진행되었고, 1건은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음.

---

5)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2025년 인용된 보호조치 중 이행 미완료 현황]

| 연번 | 유형 | 결정내용 | 이행여부 |
|---|---|---|---|
| 1 | 신분보장등조치 | 성과평가 등급 재산정 | 기관 조치 내용 검토 중 |
| 2 | 신분보장등조치 | 성과평가 등급 재산정 | 기관 조치 내용 검토 중 |
| 3 | 보호조치 | 해임 취소 | 미이행<br>(이행강제금 1차 부과·납부 → 2차 부과 예정) |
| 4 | 보호조치 | 해임 취소 | 미이행<br>(행정소송 진행 중) |
| 5 | 신분보장등조치 | 해임 취소 | 미이행<br>(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
| 6 | 신분보장등조치 | 피신청인에 필요한 징계 등 요구 | 이행 중<br>(추가 감사 예정) |

자료: 국민권익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보호조치 제도는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받은 불이익을 신속하게 시정하는 데 목적이 있음. 특히 미이행 사건에는 해임 취소와 같이 신고자의 신분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는바, 원상회복 조치가 장기간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신고자의 피해가 지속되고 보호조치 결정의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민권익위는 미이행 사건에 대하여 추가 이행강제금 부과 등 법률상 예정된 후속조치를 적기에 실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일부 사건은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은 상태임.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신청 및 인용 여부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보호조치 결정의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소송 장기화로 신고자의 불이익이 지속되거나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2025년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조치 미이행 2건에 대하여 3,25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징수결정하였으나 수납 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국민권익위원회 이행강제금 수납 현황]

(단위: 원, %)

| 연도 | 징수결정액 | 수납금액 | 수납률 |
|---|---|---|---|
| 2023 | 118,000,000 | △62,000,000 | △48.4 |
| 2024 | 60,000,000 | 60,000,000 | 100.0 |
| 2025 | 32,500,000 | - | - |

주) 2023년 수납액은 법원 판결 등에 따라 기 수납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면서 음수로 나타남.
자료: 국민권익위

이행강제금은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이므로, 부과 이후 실제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호조치 결정의 이행 확보 기능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세입 징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체납액 징수 노력을 강화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2차 이행강제금 부과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 행정심판통합추진 사업: 행정심판 조직 통합 추진사업 중단에 따른 유사 사례 재발 방지 필요

### 가. 개 요

**‘행정심판통합추진’** 사업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 및 특별행정심판의 조직을 통합하여 행정심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2025년 예산현액 2억 600만원 중 1억 7,700만원이 집행(집행률 85.9%)되고, 2,900만원이 불용되었음.[6)]

[2025년도 행정심판통합추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행정심판운영 | 1,543 | 1,543 | - | - | 1,543 | 1,324 | - | 219 | 1,344 |
| 행정심판 통합추진 | 212 | 212 | - | △6 | 206 | 177 | - | 29 | 72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행정심판 통합 추진 사업은 법제·조직 통합을 전제로 추진되었으나, 통합 추진단 해산 이후 후속 추진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어 3년여간 추진해온 통합 사업이 사실상 성과 없이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국민권익위는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당초 동 사업은 국민들의 행정심판제도 이용 편의를 위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특별행정심판기관의 조직 통합을 목표로 예산이 편성되었음.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부터 행정심판기관 통합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였고, 2024년에는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심판기관의 법제·조직 통합 및 행정심판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부처 간 이견 조정 및 입법절차 지연 등으로 정부안 제출까지 이르지 못하였음. 이후 2025년에는 행정심판 통합협의

6) 일반회계-행정심판운영(1137-370)(행정심판국)

체 구성 및 통합 입법안 마련을 다시 추진하면서 예산을 집행하였음.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기관 통합 추진을 위한 별도 조직도 설치·운영하였는데, 2023년 「행정심판 통합 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을 통해 통합 기획단을 설치한 이후, 존속기한을 매년 연장하거나 추진단으로 확대·개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음.

[행정심판조직통합 추진사업 관련 조직 변동]

| 훈령명 | 제·개정일 | 주요내용 | 존속기한 |
|---|---|---|---|
| 「행정심판 통합 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2023. 6. 1.(제정) | 기획단 출범 | 2024. 6. 1. |
| | 2024. 5. 31.(개정) | 존속기한 연장 | 2025. 5. 31. |
| 「행정심판 통합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2024. 9. 19.(개정) | 기획단에서 추진단으로 확대·개편 | 2025. 5. 31. |
| | 2025. 5. 30.(개정) | 존속기한 연장 | 2025. 9. 18. |
| | 2025. 9. 19.(폐지) | 폐지 | 폐지 |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2025년 9월 19일 관련 훈령이 폐지됨에 따라 행정심판 통합 추진단이 해산되었고, 이후 행정심판 조직 통합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대체 추진체계는 확인되지 않음.

그 결과 2022년부터 연구용역비 6,300만원·자문단 위촉비 960만원 등 총 1억 4,1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행정심판 조직 통합 추진이 사실상 성과없이 중단된 것으로 보이며, 관련 조직과 예산 운용에 따른 매몰비용만 발생시키는 결과가 초래되었음.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제 정비의 어려움, 관계기관 협의 지연 및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환경 변화 등을 사업 중단 사유로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심판기관 통합은 당초부터 법령 개정과 관계기관 간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이러한 제약요인은 사업 기획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되었어야 함.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 없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법령 개정 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수준 및 추진 조직·인력 계획 수립 등을 사전 준비를 보다 면밀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통합추진단 및 자문단이 해산된 이후에 온라인 시스템을 통합한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을 개통하였는데, 총 123개의 행정심판시스템 중 90개 기관이 참여한 상태로 개통되었음.

이는 각 행정심판기관의 온라인 접수·처리 시스템을 연계하여 국민이 하나의 창구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시스템 통합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당초 예산 편성 당시 전제되었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특별행정심판기관 간 법제 및 조직 통합과는 성격이 다름.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 참여 현황]

| 구분 | | 행정심판수행기관 (총 123개) |
|---|---|---|
| 참여 기관 (90개) | 일반(49)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국가인권위원회·법무부 지방교정청(4)·고등검찰청(6), 시도 행정심판위원회(17),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17) |
| | 소청(35)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시도 소청심사위원회(17), 시도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17) |
| | 보상보험(3)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장기요양심판위원회,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
| | 토지 등(3) |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광업조정위원회 |
| 미참여기관 (28개) | 일반(8) | 대통령소속(3),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감사원, 중앙선관위, 국가정보원 등 |
| | 소청(11) | 중앙소청심사위원회, 국회, 헌법재판소, 법원, 선관위, 중앙군인사, 육군·공군·해군·군무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등 소청심사위원회 |
| | 조세(3) | 조세심판원, 국세심사위원회, 관세심사위원회 |
| | 보상보험(5)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 어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
| | 토지(1)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 제외기관 (5) | 특허심판원, 해양안전심판원, 공정위 이의신청, 중앙노동위원회, 난민위원회 | |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 및 참여기관 확대는 행정심판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과제이나, 조직 통합이 중단된 상황에서 시스템 중심의 연계로 정책 방향이 사실상 전환된 것이라면 그 추진목표와 성과지표도 이에 맞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3. 청렴권익정책알리기 사업: 홍보 예산의 총괄관리 필요 등

## 가. 개 요

**‘청렴권익정책알리기’** 사업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반부패·권익구제 기능과 정책을 알리기 위한 대언론·대국민 홍보를 추진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3억 9,000만원 중 13억 5,9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8%)되고 3,100만원이 불용되었음.[7)]

[2025년도 청렴권익정책알리기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청렴권익정책알리기 | 1,390 | 1,390 | - | - | 1,390 | 1,359 | - | 31 | 1,153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첫째, 청렴권익정책알리기 사업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총괄 홍보사업임에도, 일부 개별 세부사업에서도 유사한 홍보성 경비가 별도로 집행되고 있어 홍보예산의 역할분담 및 총괄관리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청렴권익정책알리기 사업은 위원회의 주요 반부패·권익구제 기능과 정책을 알리기 위해 권익증진 정책홍보, 디지털 소통팀 운영, SNS 위탁관리, 정책홍보효과 측정 등 기관 차원의 온·오프라인 홍보를 총괄하여 추진하는 사업임.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는 개별 세부사업인 ‘행정심판운영’ 사업에서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개통과 관련한 홍보비를 별도로 집행하였음. 청렴권익정책알리기 사업의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청렴권익정책알리기 사업에서는 행정심판 제도 홍보를 위한 광고료 및 수수료, 전광판 광고, 온라인 배너광고 등에 총 7,180만원이 집행되었음.

이와 별도로 행정심판운영 사업에서는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개통 홍보를 위하여 인쇄물과 홍보물품을 제작하고, 유튜브·인스타그램 광고, 옥외광고, 열차 내 광고, 라디오 광고, 숏폼 및 미디어 광고 등에 총 1억 3,995만 4,000원을 집행하였음.

7) 일반회계-청렴권익정책알리기(1131-300)(홍보담당관)

이에 따라 2025년도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심판 제도 관련 홍보에 집행한 금액은 2억 1,175만원이며 두 세부사업으로 분산되어 집행되었음.

[2025년 국민권익위 행정심판 홍보비 집행 현황]

(단위: 천원)

| 세부사업 | 구분 | 집행액 | 주요 내용 |
|---|---|---|---|
| 청렴권익 정책알리기 (1131-300) | 행정심판 제도 홍보 광고료 | 20,000 | 광고료 및 수수료 집행 |
| | 행정심판 제도 홍보 | 51,800 | 전광판 광고<br>온라인 배너 광고 |
| | **행정심판 홍보비 합계** | 71,800 | |
| 행정심판운영 (1137-370) |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개통 홍보물 제작 | 9,758 | 인쇄물 비용 및 홍보물품 구매 |
| |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개통 온라인/미디어 홍보 | 130,196 | 유투브・인스타 광고<br>옥외 광고<br>열차 내 전광판 광고<br>라디오 광고<br>쇼폼 및 미디어 광고 |
| | **행정심판 홍보비 합계** | 139,954 | |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각 집행은 홍보 시기와 구체적인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두 사업 모두 행정심판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라는 점에서 정책 대상이 유사함.

또한 청렴권익정책알리기 사업에서는 전광판 광고와 온라인 배너광고를 실시하였고, 행정심판운영 사업에서도 옥외광고와 온라인 광고를 집행하는 등 활용한 홍보수단도 일부 유사함.[8] 이 경우 행정심판 관련 홍보의 성과를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며 옥외광고나 홍보물 제작 등에 있어 유사, 중복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음.

8) 행정심판운영 사업에서는 온라인 광고로 5,8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청렴권익정책알리기 사업에서는 온라인 광고로 4,180만원이 집행되었음.

| 행정심판운영 사업 내 온라인 광고 | 청렴권익정책알리기 사업 내 온라인 광고 |
|---|---|
|  |  |

따라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책에 대한 홍보비가 총괄 홍보사업과 개별 세부사업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 간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여 차별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가급적 통합 집행 또는 연계 운영이 가능한 홍보비는 청렴권익정책알리기 사업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권익증진 정책 홍보 내역에서 2025년 국민권익위원회 소식지(웹진) 제작 사업을 일반연구비(260-01)로 집행하였으나, 소식지 제작의 업무 성격상 일반용역비 등 보다 적정한 비목으로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음.**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국민권익」 소식지(웹진) 제작 사업을 일반연구비(260-01)로 6,700만원 집행하였음. 해당 용역의 목적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익보호 활동에 대한 최신 정보와 청렴문화 확산 활동을 국민에게 스토리 형식으로 전달하기 위한 계간 소식지 「국민권익」을 제작하는 것임.

[국민권익위원회 소식지 제작 사업내역]

(단위: 백만원)

| 용역명 | 집행비목 | 집행액 | 주요 과업 |
|---|---|---|---|
| 「국민권익」 소식지·웹진 제작 | 일반연구비(260-01) | 67 | 인터뷰·촬영, 디자인·편집, 웹진 및 E-Book 제작, 뉴스레터 발송, 카드뉴스 제작 및 이벤트 운영 |

그런데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상 일반연구비는 학술, 기술, 평가 등 지식기반 업무에 대한 용역비용에 해당하는 비목임. 반면 해당 용역의 과업 내용은 인터뷰·촬영, 디자인·편집, 웹진 및 E-Book 제작, 뉴스레터 발송, 카드뉴스 등 시각 콘텐츠 제작, 이벤트 운영 등이 중심으로, 연구 성격보다는 홍보간행물 및 웹진 제작 용역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임.

향후 국민권익위원회는 홍보물 제작성 용역은 일반용역비 등 용역 성격에 맞는 비목으로 편성·집행하고, 일반연구비는 실제 조사·분석·평가 등 연구 성격의 과업이 주된 경우에 한정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음.

# 4. 고충민원조사활동 사업: 지방옴부즈만 활성화 노력 필요

## 가. 개 요

**‘고충민원조사활동’** 사업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불편이 발생한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민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이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등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6억원 중 15억 7,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4%)되고, 2,500만원이 불용되었음.[9)]

[2025년도 고충민원조사활동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예산 현액 (A+B)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고충민원조사활동 | 1,600 | 1,600 | - | 1,600 | 1,575 | - | 25 | 1,899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지방자치단체 지방옴부즈만 설치 실적이 저조하고 지역 단위 고충민원 접수·처리 창구로서의 기능도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방옴부즈만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지방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등에 관한 고충민원을 지역 단위에서 처리하기 위한 제도로, 지역 밀착형 권익구제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10)]

---

9) 일반회계-고충민원조사활동(1135-350)(고충처리국)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러나 지방옴부즈만 설치 지자체 수는 2021년 62개에서 2025년 100개로 증가하였으나, 2025년 기준으로도 전체 243개 지방자치단체 설치율은 41.2%에 불과함. 이는 현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겨져 있는 것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또한 설치된 지자체 수가 증가하였음에도 지방옴부즈만에 접수된 고충민원 건수는 2025년 4,109건으로 오히려 4,319건인 전년대비 감소하였고, 전체 고충민원 대비 비율도 2024년 30.8%에서 2025년 27.9%로 하락하였음. 이는 지방옴부즈만이 지역 단위 고충민원 접수·처리 창구로서 충분히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옴부즈만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전국협의회 개최, 지방자치단체 대상 컨설팅, 관계기관 업무협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2025년에도 관련 사업비 1억 3,100만원을 집행하였음. 그러나 2025년 지방옴부즈만 설치 지자체 수는 전년 대비 6개 증가하는 데 그쳐, 권익위의 제도 확산 노력이 실제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로 충분히 이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11)]

[지방옴부즈만 설치 및 고충민원 처리 현황]

(단위: 개, %, 건)

| 구분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지방옴부즈만 설치 지자체 수 | 62개 | 70개 | 80개 | 94개 | 100개 |
| 전체 지자체 대비 설치 비율 | 25.5% | 28.8% | 32.9% | 38.7% | 41.2% |
| 지방옴부즈만 접수 고충민원 건수 | - | - | 2,750건 | 4,319건 | 4,109건 |
| 전체 고충민원 대비 비율 | - | - | 19.7% | 30.8% | 27.9% |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따라서 지방옴부즈만 제도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행정 분야의 고충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장치인 점을 고려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옴부즈만 제도를 적극 운영할 수 있도록 보다 실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1) 국민권익위는 2026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확대를 위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내실있는 운영을 촉구하기 위해 「민원서비스종합평가」 평가기준 및 정성평가 세분화 등의 노력을 실시하였음.

【기　타】

# 5.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가. 개　요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 시정요구 18건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주의 11건·제도개선 7건이었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 구분 | 변상 | 징계 | 시정 | 주의 | 제도개선 | (중복) | 계 |
|---|---|---|---|---|---|---|---|
| 결산 | - | - | - | 11 | 7 | - | 18 |
| 예비비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11 | 7 | - | 18 |

국민권익위원회는 시정요구사항 18건에 대해 15건을 조치완료(조치율 83.3%)하고 3건을 조치 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 구분 | 시정요구사항(a) | 조치완료(b) | 조치율(b/a) | 조치중(a-b) |
|---|---|---|---|---|
| 결산 | 18 | 15 | 83.3 | 3 |
| 예비비 | - | - | - | - |
| 합계 | 18 | 15 | 83.3 | 3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Ⅰ. 개 관

## 1. 결산 개요

### 가. 총수입·총지출

2025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1,589억 400만원(387.5%)이 많은 1,999억 1,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75억 4,800만원(517.7%)이 증가함.[1)]

[2025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4회계연도 | | | | 2025회계연도 | | | | 전년대비 (D-B) |
|---|---|---|---|---|---|---|---|---|---|
| | 예산액 | | 결산 (B) | 예산대비 (B-A) | 예산액 | | 결산 (D) | 예산대비 (D-C) | |
| | 본예산 | 추경(A) | | | 본예산 | 추경(C) | | | |
| 예 산 | 40,834 | 40,834 | 32,366 | △8,468 | 41,010 | 41,010 | 199,914 | 158,904 | 167,548 |
| 총수입 | 40,834 | 40,834 | 32,366 | △8,468 | 41,010 | 41,010 | 199,914 | 158,904 | 167,548 |

2025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2억 1,100만원이 적은 656억 3,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 7,000만원(0.9%)이 증가함.

문의: 02-6788-5689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5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4회계연도 | | | | 2025회계연도 | | | | 전년대비 (D-B) |
|---|---|---|---|---|---|---|---|---|---|
| | 예산액 | | 결산 (B) | 예산대비 (B-A) | 예산액 | | 결산 (D) | 예산대비 (D-C) | |
| | 본예산 | 추경(A) | | | 본예산 | 추경(C) | | | |
| 예 산 | 65,377 | 65,377 | 65,063 | △314 | 64,548 | 65,844 | 65,633 | △211 | 570 |
| 총지출 | 65,377 | 65,377 | 65,063 | △314 | 64,548 | 65,844 | 65,633 | △211 | 570 |

## 나.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410억 1,000만원으로, 2,034억 5,7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999억 1,400만원이 수납(수납률 98.3%)되고 34억 2,200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1억 2,0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세입예산액 | | 이체등 증감액 (B) | 세입 예산현액 (A+B) | 징수 결정액 | 수납액 | 미수납액 | 불납 결손액 |
|---|---|---|---|---|---|---|---|---|
| | 본예산 | 추경 (A) | | | | | | |
| 일반회계 | 41,010 | 41,010 | - | 41,010 | 203,457 | 199,914 | 3,422 | 120 |
| 합 계 | 41,010 | 41,010 | - | 41,010 | 203,457 | 199,914 | 3,422 | 120 |

주) 총계 기준

2025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660억 3,000만원으로, 이 중 656억 3,3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4%)되었으며, 3억 9,7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세출예산액 | | 예산결정후증감액(B) | | | 세출 예산현액 (C=A+B)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 (A)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 | | |
| 일반회계 | 64,548 | 65,844 | - | - | 186 | 66,030 | 65,633 | - | 397 |
| 합 계 | 64,548 | 65,844 | - | - | 186 | 66,030 | 65,633 | - | 397 |

주) 총계 기준

## 다. 재무결산

2025회계연도 말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산은 전년 대비 199억 6,100만원이 감소한 180억 7,500만원으로, 이는 금융자산항목이 213억 2,500만원 감소한 것에 주로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500만원이 증가한 5,900만원으로, 이는 충당부채항목이 500만원 증가한 것에 주로 기인함.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80억 1,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9억 6,600만원 감소하였음.

2025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419억 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3억 1,1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645억 3,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9억 800만원 증가하였음.

[2025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 | 2025 (A) | 2024 (B) | 증 감 | |
|---|---|---|---|---|---|---|
| | | | | | 금액 (A-B) | 증가율 (A-B)/B |
| 재정 상태표 | 자 산 | | 18,075 | 38,036 | △19,961 | △52.5 |
| | | 금융자산 | 2,752 | 24,077 | △21,325 | △88.6 |
| | | 유무형자산 | 15,323 | 13,959 | 1,364 | 9.8 |
| | | 기타자산 | - | - | - | - |
| | 부 채 | | 59 | 54 | 5 | 9.3 |
| | | 차입부채 | - | - | - | - |
| | | 충당부채 | 59 | 54 | 5 | 9.3 |
| | | 기타부채 | - | - | - | - |
| | 순자산 | | 18,016 | 37,982 | △19,966 | △52.6 |
| 재정 운영표 | 프로그램순원가 | | 41,980 | 35,669 | 6,311 | 17.7 |
| | 재정운영순원가 | | 64,531 | 57,623 | 6,908 | 12.0 |
| | 재정운영결과 | | 64,531 | 57,623 | 6,908 | 12.0 |

##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2025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산은 일반회계 1개로만 구성되어 있고, 회계·기금간 거래는 없음.

##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신뢰 기반의 AI 융합사회 촉진을 비전으로 제시하는 등 총 29개 세부사업에서 국민이 신뢰하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통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였음.

2025년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과징금 및 기타재산이자수입의 세입예산을 추계하는 과정에서 과년도 수납 실적의 평균값을 활용하고 있는데, 매년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세입예산 추계 시 최근의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추계 방식을 고안하는 등 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둘째, 동일한 집행 건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집행하는 등 「국고금 관리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였으므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한편,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가 저조한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셋째,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및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등의 활용 실적이 부진하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존 운영성과 평가 체계를 개선하는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넷째, 대규모 유출 사고 등을 명분으로 확보한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낮은 기능 개선 과업 등을 용역 과제에 포함하는 등 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거나, 출연기관의 사업비 잔액이 충분함에도 필요 이상으로 예비비를 신청하여 예비비 편성액보다 큰 규모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등 예산의 비효율적 운용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정된 정부재원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Ⅱ. 사업별 검토

## 【일반회계】

### 〈세　입〉

## 1. 과징금 및 기타재산이자수입: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 가. 개　요

**‘과징금’**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동법 제64조의2[2]에 따라 법 위반 중대성, 고의·중과실 여부, 위반기간·횟수, 보호조치 노력, 조사협조,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은 388억원이었으나 징수결정액은 1,999억 9,200만원으로 대폭 변경되었고, 이 중 1,972억 2,000만원이 수납되었음(수납률 98.6%).[3]

**‘기타재산이자수입’**은 국고보조금·출연금 및 세입·세출금의 금융기관 예치에 따라 발생한 이자의 반납분 등을 수납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은 6,400만원이었으나 징수결정액은 2억 9,900만원으로 대폭 변경되었고, 징수결정액 전액이 수납되었음(수납률 100.0%).[4]

---

2)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일반회계-과징금(56-565)(운영지원과)

4) 일반회계-기타재산이자수입(54-546)(운영지원과)

[2025년도 과징금 및 기타재산이자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5년도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징수 결정액(B) | 수납액 (C) | 미수 납액 | 불납 결손액 | 수납률 (C/B)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과징금 | 38,800 | 38,800 | 199,992 | 197,220 | 2,731 | 41 | 98.6 | 60,909 |
| 기타재산 이자수입 | 64 | 64 | 299 | 299 | - | - | 100.0 | 299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최근 대규모 과징금 부과 사건의 빈발 등의 정책환경 변화가 발생하여 수납 실적이 대폭 증가하였음에도 환경 변화 이전 연도의 실적이 관성적으로 포함됨으로써 매년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향후 세입예산 추계 시 최근의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추계 방식을 고안하는 등 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과징금 과목은 매년 세입예산을 추계하는 과정에서 2021년 이후 수납실적의 연평균값이 활용되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2020. 8.) 이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5]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인 과징금 징수 노력이 더해지면서 매년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

5) 2022년과 2024년에는 해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거액의 과징금(2022년 1,011억원, 2024년 232억원)이 부과되었고, 2025년에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기업인 SKT에 대해 1,34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음.

[연도별 과징금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 연도 | 예산현액(A) | 예산현액 산출 방식 | 징수결정액(B) | 수납액(C) | 수납률(C/A) |
|---|---|---|---|---|---|
| 2021 | 2,730 | 준거 기관 대비 편성 | 14,936 | 13,799 | 505.5 |
| 2022 | 1,583 | 준거 기관 대비 편성 | 102,604 | 1,530 | 96.7 |
| 2023 | 2,204 | (2021년 수납실적 + 2022년 예상 수납실적) ÷ 2 | 122,570 | 120,940 | 5,487.3 |
| 2024 | 38,800 | 2021~2023년 4월 평균 수납 실적 | 53,843 | 29,768 | 76.7 |
| 2025 | 38,800 | 2021~2023년 4월 평균 수납 실적 | 199,992 | 197,220 | 508.3 |
| 2026 | 60,909 | 2021~2025년 4월 평균 수납 실적 | - | - | - |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5. 8. 27. SKT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주요 내용]

◦ (처분 내용) SKT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유출 통지 위반 등에 대해 과징금 1,347억 9,100만원, 과태료 960만원 부과,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 및 안전조치 강화, 전사적인 개인정보 거버넌스 체계 정비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조치 등을 의결

◦ (유출 경위) 해커가 2021년 8월 SKT 내부망에 최초 침투하여 다수 서버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였고, 2022년 6월 추가 거점 확보 후 2025. 4. 18.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약 2,300만 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 유심 인증키 등의 개인정보(9.82GB)를 외부로 유출하였음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
- 안전조치 의무 위반: 접근통제조치 및 접근권한 관리 소홀, 보안 업데이트 미조치 등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및 업무 수행 소홀: IT 영역과 통신 인프라 영역 모두에서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음에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역할은 IT 영역에 한정되도록 구성·운영한 결과 유출 사고가 발생한 인프라 영역은 CPO가 개인정보 처리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음
- 개인정보 유출통지 지연: 저장된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된 사실을 확인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법령에서 정한 72시간 내 유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실을 통지하지 않음

자료: 보도자료「개인정보위,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사고 제재처분 의결」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6. 6. 10.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역대 최대인 6,246억 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는데, 해당 부과처분이 확정되면 이미 2026년도 예산현액의 10배를 상회하는 수준의 과징금이 징수결정액에 추가될 예정인바, 위와 같은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간 괴리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임.

[2026. 6. 1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 부과처분 주요 내용]

◦ (처분 내용) 쿠팡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해 과징금 6,246억 8,100만원, 과태료 1,680만원 부과, 시정명령, 공표 및 공표 명령 등을 의결하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에 대해서도 과징금 2억 4,800만원 부과

◦ (유출 경위) 쿠팡에서 근무하던 당시 대체 인증을 직접 개발하였던 전직 직원이 대체 인증 서명키 획득 이후 사전 유출 테스트 과정(2025. 1.)을 거쳐, 2025년 4월부터 11월까지 회원정보 수정 페이지, 배송지 관리 및 주문목록 페이지 등을 조회하며 개인정보를 유출하였음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
-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인증 서명키 관리 및 접근통제 소홀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 미흡으로 약 3,755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 쿠팡의 정보주체 권리 침해: 쿠팡에서 타사 웹·앱에 접속한 회원 약 1,117만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하여 DB에 저장하고, 부정광고(납치광고)를 게재하는 광고 파트너를 적절히 관리·감독하지 않아 이용자 의사에 반하여 쿠팡 서비스 이용기록이 수집되도록 하였음
-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정보주체 권리 침해: 물류센터에 근무한 이력이 없는 경찰청 출입기자단 명단(71명)을 수집하여 취업제한 목록에 등록·관리하였고, 임직원 건강 관리를 목적으로 보유·관리 중인 임직원의 체중 정보를 산업재해 관련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

자료: 보도자료 「개인정보위, 쿠팡 및 계열사의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제재처분 의결」을 바탕으로 재작성

기타재산이자수입 또한 매년 세입예산을 추계하는 과정에서 2021년 이후 수납실적의 연평균 값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자수입이 저조하였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직후 시기인 2021년의 실적이 지속적으로 포함되면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간 상당한 차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음.

[연도별 기타재산이자수입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 연도 | 예산현액(A) | 예산현액 산출 방식 | 징수결정액(B) | 수납액(C) | 수납률(C/A) |
|---|---|---|---|---|---|
| 2021 | - | - | 13 | 13 | 순증 |
| 2022 | 33 | 준거 기관 대비 편성 | 17 | 17 | 51.5 |
| 2023 | 15 | (2021년 수납실적 + 2022년 예상 수납실적) ÷ 2 | 163 | 163 | 1,086.7 |
| 2024 | 15 | (2021~2022년 수납실적 총합) ÷ 2 | 324 | 324 | 2,160.0 |
| 2025 | 64 | (2021~2023년 수납실적 총합) ÷ 3 | 299 | 299 | 467.2 |
| 2026 | 129 | (2021~2024년 수납실적 총합) ÷ 4 | - | - | - |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타재산이자수입 수납액의 대부분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출연사업비 이자 반납액인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한국인터넷진흥원 출연사업비 규모가 2021년 190억원에서 2025년 334억원으로, 출연사업비 이자 반납액이 2021년 1,310만원에서 2025년 3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직후 시기인 2021년의 실적이 산술평균에 산입되어 낮은 수납률을 보였음.

[연도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연금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출연사업비 이자 반납액 규모]

(단위: 백만원, %)

| 연도 | 출연금 예산액 | 한국인터넷진흥원 출연사업비 | 출연사업비 이자 반납액(A) | 기타재산이자수입 수납액(B) | 비중 (=A/B) |
|---|---|---|---|---|---|
| 2021 | 19,003 | 19,003 | 13.1 | 13.2 | 99.2 |
| 2022 | 22,994 | 22,994 | 16.1 | 16.5 | 97.6 |
| 2023 | 33,222 | 33,222 | 162.7 | 163.3 | 99.6 |
| 2024 | 33,867 | 33,867 | 320.0 | 323.9 | 98.8 |
| 2025 | 33,375 | 33,375 | 299.6 | 299.6 | 100.0 |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와 같이 과징금 및 기타재산이자수입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발생 증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출연금 및 이자수입 증가와 같은 환경 변화로 인해 최근 수납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에도, 환경 변화 이전 연도의 실적까지 산술평균하는 방식으로 세입예산을 추계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향후 세입예산 추계 시 최근의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추계 방식을 고안하는 등 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세 출〉

## 2.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 사업: 관서운영경비 집행관리 강화 필요 등

### 가. 개 요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 사업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자발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 지원,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수준 평가 등을 통해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37억 1,400만원 중 36억 6,9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8%)되고 4,500만원이 불용되었음.[6)]

[2025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 | 3,714 | 3,714 | - | - | 3,714 | 3,669 | - | 45 | 3,714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첫째, 동일한 집행 건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집행하는 등 「국고금 관리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였으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국고금 관리법」 제24조에 따르면, 출납공무원은 관서운영경비(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기존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를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만 가능함.[7)]

---

6) 일반회계-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1031-301)(개인정보정책국)

7) 「국고금 관리법」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제22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

이에 동법 시행령 제31조제1호 및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등에서는 출납공무원이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 중 운영비(210목)의 최고금액을 건당 500만원으로 설정하였음.[8)]

[「국고금 관리법」 등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 예산과목 | 범위 |
|---|---|
| 운영비(210) |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br>(단, 공과금 및 위원회 참석비, 선거관련 용품 제작·인쇄비용·우편요금, 청사임차료, 기업특별회계의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는 금액 제한 없음).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그런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설명회(2025. 4. 28.)' 장소 임차료 선금 및 잔금 지급을 이유로 출납공무원 명의로 각각 500만원, 80만 5,800원을 분할 집행하였는바, 이는 업무수행에 지장을 유발하지 않도록 일정 금액 이하 경비에 한하여 기존 지급 절차의 예외를 설정한 「국고금 관리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2025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동일·유사한 집행 건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집행한 현황]

(단위: 원)

| 지급일자 | 세부사업명 | 지급내용 | 지급액 |
|---|---|---|---|
| 2025. 5. 26. |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 |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설명회(4. 28.) 장소 임차료(210-07목) 선금 지급 | 5,000,000 |
| 2025. 5. 26. |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 |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설명회(4. 28.) 장소 임차료(210-07목) 잔금 지급 | 805,800 |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비(이하 "관서운영경비"라 한다)는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⑥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지급절차 및 정부구매카드의 사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비(복리후생비·학교운영비·일반용역비 및 관리용역비는 제외한다)·특수활동비·안보비·정보보안비 및 업무추진비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경비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① 영 제31조제1호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최고금액은 건당 500만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관련 제도에 대한 관심 증대에 따라 설명회 참석인원이 예상치를 상회하여 추가 인원 수용을 위해 좌석 재배치 및 추가 의자 설치 등을 거치면서 임차료 총액이 관서운영경비 기준을 초과하였고, 관서운영경비 집행기준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숙지가 미흡한 상황에서 임차료를 초과 결제하였다가 집행기준을 사후에 인지한 이후 부득이하게 결제금액을 분할 집행하였다는 입장임.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향후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이 「국고금 관리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관서운영경비를 집행하는 부적절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담당 직원에 대해 관련 규정 및 사례 교육 등을 철저히 실시하는 등 주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실시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기타공공기관 등 일부 기관의 보호 수준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공공기관은 법령에 따라 민감정보를 포함한 대량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처리하고 있는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인 이들 공공기관에 대한 특별관리 및 보호조치의 차원에서 매년 개인정보 관리수준을 진단·평가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9]에 따라 2024년부터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이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로 격상되었는데, 보호수준 평가 대상에는 기존 관리수준 진단 대상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도 포함되었음.

9)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① 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개인정보 보호 정책·업무의 수행 및 이 법에 따른 의무의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2024년 이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개요]

| |
|---|
| ◦ (대상 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br>◦ (지표) 자체평가 정량지표, 심층평가 정성지표 및 가·감점지표 등<br>◦ (방법) 평가단(외부 전문가 100명) 구성 후 서면 평가, 현장검증, 가·감점 반영 등<br>◦ (결과) S(90점 이상), A(80점 이상 90점 미만), B(70점 이상 80점 미만), C(60점 이상 70점 미만), D(60점 미만) 등 5개 등급으로 구분<br>◦ (제도 개선) 평가자료 미제출 및 허위제출 시 과태료 부과 가능, 이의신청 제도 도입, 미흡 기관에 대한 개선 권고 및 우수 기관 직원 포상 등 개선 |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이후 최초로 실시된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평균 88.2점의 점수를 획득하였으나, 기타공공기관(76.7점), 지방공기업(76.3점), 시·도교육청(75.1점), 기초자치단체(74.8점)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점수를 획득하여 기관 유형 간 큰 차이를 보였음. 특히 공공기관 내에서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 간 평균 10점 이상의 큰 차이가 존재하였음.

이와 같은 기관 간 격차는 2025년 평가 결과에서도 지속되었는데,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평균 87.5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점수를 획득하였으나, 기초자치단체는 평균 73.2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점수를 획득하여 격차가 전년 대비 더욱 확대되었음.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 구분 | | 평균 (796개) | 중앙 행정기관 (49개)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교육청 (17개) | 공공기관 | | 지방 공기업 (160개) |
|---|---|---|---|---|---|---|---|---|---|
| | | | | 광역 (17개) | 기초 (226개) | | 공기업·준정부기관 (87개) | 기타 공공기관 (240개) | |
| 평균 점수 | | 77.6점 | 80.5점 | 78.4점 | **74.8점** | **75.1점** | **88.2점** | **76.7점** | **76.3점** |
| 등급별 기관 수 | S | 45개 (5.7%) | 4개 (8.2%) | 1개 (5.9%) | - | - | 33개 (37.9%) | 5개 (2.1%) | 2개 (1.3%) |
| | A | **316개 (41.4%)** | **21개 (42.9%)** | **7개 (41.2%)** | 63개 (27.9%) | 2개 (11.8%) | **50개 (57.5%)** | **116개 (48.3%)** | 57개 (35.6%) |
| | B | 306개 (38.4%) | **21개 (42.9%)** | 6개 (35.3%) | **113개 (50.0%)** | **13개 (76.5%)** | 4개 (4.6%) | 72개 (30.0%) | **77개 (48.1%)** |
| | C | 85개 (10.7%) | 2개 (4.1%) | 2개 (11.8%) | 38개 (16.8%) | 2개 (11.8%) | - | 25개 (10.4%) | 16개 (10.0%) |
| | D | 44개 (5.0%) | 1개 (2.0%) | 1개 (5.9%) | 12개 (5.3%) | - | - | 22개 (9.2%) | 8개 (5.0%) |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 구분 | | 평균 (818개) | 중앙 행정기관 (50개)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교육청 (17개) | 공공기관 | | 지방 공기업 (165개) |
|---|---|---|---|---|---|---|---|---|---|
| | | | | 광역 (17개) | 기초 (226개) | | 공기업·준정부기관 (88개) | 기타 공공기관 (242개) | |
| 평균 점수 | | 76.5점 | 82.1점 | 80.4점 | **73.2점** | **75.2점** | **87.5점** | **76.3점** | **73.8점** |
| 등급별 기관 수 | S | 54개 (6.6%) | 6개 (12.0%) | - | 1개 (0.4%) | - | **38개 (43.2%)** | 8개 (3.3%) | 1개 (0.6%) |
| | A | 258개 (31.5%) | **29개 (58.0%)** | **9개 (52.9%)** | 44개 (19.5%) | 4개 (23.5%) | 37개 (42.0%) | 85개 (35.1%) | 47개 (28.5%) |
| | B | **340개 (41.6%)** | 12개 (24.0%) | 8개 (47.1%) | **114개 (50.4%)** | **10개 (58.8%)** | 11개 (12.5%) | **108개 (44.6%)** | **71개 (43.0%)** |
| | C | 115개 (14.1%) | 1개 (2.0%) | - | 52개 (23.0%) | 3개 (17.6%) | 2개 (2.3%) | 24개 (9.9%) | 30개 (18.2%) |
| | D | 51개 (6.2%) | 2개 (4.0%) | - | 15개 (6.6%) | - | - | 17개 (7.0%) | 16개 (9.7%) |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평가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재정경제부 실시)에 연계되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직·인력·예산을 형성하고 있어 비교적 높은 평가 점수를 획득하였지만, 그 외 유형의 기관은 연계되는 평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력·예산 등의 투입도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던 결과 낮은 평가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음.

그러나 기초자치단체는 주민등록·복지·납세 관련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고 있어 국민이 체감하는 개인정보 유출 리스크가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음에도, 기관 간 평균적인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정보의 주체이자 유출의 피해자인 국민이 아닌 기관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특히 2024년 이후 법률 개정에 따라 제도를 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간 보호 수준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으므로, 제도를 운용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평가 결과가 저조한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 3. 가명처리 기술지원 사업: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및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의 운영 활성화 필요

## 가. 개 요

**‘가명처리 기술지원’** 사업은 가명정보 활용 수요기업 등을 대상으로 가명정보 활용 컨설팅을 수행하고, 서울·지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및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등의 구축·운영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1억 3,7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10)]

[2025년도 가명처리 기술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 3,564 | 3,564 | - | - | 3,564 | 3,564 | - | - | 6,456 |
| 가명처리기술지원 | 2,137 | 2,137 | - | - | 2,137 | 2,137 | - | - | 5,665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는 공공·산업의 인공지능 전환(AI Transformation; AX)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데이터 처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역 거점 기관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하여 설치·운영 중에 있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원센터를 공모한 다음, 외부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높은 점수를 취득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센터를 선정하며, 이후 센터별 업무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운영비(국비) 지급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음.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는 가명 처리 인프라·전문 인력 등이 부재한 지역 소재의 스타트업·중소기업 등을 위해 가명정보 인프라 제공, 컨설팅, 교육·실습 등을 지원하며, 2025년 말 기준 서울·강원·부산·대전·인천·대구·전북 등 총 7개의 센터가 구축되었음.

10) 일반회계-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1032-302)(개인정보정책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개요]

| 구분 | 가명처리 지원센터(서울 센터) | 지역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
|---|---|---|
| 주요 기능 | 가명처리 인프라 제공,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 가명정보 활용 컨설팅, 교육 및 실습, 사례발굴 및 공유 | |
| | 지역 지원센터 업무 총괄<br>*신규 센터 선정 공모·구축·평가 등 지원 | - |
| 운영 주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br>(위탁운영: 한국인터넷진흥원) | 광역자치단체<br>(위탁운영: 지역 테크노파크 등 별도 수행기관) |
| 운영 예산 | 국비 | 강원, 부산, 대전: 국비·지방비(1:1 매칭)<br>인천, 대구, 전북: 지방비 100% |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운영 현황]

| 지역 | 구축일 | 위치 | 구축 현황(실) | 인력(명) | 예산(백만원) | |
|---|---|---|---|---|---|---|
| | | | | | 2025 | 2026 |
| 서울 | 2020.11.2. | 송파구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분원 | 가명처리공간 5, 회의실 1, 서버실 1, 운영 사무실 1 | 1 | 국비 427 | 국비 427 |
| 강원 | 2021.7.28. | 원주 지식산업센터 2층 | 가명처리실 4, 회의실 1, 서버실 1, 운영사무실 1, 공용공간 | 6 | 국비 200<br>지방비 200 | 국비 105<br>지방비 200 |
| 부산 | 2022.8.29. | 해운대구 센텀기술창업타운 CENTAP 5층 | 가명처리실 4, 회의실 1, 서버실 1, 운영사무실 1 | 5 | 국비 200<br>지방비 200 | 국비 105<br>지방비 200 |
| 인천 | 2023.7.18. | 연수구 인천글로벌캠퍼스 지하 1층 | 가명처리실 3, 서버실 1, 운영사무실 1 | 4 | 지방비 300 | 지방비 300 |
| 대전 | 2023.11.28. | 유성구 충남대학교 정보화교육관 2층 | 가명처리실 3, 회의실 1, 서버실 1, 운영사무실 1 | 4 | 국비 200<br>지방비 200 | 국비 90<br>지방비 90 |
| 대구 | 2024.7.18. | 수성구 SW융합테크 비즈센터(DNEX) 2층 | 가명처리실 2, 회의실 1, 서버실 1, 운영사무실 1 | 3 | 지방비 114 | 지방비 125 |
| 전북 | 2024.11.26. | 덕진구 전북테크비즈센터 6층 | 가명처리실 2, 회의실 1, 서버실 1, 운영사무실 1 | 4 | 지방비 300 | 지방비 300 |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편,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은 연구기관·스타트업 등이 개인정보를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안전성을 강화한 환경을 갖춘 장소를 검증·지정하고 있음.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하에서는 가명처리 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하여 데이터를 안전한 환경에서 분석할 수 있으며, 비정형(영상·이미지·텍스트 등) 빅데이터 또한 전문심의위원회가 검증한 가명처리 소프트웨어 적용 및 샘플링 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 활용할 수 있음.

연구기관·스타트업 등은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에 방문하여 가명정보를 장기 활용 및 재사용함으로써 효율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고, 불필요한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한 고품질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연구 및 기술 실증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시간 및 비용의 절감을 도모할 수 있음.

2025년 말 기준 운영 중인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은 총 5개이며, 2026년에 광주 테크노파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2개 시설이 운영을 개시하였음.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운영 현황]

| 구분 | 1차 지정(2023) | | 2차 지정(2024) | | | 3차 지정(2025) | |
|---|---|---|---|---|---|---|---|
| | 국립암센터 | 국가 데이터처 | 한국사회 보장정보원 | 더존비즈온 | 한국 도로공사 | 광주 테크노파크 | 한국교육 학술정보원 |
| 유형 | 국비지원형 | 자체구축형 | 자체구축형 | 자체구축형 | 국비지원형 | 국비지원형 | 자체구축형 |
| 운영일 | 2024.7.12. | 2024.3.28. | 2024.12.17. | 2024.12.31. | 2025.3.10. | 2026.2.9. | 2026.4.1. |
| 중점 분야 | 보건의료 | 국가통계 | 사회복지 | 정밀의료 | 국토교통 | 의료AI | 국가교육 |
| 위치 | 경기 고양 | 대전 서구 | 서울 광진 | 강원 춘천 | 경북 김천 | 광주 북구 | 대구 동구 |
| 인력 현황(명) | 11 | 5 | 6 | 8 | 9 | 5 | 4 |
| 2025 예산 (백만원) | 187.6 (운영비) | 1.2 (운영비) | 3.2 (운영비) | - | 187.8 (운영비) | 370 (구축비) | - |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나. 검토의견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및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등의 활용 실적이 부진하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존 운영성과 평가 체계를 개선하는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공공·산업의 인공지능 전환 및 데이터 활용 비용 절감 등의 구축 취지에도 불구하고,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및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의 연간 활용 실적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먼저 2025년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의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센터의 주요 역할이자 고유 업무로 볼 수 있는 가명처리 및 적정성 검토 실적은 모든 센터가 연 100건 이하였으며, 대구 센터를 제외한 6개 센터는 30건 이하의 실적을 보였음.

[연도별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의 지원 실적]

(단위: 건)

| 지역 | 2023 | | | | 2024 | | | | 2025 | | | |
|---|---|---|---|---|---|---|---|---|---|---|---|---|
| | 가명처리 | 적정성 검토 | 컨설팅 | 교육·실습 | 가명처리 | 적정성 검토 | 컨설팅 | 교육·실습 | 가명처리 | 적정성 검토 | 컨설팅 | 교육·실습 |
| 서울 | 16 | 3 | 13 | 62 (409) | 25 | 15 | 38 | 63 (518) | 17 | 9 | 40 | 77 (484) |
| 강원 | 6 | 14 | 35 | 31 (1,333) | 17 | 21 | 60 | 27 (842) | 7 | 8 | 59 | 14 (365) |
| 부산 | 8 | 3 | 17 | 21 (1,098) | 9 | 10 | 34 | 17 (214) | 13 | 10 | 43 | 13 (293) |
| 인천 | 2 | 1 | 10 | 0 | 3 | 2 | 14 | 7 (557) | 2 | 1 | 21 | 7 (233) |
| 대전 | 0 | 0 | 1 | 3 (52) | 4 | 8 | 19 | 9 (283) | 10 | 6 | 48 | 11 (425) |
| 대구 | - | - | - | - | 7 | 1 | 11 | 11 (252) | 38 | 31 | 28 | 13 (263) |
| 전북 | - | - | - | - | 0 | 0 | 6 | 8 (167) | 2 | 6 | 10 | 13 (250) |

주) 괄호 안의 수치는 교육·실습을 받은 인원 수를 의미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또한 낮은 이용 실적을 보였음. 연구기관·스타트업 등이 개인정보를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연구 및 기술 실증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시설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노베이션 존의 연구과제 수행 건수는 모든 시설에서 10건 미만의 실적을 보였음.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의 2025년 예산 및 이용 현황]

| 구분 | | 1차 지정(2023) | | 2차 지정(2024) | | | 3차 지정(2025) | |
|---|---|---|---|---|---|---|---|---|
| | | 국립암센터 | 국가 데이터처 | 한국사회 보장정보원 | 더존비즈온 | 한국 도로공사 | 광주 테크노파크 | 한국교육 학술정보원 |
| 유형 | | 국비지원형 | 자체구축형 | 자체구축형 | 자체구축형 | 국비지원형 | 국비지원형 | 자체구축형 |
| 운영일 | | 2024.7.12. | 2024.3.28. | 2024.12.17. | 2024.12.31. | 2025.3.10. | 2026.2.9. | 2026.4.1. |
| 인력 현황(명) | | 11 | 5 | 6 | 8 | 9 | 5 | 4 |
| 예산(백만원) | | 187.6 | 1.2 | 3.2 | - | 187.8 | 370 | - |
| 이용 현황 | 연구과제(건) | 9 | 1 | 2 | 0 | 5 | - | - |
| | 방문자수(명) | 167 | 2 | 22 | 125 | 81 | - | - |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년부터 운영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운영비를 10% 내외의 범위에서 차등지급하는 등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 센터의 실적 증대를 위하여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나, 여전히 실적이 부진한 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활용 실적이 저조한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및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등에 대해 기존 운영성과 평가 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해당 시설들이 지역 연구기관·스타트업 등의 디지털 전환 및 연구비용 절감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차원에서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 4. 개인정보 침해방지 사업: 추가경정예산 및 예비비 편성·배정의 취지를 고려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 필요

## 가. 개 요

**‘개인정보 침해방지’** 사업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방지를 위해 실태점검,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대응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88억 4,600만원 중 88억 1,1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6%)되고 3,500만원이 불용되었음.[11]

[2025년도 개인정보 침해방지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예비비 (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개인정보 침해방지 | 7,486 | 8,782 | - | 64 | 8,846 | 8,811 | - | 35 | 7,665 |
| 침해방지 및 실태점검 | 4,064 | 4,064 | - | 64 | 4,128 | 4,093 | - | 35 | 4,193 |
|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대응 | 3,392 | 4,688 | - | - | 4,688 | 4,688 | - | - | 3,442 |
| 개인정보 침해방지 지원 | 30 | 30 | - | - | 30 | 30 | - | - | 30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에서는 ① 개인정보 유출·침해 신고 등에 따른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침해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그 처리 실태를 조사·점검하며, ②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관련 상담·신고를 처리하고, ③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을 모니터링하며 탐지된 게시물을 삭제하고, ④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11) 일반회계-개인정보 침해방지(2034-301)(조사조정국)

## 나. 검토의견

**대규모 유출 사고 등을 명분으로 확보한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낮은 기능 개선 과업 등을 용역 과제에 포함하는 등 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거나, 출연기관의 사업비 잔액이 충분함에도 필요 이상으로 예비비를 신청하여 예비비 편성액보다 큰 규모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등 예산의 비효율적 운용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한정된 정부재원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대응' 내역사업 내에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대응 체계 운영을 목적으로 12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12억 7,800만원이 실집행되었음.

[2025년 개인정보 침해방지 사업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 증액분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예산액 | 월별 실집행액 | | | | | |
|---|---|---|---|---|---|---|---|
| |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계 |
| 노출대응 시스템 고도화 | 707 | 564 | - | - | - | 141 | 705 |
| 노출대응 시스템 장비 확충 | 200 | 154 | - | - | - | 38 | 192 |
| 사업 운영비 | 47 | | | | | 39 | 39 |
| 털린내정보 찾기 서비스 고도화 | 342 | 342 | - | - | - | - | 342 |
| 계 | 1,296 | 1,060 | - | - | - | 218 | 1,278 |

주) 미집행액 1,800만원 중 1,000만원은 낙찰차액이며, 800만원은 사업 운영비 불용액임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당 증액분은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가 최종안에 추가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본예산 편성 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SKT 대규모 정보 유출(2025. 4. 22. 신고 접수)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여 불법유통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유출 정보를 악용한 새로운 개인정보 침해 위협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을 요구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실집행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한 「2025년 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개인정보 노출대응 시스템 등 고도화 추진계획(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동 사업에서 추가경정예산 증액분을 활용하여 기존 시스템의 탐지 유형 및 조회 정보 확대, 도메인 관리 개선, 데이터 관리 강화 등과 같은 일반적인 고도화를 추진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2025년 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개인정보 노출대응 시스템 등 고도화 추진계획(안)」 내용]

(단위: 백만원)

| 구분 | 주요 내용 | 예산액 | 계약 방식 | 일정(안) |
|---|---|---|---|---|
| 개인정보 노출대응 시스템 고도화 | (탐지유형 확대)<br>AI기반 비정형 데이터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탐지<br><br>(탐지 도메인 관리)<br>크롤링 대상 국내 도메인 및 탐지데이터 조회 등 연계 기능 개선<br><br>(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조회 정보 확대)<br>이메일 주소 및 PW 조회를 위한 웹 UI/UX 및 DB 등 개선 | 762<br>(추경 707,<br>기존 55) | 용역<br>(조달발주) | 발주(6월)<br>↓<br>계약(8월)<br>↓<br>사업수행<br>(8~12월) |
| | (신규 도입 내용)<br>AI기반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비정형 데이터 수집, 분석(머신러닝용 GPU 포함) 서버 등 장비 도입 | 200<br>(추경) | | |
|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확대를 위한 인텔리전스 정보서비스 구매 | (다크웹 데이터)<br>다크웹 등 음성화 사이트에 불법 유통되고 있는 개인정보 DB 확보 및 분석 기반 마련 | 342<br>(추경) | 구매<br>(특정수의) | 계약심의,<br>구매요청<br>(6월)<br>↓<br>계약(7월) |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한 「개인정보 노출대응 시스템 고도화 최종 보고」(2025. 12. 26.)의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증액 필요성으로 제시하였던 ‘대규모 정보 유출에 대한 긴급 대응’과 관련성이 낮은 ‘공공 웹사이트 실태조사 결과 관리 기능’, ‘민간·공공 도메인 관리 기능 개선’ 등도 용역 과업에 포함되었음.

[개인정보 노출대응 시스템 고도화 용역 과업 내용]

## 제안 요구사항 - 이행 내역(기능 요구사항)

| 구분 | 번호 | 요구사항 명 | 이행 여부 |
|---|---|---|---|
| 기능 요구사항 | SFR-001 | 웹사이트 비정형 데이터 수집 기능 개발 | 이행 |
| | SFR-002 | 비정형 데이터 게시물 메타데이터(텍스트) 전처리 및 유형분류 | 이행 |
| | SFR-003 | 수집 비정형 데이터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탐지를 위한 전처리 수행 | 이행 |
| | SFR-004 | 비정형 데이터 내 개인정보 노출 · 불법유통 컨텐츠 탐지 | 이행 |
| | SFR-005 | 비정형 데이터 내 개인정보 탐지 이력 관리 기능 개발 | 이행 |
| | SFR-006 | 개인정보 노출 · 불법유통 대응 시스템 연동 기능 개발 | 이행 |
| | SFR-007 | 비정형 데이터 탐지를 위한 시스템 관리 및 모니터링 기능 개발 | 이행 |
| | SFR-008 | 비정형 데이터 수집·분석 시스템 구축 | 이행 |
| | SFR-009 | 공공기관 웹사이트 실태조사 결과 관리 기능 | 이행 |
| | SFR-010 | 개인정보 노출 탐지 대상 도메인 등록·관리 | 이행 |
| | SFR-011 | 민간·공공 도메인 관리 기능 개선 | 이행 |
| | SFR-012 | 분석 및 대응을 위한 탐지 데이터 생성 | 이행 |
| | SFR-013 | 간접 탐지 키워드 관리 기능 개선 | 이행 |
| | SFR-014 | 탐지 데이터 분류 기준 추가 | 이행 |
| | SFR-015 | 웹페이지 통계 관리 기능개선 | 이행 |
| | SFR-016 |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분석 데이터베이스 구축 | 이행 |
| | SFR-017 | 텔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수집 정보 확대 | 이행 |
| 추가제안 | SFR-EXT-01 | 텔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추가 기능 제안 1 (암호화 개선) | 이행 |
| | SFR-EXT-02 | 텔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추가 기능 제안 2 (만족도 조사 프로세스) | 이행 |
| | SFR-EXT-03 | 텔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추가 기능 제안 3 (디자인 개선) | 이행 |

13 TSCIENTIFIC

자료: 「개인정보 노출대응 시스템 고도화 최종 보고」(2025. 12. 26.)

즉,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규모 유출 사고 등을 명분으로 확보한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능 개선 과업 등을 용역 과제에 포함하는 등 일반적인 정보화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였는바, 한정된 국가재정을 시급성이 낮은 분야에 투입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신기술 발달로 개인정보 유출이 급증하였으나 관련 사업 운영을 위한 서버 장비 등이 노후화된 상황이었으므로 예산 편성의 시급성이 존재하였다고 답변하였음.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진한 시스템 고도화 작업과 관련성이 높은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이용 실적은 2025년 4월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전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바, 해당 작업이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 대응 관련 시급성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2023~2025년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월별 이용 현황]

(단위: 건)

|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합계 |
|---|---|---|---|---|---|---|---|---|---|---|---|---|---|
| 2023 | 21,645 | 13,406 | 17,906 | 14,353 | 199,237 | 181,948 | 75,348 | 63,648 | 72,425 | 43,509 | 54,443 | 38,273 | 796,141 |
| 2024 | 40,965 | 33,992 | 30,232 | 28,906 | 39,780 | 21,987 | 55,611 | 120,453 | 59,652 | 36,222 | 27,161 | 23,056 | 518,017 |
| 2025 | 20,303 | 31,732 | 23,923 | 42,699 | 24,116 | 22,875 | 18,463 | 21,971 | 23,090 | 8,731 | 17,701 | 135,893 | 391,497 |

주) 2026년 1월 이용 건수는 26,445건으로, 전월 대비 크게 감소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시스템 긴급 복구를 이유로 2025년 11월 13일 동 사업에 예비비를 배정하였음. 예비비 배정 필요성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화재로 소실된 소스코드·솔루션 등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 자체충당이 가능한 예산을 초과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배정하게 되었다는 입장임.

[2025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비비 배정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 세부사업<br>(목-세목) | 금액 | 비고 |
|---|---|---|---|
| **예비비** | **침해방지 및 실태점검<br>(350-02)** | 63,800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br>긴급 시스템 복구를 위해 배정<br>(소실된 솔루션 설치 및 소스코드 복구 지원) |
| 예비비 | 위원회정보화지원(정보화)<br>(210-15) | 121,706 | |
| 자체 활용 | 위원회정보화지원(정보화)<br>(210-14) | 1,500 | 세목을 변경하여 집행 |
| 자체 활용 | 위원회정보화지원(정보화)<br>(210-15) | 16,900 | 별도 세목변경 없이 집행 |
| 자체 활용 | 개인정보침해방지<br>(210-15) | 19,000 | 별도 세목변경 없이 집행 |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러나 해당 예비비가 배정된 ‘침해방지 및 실태점검’ 내역사업의 사업출연금(350-02) 연말 실집행 잔액은 1억 1,400만원이었고, 세부사업 내 잔액은 1억 8,500만원으로 예비비 배정액 규모를 상회하였는바, 결과적으로 예비비의 추가적인 배정 없이도 시스템 복구가 가능하였음에도 필요 이상으로 예산을 신청한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10월 22일 예비비 신청 당시 수요조사를 비롯한 일정이 촉박하여 출연금 집행잔액 규모를 정확히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나, 세부사업 기준 예비비 배정액의 2배를 상회하는 수준의 연말 잔액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예비비 배정의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향후 추가경정예산 및 예비비 등을 추가로 편성·배정 시, 해당 예산이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함으로써 한정된 정부재원이 효과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기　타】

## 5.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해 시정요구 12건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주의 6건, 제도개선 8건, 중복 2건이었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 구분 | 변상 | 징계 | 시정 | 주의 | 제도개선 | (중복) | 계 |
|---|---|---|---|---|---|---|---|
| 결산 | - | - | - | 6 | 8 | 2 | 12 |
| 예비비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6 | 8 | 2 | 12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2월 기준으로 시정요구사항 12건에 대해 11건을 조치완료(조치율 91.7%)하고 1건을 조치 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 구분 | 시정요구사항(a) | 조치완료(b) | 조치율(b/a) | 조치중(a-b) |
|---|---|---|---|---|
| 결산 | 12 | 11 | 91.7 | 1 |
| 예비비 | - | - | - | - |
| 합계 | 12 | 11 | 91.7 | 1 |